

⋮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결과보고서

2018. 12.

⋮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결과보고서

2018. 12.

⋮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Contents

I 추진배경 및 진행 경과

1. 추진배경	1
2. 협의회 구성 · 운영방식	1
3. 진행 경과	4

II 주요 논의내용

〈 제1소위원회 〉

1.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6
2.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27

〈 제2소위원회 〉

3.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39
4. 망 이용료 정책	58
5. 상생 협력	67

III 참고자료

1. 발제 자료	89
2. 해외 동향	418
3. 회의록	487

1 추진배경

- 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바람직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운영('18. 2월~12월)

2 협의회 구성·운영방식

가. 협의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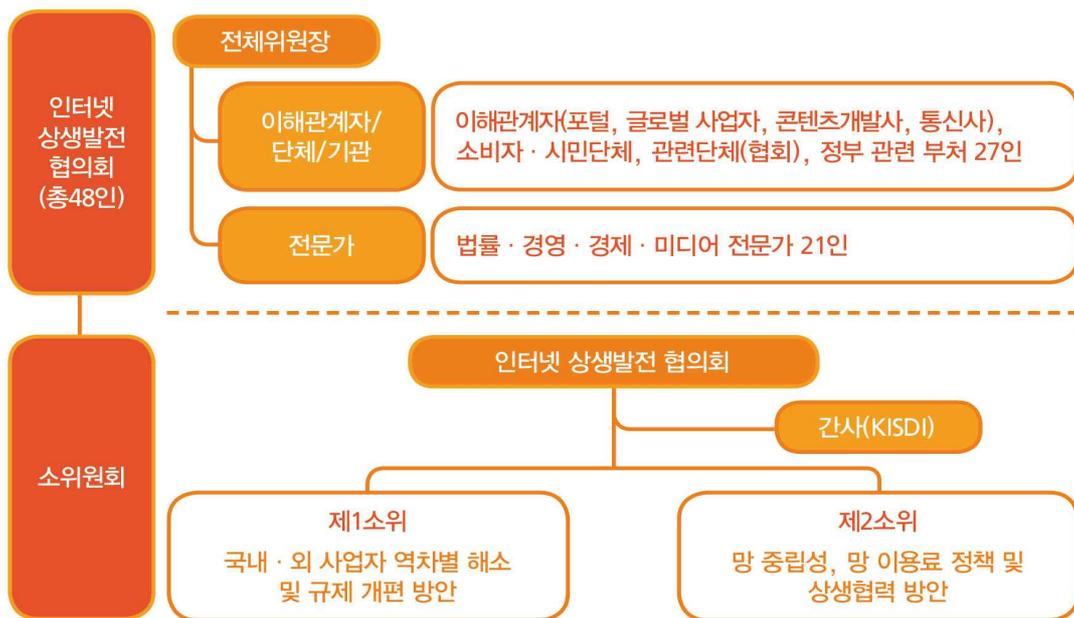
- (위원) 인터넷 정책 전문가 21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 12인, 관련 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
 - * 인터넷기업(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아프리카TV, 우아한 형제들, 콘텐츠연합플랫폼, CJ ENM(티빙), 시지온), 통신사(SKT, KT, LGU+)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방송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원장) 전문가 중에서 김상훈 광운대 교수를 선정,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재·논의안건 조율 등을 담당

<위원 구성 기준 및 방법>

구분	기준·방법
전문가(21인)	법·경영·경제·미디어 등 민간 전문가 위촉
소비자·시민단체(5인)	소비자·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
인터넷·통신사(12인)	포털 등(3사), 글로벌 사업자(2사), 콘텐츠개발사(4사), 통신사(3사)에서 각 1인 위촉
관련단체(7인)	인터넷 관련 이해관계자 협회에서 각 1인 위촉
정부·유관기관(3인)	인터넷 정책 관련 3개 부처 담당 국장

※ 위원 명단은 붙임1 참조

- (운영 방식)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인터넷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
 -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되, 참석을 원할 경우 1, 2 소위 구분하지 않고 참여 가능



- (논의 의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개편 방안’과 ‘망 중립성,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협력 방안’ 등 정책의제를 기초로 위원이 제안한 의제 추가

- (운영 기간) 약 10개월 간 운영('18. 2월~12월)
- (회의 진행) 발제자의 의제 발표 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별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회의 공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 가능
- (활용 방안) 논의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 정책수립에 참고
- (국민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접수('18. 3. 6.~9. 6.)

※ 접수된 의견은 총 6건임(붙임2 참조)

나. 소위원회 구성 및 논의 의제

- (구성) 각 소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 전문가(9~10인) 및 소비자·시민단체(2~3인)로 구성하고,
 -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논의·검토
- (제1소위원회)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방안 논의

<제1소위원회 구성>

성명	소속·직책	비고	성명	소속·직책	비고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전체/소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미디어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법률
엄호동	미디어디렉션 연구소장	미디어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
최정일	송실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법률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단체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률/ICT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소비자·시민단체

- (제2소위원회) 망 중립성·제로레이팅 정책,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

<제2소위원회 구성>

성명	소속·직책	비고	성명	소속·직책	비고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위원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률
김동민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미디어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경제센터장	ICT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디어	송명빈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ICT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소비자·시민단체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소비자·시민단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김선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소비자·시민단체

3 진행 경과

- (전체회의) 2회 개최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8. 2. 23)	협의회 운영계획, 기초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 인터넷, 통신사 분야별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
2차 (’18. 12. 13)	정책제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별 결과 보고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정책제안서 확정

- (제1소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8월 제외), 총 7차례 개최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8. 3. 16)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집행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 역외적용·국내대리인·임시중지제도 등 법제도 개선
2차 (’18. 4.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추가 논의 ○ 국내 대리인제도 관련 법안 현황
3차 (’18. 5.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차별 현황 및 주요 쟁점 ○ 역차별 해소 방안 추가 논의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4차 (’18. 6. 8)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 인터넷 생태계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5차 (’18. 7.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시장 규제 개편 추가 논의 ○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추가 논의
6차 (’18. 9. 7)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집행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 규제 집행력 증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강화
7차 (’18. 11. 22)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소위 결과보고서 확정

● (제2소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8월 제외), 총 7차례 개최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8. 3. 26)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중립성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 망 중립성 주요 이슈와 시민사회의 입장 ○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
2차 (’18. 4.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중립성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3차 (’18. 5.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로레이팅의 현황 ○ 인터넷망상호접속 개념과 제도 현황
4차 (’18. 6. 26)	망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중립성/제로레이팅/망 이용료 관련 중소 CP 입장 ○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5차 (’18. 7. 23)	망 이용료/ 상생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계속) ○ 통신사/대형 CP의 상생 및 사회공헌활동
6차 (’18. 9. 13)	망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이용료/망 중립성 관련 전문가 발제(대형 CP 추천) ○ 망 이용료 관련 해외사례(통신사 추천)
7차 (’18. 11. 28)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소위 결과보고서 확정

1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 ◆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방안에 관하여 총 4차례(제1차~제3차, 제6차 회의) 논의 진행
 - 역외적용,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국제 공조 체계 구축 등
- ◆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발표한 정책자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 등 논의

1. 개요

-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
 - 일부 해외 사업자는 같은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 이러한 경쟁상 불이익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관할권의 문제와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제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집행 실효성의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
 - (관할권)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허가·신고주체와 사업주체의 일치 필요성 등 제기
 - (집행 실효성) 국내대리인 제도 및 임시중지 제도 도입,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 제기
- ※ 개별 규제의 완화 필요성은 해당 규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협의회에서는 기존 규제의 적용 측면에서 역차별 원인을 식별하고 개선방안 모색하되,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는 기존 규제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 의제로 논의

2. 역외적용 명문화

■ 논의 배경

- 국경 없는 서비스인 인터넷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한 국가의 규제 관할권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적용*을 전기통신사업법 등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됨
- * 역외적용이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
- 미국·EU 등의 많은 국가들은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역외적용이 국제법상 관할권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찾기 어려움
 - 반면, 통신법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및 자국 통신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이 대부분이므로, 해외에서 역외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적용 규정 도입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입법례

- (전기통신사업법) 협의회 운영 중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18. 12. 7일)
- ※ 김성태 의원('17. 10월, '18. 2월, '18. 7월), 김경진 의원('18. 2월, '18. 9월), 박선숙 의원('18. 7월) 대표발의
- (공정거래법) '04년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대법원은 역외적용 규정이 없었을 때에도 역외적용 인정

-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규정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의 기계적 적용은 자칫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역외적용 인정
- (자본시장법) '07년 법제정 시부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

(2) 통신 관련 국내법 적용사례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역외적용 규정이 없으나, 방통위는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외사업자에게 관할권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법 적용하여 조사·제재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사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SKB 및 LGU+ 이용자의 접속속도 저하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3억 9,600만원, '18. 3월)
- (정보통신망법 사례) 구글의 스트리트뷰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구글 본사 현장조사 및 과징금 부과(2억1천2백만원, '14. 1월)

(3)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규정 신설 (김경진 의원, '18. 9월)

(4) 주요 쟁점

- (필요성)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역외적용 규정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사례는 불법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임

** 해외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도 국내 통신망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지가 국내인 점, 그 제공과정에서 국내설비가 반드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음

- 또는, 역외적용 규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역외적용이 가능하되, 개별 조문·행위별로 역외적용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존재

● (실효성)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역외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대상이 속하는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조가 전제되어야 함

-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양국에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러한 협조가 가능할 것임

● (적용범위) 역외적용이 가능한 행위유형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항을 해외 사업자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예를 들면, 필수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해외 사업자에도 이러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등 다수 규정이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해외 현황

● 해외 주요국에서 역외 적용하는 대표적인 법은 공정거래법이며, 그 외 금융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역외적용 하고 있음

- (미국) 주로 판례를 통해 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지식재산권법, 해외 부패행위방지법 등에서 역외적용을 광범위하게 적용

- (EU)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규제기관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로 경쟁법(공정 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EU 회원국의 정보주체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을 처리하거나 EU 내에서의 EU 회원국 정보주체의 활동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활동을 처리하는 EU 밖의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에게도 적용(제3조제2항)

- (일본)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98년부터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자를 본인으로 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외국에서 당해 개인정보 또는 당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제75조)

■ 이해관계자별 입장

가. 글로벌 CP

- 해외 사업자도 이미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국내 CP

- 기존에 이미 해석상 인정되어 오던 것을 법률에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력의 담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다. 통신사

- 국내법이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현재도 규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역외적용 명문화 시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
- 현재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 시 외국법인을 직접 조사하여 제재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 여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으나, 법 적용범위의 명확성을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필요
- ◆ 다만, 역외적용을 규정하더라도 어떠한 조항을 역외적용할지 검토 필요하며, 국제적 공감대 없는 규제는 해외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조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제도 개선 필요
- 조사권 강화를 위해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방해, 자료 미제출 등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예: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필요

* “6.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서 상세히 논의

3.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 논의 배경

-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규제기관의 해외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 등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 등 제기
 - 유럽연합의 GDPR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한 것을 참고
 - 협의회 운영 중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8. 8. 30일)
-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및 도입 시 통상법 위반 가능성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방송통신 관련 입법례

- (정보통신망법)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18. 9. 13. 공포, '19. 3. 14. 시행)
 - 일정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
 - 국내대리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WTO GATS 제4조에 따라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규범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규제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한미 FTA 제23.1조는 동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 한미 FTA 제23.1조 일반적 예외 〉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제14장(통신) 및 제15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 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 WTO GATS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와 처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 (3) 안전

- (방송법)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심사 시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제78조의2제2항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 포함)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78조의2제4항)

- (전파법) 적합성 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적합성평가고시 제27조)

(2)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김성태 의원 사업법 개정안, '18. 2월)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 처리**

- 이용자 불만을 즉시 처리하고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및 시정 조치·과징금 부과 가능
- 국내대리인의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부과 가능
- (박선숙 의원 사업법 개정안, '18. 7월)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 처리
 -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가능
- (박대출 의원 위치정보법 개정안, '18. 3월) 국내대리인은 허가 등의 신청 및 사업 등의 신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대리
 - 국내대리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주요 쟁점

- 핵심 쟁점은 국내대리인 제도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한미 FTA 상 현지주재(local presence)* 조항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임

* 한미FTA 제2.5조(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한미FTA 제12.2조(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 국내대리인에게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자기 책임 원칙 위반이라는 견해 존재
-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면 물적·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 위반이라는 견해 존재
-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이라는 견해 존재

나. 해외 현황

- (EU GDPR)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가 유럽 연합 내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유럽연합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함(제27조제1항)
 - (대리의 범위)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처리자·수탁처리자와 함께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착수 하도록 규정(제27조제4항)
 -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할 의무
 - 감독기관은 대리인에게 범위반행위 조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음
 - (대리인의 책임)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보 처리자·수탁처리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정보 처리자·수탁처리자에 한정

※ 유사 해외 입법례는 유럽연합의 GDPR 외에는 찾기 어려움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글로벌 CP

- (자기책임원칙 위반) 국내대리인이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 위반 소지
- (한미 FTA 위반) 국내대리인이 물적·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 위반 및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될 소지
 - (현지주재 위반)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의무, 금지행위 관련 사실 조사 의무 등 각종 법상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국내에 대표사무소 등을 설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
 - (내국민대우 위반) 국내 동종 부가통신사업자와는 달리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해외사업자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 높음
- (이용자이익 침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국내 이용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규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막거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을 국내대리인 도입을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비용에 전용할 가능성 존재

나. 국내 CP

- (자기책임원칙 위반) 해외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높음
- (실효성 미비)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 국내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영세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추가 규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국내대리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해외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정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 사실조사의 경우에도 국내대리인의 서류·자료만으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임

다. 통신사

-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와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 다만,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부과하고, 국내대리인은 법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소명 등 규제기관과의 연락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국내 영향력이 미미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여 행정력 낭비와 혁신 저해를 방지할 필요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자기책임원칙 및 통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에게 절차적 의무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
- 또한, 국내 영향력이 미미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뉨
 - * 한미 FTA 제23.1조(일반적 예외)에 의해 준용되는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의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
 - 진입규제(허가·신고) 등 전기통신사업 전반을 관여하는 사업법의 성격상 한미 FTA 현지 주재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많았으며,
 - 한미 FTA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조사관련 자료 제출 의무, 규제기관과의 협조 등 EU GDPR 수준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시

4. 임시중지 제도 도입

■ 논의 배경

-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규제기관에 협조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집행력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 '17.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이 게시된 텀블러에 대해 불법콘텐츠 대응 협력을 요청 하였으나, “텀블러는 미국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이고,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거부
 - 협의회 운영 중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정책을 알림('18. 12. 4일)
 - 이에 이용자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조치 도입의 필요성 제기

■ 법제도 현황

가. 입법례

- (표시광고법) 표시·광고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고,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
 - 공정위는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8조제1항)
 - ※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상의 임시중지를 명한 사례는 2건으로 파악됨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사업자·통신판매업자의 범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

-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32조의2제1항)
- 또한,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의무제공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32조의2제2항)
- ※ 공정위는 청약철회 방해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어썬에 대해 본 의결이 있을 때까지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17. 10월)

나.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변재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8. 2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휴·폐업으로 연락 불가능 및 이용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서비스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 호스팅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의무의 제공 중단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김경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8. 9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주요 쟁점

- 임시중지 명령과 같은 행정상 즉시강제 발동에 있어 그 요건과 행사범위*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
 - *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불법정보의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은 즉시 삭제·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임시중지 제도 도입 필요
 - 그러나 이로 인해 사업자 및 정상 이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상당한 피해를 비교형량하여야 함

- ※ 사업자가 연락 불가능하여 국내관할권을 무시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외에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논란 존재
- 또한,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해당 서비스만 분리하여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필요성 제기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국내외 CP

- 헌법상 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실효성 미비
- (최소침해 원칙 위배)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서비스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 위배
 - 기본권 침해가 덜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
 - *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개인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법익 균형성 위배) 얻고자 하는 공익이 불확실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월등하게 큰 상황임
 - 현행법 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임시중지제도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적음
 - 반면, 서비스가 중지되면 유사서비스로 쉽게 대체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다수의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됨
- (실효성 미비) 국내망을 차단하여도 우회 접속, 대체사이트 개설 등이 가능하여 임시중지 제도의 실효성 여부가 의문스러움
 -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서비스만을 분리하여 차단이 가능한지 여부도 의문임

나. 통신사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중지 제도의 개선·보완 필요**
 - 이용자 피해가 명백한 경우나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중지 처분을 내린다면, 영업의 자유 제한이나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임시중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다는데 공감
 - 텀블러 사례 등과 같이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무시하면서 서비스 제공할 경우** 임시중지 명령 필요
 - **(발동요건)** 인터넷을 통한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받는 **사업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함
 - ※ 표시광고법상 임시중지 명령이나 단말기유통법상 긴급중지 명령과 같이 명백성, 긴급성 및 필요성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적용대상)** **불법적인 정보·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중지명령** 집행할 필요

■ 향후 과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방통위가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 '18. 9월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방통위의 접속경로 차단 요청권 규정
- 임시중지명령 등의 **발동요건 및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5.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 논의 배경

-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자는 해외 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실무상 각종 허가·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사 명의로 아닌 국내 자회사 명의로 허가·신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사업자인지 혼란을 야기하고, 규제기관이 실제 법 집행 시 규제 대상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 발생
- 이에 허가·신고 명의로와 실질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각종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과 이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 법제도 현황

가. 전기통신사업법

- (관련규정) 국내에서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 미신고 상태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서비스 제공 중지 명령 또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음
- (현황) 해외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행정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 * 구글코리아('06. 4. 18), 애플코리아('10. 8. 11), 넷플릭스코리아('16. 1. 14) 등 부가통신사업 신고(페이스북코리아는 미신고)
 - '16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외국 법인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가능해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절차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아직 외국 법인의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쟁점) 신고 서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자가 본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국내 자회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나. 타법례

-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공정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신고절차 측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어 외국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기 어렵고 **자회사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
 - * 외국 법인의 통신판매업 신고 사례는 알려진 바 없음
 -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18. 11. 9일)은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 (위치정보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하거나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방통위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외국 법인이 허가 신청·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 해외 사업자인 우버가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형사고발('15. 1월)이 이루어지자 우버가 본사 명의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15. 3월)를 하였고, 이후 다수의 외국 법인의 신고가 수리됨
 - '18. 6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신문법) 인터넷포털 등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의 뉴스를 계속적으로 제공·매개하는 것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필요
 -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하여야 하므로 해외 사업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에 제한이 있음
 -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기사배열책임자**에 대한 **국적요건(대한민국 국민)**이 규정되어 있어 해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글로벌 CP

- 현재도 문제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 규제기관이 외국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신고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 신고제도 완화 시 사업자 규모보다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

나. 국내 CP 및 통신사

- 의견 없음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해외사업자는 본사가 직접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법령상·실무상 장애를 제거하여 관할권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
 - 국내 자회사 명의로 허가·신고 시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어려운 국내 자회사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다만, 해외 사업자의 허가·신고 명의 일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다수의 **진입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출 필요**
 -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제의 경우 그 존치 여부 또는 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 신고제 폐지 또는 신고 면제기준 현실화(예: 이용자수) 등
 -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시 우선 시정을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제재수단이 과도하여 규제기관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실질적 규제집행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

■ 향후 과제

- 진입규제로서의 신고제 폐지 또는 완화 방안 검토 필요(과기정통부 및 타 부처 협의)
- 신고제 유지·완화 시 해외사업자가 본사 명의로 신고하도록 행정해석 및 관행을 명확히 할 필요(과기정통부 및 타 부처 협의)
 - 정부부처 간 연계·협력 하에 각종 인허가·신고 등을 본사 명의로 하도록 일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6. 국제 공조체계 구축

■ 논의 배경

- 해외사업자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조사·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집행하고자 하는 국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이 최선
 - 또는, 해외사업자의 동일 행위에 대해 조사·제재하고자 하는 국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집행 실효성 강화 가능
- 또한, 집행하고자 하는 특정 법규가 인터넷에 대한 비규제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고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내 인터넷 규제의 국제 규범화 및 국제공조 모색 필요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 (공정거래법) 정부는 외국정부와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음

-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제36조의2)
- 또한, 각국 공정거래 규제기관들은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이라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그 해 각 국가의 현안 검토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나. 해외 현황

- (EU)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와 각국의 규제기관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GDPR 제50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U 법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메카니즘 개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집행 시 국제 상호 지원: 통지, 민원 전달, 조사, 지원 및 정보 교환 등 다각적 조치
 - 관할권 상충 문제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실무의 교류와 문서화 증진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국제적인 관계에서 집행력 약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무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국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시
- 해외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기관이나 분쟁 해결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 등과의 실무급 협력체계 구축

■ 향후 과제

- (법령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의무 부과, 상호 지원 등 법적 근거 신설
- (실무 공조체계 구축) 해외 규제기관과의 정기적 공동 포럼 개최, 실무진 파견 등 교류 추진

- ◆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방안으로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인터넷 시장 사후규제체계 개편 등에 관하여 총 3차례(제4차~제6차) 논의 진행
 - 시장현황 파악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 등 논의
 - 사후규제 개편 방안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강화를 반영한 사후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논의

1. 개요

- **현행 통신사업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여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인터넷 생태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음
- 이에 인터넷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현황 파악 방안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

2.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 논의 배경

- 인터넷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새로운 경쟁 이슈와 이용자보호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시장 현황 파악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 실태와 매출액, 점유율 등 **기본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으로 자료 분석의 범위 및 심도에 따라 경쟁 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 등이 제시되어 검토 필요

※ (경쟁상황평가) 관련시장의 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를 통해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 사업자 식별, (실태조사) 전반적 시장 현황 및 이슈 분석, (통계보고) 매출액, 가입자수 등 기본 현황 파악 및 변화 동향 모니터링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입법례

- (전기통신사업법 실태조사) 협의회 운영 중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18. 12. 7일, '21. 1. 1일 시행)
 - 과기정통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할 의무 부과
- (정보통신망법 실태조사)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권한 설정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 존재('18. 6. 12일 공포, '18. 12. 13일 시행)
- (공정거래법 실태조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3조)에 의거하여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장구조를 조사·공표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18. 11. 27일)은 시장구조의 조사공표 외에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
 -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제22조의2), 대규모유통업법(제30조), 가맹사업법(제32조의2), 대리점법(제27조의2) 등에 의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재규정(과태료)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통계보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별 시설 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통계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제88조제1항)
 - 부가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사업은 각각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사업에 속하므로,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사업자도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통계를 과기 정통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고대상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제공의무는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고(제58조제1항), 실제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계를 제출받지 않고 있음

〈 현행 통계보고 관련 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시행령 제58조(통계 보고)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시설 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교환시설·전송시설·전원시설 등
 2. 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 건수 등
 3. 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서비스별·시도별·통화권별 가입자 수 등
 4. 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시도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통화량과 그 밖에 설비 제공 및 상호접속 관련 정산 자료 등
 - 4의2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기술방식별, 기간별 및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등
 5. 회계 관련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별정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2)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경쟁상황평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하여만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실시

※ 김성태 의원('17. 10월, '18. 2월, '18. 7월), 신경민 의원('17. 11월), 오세정 의원('17. 6월) 대표발의

- (통계보고) 통계보고 의무사업자를 기간·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보고 의무* 부과(김성태의원 대표발의, '18. 7월)

*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역무별 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별도 규정 신설

-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종류에 광고 수익 추가(김성태의원 대표발의, '17. 10월)

(3) 주요 쟁점

- (경쟁상황평가) 시장의 경쟁 상황을 일정한 분석(구조-행위-성과) 틀로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부가통신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규제목적상 필요한지 여부와 가능한지 여부

- (필요성) 경쟁상황평가 도입 취지가 대규모 망 투자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연독점화되는 기간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사전규제에 활용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 진입장벽이 낮은 부가통신시장에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 존재

- 또한, 경쟁상황평가는 사전규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

- (가능성) 부가통신서비스는 주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양면시장으로 일반적 시장 획정 기법(SSNIP test*)을 사용할 수 없어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

* SSNIP test란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 인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수요대체성 여부 판별하여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분석 기법

- (실태조사) 법 위반의 의심 없이 단지 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성격의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할 경우 비례 원칙 위반 우려 제기

- 영업비밀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 대상으로 하거나, 제재규정을 통해 협조를 강제할 경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통계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합한 보고대상 통계를 설정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 법 개정을 통해 통계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견해 등 존재

나. 해외 사례

- (경쟁상황평가) 대다수 국가에서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법 상의 경쟁 상황평가를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 부가통신서비스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및 융합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경쟁상황평가 미실시**
 - EU에서도 통신부문에서 가능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현재 통신법상의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는 사전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통신시장***은 4개**로 축소하여 운영
 - * 높고 지속적인 진입장벽, 유효경쟁의 부족, 경쟁법의 불충분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일정한 의무 부과
 - ** 개별 유선전화망에서의 착신, 개별 이동망에서의 음성 착신, Wholesale local access/ Wholesale central access 및 Wholesale high-quality access
- (실태조사) 해외 **통신규제기관**이 사전규제보다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 조사한 사례가 있음
 - 미국은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경쟁 보고서에 상류 및 하류시장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 바 있으나, **경쟁상황의 모니터링 성격이 강함**
 - 영국 등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은 앱 시장 등 변화한 통신시장의 환경을 고려한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추세**

<해외 통신규제기관의 부가통신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구분	분석명	부가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주요 분석자료
FCC (미국)	Mobile Wireless Competition Reports ('10~'14년)	점유율, 이용 가능 앱 수 등	외부자료
Ofcom (영국)	Communications Market Report('04년~)	이용자 그룹, 앱 유형, 사업자별 이용률 등	자체 개발 App
총무성 (일본)	경쟁상황 평가 ('11~'12년)	유형별 점유율 등	외부자료 및 자체 설문조사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대형 CP

- (경쟁상황평가) 부가통신시장은 진입장벽이 없어 공정경쟁 이슈 발생 가능성이 적고 피해 사례 발생 시 사후규제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경쟁상황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입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성 낮음
 -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어 국내사업자 역차별 가중
- (실태조사) 매출액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음

나. 중소 CP

- (경쟁상황평가) 경쟁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상황평가 도입이 필수적인지 의문임
- (실태조사) 현재 '경쟁상황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실태조사 수행 중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필요

* (사례1) 과기정통부는 '10년부터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부가통신시장의 이슈 분석
 (사례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매년 '인터넷 백서'를 통해 인터넷서비스 관련 시장 조사
 (사례3) 방통위는 올해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매년 추진

- 하지만 법으로 사업자에게 강제적인 자료요구를 하는 수준의 실태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음

다. 통신사

- (경쟁상황평가) 초융합되는 ICT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하여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
 - 주요 해외사업자를 포함하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간의 대체관계와 영향력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평가
 -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이론적 연구를 참고하여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 방법론 개발
- (실태조사) 경쟁상황평가의 즉시 실시가 어렵다면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 확보하고, 이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경쟁상황평가 실시

라. 신문협회

- (경쟁상황평가)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은 인터넷뉴스,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으므로,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포털)를 포함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거나 행정규칙을 제정해야 함
- (실태조사) 경쟁상황평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 근거(강행규정)가 없다면 자료 제출이 보장될 수 없을 것임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으로 시장현황 파악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우선은 경쟁상황 평가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
- (경쟁상황평가) 기간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대상·수단 검토에 활용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부가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는 향후 시장상황 및 규제집행력을 고려하여 확대 여부 검토
 - 부가통신서비스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경쟁상황평가가 혁신을 저하시킬 우려
- (실태조사) 전반적인 시장현황 뿐만 아니라 사후규제가 필요한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도 포함될 필요
 - 공정거래법과의 차별성을 위해 EU 사례를 참고하여 B2B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B2C 이슈를 중심으로 실태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 실태 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처음에는 제재규정을 두지 않는 등 단계적 접근 가능
- (통계보고) 통계보고 관련 규정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등 통계보고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 ※ 다만, 중소기업·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의무대상자 제한 필요
 -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에 적합하도록 통계보고 양식 개선, 방통위에 대하여도 통계보고 의무 부과 등도 제시

3. 인터넷 시장 사후규제 체계 개편

■ 논의 배경

-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사후규제체계는 망 사업자의 일방적 우위에 따른 타 사업자에 대한 경쟁저해행위 및 이용자이익 침해 가능성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 망 사업자의 일방적 우위는 악화되고 부가통신사업의 위상 및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 제기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수범주체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에 해당
 - 현행 금지행위 규정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제한적*
- * (사업법) 이용자이익저해행위(제50조제1항제5호 후단), 중요사항 미설명·미고지(제5의2호), 모바일 콘텐츠 거래 시 수익배분 거부·제한(제7호) 등
(시행령)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는 불합리·차별적 조건·제한 부과(5.사.4), 선 탑재 앱 삭제 제한(5.사.3), 광고와 정보의 미구분(5.사.5), 광고 삭제 제한 (5.4.6)) 등
- (공정거래법)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능
 - 시장의 동태적 경쟁을 고려하여 관련시장 획정 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며,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효과 평가 시에도 다면적인 시장 성격, 시장의 혁신성 및 동태성 고려
 - ※ (적용사례1)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위의 관련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 (적용사례2) 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지만, 오픈마켓 시장의 동태성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

나. 해외 현황

- (미국) 통신법 상 정보서비스에 적용되는 Title I에는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Title II와 달리 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행위 의무 규정이 없음
 - FCC는 전통적으로 정보서비스에 대하여 비규제적인 입장

-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FCC의 규칙 제정 권한을 활용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근거 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FCC는 '10년 제706(a)조에 근거하여 망 중립성 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제와 투명성 규제를 포함하였으나,

- 연방항소법원은 제706(a)조는 투명성 규제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제의 근거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14년)

● (EU)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사업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표('18. 4월)

* 온라인 상거래 오픈마켓, 온라인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 온라인 소셜 미디어, 온라인 광고 플랫폼 등

- 자율규제 또는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입법조치

- 주요 내용은 검색결과에서 사업이용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기준 설명 의무, 자사·자회사 서비스 우대에 대한 설명 의무, 거래중단·종료 시 이유 설명 의무 등으로 거래조건 투명성 강화*에 초점

* 투명성 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과도한 규제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

■ 관련 쟁점

● 인터넷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증대를 반영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혁신을 저해하고 중복규제에 해당하며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 대립

- (규제 개선 필요)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규모 및 위상 증대에 따라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법 상 규제근거 부재

- (혁신 저해 및 중복 규제) 인터넷 시장 경쟁의 역동성과 기술 변화에 따라 선부른 규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미 타법들에 의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규제만 양산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국내외 CP

- (혁신 저해)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규제는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것임
 - 부가통신시장은 진입규제가 없어 무한경쟁 상태의 동태적 시장*이므로 진입 차단된 기간통신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 * 부가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포털의 사업영역 및 수익모델은 매우 다양하여 동태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KISDI, '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 (중복 규제) 공정거래법 등 규제가 가능한 타 법령들이 이미 존재하므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금지행위 규제 개편은 과도한 중복규제임

나. 통신사

- 기존 전기통신사업 관련 규제는 기간통신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장의 중심이 부가통신사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의 보완 필요
 -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 유형 세분화,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 기간-부가통신사업 간 규제형평성 확보 필요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따른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
- (공정 경쟁 보호) 현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개선 필요
 - (현행규제 구체화) 앱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규제 명확화, O2O 등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非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명확화 등
 - (규제 보완)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등

- (이용자 이익 보호)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적절한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 필요
- (금지행위 대상사업자 확대) 신고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제공자*도 포함

* 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금지행위 수범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으로 개정 필요

-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규제대상에 OS를 명확히 하고 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다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닌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

- 갈라파고스 규제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심화시킬 우려 있음

■ 향후 과제

- 다양하게 제시된 금지행위 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방향에 관하여 총 3차례(제1차~제3차 회의) 논의 진행
 - 망 중립성 원칙 재정립 필요성 여부 논의
 -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여부 논의

1. 망 중립성

■ 논의 배경

- '17. 12월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5G 망 투자 및 혁신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제기
 - ※ EU에서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G 관련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18년 말 이를 반영한 평가 보고서를 유럽이사회에 제출할 예정
- 이에 현행 망 중립성 원칙이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에 충분한 명확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재정립 필요성 및 재정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 논의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사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가이드라인* 2건 제정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11. 12월, 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13. 12월, 이하 '트래픽 관리 기준')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및 관리형 서비스 허용 등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투명성)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범위·조건·절차·방법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
- (차단·차별금지)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장치의 차단 금지 및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트래픽 관리)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 (관리형 서비스)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 제공 가능

- (트래픽 관리 기준)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 유형,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의무 등

〈 트래픽 관리 기준 주요 내용 〉

-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투명성, 비례성, 비차별성, 망의 기술적 특성 등
-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 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등

(2) 사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령)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조건의 부당한 부과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망 중립성 위반행위 중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익 침해 시 규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사.4) 및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방통위 고시 제2017-04호)

–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직접적 규제근거 미비로 약관 위반 또는 이용자 차별 등으로 규제*했으나, 다양한 위반행위를 모두 포섭하는데 한계 존재

* KT가 이용자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 및 단말기 제조사를 기준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로 규제('12년)

- (공정거래법) 망 중립성 위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포함, 제23조) 해당 시 규제 가능

(3)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유승희 의원) 원칙적으로 트래픽 차단 및 불합리한 차별 금지 ('16. 9월)
 -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과부하 등에 따른 혼잡으로부터 다수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 ※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관리정보의 제공 등)
 -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트래픽 차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차별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
- (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자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용자의 일상적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8. 7월)

(4) 주요 쟁점

- 5G 도입을 앞두고 망 투자유인 제고 및 혁신서비스 촉진을 위해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망 중립성 완화 시 통신사에 과도한 권한 부여, 통신사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 혁신서비스 위축 우려 등으로 반대 견해 대립
- 통신사의 5G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투자 예상액·투자여력 등 입증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 대립
 - 또한, 망 수익을 이용자뿐만 아니라 CP에게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CP는 이미 상당한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견해 대립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특화서비스 제공 시 망 중립성 위반 우려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5G 특성과 망 중립성이 양립가능하며 망 중립성 원칙으로 지속적 혁신이 가능했다는 견해 대립

*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각각의 슬라이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

- 현행 망 중립성 원칙 하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특화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보고 예외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 존재

나. 해외 현황

(1) 미국

- (망 중립성 원칙 폐지) '17. 12월 FCC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인터넷 자유 복원(Restoring Internet Freedom) 규칙 확정('18. 6월 시행)

* 광대역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망중립성 정책실패 선언

- ISP를 다시 통신법 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여 투명성 원칙 외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FTC에서 사후규제
- 다만, 투명성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차단/전송지연/대가기반 우선처리에 대하여도 정보 공개 의무 부과

- (기존 망 중립성 원칙) '15.2월 FCC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 ('15. 7월 시행)

- 연방항소법원의 舊 망 중립성 원칙 무효화 판결('14년) 이후 ISP를 통신법 Title II 통신서비스로 편입하고, Common carrier 규제* 적용

* 차단 금지(No blocking), 전송지연 금지(No Throttling),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No Paid Prioritization), 사후규제를 위한 일반행동규칙(인터넷 이용 부당간섭·부당불이익 제공 금지), 기술적 트래픽 관리 허용, 투명성 등

- 망중립성 규제는 공중인터넷(최선형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망을 이용하지 않는 특수 서비스(specialised service)*는 제외

* IPTV, 심장박동모니터링, Facility-based VoIP, 에너지 소비센서, 차량 텔레매틱스 등(우리나라의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 변화]

구분	2010.12	2015.2	2017.12
망중립성 원칙 변화	Transparency	Transparency	Transparency
	No Blocking	No Blocking	×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No Throttling No Paid Prioritization	×
규제 권한	Title I (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	Title II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Title I (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

- (최근 동향) 망 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입법, 소송, 논쟁 등 지속
 - (연방의회) 상원은 인터넷 자유 복원 규칙의 효력 발생 중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18. 5. 16), 하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효되지 않음
 - (주 정부) 망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법 또는 집행명령을 제정*하거나 논의 중에 있음
 - * '18. 3. 15일 워싱턴주가 처음으로 망 중립성 주법을 제정한데 이어 오레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에서 법률화되었고, 6개 주에서 집행명령 제정
 - 美 법무부는 “정보서비스인 인터넷엑세스서비스는 주간(interstate) 서비스 이므로 연방법 적용을 받는다”며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 소송 제기('18. 10. 1)
 - (민간) 인터넷기업들은 FCC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원에 소송 제기*('18. 2. 22), 통신협회 등**은 버몬트주의 망 중립성 법안 무효소송 제기('18. 10. 18)
 - * 22개 주 정부 및 콜롬비아특별행정구도 합류
 - **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미국케이블TV협회(NCTA), 미국이동통신협회(US텔레콤), 미국케이블사업자협회(ACA) 등 4개 협회

(2) EU

- (법제화) 망 중립성 관련 규정이 포함된 「단일통신시장법」 제정('15. 10월)
 -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차별·제한·방해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예외적인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투명성 등

* 주요 요건은 투명성, 비차별적·비례적 관리, 트래픽 범주별 객관적으로 상이한 품질 요건에 근거, 특정 콘텐츠 모니터링 금지,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지 등

** EU 및 회원국의 법령 준수, 망의 보안성 확보 및 일시적 망 혼잡 해소를 위한 경우

- ISP 및 CP는 특정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특수서비스* 제공 가능

* 공익적 서비스, 신규 M2M 서비스 등(가이드라인에서는 VoLTE, IPTV, 실시간 헬스서비스 등)

- 주요 요건은 인터넷엑세스서비스 외에 특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 워크 용량이 충분할 것, 인터넷엑세스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닐 것, 인터넷 액세스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등

● (가이드라인 제정) BEREC,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16. 8월)

- (합리적·예외적 트래픽 관리의 차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예외적 트래픽 관리와 달리 차단·지연·차별 등 금지

- (특수서비스와 트래픽 관리의 차이) 특수서비스는 특정 품질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화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반면, 트래픽 관리에서 범주별 상이한 품질요건 적용은 전체적인 전송 품질의 최적화를 위해 허용

- (최소품질 규제) 최소품질 요건을 기능적·질적 요건(전송품질의 적정성 등) 및 기술적·양적 요건(전송속도 초당 x bits 등)으로 구체화

● (최근 동향) BEREC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G 도입에 대비하여 망 중립성 규제 방향에 관한 의견* 수렴 중('18. 3월~)

* 5G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시 충분한 유연성 제공 여부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 채택 시 충분한 명확성 제공 여부 등

- BEREC, '18년말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유럽이사회에 제출하고, '19. 4월말 유럽이사회에 망 중립성 평가 완료 예정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통신사

망 중립성 정책 유지 시 5G 망 투자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완화 필요

※ 망 중립성을 주도해 온 미국의 주요 원칙 폐기는 시대에 따른 정책적 유연성과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강조한 것임

- (망 투자 제고) 5G의 비즈니스 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신사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CP에게 망 이용료 부과 등 합리적 비용분담을 위해 망 중립성 완화 필요

– 연평균 7.1조원의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폭증하는 트래픽* 수용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시장이 포화되어 수익 창출과 산업 성장에 한계

* 최근 5년간 데이터 트래픽(LTE 기준) 약 11배 증가('12년 2만7천TB→'17년 31만TB, 과기정통부)

<통신4사의 CapEx 추이>

(단위: 조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평균
투자비	6.5	6.4	7.7	8.7	7.8	7.5	6.3	6.3	7.1

출처: 사업자별 IR 자료

[ICT 서비스별 연간 매출액 및 무선트래픽(매년 12월) 추이]



주: “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은 광고제공, 검색 등 정보매개, 게임, 영상/뉴스/디지털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국내매출이 정확하지 않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CP 매출 반영시 현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

출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통신사가 이용자 요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형 CP로부터도 망 투자 비용을 분담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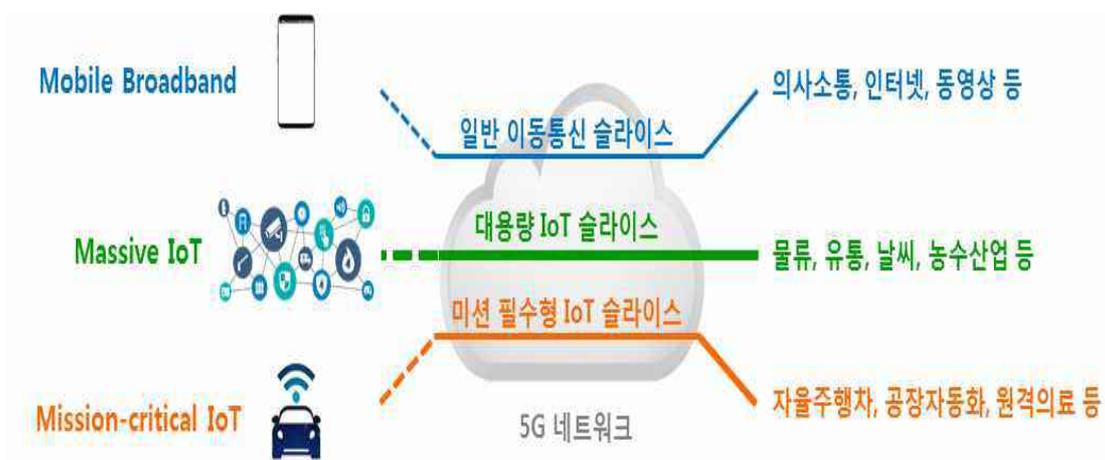
※ 이용자 요금은 30조원, CP가 지급하는 비용은 2~3천억원 수준으로 CP가 부담하는 비용은 1% 이하에 불과

- 한편, CP들은 통신사가 IPTV 등에서 매출이 급성장하여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미디어·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신사의 사업 관련 내용으로 망 중립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법에 의해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혁신서비스 촉진)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상품별 요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망 중립성 규제 유지 시 혁신서비스 출시 저해

※ 관리형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선언적인 수준으로만 언급되어 있으며, 관련 기준이 모호하여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상황임

[네트워크 슬라이싱 개념도]



출처: 사업자 제출자료

● 이에 관리형 서비스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확대하고, 대가기반 우선 처리(Fast Lane)도 통상적 품질요구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허용하며,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트래픽 지연·차단 허용 필요

나. 대형 CP

망 중립성 규제를 통해 네트워크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동등 경쟁환경 조성에 중요

※ 미국의 망 중립성 완화는 인터넷 속도가 낮고 지역이 광활하여 통신사의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와 상황이 다르며, 최근 주별로 망 중립성 강화 추진

- (5G 투자비 논란) 5G 투자비는 다양한 비용 절감요인들*로 인하여 LTE 투자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비슷한 수준 예상**

* 기가비트 LTE와 스몰셀, 빔포밍, MIMO 기술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전국망 기지국 설치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것이며, 최근 필수설비 공동활용·공동구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최대 1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일본(NTT DoCoMo), 독일(Deutsche Telekom), 미국(Verizon) 등은 망 투자비가 LTE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보다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

- (망 투자여력 논란) 통신사가 인터넷·이동통신 ARPU 감소추세를 강조하나, IPTV* 등 미디어분야에서는 매출 급성장하여 5G 투자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 IPTV는 연 30% 가까이 성장하며 '16년 케이블방송 매출액(2조 1,700억원) 추월, '17. 11월 말에는 가입자 수(1,422만281명)에서도 케이블방송 추월

- 통신사는 통신서비스에 여러 미디어·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판매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SKT: 모바일 IPTV '옥수수'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888만명), 월 순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610만명)

KT :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와 연계한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미디어콘텐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5,617억원)

LGU+: 홈미디어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11.6% 증가, 'U+TV 아이들나라'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IPTV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분석 있음

- 통신설비 투자가 효율적인지, 망 투자비 외에 원가를 상승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등 원가 공개를 통한 입증 필요

- (콘텐츠 투자유인 위축 우려) 통신사는 CP의 콘텐츠 개발 투자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CP에게 망 투자비용 분담 요구는 모순됨
 - CP는 사실상 트래픽량에 비례해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가중되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IDC, 전용망, CDN 등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
 - * 전세계적으로 CP들은 매년 직간접적 인프라에 3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구글, 페이스북 및 야후의 경우 '11~'13년 매출의 9% 상당을 인프라에 투자(Analysys Mason, '14년)
 - 통신사는 우리나라의 망 이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원가 등 근거도 밝힐 필요가 있음
- (혁신서비스 촉진) 5G 기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인터넷접속서비스라는 속성은 유지되므로,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5G 뿐만 아니라 콘텐츠 혁신에도 기여
 - 자율주행자동차 등 초저지연이 필요한 첨단서비스는 AI 등의 기술과 융합되어 5G 환경이 아닌 지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음
- (통신사의 권한 남용 우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사가 CP에게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인터넷 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되어 왔음
 - 망 중립성 완화 시 통신사가 콘텐츠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변모하여 인터넷망 품질이 통신사와의 협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인터넷망이 이익 망으로 전락될 가능성 높음
-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위험) 통신사는 결합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지배력을 미디어·콘텐츠 시장에 전이하려 할 가능성이 높는데, 망 중립성 완화는 이러한 시도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
 - 통신사들은 일반적인 통신사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들을 네트워크 서비스와 마음껏 결합판매할 수 있는 통신사 고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다. 중소 CP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중요한데, 망 중립성 완화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망 중립성 규제 완화 시 통신사에게 망 관리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협상력과 자본이 있는 대형 CP만 살아남고 중소 CP는 퇴출될 우려
 - 통신사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 CP를 배제하는 기제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하에서 통신사들은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감시, 법제화 등을 검토할 필요
 - 특히,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Fast Lane 등 차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 확립 및 시장 감시 필요

■ 소위원회 논의결과

◆ 5G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① 현행체계(가이드라인)를 유지하는 방안, ②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③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뉨

① (현행 유지) 5G 기술 특성도 현행 망 중립성 정책의 일반원칙과 규제 틀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

- 현 시점에서 망 중립성 정책을 변경할 기술적·정책적 근거가 미약하며,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 필요
- 5G 도입 이후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생명·안전 관련서비스 등은 서비스 도입 상황에 따라 관리형 서비스 적용 검토

② (규제 강화) 현행 트래픽 관리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

* 망 혼잡 시 소수의 초대량이용자·대용량서비스 트래픽 제한 등 트래픽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는 현행 가이드라인 규정 개정 필요

- 5G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 망 중립성 원칙과 망 투자의 상관성 등이 입증되지 않음
- 오히려 망에서의 차별은 단지 트래픽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규제 강화 필요

③ (규제 완화) 망 투자·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CP 등 대형 사업자에게 합리적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망 중립성 원칙 중 투명성 원칙만 유지하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사후규제 강화
- 망의 일정 용량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CP에 한해 통신사의 전송지연 허용 등의 의견 제시

■ 향후 과제

- (데이터 기반 분석) 5G 구축에 필요한 투자액, 망 중립성 규제로 인해 망 투자가 저해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보 및 이에 근거한 분석 필요
 - 또한, 5G에서 망 중립성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예로 제시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진료 등의 신규서비스가 어떠한 망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

2. 제로레이팅

■ 논의 배경

- 통신사의 제로레이팅*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이용자 이익을 증진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 양립

* Zero-Rating,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데이터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행위까지 포함

- (규제 강화) 제로레이팅은 자금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CP에게 불리하고, 통신사가 자사·계열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크므로 규제 필요
- (현행 유지)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소시키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안별 효과를 평가하여 최소한으로 사후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 (국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공약집에 제로레이팅 허용 공약. 민주당 김경진 의원, 설문조사에서 제로레이팅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9.1%를 기록했다면서 찬성입장 표명

■ 제로레이팅 현황

※ 상세 분석은 붙임3 참조

- 이통3사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상품은 총 37종('18.7월말 기준)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 현황>

SK텔레콤	KT	LGU+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자사·계열사 비중) 콘텐츠 소유권 측면에서 자사·계열사와 제3자 비율이 45.9%와 54.1%로 유사한 수준

※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내비게이션의 경우 모두 이통사 자사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됨

<이통3사 사업자별 자사·계열사 제로레이팅 비중>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자사·계열사	6종	5종	6종	17종
제3자	7종	6종	7종	20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제공분야) '정보'(29.7%) 항목의 콘텐츠가 제로레이팅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오디오 스트리밍'(27.0%), '동영상 스트리밍'(16.2%) 순

※ 이통3사 모두 제공하는 '정보', '오디오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 '내비게이션' 항목의 제로레이팅 상품이 총 30종(81.1%)으로 대부분을 차지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분야>

구분	SK텔레콤	KT	LGU+	합계
정보	4종	4종	3종	11종
오디오 스트리밍	3종	1종	6종	10종
동영상 스트리밍	2종	2종	2종	6종
내비게이션	1종	1종	1종	3종
교육	-	2종	-	2종
쇼핑	1종	1종	-	2종
게임	1종	-	-	1종
웹툰	1종	-	-	1종
클라우드 스토리지	-	-	1종	1종
합계	13종	11종	13종	37종

- (부가 요금) 37종 중 20종(54.1%)은 무료이고,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은 17종(45.9%)

※ 데이터 제공량에 상한을 두고 있는 상품 대부분이 유료(월 5,000~9,900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부가요금>

구분	SK텔레콤	KT	LGU+	합계
무료	8종	7종	5종	20종
유료	5종	4종	8종	17종
합계	13종	11종	13종	37종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사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로레이팅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용약관 신고 시 모니터링 가능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등) 제로레이팅 관련 별도 규정 없음

(2) 사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의 부당한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에 근거하여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로레이팅 규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사.4] 및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7-04호)

-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포함, 제23조)에 해당하는 제로레이팅 규제 가능

(3)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김성태 의원 사업법 개정안, '18. 7월) 통신사가 직접 또는 사업자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할인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용자의 편익, 후생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

(4) 주요 쟁점

- (이용자 부담 경감) 제로레이팅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감소하나, 통신사·CP가 그 비용을 다른 이용자의 통신요금 인상, 콘텐츠 이용료 인상, 광고 증가 등으로 전가할 우려 제기
- (망 중립성 위반) 제로레이팅은 트래픽 관리가 없어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경제적 차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콘텐츠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견해도 존재
- (지배력 전이) 통신사가 자사·계열사 서비스에 유리한 제로레이팅 기준을 적용하여 통신시장 지배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전이시킬 우려
- (중소사업자 약화) 사실상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대형 CP만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중소CP·스타트업에게 불리하게 작용

나. 해외 현황

(1) 미국

- (트럼프 정부) FCC는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경쟁 촉진 등의 사유로 제로레이팅을 사전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FTC의 사후규제는 가능
- (오바마 정부) FCC 일반행위규칙*에 따른 사후규제 적용, 통신사의 자사·계열사 제로레이팅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 발표('17. 1월)

* 판단기준은 이용자 통제, 경쟁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보호, 혁신/투자와 네트워크 구축에 미치는 효과, 표현의 자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무관한 처리, 업계 관행 등

- 경쟁제한 우려는 봉쇄효과, 경쟁 CP의 비용인상 등 수직적 결합의 부정적 측면에 근거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FCC는 저소득층 요금 인하 등을 강조하며 별도 조치 없이 관련 조사 종료('17. 2월)

(2) EU

- (단일통신시장법) 이용자 권리가 제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고 사후규제 접근법 채택('15. 10월)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안별 판단하되,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부정적** 입장 명시('16. 8월)

*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정상처리되고 그 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

** 특정 애플리케이션에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범주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음

- 사후규제 기준은 망 중립성 규제 목적, 관련 ISP 및 CP의 시장 지위, 이용자 권리 제한, 행위 규모 및 대안 존재 등

- (가이드라인 적용) BEREC은 각국의 제로레이팅 사례 분석 후 가이드라인의 규제 기준이 충분하다고 평가('17. 12월)

- 트래픽 관리 포함 여부에 따라 사례들을 구분하고, 이후 모든 CP들에게
비차별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 트래픽 관리가 없고, 사실상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일조건 요구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통신사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사회적 후생 증대를 위해 제로레이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사안별로 판단하되 최소한의 규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배타적·차별적 제로레이팅도 경쟁 촉진 및 이용자 이익 제고가 가능하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최근 무제한 요금제 가입이 증가하여 제로레이팅의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약화**

- 또한, **중소 CP의 제로레이팅을 활용한 시장확대에 도움이 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

※ 미국 T-Mobile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Binge On'은 100여개 CP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1인당 동영상 앱 이용시간이 출시 2개월만에 16~52% 증가

- **(자사서비스)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은 데이터이용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쟁 CP에게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로레이팅을 제시하는 한 문제가 없음**

* 경쟁 CP에게 이용자의 요금이 면제되는 금액 이하로 제공

- 통신사가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전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 점유율: 유튜브(85.6%) > 아프리카TV(3.3%) > 네이버 TV(2.0%) > 비디오포털(1.9%) > 옥수수(1.3%) (와이즈앱, '18. 5월)

- **(계열사서비스) 경쟁 CP에게 계열사와 동등한 제로레이팅 조건 제시하면 허용 필요**

나. 대형 CP

- 제로레이팅은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결정될 영역이나, 통신사의 자사·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은 규제 강화 필요
 - 제로레이팅이 망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트래픽과 CP들을 공평하게 취급하면서 시행되어야 함
- (자사서비스) 통신사는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에 원가만이 소요되나 경쟁 CP들은 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엄격한 규제 필요
- (계열사서비스)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 시 계열사 우대 가능성이 높는데 사후 규제가 미흡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경쟁 CP에게 동등조건 제공 의무화 필요

다. 중소 CP

- 비용부담 능력 및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CP는 제로레이팅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왜곡
 - 통신비 인하는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특정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고착(lock-in) 강화
 - 제로레이팅으로 가계통신비는 감소하더라도 기업통신비가 증가하고 기업 통신비는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되므로 통신비 절감효과가 없음
 - 통신사가 스타트업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지원하는 시혜적 정책보다는 망이용료의 하락을 통한 보편적 정책이 타당
- (자사·계열사서비스) 통신사는 자사·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 시장 경쟁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 존재
 - ※ SKT 고객의 47.7%, KT 고객의 45.9%, LGU+ 고객의 47.5%는 통신사 자사계열사의 OTT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 중(미디어오늘, '16. 12. 10)
 -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차단할 필요

■ 소위원회 논의결과

◆ 제로레이팅에 대해 ①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 ②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으로 견해가 나뉨

① (사후 규제) 제로레이팅은 통신사·CP의 마케팅 수단으로 기능하여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이익이 증가하므로, 모든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

- 특정 CP에 대하여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거나 CP 간 차별적 조건을 부과더라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사안별로 판단하여 사후규제
- 다만, 제로레이팅의 대상, 조건, 이용자 규모 등에 대한 정보 공개의무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

② (조건 부과) 동등조건 의무화,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또는 동등조건 의무화 등 제시

- (동등조건 의무화) 특정 CP에게만 제공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P에게 동등 조건 제공 의무화 필요
-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통신사의 지배력이 전이될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하거나, 허용 시 다른 CP의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 동등조건* 제공 의무화 필요

* 동등조건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용요금, 도매요금 등으로 견해가 나뉨

◆ 망 이용료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총 3차례(제4차~제6차 회의) 논의 진행

- 국내·외 CP 간, 대형·중소 CP 간 망 이용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논의

■ 논의 배경

- (국내·외 CP 간 차별) 네이버는 '17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가 국내법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수익만 챙긴다고 비판하면서 구글에 대해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
 - 이에 국회·언론 등은 통신사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등 글로벌 CP에게 국내 CP 대비 망 이용료를 낮게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등 차별한다고 지적
- (대형·중소 CP 간 차별) 중소CP·스타트업은 망 이용료가 CP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져 대형 CP에 비해 중소CP·스타트업의 망 이용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
 - ※ 중소CP·스타트업이 AWS(Amazon Web Services) 등 글로벌 CDN으로 이동
 - 다만, 그 이유는 망 이용료 때문이 아니라 AWS에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존재
 - AI, IoT 등 DT(Data Technology) 스타트업은 비용에서 망 이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비스가 성장해야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는 구조이어서 망 이용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 국내·외 망 이용료 현황

- 망 이용료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CP가 통신사의 모든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비용(예: 인터넷전용회선료, IDC 접속료* 등)을 총칭하여 논의

* CP가 통신사의 IDC에 입주한 경우 접속료 등의 명칭으로 망 이용료 부과

- 통신사 IDC 약관에서 KT는 '접속료'로, SKB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로, LGU+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이용료'로 명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망 이용료의 개별유형이 구분되지 않아 각각의 이용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가. 국내 현황

- (국내 CP)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각 통신사에 인터넷 전용회선료, IDC접속료 등 망 이용료를 지급하며, CDN 업체 등에도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짐

※ '16년 기준 네이버 734억원, 카카오 300억원, 아프리카TV 90억원 수준(서울경제, '18. 2. 19), 엔씨소프트, 넷마블게임즈 등 연간 약 100억원(동아 비즈니스워치, '17.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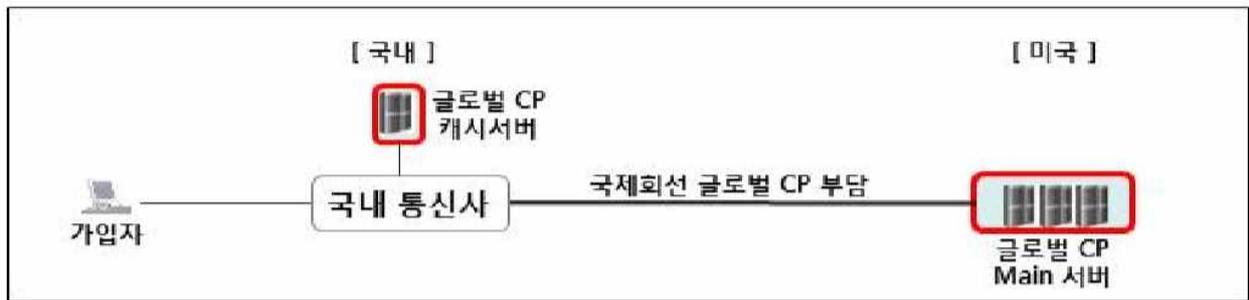
- 이에 대해 통신사는 망 이용료 기준에 부합하는 각 사의 정확한 수치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마다 금액이 다른 등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CP는 위와 같이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

- (글로벌 CP) '10년 이후 대용량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급증하여 글로벌 CP와 통신사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또는 아시아(일본, 홍콩 등)에 캐시서버를 설치하여 국내 통신사와 연동

- (해외연동 방식)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CP가 각자 peering 지점까지 연결하는 국제회선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고, 무정산 상호접속(free-peering)



- (국내연동 방식) 글로벌 CP가 국제회선 및 국내 캐시서버를 구축하고, 망 이용료(IDC접속료) 부담 또는 미부담



나. 해외 현황

- 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로 인해 통신사와 직접 상호접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접속은 자율협상으로 이루어지고 무정산 및 paid-peering(대형통신사) 사례가 병존

※ 이하의 사례는 글로벌 CP로 인해 무정산하던 통신사 간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여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통신사가 상대 통신사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글로벌 CP가 통신사와 paid-peering 계약 체결한 사례임

(1) 미국

- (Comcast v. Level3) Comcast가 상호 무정산하던 Level3와의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자 대가 지급을 요구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합의('13년)
 - 넷플릭스가 Level3와 CDN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Level3와 Comcast 간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여 Comcast가 Level3에게 대가 지급 요구
- (Comcast v.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Comcast, Verizon, AT&T 등과 상호접속 협정의 일환인 paid-peering 계약을 체결('14년)
 - 넷플릭스가 Full H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트래픽 지연 현상이 지속되자 Comcast 등에 직접연동하고 망 이용료 지급에 합의

(2) 프랑스

- (France Telecom v. Cogent) FT가 상호 무정산하던 Cogent와의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자 대가 지급을 요구하며 용량 증설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공정위('12. 9월) 및 법원('15. 5월)이 적법하다고 판단

- Cogent가 웹하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CP인 Megaupload와 트래픽 전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FT의 네트워크로 과도한 트래픽이 전송
- 공정위와 법원은 트래픽 교환비율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업계의 관행을 인정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 (구글) 1위 사업자인 Orange 망을 직접 연결하고 paid-peering 계약 체결 ('13년)
 - 기존에 구글은 글로벌 IBP를 통해 프랑스 ISP들에게 트래픽을 전송하였으나, 위 분쟁 이후 Orange와 직접 연동하고 대가 지급
- (넷플릭스) 구글과 동일하게 Orange 망을 직접 연결하고 paid-peering 계약 체결
 - ※ SFR, Bouygues Tel은 자사 망에 넷플릭스의 캐시서버 설치하고 망 이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Free는 협상 진행 중임

■ 주요 쟁점

- (국내·외 CP 간 차이) 망 이용료 차이* 및 서비스 고도화 차이**로 국내 CP의 경쟁력 저하 우려 견해와 국내외 CP의 상이한 비용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비교는 부당하고 게이트키퍼인 통신사 결정***이라는 견해 대립
 - * 트래픽 증가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있는 주체가 글로벌 CP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망 증설·고도화 비용이 국내 CP 및 이용자에게만 전가
 - ** 국내 CP는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망 이용료 부담도 증가하므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UHD, VR 등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가 어려울 수 있음
 - *** 통신사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근거로 국내외 CP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동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함
- (대형·중소 CP 간 차이) 정상적 대량구매 할인이라는 견해와 대량구매의 비용절감 효과를 상회하는 요금차별로 중소 CP·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부당한 비용전가를 발생시킨다는 견해 대립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통신사

- (국내·외 CP 간 차이) 글로벌 CP는 이용자의 자사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국내 통신사 간 경쟁 상황 등에 기인한 우월적 협상지위와 통신사의 국제망 비용절감 효과를 이용하여 망 이용료 미부과 요구
 - 글로벌 CP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 서버만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 통신사의 국제망 비용이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글로벌 CP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되지 않으면 통신사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높아지므로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
 - 또한, 통신사가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수단 등을 취하는 방법은 망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어려움
 - 이에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글로벌 CP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필요
 - * 페이스북은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여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 민원이 다수 발생
 - ** CP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CP의 법령 위반 또는 이용자 피해 우려 시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 부여(망 중립성 완화),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 등
 - 한편, CP들이 우리나라의 망 이용료가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아시아 평균 대비 낮은 편*이고, 사업자 간 계약 내용이 비공개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음
 - * 통신시장조사업체인 TeleGeography가 대륙별 및 아시아 국가별 망 이용료 비교('18. 6. 30)
 - 한국의 평균 망이용료는 \$9.22/Mbps로 아시아 평균(\$23.54/Mbps)의 40% 수준
- (대형·중소 CP 간 차이) 대량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등에 기인한 요금 할인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일반적 현상이고, **정당한 다량할인**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차별은 행하고 있지 않음

- '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후 중소 CP·스타트업의 망 이용료가 인상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인상 요구에 불과할 뿐 실제 인상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중소 CP·스타트업이 AWS로 이동하는 이유는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CDN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임

나. 글로벌 CP

- (국내·외 CP 간 차이) 국내 CP와 글로벌 CP의 서로 다른 비용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형평성 관점에서 실제 지급하는 비용을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통신사는 글로벌 CP와 협의 하에 캐시서버를 설치함으로써 국제회선 설비 증설 등에 들었어야 할 추가적인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지만, 국내 CP는 통신사의 비용 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
- 대부분의 글로벌 CP는 한국 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free peering으로 서비스 제공하나, 소수의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의 국제회선 비용 절감과 국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캐시서버 설치
 - 해외 대부분의 구간에서 트래픽 전송을 위해 글로벌 CP 부담으로 국제 회선을 구축해왔으며, 아시아의 나머지 구간에서 한국까지의 트래픽 전송을 위해 상호접속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통신사와 CP 간 차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맡고 있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비용만 일방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 통신사는 적극적 망 투자 조건으로 허가 받고 제도적 진입장벽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망 투자 의무를 CP들에게 전가할 수 없음
 - 통신사는 CP들이 구축한 플랫폼에 기반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나, CP의 콘텐츠 개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음

* CP는 망 이용을 촉진할 첨단서비스에 대규모 투자비를 집행 중이며, 이로 인해 통신사도 이익을 얻게 될 것이나, 그 비용과 위험은 전적으로 CP가 감당

- 글로벌 CP는 접속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유인이 통신사보다 더욱 큼
 - CP들의 서비스는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
- 최근 페이스북-SKB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책 환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일반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의 상호접속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이한 점에서 비롯됨
 - *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을 동등계위 ISP 간에도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체계
 - **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에서 ISP 간에는 통상 트래픽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 무정산 체계

다. 국내 대형 CP

- CP 간 망 이용료 차별이 있다면, 게이트키퍼인 통신사의 결정으로 초래된 것임
 - 통신사는 글로벌 CP와의 계약을 통해 국제회선 비용을 감축하고 있으므로, 통신사 주장처럼 일방적 니즈에 의한 계약이 아님
- 또한, 통신사 주장대로 우리나라 망 이용료가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이 아니라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통신사에 원가 공개를 요구함
 - * 글로벌 CDN 업체인 CloudFlare가 각국의 망 이용료 비교(' 16.8.17)
 - 서울과 대만의 중계 비용이 높은 편(유럽이나 북미의 15배 이상)이며, 한국은 망 이용료가 상승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

라. 중소 CP

-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망 이용료 인상 효과가 중소 CP·스타트업 및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CDN 등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망 이용료가 비싼 편임
 - 대형 CP는 협상력이 커서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나 중소 CP는 가격이 비싸고, 통신사-CP 간 비밀유지계약으로 가격조건 공개가 안 되고 있음
 - 통신사가 해외 CP에 대한 손실을 국내 CP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필요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망 공공성에 입각한 정책 수립 필요
 - 중소 CP·스타트업에 대해 망 이용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우대하는 가격정책 도입 필요

■ 소위원회 논의결과

◆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 다만, 현재 망 이용료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 망 이용료 차별 해소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실태 파악, 불공정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의견 제시

- (실태 파악) 구체적 정책 수립에 앞서 망 이용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선행될 필요

※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시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불공정행위 금지)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행위도 금지

- (가이드라인 마련) 망 이용료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정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예시 〉

- (성신헌상 의무) 통신사와 CP 모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계약체결 거부 금지
- (사전고지 의무) 접속경로 변경 등 접속품질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변경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 부과
- (망 이용료 산정 원칙) 직접적으로 망 이용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망 이용료 산정 원칙 선언

■ 향후 과제

- (법령 개정)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 통신사 등에게 망 이용료 관련 자료(계약의 상대방, 유형, 용량, 가격조건 및 실제 트래픽량 등)를 규제기관에 제출할 의무 부과 규정 신설 검토
 - ※ 프랑스 규제기관(ARCEP)은 상호접속 분야에서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통신사 등에게 6개월마다 자료를 제출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음('12년~)
- (실태 조사) 망 이용료 계약 및 트래픽량 등 현황을 점검하여 국내·외 CP 간 및 대형·중소 CP 간 형평성 있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파악
- (사후규제기준 구체화) 망 이용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판단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검토

- ◆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 간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하여 제5차 회의에서 논의 진행
- ◆ 사업자가 발표한 상생 협력 현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 제안

■ 논의 배경

- 글로벌 경쟁 시대의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상생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인터넷 기업의 동반 성장 필요성 제기
 - 글로벌 경쟁을 위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이종 기업 간 협업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과 도전과 창업을 유도하는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업의 특색에 맞춘 상생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선순환적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 필요성 제기
 - 특히, 중소CP·스타트업들이 망 이용료 부담으로 인해 소수 글로벌 CDN 업체로 이동하고 있어 향후 종속성 강화 및 협상력 저하 우려 제기

■ 사업자별 상생 협력 현황

가. 통신사

(1) SKT

- (Bravo! Restart) '13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년 창업 및 청년실업 해소 등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공헌사업
 - Biz 모델 검증 지원, R&D 지원, 자금 지원, 인프라 지원, 마케팅 지원, 멘토링 등
 - 에이티랩, 운동이 땀길 때 등 총 48개 팀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

- (Dream Venture Star)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14년부터 정부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
 - 자금 지원, 사업개발 지원, 기술 개발 지원, Growth 지원 등
 - '18년까지 총 29개 팀을 육성하여 누적 매출 164억원, 투자 유치 406억, 신규 고용창출 151명의 성과를 창출
- (101 스타트업 코리아) YT 중심의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 노하우 제공 및 국내 전문가의 멘토링/세미나 등을 지원('13년~)
 - VIP 멘토링, 스타트업향 세미나, VC 등 투자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개발 환경 지원, 커뮤니티 운영 등
 - '13년 1기 6개 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6개팀을 육성하였으며, 이 중 40여개 팀에서 약 480억의 투자 유치에 성공
- (True Innovation) 스타트업 등 다양한 외부 Partner와의 혁신창출 및 Biz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18. 2월~)
 - 멘토링, 국내외 파트너와의 교류, 글로벌 협업 공간 및 공동 마케팅 지원, IR/법무/세무 등 교육과정, Tech Clinic, CEO 모임, 데모 데이 등
 - 유라이크코리아 등 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진행
- (기타) 금융, 교육, 기술, 인력, 복지 지원 등
 - (금융 지원) 동반성장 펀드(규모 1,675억원)를 통한 대출 지원, 지분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17년 누계 417억원) 등
 - (교육 지원)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통한 CEO세미나 등 직급별 맞춤 교육, 110여개 온라인 과정 운영 및 신규 과정 지속 개발
 - (기술 지원) T developers, Thingplug 등 기술개발 Infra 무상지원, 민관 공동 기술개발,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한 파트너사 기술보호
 - (인력 및 복지 지원) SK고용디딤돌 운영을 통한 우수 인력 육성 및 채용 지원, Biz 파트너 임직원 대상 복지 지원(복지포인트, 장학금 등)

(2) KT

- **(Biz Collaboration 프로그램)** ICT기반 융복합 사업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 발굴하고, KT-창업기업 간 사업화, 공동개발 등 협업을 통해 육성
 -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벤처기업 중 VR/AR, AI 등 KT 신규사업 개발 및 협력 관련 분야에서 15개사 내외에 KT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특허 출원·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등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K-Champ 사업화 집중지원 프로그램)** K-Champ 육성기업 중 성과창출 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후속 지원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
 - '16~'17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벤처기업 중 15개사 내외에 시장전문가 1:1멘토링, 특허권,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3개월간)
- **(Biz Challenge 프로그램)**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집중 육성
 - 창업 1년 이내 법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10개사 내외에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글로벌 지원 등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5개월 이내)
- **(Biz Growth Marketing 프로그램)** 시장진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 발굴하여 원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판매 준비 활동을 지원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10개사 내외에 기업당 3,000만원 내외로 테스트마케팅, 시장조사 및 분석, 판촉활동 지원(5개월 이내)
-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 KT가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를 중소 기업·스타트업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11년~'17년까지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누적 293건의특허를 무상양도한 바 있으며, '18년에는 총 260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무상양도 프로그램 진행 중

(3) LGU+

- (CEO 간담회) '17. 6월부터 매월 테마별로 2~4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 사업부와의 협력 및 투자기회 제공
 - 27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하였으며, 10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 협력 추진
- (데모데이) 해외통신사, 스타트업 육성기관, 정부기관과의 공동 데모데이를 주관하여 당사 관계자 대상 발표 및 언론 홍보 기회 제공
 - (유플러스-KDDI-KOTRA 데모데이) '17. 7. 18일 공동 데모데이에서 70여개의 지원업체 중 최종 9개사를 선발하여 LGU+ 본사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사업부 협력 논의(6개사) 및 CEO 간담회(3개사)
 - (유플러스-본투글로벌 데모데이) '17. 10. 26일 공동 데모데이에서 150여개 B2G 멤버사 중 최종 6개사를 선발하여 LGU+ 본사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CEO 간담회(3개사) 및 사업부 협력 논의
-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국내 중소 디바이스·앱 개발사들이 손쉽게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오픈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Proof of Concept/상용화 지원
 - (운영현황) 상암 오픈랩(NB-IoT 통신모듈 및 개발보드 제공, LTE 테스트 단말 지원), 마곡 오픈랩(M2M, NB-IoT 시험망 테스트 및 장비 지원), 대전 R&D 센터 운영 중
 - (이용실적) '18년 현재 130개 업체에서 방문·사용 중, '17년 NB-IoT룸, Device룸, S/W Test룸, Shield룸의 이용인원은 6,500여 명에 달함
 - (추가계획) 5G 생태계 구축의 상생파트너인 국내 중소 통신장비사,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5G 오픈랩을 '19년 추가운영 예정

- (투자) 직·간접 투자로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 마련
 - (직접투자) 사업적 필요시 지분 투자, JV 설립, 인수 추진 등
 - (간접투자) KIF('02년, 통신3사), 소프트뱅크벤처스펀드('17년), 심본파트너스펀드('17년), LG CVC('18년) 등 펀드 출자

나. 대형 CP

(1) 네이버

- (D2 Startup Factory) 국내 테크 스타트업(Tech Startup: 기술 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테크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 및 지원('15. 5월~)
 - '15. 5월 개소 이후 '17년까지 19개 사에 투자, 36개 사에 업무 공간 제공, 1,080건의 스타트업과 개발자 간 네트워킹 미팅 지원
 -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13개 사는 네이버/라인(LINE)과 협력 프로젝트 진행 또는 검토 중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민관협력(과기정통부, 네이버, 카카오,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및 유망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14년~)
 - 실리콘밸리 및 중국 진출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는 컨퍼런스 개최,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10개 유망 스타트업들과 현지 기업인, 투자자 등과의 만남 주선('17년)
- (프로젝트 꽃) 네이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 및 창작 지원, 이용자와의 접점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창작자 육성('16년~)
 - 온라인 상점 입점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윈도' 등이 대표적인 사업 플랫폼
 - '17년 사내 예산으로 총 600억 원 규모의 펀드('분수펀드')를 조성하여 사업 플랫폼 부문에 2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스토어에서 1만 5천 명의 신규 창업자 배출

-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스몰 비즈니스·창작자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주요 거점에 오프라인 창업 성장 지원센터 운영('13년 역삼, '17년 부산센터 오픈, '18년 광주, 대전센터 오픈 예정)
 - 온라인 창업과 초기 운영을 위한 기초정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노하우 등 다양한 교육 제공,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공간과 관련 장비 무료 지원

(2) 카카오

- (메이커스 워드 카카오) 다양한 제조업 및 소규모 창작자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공동주문·선주문·후생산 방식으로 유통하는 플랫폼 운영('16년~)
 - 대량생산으로 인한 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주문 수량을 넘은 제품만 제작토록 하는 시스템 채택
 - 파트너 사 980개 참여, 누적 구매인원은 29만 명이며, 파트너 사는 메이커스 판매를 통해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해외 진출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디자인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17년)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자인 분야 우수 창업기업 10개사를 밀라노 소재 박람회에 파견하고 카카오 상생서포터즈관을 마련하여 상품 소개
 - 사전에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현장에서 무역 전문가 멘토링 및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 수출 상담 지원
- (지역 기업 협력) 제주지역 VR 생태계 구축 및 제주지역 스타트업 협회 특별 회원으로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
 - '17년 제주도 내 VR 벤처기업과 테마파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역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플레이박스 VR' 체험관 운영

(3) 구글

- (구글 캠퍼스 서울)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교류, 및 교육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15. 5월~)
 - (개요) 아시아에서 첫번째(세계에서 세번째)로 '15년 설립, 330개 이상의 프로그램 제공, 1만 5천명 이상의 창업가들 참가, 입주한 28개 사가 약 390억원 투자 유치
 - (캠퍼스 입주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입주사 전용 사무실, 전문가 멘토링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혜택 제공
 - (엄마를 위한 캠퍼스) 출산과 육아로 창업을 미루었던 부모들의 창업 지원 ('17년까지 총 77명의 졸업생 배출)
 - ※ '자란다', '모이', '그로잉맘', '베이비프렌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 (캠퍼스 엑스퍼트 서밋) 전 세계 구글러들이 2주 동안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마케팅, 파트너십, UX/IX 디자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2회 ('16·'17년)동안 총 26개 사 1,100여 명 참가)
 - (캠퍼스 스타트업 스쿨)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플랫폼, 기술,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 진행('17. 9월까지 총 70회 이상 세션에 총 2,600명 이상 수강)
- (개발자를 위한 활동)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오프라인 모임, 컨퍼런스,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 및 활동 후원('12년~)
 - (Google Developers Group) GDG(구글 기술에 관심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개최하는 DevFest 컨퍼런스(개발자들 간 지식 공유), Women Techmakers (테크업계 종사 여성들을 위한 모임) 등 후원
 - (Google HackFair) 개발자들이 구글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결과물을 전시 및 공유할 수 있는 연례행사 개최
- (기타 사회 공헌 활동)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전파, 디지털 미디어 분야 교육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 단체 지원 등

-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구글 플랫폼·기술(유튜브, 아트앤컬처, 스트리트뷰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 콘텐츠, 자연 유산 등을 전 세계에 소개('12년~)
- (사회를 위한 활동) 디지털 미디어 소양을 교육하는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캠퍼스'('16년~), 미디어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젊은 저널리스트 양성 프로그램'('14년~) 등
- (비영리단체를 위한 활동) 비영리 단체의 조직운영 및 홍보를 돕기 위해 구글 서비스(구글 앱스 사용자 라이선스, 애드워즈 광고비 등) 무상 지원('15년~)

(4) 페이스북

- (개발자/스타트업 지원)

- (Facebook Innovation Lab) 연간 최소 2,000명의 개발자에게 기술 교육 및 3,000명에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판교 2 벨리 문화 ICT 융합센터 내 150평 규모의 센터를 오픈('18. 5월)
- (Facebook Namsan Lab) 창업 3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에 글로벌 멘토링 및 벤처캐피탈 연결 등 지원, 서울시 중구 아산나눔재단 내 100평 규모 센터 오픈('18. 9월)
- (Technology Revolution Together) 실리콘밸리 현지 육성 프로그램(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및 KIC 실리콘밸리 협업)을 통해 한국 VR/AR 스타트업에게 기술개발 멘토링 지원('17년~)
- (Developer Circle) 국내 온라인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제공 및 매달 오프라인 모임 주최·지원, 매년 커뮤니티 리더의 페이스북 본사 방문 전액지원
- (FBStart) 국내 앱 개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자동화를 위한 유료 프로그램 무상 지원 및 멘토링 제공

-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Made by Korea, Connected by Faceboo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약 2,000개 사)에게 무상 교육 및 광고비 지원('17. 7월~)
- (Marketing Bootcamp) 중소·중견 기업 인력(1,000명)에게 무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관련 1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Mobile Moves Business) 지역별 중소기업인들(부산, 광주, 대전 소재 300명)을 상대로 무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제공
- (Made by You Fair) 국내 중소상공인들(1,000명)의 마케팅 소양 증진 교육 및 오프라인 접점 제공
- (Video to Go) 국내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100명)에게 모바일 광고 템플릿 제작 지원 및 교육, 온라인으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중소·대기업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 제작 가이드 및 실습 워크숍 진행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제안내용

※ 제5차 회의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

● (통신사와 스타트업의 상생)

-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업은 서비스가 활성화 된 후 수익모델이 개발되므로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기간 트래픽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망 이용료 구조 필요
- (스타트업 요금제 신설) 모바일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휴대폰, 태블릿 PC, Android TV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므로 이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 필요
- (옛지 컴퓨팅 시장을 위한 지원) API, 개발키트, Library 등을 공개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플랫폼에 연결하는 형태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형CP와 스타트업의 상생)

- (API 공개) 대형 CP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API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부가서비스 개발 촉진
- (스타트업 마케팅 지원) 대형 CP의 플랫폼을 통한 광고비용을 일정기간 할인해 주거나 바우처 형태의 프로모션 진행
- (스타트업 홍보 채널 신설) 대형 CP의 플랫폼에서 스타트업 회사·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소개하면, 대형 CP도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음

■ 소위원회 논의결과

◆ 통신사 및 대형 CP가 운영 중인 상생 프로그램의 개선 및 추가적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

- (자율적 상생) 기존의 민간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하되,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가 상생협력 혹은 사회공헌을 압박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음
- (이익 공유 및 비용 분담) ‘협력이익공유제’ 등 중소 CP와의 협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나눠주는 방안, 중소기업의 비용 중 대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 등 제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한 망 이용료 인하(한시적 무료 포함), 스타트업 전용요금제 신설 등
- (지속가능성 지원) 창업 이후 홍보*, 경영 노하우** 부족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 제시
 - * 네이버·카카오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소개 프로그램 확대, 구글·페이스북의 앱 관련 홍보 프로그램 강화 등
 - ** 경영지도 등 경영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공동 운영) 중복지원 방지, 지원규모 확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제시

〈총 48인〉

구 분		성 명	소속·직책	비 고
전문가 (21인)	경영·경제· 미디어 (12인)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전체위원장, 제1소위원장
		김동민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엄호동	미디어디렉션 연구소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정일	승실대 경영학부 교수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경제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송명빈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자진 사퇴('18. 8. 3.)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법률 (7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소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구·전문 기관 (2인)	여재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기관 추천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	기관 추천
소비자·시민단체 (5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단체 추천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단체 추천, 퇴사('18. 11. 2.)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단체 추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단체 추천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단체 추천	

구 분		성 명	소속·직책	비 고
인터넷·통신사 (12인)	포털 등 (3인)	채선주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정책총괄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이병선	카카오 CR실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글로벌 사업자 (2인)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콘텐츠 개발사 (4인)	이현재	우아한 형제들 CR실 이사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플랫폼사업본부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조대현	CJ ENM 콘텐츠사업부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김미균	(주)시지온 대표이사	벤처협회 추천
	통신사 (3인)	하성호	SKT CR센터 전무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이승용	KT CR 기획실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박형일	LGU+ CR그룹장 전무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관련단체 (7인)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김정수	한국케이블방송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김기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김찬태	개인정보보호협회 부회장	단체 추천	
	권은중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처장	단체 추천	
정부·유관기관 (3인)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 간사 :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개 요

-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규제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의견 접수
- (접수 기간) 2018년 3월 6일~2018년 9월 6일 (6개월간)
- (제출 방법) 이용자정책총괄과 대표 E-mail(consumer0223@korea.kr) 및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 (방통위 홈페이지에 배너 개설행)

■ 주요 제출 의견

- 국내·외 역차별로 인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등 총 6건의 의견(개인) 접수됨

<이용자 제출의견 상세내용>

제출일자	주요 내용
3. 23.	포털의 뉴스기사 화면에 뜨는 광고(플로팅 광고) 규제 필요
3. 27.	개인정보 포함 메일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타 메일 계정 간에도 보낸메일 취소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7. 25.	유튜브 개인방송 신고
8. 15.	페이스북 접속불량, 다운로드 불량 등 운영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필요
9. 6.	저작권료, 망 이용료 등 국내기업의 역차별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국내업체(아프리카TV)와 해외업체(트위치TV) 간 역차별 상황 조사 및 해소 필요 - 트위치TV의 BJ는 음원료 지불 없이 음원 사용 - 트위치TV는 망 이용료 지불하지 않아 국내업체 경쟁력 저하 - 트위치TV는 청소년 방송시청, 후원 충전한도 제한 없음
10. 22. (국민신문고)	국내·외 기업의 규제 역차별로 인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 - 국내기업에만 막대한 망 이용료를 부담시켜 유튜브, 트위치 등 해외사업자가 잠식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1인 방송 등에 대하여 국내기업만 과도한 규제 적용 - 아울러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다른 규제 관용(완화) 필요

■ **개 관**

- '18. 7월말 기준 이통3사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상품은 총 37종
 - SK텔레콤, LGU+가 13종 제공하는데 비해 KT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11종 제공 중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 현황>

SK텔레콤	KT	LGU+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데이터 제공량**

- 이통3사의 제로레이팅 상품 37종 가운데 25종(67.6%)은 애플리케이션 이용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무제한으로 과금하지 않지만, 12종(32.4%)은 일정한 상한 내에서만 과금하지 않음
 - 이통3사 모두 동영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상한을 두고 있으며, 오디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상한을 두고 있지만 LGU+는 상한 두지 않음

※ KT는 일종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메가스터디, EBS데일리 앱)에 대해서, SK텔레콤의 경우 웹툰 애플리케이션에 상한 두고 있음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량>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무제한	7종	7종	11종	25종
상한	6종	4종	2종	12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상한은 대부분 하루나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용량 형태로 제공되며, 제공량 초과 시 별도 과금 없이 속도제한하는 경우도 존재

※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뮤직메이트는 일정한 용량이 아닌 300곡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트래픽으로 규정

■ 부가 요금

- 제로레이팅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은 37종 가운데 17종(45.9%)이며, 나머지 20종(54.1%)은 무료

- 제로레이팅 제공량에 상한을 두고 있는 상품 대부분이 유료이며, LGU+의 경우 오디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유료로 제공하는 특징 보임

※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뮤직메이트는 제공량에 상한을 두고 있으나 추가요금 부과없이 무료로 이용가능

<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부가요금 >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무 료	8종	7종	5종	20종
유 료	5종	4종	8종	17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유료 상품의 월정액 수준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9,900원까지 만원을 넘지 않음

■ 가입 형태

- 요금제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이 포함되어 이용자가 별도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Bundled Free가 19종(51.4%)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부가 요금 지불해야 하는 Add-on이 17종(45.9%)

- 상품 가입시에만 제로레이팅이 제공되는 Bundled Subscription 형태는 1종으로 드물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가입형태>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Bundled Free	7종	7종	5종	19종
Add-on	5종	4종	8종	17종
Bundled Subscription	1종	-	-	1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Bundled Free: 요금제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이 포함되어 이용자가 별도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

Bundled Subscription: 상품 가입시에만 제로레이팅 제공

Add-on: 부가 요금 지불해야만 제로레이팅 제공

■ 콘텐츠 유형

- ‘정보’(29.7%) 항목의 콘텐츠가 제로레이팅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오디오 스트리밍’(27.0%), ‘동영상 스트리밍’(16.2%)이 뒤를 이음
 - 이통3사 모두 제공하는 ‘정보’, ‘오디오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 ‘내비게이션’ 항목의 제로레이팅 상품이 총 30종(81.1%)으로 대부분을 차지
 - ※ ‘정보’ 항목에는 고객센터와 스마트초이스가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부산시 재난현장 영상전송이 SK텔레콤과 KT에 의해 제공
 - 이통3사별로 ‘교육’, ‘쇼핑’, ‘게임’, ‘웹툰’, ‘클라우드 스토리지’ 항목에서 차별화된 제로레이팅 상품 제공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콘텐츠 유형>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정보	4종	4종	3종	11종
오디오 스트리밍	3종	1종	6종	10종
동영상 스트리밍	2종	2종	2종	6종
내비게이션	1종	1종	1종	3종
교육	-	2종	-	2종
쇼핑	1종	1종	-	2종
게임	1종	-	-	1종
웹툰	1종	-	-	1종
클라우드 스토리지	-	-	1종	1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콘텐츠 소유권

- 콘텐츠 소유권 측면에서 자사/계열사와 제3자의 비율이 45.9%와 54.1%로 유사한 수준
 -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내비게이션의 경우 모두 이통사 자사/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됨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콘텐츠 유형>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자사/계열사	6종	5종	6종	17종
제3자	7종	6종	7종	20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III 참고자료

1. 발제 자료
2. 해외 동향
3. 회의록



Contents

III 참고자료

1. 발제 자료	89
1-1.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89
1-2.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170
1-3.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262
1-4. 망 이용료 정책	342
1-5. 상생 협력	390
2. 해외 동향	418
2-1. 해외 망 중립성 정책 동향	418
2-2. 해외 제로레이팅 정책 동향	449
2-3. 해외 망 이용료 관련 사례	456
3. 회의록	487
3-1. 전체회의	487
3-2. 제1소위원회 회의	509
3-3. 제2소위원회 회의	591

1 발제 자료

1-1.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1-1-1. 국내외 인터넷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발제자: 장준영 변호사)

국내외 인터넷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2018년 2월 23일 |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장준영

CONTENTS

1. 역외적용 규정의 필요성
2.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관련 고려사항
3.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
4. 결어

1. 역외적용 규정의 필요성

가. 논의의 배경

- 최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얻은 수익에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세금 역차별 문제**(이른바 구글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역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이 '17. 10. 10. 발의됨
 - » 19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1. 역외적용 규정의 필요성

나. 역외적용 규정의 필요성

- 역외적용은 **자국법을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에까지 적용하려는 논의에서 시작
 - » 역외적용은 주로 반독점법, 증권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었고 해당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역외적용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
 - » 해외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도 국내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지가 국내인 점, 그 제공과정에서 국내 설비가 반드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음

1. 역외적용 규정의 필요성

나. 역외적용 규정의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현행법령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며, **외국사업자는 직접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음
 - » 주로 해외인터넷 사업자는 국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 위치정보사업 등의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내 규제기관은 행정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법인을 통해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유도하여 옴
- **(역외적용 규정 논의의 실효성)** 해외사업자의 법령상 의무위반 시 **외국법인을 직접 조사하여 제재**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 문제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
 - » 유럽 각국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여 제재처분을 진행하고 있음
 - »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02년도 흑연전극봉 사건 이후 국제공조를 통해 사업자 카르텔 사건을 위주로 해외사업자를 제재
 - (방송통신위원회) '14. 1. 28.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하여 구글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과징금 부과를 한 스트리트뷰 사례가 존재

2. 인터넷 사업자 규제 관련 고려사항

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현황

- 정부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정보 삭제·차단** 등을 통해 불법정보의 유통 자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

불법정보유통 규제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가능 (저작권법 제103조)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사업폐지 명령

과기정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정보통신망법 상 시정명령의 정당한 사유없는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 인터넷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폐지명령 강제 수단으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 차단 고려 가능

2. 인터넷 사업자 규제 관련 고려사항

나. 행정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이론

-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집행벌** 등 존재

규제 성격	내용
이행 강제	대집행 : 의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내용 실현
	직접강제 : 직접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 실현
	강제징수 : 납세 의무 미이행 시 강제력을 동원하여 징수
	집행벌 : 작위·부작위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그 외 사후적인 제재로 금전상 제재(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부당이득세), 제재적 행정처분(허가 등의 거부·정지·철회), 공급거부, 공표, 시정명령 등의 수단이 활용되고 있음
- 정부가 사업자의 의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려는 경우

▶ **직접강제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고려하면 “집행벌”이 가장 타당**

2. 인터넷 사업자 규제 관련 고려사항

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시 고려사항

- 해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적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간접 강제 가능**
 - » 인터넷 서비스는 매우 복잡한 소프트웨어적 통제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사업자 외에 제3자가 해당 시스템에 대하여 직접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행정규제는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고 다른 제3자가 임시조치를 대행하기 어려우므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
- 해외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행정규제는 **직접적인 강제가 어려움**

▶ 이는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라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는 특징에 기한 것

3.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가. 현행 규제 체계상의 문제점

▶ 현행 규제 체계의 미비점

- 현행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는 **법 위반 사실 고지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음
 -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연락이 원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현행 규제체계 하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왔음
 - »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통신망을 통하여 관리되고 사업자와 실시간 의사연락이 가능
 - 최근 해외사업자가 한국 규제기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 텀블러 사례 참조

3.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가. 현행 규제 체계상의 문제점

텀블러 사례

- 2017.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물이 상당히 게시되어 있는 텀블러 (Tumblr)에 대하여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이메일로 요청
- 텀블러 측은 2017. 8.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력 요청을 거부함
 - »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이며, 대한민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

3.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나. 행정상 즉시강제 도입

▶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 필요성

- **(개념)** 장애의 발생이 급박한 경우에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 » 기본처분, 계고 등 사전절차가 생략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으로 제정되고 실행됨
- **(구별개념)** 행정상 강제집행은 선행되는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반면, 행정상 즉시강제는 선행되는 의무 자체가 부존재하며 의무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음
- **(도입 필요성)** 행정청의 통지와 해당 사업자의 의견제출을 기다려 집행으로 나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고,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 해외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상 즉시 강제 도입 검토 필요
 - » 인터넷을 통한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고려 시 즉각적인 대응 필요

3.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나. 행정상 즉시강제 도입

▶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 **(법률유보원칙)** 행정청이 실력을 행사하여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실정법상의 근거 필요**
- **(조리상 한계)** 발동에 있어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절차적 요건)**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함
 - »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적법절차 원칙**은 적용됨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3.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나. 행정상 즉시강제 도입

▶ 행정상 즉시강제 입법례

- 행정상 즉시강제가 규정된 입법례는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
 - ① 검역, 식품, 방위 등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경우**
 - » 식품위생법 상 위해식품 회수(제45조), 감염병예방법 상 강제처분(제42조)
 - ② 집행절차에서 **영장주의를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 »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제3조)
 - ③ 신속한 피해 구제·피해 확산 방지 등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 » 전자상거래법 상 임시중지명령 제도(제21조)

(참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17. 10. 23. 임시중지제도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본의결이 있을 때까지 통신 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3.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나. 행정상 즉시강제 도입

▶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행정상 즉시강제 도입

- 인터넷 사업자에 의하여 음란물과 같이 **불법정보임이 명백한 정보**가 국내 인터넷 망에서 유통되거나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 도입 필요**
 - » 불법정보의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은 즉시 삭제·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행정상 강제집행으로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어려움
 - » 해외사업자의 경우 행정조사, 처분 문서의 송달, 의견 제출 또는 청문의 진행 등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규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행위 시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임시차단으로 사실상 임시 영업정지적 성격)를 규정하는 행정상 즉시강제 제도 도입 검토 필요

3.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다. 자율규제 제도 개선 검토

▶ 자율규제의 개념

- 자율규제란 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아니라 규제 대상인 **사업자 스스로**가 규제를 이끌어 가는 규제 방식을 의미
 - » 민간 영역이 전통적인 정부 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민간 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 방식

▶ 자율규제의 불가피성

-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 시 사업자에 의한 조치가 규제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
 - » 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규율을 전제로 하였던 기존의 법체계의 적용에 한계
 - » 국제적 정보유통이라는 인터넷 특성으로 인한 자국법 적용의 어려움
 - »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인터넷 콘텐츠의 유통을 지배하고 있음

3.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방안

다. 자율규제 제도 개선 검토

▶ 국내 온라인 자율규제 제도

- 한국의 인터넷콘텐츠 영역 자율규제기구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존재
 - » 주요 포털사가 2009. 3. 설립한 기구로 현재 11개 사업자 가입
 - 회원사 범위가 주요 포털사로 한정, 구체적인 행동강령 부재에 따른 회원사에 대한 구속력의 한계, 정부와의 협력체계 미구축 등의 개선 사항 존재
- 방심위는 '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등 국내사업자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운영
 - » 도박, 아동포르노, 성매매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통해 직접 정보 삭제, 사용자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 '15년 해외인터넷사업자(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들도 참여
- 방통위는 '17. 6.경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 시범운영
 - »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업종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점검 후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받게 됨

4. 결어

즉시강제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인터넷 서비스의 특징, 해외사업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환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자율규제 강화

- 우회접속, 대체 사이트 개설 등으로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규제의 규범력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제도 강화** 필요

기타 이용자 보호 방안

- 악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와 함께 **임시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 예를 들어, 행정청이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Alert를 띄우는 방안 검토

국제적 공감대 마련

- 인터넷에 대한 비규제 원칙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고, **국제적 마찰**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내 인터넷 규제의 **국제 규범화** 및 국제 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모색** 필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장준영 T. 02 316 4410 E. jyojang@shinkim.com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8층 (우)04631
TEL: +82 2 316 4114 | FAX: +82 2 756 6226
www.shinkim.com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종 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집행력 확보 (발제자: 박민철 변호사)

- 역외적용, 국내대리인제도, 집단소송제, 임시중지제도 등 법제도 개선 -

□ 검토 배경/ 주요 사항

- 국경이 없는 서비스인 인터넷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가의 규제 관할권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는 특히 국내에서 주소와 거소를 두고 있는 국내사업자와 그렇지 않는 해외사업자간의 규제형평성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음
- 이러한 규제형평성 제고 방안으로써 논의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1)국내규제법의 역외적용, (2)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3) 임시중지 명령 제도, (4) 집단소송제 도입임
- 이하에서 각 제도에 대한 현재의 논의상황, 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중요한 것은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i)현재의 문제가 촉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ii)아주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실제 문제가 되는지를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임

□ 역외적용

● 역외적용의 일반론

- **역외적용:**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상황,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교류되는 서비스 발전, 국경밖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시장질서위반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에까지 적용하려는 논의에서 비롯됨(국가 관할권의 문제)
- **관할:** 사람, 물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관할권의 구체적 범위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작용에 의해 확정.
 - ✓ 입법관할권: 국가가 규범정립 즉, 자신의 법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 관계, 물건에 대한 사람의 이익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관할권. 입법, 행정입법,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
 - ✓ 재판관할권: 재판에 구속되어 법적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
 - ✓ 집행관할권: 법 또는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 강제하고 불준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관할권.

- ✓ 범죄인인도조약 등에 의한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 또는 그의 재산이 영토 내에 없다면 집행관할권이 없어 입법관할권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 ✓ 국제법상 입법관할권은 있으나, 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 피고가 그 국가와 아무 접촉이 없거나, 당사자간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
- ✓ 형사관할권의 경우는 입법관할권과 재판관할권이 일치하지만, 민사관할권은 재판관할권이 있어도 준거법을 외국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

▪ 입법관할권의 인정근거

- ✓ 속지주의: 어느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실 및 영역 내에 소재한 물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주관적 속지주의: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요소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 속지주의: 범죄행위의 완성, 결과가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서 이루어진 공모가 좌절된 경우의 문제
- ✓ 속인주의: 자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 ✓ 수동적 속인주의: 피해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보호주의: 국가의 특정한 중요 이익, 기능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허락하는 원칙-영토적 관련성이 적어도 안보, 주권 등 중요 정부 기능에 심각한 침해 위협이 있는 경우 관할권이 인정. 테러 및 인권범죄.
- ✓ 보편주의: 국적, 장소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범죄의 성질에 근거한 형사관할권. 노예 거래, 해적, 전쟁범죄 등.
- ✓ 효과의 법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의해 영토 내에 어떤 효과가 초래된 경우 관할권이 인정.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식되고 영토 내에서 나타난 효과가 직접적, 실질적, 예측가능하며 그 규칙이 합리적으로 발달된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 정의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일 때 제한적으로 적용.
 두 국가의 관할권이 중첩되면 이익형량적 접근

● 전기통신사업법 등 외국사업자에 대한 관할권 인정 여부

- 규제기관이 역외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이른바 동법과 관련하여 외국 사업자에 대해 “규율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 입법관할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임
- 이는 주로 민사재판을 전제로 하여 국제사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재판관할권(jurisdiction to adjudicate)”의 인정여부 내지 “준거법”의 결정 문제와는 다소 다른 차원의 논의임.1)

- 국내의 경우 외국 사업자에 대한 규율관할권의 인정 기준이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확립된 견해는 없는 상황임.
- 다만,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지향된 행위의 원칙(Principle of Targeting)”에 따른 판단 기준이 논의되고 있음.²⁾
- 이 원칙은 그 행위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도하여 지향된 활동(Targeting)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다만, 이러한 “지향된 행위의 원칙(Principle of Targeting)” 역시 Targeting의 개념이 정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고,³⁾ 어떠한 경우에 Targeting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이 원칙을 지지하는 견해 역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의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사업자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행정 및 형사사건에 있어 일반적으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외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한국을 향하여 지향된 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인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이다”는 정도로 논의하고 있을 뿐임.⁴⁾
- 이러한 관할권 논의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내 규제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역외적용 규정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

● 공정거래법상 역외규정

- 역외규정을 도입하고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으로 공정거래법을 들 수 있음
- 규정 :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1)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Google의 이용자들이 Google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상의 서비스 이용내역 공개 청구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개인메일 서비스 이용관계에 대해서는(기업 메일 서비스 이용관계는 제외) 관할권이 인정되고 동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규율관할권”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주로 민사재판을 전제로 하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단이고, 대법원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불분명함.

2) 석광현,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Law & Technology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2011. 9.); 이희정, “인터넷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한국법제연구원 (2013)

3) 이희정 제79면

4) 석광현 제22면

▪ 관련 판례

✓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흑연전극봉 사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동 법이 적용된다.

✓ 해당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의 흑연전극봉 수입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합의가 대한민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

외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대상에 대한민국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졌는지 국외에서 행하여 졌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합의가 대한민국의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한국의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을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소결: 상기 판결에 따라 역외적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②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쳐야 하며, ③ 어디까지나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재판관할권이 인정됨.

▪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할권 인정의 논의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의 검토가 이루어져할 필요 있음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은 국내 license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은 사업자의 지위를 적용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간의 역외적용 규정도 달리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 개정안 및 검토

- 김경진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역외규정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 등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들면서,
- “제4조의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과 달리 적용대상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사업자로 허가,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어 허가,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해외사업자의 경우, 동법에 역외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결국 해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license 의무가 부여되는지가 관할권의 논의로 해결되면 역외적용 규정의 도입 필요 없이 해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관련 사례

- 해외 사례 - yahoo사건
 - ✓ 프랑스의 유대인이 인터넷 서핑중 나치 기념품을 전시, 판매중인 웹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함. 그 웹 페이지는 미국 기업(Yahoo)가 운영하는 미국 내 서버에서 호스트된 것이었으나, 프랑스에서 접근가능하였음.
 - ✓ 프랑스 형법상 나치 기념품 판매는 불법이었으나,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해 적법한 것이었음
 - ✓ 프랑스의 유대인은 파리의 법원에서 Yah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정하고, Yahoo에게 그 웹 페이지를 내리라고 명하는 판결을 하고, 상징적 의미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국내의 사례
 - ✓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규제기관이 해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 사례 및 그 적용을 자제한 사례가 모두 있으나, 적용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 2014년 방통위는 Google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Google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 ✓ 반면, 2009년에는 방통위가 Google의 유튜브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음.

-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역외적용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Microsoft(MS)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MS로부터 제출받기 위하여 미 연방정부(검찰)가 Stored Communication Act에 근거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2013년 12월 미 연방 법원에 MS가 제기하였음

2016년 7월 미 연방 제2항소 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의 3인재판부는 MS 쪽 주장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미연방정부는 Stored Communication Act에 근거해서 미국 외의 국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제출을 명하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이의신청을 미 연방 제2항소 법원은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기각하였고, 다시 미 연방정부가 상고하여 현재 본건이 미 연방 대법원에 계류 되어 있음

대법원은 일단 2017년 10월 결정을 통해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심리 개시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내년 중순경 대법원에 의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 대리 제도의 일반론⁵⁾

-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임
-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이 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대리이며, 그것은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임
- 대리는 대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인의 효과의사에 대하여, 법률이 그것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에 한함.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즉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 대리는 인정되지 않음
-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 기타의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른바 대표기관이므로, 동조는 결코 불법행위의 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

5) 민법총칙, 광윤직, 박영사 p 253 ~ 255 참조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시 이러한 대리의 본질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예를 들어, 불법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케 하거나 나아가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내용인 대리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개정안

- 김성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18. 2. 21)에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 매출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게도 국내 규제의 집행력을 적용하여 ICT 생태계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이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규정

- 주요내용은

가.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국내에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본 지정대리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국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적용받도록 함(안 제2조의2, 제22조제4항제3호, 제22조의5,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나.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국외 사업자에게도 확대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안에 대한 반대견해⁶⁾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상 현지주재(local presence) 조항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반될 우려
 - ✓ 2012. 3. 15. 발효된 한미 FTA는 타방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체약국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및 현지주재의무 부과금지 등 4가지 의무를 부담

<한미 FTA 관련 규정>

제12.5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6)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 관련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서 참조

- ✓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의무(안 제32조 제1항),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 의무(안 제51조 제2항) 등 각종 법상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강요함으로써 결국 국내에 대표사무소 등을 설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
- 따라서 비록 국내지정대리인 제도가 사무소의 설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한미 FTA 제12.5조에서 현지주재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조 위반으로 의율될 우려가 있음

<한미 FTA 관련 규정>

제12.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 어떠한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치가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미치는 사실상 효과, 즉 국내·외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을 수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내지정대리인 제도는 국내 동종 부가통신서비스 공급자와는 달리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게 됨. 특히, 규제기관이 만약 국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국내지정대리인에게 선택적으로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점에서도 국내지정대리인 제도는 국내사업자와는 달리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부가되는 추가적인 규제로 볼 수 있음
- 결국 국외지정대리인 제도는 국외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내국민 대우 의무에 위반될 소지
- 국내지정대리인 제도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대리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르는 각종 제재를 직접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는 해당 국내지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 국내지정대리인 제도가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을 막거나, 새로운 혁신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비용을 국내지정대리인 도입을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비용에 전용하게 된다면 이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한국 이용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

- 유사 사례

- EU GDPR

- GDPR 제27조는 제3조제2항에 따라 GDPR의 적용을 받는 유럽연합 내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는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

제27조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대리인

1. 제3조의 (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정보처리자 혹은 수탁처리자는 유럽연합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한다.
2. 이 의무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a) 처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처리가 아니며, 제9조 (1)항에 규정된 특정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제10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및 범죄 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지 않거나 처리의 성격, 상황, 범위, 목적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처리의 경우; 또는
 - (b) 공공기관 또는 기구;
3. 대리인은 정보주체가 거주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이 모니터링 되는 여러 회원국 중 한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
4. 대리인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에 의해 위임되며,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와 함께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감독기관과 정보주체에 따라,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착수해야 한다.
5.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대리인 지정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 자신에게 반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 행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 방송통신 분야 관련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와 유사한 규정은 방송법상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과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음
- 해당 규정도 법률상 직접 적인 근거를 가진다기 보다는 절차적인 신청 절차에서 해당 신청업무를 대리하는 정도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사업자의 국내 contact을 위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방송법 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③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전파법 적합성평가 고시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제27조(대리인의 지정)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5.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6.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대리인 지정(위임)서

위임자	상 호 명			
	대 표 자 또는 인증업무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 l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위 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	상 호 명			
	사 업 자(법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 l	

● 보완 방안 검토

- 절차적인 부분(이 중에서도 단순히 허가, 신고 신청업무만 → 나아가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으로 포함 등)과 실제적인 부분(법준수 의무를 대리인이 지게 되는 경우)을 놓고 대리인 업무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
-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만약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실제적인 의무 책임 등을 지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FTA 위반, 자기 책임 원칙 위반 등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도 있음

□ 임시중지 명령 제도

● 임시중지 명령의 일반론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 행정법상 집행력 확보 방안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장애의 발생이 급박한 경우에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임
- 행정상 즉시강제는 피규제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고, 발동을 위해서는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임

● 임시중지 명령 관련 개정안

- 변재일 의원이 2018. 2. 14.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음
-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방통위가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호스팅서비스 사업자등에 대하여도 역무의 제공 중단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시중지 명령 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

-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
 - ✓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생활에서 일상적이며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많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유사한 서비스와의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임시중지 명령에 따라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다른 유사한 서비스로 쉽게 대체할 수 있어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킴
 - ✓ 또한, 어떤 정보통신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던 이용자의 경우 임시중지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영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던 경우에는 임시중지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음
 - ✓ 반면, 사업자의 기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
 - ✓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이 존재한다면 그 제재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이용자 또한 그 제재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다는 점

● **유사 입법례**

- 현재 유사한 임시중지 명령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정도를 들 수 있음
-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계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 사례

- 전자상거래에서의 임시중지 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실제 공정위는 17. 10. 23. 임시중지제도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본의결이 있을때까지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가. 임시 중지 명령의 요건(법 제32조의2 제1항, 시행 2016년 9월 30일)

통신 판매 사업자의 행위가 ①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②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나. 임시 중지 명령의 방법(법 제32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의2)

임시 중지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일시 중지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쇼핑몰의 개설 ·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임시 중지 명령 요건 충족 사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예시>

○ 상품 불량일 경우 교환 여부만 고지했다.
 → 법에서는 청약의 철회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 교환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법 제13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 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 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품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정적으로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법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나.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재산상 손해가 발생) 현금 거래만 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환불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상당수로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민원 내역 일부(발췌)>

제목	민원 내역
스커트를 주문하였으나 배송 지연	데일리어썸이라는 사이트에서 스커트를 주문하였으나 일주일째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매자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이트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피해가 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처리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고의적으로 환불을 안해줌	현금 입금밖에 안된다고 해서 현금을 입금했으나 한 달 넘게 연락없이 배송안하고 있습니다. 4월14일 환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2, 3일 후 환불해준다고 계좌번호 남기라고 하였으나 그 뒤로 게시글 남겨도 내 글에 답도 없고, 전화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있습니다.
의류 주문했으나 연락 두절, 배송 지연	20일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아서 게시판에 문의하였으나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는 물론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위 사이트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긴급한 필요성) 공정위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 공개*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했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201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누리집에 공개 중에 있음.

** 2017년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며, 2017년 9월 한 달간에도 전체 민원이 13건 접수됨.

조치 내용 의의

□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관련 본 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쇼핑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의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 이는 법 제32조의2(임시 중지 명령)조항 시행(2016년 9월 30일)이후 최초 적용 사례이다.

계획 기대효과

□ (향후 계획) 임시 중지 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을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조사 중인 해당 사업자의 위반 행위는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본 사건 의결을 통해 각종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위의 처분 내용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이번 임시 중지 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 판매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의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 명령 도입 및 규제사례 이전에 표시광고법상 임시 중지 명령 사례 2건이 있음

3. 위법성 판단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표시·광고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고 ② 당해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지 여부 판단

(1) 피심인이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오가피의 지표물질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상기 광고내용은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오가피의 지표물질인 것 처럼 인식되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한 결과 (식규42920-1110) 현행 식품공전 및 대한 약전에서 오가피속식물 및 제품에 대한 지표물질을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가피의 지표물질이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오가피의 지표물질인 것 처럼 광고하면서 동 성분을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타사 제품의 품질이 자사 제품보다 떨어지는 것 처럼 비교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비방 및 부당비교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 여부 판단

오가피의 지표물질로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동 성분은 오가피속식물의 한 성분일 뿐임에도 동 성분의 검출유무, 함량정도에 따라 오가피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여 비교하는 행위가 지금까지 행해진 것과 같이 주요 일간지를 통해 계속될 경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상기와 같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허위·비방·부당비교광고에 해당됨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피심인의 계속되는 광고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법제8조의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충족

● 보완 방안 검토

- 결국, 임시중지 명령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인 인터넷을 통한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받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해야 할 것임
- 그렇다면 임시중지 명령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전제에서, 명령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실제 집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텀블러 case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임시중지 명령으로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할 때, 텀블러 내의 불법적이지 않은 정보, 서비스에 대해 선별적으로 중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지도 등도 실무적으로 고려할 필요

집단 소송제

- 문제의 인식

-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특히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우 피해유형이 소액다수에 해당되어 집단소송제 도입이 특히 필요한 분야인지

OOO는 구매자들을 모아 ooooo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집단소송제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구매자들은 (1)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2) 미국법정에서 ooooo를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3)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4)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의 경우에는 미국법원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미국법정에서 집단소송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공평한지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3)의 경우에는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4)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만 가능하고 배상청구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OO는 일단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아 한국에서 공동소송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진행경과에 따라 (2)와 (3)의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집단 소송제의 일반론

- 집단소송제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를 의미
- 집단소송제의 찬반론)
 - 찬성론
 - ✓ ① 분쟁의 1회적·종국적 해결 : 미국 Class Action도 최초 다수인이 관련된 소송을 1회의 소송절차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직접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는 물론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은 모든 관련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소송절차를 1회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의 존재가능성을 없앨 수 있음
 - ✓ ② 소액 다수 투자자들의 실질적 구제수단 : 회사의 위법행위를 사실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개별적 손해가 적은 액수에 그치는 경우 많은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절차 등을 고려하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은 위와 같은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적 장치
 - ✓ ③ 기업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Class Action이 제기된 회사나

7) 로앤비, 기업법무리포트, 증권집단소송제도 참조

개인들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회사 이미지의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패소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어 도산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기업들은 집단소송으로 피소당할 것을 두려워 하여 스스로 범위반행위를 자제하게 되고 투명경영을 촉진하게 될 것임

- ✓ ④ 경제발전에 도움 : 위와 같이 투명경영이 실현되게 되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내외국인들의 투자증대로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반대론

- ✓ ① 기업경영에 치명적 손실 : 집단소송제기로 인한 기업의 대외신뢰도 추락으로 인하여 주가하락,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거래업체의 현금결제 요구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축, 기업도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증가된 회사의 부담은 결국 상품가격 결정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또한, 벤처기업은 주로 그 자금의 조달을 주식시장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성공한 벤처기업이 집단소송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집단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타격은 치명적이므로 적극적이며 과감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 ② 남용 및 과도한 비용의 문제 : 집단소송은 피해주주의 권익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소송의 인센티브를 노린 브로커, 기업형 변호사에 의하여 남용될 우려 있음. 따라서 변호사 비용, 복잡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비용 증가, 소송진행상 구성원들에 대한 각종 고지 등을 위한 재판비용, 기타 피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 소송종결 후 분배비용 등 각종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음
- ✓ ③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와의 불일치 : 집단소송은 당사자주의(변론주의)의 파괴, 기관력의 확대, 지나친 사법적극주의 등을 필수적으로 초래하므로 현행 민사소송체계와의 불일치로 법체계의 혼란 초래할 수 있음
- ✓ ④ 소송결과에 타당성 문제 : 집단소송을 제기당한 회사 중 위법행위가 극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변호사와 피고측과의 협상으로 경미한 손해배상액에 합의함으로써 집단구성원들의 피해보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기된 Class Action 중 화해로 종결되는 비율이 95% 이상이며, 화해금액이 청구의 타당성에 따라 연동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소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소한 기업의 실수에 대한 Class Action의 남발을 야기하고, 동 제도가 주가하락의 일부를 보상받는 장치로 전략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됨
- ✓ ⑤ 법원에 과도한 업무부담 : Class Action의 진행은 법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소송허가, 화해·취하에 대한 승인, 소송고지를 비롯한 각종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권한, 직권주의에 기한 소송진행권한, 소송 및 화해로 인한 금액의 분배감독 등) 법원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소송진행을 하지 못하거나 그 진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

-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는 2018-02-22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힘

<p><input type="checkbox"/>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수렴</p> <p><input type="checkbox"/> (도입방식) 피해자의 집단소송 참가방식에 따라 Opt-in방식*(1안)과 Opt-out방식*(2안)의 복수안 제시</p> <p>* 일반적인 민사소송원칙과 같이 참가신청을 한 구성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있음</p> <p>*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피해자 전부에 판결의 효력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t-in방식은 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 Opt-out방식은 제외신청하지 않은 피해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더 바람직 <p><input type="checkbox"/> (공정거래법상 적용범위) 집단소송 대상 위반행위유형에 대해 복수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전형적으로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에 한하여 적용 ○ (2안) 공정거래법상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담합, 재판가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더 넓힐 필요(예:시지남용, 기업결합 등)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관련법상 적용범위) 집단소송 대상 소비자 관련 법률의 범위에 대해 복수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다수의 전형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한정 ○ (2안) 약관법을 제외한 소비자 관련법 전반에 적용 <p>⇒ 법무부 집단소송 특별위원회에 담합, 재판가유지,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등 4개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 제시</p> <p><input type="checkbox"/> (소송건수 제한)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의 집단소송 관여 횟수에 대해서는</p>

집단소송 관여 횟수를 1년에 3건으로 제한하는 방안(1안)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2안)의 복수안 제시

* 현 증권집단소송법에서는 3년간 3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 (소송허가 요건) 집단소송이 허용되는 참가자의 최소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의견 일치

* 현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공모기준이 50인이라는 점을 고려 피해자가 50인 이상일 것을 소송요건 규정

□ (자진신고 자료제출) 담합 관련 자진신고 자료는 법원의 문서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의견 일치

○ 자진신고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우려해 기업이 자진신고를 기피할 가능성 고려

● 논의 쟁점

- 현재 법사위에 집단소송법안이 총 6건이 올라와 있고, 정무위에도 집단소송법안이 제출된 상황
-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 및 폭스바겐 배출 사건, 또 생리대 'ooo'의 유해성 논란이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제기
- 방송통신서비스에도 도입이 필요한 것인지, 도입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1-1-3.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법안 현황 (발제자: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국내대리인제도의 제안이유

-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국내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법상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18.2월),
 - 이후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도 발의됨('18.3월)
- '18.5월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서도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 방통위의 해외사업자 규제사례

- (정보통신망법)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1천2백만원) 부과('14.1월)
 - 구글에 대해 서면조사만 하였으며,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근거로 위반행위 식별
- * 경찰청이 구글로부터 제출받거나 압수한 143개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페이스북이 SKT·SKB·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9,600만원) 부과('18.3월)

□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에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모든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하도록 하며,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가능
 - (정보통신망법) 일정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유출 통지·신고 및 자료제출을 대리하도록 하며, 대리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
 - (위치정보법) 모든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 허가 등 신청, 자료 제출을 대리하도록 하며, 대리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

<법안별 국내대리인제도 비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의무사업자	외국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매출액 등 제한 없음)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위치정보사업자 등 (매출액 등 제한 없음)
대리인의 공개	지정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 정보처리방침에 포함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됨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이용약관에 포함 ※ 이용약관은 방통위에 신고됨
신고 의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의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대리인 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	-	○	○
대리인 미지정시 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리의 범위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 2. 이용자 불만 처리 3.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2.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신고 3. 법 위반 인지·신고 등의 경우 관계 물품· 서류 등의 제출	1.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휴지·폐지 승인, 분쟁조정 등 신청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휴지·폐지, 이용약관 등 신고 3. 경보발송 및 개인 위치정보제공 관련 통계자료 제출 4. 법 위반 인지·신고 등의 경우 관계 물품· 서류 등의 제출
대리인에 대한 현장조사	해외사업자가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대리인에 대한 시정조치	1. 해외사업자가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국내대리인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대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해외사업자가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 해외의 유사 입법례

- (EU GDPR) EU 내에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EU 내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미지정시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처리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주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수행되는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의 일체(수집, 기록, 배포, 삭제, 파기 등)를 의미

- (의무 면제) i) 처리가 간헐적·소규모이며, (제9조 1항에 규정된) 특정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혹은 (제10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및 범죄 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지 않거나, ii)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처리, 또는 iii) 공공기관·기구는 대리인 지정 의무 면제

* 인종이나 민족, 정견, 종교나 철학적 신념, 노조 가입여부가 드러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정보 또는 개인을 특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 또는 건강정보, 성생활,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의 처리

- (대리의 범위) 대리인은 정보처리자(또는 수탁처리자)와 함께(또는 대신 하여) GDPR 준수를 목적으로 한 모든 사안에 대해 처리 의무
- 적용가능한 경우,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시 감독기관에 이에 대한 기록을 제공할 의무 있음

*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 정보처리의 목적,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의 범주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제공 받을 예정인 수령인의 범주, 제3국 또는 국제 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시 적절한 안전조치에 대한 문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예상 시간, 기술 및 관리 안전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등

- 적용가능한 경우, 감독기관은 대리인에게 범위반행위 조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음

- (대리인의 책임)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을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에 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제공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에 한정하고 있음

- o 통상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책목표(개인정보 보호), 대리인의 형식·절차적 성격(실체적 의무부담 주체가 아닌 연락·접촉 창구 성격으로 추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WTO·FTA 등 통상법 위반가능성이 낮음

□ 국내대리인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

- (찬성 견해) 해외사업자들은 대부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가 상이한 경우 포함) 실질적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 다만, 해외사업자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내대리인에게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뉨
- (반대 견해) 자기책임 원칙 및 한미 FTA 상 현지주재(local presence) 조항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반될 우려
 - (자기책임원칙 위반)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법 적용 원칙에 근거하여 볼 때, 대리인의 경우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 가능
 - (한미FTA 위반)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려면 국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물적·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 * 한미FTA 제12.5조(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또한, 국내 동종 부가통신사업자와는 달리 국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국외사업자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 * 한미FTA 제12.2조(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기본방향

○ 국내 입법발의 된 법안의 특징

① 대리인에게 법적 책임 부과하는 방안(사업법 개정안과 유사)

-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② 절차적 의무만 대리하도록 하고 법적 책임 부과하지 않는 방안(망법 및 위치정보법 개정안과 유사)

- 신고, 자료 제출 외 의무 부과 가능한 범위(예: 민원처리 등) 검토
- 대리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기본방향) 기본 법원칙 및 한미FTA 등 통상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의무사업자의 범위) 국내 영향력이 미미한 해외사업자에 대하여는 대리인 지정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과할지 여부 및 구체적인 기준(예: 국내이용자수, 국내매출액 등) 검토 필요

1-1-4. 역차별 현황 및 주요 쟁점 정리 (발제자: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1, 2차 회의에서 제시된 사업자 및 위원들의 견해를 역차별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임

□ 역차별 현황

○ (역차별의 의미) 규제로 인한 역차별에 대하여 크게 i)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역차별, ii)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됨

①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역차별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재정리

- (불공정행위) OS/앱마켓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지 않음
 - (OS) 선택제 앱 가이드라인은 구글과 애플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16년 금지행위 개정시 '부당하게'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됨
 - (앱마켓)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수단 강제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네이버 스토어팜의 결제수단 강제만 문제삼음
- (위치정보) 페이스북의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이용약관 등을 규제하지 않음
 -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기본적 기능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위치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
 - 국내사업자는 위치정보법 및 방통위 지침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정형화된 위치정보 이용약관을 두고 있는 반면, 페이스북은 다른 형식의 이용약관 사용

- (법인세)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음
 - 이는 불공정한 과세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국내시장의 경쟁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시 기본적인 자료 확보를 어렵게 했고, 정부가 국내사업자만 규제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됨
- (가이드라인)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사업 영위 시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반면, 해외사업자에게는 실효적인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가이드라인은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량준칙의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신설

②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 SKT,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재정리

- (경쟁정책) 기간통신시장은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다양한 경쟁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부가통신시장은 시장 집중과 불공정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경쟁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경쟁상황평가는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방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할 필요
- (트래픽 유발에 대한 책임)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부담이 따라야 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품질 유지 의무에도 일부 기여하는 것이 타당

- 국내 무선트래픽의 대부분은 국내외 대형플랫폼의 동영상·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차지(약 65.5%)하므로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트래픽 유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는 필요
- (검토)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번 의제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에 한정하여**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는 다른 의제(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개선, 망중립성, 망이용대가 개선 등)에서 논의
-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방안**은 먼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에 있어 법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규제대상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규제집행에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강화방안

-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관할권 및 집행력 강화방안으로, 역외적용 규정 신설, 국내대리인제도 및 임시중지제도 도입 등이 제시됨
- ① 역외적용 명문화
 - (법안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에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규정
 - (불필요 견해) 관할권 해석을 통해 역외적용 가능하므로 규정 불필요
 - 또한, 규정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사안별로 역외적용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찬성 견해) 역외적용 규정이 없어도 관할권은 인정되지만, 이를 명확히 하고 역외적용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 발생

②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 (법안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대리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하여 사업자에게 책임 부과
- (찬성 견해) 해외사업자들은 대부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가 상이한 경우 포함) 실질적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 다만, 해외사업자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내대리인에게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뉨
 - 국내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연락창구 역할만 부여하더라도 집행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반대 견해) 자기책임 원칙 및 한미FTA 상 현지주재(local presence) 조항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반될 우려
 - (자기책임원칙 위반)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법 적용 원칙에 근거하여 볼 때, 대리인의 경우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 가능
 - (한미FTA 위반)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면 국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물적·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 또한, 국내 동종 부가통신사업자와는 달리 국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국외사업자의 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③ 임시중지제도 도입

- (법안의 내용) 정보통신망법에 3회 이상 시정조치 불이행,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찬성 견해)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무시하면서 서비스 제공할 경우 임시중지명령 필요
 -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보다는 문제되는 부분만 분리하여 조치할 필요
- (반대 견해) 헌법상 기본권(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 (최소침해 원칙 위배) 기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
 -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서비스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 위배
 - (법익의 균형성 위배) 얻고자 하는 공익이 불확실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월등하게 큰 상황임
 - 현행법 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임시중지제도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적음
 - 반면, 서비스가 중지되면 유사서비스로 쉽게 대체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다수의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됨

□ 규제대상 선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 특정 규제집행에 있어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하에서는 자료 수집·분석의 범위 및 심도에 따라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의 순으로 검토

① 경쟁상황평가

- (법안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하여만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실시
- (찬성 견해) 초융합되는 ICT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하여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사전규제와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후적인 감독 및 합리적인 사후규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반대 견해) 경쟁상황평가는 기간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대상 및 수단 검토에 활용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
- 또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일반화된 시장확정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았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시장확정 시 논란 발생 우려

② 실태조사

- (국내외 사례) 공정위는 '08년 인터넷포털산업의 개요,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주요국 시장 동향, 경쟁법적 이슈 등을 분석한 바 있으며,

- 국내외 통신 규제기관은 사전규제보다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조사한 사례가 있음

〈 국내·외 통신규제기관의 부가통신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

구분	수행기관	분석명	부가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주요 분석자료
국내	과정부	경쟁상황 평가 ('10년~)	부가서비스 개념·구조·일반현황 및 주요경쟁이슈 등	외부자료 및 자체 설문조사
국외	FCC (미국)	Mobile Wireless Competition Reports ('10~'14년)	점유율, 이용 가능 앱 수 등	외부자료
	Ofcom (영국)	Communications Market Report('04년~)	이용자 그룹, 앱 유형, 사업자별 이용률 등	자체 개발 App
	총무성 (일본)	경쟁상황 평가 ('11~'12년)	유형별 점유율 등	외부자료 및 자체 설문조사

- (추진방안)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매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제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외사업자의 국내매출액 등 제출자료의 신뢰성 확보
- 논란이 되는 시장확정을 통한 정합적인 경쟁상황평가보다는 주요 서비스를 선정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실태 파악 및 변화 동향 모니터링
- 다만, 직접적인 경쟁 이슈 파악보다는 전반적 시장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구조 등에 중점

③ 통계보고의무 부과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별 매출액 등을 과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방통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다만, 현행 서비스 분류체계가 경쟁정책 및 사후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완 필요

- 과정부와 통계이용목적이 달라 통일된 보고양식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통위의 법 집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방통위에 대한 통계보고의무 부과 규정 신설 검토

<현행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통계보고 양식>

● 부가통신서비스

품 목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수입액 (백만원)	유료 가입자수 (명)	보유회선수(M)		
						T1미만 (회선)	T1이상 (회선)	총용량 (M)
인터넷접속기반 서비스								
인터넷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인터넷 관리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스토리지 공유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 서비스						
		보안 관리 서비스						
		도메인 관리 서비스						
		기타						
	인터넷 지원 서비스	Co-location 서비스						
		콘텐츠 전송 지원 서비스						
		기 타						
부가 통신 응용 및 중개 서비스	부가 통신 응용 서비스	고도 팩스 서비스						
		신용카드 검색(CCIS) 서비스						
		전자문서교환 (EDI)서비스						
		원격통신 서비스						
		전자지불 서비스						
		온라인 정보처리 서비스						
		온라인 예약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타 부가통신 응용서비스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 유무선 콘텐츠 서비스

품 목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수입액 (백만원)	유료 가입자수 (명)	보유회선수(M)		
						T1미만 (회선)	T1이상 (회선)	총용량 (M)
유무선 콘텐츠	음성콘텐츠 제공 서비스	음성콘텐츠 제공 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온라인콘텐츠 제공 서비스	웹캐스팅 서비스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인터넷게임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e-러닝)						
		전문정보 제공 서비스						
		디지털 영상 제공 서비스						
		디지털 음향 제공 서비스						
		디지털 출판물 제공 서비스						
		기 타						
	인터넷 검색 포털 서비스							
	인터넷 광고 서비스							
	기타 콘텐츠 서비스							

1-1-5.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인허가 등 명목과 서비스 제공 주체 불일치 문제 [발제자: 김안장 박민철 변호사]

1. 논의의 배경

-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은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술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전통적인 서비스 업체와는 달리 다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지 자회사 또는 영업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도 낮음. 즉, 더 이상 자회사 또는 영업소의 설립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사에서 세계 각국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더라도 해당 법인이나 지점은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함.
- 한편, 인터넷 사업자들은 끊임 없는 사업 영역 확대와 서비스 융합을 통해 점점 더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들의 서비스 분야는 전통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접근 가능한 다양한 분야로 계속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음.⁸⁾ 이에 따라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의 종류와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음.

2018. 7. 1.자 디지털타임스 보도

“글로벌 인터넷공룡 무한질주...전통산업 근간마저 뒤흔든다”

글로벌 인터넷 공룡들의 영토 확장 기세가 무섭다. 탄탄한 사용자 기반을 앞세워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전통산업을 흔들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미국 50개 주 전체에 의약품 유통 면허를 가진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필팩은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처방약을 포장, 배달해주는 온라인 약국이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아마존은 진정한 유통업계의 포식자로 떠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글로벌 IT 공룡들의 영토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자는 해외 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령 또는 실무상 각종 허가,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본사 명목이 아닌 국내 자회사 명목으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8)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로서 유통(전자상거래), 언론, 의료 등이 있음

- 국내에서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서비스 중에는 해외에서는 인허가는 물론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함(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진입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해외 사업자가 해외 각국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동일하게 국내에서 제공하면서, 관련 인허가 등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중하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함.
- 더욱이 인허가 등 제도를 운영하는 국내의 각 법령은 해외사업자가 직접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각 법령에 따라 해외 본사 명의로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제도의 통일성 미비는 해외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서비스를 위한 인허가 등 취득 명의를 일관되게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사업자인지 혼란을 야기하고, 규제기관이 실제 법 집행 시 규제 대상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한편, 근래 국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상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외사업자들의 경우, 국내에서 자회사 명의로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 등을 하는 방식으로 해외 본사는 국내법상 규제의 적용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무상 해외사업자 명의로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법령상 현실적으로 해외사업자가 준수하기가 매우 곤란한 요건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해외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제의 형평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역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상 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해외사업자도 준수가 가능하도록 국내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해당 국내법 제도가 국내외사업자의 역차별을 야기하는 글로벌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만의 규제인지, 나아가 이러한 규제에 대한 위반의 효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내외사업자에게 공히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하에서는 인허가 명목과 실질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각종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2. 부가통신사업 신고 명의를 문제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서비스 제공 중지명령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문
<p>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p> <p>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제92조(시정명령 등)</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p> <p>제96조(벌칙)</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6.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p>

- 과거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시 절차상 담당공무원의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신고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이나 해외사업자는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⁹⁾ 등으로 인하여 해외사업자 명의의 직접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내 규제기관 역시 행정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법인을 통해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음.¹⁰⁾¹¹⁾

9)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참조

10) 법무법인 세종,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 연구” (2017. 11.), 53면

11) 다만 이러한 행정 관행은 서비스 제공자와 명의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앞서 지적한 법령상 제출서류 등의 요건, 지방세 과세 및 납부 등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부수적으로는 행정 연락상의 편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과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지 않는 한국 자회사 명의로 신고하거나, 여전히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해외 본사가 제공하지만 형식적으로 한국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취하였음.
- 또한, 방통위는 해외사업자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2016. 5.경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는 해외사업자가 한국 자회사의 명의로 부가통신사업신고가 가능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규제정보포털 과제정보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1)'에 대한 답변 중 발췌	
	○ 현행 금지행위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각종 진입절차(허가·등록·신고)를 이행한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애플코리아('10.8.11. 신고), 구글코리아('15.3.5. 신고), 넷플릭스코리아('16.1.14. 신고)
	○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금지는 국내의 판례에 비추어 해외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2004두11275판결, ECJ 구글 스페인 판결 등)되므로 차별 없음
	※ 방통위에서는 구글 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삭제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한 적 있음('14.1.28)

-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 9. 1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을 개정하여, 부가통신사업 신고 시 필요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절차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법인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발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u>(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u> ※ <u>외국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u>

- 그럼에도 여전히 해외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방법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은 등록세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한 신고를 유도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 법인을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존재함. 결국 법령과 서식상의 장애만 제거되었을 뿐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원칙적인 신고 방법이 무엇인지, 국내 자회사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해외사업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상·실무상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이에 더하여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외국법인은 한-미 FTA 및 WTO 등 국제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면제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내 자회사가 부가통신역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회사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관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짐.¹²⁾
 - 명확하지는 않지만, 과기부의 입장을 선해하면 해외사업자는 법령상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증명서 제출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그 중에서도 한국과 국제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의 법인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국내 자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자회사를 통하여 의무적 또는 선택적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됨.
 - 방통위 역시 해외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대한 안건 의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해외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신고 필요성에 관한 입장을 밝혔음. 방통위는 과기부와 마찬가지로 한-EU FTA, WTO 등의 국제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당사국의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2018. 3. 21.자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WTO GATS 및 FTA 협정에 따라 해당 협정국 소관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의 국경 간 공급을 허용하고 있어서 해당 협정 소관 해외사업자가 해당국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국경 간 공급방식으로 부가통신사업 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2) 국내 자회사가 부가통신역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자회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선택사항으로 국내 자회사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내 자회사의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그러나 FTA 등 국제협정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 개방의 경우, 이는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대해 수량쿼터 등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내국민대우 등을 보장한 것에 불과할 뿐 국내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신고까지 면제해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이론적으로 가능함.
- 또한 과기부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가 부가통신역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나, '간접적인 관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간접적인 관여의 경우에만 해당 국내 자회사 명의의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이 경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본사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등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음.
- 결국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신고 서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자로서는 본사 명의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부가통신사업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지, 혹은 국내 자회사 명의로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사업자의 국내 자회사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주체와 신고 명의자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 국내 자회사만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해외 본사는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 또는 법령의 준수에 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된다는 주장과 해외사업자 또한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실제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국내 자회사에 대해 실제 서비스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등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 의무 이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 및 검토를 통한 국내법 체제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내법상 규제 자체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것인지, 또는 이를 해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당초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문제를 떠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역무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음.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부가통신역무로 보아 진입규제를 하는 것 자체의 적정성이 의문인 상황에서, 국경의 개념 없이 전세계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진입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에 대하여 “규제와 지원정책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항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¹³⁾ 대상 범위의 합리화 등 체계 분류상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해외사업자 명의의 직접 신고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 도출과 함께 신고의무 면제 또는 형사처벌 폐지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에 고유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생각됨.

3. 기타 법령상 유사 사례

- 인허가 명목과 서비스 제공주체의 불일치 문제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각기 다른 법령상 인허가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있음.

(1) 통신판매업 신고¹⁴⁾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신원에 관한 정보를 밝히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나, 시행령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국 법인의 직접 신고 방식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 KISDI “부가통신사업 유형분석 및 지원정책 연구” (2001. 12.), 제111면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그러나 신고 절차상 담당공무원이 신고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어 외국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를 하기 어렵고, 이러한 실무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외국 법인의 경우 자회사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2)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¹⁵⁾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하거나,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상의 허가 및 신고의 경우,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방통위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했기 때문에,¹⁶⁾ 외국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허가 신청·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하지만 외국 사업자인 우버(Uber B.V.)가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2015. 1.경 방통위의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된 이후 2015. 3. 6. 우버가 본사 명의로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다수의 외국 법인의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가 수리된 바 있음(Niantic, Inc., SMARTTHINGS, Inc. 등).
 - 우버의 미신고 영업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하여 원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방통위의 입장이 언론 보도 되기도 하였음.¹⁷⁾
- 그런데 최근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상 위치정보법 허가신청서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서 서식을 보면, 외국 법인의 경우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담당자로 하여금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16)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9조 제2항

17) 2015. 3. 8.자 연합뉴스 “우버,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완료”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서식 1]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①허가신청서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에 한함) 1부.
	②변경 허가서	1. 위치정보시스템 등 시설 변경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정보시스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허가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②변경 허가서	위치정보사업허가서

- 이러한 개정은 상법 제614조 제1항이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임.
- 결국 현재 관련 서식에 따르면 외국사업자가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립하여登記하거나 대표자가 주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외국 사업자의 직접 허가 취득 및 신고가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¹⁸⁾

- 인터넷포털 등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의 뉴스를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것으로 신문법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의 등록이 필요함.
- 해당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하여야 하므로 해외 사업자가 이를 직접 등록하는 것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기사배열책임자에 대한 국적요건(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이 규정되어 있어 외국 사업자는 당초 법령상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 각종 책임자 지정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¹⁹⁾ 청소년 보호책임자,²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²¹⁾ 위치정보관리책임자²²⁾ 등의 각종 책임자 지정의무가 발생함. 한국 자회사 명의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한 해외사업자의 경우, 책임자 지정에 관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즉, 해외 본사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 국내 자회사 명의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실제 서비스에 관여할 수 없는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인허가 명의자 소속이 아닌 해외 본사의 임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하는 것 역시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음.

4. 개선 방향

(1) 국내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국내법은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전반에 대해 부가통신사업 신고라는 진입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인허가 등 진입규제의 적용대상이 됨. 이와 같은 진입규제 중 다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특유의 규제로서,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자유롭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해외사업자의 인허가 등 명의 일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내법상 과도한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가통신사업과 같이 인허가 제도가 유지되는 분야에 비해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낮거나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신고' 제도의 경우 그 준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즉, 국내외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의 특별한 규제들에 해외사업자를 끼워맞추는 방법보다는 국내의 규제를 보다 선진화하고 실질화해서 국내 인터넷서비스 시장 환경에서 누구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가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국내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등의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제1항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

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

(2) 행위 주체와 신고 명의 주체를 일치시켜 법 집행력 확보(해외사업자 직접 신고 시 법규정상/실무상 장애요소 개선)

• 인허가 제도가 유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해외 본사가 직접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상 또는 실무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행위 주체와 책임 주체를 행정상으로도 명확히 일치시키고, 법 집행력의 확보 가능성을 제고 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과 같은 방식 하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과는 관련이 적어 범위반 상태의 시정이나 개선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국내 법인에 대하여만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규제가 행해질 수 있음.

- 특히 이와 같은 법제도 개선은 개별 법령수준에서 각기 추진되어서는 실익을 얻기 어려우므로,²³⁾ 허가, 등록, 신고 등 사전규제의 수준별로 통일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법령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임.

1) 우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외국 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회사 등이 아닌 해외 본사 명의로 직접 신고하도록 행정 해석 및 관행을 명확히 하여야 함. 또한 행정 해석 또는 관행이 FTA 및 WTO 등 국제협약에 따른 신고 면제와 유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본사 명의로 직접 신고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앞서 언급한 위치정보법 허가신청 및 신고서 서식 개정의 근거가 된 외국회사에 관련 규정인 상법 제614조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상법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 상법이 외국회사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은 1963. 1. 1. 최초 시행 시부터였는데, 당시의 현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직접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던 시기였음.

23) 예컨대 사업자가 경영하려는 부가통신사업의 내용이 통신판매나 위치기반서비스임에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서비스 관련 신고 중 어느 한 쪽만 해외 본사 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동 조항은 이후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물리적인 영업 장소를 국내에 두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국내 영업소 설치와 대표자 거주를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음.²⁴⁾
- 그러나 '대한민국 내의 영업'이라는 요건은 여전히 인터넷 산업의 서비스 태양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며,²⁵⁾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 기업에게는 영업소 설치나 국내 대표자 거주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논의되었음에도 이는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방식이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서식과 같은 관련 법령 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²⁶⁾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사편)” (2006) 발췌
(559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아마존의 경우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대표자가 한명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영업한다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560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차라리 제614조 제 1 항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아마존이나 증권업체가 영업소 없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의 체결지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불분명하고, 그럴 경우에 영업소라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대표자라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소 설치의무와 대표자를 두어야 할 의무는 다시 생각해보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61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특별한 법을 가지고 예외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대표자 하나 정도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562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면 이것은 아까 김준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대표자 중 1인 이상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은 특별법으로 미루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4) 정동윤, “주식 상법(제3편)” (2014. 12.), 52면

25)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사편)” (2006), 559면 이하

26) 제616조와의 모순으로 인하여 상법에 따르면 여전히 영업소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입법본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함. 정동윤, “주식 상법(제3편)” (2014. 12.), 61면 이하

- 결국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허가 및 신고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국경의 구분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신산업의 출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1960년대에 도입된 기본법 규정이 현재의 서비스 형태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나아가 현지 주재 요구를 금하는 FTA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등의 문제로 국내에 본사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다른 국내 자회사를 통하여 인허가를 취득케 하는 등의 우회적인 시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절차상의 제한임.
 - 상법 제614조 규정은 널리 거래계에 적용되는 대원칙이라기보다는, 상기 회의록에서 발견되는 논의의 취지와 같이 특별법 또는 개별 법령상의 인허가 요건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서식 등을 통해 해외 본사가 직접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에 맞는 타당한 규율임.
 - 이러한 결론은 기존 우버 등의 사례에서 위치정보법에 근거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 입장과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 3) 그 외에 **통신판매 신고 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직접 등록 등의 예외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전통적인 언론이 아님에도 신문사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게 요구되는 국적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등을 개선하여 인허가 명목과 서비스 제공주체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신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개선 (지나친 형사벌 제재조항 개선)

- 한편, 다수의 진입규제가 국내 특유의 제도로써 그 위반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익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제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재 수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여 규제기관으로서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을 낮추는 결과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시정을 우선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 특히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신고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서,
 - 1) 우선 기존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와 같은 국내규제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지, 현재 규제 및 시장환경에 비추어 완화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2) 나아가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이 형평성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법상·실무상 장애요인을 개선해야 함. 이러한 개선 과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선만으로 부족하고, 관련한 개별 법령 및 제도를 함께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고, FTA 등 국제협정까지 모두 포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 그와 같은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간 연계·협조 하에 각종 인허가 등의 실질과 명의 불일치 상태의 해소를 가능한 한 일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또한 지나친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 사실상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제재 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1-6.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국제공조체계 강화 방안 (발제자: 가천대 최경진 교수)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국제 공조체계 강화 방안

국제적인 이용자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1

논의 배경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2

국내외 규제 역차별을 둘러싼 논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규제 적용의 근거인 매출액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 발생

【 앱마켓 매출 규모 추이 】



* 출처: 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48976

【 규제 형평성 논란 발생 】

연합뉴스
네이버 "포털 광고 규제 전 구글 등 '깜깜이 매출'부터 밝혀야"
2017.01.26 11:22

데일리안 E+
네이버 "포털광고 규제, 구글·페북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방송위, 이달 초 인터넷기업 광고 규제안 검토 시사
'구글·페이스북 등 유한회사도 국내 광고 매출 등 경영 정보 고시 선행필요'
등록 : 2017-01-26 12:12

【 동영상 광고비 상위 매체 (추산) 】

- '16년 기준 유튜브(1,168억원)와 페이스북(1,016억원)의 동영상 광고비는 네이버(456억원) 및 다음(340억원) 등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
- * 출처: <http://www.zdnet.co.kr/news/newsView.aspx?articleId=20170219103202&type=detail>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3

국내외 규제 역차별을 둘러싼 논란

글로벌 기업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 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



머니투데이
구글 플레이 매출 韓 3위...세금은?
2017.01.17 09:00

이데일리
구글의 '안드로이드 검색 앱 기본 탑재', 유럽서 8주 과징금 받나
등록시간 : 2018.10.14 07:41

디지털 타임스
유럽에선 이미 '구글세'로 2000억씩 걷는데, 한국은...
등록 : 2018-03-24 18:16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는 이미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지난 1월 구글은 영국 세무당국에 밀린 세금 1억3000만 파운드(220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이탈리아 세무당국에도 1억5000만 유로(약 2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도 구글과 세금 협상에 나선 상태다."

KBS NEWS
러 독점규제기관, 구글에 75억원 과징금 부과
등록 : 2018.06.12 19:13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4

국내외 동향

September 7,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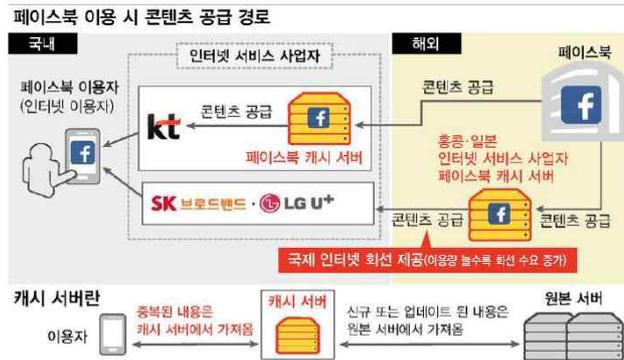
KYOUNGJIN CHOI

5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피해 사례

페이스북, 임의 라우팅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 피해 발생

페이스북의 임의 라우팅 변경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국내 ISP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어 국내 이용자 피해 발생



- 페이스북은 KT를 경유하여 이동전화 사업자로 전송되던 페이스북 트래픽을 SK브로드밴드의 국제망으로 우회 전송(임의변경)하여 SK브로드밴드의 국제망에 과부하가 발생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을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페이스북 소제기)

*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할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으며, * 응답속도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지표로서 2.4배 또는 4.5배 응답속도가 저하된 것은 접속품질이 과거 수준에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용약관에서 정함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은 무당항점들을 고려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6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피해 사례

해외사업자(텀블러)의
성인물 무방비 노출 사례

방통위가 시정 요구한 성매매 및 음란 정보 유통물의 70%가 텀블러를 통한
게시물이었으며, 방통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텀블러 측은 미국 회사임을 들어 거부

- 최근 3년(2015~2017년6월)간 성매매, 음란 정보 유통으로 방통위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게시물 16만 2793만 건 중 70% 이상에 해당하는 7만 9425건이 텀블러 게시물임
- 적발사례는 성기 노출 사진, 동성간 성행위 등이며, 텀블러에는 이러한 음란 사진 및 몰카영상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방통위는 음란물 삭제 협조 요청 및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 시스템'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텀블러 측은 모두 거부함
- 텀블러 측은 '우리는 미국 법률의 규제를 받는 미국 회사이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며, 성인 콘텐츠는 당사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변



Tumblr,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미디어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를
취급하는 미니 블로그형 서비스.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18개 국가의 언어를 지원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7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피해 사례

구글 KIDS 사례(엘사게이트)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성애' 등을 퍼뜨리는 영상들이 유튜브상에서 어린이
애니메이션 등으로 분류되어 국내에도 여과없이 검색/노출됨

- '어린이 채널'로 보이는 채널들이 엘사나 미키마우스, 스파이더맨, 힐크 등의 유명 캐릭터로 '어린이용 동영상'을 엄청나게 양산하고 있음.
- 문제는 양산되고 있는 이 영상들이 평범한 영상이 아닌 성적 패티쉬들을 어린이 만화로 풀어놓는 식임
- 인분, 소변을 먹거나 신체 상해, 알코올 섭취 등 하드코어한 패티쉬들을 담은 내용의 영상들이 엘사 등의 캐릭터를 통해 대량으로 양산, 유포되고 있음
- 유튜브가 해당 콘텐츠들을 알고리즘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영유아 이용자들에게 필터 없이 전달 되도록 했음. 해당 영상들이 어린이 애니메이션 등으로 분류되고 노출되어 엘사게이트로 명명



Elsa Drinks From A Toilet! Spiderman's Favorite Toy! (Superheroes)

Frozen Elsa sits in the toilet and farts! Spiderman starts to play with his new toy. Frozen Elsa. Credits: 'March of the Spoons' & 'Funky Chunk' Kevin MacLeo...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8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피해 사례

구글, 위치정보무단수집

구글은 사용자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



- 스마트폰 이용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지국과 접속해 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이때 연결되는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를 구글이 수집
- 스마트폰이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알면, 해당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미터 범위로 좁힐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특정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 등을 할 수 있음
- 구글코리아는 "메시지 알림 서비스의 품질 개선 기술 테스트였으며, 스마트폰이 최근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구글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었음. 하지만 구글은 스마트폰이 보내오는 기지국 정보를 받거나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함
- 기지국 정보를 (개인) 위치정보로 인정하는 경우에, 개인위치정보는 특별히 보호받는 정보로서 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9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피해 사례

매칭 사이트, 개인정보노출피해

기혼자 대상 매칭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 노출 피해 발생

- 애슐리 매디슨이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됨
해커 집단인 '임팩트팀'이 애슐리 매디슨을 운영하는 모기업 아비드라이프미디어를 공격해 회원의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 기록, 이메일 등 주요 개인정보를 확보함
- 한국 이용자는 90만명으로 추정되며,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 발생
- 애슐리 매디슨도 미국 법률을 따르는 미국 기업으로 방위위 등 규제당국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미지수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란 문구가 첫화면에 있는, 기혼자 대상 매칭사이트. 서버는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은 간혹죄 폐지 후 접속 가능하게 됨.

September 7,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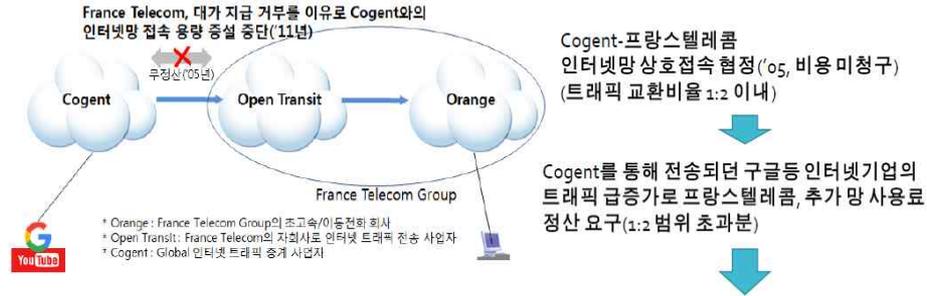
KYOUNGJIN CHOI

10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 사례(해외)

구글 망 이용대가 납부 사례

프랑스 공정위, 프랑스 텔레콤이 구글의 트래픽을 중계하던 Cogent에 대해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로 망증설 중단한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2012)



(ARCEP) "인터넷 업계에서 트래픽 교환비율 격차가 (통상 1대2를 초과할 경우) 클 때는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인터넷업계의 관행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을 프랑스 공정위에 전달

(프랑스 공정위) "프랑스텔레콤과 Cogent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비대칭적으로 크게 뒤바뀐 상황에서 프랑스텔레콤이 대가 지급을 요구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Cogent는 프랑스 공정위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송하였으나, 상급법원에서 모두 기각됨

이후, Cogent를 통해 트래픽을 전송하던 구글은 프랑스텔레콤에 직접 망을 연동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알려짐(2013년 1월 Orange CEO 인터뷰)

September 7,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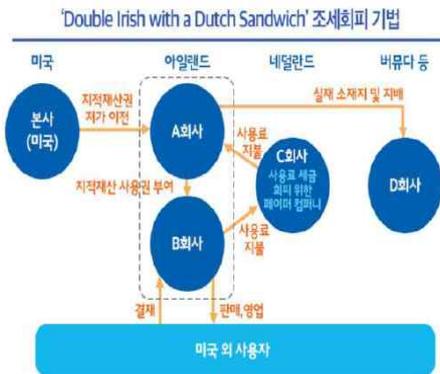
KYOUNGJIN CHOI

11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 사례(해외)

각국의 구글세 관련 동향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가간 조세협약의 미미점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중임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식

1. 저세율 국가로 사업장 이전, 저세율 부과
2. 지적저작권을 비용으로 처리, 수익 Zero화
3.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tax haven)로 수익 이전

• 구글은 2016년 아일랜드 법인에서 €226억의 매출이 발생하였지만 조세 회피방식을 통해 아일랜드 당국에 실제 납부한 세금은 €0.478억(매출 대비 0.2%)에 불과

• EU의 주요 4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은 EU에 구글세 도입을 위한 공동서한 발송(타기업 수준으로 세금부과 필요주장)

영국

외국계 기업이 인위적으로 영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영국에서 다른 국가로 우회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25% 세금부과 (2015년 4월 도입)

호주

'17년 7월부터 구글세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인위적으로 수익을 다른 국가로 우회할 경우 자국 법인세(30%)보다 높은 4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12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 사례(해외)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EU는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일반 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정('18년 5월 시행)

GDPR은 그 동안의 인터넷 등 과학기술적 발전을 고려함

- 정보주체(data subject)를 보다 더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와 수탁처리자(data processor)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의 편의를 증대시킴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 사이의 균형 유지

특히, 해외사업자에 의한 EU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기준을 다각적으로 규정

- 개인정보가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의 수준보다 못 미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불가하며, EU는 해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인정보이전을 허용할 만큼 적합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음
- 해외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함(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존재, EU가 채택한 "표준개인정보보호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등)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13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 사례(해외)

독일, 혐오 게시물 규제

독일 연방의회는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 영상 등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에 최대 5,000만유로(약 650억)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법안 통과('17년 6월)

명백한 혐오 발언, 표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24시간내 조치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 반복되는 경우 과징금적인 벌금을 부과해 인터넷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 자정에 나서도록 유도

배경 History

- 독일 정부가 지난해 2개월 간 혐오 표현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증 혐오, 증오를 부추기거나, '반유대' 등의 혐오 표현에 대해 신고를 받고도 페이스북은 그 중 46%, 트위터는 1%만 삭제한 것으로 조사됨
- 독일 정부가 혐오 발언을 적극 삭제, 차단하라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직접 경고('16년 11월),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 비율이 계속 같은 수준이면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뮌헨 검찰이 '인증혐오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한 독일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등 혐오 표현을 방치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14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 사례(해외)

EU, 스트리밍 콘텐츠의 유럽 콘텐츠 유지 의무화(20%)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콘텐츠의 최소 20%를 유럽 콘텐츠로 유지 의무화 (방송영화진흥법안, 2016)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콘텐츠의 최소 20%를 유럽 콘텐츠로 유지 의무화 (방송영화진흥법안, 2016)

방송영화 부문에서 유럽산 콘텐츠가 미국산 콘텐츠에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방송사업자에게만 의무화하고 있는 콘텐츠 쿼터제를 스트리밍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

- 당시 EU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방송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 비율은 매출의 약 20%인 반면, 스트리밍 사업자는 그 비율이 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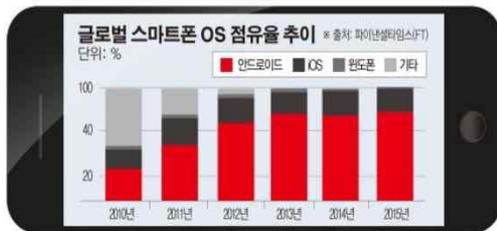
넷플릭스는 EU집행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쿼터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사업자들이 값싼 타이틀을 사들이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빚을 뿐"
 "숫자를 못 박은 쿼터제는 시장을 질식시킬 위험이 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을 이루는 것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 사례(해외)

EU, OS 지배력 규제 사례

EU, 안드로이드 O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기기업체에 구글검색, 크롬 등 자사 앱을 사전 설치케 하여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 ('16.4월 1차 조사 결과 발표)



⇒ 반독점 위반으로 최종 결론 나서 유럽 사법재판소(ECJ)에서 확정될 경우 최대 7억 달러의 벌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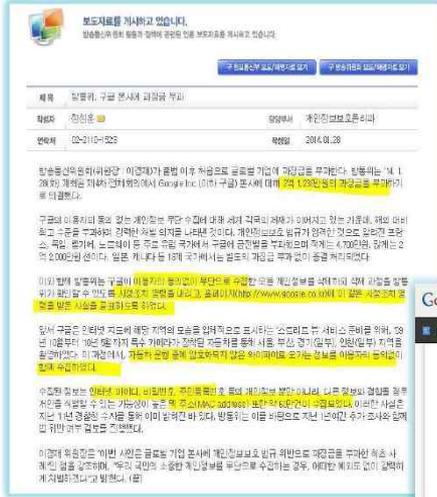
- EU법에 따르면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 가능 (구글의 15년 매출은 745억달러)
- * 마이크로소프트(MS)는 반독점 위반행위로 4차례 17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낸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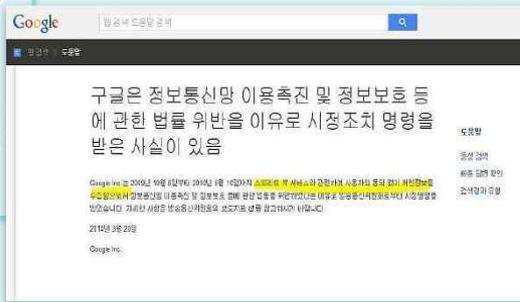
정부의 대응 사례

방통위, 구글 과징금 부과 사례

방통위는 14.1월 구글 '스트리트뷰'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구글본사에 2억 1천 2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방통위는 구글의 동일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에서 해외 대비 최고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17

정부의 대응 사례

기재부, 구글 부가세 부과 사례

기획재정부, 14.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15.7월 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앱마켓 거래에 대해 부가세 부과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오픈마켓(SK, KT 등의 앱스토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개발자 앱) 국내 개발자 신고·납부 (해외 개발자 앱) 국내 오픈마켓사업자 등이 신고·납부 해외 오픈마켓(구글·애플 등의 앱스토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개발자 앱) 국내 개발자 신고·납부 (해외 개발자 앱) 해외 오픈마켓사업자 모두 납부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 동) (과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개발자 앱)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제적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부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2014. 8. 6.

⇒ 정부는 '국내개발자와 해외 개발자간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유로 제시

4. 국내 구글세 논의

- (부가세): 기재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부가세 징수
- 부가세 문제는 유럽연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국"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중(*MOSS 제도: 간편 온라인사업자등록 후 앱마켓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
- 지난 2010년부터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 증가 및 앱 마켓 사업의 급성장에 따라 국내 앱 마켓인 T 스토어와 내 이베앱스토어 사업자와 앱 개발사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왔음.
- 그리고 해외 앱 마켓(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국내개발자가 앱을 판매한 경우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 하지만 해외 앱 마켓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앱 콘텐츠 구매 시 해외 개발자나 해외 앱 마켓은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 발생.(일본의 경우와 유사)
- 이에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앱 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유통(책, 음악, 영화파일 등)에 대해 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2015년 7월 1일 이후 공금하는년부터 부가가치세(VAT) 과세
- 부가세법(해외 플랫폼 사업: 국내 앱개발자-직접 부가세 신고 납부, 해외개발자-플랫폼사업자 신고 납부)
- 유럽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운영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 장소는 소비자의 소재지로 보며, 앱 마켓이 사업자 등록지국에 각각 전체 앱 소비자 부가세 납부, 등록지국은 소비자국에 부가세 배분하는 방식 채택

출처 : 디지털경제의역차별이슈, 구글세 이후의 세상 (하윤금, '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발제문)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18

정부의 대응 사례

방통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표] 2017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서비스업 사업자 평가등급 ⇒ 2017년부터 포털도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정식 평가 대상
우수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대우우수 (95점이상)	우수 (90점이상 ~99점미만)	양호 (85점이상 ~90점미만)	보통 (80점이상 ~85점미만)	미흡 (80점미만)
이동전화	SKT, KT	LG+	-	-	-
인터넷	에스엔	SK텔레콤, 한국 케이콤, SK브로드 콤, KT, LG+, KIMCOM	미디어그룹	-	에릭스텔레 콤 이자와보일
인터넷전화	KT, SK, LG+	-	-	-	-
초고속인터넷	SKT, KT, SK, HCN, LG+	C텔, LG+, 세일비, 알티이 프, 티브로드	-	-	-
포털	-	네이버	카카오, 구글, SK 컴즈	-	-
계	11개	10개	4개	-	2개

출처: 뉴스1(17.12.21.)

"한국에서 돈만 끊어가고"... 구글-애플, 이용자 보호는 '뒷'

해결은 방통위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

(이투데이 2017.12.21. 18:05 송고)

기사보기 | 섹터뉴스 | 구독하기 | 공유하기 | 트위터 | 페이스북 | 댓글



방통위 방통위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 구글-애플, 이용자 보호는 '뒷' 해결은 방통위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 (이투데이 2017.12.21. 18:05 송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들이 허술한 국내 이용자 보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애플은 정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해 내년부터 도입될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평가 실효성이 논란이 제기된다.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19

정부의 대응 사례

BEPS 방지 관련 국제동향

'15.11월 BEPS방지를 위한 패키지 승인 이후 OECD와 G20회원국은 Action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다양한 입법 논의를 진행 중 (OECD 회원국을 포함 총 96개국 이 참여, '17.4.월 현재)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 (디지털경제 하의 조세회피)

구분	과제명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Action 2	혼성분할치 거래 효과의 해소
Action 3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Action 4	이자공제와 기타 금융비용에 관련된 세입자의 제한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해탈의 부여 방지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Action 8-10	정상가격선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Action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
Action 12	의무보고규정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협약 개발

자료: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5년 제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p.44

OECD의 BEPS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를 전제로 BEPS가 발생하는 단계별로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조세제도를 점검하여 디지털 경제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는 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Action 13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 보고서 서식 제출을 의무화, '16년 세법 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 포함하는 등 BEPS프로젝트 이행 중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20

대응방안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21

규제 역차별

국내 사업
자

해외 사업
자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22

규제 여차별을 둘러싼 법정정책적 이슈와 고려사항

사법적 측면

- 준거법
- 관할권

행정적 규제권

- 규제규정의 역외적용
- 행정규제권의 해외집행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와의 충돌

시장규제적 측면 v. 이용자보호 측면

국내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

외국 사업자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 구제 절차와 피해 구제의 실효성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23

• 유형

- 입법관할권
 -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상호주의
- 집행관할권
 - 주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집행
 - 범죄인인도조약과 같은 예외적 국제 규범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집행력 부재
- 사법관할권

• 한계

- 입법관할권이나 사법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집행관할권의 부재로 법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집행하고자 하는 외국 현지 법원의 승인을 얻거나 해당 국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이 최선

KYOUNGJIN CHOI

24

역외적용

- 역외적용은 자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이나 물건, 자국 영역 외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 자국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
 - 미국에서 반독점법, 증권법, 지적재산권법 등의 영역에서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로부터 사용되기 시작
 - 역외적용은 국내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의 확장을 의미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25

역외적용

- 논리적 근거
 - 효과이론
 - 어떤 행위가 외국에서 행해졌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국가 내에 효과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 국가가 그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 *United States v. Alcoa*, 148 F.2d 416 (2d Cir. 1945)
 - 이익형량론
 - 효과이론을 수정하여 자국의 이익과 외국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자국법 적용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견해
 - 최소접촉 이론
 - *Int'l Shoe Co. v. Washington*, 326 U.S. 310 (1945)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26

역외적용

- 해외 사례
 - GDPR
 - EU 회원국의 정보주체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을 처리하거나 EU 내에서의 EU 회원국 정보주체의 활동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활동을 처리하는 EU 밖의 정보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도 적용
- 국내 사례
 - 독점규제법
 -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27

국내 집행력 강화 방안으 로서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 해외 사례
 - GDPR 제 27조
- 국내 사례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18.8.30. 국회 통과)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28

집행력 강화 사례

• 미국 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CLOUD Act (H.R. 4943)

- 외국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 미국 기반의 기술 기업들이 전세계 어느 곳에 저장하는 정보이건 그에 대하여 법 집행영장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기업들에게는 정보가 소재하는 국가의 프라이버시법에 기초하여 법 집행영장에 대하여 다룰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외국정부의 미국 내 정보에 대한 접근
 - 미국 CLOUD Act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술 회사가 보유하는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 EU-US Privacy Shield

- GDPR 제정 및 ECJ 판결에 대응하여 EU와 미국 사이에 Safe Harbor Framework을 대체하기 위하여 체결

June 26, 2018

KYOUNGJIN CHOI

29

단계별 접근 및 국제공조체계 강화방안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30

이용자보호

- 글로벌 초연결사회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글로벌 ICT 환경 하에서 국내 이용자의 보호

국내외 동등규제

- 국내외 동등규제
-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지양

규제 실효성 확보

-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개선
-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 파악 강화
- 해외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준수 참여 촉진

- 국내외 동등규제를 위한 출발점은 국내 이용자의 보호
-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이용자



역외 적용
원칙 설정

- 국외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근거 신설
 - 역외적용 원칙 규정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확대를 통한
국내 이용자
보호 규제 적
용 확대

-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적용대상으로 해외 사업자도 포함하여 이용자보호 규제 적용 대상 확대
 -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신고제 유지시: 국내 대리인 지정 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제)
 - 국내 시장상황(이용자보호상황) 평가대상에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행하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사후규제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
 - 예) 금지행위 위반 → 시정명령 → 과징금 / 과태료

절차적 개선

-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
 -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한 국내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창구 명확화
 - 절차적 개선을 통한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자율규제
촉진

- 해외 사업자의 자발적 국내 법규범 준수 참여 촉진
 - 이용자보호업무평가대상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해외 인터넷서비스로 확대 포함 (국내사업자와의 대등한 평가 준비를 위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
 -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 준수 규약제정 및 이행 시 인센티브 부여

국제 공조체계 강화

- GDPR 제50조
 -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하여 EU 집행위원회와 각국의 감독기구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U법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 매커니즘을 개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집행시 국제 상호 지원: 통지, 민원 전달, 조사, 지원 및 정보 교환 등 다각적 조치
 - 이해관계당사자와의 사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의 집행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활동과 토론
 - 관할 상충 문제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실무의 교류와 문서화 증진
 - (의미) GDPR이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집행력의 부재 혹은 약화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37

국제 공조체계 강화

- 이용자피해구제를 위한 해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기관이나 분쟁해결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 등과의 실무적 공조체계 구축 필요
 - 예) CERT와 같은 KCC-FCC-Ofcom 등의 이용자 피해 구제 실무네트워크 구축
- 다만, 실제 업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 (1) 양자간 협정 혹은 협약체결, (2) 국장(과장) 등 실무급 협력체계 구축, (3) 핫라인 개설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KCC-FCC, KCC-FTC, KCC-Ofcom 등과 같이 양자간 협력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면서,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다자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추진(주도) 필요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38

국제 공조체계 강화

- 국제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국제공조체계 강화 혹은 주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명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3조를 개정하여, “방송통신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의 해외에서의 집행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1) 국제협력공조체계 구축 및 운영, (2)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역외적용 집행시 신고, 통지, 민원 전달, 조사, 지원 및 정보 교환 등 다각적인 국제 상호 지원 조치를 촉진, (3) 실무급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공동 연구, (5) 기타 상호 법집행의 실효성을 증진하여 국제적인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을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의2 신설 및 정보통신망법 제62조 개정으로 도 가능
 - 보다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상호주의 확대 가능
 - 개정 정보통신망법('18.8.30. 국회 통과) 제63조의2: 상호주의 규정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39

감사합니다!!!

kjchoi@gachon.ac.kr

September 7, 2018

KYOUNGJIN CHOI

40

1-2.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1-2-1.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검토(안) (발제자: 호서대 박정호 교수)

1. 문제 정의

-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역차별 규제 해소를 위한 논쟁의 핵심은 사후규제 규정인 “금지행위”의 합리적 유형이 역차별 해소에 적절한지와 현행 규제체계(사업자 지위, 실효적 규제집행력 등) 내에서 역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논의-의견제시 중에서 >

【사업법 금지행위 역차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무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방통위가 마련한 ‘<u>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u>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고시에서는 행위주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모바일생태계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주요 OS 제공 사업자 및 앱마켓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함 - 전기통신사업법이 미치는 범위가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인데, 고시만으로 그 대상을 확장한다고 적용될 수는 없음. 이는 시행령 개정 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의견 반영 없이 개정됨 - 구글,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사업자 신고 여부로 인한 법의 차별적 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미래부가 마련한 ‘<u>스마트폰 선택재 앱 가이드라인</u>’은 국내 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는 적용되지 못해 국내 이통사와 제조사 등만 규제한 결과를 보인바 있고,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개정 단계에서 무력화됨 - 이후,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관련 시행령에 앱마켓, 선택재 관련 사항을 추가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로 대상이 한정되고,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부당하게’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었음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기간통신서비스에 적용하는 규제프레임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1단계: 법제도적 실효적 규제관할을 위한 사업자 지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제도적 기반 마련) - 역외적용 명문화,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임시중지제도 도입

- 2단계: 규제집행을 위한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 및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서비스에 한정하던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확대하여 실시

※ 역차별 해소를 위한 실효적 규제관할권에 대한 제도화가 마련된 이후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3단계: 개별 현안 및 쟁점이슈를 파악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금지행위를 비롯하여 적절한 규제제도 적용 및 개선

※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정들이 적절히 전기통신사업법(특히, 금지행위)에 입법되어 있는지의 이슈

-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논의이슈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서 특정 시장의 유효경쟁 상태를 일정한 분석(구조-행위-성과, S-C-P)틀로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규제목적상 필요한가에 대한 것임

- 구체적으로 현행 경쟁상황평가제도의 개념 및 현황, 해외제도 운영, 정책적 실행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법제도 개선의 진행상황(뉴노멀법)

※ 김성태 의원(2018.2): 전기통신사업법에 지정대리인제도 병합

법률	주요내용	분야
전기통신사업법	① 경쟁상황평가 - 포털사업자 정의 - 영업보고서 제출 - 사업자대상 대통령령으로 위임(매출액 기준) - 이용료 징수를 위한 광고수익 등 보고	시장경쟁
	② 디지털콘텐츠 거래시 금지행위(적절한 수익배분 거부) ③ 역외적용 - 국외행위이더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경우	
	④ 이용자 권리보장 -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보장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⑤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 광고매출액 100분의 6 범위 내 징수	공적 책무
정보통신망법	⑥ 불법정보 차단 의무 - 불법정보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차단 -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가능(차단/재개 의무)	이용자 보호
	⑦ 상시모니터링 의무 - 조직/인력/시설/운영체계 운영	
	⑧ 과징금부과 및 손해배상 - 차단 위반 시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 - 손해배상 책임 신설	

2. 경쟁상황평가의 개념 및 현황

○ (통신법) 경쟁상황평가의 개념

- 경쟁상황평가의 일반적 목적은 정부개입(사전규제)이 필요한 시장과 규제대상 사업자를 식별하고 규제의 종류 및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KISDI, 2016)

※ 자료의 활용: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SMP : Significant Market Player)의 지정, 도매제공 제도, 상호접속제도, 설비제공제도 등의 의무사업자 지정 등 공정경쟁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경쟁의 촉진),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근거 >

사업법 제34조(경쟁의 촉진)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 ①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2. 서비스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진입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경쟁상황평가의 현황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평가대상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의 6개 시장 선정

※ KISDI(2017 경쟁상황평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점유율에 대한 이슈분석 차원에서 포함되던 부가통신서비스 이슈분석 제외(제로레이팅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슈 부각에 의해 논란 제기)

- 평가절차는 평가대상에 대해 ①단위시장을 확정하여 ②자료를 수집하고 ③이를 바탕으로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를 한 후 ④의견수렴 및 공표하는 순서로 구성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

절차	주요 내용
단위시장 확정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참고하여 시장확정을 하되, 향후 수요·공급의 대체성, 이용자 특성, 지리적 범위, 제공단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장확정 방안을 검토
자료수집	영업보고서 등 정부에 제출되는 각종 통계, 이용자 설문조사, 기타 사업자 IR자료 등을 활용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평가	계량지표를 우선 활용하되, 비계량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지배력 존재여부, 유효경쟁여부 및 경쟁상황 변화추이를 판단하고 기존 경쟁정책의 평가 및 신규 정책 도입방향 제시
의견수렴 및 공표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표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평가기준 >

절차	주요 내용	
시장구조 지표	시장집중도	시장점유율(매출액, 가입자수, 통화량 또는 트래픽), 경쟁사업자수,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 상위3사 시장점유율 및 HHI
	진입장벽	필수설비, 법적·제도적 요인, 규모와 범위의 경제, 매출비용, 수직적 결합 정도, 브랜드 인지도, 진입·퇴출 동향,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접시장으로부터의 영향
이용자행위 지표	사업자 전환 용이성, 정보획득 용이성, 정보활용정도, 대응구매력	
사업자행위 지표	요금 및 품질경쟁현황, 불공정 경쟁행위사례, 신규서비스 제공 및 기술혁신 정도	
시장성과 지표	사업자의 초과이익, 요금 및 품질수준의 국제비교, 이용자 만족도	

3. 주요 논리: 찬성 vs 반대

가. 찬성논리

- 변화된 경쟁환경을 고려하여 전체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
 - 부가통신시장에 대하여도 경쟁상황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상황을 진단해보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동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쟁정책을 검토해야 함
 - 또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할 필요
 - ※ 최근 방통위의 페이스북 제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규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공정위 역시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검토 중
 -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상황평가는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 반대논리

<의견 1>

- 현재 ▲자한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뉴 노멀' 법),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경쟁상황평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는 정부 인허가를 통해 사업 영역을 보호받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합당한 근거 없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려는 것으로 정책 수단의 취지에 벗어나고 무리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입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낮고, 위헌적인 접근임

-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미비라는 현실로 인해, 결국 역차별 규제가 됨
- 소관 주무부처 역시 규제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어서 경쟁상황평가 확대 주장에 명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음
 - ※ 참고로, 방발법을 근거로 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KISDI를 통해 해마다 수행되어 왔는데, 2016년까지 시장획정 조차 어려운 인터넷 검색만을 계속 다뤘을 뿐, 스마트폰이 국내 유통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독과점 상태인 앱마켓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음

<의견 2>

-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사업을 포함하는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경쟁상황평가와 같은 시장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인터넷검색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은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이나 특수한 지위를 부여 받은 소위 규제산업이 아니며,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누구나 언제라도 시장참여가 가능한 자유경쟁 시장임
 -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개입을 통한 경쟁체제의 효율적 조직화가 필요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 영역에 까지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적용받지 않는 해외사업자와의 경쟁에 있어 국내 시장에서조차 밀릴 수 있음
 -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해도,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우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기반의 부가통신사업자와의 역차별 우려가 있음
- 해결방안(개선방향) -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보다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법제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4. 검토의견(안)

- 종합 의견: 현시점에서 경쟁상황평가의 도입은 정책시행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현시점 경쟁상황평가 어려움)
 -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자료조사, 실태조사 강화를 도입하여 규제집행을 위한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 및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하고, 통신시장의 시장변화 및 규제집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2차적으로 사전규제 목적의 경쟁상황평가를 “특정한 부가통신서비스”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됨
 - ※ 즉,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는 현안이슈의 해결을 사후규제 관점(금지행위)에서 먼저 접근하고(현안발생 시 사안별 경쟁상황평가), 사전규제 부과로 연계될 경쟁상황평가는 향후 시장 및 규제집행력을 고려하여 확대여부
 - 주지할 것은,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 사전적으로 해당 시장의 현황을 규제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사, 근거마련은 선행적으로 반드시 필요 → 현재의 상황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정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요구(실태조사, 자료제출 근거마련) 적합
 - ※ 효과적인 사후규제를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역차별 해소를 위한 사후규제: i)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금지행위 적용, ii) 경쟁법(공정거래) 상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기업간 합병의 합병 판단

< 금지행위 관련 제도적 규정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연관 조항

제51조(사실조사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업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 판단근거①: 경쟁상황평가의 현실적인 절차적 문제 - 시장확정

- 국내외 경쟁법이나 통신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제재 또는 차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 그러한 행위가 관련시장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 ※ 특징: 경쟁법에 근거한 시장획정은 특정 행위가 발생한 후 해당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시장획정을 하므로 동일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통신법은 특정 의무에 대하여 사전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획정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
- 시장획정은 그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규제기관의 시장개빙을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되며 관련시장이 잘못 정의되면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의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사례: 메시지 시장획정(카카오 메신저 vs 이통사 문자메세지)
- 관련시장의 획정이란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상품군과 거래 지역 등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을 말함
 - ※ 단면시장 수요대체성 측정의 기술적방법: SSNIP 테스트, CLA(임계손실규모) 측정
- 여기서 규제집행의 현실적 절차의 문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획정)이 법적 판례 및 학술적으로 명확한 시장획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어서 사전규제를 위한 시장획정에 논의 및 분석에 상당한 노력(시일)이 요구될 수 있음
- 법적 판례의 이슈: NHN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터넷 포털시장 획정
 - ※ 공정위: 동영상공급업체 광고금지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NHN을 인터넷포털 사업자로 규정하여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의 위법성을 인정 → 인터넷포털시장은 경제학적 양면시장(상호연결 고객군, 간접네트워크 효과, 직접거래의 어려움)으로 규정, SSNIP 적용의 이론적 불가능성 고려하여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하여 광고매출을 근거로 지배력 추정(간접네트워크 미고려)
 - ※ 고등/대법원: 공정위의 시장획정은 관련 시장의 범위를 양면시장으로 정의하고도 협소하게 정의하여, 실제 시장획정을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하고도 전체 광고매출로 평가한 것은 정확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 결과: 공정위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정의하고 과징금 부과(227백만원), 서울 고등법원/대법원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이라고 결론을 내림
- 학술적인 이슈: 인터넷포털시장 양면시장 vs 단면시장

※ 대다수의 연구에서 인터넷포털시장을 양면시장으로 규정하지만 핵심요소인 간접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 못하는 상황(주류 관점), 반면에 Luchetta(2013) 등의 다른 연구에서는 온라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단면시장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되는 상황임

○ 판단근거②: 사전규제를 위한 관점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 상황평가를 시행한 해외사례가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음

-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특정 시장의 경쟁상황평가는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및 융합 등의 특성에 의해 사전규제 목적의 경쟁상황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사전규제 용도로 경쟁상황평가를 활용하는 대표적 해외사례는 EU를 들 수 있음

< EU의 경쟁상황평가의 근거 >

Regulatory Framework Directive(2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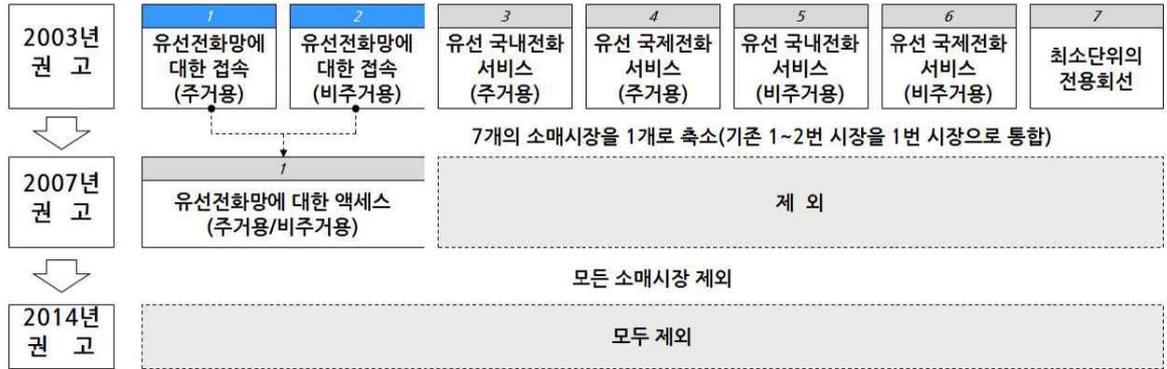
- 회원국별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시장지배력(SMP) 보유사업자를 선정하고, 동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등 사전규제를 부과하도록 규정
- SMP 보유사업자는 시장점유율로 추정(시장점유율 40% 이상 시 SMP 보유추정, 25% 미만 시 SMP 미보유 추정)하되, 시장규모, 필수설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 EU에서도 통신부문에서 가능한 사전규제 보다는 가능한 경쟁법의 사후규제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현재 통신법 상의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는 사전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통신시장은 4개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만, 영국의 Ofcom을 비롯한 NRAs들은 앱시장 등 변화한 통신시장의 환경을 고려한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추세

※ 통신산업은 경쟁법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아 각 국에서는 통신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여 시장지배력 존재 여부 및 사업자를 모색하여 판단, 일정한 조건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한 의무를 부과

※ 일정한 조건: a) 높고 지속적인 진입장벽, b) 시장구조의 유효경쟁 가능성, c) 경쟁법의 불충분성 → EC는 3가지 기준은 누적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용(모두 충족)

< EC 권고 상의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 변화 >



- 미국은 통신법에서 이동통신서비스(CMRS) 리포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기존의 CMRS 시장의 범위에 상류, 하류시장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쟁상황의 모니터링 성격이 강함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주요 국가에서도 쏠림에 의한 승자독식, 생태계 관점 경쟁 구조 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 남용 및 전이가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경쟁상황평가의 범위에 온라인 플랫폼을 반영하여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용도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실태조사 관점이 강함)

- 하지만 사후규제 관점의 경쟁상황평가 및 규제 Case가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

※ 伊 공정위, 페이스북-왓츠앱간 개인정보공유에 과징금 부과 2017.05.15.

※ EC, 구글의 플랫폼 중립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예정 2017.05.22.

※ 英 정부, 대형 뉴스 제공자 구글과 페이스북 규제 검토 2017.10.12.

○ 판단근거③: 인터넷산업의 혁신성 저하에 대한 우려

-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국가에서 특정 시장에 대한 유효경쟁을 판단하여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법 차원의 경쟁상황평가를 기간통신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및 융합 등의 특성에 의해 사전규제 목적의 실질적인 경쟁상황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이처럼 아직까지 인터넷 경제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혁신을 저해할 우려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특별히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규제목적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진입장벽의 차이: 야후 → 구글, 야후 → 네이버, 다음(선발사업자 교체 가능성, 파괴적 혁신의 저하 우려)

※ EU 위원회: 로봇세 도입 부결(2017.2)

○ 판단근거④: 정량적 자료의 신뢰성 확보

- 실효적 경쟁상황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적 제출 자료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적 차원의 신뢰성 있는 자료정리 및 제출의무가 없는 상황임

-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IPTV 방송사업자들은 회계분리기준(규제회계)에 의해 일정 양식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회계감사를 매년 규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음

※ 주요 경쟁상황평가 자료의 입수: 매출액, 가입자, 수익성, 통화량, 투자규모 등의 자료가 영업보고서에 기재,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대체 등은 설문조사 등으로 파악

- 이에 따라 일정한 통계양식 하에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중요할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법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규정)

-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출입기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1-2-2.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발제자: KISDI 염수현 연구위원)

1. 논의 배경

- 인터넷 시장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규제 관할권 확보와 함께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시장상황 분석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새로운 경쟁 이슈와 이용자보호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시장 현황 파악에 대한 요구가 증대
- 특히,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국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 실태와 매출액, 영업비용, 이용자, 점유율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별 쟁점과 주요 고려사항

□ 경쟁상황 평가 방안의 쟁점

-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뉴 노멀' 법),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에서 기존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경쟁상황평가를 전체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
- (쟁점) 특정 시장의 유효경쟁 상태를 일정한 분석(구조-행위-성과, S-C-P)틀로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규제목적상 필요한가와 가능한가가 논의의 쟁점

□ 실태 조사 방안의 고려사항

○ (개요) 매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

- 시장획정과 확정된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보다는 주요 서비스를 선정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실태 파악 및 변화 동향 모니터링

○ 실태조사 방안의 고려 사항

- (법적근거) 해외사업자의 국내매출액 등 자료 확보 및 제출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 필요하나 자료제출 의무규정이 가능한지가 쟁점

※ 통계청 지정 통계와 승인 통계 비교

○ (지정 통계) 통계법에 따라 지정 통계로 지정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권이 부여되며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자에 과태료도 부과

· 지정 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요건이 엄격(전체 공식 통계 1092종 중 92개로 8.4%)

·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와 ICT 실태조사는 통계청 지정 통계이며 ICT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총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을 작성

○ (승인 통계)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실지조사권만 발생하며 미제출, 미답변시 제재조항 없음

· ‘응답자 등 관계인’의 의무는 통계작성 승인에 따라 당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규정해야 발생

· 참고로 방송산업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이며 별도로 자료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자들의 협조가 원활하여 응답률이 100%에 가까움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에 대한 재산 상황 제출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방통 통신 부문 주요 실태 조사 >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ICT 실태조사	방송산업실태조사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2조 (인터넷진흥원)의 사업 내용 통계청 지정 통계	정보통신융합법상 실태조사 조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통계의 작성관리 조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통계의 작성 조항, 통계청 지정 통계	통계청 승인 통계
목적	국내 가구의 인터넷 이용환경, 국민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 ICT 관련 국제지수 산출 등의 기초자료 제공	우리나라 ICT분야의 사업별, 지역별 사업규모와 시장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방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산업의 분야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 또한 민간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시청자에게는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통계 제공
조사주기	1년	1년	1년
통계종류	통계청 지정 통계	통계청 지정 통계	통계청 승인 일반·조사 통계

- (대상 서비스) 시장규모, 서비스의 중요도, 경쟁 및 이용자 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서비스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직접적인 경쟁 이슈 파악보다는 주요 서비스의 경제적 특성, 수익 모델, 시장 현황과 구조, 분야별 경쟁 상황, 매출, 수익률 및 성장률 등 전반적 시장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구조 등에 중점

□ 통계 보고 방안의 고려 사항

-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별 매출액, 유료 가입자 등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방통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 과정부와 통계이용목적이 달라 통일된 보고양식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통위의 법 집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방통위에 대한 통계보고의무 부과 규정 신설 검토
- (분류체계) 현행 서비스 분류 체계가 인터넷 시장 경쟁 정책 및 사후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수정 필요
- (제출항목) 현재는 매출액, 수출액, 수입액, 유료가입자수, 보유회선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매출액을 광고매출액 등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료 가입자보다는 실사용자 등이 더욱 중요한 지표

1-2-3. 인터넷기업이 생각하는 시장현황 파악방안 (발제자: 인기협 차재필 실장)

▣ 「경쟁상황평가 확대」 및 「통계보고 의무부과」 방안 관련 입장

가. 경쟁상황평가의 목적

- ‘경쟁제한의 방지 및 해소라는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확정된 시장의 시장지배력 존재 및 변화 등 경쟁상황을 파악’(KISDI 경쟁상황평가보고서, ‘07)

나. 평가기준

- 경쟁상황평가의 기준은 시장집중도, 시장 진입장벽 등 시장구조 지표와 이용자, 사업자 행위지표 및 시장성과지표로 구성

< 평가 기준 >

구분		세부지표
시장구조지표	시장집중도	• 시장점유율(매출액, 가입자수, 통화량 또는 트래픽), 경쟁사업자수, 사업기간 시장점유율 격차, 상위3사 시장점유율 및 HHI
	진입장벽	• 필수설비, 법제도적 요인, 규모와 범위의 경제, 매출비용, 수직적 결합 정도, 브랜드 인지도, 진입·퇴출 동향,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접시장으로부터의 영향
이용자행위지표		• 사업자 전환 용이성, 정보획득 용이성, 정보활용정도, 이용자단체
사업자행위지표		• 요금 및 품질경쟁현황, 불공정 경쟁행위사례, 신규서비스 제공 및 기술혁신 정도
시장성과지표		• 사업자의 초과이윤, 요금 및 품질수준의 국제비교, 이용자 만족도

(신종철, 세상을이어주는 통신연합, ‘08 봄호)

다. 부가시장에 적용

- 부가통신시장은 여러 시장 경쟁상황 평가지표를 적용시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

< 평가 기준에 따른 부가통신시장 평가 >

구분	부가시장 평가시 예상결과
시장집중도	○ 정확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만 가능 (현재 시장획정이 안되어 있음)
진입장벽	○ 인허가나 대규모 장치 등에 의한 시장 진입 장벽이 없음
이용자 행위지표	○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전환비용 없이 서비스 즉시 전환 가능 - 예시 :네이버↔구글↔다음 전환비용 없음 ○ (정보획득의 용이성) 지불요금체계가 없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가입자 유치를 하고 있어 정보획득 매우용이
사업자 행위지표	○ (요금 및 품질경쟁 현황) 가격 담합 가능성 있는 서비스 극소수
시장성과 지표	○ (요금) 요금이 없거나 요금체계가 서비스별로 다름 ○ (품질수준 국제비교) 단일한 균질적인 서비스가 극소수 ○ (이용자 만족도) 요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측적이 어려움 - 이용자의 지불요금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고 있냐?

- 기간통신 시장은 경쟁이 제한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 동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규제 됨
 - 중복투자 문제로 인한 '필수 설비성' 특정 사업자가 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자연 독점성', 막대한 장치비용으로 인한 '진입 장벽', 소수의 망사업자로 인한 '대체가능성의 제한'
 - 반면, 부가통신 서비스는 이러한 경쟁 제한요소가 없음

< 경쟁 제한 요소 비교 >

경쟁제한 요소 (*표는 제외)	내용	부가시장
자연 독점성	망은 하나이므로 독점적인 지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밖에 없음	망 소유 못 함
필수 설비성	사업자별 필수설비의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제어하기 위해 사업자 제한	필수설비 없음

경쟁제한 요소 (*표는 제외)	내용	부가시장
시장 진입 장벽	막대한 장치비용으로 인해 누구나 진입 불가	장치비용이 매우 낮아 누구나 진입가능
대체가능성 (전환비용)	다른 서비스로 대체가능성이 낮고 전환 비용이 큼	타 서비스로 대체 가능성이 높고 전환비용이 없음
*특혜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국가에서 특정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특허'를 받거나 한정된 주파수 할당으로 타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차단되어 공익성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	국가에서 받은 특혜 전무

○ **경쟁상황평가 확대의 제안배경으로 "공정경쟁 환경훼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나"**

- 부가통신 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 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공정경쟁이 훼손되거나 증명된 사례는 거의 없음

□ 결론

- 정부의 정책수립, 정책판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시장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악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필요
- 하지만, 경쟁제한을 해소하여 경쟁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상황평가 의무의 도입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의문
 - 경쟁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
- 개인적인 경험이나 막연한 느낌에 의존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 증거기반의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증거기반 규제정책이 필요

참고

□ 경쟁상황평가의 법적 근거

< 경쟁상황평가의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경쟁의 촉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u>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u>단위시장을 확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 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u>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u>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경쟁상황평가의 대상 및 절차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평가대상은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의 5개 시장이며, 평가절차는 평가대상에 대해 ①단위시장을 확정하여 ②자료를 수집하고 ③이를 바탕으로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를 한 후 ④의견수렴 및 공표하는 순서로 구성

1-2-4. 인터넷 생태계 균형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발제자: 광장 권순엽 변호사]

목차

1.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 (1) 국내 인터넷망 이용 현황
 - (2) 국내 ISP 시장현황
 - (3) CP 산업 현황
 - (4) ICT 생태계 환경 변화
2. 인터넷망 이용 관련 법규 현황
 - (1) 법규 연혁
 - (2) 전기통신사업자 별 적용규정 현황 비교
 - (3) 금지행위 규정 구체적 검토
 -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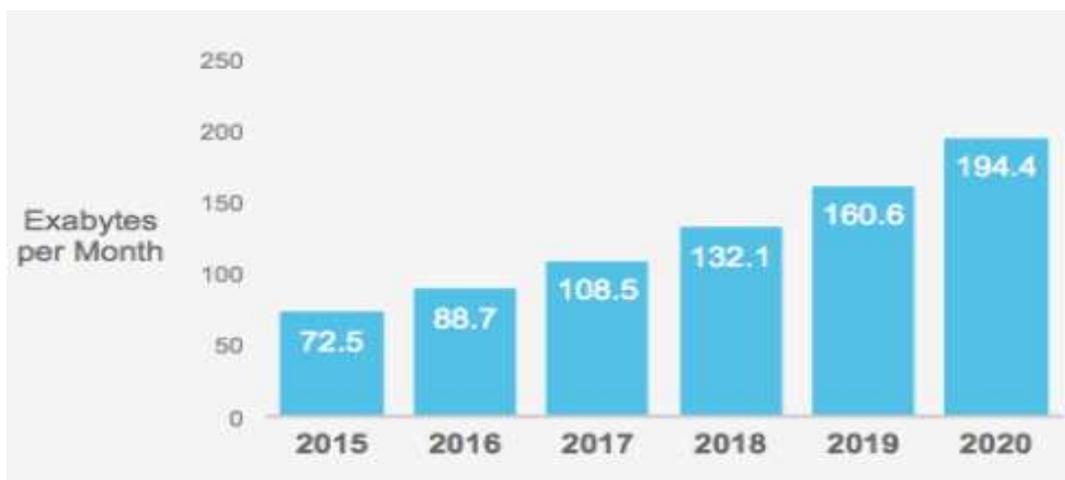
3. 금지행위 규정 개정방향

별첨

1.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1) 국내외 인터넷망 이용 현황과 전망

- ✓ 전세계적으로도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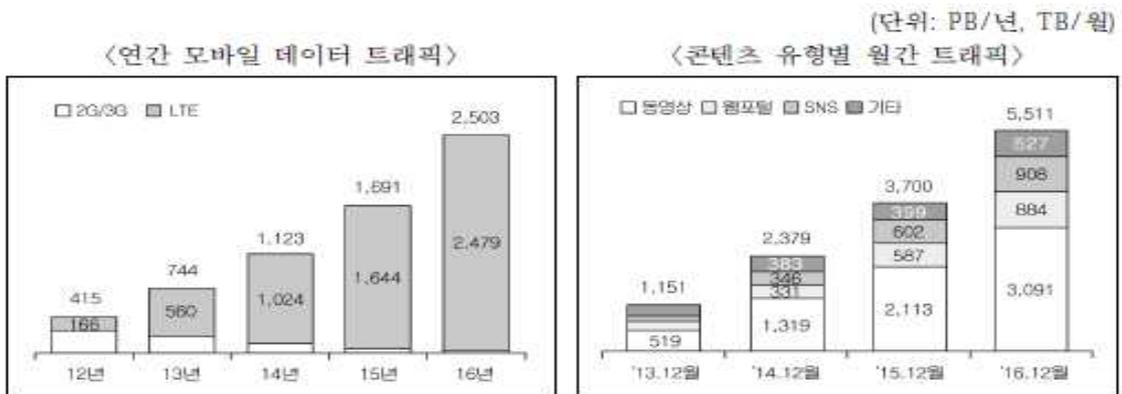


		2015	2020
More Internet Users		3.0 Billion	4.1 Billion
More Devices and Connections		16.3 Billion	26.3 Billion
Faster Broadband Speeds		24.7 Mbps	47.7 Mbps
More Video Viewing		70% of Traffic	82% of Traffic

출처: <https://newsroom.cisco.com/press-release-content?type=webcontent&articleId=1771211>

- ▶ 최근 VNI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에 국제 인터넷 트래픽은 연평균 26% 증가하여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약 3.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05년 대비 약 135배 증가)

✓ 인터넷 트래픽의 폭증: (1) 가파른 증가율; (2) 유선인터넷 대체 가속화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각 호.

출처: KISDI 2016 정보통신산업동향

- ▶ 2012-2016 (LTE/3G 기반에서)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연평균 56%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6배 증가;
- ▶ 2016-2021 기간 연평균 36% 증가 예상하여 같은 기간내 5배 증가 예상 (Cisco VNI 보고서)
- ▶ 상당 규모의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초고속 망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 필요

(2) 국내 ISP 시장 현황

✓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정체: (1) 가입자 포화; (2) ARPU의 지속적 하락

〈표 I - III - 2 - 5〉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KT	20,877	20,570	19,651	19,503	18,445	18,604	19,376	19,964	19,717	19,224	19,391
SK브로드밴드	10,943	10,390	10,280	9,488	9,263	9,165	8,033	7,126	6,279	5,499	5,349
LGU+	1,003	2,752	5,027	5,890	6,336	6,738	7,122	7,635	7,419	7,665	7,829
드림라인	295	201	15	2	-	-	-	-	-	-	-
온세텔레콤	1,065	829	113	-	-	-	-	-	-	-	-
케이블방송사업자	-	4,386	5,120	5,600	6,297	4,156	5,274	5,375	5,010	4,995	4,754
별정사업자	-	372	389	467	664	573	709	738	656	597	523
SK텔레콤 재판매	-	-	-	-	-	328	1,705	2,543	3,364	4,101	4,786
총매출액	34,183	39,500	40,596	40,951	41,006	39,564	42,219	43,381	42,445	42,081	42,633

(출처: KSDI,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2016년도))

▶ 초고속인터넷 소매 매출액은 201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2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또는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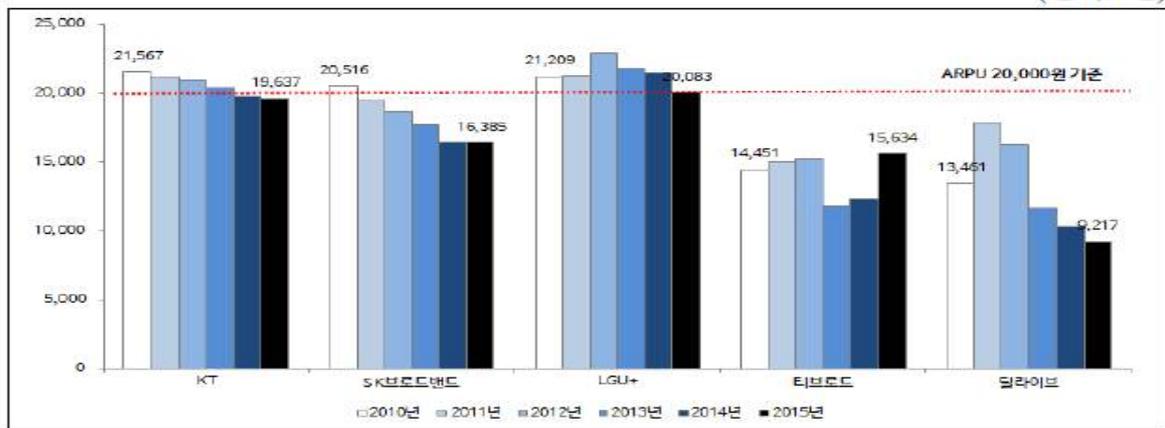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수는 64개(2015년 기준)이고 2015년 말 기준 가구당 보급률 약 107.1% ⇒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포화기로 진입

▶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보다는 타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

✓ 재무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그림 I - III - 2 - 9] 초고속인터넷 주요 사업자의 ARPU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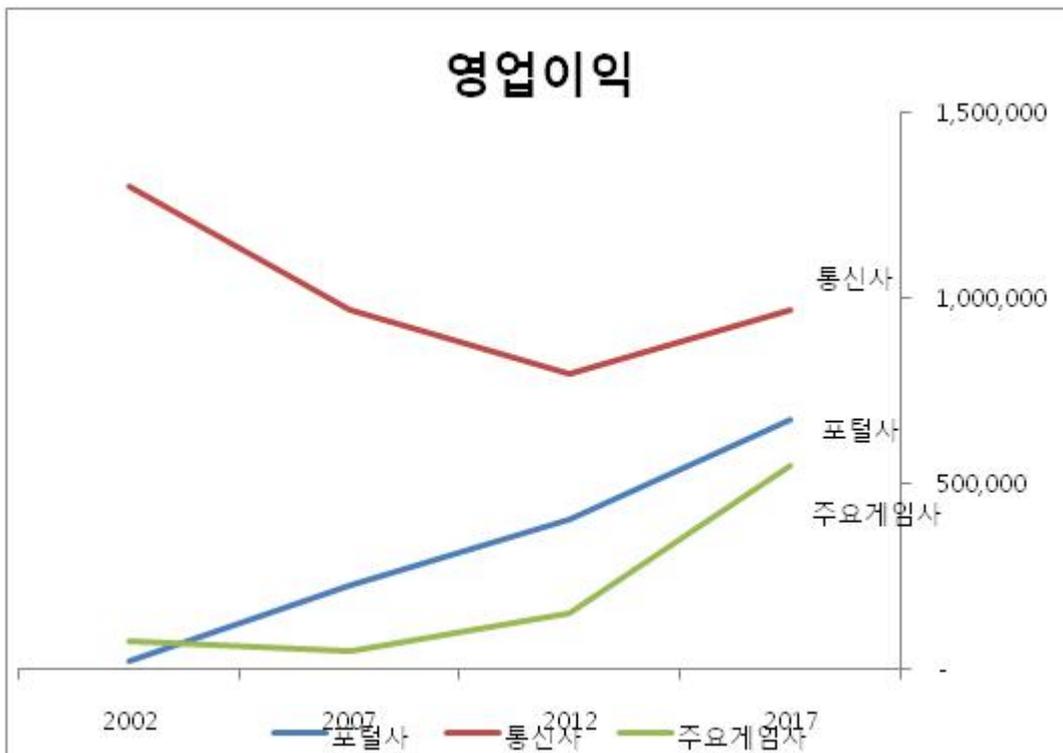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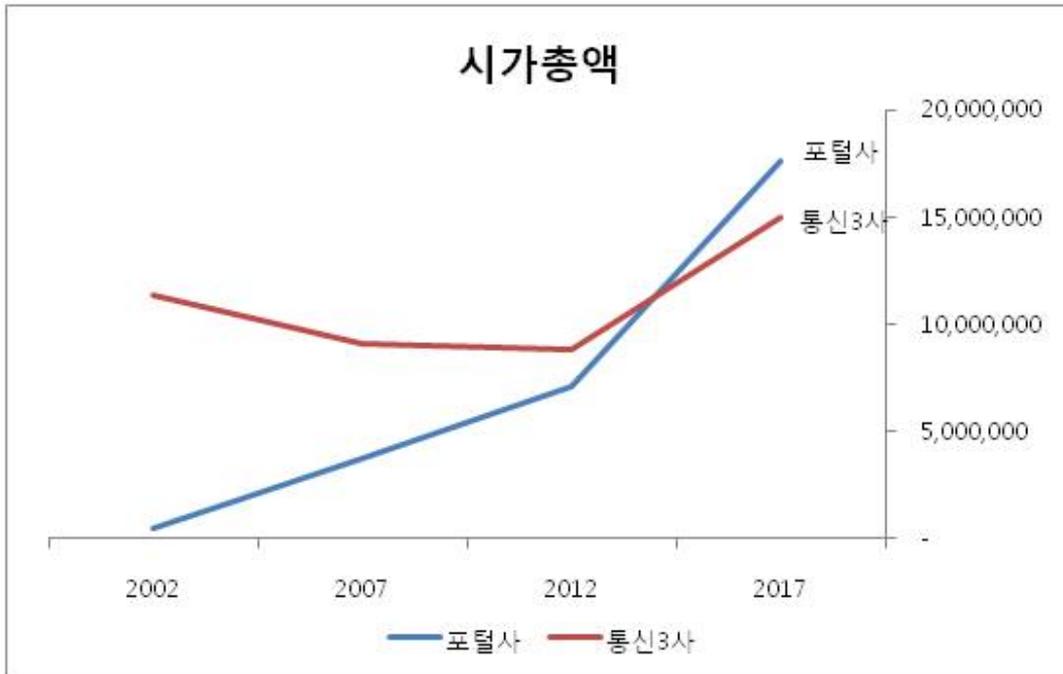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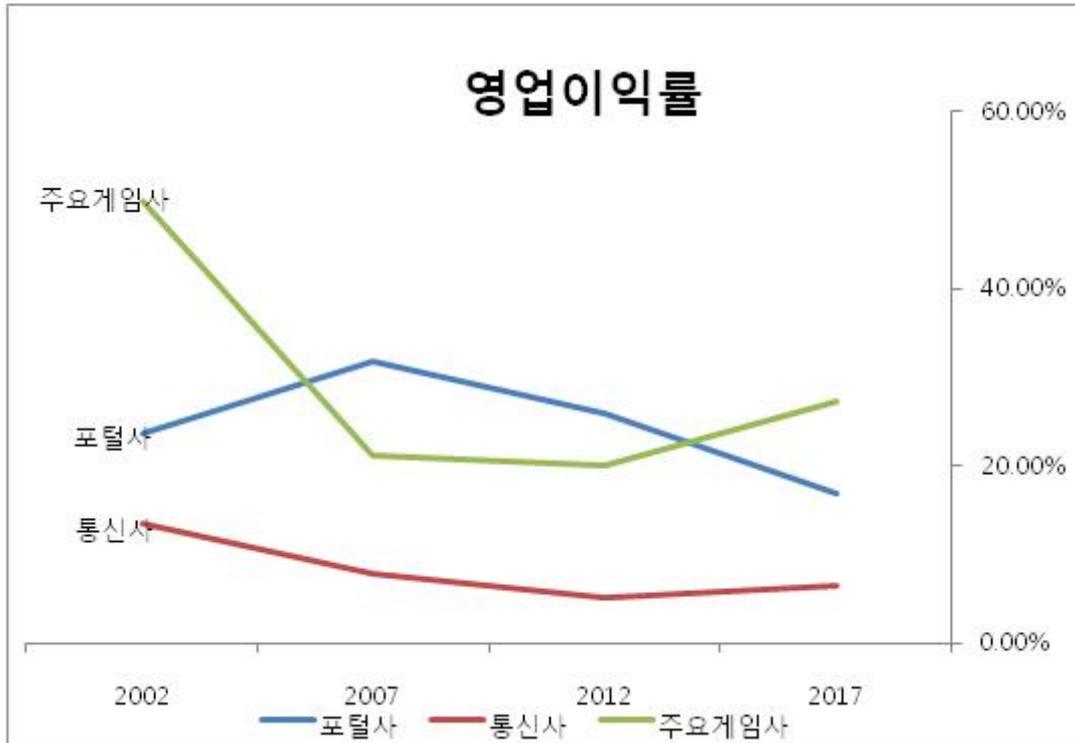
	KT	SKB
2010	21,567원	20,516원
2015	19,637원	16,385원
감소폭	1,930원	4,131원

▶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포화에 따라 기존 가입자 대상 경쟁구도로 전환 /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액 (ARPU)은 계속 저하

(3) CP 산업 현황

✓ CP의 영향력 확대 심화





*주요 Global CP: 2017년 시가총액 604조(5600억달러), 2017년 영업이익: 21조(200억달러)

✓ 요약 정리

- 연 20% 정도의 인터넷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2020년 이후에는 모바일 트래픽과 동영상 트래픽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인터넷 트래픽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예상 모바일 트래픽 증가율: 연 40% 이상) ⇒ 지속적인 망고도화 투자 소요 발생
- 국내 ISP 시장은 이미 가입자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쟁심화로 ARPU도 하향 추세로 인해 정체 상황 ⇒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는 망투자비 확보에 어려움 예상되고, 경쟁심화로 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약화·상실
- 대형 CP의 경우 이미 시가총액 등에서 통신사업자들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장래 가치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형 CP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재무적 격차 및 투자여력 차이는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
- 네트워크 보유사업자의 일방적 우위는 사라지고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의 중요성 및 시장지위가 추세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네트워크 보유자의 일방적 우위에 따른 타 사업자에 대한 경쟁저해행위 및 이용자이익 침해 가능성을 전제로 규제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새로운 ICT 산업구조에서 변화된 역할관계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자들 상호간 경쟁저해행위 및 이용자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2. 인터넷망 이용 관련 법규 현황

(1) 법규 연혁

<p>□ 통신시장의 형성과 경쟁체제의 도입 (1980년대~1990년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통신시장은 공기업인 한국통신 등에 의해 독점 - 10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 요구에 따라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되고 복수의 설비 기간 통신사업자 등장하기 시작 [데이콤 - 국제전화(1991), 신세기통신 (1994)] ⇒ 망사업자의 우월한 시장 지위를 전제로 망사업자 위주 - 1996-97년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사업자 허가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되기 시작[PCS사업자들 (1996),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1997)] ⇒ 여전히 망사업자를 수범 주체로 하는 법규 체제 유지 <p>□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기간통신역무 전환 (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하나로텔레콤이 세계 처음으로 ADSL 상용화 성공: <u>부가통신역무로 분류</u> -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고 있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u>기간통신역무로 재분류</u> - 기간통신역무화 되면서 초고속시장 내 유효 경쟁 가능 ⇒ KT 위주 독과점 시대에서 실질적 경쟁체제로 변경 ⇒ 시장 경쟁을 통한 가입자 기반 확대

▶ 그 결과 64개 설비 기반 초고속사업자 등장(2015년 현재)

시장 포화로 출혈 경쟁 상황으로 진입 ⇒ 심화된 시장 경쟁으로 인한 초고속 인터넷 사업 규제 필요성 상대적으로 약화 (상당수 기간통신역무의 commodity service화)

(2) 전기통신사업자 별 적용규정 현황 비교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사전 규제	진입규제	허가	신고(특수부가 등록)
	인수·합병	인가	변경신고(가능성)
	외국인 지분 제한	49%	없음
	회계분리·영 업보고서	역무별 분리·제출의무	없음
	요금규제	역무별 신고(SMP인가)	없음
사후 규제	금지행위	모든 항목 해당	일부 항목 해당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11. ICT 생태계 발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편 방안 연구 19~20면)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전규제:** 정부가 시장의 진입부터 요금 및 이용조건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통신사업자의 난립 방지 및 경쟁상황의 형성 등을 달성
 - ▶ **기간통신사업자:** 엄격한 사전규제 대상
 - 부가통신사업자:** 사실상 사전규제 없음.
- **사후규제:** 사전 규제만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들의 구조적·개별적 행위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경쟁저해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사후적으로 제어하는 사후규제 수단이 필요.
 - ▶ **기간통신사업자:** 금지행위 모든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대상
 - 부가통신사업자:** 금지행위 규정은 수범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모든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별 금지행위 규정을 살펴 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규정은 극히 일부.
-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다른 사업자에 대한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다양한 통신사업 영역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이익침해행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ICT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저해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이용자 이익침해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체계로 재정립할 필요 ⇒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방적 우위를 전제로 한 현행 법 제도(금지행위 규정)가 개편되지 않으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한 경쟁행위”나 “이용자이익 침해” 발생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공백 발생 우려**

(3)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법규 연혁

<p>□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 설비기반 망사업자의 자연독점화 및 우월한 시장지위를 전제로 (1) 망사업자 규제, (2) 부가통신사업자 비규제 구도 채택 1994년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진입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2016. 1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지행위 규정(플랫폼 중립성)이 추가됨 ➔ 지난 20년간 시장 상황 변화에도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CP의 시장내 규모,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커진 상황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치열한 경쟁상황에 진입한 ISP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구도에 머물러 있음. ➔ 최근 추가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규정(시행령 별표4 5.사.4) <u>“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고 하여 일단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간의 관계를 규제 대상으로 포섭.</u>
--

(4) 금지행위 규정 구체적 검토

-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의 수범주체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0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아래 금지규정의 수범주체에 해당함.
- 다만, 개별 금지행위 규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문제될 규정은 일부에 불과함.

	구분	수범주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제외한 기타의 행위유형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행위(제1호)	상호접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등에서 협정의 체결의무자로 기간통신사업자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체결 거부 또는 불이행 행위(제2호)	
	정보 등의 부당 유용 행위(제3호)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제4호)	회계분리 및 결합상품 등에 대한 규제로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이용자에 대한 설명·고지 관련 행위(제5호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유지 행위(제6호)	공급원가, 상호접속 등의 대가가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될 것을 요구되어, 실제로 통신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제7호)	도입배경,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다만, 앱 마켓 수익배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한 수범주체라고 볼 가능성은 있음.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	전통적인 유료서비스 (요금청구, 요금연체 등)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이용 관련 행위	
	이용자의 요금 연체 관련 행위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요금, 번호, 가입전환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가 규제 대상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함
	결합판매 관련 행위	결합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적용대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플랫폼 장악에 따른 결합서비스에 따라 공정경쟁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불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① 망/플랫폼 사업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동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행위주체가 되기는 어려워 보임. ② 앱 선택재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될 수 있음 ③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는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④ 정보이용 불편 광고의 부당한 삭제 제한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3. 금지행위 규정 개정 필요

- ✓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상황**”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 부가통신사업자의 다양성과 발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진입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후규제가 바람직하고 특히 구조적인 또는 개별적인 저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금지행위 규정의 개정이 필요

▶ 금지행위 규정 개편 방향

- ① “공정한 경쟁상황” 및 “이용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ICT 생태계 발전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개편할 필요
- ② 먼저, 공정한 경쟁 관점에서, 최근 국내역차별 및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등이 문제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금지행위 규정은 미흡함.

이에, (i)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저해 행위, (ii)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저해 행위, (iii)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저해 행위 등으로 유형화하여 개편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금지행위 규정으로 재편 필요

- ③ “이용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부가통신역무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내용적인 부분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큰 의미를 가지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가지는 우월한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차별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포섭할 수 있는 적절한 금지행위 규정은 미흡함.

이에,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등을 (i) 서비스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예컨대, 특정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와 서비스 자체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예컨대, 서비스 내용 미고지) 등으로 유형화하거나, (ii) 신유형에 대응이 쉽도록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포섭될 수 있는 일반 규정과 세부적인 개별 규정 등으로 유형화하여, 개편하는 방향 검토 필요

- ④ 증가된 영향력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금지행위의 수범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도 고려 가능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현행 법 체계상 이용자 이익 저해와 관련하여는 법률개정의 필요는 낮아 보이나, 앞서 살핀 방향으로 규정 개편할 경우 명확한 유형화를 위해 법률개정의 필요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별첨

(1)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제외한 기타의 행위유형

①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행위(제1호)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p> <p>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p> <p>다. 상호접속등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p>

▶ 상호접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등에서 협정의 체결의무자로 기간통신사업자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②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체결 거부 또는 불이행 행위(제2호)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p>

<p>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 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항·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p> <p>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p> <p>다. 삭제 <2016. 12. 30.></p>
---	--

- ▶ 상호접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등에서 협정의 체결의무자로 기간통신사업자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③ 정보 등의 부당 유용 행위(제3호)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 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한다.</p>

- ▶ 상호접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등에서 협정의 체결의무자로 기간통신사업자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④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제4호)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 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4. 이용요금(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가.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비용·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p> <p>나. 일정한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p> <p>2)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목에서 같다)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p> <p>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제 조건 등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p> <p>라. 삭제 <2016. 12. 30.></p>

▶ 회계분리 및 결합상품 등에 대한 규제로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⑤ **이용자에 대한 설명·고지 관련 행위(제5호의2)**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p> <p>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p> <p>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p> <p>라.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p> <p>마.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 변경 사항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p> <p>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p> <p>사.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p>

▶ 전기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⑥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유지 행위(제6호)**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 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유지하는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p>

- ▶ 공급원가, 상호접속 등의 대가가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될 것을 요구되어, **실제로 통신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⑦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제7호)**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7.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p> <p>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p>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2)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 ▶ 도입배경,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 ▶ 다만, 앱 마켓 수익배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한 수범주체라고 볼 가능성은 있음.**

(2)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①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 ▶ 전통적인 유료서비스 (요금청구, 요금연체 등)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②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이용 관련 행위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명이가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6)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신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9)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11)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	---

▶ 전통적인 유료서비스 (요금청구, 요금연체 등)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③ **이용자의 요금 연체 관련 행위**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라. 이용자[명이가 도용(盜用)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 연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요금연체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는 행위 2) 요금 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 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요금 연체정보 제공 사유의 해소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하지 않는 행위 3)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

- ▶ 전통적인 유료서비스 (요금청구, 요금연체 등)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④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p>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p> <p>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p>
--	---

▶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요금, 번호, 가입전환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가 규제 대상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고려해야 함**

⑤ **결합판매 관련 행위**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p>

- ▶ 결합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적용대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플랫폼 장악에 따른 결합서비스에 따라 공정경쟁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

⑥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법률	시행령
<p>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p> <p>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p> <p>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p> <p>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構內)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 ▶ ① 망/플랫폼 사업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동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행위주체가 되기는 어려워 보임.

- ② 앱 선택재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될 수 있음
- ③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는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 ④ 정보이용 불편 광고의 부당한 삭제 제한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인터넷 기반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현황

2018. 6. 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1

목차

1. 미국
2. 유럽연합(EU)

2

1. 미국

방송통신법의 체계

- 법률
 - 1934년 방송통신법(Communications Act)
 -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 1962년 방송통신위성법(Communications Satellite Act)
 - 1996년 통신법에 의해 개정된 1934년 방송통신법의 구성
 - 구성: Title, Part, Section
 - Title I: General Provision
 - Sec. 3 [47 U.S.C. § 153] Definition: Information Service (20), Telecommunications Service (43)
 - Title II: Common Carriers
 - Sec. 251 [47 U.S.C. 251] INTERCONNECTION
 - Sec 252 [47 U.S.C. 252] PROCEDURES FOR NEGOTIATION, ARBITRATION, AND APPROVAL OF AGREEMENTS
 - Title III, IV, V, VI, VII
 - Code of Federal Rules (C.F.R.)

3

1. 미국

1996년 통신법

-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
 - Sec. 3 [47 U.S.C. § 153(20)]: 통신을 통해 정보를 생성·획득·저장·변형·처리·인출·이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
 - 통신을 통한 서비스이면, 그 내용이 통신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정보 서비스로도 분류될 수 있음
 - FCC는 1996년 통신법 제정 당시 예상된 서비스인 DSL 서비스(Digital Subscriber Line Service)는 통신 서비스로 분류하였음
 - FCC는 법 제201조 제(b)항에 근거하여 '케이블 광대역 명령'(Cable Broadband Order)을 제정하여 케이블 광대역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통합된 정보 서비스라고 결정하였음. 이는 1996년 통신법 제정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서비스로서 통신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던 인터넷접속서비스(ISP)가 정보 서비스로 분류되는 계기가 되었음
 - 연방대법원은 Brand X 판결(2005)에서 FCC가 이 결정을 인정하였음. FCC가 종류가 유사한 서비스인 DSL 서비스와 다르게 케이블 광대역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것이 선례 구속성의 원칙에는 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Chevron 법리(법규정이 애매모호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이려면 법원이 생각하는 가장 합당한 해석과 행정기관의 해석이 다르더라도 행정기관의 해석을 존중한다는 법리)를 우선하여 FCC 판단을 존중하였음
 - ISP 서비스는 2015. 2. Title II Order 제정으로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되었다가 2017. 12. Internet Freedom Order로 정보 서비스로 환원됨

4

1. 미국

1996년 통신법

- 정보 서비스 관련 규정
 - 정보 서비스에 적용되는 Title I에는 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는 Title II와 달리 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행위의무 규정이 없음
 - FCC는 전통적으로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비규제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FCC의 규칙 제정 권한을 활용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근거 규정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음
- 정보 서비스 규제를 위한 규칙 제정 근거 규정
 - FCC는 2015. 2. Title II Order 개정으로 ISP를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하기 전까지 ISP를 정보 서비스로 유지하면서 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음
 - FCC는 2015. 8. Title I Sec. 4 [47 U.S.C. 154] (g)(3)(D)(i)에 정한 FCC의 부수적 관할(ancillary jurisdiction) 권한에 근거하여 인터넷 정책선언(Internet Policy Statement)을 하였으나, 2010년 Comcast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됨
 - FCC는 2010. 12. Sec. 706 (a)에 정한 진보된 통신 능력 기반 구축을 장려하는 권한에 근거하여 개방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제와 투명성 규제를 포함하였음
 - 연방항소법원은 2014년 Verizon 판결로 Sec. 706 (a)는 투명성 규제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ISP가 개별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제의 근거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5

1. 미국

1996년 통신법

- 정보 서비스 규제를 위한 규칙 제정 근거 규정
 - FCC는 2017. 12. ISP를 정보 서비스로 재분류하면서 Sec. 257 [47 U.S.C. 257]에 근거하여 인터넷 자유 규칙(Internet Freedom Order)을 제정하였음
 - 이 규칙에는 2010 Open Internet Order에 있던 차단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무나 2015 Title II Order에 있던 차단금지, 지연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금지 등 행위제한 규정이 없으나,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음
 - 투명성 의무는 (i) 차단, 지연, 계열사에 대한 우선처리,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등 망 관리행위의 내용, (ii) 서비스 기술, 접속 속도, 지연 속도와 같은 수행 특성, (iii) 가격, 개인정보보호정책, 분쟁해결과 같은 상업적 조건을 공시할 의무임

6

1. 미국

기타의 규제 법률

- 인터넷 비규제의 원칙
 - 1997년 클린턴 행정부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체계(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정책선언
 - 민간 영역에서 지도하여야 함
 -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피하여야 함
 - 정부 관여가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은 거래에 대한 예측가능한, 최소한의, 일관되고 간단한 법적 환경을 지원하고 집행하는 것이 되어야 함
 - 정부는 인터넷의 특유한 품질을 인정하여야 함
 -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글로벌한 기반에서 촉진되어야 함
- 품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 품위 규제: 이용자에 대한 정보 흐름의 규제
 - 1996년에 제정된 최초의 인터넷 규제 법률인 방송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과 2000년에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은 위헌 판정됨
 - 2000년 아동 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 개인정보보호 규제: 이용자에 관한 정보 흐름의 규제
 -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7

2. 유럽연합(EU)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기술규정 정보제공절차 지침(1998)

-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의 정의(지침 제1조 제2호)
 - Any servic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at a distance, by electronic means and at the individual request of a recipient of services
 - 'at a distance' means that the service is provided without the parties being simultaneously present
 - 'by electronic means' means that the service is sent initially and received at its destination by means of electronic equipment for the processing (including digital compression) and storage of data, and entirely transmitted, conveyed and received by wire, by radio, by optical means or by other electromagnetic means
 - 'at the individual request of a recipient of services' means that the service is provided through the transmission of data on individual request
 -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이나 2017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의 정의도 동일함
- EU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적용제외
 -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ECS)에 대하여는 EU 방송통신 규제체계지침에 의하여 회원국 간 제도의 조화가 추진되어 왔음
 - ECS의 범위에서 정보사회서비스는 제외됨(Regulatory Framework Directive 제2조 c항)
 - 정보사회서비스 중에서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에 의하여 회원국 간 제도의 조화가 추진되어 왔음

8

2. 유럽연합(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실행에 관한 중간평가 보고서 (2017. 5.)

-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 보장 강조
 -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온라인 플랫폼 증진
 - 2016. 5.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통신문
 - 추가 조사가 필요한 두 가지 쟁점 확인
 - 공정하고 혁신 친화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 보장
 - 불법 온라인 콘텐츠의 차단
 - 공정하고 혁신 친화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 보장
 - 플랫폼-사업자(P2B) 간 거래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결과
 -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사업이용자에게 잠재적 피해가 되는 거래관행을 행하는 사실 확인
 - 정책 목표는 온라인 경제에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신뢰할만한 비즈니스 환경 보장
 - 불법 온라인 콘텐츠의 차단
 - 온라인 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응한 문제중심적인 해결책 모색
 - 사전 예방적 차원의 플랫폼에 대한 책임 규칙 등의 지침 필요
- 정책 대안
 - 플랫폼-사업자 간에 확인된 부당한 계약 조항 및 거래관행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준비
 - 영향평가 기반, 회원국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구조적 대화
 - 입법조치의 형식
 - 불법 콘텐츠 삭제를 위한 메커니즘과 기술적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둔 논의 추진

9

2. 유럽연합(EU)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사업자-사업자(B2B) 간 관계 보고서 (2017. 5.)

- 조사의 배경
 - 유럽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부당한 거래관행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제기
 - 유럽위원회가 경쟁법의 적용 밖에 있는 잠재적으로 부당한 거래관행의 범위, 실제 크기와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 실시
- 조사의 결과
 - 온라인 상거래 오픈마켓, 모바일 앱 스토어, 소셜 미디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4가지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함
 - 자료조사, 전문가조사,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6가지 주요 문제를 추출하고 각 문제별로 사례연구를 행함
 - 6가지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일방적인 거래조건의 변경
 - 검색과 순위 관련 행위
 - 상품 목록 삭제와 계좌의 정지/차단
 - 일정한 상품·서비스의 우대
 - 데이터 접근과 이동성 제한
 - 비효율적인 권리구제 시스템

10

2. 유럽연합(EU)

P2B 간 관계의 공정성에 관한 최초영향평가 (2017. 10.)

- 최초영향평가(Inception impact assessment, IIA)
 - 로드맵과 유사한 것으로서, 새로운 법과 정책의 범위, 목적과 시기를 설명하는 것임
 - 기존 법의 평가 또는 여러 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기도 함
-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된 정책 개입 대안
 - 대안 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산업 주도 개입을 장려하기 위한 EU 연성법 행위의 채택
 - 대안 2: 산업 주도 개입(대안 1)과 함께 다양한 수준의 정책 개입을 수반하는 EU 입법조치의 채택
 - 대안 3: EU 차원의 규제기관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표적화되고 상세한 규제체계를 제공하는 EU 입법조치의 채택
- 평가
 - 유럽위원회가 경쟁법의 사후적 규제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P2B 관계에 적용되는 사전적 입법체계(최소한 EU 연성법 행위)를 도입하려는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접근은 EU 경쟁법 집행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1

2. 유럽연합(EU)

온라인 B2B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 (2018. 4.)

- 법률(regulation) 제정안의 발표
 -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사업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의 발표
 -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오픈마켓, 온라인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와 온라인 소셜 미디어가 포함됨
 - 산업 주도의 행위와 일정한 수반된 조치도 가능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입법조치를 취하기로 하되, 입법의 형식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법률(regulation) 형식으로 함
 - 기존 법률의 사후 평가와 적합성 검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전문적 자문, 규제영향평가를 거친 결과임

12

2. 유럽연합(EU)

온라인 B2B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 (2018. 4.)

- 제안된 조항의 내용
 - Article 1: the subject matter and scope of the proposed Regulation
 - Article 2: the applicable legal definitions
 - Article 3(Terms and conditions): requirements for the clarity, accessibility and modifications of pre-defined,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used by provid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Article 4(Suspension and termination): requirements for a statement of reasons from a provider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if it suspends or terminates the use by a business user of its intermediation services
 - Article 5(Ranking): requirements for a description of the main parameters determining ranking of business users in search results
 - Article 6(Differentiated treatment): requirements for a description of any differentiated treatment given to goods and services offered by the provider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itself, or by business users which it controls

13

2. 유럽연합(EU)

온라인 B2B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 (2018. 4.)

- 제안된 조항의 내용-계속
 - Article 7(Access to data): requirement to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access to personal data or other data
 - Article 8(Restrictions to offer different conditions through other means): requirement to provide and publish a description of the grounds for restricting the ability for business users to offer different conditions to consumers for obtaining goods or services through means other than the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Article 9(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 requirement for a provider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to provide for an internal system for handling complaints of business users together with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handling of such complaints
 - Article 10(Mediation): requirement for provid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to list in their terms and conditions one or more mediators with which the provider is willing to engage to reach an agreement out of court on a dispute

14

2. 유럽연합(EU)

온라인 B2B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 (2018. 4.)

- 제안된 조항의 내용-계속
 - Article 11(Specialised mediators): requirement for the Commission to encourage provid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to individually or jointly set up one or more independent mediator organisations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out of court, of disputes
 - Article 12(Judicial proceedings): a right for judicial proceedings to be brought by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associations or public bodies to stop or prohibit any non-compliance by provid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with the requirements contained in the Regulation
 - Article 13(Codes of conduct): requirement for the Commission to encourage provid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as well as of online search engines, and organisations and associations representing them, to draw up codes of conduct
 - Article 14(Review): requirement for the Commission to regularly evaluate the Regulation, for the first time three years after the date the Regulation enters into force
 - Article 15(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the date the Regulation shall apply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15

감사합니다

인터넷 서비스시장 경쟁법 적용사례 및 시사점



2018. 7. 13.

이 호 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Contents

I. 서론

-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변화 및 사업자들의 동태적 대응

II.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1. NHN의 시지남용 사건
2. 오픈마켓 시지남용 사건
3. eBay-G마켓 기업결합 사건

III.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1. Google 검색편향 사건
2. 중국 텐센트 사건
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사례

IV. 경쟁법 집행상 시사점

1. 인터넷 서비스시장의 동태적 경쟁 격화
2.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유연한 접근
3. 시장력 및 경쟁효과의 신중한 평가
4.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에 초점
5. 경쟁촉진 및 소비자편익 제고 효과 고려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변화 1

● 무선인터넷의 급격한 확대

-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 약 5만6천TB('12.12) → 약 38만9천TB('18.5)
- 4G 트래픽: 약 11만3천TB('15.1) → 약 37만1천TB, 1인당 7천7백MB('18.5)

●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 전세계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 14.7%('12) → 39.4%('16) → 43.8%('17)
- 한국 보급률: 74.4%('16) → 77.7%('17)(6위)(SA)
 - ✓ 홍콩 84.7%(1위), 미국 75.6%(7위), 중국 72.0%(10위), 일본 65.3%(19위)
- 20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87.1%
-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약 4,983만명('18.5)
- 20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응답자 56.4%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매체로 간주(TV는 38.1%)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변화 2

● 모바일 광고시장의 급성장

- 미국 모바일 미디어광고 예산: 약 316억\$('15) → 436억\$('16), 2020년 까지 연평균 19.5% 증가 예상
- 중국 모바일 광고 매출액: 901억위안('15) → 1,566억위안('16) 예상
- 국내 전체 광고시장: 11조 2,960억원('16)
-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2조1640억원('12) → 3조3825억원('16)
-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 9천9억(8.5%)('14) → 1조 3,744억원(12.1%)('15) → 1조 8,042억원(16.0%)('16), 2018년 30% 예상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변화 3

● 모바일 쇼핑시장의 급성장

- 전세계 소매 전자상거래액 1조 8,590억\$('16)→ 2조 2,290억\$('17)→ 2조 7,740억\$('18) 예상
-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45조 3,025억('14)→ 54조556억('15) → 65조 6,170억('16) → 78조 2,273억('17)(전년 대비 19.2% 증가)
- 국내 모바일 쇼핑 거래액: 14조 8,698억('14)(32.8%)→ 24조 8,570억('15)(46.0%) → 35조5,446억('16)(53.5%) → 47조8,360억('17)(**61.1%**)(전년 대비 34.6% 증가)

● 모바일 앱 시장의 급성장

- 전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1,493억('16) → 3,529억('21) 예상
- 전세계 모바일 앱 매출액: 618억\$('16) → 1,391억\$('21) 예상
- 국내 온라인 앱마켓수익: 1조 3,397억원(구글), 6,062억원(애플)
- 중국 전체 앱마켓 소비자지출 190억\$('16) → 560억\$('21) 예상

사업자들의 동태적 대응 1

- 각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기저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고 통신, 유통, 에너지, 미디어, 금융 등 융합·혁신시장으로 확장
- 종전의 이종 플랫폼들 직간접으로 경쟁에 직면
 - ✓ Google Express과 AmazonFresh 사례
- 지속적 혁신 통해 소비자 가치 창출하는 기능 추가.개선
 - ✓ 인스타그램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 페이스북 AI 접목한 이미지 검색시스템 구축, FaceBook Stories 기능 추가 및 스냅챗사진·동영상 검색기능 추가, Google의 Feed 서비스 추가, Amazon의 Alexa 및 Google Assistant(음성검색), 네이버의 주제판 개인화 설정 기능, 스마트 렌즈 및 음성 검색서비스
- 급속하게 확대되는 모바일 광고(상거래)시장의 우위 차지하기 위한 소비자의 관심 끌기 경쟁(**attention rivalry**) 격화
 - ✓ 소비자에 가치 창출하는 다양한 서비스 묶음(cluster) 제공
 - ✓ 이들 서비스는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차별적, 지속적으로 진화, 혁신 통해 새로운 기능 추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동태적 대응 2

Disrupting all industries

	g	Apple	f	a
TELECOM & IT	Fiber	Apple Sim	WhatsApp	Cloud Drive
HEALTH	Calico	HealthKit	Move	amazon.com Marketplace
RETAIL	Shopping express	iBeacon	Facebook "Buy" Button	amazon Grocery Delivery
ENERGY & UTILITIES	nest Smart home	Solar Power	internet.org project	Fulfillment by Amazon
MEDIA & ENTERTAINMENT	Play	iTunes Radio	Oculus	twitch Gamers Video platform
FINANCIALS	Wallet	Apple Pay	Friend-To-Friend Payment ¹	amazonpayments Payments API
MOBILITY, TRAVEL & LEISURE	Car	CarPlay	Messenger + Uber integration ¹	amazon + Media app for connected cars



우리나라 사례

NHN의 시지남용 사건 1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1

- 유력 포털 사업자가 동영상 제공업체들과 동영상 콘텐츠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 내에 광고게재 금지하는 행위 등이 문제로 됨
 -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의 개념과 사업구조 및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징을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시장 획정을 위하여 단면시장에 적용되는 SSNIP 테스트를 양면시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는 동영상 제공 서비스시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 관련 상품시장이 양면시장의 이용자 측면과 광고주 측면 양자에 존재함 인정하고 위 행위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NHN의 시지남용 사건 2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1

-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및 시장시장진입 장벽에 관한 판단 오류라고 판단, 특히 시장점유율 산정과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가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매출을 올리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인터넷 광고시장 매출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전체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
- 멀티호밍 현상이 존재하는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하여도 시장지배력은 그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근 신규사업자의 진입은 없었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분야로의 진출과 서비스경쟁은 매우 치열한 양상으로 계속되어왔으며, 과거의 인터넷 포털사들의 성장과정을 보더라도 최근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시장이 원고를 포함한 일부 사업자들의 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

오픈마켓 시지남용 사건 1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2

- 지배적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마켓이 경쟁 오픈마켓 사업자와도 거래하고 있던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자사 오픈마켓에서의 판매가격을 인하해주거나 경쟁 오픈마켓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오픈마켓 메인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한 행위 등이 문제로 됨
 - 공정위는 오픈마켓 운영시장과 광고시장(가격비교서비스)을 각각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획정
 1. 공급측면에서 오픈마켓 운영시장은 운영자가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판매에 따른 결제대금 관리(Escrow 제도)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포털사이트 등의 광고시장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오픈마켓·종합쇼핑몰 또는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오픈마켓·종합쇼핑몰의 인터넷사이트로 안내하는 서비스만 제공할 뿐임
 2. 수요측면에서 오픈마켓 운영시장의 수요자는 자체 인터넷사이트가 없는 소규모 판매업자인 반면, 광고시장의 수요자는 자체 인터넷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종합쇼핑몰 운영자임

오픈마켓 시지남용 사건 2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2

- 법원 역시 공정위의 관련시장 획정의 정당성 인정. 다만, 오픈마켓 운영시장과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사이트 등은 모두 전형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개하여 양자간 거래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그 경제적 기능이 공통적이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대체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시장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동일한 관련시장으로 볼 여지 충분함
- **대법원은 부당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위 처분 취소**

이베이-G마켓 기업결합 사건 1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3

- 글로벌 온라인상거래업체 이베이의 국내 자회사 등이 당시 국내 최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
 - 공정위는 관련 상품시장을 소비자측면에서 '인터넷 쇼핑시장'으로, 판매자측면에서 '오픈마켓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자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 후자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만 오픈마켓 시장이 가지는 특성에 비추어 중장기적으로 경쟁압력이 강해지고 신규진입이나 인접시장으로부터의 진입가능성 역시 크다는 이유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 대하여 **거래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

이베이-G마켓 기업결합 사건 2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3

- 오픈마켓의 주 수익원이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거래수수료이고, 그밖에 포토포커스, 프리미엄등록, 추천점수, 시선집중 등 광고효과가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와 판매자 광고,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등에 대한 광고매출을 거두고 있는데 그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면서 양면시장의 개별 면에서 별도의 경쟁이 존재한다면 각 면은 각각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양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나의 서비스에 의해 모두 대체될 수 있다면 양 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 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측면에서는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거래를 전환할 수 있으므로 상호 대체관계가 인정되므로 인터넷쇼핑시장 전체를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판매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가격, 기능, 효용의 유사성, 판매자의 전환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쇼핑몰 제외한 오픈마켓 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

이베이-G마켓 기업결합 사건 3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3

- 인터넷쇼핑시장의 경쟁제한성 부정하는 근거로서 다음을 제시
 1. 인터넷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등 상품가격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되어 있고 인터넷쇼핑의 특성상 구매자는 클릭 한번으로 구매처를 쉽게 전환 할 수 있으므로 상품가격을 인상할 경우 구매자의 거래전환에 따라 상품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합기업의 판매가격 인상가능성 미약
 2. 인터넷쇼핑 사업자 간 경쟁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로부터의 가격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쇼핑은 상품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배송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오프라인 유통채널로부터의 가격경쟁 압력에 의해 결합기업의 상품가격 인상가능성은 크게 제한
 3. 인터넷쇼핑시장의 진입은 손쉽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이베이-G마켓 기업결합 사건 4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3

- 오픈마켓 시장은 높은 시장집중도와 당사회사의 높은 시장점유율 등을 근거로 결합 후 가격인상 등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오픈마켓 시장의 동태적 변화가능성**으로 인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이 약화된다고 함**
 - 오픈마켓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인터넷기반 산업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태적 시장이므로 장기적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므로 시장참여자들의 경쟁구도를 쉽게 바꾸어 놓을 수 있어서 동태적으로 평가
 - 특히, 오픈마켓 시장은 인터넷 기반이라는 점에서 향후 IPTV나 모바일 쇼핑 등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운 후발사업자의 도약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최근 도입된 모바일 쇼핑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향후 저렴한 정액제 요금 기반의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될 경우 모바일 쇼핑 분야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

- 이 사건 공정위 의결은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동태적 역동성을 잘 인식하고,
- 동일한 관련 상품시장에 속하지 않는 인접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라도 할지라도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 진입할 개연성이 높아서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 특히 모바일 시장이 확대될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더불어서 전혀 새로운 경쟁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구글의 검색편향 사건 (미국) 1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1

- 미국 FTC는 2011년경부터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주면서 부당하게 자신의 콘텐츠를 우대하고 경쟁자의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강등시켰다는 혐의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 **2013년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정**
 - 성명서에서 인터넷 검색엔진은 쇼핑이나 여행 등 특정한 범주의 콘텐츠만을 검색하는 소위 '수직적 검색엔진'(vertical search engines)과 그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소위 '수평적' 또는 '일반용도' 검색엔진(horizontal, or general purpose, search engines)으로 구분, 비록 전자가 후자의 전면적 대체재는 아니지만 특정한 범주에 대한 검색에 관해서 소비자에 구글을 대체하는 대안을 제공
 - 조사결과 구글은 주로 검색결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로 된 디자인 변화를 채용하였고 실재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그러한 목적에 부수하는 것일 뿐이라고 함. 즉, 구글이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수직적 검색결과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서비스를 아래로 내리는 효과를 낳지만, 그 주된 목적은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검색 쿼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음

구글의 검색편향 사건 (미국) 2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1

- FTC는 상품 디자인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1. 상품 디자인은 경쟁의 중요한 측면이고 정당한 상품 개선을 문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2. 검색결과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특정한 웹사이트의 순위를 매기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역시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구글의 결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당화 사유가 제시되고
 3.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규제기관이나 법원이 기업의 상품 디자인 결정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함

구글의 검색편향 사건 (EU) 1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1

- 유럽 집행위 역시 사실상 동일한 구글의 행위에 대하여 오랜 기간 조사를 실시, 결국 2017년 6월 EU 경쟁법을 위반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시정명령과 함께 24억2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
- 집행위는 2010년 11월 구글이 검색결과를 보여주면서 자사의 비교쇼핑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경쟁 비교쇼핑사이트의 순위를 강등시켰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를 개시, 1차 조사가 종료된 후 구글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자진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5년 4월과 2016년 7월 각각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법 위반 결정
- 시장획정과 관련, 비교쇼핑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으로 상품과 가격을 비교하고 제조업자나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플랫폼 등의 온라인 상점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사이트에서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거래 플랫폼과는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 설령 양자가 동일한 관련시장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각 사업자의 비교쇼핑서비스는 관련시장 내에서 서로 가장 밀접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구글의 행위가 비교쇼핑서비스 간 경쟁 제한함 인정

구글의 검색편향 사건 (EU) 2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1

- 구글의 시장지위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90%를 상회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획득한 이익을 다시 더 많은 소비자를 유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이 수집한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다시 검색결과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 FTC가 검색결과 노출방식을 상품 디자인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변경하는 행위를 중요한 경쟁행위로 평가한 것과는 달리, 구글의 일반 검색 알고리즘의 디자인이나 순위 강등 자체, 또는 검색결과를 보여주거나 배치하는 방식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의 시장지배력을 별개의 시장인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으로 전이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
- 집행위의 접근방법은 미국 FTC는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의 검색 제휴 사건이나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사건에서 취한 입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동태적 성격과 혁신적 성격을 경시

구글 검색편향 사건 (캐나다) 1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1

- 캐나다 경쟁국은 2013년 인터넷 검색과 검색광고 및 온라인 노출광고 관련된 구글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 2016년 4월 구글이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이들 행위를 하였거나 이들 행위가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
 - 캐나다 경쟁국이 조사한 구글의 행위는 (1) 검색결과를 보여주면서 '연관성'(relevancy)에 따른 객관적인 순위보다 자사와 관련된 사이트에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경쟁자와 관련된 사이트에 낮은 순위를 부여하였다는 것('검색조작')과, (2) 검색결과 페이지를 구성하면서 구글 지도나 구글 항공여행과 같은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의 서비스에 비하여 우대하였다는 것('자사서비스 우대 행위')이었음
 - 경쟁국은 위 행위의 관련시장을 캐나다 내 인터넷 검색시장과 검색광고 시장으로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품질, 편의성, 가치를 증가시키는 기능, 그리고 특히 이처럼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에서의 혁신과 같은 비가격적 요소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함.

구글 검색편향 사건 (캐나다) 2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1

- 검색조작 행위에 관하여 구글이 검색결과의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자주 변경하였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고, 그러한 행위가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상당한 경쟁 제한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 자사서비스 우대 행위에 관해서 구글이 자사의 서비스를 검색결과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였지만 검색결과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객관적인 대답을 제공하는 행위를 경쟁제한적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비자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함. 다만 지배적 검색엔진이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함

구글 검색편향 사건 (대만) 1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1

- 대만 공정위는 구글이 검색결과 페이지에서 구글 지도를 유리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경쟁 디지털지도 프로그램 사업자들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이들의 수입을 감소시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 **결국 2015년 여름 무혐의 결정을 내림.**
 -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지만 문제로 된 행위가 지도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경쟁 지도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결론
 - 이 사건 행위에 적용되는 경쟁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거래거절 행위 제시하고, 법 위반 판단기준으로서 '필수설비 기준'(essential facility test)과 '이익희생 기준'(Profit sacrifice test)을 적용

구글 검색편향 사건 (대만) 2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1

- 이용자의 쿼리와 광고 수입, 그리고 R&D와 혁신 사이에 존재하는 정의 피드백 효과(positive feedback effect)로 인하여 구글은 경쟁자에 대하여 우위를 가지므로 경쟁자가 단기간에 구글을 따라잡아서 규모나 품질 측면에서 유사한 검색엔진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함
-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용자는 다른 포털사이트를 통하거나 해당 웹사이트 URL을 직접 입력하거나, 특히 해당 사이트를 북마크함으로써 구글 검색을 통하지 않고 경쟁 지도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이 존재하므로 구글의 검색엔진은 결코 지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어서 필수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 이익희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구글 지도와 같은 정보를 검색결과에 주된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검색엔진들도 채택한 혁신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경쟁 지도서비스를 배제함으로써 단기적 이익을 희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색서비스와 지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실을 입지도 않았으며, 만일 구글이 검색결과 페이지에 경쟁 지도서비스를 자사의 지도서비스보다 유리한 위치에 배치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행위라고 함.

중국 텐센트 사건 1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2

- 중국 최고 인민법원이 최초로 심리한 독점금지법 사건으로서 온라인 메신저, 미니블로그, 온라인 게임,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SNS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가서비스와 온라인 광고를 판매하는 텐센트가,
- 2010년 11월 3일 자사의 온라인 메신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서비스와 Qihoo 360의 서비스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Qihoo 360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이를 허용한 것이 문제로 됨
- Qihoo 360은 광동성 상급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최고 인민법원에 항소하였고, 2014년 10월 최고 인민법원은 관련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유무 및 남용행위 여부 등의 쟁점에 관하여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판결 내림

중국 텐센트 사건 2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2

-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력과 문제로 된 독점적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모든 시지남용 사건에서 반드시 관련시장을 명확하게 획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
- 전통적인 SSNIP test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메신저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신 제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온라인 메신저와 미니블로그, SNS, 모바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대체관계를 분석하고, 결국 중국 본토 온라인 메신저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
- 온라인 시장의 경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태적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예측되고 가능한 미래의 시장 반응과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

중국 텐센트 사건 3

외국 경쟁법 적용사례 2

- 텐센트의 시장점유율이 PC 기반 온라인 메신저와 모바일 메신저 시장 모두에서 80%를 상회하였지만, **단순히 시장점유율에 의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시장 지배적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현재 중국 내 온라인 메신저시장에 수십 개의 온라인 메신저서비스가 존재고, 무선통신이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모바일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서 온라인 메신저시장의 경쟁은 혁신경쟁, 동태적 경쟁, 그리고 플랫폼 경쟁으로서의 특성을 가짐
 - 온라인 메신저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이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므로 위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수량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없고 이용자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함
 - 온라인 메신저시장에 대한 진입은 상대적으로 쉽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행위로 인하여 경쟁자인 MSN의 이용자가 급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텐센트의 시장지배적지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 (미국) 1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1

- 2007년 4월 구글이 온라인 광고기술 회사 더블클릭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미국 FTC와 유럽 집행위가 심사를 걸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구글은 무료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의 웹페이지에 검색광고를 게시하고, 자회사 AdSense를 통하여 제3자 매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 더블클릭은 매체사나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광고 서빙, 관리, 추적 기술 등의 광고 관련 서비스 제공
 - 미국 FTC는 4:1로 조사 종결 의결, 다수의견은 (1) 당사회사 간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고, (2) 제3자 광고 관련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고 향후에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구글이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3) 양자의 광고중개서비스와 광고 관련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결합하여 판매하거나 끼워팔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더블클릭이 광고 관련 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봉쇄효과를 초래할 수 없고, (4) 당사회사가 보유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광고중개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개연성이 없다고 함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 (미국) 2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1

-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이 제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해당 시장의 동태적 상황인데, 제3자 광고 서비스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집중도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가격과 이윤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활발한 경쟁 때문이라고 함
- 구글이 자사의 광고중개서비스와 더블클릭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거나 끼워팔기할 경우에 광고중개시장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는 광고중개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해당 시장을 구글로 쏠리게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매체사는 가장 유리한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복수의 광고중개사업자를 활용하고 대부분의 광고주 역시 적은 비용으로 광고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복수의 광고중개사업자를 활용하고('멀티호밍'), 광고중개시장은 사업자들이 고도로 차별화된 상품으로 서로 경쟁하는 시장으로서 네트워크의 크기는 고객이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오히려 광고공간의 품질이나 고객을 타겟팅하는 기술이 중요하므로 광고중개시장이 하나의 사업자에 쏠리지 않을 것이라고 함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 (EU) 1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1

- 유럽 집행위 역시 FTC와 유사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구글과 더블클릭은 서로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중요한 경쟁압력을 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경쟁자로 볼 수 없고, 설령 더블클릭이 온라인 광고중개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충분한 경쟁압력을 가할 것이므로 잠재적 경쟁자로서 더블클릭이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광고중개시장의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광고 관련 서비스시장에서 더블클릭이 가지는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광고중개사업자의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검색광고시장과 광고중개시장에서 구글이 가지는 지위를 이용하여 광고주나 매체사 등에 더블클릭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더블클릭 이외에 신뢰할 만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경우가 많아서 결합기업이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전략을 취할 능력과 유인이 없다고 판단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 (EU) 2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1

-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는 별개의 관련시장으로 보아야 하고, 후자 중 검색광고와 비검색광고는 차별성을 갖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광고 간 차이점이 감소하고 있고 타게팅의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검색광고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비검색광고 역시 그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광고주의 입장에서 검색광고와 비검색광고는 일정한 정도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함
- 광고 관련 서비스시장에서 더블클릭이 1위 사업자이지만 연도별로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심하므로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시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광고주나 매체사 스스로 제공하는 자체 광고 서비스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설령 현재 해당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광고 서비스의 성질 상 적은 투자로 해당 지역에 실제 주재하지 않고서도 사업지역을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경쟁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함

MS-YAHOO 검색제휴 사건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2

- 2009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는 양사의 검색서비스 및 검색광고사업에 관하여 광범위한 제휴약정을 체결하였고, 미국 연방법무부와 유럽 집행위는 아무런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승인
 1.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동안 야후의 검색기술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야후의 인터넷 검색 및 검색광고 인력을 고용하기로 함
 2. 야후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인 Bing이 제공하는 검색결과를 표시하고 자사의 검색광고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광고 플랫폼으로 인계하는 대신 향후 5년 동안 야후와 그 파트너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검색광고 수입의 88%를 지급하기로 함
- 위 제휴약정은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미약한 지위 가지는 사업자들이 구글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였고, 실제로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역시 비교적 쉽게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MS-YAHOO 검색제휴 사건 (미국)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2

- 미국 DOJ는 제휴약정이 심각하게 경쟁을 제한할 개연성이 없고, 이 사건 제휴약정으로 인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과 검색광고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함
 - 즉, 양자의 제휴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은 검색쿼리에 접근함으로써 검색서비스 및 검색알고리즘의 자동학습이 가속되고 더 연관성 높은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어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함
 - 검색쿼리가 증가하면 더 큰 데이터 풀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더 효과적인 시험을 가능하게 해서 더 빨리 새로운 다양한 검색 관련 상품의 혁신을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루게 되면 시장에 더 큰 경쟁촉진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함

MS-YAHOO 검색제휴 사건 (EU) 1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2

- 유럽 집행위는 이 사건 제휴약정이 EU 경쟁법상 기업결합 (concentr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업결합 심사절차 개시
- 심사결과 통지문에서 인터넷 검색 관한 관련시장과 각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함. 특히 당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모바일 검색시장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언급
- 관련시장에 관하여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광고시장을 오프라인 광고시장과 구별되는 별개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온라인 광고시장을 검색광고시장과 비검색광고시장으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자의 시장 모두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함

MS-YAHOO 검색제휴 사건 (EU) 2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2

- 온라인 광고시장의 특성으로서 양면시장 플랫폼과 혁신에 기초한 경쟁을 지적함
- 전자에 관하여 검색엔진은 광고주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로서 양면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인 양면시장 플랫폼에 해당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주로 검색결과의 품질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경쟁을 하고, 광고주 측면에서는 주로 검색플랫폼이 제공하는 투자수익으로 경쟁을 하는데 대다수의 광고주들을 멀티호밍을 한다고 지적
- 후자에 관하여 검색엔진 간 경쟁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의 능력인데 이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온라인 광고시장의 혁신성은 경매시스템, 품질순위, 분석, 맞춤형 검사와 같이 과거에 도입된 혁신과, 검색엔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지속적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함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사건 1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3

- 2014년 2월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 왓츠앱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미국 FTC와 유럽 집행위가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 FTC가 당사회사에 대한 서한을 통하여 간략히 결정을 통지한 것과는 달리, 유럽 집행위는 심사결과 통지문에서 상세한 근거를 공개
 - 당사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소비자통신(consumer communications), SNS 및 온라인 광고의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였고, 특히 근래 현저한 스마트폰 보급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사건 2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3

- 소비자통신서비스는 PC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개발되었지만 점차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로 이동하였고, 현재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모바일앱의 일종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능이나 기기 등의 플랫폼, 또는 운영체제(OS)별로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것인지가 문제로 될 수 있지만 왓츠앱은 스마트폰용 메신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용 소비자통신앱'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
- SNS를 소비자통신앱과 동일한 관련시장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후자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문자 메시지, 영상, 음성, 사진 등 콘텐츠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양 서비스의 기능상 일정한 중복이 존재하고 양자 간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차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에 관하여 심각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단을 유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사건 3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3

- 온라인 광고서비스 관련 시장을 오프라인 광고를 제외한 온라인 광고시장으로 획정하고, 다시 온라인 광고 내에 검색광고와 비검색광고를 별개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것인지 및 모바일 광고시장을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자는 상당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업결합에 관하여 심각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단을 유보
- 특히, PC를 통한 온라인 광고와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광고의 관계에 관하여, 일부의 견해는 기술적 특성과 사용자의 경험 및 광고의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다른 견해는 양자는 본질적으로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함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사건 4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3

- 소비자통신서비스시장에 미치는 경쟁효과를 분석하면서, 이 시장에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광범위한 선택권을 가지는데, 특히 다수의 고객이 수요에 따라서 동시에 둘 이상의 소비자통신앱을 사용하므로(멀티호밍) 이들은 고객에게 최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쟁을 하고 그 기능과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핵심적인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함
 - 또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없지만, 소비자통신시장은 시장진입이 빈번하고 혁신주기가 짧아서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동태적인 시장에서는 높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시장지배력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사건 5

외국 기업결합 심사사례 3

- 소비자의 전환능력(ability to switch)에 관하여, 모든 소비자통신앱이 무료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고, 스마트폰에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고 복수의 앱이 큰 저장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동일한 단말기에 공존할 수 있으며, 한번 다운로드하면 사용자는 둘 이상의 앱 사이를 쉽게 전환할 수 있고, 사용방법 역시 간단해서 새로운 앱으로 전환해도 사용자는 쉽게 익숙해지고 그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전환비용'이 적다고 함
 - 단말기에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선택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데, 당사회사의 서비스가 대량으로 선택재되지 않았고 당사회사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없다고 함
 - 소비자통신서비스의 네트워크 효과에 관하여, 네트워크 효과의 존재 자체가 경쟁제한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신규진입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네트워크 효과의 역할을 완화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 즉, 고객의 전환비용과 진입·성장예 대한 장벽이 낮고, 멀티호밍 현상이 현저하며, 당사회사가 네트워크나 모바일 운영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함

- SNS에 관한 잠재적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그 존재와 정확한 경계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다수의 사업자가 SNS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SNS 서비스의 성질과 중점이 매우 차별적이어서 소비자들이 특정한 수요에 따라서 복수의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사용한다고 함
 - 온라인 광고시장에 관해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페이스북이 왓츠앱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 기업결합 후에도 온라인 광고시장에는 충분히 많은 사업자가 존재하고 페이스북 이외에도 구글을 비롯하여 애플, 아마존,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AOL, 야후 등 다수의 사업자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여전히 광고사업에 가치가 있고 페이스북이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는 대량의 인터넷 사용자 관련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시사점

- 스마트폰 및 모바일 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행태의 변화, 모바일 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진입으로 종전에 별개의 시장으로 인식되던 시장 간 교차와 중첩 발생, 표면적으로 유력한 개별 사업자의 시장력 감소
- 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력 분석에 관한 오류 우려 증가, 시장의 전개방향에 대한 예측이 곤란
- 인터넷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의 역동성과 기술의 급속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따라 특정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고안이 곤란
-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조치가 예컨대, 급속도로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신규진입자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경쟁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

- 주요한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는 둘 이상의 고객군 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다면시장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써, 그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 방법에 대하여 종래 많은 논의,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SSNIP 테스트 등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동하는 단면시장을 전제로 한 통상적인 관련시장 획정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수용됨
- 근래 모바일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그 역동성과 동태적 성격이 더욱 심화된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경쟁법 적용을 위해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더욱 곤란**
 -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물리적 기능이나 속성을 기준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상이하지만 여전히 현재 서로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향후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서비스들을 관련시장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관련시장이 지나치게 좁게 획정될 우려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유연한 접근 2

경쟁법 집행상 시사점 2

-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시장력을 평가하거나 문제로 된 행위가 연관된 인터넷 서비스시장에 초래하는 경쟁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반드시 엄밀하게 관련시장 획정할 필요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인터넷 서비스시장의 동태적 성격과 역동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SSNIP 테스트 등 전통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관련시장을 엄격하게 획정하거나 각 인터넷 서비스사업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일응의 관련시장을 상정하는 방법을 고려
 - 나아가 경쟁법 적용상 관련시장 획정의 목적에 착안하여 해당 사업자가 가진 시장력이나 문제로 된 행위가 초래하는 경쟁효과 유무와 정도를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노력

시장력 및 경쟁효과의 신중한 평가 1

경쟁법 집행상 시사점 3

-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시장력이나 그 행위의 경쟁효과 평가에 있어서 **다면시장 사업자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특성과 관련시장의 혁신성과 동태적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 특히, 인터넷 서비스시장이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모바일로 급격하게 전환됨에 따라 초래되는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관련시장을 유연하게 획정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사업자의 시장력(market power)이나 문제로 된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법을 상정
 - 종래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에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의 획정 단계보다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력을 평가하거나 문제로 된 행위의 경쟁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장점유율에 의존하지 않고, 멀티호밍 현상과 낮은 전환비용** 및 당해 온라인 서비스시장의 **동태적 성격과 혁신성을 중요하게 고려**

시장력 및 경쟁효과의 신중한 평가 2

경쟁법 집행상 시사점 3

- 인터넷 서비스시장은 혁신주기가 짧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흔히 멀티호밍 현상이 존재하고 사업자 간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는데, 급속히 진행된 모바일 전환으로 인하여 멀티호밍 현상이 심화되고 전환비용이 최소화됨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어 다수의 사업자가 일면 유사하면서도 차별적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장으로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관련시장의 동태적 성격이 더욱 심화
- 위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넓게 획정한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관련시장에 속하는 서비스들은 매우 차별적이어서 각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대하여 가하는 경쟁압력의 크기가 상이하고 이들 차별적인 서비스는 서로 대체관계이기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 관련시장에서 제외된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그 관련시장에 포함된 서비스들에 대하여 무시할 수 없는 경쟁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점유율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시장력을 나타내거나 문제로 된 행위의 경쟁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별다른 의미 없음**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에 초점

경쟁법 집행상 시사점 4

- 특히, 스마트폰과 모바일 전환에 따라 서비스(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급격히 감소 소비자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차별적 서비스 개발하기만 한다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현재 다른 범주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 중 상당수 역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사업적 능력을 보유하고 온라인 광고시장 등에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손쉽게 해당 시장에 진입 가능**
 - 종래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시장의 전개 살펴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신규진입자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서 상당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기존 사업자를 따라잡고 경쟁상 우위를 차지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음
- 즉, 인터넷 서비스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혁신적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초 고객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공한 요인은 보유한 데이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사업상 유용한 통찰과 혁신능력으로 볼 수 있음

- 비록 문제로 된 행위로 인하여 일견 일부 경쟁자가 배제되거나 시장의 경쟁이 감소하더라도 당해 행위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서 그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 특히 모바일 전환으로 인하여 시장의 경계가 흐려지고 혁신성과 동태적 성격이 심화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
 - 인터넷 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 낮아지고 다수의 사업자들이 일견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상황에서
 - 설령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치가 증가된다면, 이는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켜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 2220 1810 hoylee@hanyang.ac.kr

이용자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개선방향

2018.07.13.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정경오

CONTENTS

- I 금지행위 개요
- II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III 개선 필요성



금지행위 개요

HANJONG LLP

3

금지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 금지행위의 개념

- ✓ 금지행위(禁止行爲, 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 or Unfair practice)란 행정법령에서 수범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작위의무를 의미
-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는 규범을 의미하며, 명령적 행정행위의 일종(하명)으로서 일정한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인 금지(禁止)는 행정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연혁

- ✓ 1996년 12월 30일 금지행위 신설(법률 제5220호)
- ✓ 2001년 1월 8일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외에 이용자의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행위로 신설(법률 제6346호)

HANJONG LLP

4

금지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HANJOONG LLP

5

금지행위

-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HANJOONG LLP

6

금지행위

- ❖ IPTV법 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행위

-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행위

❖ 금지행위 비교

구분	위법성 판단기준	요건
전기통신 사업법	공정경쟁저해성, 이용자이익저해성	부당성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법	공정경쟁저해성 시청자이익저해성	부당성 정당한 사유 없이
IPTV법	공정경쟁저해성 이용자이익저해성	부당성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저해성	부당성 정당한 사유없이

HANJOONG LLP

9

금지행위

❖ 금지행위에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경쟁저해성(이용자이익저해성)

✓ 공정거래저해성과 vs 부당성

- (공정거래저해성 = 부당성) 각호의 행위의 효과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면 그 행위의 부당성도 인정 : 행위의 효과 → 공정거래저해성 → 부당성 ⇒ 위법
- (공정거래저해성 ≠ 부당성) 각호의 부당한 행위가 있고 그 효과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불공정거래행위가 됨 : 행위의 부당성 + 공정거래저해성 ⇒ 위법

▪ 판례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Ⅲ.1.가.(2).

- ✓ 공정거래위원회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상기의 '공정거래저해성'과 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HANJOONG LLP

10

금지행위

❖ 금지행위에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경쟁저해성(이용자이익저해성)

✓ 공정거래저해성과 vs 부당성

- (공정거래저해성 = 부당성) 각호의 행위의 효과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면 그 행위의 부당성도 인정 : 행위의 효과 → 공정거래저해성 → 부당성 ⇒ 위법
- (공정거래저해성 ≠ 부당성) 각호의 부당한 행위가 있고 그 효과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불공정거래행위가 됨 : 행위의 부당성 + 공정거래저해성 ⇒ 위법

▪ 순서

- ✓ 행위의 부당성 → 공정거래저해성/이용자이익저해성 ⇒ 위법
- ✓ 공정거래저해성/이용자이익저해성 → 부당성 ⇒ 위법
- ✓ 공정거래저해성/이용자이익저해성 + 행위의 부당성 ⇒ 위법

행위의 부당성 (정당한 사유)	→	공정거래저해성	위법(×)
		이용자이익저해성	
공정거래저해성	→	행위의 부당성 (정당한 사유)	위법(○)
이용자이익저해성			
공정거래저해성	+	행위의 부당성 (정당한 사유)	위법(○)
이용자이익저해성			

금지행위

❖ 금지행위에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경쟁저해성 vs 이용자이익저해성

- ✓ 공정경쟁저해성에 이용자이익저해성이 포함된다는 견해
- ✓ 공정경쟁저해성과 이용자이익저해성은 별개의 독립된 위법성 판단기준이라는 견해

▪ 검토

- ✓ (현행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
 - 제1항 제4호에서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이용자이익저해성을 규정
 -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이용자이익 저해를 규정.
- ✓ (연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는 1996년 12월 30일에 신설되었고 당시에 제36조의3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당시에는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념이 없었음
 -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 새로이 도입

금지행위

❖ 금지행위에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입증책임

▪ 정당한 사유 없이 vs 부당하게

✓ 개념

- 정당한 사유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
- 부당성 : 어떤 행위가 위법정도에 이르지 않는지만 사회상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도의관념에 비추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 '정당한 사유(이유) 없이'와 '부당하게' 혼용

- (전기통신사업법)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0조제1항2호)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은 28가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를 혼용

✓ '정당한 이유 없이'의 의미

- ① 미국법상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유형이라는 견해
- ② 입증책임이 행위자에게 전환된 행위유형이라는 견해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는 입증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부당하게"라는 요건이 설정된 행위유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

금지행위

❖ 금지행위에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입증책임

▪ 판례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한다)제36조 제1항 [별표]제2호 (다)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입증책임을 전환된 행위유형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 판례

금지행위

❖ 금지행위에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입증책임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II. 1. 가. (3)

- ✓ 공정거래위원회도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은 그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항 [별표 1]의 각호에서 다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로 구체화된다고 하면서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불공정성(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衡量하여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속적 영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판2000두833판결 취지)"라고 규정하여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금지행위

❖ 전기통신역무의 개념 및 종류

▪ 개념

-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6호)

▪ 종류

- ✓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법 제2조제11호)
- ✓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법 제2조제12호)
-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 ✓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법 제2조제13호)

❖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7호)
- ✓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
-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8호)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금지행위	적용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B2B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B2B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B2B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B2B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B2C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B2C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통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B2B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영역을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B2B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 세부유형

시행령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다. 상호접속등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 분석

- ✓ 수범자는 기간통신사업자
- ✓ 사전규제가 적용되어 사후규제의 적용 가능성이 낮음
 -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35조③, 36조②, 37조③, 38조④, 39조②, 41조②, 42조②)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 세부유형

시행령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항·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 분석

- ✓ 수범자는 기간통신사업자(또는 의무사업자)
-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
- ✓ 사전규제로 부과한 의무위반에 대한 규제로서 사실상 사전규제화
 - 기준(○) : 초과하면 부당(방통위가 입증책임)
 - 기준(×) : 정당한 사유(사업자 입증책임)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 세부유형

시행령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한다.

▪ 분석

- ✓ 수범자는 기간통신사업자
- ✓ 영업관련 정보와 이용자관련 정보(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용
 - 영업관련 정보 : 부정경쟁방지법
 - 이용자관련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 세부유형

시행령

4. 이용요금(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비용·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나. 일정한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 2)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목에서 같다)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제 조건 등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라. 삭제 <2016. 12. 30.>

▪ 분석

- ✓ 가. 제49조, 나. 1)에서 상호접속등의 대가 산정, 2) 결합판매의 수범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이므로 사전규제가 적용되어 사후규제의 적용 가능성이 낮음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 세부유형

시행령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라. 이용자[명의가 도용(盜用)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 연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의 증대 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아. 삭제 <2016. 12. 30.>

■ 분석

- ✓ 금지행위 유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유형도 포함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 세부유형

시행령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 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을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라.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마.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 변경 사항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사.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 분석

- ✓ 금지행위 유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유형도 포함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금지행위 세부유형

시행령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	
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2)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분석

- ✓ 6호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기 곤란한 유형
- ✓ 7호의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 가능성이 크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기 곤란



개선 필요성

개선 필요성

❖ 금지행위에 대한 분석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주된 규제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
 - ✓ 금지행위 유형 중 5호 가목, 나목, 사목, 5의2호 등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규제할 수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사전규제가 적용되어(1,2,3호) 실제 사후규제인 금지행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음
- 금지행위 유형의 대부분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예상하고 도입된 규정
 - ✓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유형으로는 5호 사목 3), 5), 6)
 -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해석상 확대 적용

❖ 통신시장의 변화

- 경쟁 형태의 변화
 - ✓ 양적(망고도화 등 설비)위주의 경쟁에서 질적(콘텐츠)위주의 경쟁으로 변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상실
 - ✓ P사의 접속경로 분쟁, G사의 망사용료 분쟁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 및 기능 증대
- 부가통신사업자의 혁신 주도
 - ✓ OTT, MCN, 1인 미디어(개인방송)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 해외 사업자의 진출
 - ✓ 진입규제가 강한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진입규제가 약한 부가통신사업으로 진출
 - ✓ 무국경성을 특징으로 하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진출이 용이
 - ✓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진출

HANJOONG LLP

27

개선 필요성

❖ 개선방향

- 이용자 보호 관점의 반영
 - ✓ 사업자 관점의 금지행위에서 이용자 관점의 금지행위
 -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이용자이익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금지행위 개선
 - 공정경쟁저해성 → 이용자이익저해성 관련 금지행위 유형의 신설 및 다양화
 - ✓ 금지행위 대상 사업자 확대
 - 국내 전기통신사업자 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
 - 허가등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 허가등을 받지 않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행	수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말기 제조사 등 제조사도 포함 : 필수설비, 단말기 자급제, 제조사의 앱선택재등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침해 우려

HANJOONG LLP

28

개선 필요성

❖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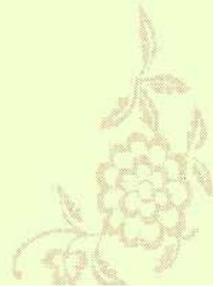
- 국내의 사업자 역차별 방지
 - ✓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 서비스 영역이 국내로 제한, 주파수 할당, 전기통신설비(망) 구축, 진입규제(허가제) 등 사전규제가 강하게 적용
 - 역차별 문제는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취급의 문제
 - ✓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 사전규제가 없거나 완화된 상태이며, 신고제가 있더라도 해외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없는 편
 -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외사업자의 국내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
 -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역외조항, 대리점 이론)
- 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동
 - ✓ 스마트폰 보급의 보편화로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
 - ✓ 모바일 트래픽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모바일이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를 대체
 - ✓ 앱 선택재, 데이터 사용과 관련이 있는 제로레이팅, 트래픽 제한 등 공정경쟁, 이용자이익저해성과 관련된 행위 증가

개선 필요성

❖ 개선방향

- 신유형 서비스로 인한 공정경쟁저해성 또는 이용자이익저해성에 대비
 - ✓ 개인방송, OTT 등 신유형 서비스에 의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 ✓ 즉시 규제 vs 시기 상조
 - ✓ 즉시 규제론자에 따르면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맞는 금지행위 유형 신설
 - ✓ 서비스 성숙할 때까지 가이드라인 등 소프트웨어에 의한 대응
- 기간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상실에 따른 균형적 시각 반영
 - ✓ 과거 일방적 약자에 불과했던 CP의 성장
 - P사의 접속경로 분쟁, G사의 망사용료 분쟁, 넷플릭스의 진출
 - ✓ 분쟁조정우월적 지위를 가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에 대한 사후규제 필요성
- 비대칭적 금지행위 개선
 - ✓ 현재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대부분
 - ✓ 금지행위 유형 중 5호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나 비대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향후 부가통신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이나 이용자침해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 → 이러한 사항 반영
- 사실조사의 실효성 확보
 - ✓ 공정거래법의 경우 조사방해의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9, 10호)
 - ✓ 조사방해의 경우 5천만원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음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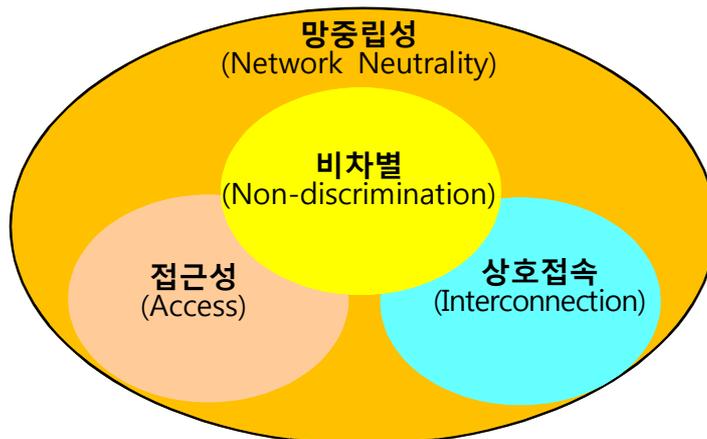
1-3.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1-3-1. 망중립성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발제자: 한양대 신민수 교수)

I. 망 중립성 개념

-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2002년 Tim Wu의 "A Proposal for Network Neutrality"에서 제시된 원칙에 의해 처음으로 실체화 됨
 - 인터넷 초기의 단대단(end-to-end)원칙과 같이, 진화된 초고속 인터넷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패킷은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처리 및 구현은 망의 단말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 망중립성이란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 유형, 제공자(또는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 인터넷 망에서의 단대단(e2e) 원칙
 - 트래픽은 중요도나 송·수신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동등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 인터넷 망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설비임에 따라 개방형 망구조와 통신망간 무정산 원칙

Figure 1. 망중립성 개념



- 초기의 망중립성: 망의 개방성 및 중립성 유지를 위한 엄격한 개념
 - (비차별) ISP의 트래픽을 포함한 모든 트래픽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됨
 - (상호접속) ISP 간에 상호접속 의무 및 권리를 가짐
 - (접근성) 최종 이용자는 다른 어떤 최종 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

- 현재의 망중립성: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ISP의 망 관리 권한을 일부 허용
 - (투명성) ISP는 망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
 - (차단금지) 합법적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단말기기 등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을 보장
 - (비차별) ISP의 트래픽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
- 망중립성은 고정된 목적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도구 개념
- 망중립성은 통신망 필수설비를 합리적 조건으로 임차·이용하는 개념인 망개방(Open Access) 및 타사망을 동등 조건으로 접속·이용하는 망동등접근(Equal Access)과 개념을 달리하며,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ISP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체계는 수립되어 있음

Table 1. 망중립성, 망개방, 동등 접근

구분	망중립성 (Net Neutrality)	망 개방 (Open Access)	동등접근 (Equal Access)
정의	콘텐츠, 플랫폼 등의 트래픽 동등 대우(비차별)	통신망 필수설비를 합리적 조건으로 임차이용	타사 망을 동등 조건으로 접속이용
적용 대상	공중 인터넷의 전송 서비스	통신망 요소(필수설비)	필수적 망
관련 주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ISP)와 콘텐츠 제공자(CP)	망사업자(NO)와 서비스 제공자(ISP)	필수망을 보유한 망사업자 및 ISP와 경쟁서비스 제공자(SP)
주요 취지	혁신공간인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	통신설비의 효율적 이용과 중복투자 방지, 경쟁 활성화	필수망을 보유한 망사업자 (NO)와 서비스 제공자(SP)의 지배력 전이 방지
적용 사안	공중 인터넷 망에서의 단대단(e2e) 원칙	유선 : 설비제공, LLU 등, 무선 : MVNO	시외, 국제, 부가통신 사업자의 가입자망 접속

- 망중립성 개념이 등장한 2000년대 초반 (특히 미국의 경우) 망중립성이 지지될 수 있었던 배경
 - 초고속인터넷 설비의 부족 및 열악한 통신품질
 - ISP가 네트워크 설비 부족을 명분으로 트래픽을 차별 또는 차단·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 이에 따라 ISP에 비해 약자인 CP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 ISP는 트래픽을 차별, 관리, 통제, 차단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 제기
 - ISP 시장의 경쟁 결여 및 과점적 시장구조
 - ISP의 지배력 남용 우려 및 경쟁사업자와 CP에 대한 경쟁제한성 발생,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 침해 우려
 - 사전규제 필요성 대두 → 망중립성 규제 도입 필요성 대두

II. 망 중립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트래픽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그간 구체적 비즈니스의 실체보다는 이념 논쟁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트래픽 폭증에 따른 망 안정성 저하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망중립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독일 O2: '11. 11월 주요 도시에서 망 혼잡으로 품질 저하 발생(민원 6천여 건)
- NTT 도코모: '11년 말~'12년 초 통신망 과부하로 6개월간 8차례 통신망 장애
- KDDI: '12년 말~'13년 초 트래픽 폭증으로 3회에 걸친 LTE 망 장애
- LGU+: '11.8월 장비 과부하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900만 이용자 피해 등

Table 2. 망 중립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쟁점	찬성	반대
공정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P가 이해관계에 따라 트래픽을 차단, 지연 등 차별 우려 ○ 망중립성 개념의 도입을 통해 ISP에 대한 견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P간 경쟁 촉진을 통해 차별 Issue 해소 가능 ○ 포털, 검색엔진 등 차별로 이미 인터넷은 非 중립적 ○ 기존 경쟁법, 통신법 등으로 불공정행위 규제 가능
전송차별화 및 품질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혼잡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 주요 신규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장 필요성은 일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의 성격 변화로 망 혼잡 문제가 대두 ○ 신규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망 차별화 필요
망 투자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중립성 하에서도 통신사업자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망 고도화 투자를 할 것 ○ 차별화 허용 시 수익성 측면에서 프리미엄 설비에만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및 요금 차별화, 망 이용대가 부과를 통한 추가수익으로 망고도화 투자가 가능 ○ 망 고도화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유인 확보는 대단히 중요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의 개방성이 인터넷 발전 및 혁신의 원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망의 혁신도 중요 ○ 콘텐츠 산업이 성장한 만큼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할 필요
평등 vs.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과 개방성이 인터넷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적인 평등주의는 비효율을 초래 ○ 서비스/요금 차별화는 이용자 후생에 기여
공공성 vs.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특정 사업자에 의한 개입 및 통제는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시내망과 달리 신규로 구축된 망은 사업자 사유재산
이용자 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서비스에 대해 대역폭을 할당함으로써 선택권 보장 ○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도 중요

Ⅲ. 해외 망중립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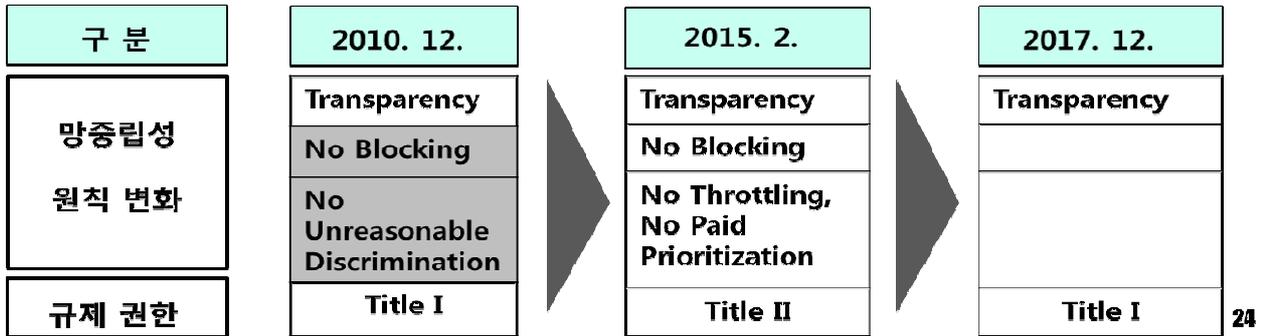
-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접근 방향은 해당 국가의 인터넷 시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음
- 유럽: 접속시장의 경쟁 → 구조적인 지배력 남용이 미국에 비해 낮은 상황

- 사후규제 → 망중립성 이슈 적음 → 공정경쟁 차원에서의 규제 접근
- 미국: 접속시장의 경쟁 결여 → 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 → 사전규제
 - 망중립성 규제 강화 → 망중립성 정책의 부정적 효과 우려
 - 망중립성 정책 폐기
- 지금까지 망중립성 논쟁은 구체적 서비스 실체 보다는 진영간 일정한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한 논쟁 성격으로 진행
 - 평등 vs. 효율성, 품질보장 vs. 전송차별화, 공공성 vs. 재산권, 공정경쟁 vs. 투자 유인
-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5G 도래 등으로 네트워크 투자 유인 등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계적 동등 대우'에 변화가 필요하든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1. 미국

- 망중립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경우 '17년 FCC가 망중립성 주요 원칙 폐기를 선언 하였는데, 그 함의는 ...
 - 망중립성은 절대 선 및 가치가 아니라 시장상황에 맞게 변하는 개념
 - 네트워크가 CP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양면시장 BM 인정
- 망중립성의 상대성 인정:
 - 망중립성은 경쟁과 혁신, 이용자 편의 제고 등 시장의 근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 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와 정책 목표 등에 따라 망중립성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와 유연한 적용이 필요
- 네트워크의 플랫폼 化:
 - FCC는 네트워크의 양면시장을 통한 가격책정이 '투자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
 - 통신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이용자와 CP의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가격 책정/네트워크 확장에 투자 → 플랫폼 양측의 수요 진작 → 투자의 선순환
- 망중립성 규제로 ISP의 투자가 감소했다고 판단
 - 통신사 인터넷 투자가 '15년 망중립성 강화 이후 약 5.6% 감소('14년 대비 '16년 상위 12개 ISP의 인터넷 투자가 약 36억달러 감소
 -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적 R&D 투자 지연
 - 중소 ISP의 투자 위축으로 놓여준 지역 소비자의 피해 증가
- '15년 이전의 인터넷 환경으로 복원하여 혁신 투자 경쟁 촉진을 기대
 -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에서 정보서비스로 재 분류하고 투명성 규제만 유지하고, 사후 규제 권한은 FTC(Federal Trade Commission)으로 이관
 - 구글, 페이스북 등은 망중립성 규제가 없던 시장에서 성장하여 현재의 글로벌 사업자 지위 획득

Figure 2.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 변화



2. EU

- 미국의 경우와 달리 유럽의 다수 국가는 망중립성 기조 유지
 - '16년 8월 BEREC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에 망중립성 정책 지침 제시
- 영국의 경우 EU의 권고를 참고하나 약한 수준의 망중립성 정책 수준, 즉 자율규제 기조를 채택
 - Ofcom과 영국 정부는 자율규제방식을 통해 최종이용자들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 규제는 차단과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자의 합리적인 사업자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음
- 영국과 같은 약한 수준의 망중립성 원칙은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망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과 약한 수준의 망중립성 원칙 하에서 망중립성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임
- 최근 5G 특성과 기존 망중립성 원칙 간 상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임
 - '18년 2월 BEREC 의장은 European 5G Conference에서 '5G N/W Slicing의 망 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Berec plans industry consultation on 5G network slicing impact on net neutrality , Telecompaper, '18.02.12)

 - 이는 5G 조기 구축을 위하여 망중립성 관련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해소하기 위한 것임

IV.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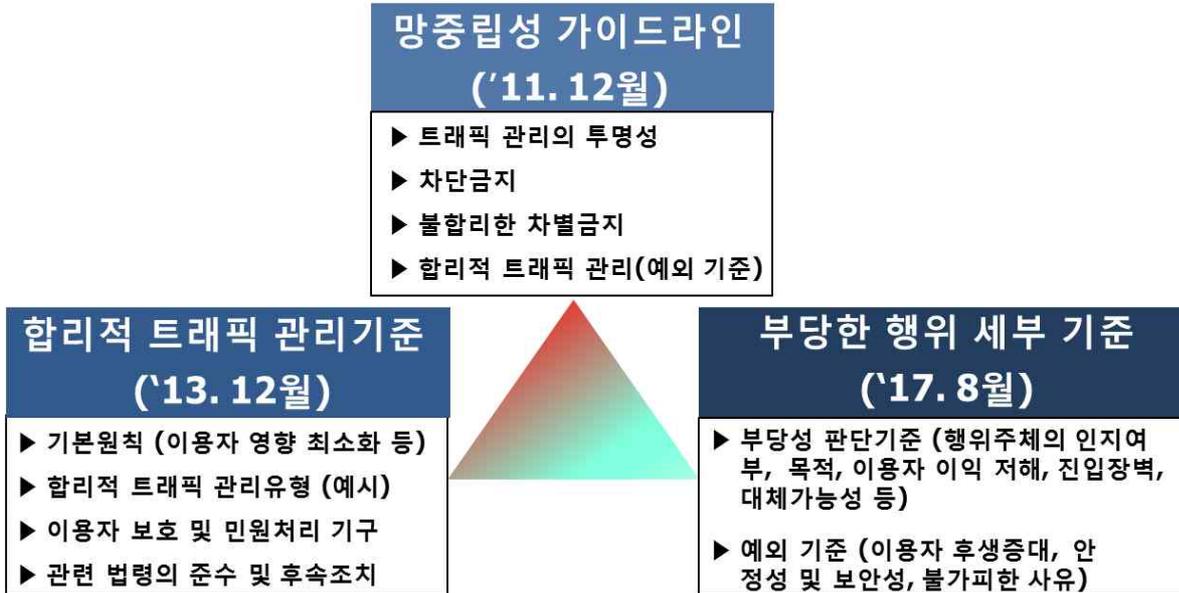
1.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불공정행위 기준이 시행 중임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사업법 상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

등 기본적인 체계를 정립하고 있음

- 특히 금지행위 해석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이 활용되고 있어 사전규제적 효력도 동시에 지님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시행 후 망중립성 위반 사례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음

Figure 3.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 현황



○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포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금지행위)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경쟁법을 통한 망중립성 규율 가능

-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접근하는 견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이 국내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도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며,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견해도 망사업자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점에서 망중립성 논의는 경제적으로 망사업자의 시설투자회수에 대한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콘텐츠 사업자의 편승행위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음

- 만약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망중립성 정책은 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법적 시각에서도 망중립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까지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
- 경쟁법은 사후적으로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들을 규율하는 법제이므로 전면적 별도의 입법을 통해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대신,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경쟁법적인 개념 틀에 투영하여 규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
 - 미국의 경쟁당국인 FTC(공정거래위원회)나 DoJ(법무부)가 망중립성 개념을 굳이 입법화하려는 FCC의 태도에 반대하였던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
- 망중립성에 대한 규율을 경쟁법적인 틀로 투영하여 보면, 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문제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주제가 문제가 됨
- 경쟁법 관점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제는 접속 차별이나 가격 차별 및 거래 거절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3조의 2)의 한 유형으로, 또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한 유형으로 각 망사업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규율의 법적 근거가 달라질 것임
- 수직결합사업자의 경쟁자 배제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정 인터넷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봉쇄가 수직 계열화된 망사업자에 의해서 시도되는 경우 망사업자의 망사업에 있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콘텐츠 사업으로 전이하려는 시도에 대한 규제는 경쟁법이 이미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장봉쇄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3조의2 배제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할 수 있음
- ISP의 망 중립성 원칙 위반과 경쟁법 위반 가능성을 연결시키는 특수한 사정
 -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상 ISP에 부여된 특별한 의무
 -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의 공적인 역할
 -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비용의 차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

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②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이는 공익적 이유, 효율성·경제성, 비용의 차이 등의 관점에서 합리적 차별이 가능함을 의미

3.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 확보 필요

o 혁신의 가능성은 콘텐츠와 네트워크 양측에 모두 있음

- 인터넷이 처음 구축되고 군사용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등장한 단대단 원칙(end-to-end)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분한 OSI Layer의 상부에 위치한 애플리케이션 층(application layer)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layer 1 ~ 3에 위치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음
- 그러나 혁신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네트워크에 기반 한 통신산업의 혁신도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5G 시대에 접어들며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o 플랫폼으로서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식 필요

- FCC는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간주하였으며, 5G에서는 이러한 양면시장, 플랫폼의 성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5G에서는 N/W Slicing을 활용하여 산업별·기능별 요구사항에 대응한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 가능)
- FCC는 네트워크의 양면시장을 통한 가격책정이 ‘투자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5G 투자유인 제고 및 이용자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

o 시장 지배력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자들의 과감한 투자('02년부터 '15년까지 통신 3사 누적 투자금액은 약 90조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ITU의 ICT 발전지수 4회 연속 1위를 차지
- 그러나, 최근 통신업계는 CPND 생태계 내 위상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도 하락세(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10위('14년)→12위('15년)→13위('16년)로 지속 하락
- 반면,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로 구축된 ICT 환경을 이용한 급격한 성장을 기반으로 생태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16년 기준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3조원(전체 매출 4조원)에 달하며, 이는 지상파 3사 및 3,700여개 전체 신문사 광고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에 해당)

- 특히, 최근 ICT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CP는 자율주행차·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신사업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부담과 규제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

o 소비자 선택,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와 망중립성

- 망중립성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비자 선택,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들어 망중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선택에 대한 제한과 차별은 네트워크가 아닌 플랫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임
- 포털은 인터넷 관문으로서 검색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며, 뉴스를 접하는 통로로 전통적인 언론사를 압도하는 등 뉴스 유통환경이 포털에 종속
- '17년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6.4%)이 인터넷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면서도 해당 기사의 출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52.9%)
- 또한 ISP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 및 CP의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의 충돌로 보아야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충되는 기본권 주체가 갖추고자 하는 효용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4. 5G 시대의 네트워크 기술과 망중립성 간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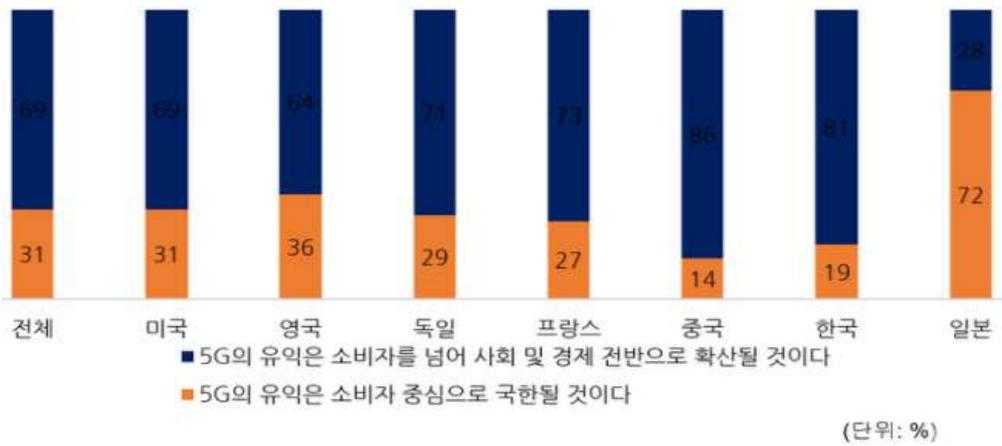
o '17년 1월 영국 시장조사기관 HIS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분석기간은 국제 5G 상용화 원년인 '20년부터 5G의 경제적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 되는 시점인 '35년까지로 설정
- '35년경 5G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2.3조(약 1경 3,774조 원)규모로 예측되며, 같은 해 총 예상 GDP의 4.6%에 해당
- 이는 '16년 미국 전체 소비지출금액과 동일 수준이며, 같은 해 기준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소비지출금액을 합산한 것보다 큼
- 5G는 '35년경 \$3.5조(약 3,920조7,000억 원)의 가치사슬을 창출하며, 이는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치사슬을 합산한 것보다 큼
- 또한, Fortune지의 '16년 국제 1000대 기업 중 상위 13개사의 수익을 합산한 총액과 비슷한 수준임

o PSB(Penn Schoen Berland)는 5G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기술이 생활, 경제, 글로벌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측정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중국 제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5G가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이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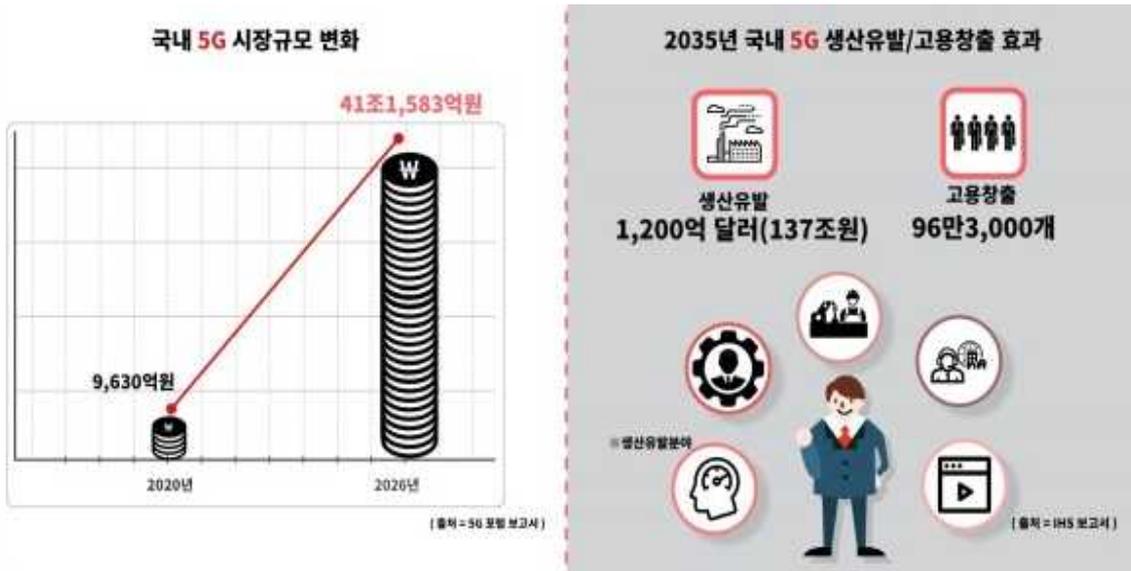
Figure 4. 5G의 효과



(자료 PSB, 2017)

- o 5G는 국내 주력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업분야별로는 제조업이 약 \$3.4조(약3,817조원)로 전체 5G 효과 금액 중 2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남(IHS, 2017)
- o 5G는 '35년경 2,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5G 이동통신은 \$1,200억 규모(약 135조120억원)의 부가가치 및 96만개의 신규 고용창출로 국내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됨

Figure 5. 국내 5G의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



(자료: IHS, 2017, KT 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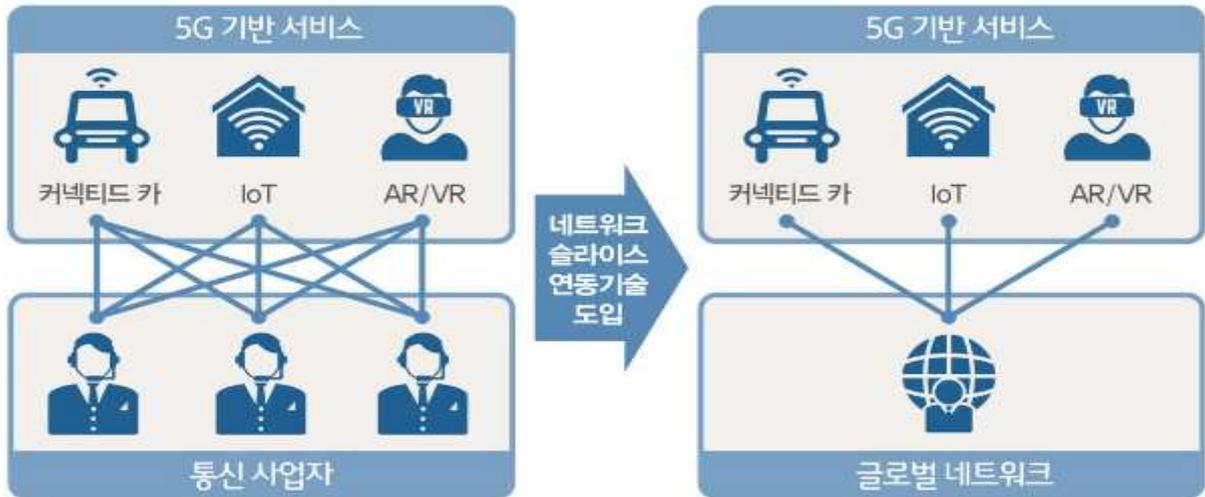
- o 산업발전의 촉매인 5G 시장의 최종승리는 '세계 최초' 타이틀이 아닌, 5G를 통한 차별적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교통, 의료, 제조업 등 Offline 산업을 어떻게 모바일화 할 것인가에 있음

Figure 6. 5G 시대의 성공 요인



- o 다양한 산업 및 사물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5G에서는 산업별 속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
 - 안전과 직결된 자율주행차, 재난 대응 등의 서비스와 단순 웹브라우저는 각각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이
 - 이에, 5G에서는 속도, 용량 등 개별 서비스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SDN/NFV)이 확대될 전망

Figure 7. 네트워크 슬라이싱



(자료: CCTV News, 2017. 2. 15)

- o 5G 시대에는 새로운 망중립성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
 -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할 경우, 신규 서비스 출시와 이를 요구하는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산업의 혁신을 크게 저해할 우려

- 5G를 단순히 속도만 빠른 Dump Pipe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신경망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망중립성 정책 개선 방향

- o 5G 시대에는 비용의 일방적 전가를 야기하는 정책보다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수익과 비용의 배분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는 '망 공정성(Network Fair Use)' 정책이 필요
- o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은 기대와 달리 서비스나 사업자의 다양화를 이뤄내지 못했고, 오히려 소수의 거대 CP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왜곡된 인터넷 생태계가 형성됨
 - 망중립성 원칙을 통해 개방형 생태계에서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남
 -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인터넷 기업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수 기업이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o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의 기본 철학인 개방과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며, 정당한 수익을 수취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함
- o 인터넷 초기 단계에서의 비차별성과 형평성 원칙은 현재와 같은 대용량 트래픽과 과점적 시장 하에서는 공정성 원칙과 응익원칙(Pay as you go)이 적용되는 망중립성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o 다만, 망중립성 원칙이 망 공정성 원칙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의 근간이 되는 철학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핵심 논의 방향은 시장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o 이때의 원칙으로는 공정상생의 원칙, 중소 CP 보호 및 육성 원칙, 이용자 편익 기준 원칙, 이용자 경험 최대화 원칙, 공익성 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o (공정 상생의 원칙) 기존의 기계적 평등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망중립성 정책에서 벗어나, 5G 시대에 부합하는 망중립성의 명확한 개념과 산업별/서비스별 적용 범위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기준 수립
 - 5G 시대 ICT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 간 수익과 비용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망중립성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
- o (중소 CP 보호 및 육성 원칙) 망중립성 정책의 개선으로 인해 중소 CP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중소CP 보호 및 육성

- (이용자 편익 기준 원칙) 망중립성 정책 개선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함
- (이용자 경험 최대화 원칙) 망중립성 정책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을 최대화하여 이용자가 망중립성 정책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토록 함
- (공익성 우선의 원칙) 망중립성 정책 개선 과정에서 공적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1-3-2.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 (발제자: 아주대 김성환 교수)

1. 제로레이팅과 망중립성의 관계

□ 망중립성의 개념

- 망중립성 원칙의 핵심은, 인터넷 트래픽의 차단 및 차별을 금지하는 것임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4조)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5조)
- 또한, 이러한 망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목표는 이용자 선택권의 보장
 -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2조)
- 요컨대, 자유로운 혁신의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망중립성의 근본적 취지라고 할 수 있음

□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인가?

- ISP로서의 MNO가 인터넷 트래픽을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하였을 때 망중립성 위반이 되는 것인데, 제로레이팅은 MNO의 트래픽 처리와는 전혀 무관함
 - 기술적으로 인터넷망이 dumb pipe 기능을 한다는 원칙이 전혀 훼손되지 않음
- 따라서, 제로레이팅과 망중립성은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제로레이팅이 트래픽을 직접적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CP를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일부 있음
 - 궁극적으로는 혁신의 공간인 인터넷의 개방성을 저해한다는 시각
- 이러한 시각은 망중립성 개념을 새로이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합의된 망중립성 개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
 - 차별성의 문제는 제로레이팅 규제 논쟁의 핵심 쟁점이므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검토 하겠음

□ 망 이용대가 부담 주체의 문제

- (종량제가 아닌)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보장된다는 것은 곧 ISP가 CP에 망 이용대가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음
 - 즉, ISP가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CP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유인이 없음
- 이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은 곧 인터넷 사용료의 대부분을 일반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원칙과 동일시되어 왔음
- 그러나, 종량제 성격이 강화된 무선 인터넷 이용 환경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준수되더라도 ISP로서의 MNO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거나 CP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 MNO는 이용자의 특정 CP 이용 데이터 요금을 감면하는 대신 해당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
 - CP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MNO에 이용자의 자사 서비스 이용 데이터 요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
- 즉, 제로레이팅이라는 새로운 MNO/CP 사업모형은 “망중립성 = 최종이용자의 망 비용 부담”이라는 기존의 등식을 깨는 효과가 있음
- CP의 입장에서는, 망중립성 개념 자체의 의미보다는 “망중립성 = 최종이용자의 망 비용 부담”이라는 등식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로레이팅을 곧 망중립성 위반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제로레이팅 규제론의 쟁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로레이팅이 특정 CP를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있음
 - 이는 제로레이팅 규제론자들의 핵심논거라고 할 수 있음

□ 제로레이팅의 차별성 문제

- CP가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제로레이팅의 경우, 엄밀히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만약 CP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로레이팅이 적용된다면, 이는 MNO가 해당 CP에 차별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CP가 제로레이팅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했다면 차별이 아님
 - 만약 이용자에 대한 제로레이팅 제공 측면을 보지 않고 CP와 MNO 간 관계만 본다면, 오히려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CP가 그렇지 않은 CP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임

- MNO가 자체 서비스를 제로레이팅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MNO는 그만큼의 데이터 이용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물론, 제로레이팅 계약 자체가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나 차별적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면 반경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이론적으로는, 배타적 거래나 가격차별도 효율성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서는 안 됨
 - 즉, 사안별 경쟁제한성 판단에 따른 사후규제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함

□ 이용자 선택권 및 인터넷 개방성 저해의 가능성 문제

- 제로레이팅의 차별성 이슈는 반경쟁 사후규제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면, 이용자 선택권 및 인터넷의 개방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는 망중립성 규제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물론 이미 언급했듯이 제로레이팅은 엄밀히는 망중립성과 무관하나, 그 연장선에서 문제점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음
-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제로레이팅이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거대 CP들로의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혁신적인 중소 CP가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임
- 그러나, 현재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요금제가 완전한 종량제가 아니라 정액제의 요소도 상당히 갖고 있고, 장소에 따라서는 와이파이나 유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선택권과 인터넷 개방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용자에게 가치있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CP라면 여전히 선택을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음
 - 고화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실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들이 제로레이팅 제공 여부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물론, 서로 대체가능한 유사한 수준의 온라인 서비스들 간의 선택에서는 제로레이팅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으나, 이는 유사한 서비스들 간의 경쟁에서 선택을 받기 위한 차별화 마케팅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제로레이팅 역시 서비스의 여러 속성들 중 하나로서, 이용자는 제로레이팅 제공 여부와 해당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의 선택과 다를 바 없음
- 규제론자들은 제로레이팅을 하지 않는 CP는 생존/성공할 공간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과도한 우려 내지는 억측이라고 생각됨
- 같은 우려가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MNO가 CP를 선별하는 기능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walled garden 또는 인터넷 파편화에 대한 우려

- 그러나, 그러한 선별의 문제는 이미 대형 플랫폼의 계위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의 선별/추천과 MNO의 선별/추천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동영상 스트리밍의 경우

- 예외적으로,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경우 제로레이팅을 제공한다면 상당한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해당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서비스에 국한된 것으로서 인터넷 개방성을 저해하는 수준의 문제는 아님
-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대용량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에 대응하여 MNO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것은 자사 이통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또한, 유튜브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MNO가 자사 또는 다른 경쟁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로레이팅으로 제공하는 것은 경쟁촉진의 의미도 갖고 있음
- 물론, 여타의 경쟁 CP들에 대해서는 수직적 봉쇄나 배제의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사안별 경쟁제한성 판단에 따른 사후규제 관점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망에 많은 부담을 주는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선 IPTV와 같이 정액 요금 형태의 관리망(managed network)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이상적
 - 한편, 보다 일반적인 중저화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반경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MNO와 CP간 제휴에 따른 제로레이팅으로 제공되는 것이 이용자 편익의 관점에서 바람직함
 - 즉, 이러한 제로레이팅은 MNO 서비스 경쟁의 한 속성으로 수용하고, MNO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3. 제로레이팅의 경제적 효과

- 제로레이팅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업모형으로서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론적, 실증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음
- CP-MNO-이용자를 연결하는 거래관계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사업모형이므로, 특별히 명백한 반경쟁 문제나 인터넷 개방성 침해 가능성이 없다면 일단 허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제로레이팅으로부터 일차적으로 기대되는 가장 명백한 효과는 이용자 측 이동통신 요금 부담의 감소임
 - 장기적으로는, CP의 망이용대가 부담이 다시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거나 제로레이팅을

유도하는 요금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아직 추측에 불과하므로 향후 시장의 변화를 관찰해볼 필요가 있음

- 양면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망 비용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집중시키고 상대적으로 CP들에게는 일종의 보조금(subsidy)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Lee and Wu, 2009)
 - 양면시장에서는 어느 한측을 파격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으로 인정됨
- 그러나, 망비용을 이용자가 비대칭적으로 부담하는 인터넷의 구조가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결과, 거대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등장한 반면 이용자들은 통신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 제로레이팅은 CP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의 인터넷 모형과 반대되는 형태의) 양면시장 모형으로서, 온라인 대기업으로의 쏠림 및 이용자 통신비 부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일반 이용자가 적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혜택을 누리는 구조의 양면시장 사례는 대단히 많으므로, 인터넷에서도 이를 향후의 대안적 모형으로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유료방송 시장, 신용카드 시장, 미디어 시장 등

1-3-3. 망중립성 주요 이슈와 시민사회의 입장 (발제자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1. 해묵은 이야기들

- CP의 투자분담 필요?
 -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통신사가 하는 것이 당연
 - 기기에 대한 투자는 제조사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통신사가
 - 이용자, CP는 이미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
 - 망사용료의 수준, 통신서비스 품질(용량 등)에 따라 과금 차등은 망중립성 이슈와 무관.
 - 통신사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이용자/CP도 망사용료를 내야하는가?
 - 통신사는 전 세계 CP에게 망사용료를 요구할 것인가, 국내 CP는 전 세계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 CP는 수익 독식, 통신사는 비용부담?
 - 진입이 자유로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과 진입제한이 있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
 - CP의 수익 vs 통신사의 수익은 잘못된 설정
 - 망중립성은 통신망을 보유한 통신사가 망에 대한 통제권을 근거로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
 - 트래픽이 증가하면 통신사의 수익도 증가함 : 통신사 수익을 위한 통신비/망사용료의 결정은 통신사에 있음. (규제기관의 요금규제의 적절성도 별개의 이슈임)
- 통신망의 혁신을 위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
 - 경쟁이 혁신을 촉진
 - 망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필요

2. 망중립성과 별개의 이슈들 : 서로 다른 이슈를 섞지 말 것

- 플랫폼 중립성, 혹은 대규모 CP(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소규모 CP에 대한 차별, 부당행위 문제
- 통신요금 인하, 통신요금 규제
-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소위 '뉴노멀법' (포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미규제를 근거로 역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상호접속 문제

3. 미국의 망중립성 완화

- 트럼프 정부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변화는 국제적인 추세라고 할 수 없음.
- FCC 정책에 대해 미국의 인터넷 기업, 시민사회, 민주당, 주의 반발
 -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등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 수정안 제출 (뉴욕, 커넥티컷, 매릴랜드 주 등도 준비)
 - 뉴저지, 몬타나 주에서는 주 지사가 ISP 들에게 망중립성 수호 의무를 부과한 행정명령에 서명
 - 뉴욕주 등 미 20여 개 주 검찰총장이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
 - 미국 민주당, 연방통신위원회 결정 무효화를 위한 상원 입법안 준비
- 미국의 경우 통신 시장 경쟁의 미흡과 이로 인한 높은 통신비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4. 5G와 망중립성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특성으로 서비스에 따른 트래픽 차별의 필요성 제기
- 5G의 특성이 동종 서비스 내에서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님
- 서비스 간의 차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Specialized Service (특정 목적과 대상으로 용도가 한정되는 서비스) 는 별개의 이슈

5. 제로레이팅

- 망중립성은 기술적 측면에서 E2E 원칙에 따라 네트워크가 설계되었고 인터넷 개방성을 위해 트래픽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경제적인 차별로 확장되지 않을 이유는 없음. 특정 콘텐츠/서비스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것은 그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트래픽을 차별하는 효과를 가져옴. 기술적 차별이나 경제적 차별이냐의 차이일 뿐.
- 제로레이팅에 대한 우려 :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시장 왜곡으로 인한 혁신 저해.
- 제로레이팅으로 이용자 통신요금 부담 완화?
 - 특정 이용자에게만 단기적인 효과.
 - 통신사 및 CP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이전 가능성
 -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임.
- 제로레이팅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요금제 가입없이 제한적 인터넷 이용 제공 : Free Basics by Facebook
 - 요금제와 결합한 형태 : 다음 카카오펙
 -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지원 : SK텔레콤 11번가 등
 - 이용자에게 데이터로 보상 (예를 들어 광고를 보는 대가)
 - 특정 CP가 데이터 요금을 보조하는 경우

- 제로레이팅의 효과에 대한 판단 프레임워크 (ZERO RATING: A FRAMEWORK FOR ASSESSING BENEFITS AND HARMS by CDT)
 - 제로레이팅 상품의 특성
 - 배타성 : 특정 통신사 혹은 CP와 배타적인 계약 체결 여부 : 배타적일수록 시장 왜곡 효과가 커짐
 - 통신사와 CP가 계열사 관계인지 : 계열사인 망의 통제권을 악용하여 콘텐츠 시장 왜곡 우려
 - 제로레이팅 비용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전반적으로 소규모/스타트업보다 기득권에 유리
 - 전반적인 통신요금 수준 : 전반적인 요금 수준이 낮다면, 제로레이팅의 영향력이 제한적
 - 투명성 : 누가 지불하는지, 제로레이팅 상품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이용자가 informed 결정을 할 수 있어야.
 - 외부적인 요소
 - 통신시장, CP 시장의 경쟁상황 :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을 경우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음.
 - 인터넷 보급률, 이용자의 리터러시 : 제3세계의 경우.
- 제안
 - 최소한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금지할 필요
 - 제로레이팅의 불공정 경쟁 효과, 이용자의 선택권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여 규제 여부 결정 필요.
 -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을 침해해서는 안됨 (예를 들어 암호화 해제를 요구한다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 투명성 요구
 - 제로레이팅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

1-3-4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발제자: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 5G 특성과 기존 망중립성 원칙 간 상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5G 투자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 다양한 산업 및 사물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5G에서는 산업별 속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

○ 해외 정책동향

- (미국) '17.12월 구 망중립성 규칙 중 투명성 원칙 외 사전규제(차단 금지, 전송지연 금지 및 대가기반 우선처리 금지) 및 사후규제(일반행위규칙) 폐지

※ 다만, 투명성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차단/전송지연/대가기반 우선처리에 대하여도 정보 공개의무 부과

- (EU) '15년 망중립성 입법화 및 '16년 BEREC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투명성, 트래픽 동등처리 의무 및 사후규제 시행 중

※ '18.3~4월 BEREC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망중립성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특히, 신기술의 채택에 망중립성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i) 5G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신기술을 택함에 있어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지 여부 및 ii) 네트워크 슬라이싱, 에지 컴퓨팅 등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택함에 있어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음

○ 규제 완화 찬성 입장

-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할 경우 신규서비스 출시와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형 서비스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가기반 우선처리의 경우도 웹서핑 등 통상적 인터넷서비스 품질요구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허용

- 다만, 정책 변화로 인한 중소 CP 피해 또는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 규제 완화 반대 입장

- 5G 기술이 인터넷 접속서비스라는 속성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망중립성 규제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5G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한 망중립성 위반 가능성은 극소수 서비스 (예: 자율주행차)에 한정되므로 그 때 가서 관리형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 가능하고, 최소한 각 슬라이스 내에서의 트래픽 차별은 금지해야 함

<국내외의 관리형/특수목적 서비스 비교>

구분	한국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미국 (구 망중립성 규칙)	EU (망중립성 규칙)
정의	· 트래픽 전송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 3가지 속성 제시: 특정 목적, 일부 착신,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필요	· 최선형인터넷 이상의 품질을 요하는 혁신적 서비스
예시	· 없음 · 통상 IPTV, VoLTE, VoIP 등을 관리형서비스로 분류	· VoIP, IPTV, 심장 모니터링, 에너지소비 센서, 자동차 텔레매틱스, 학교 교육서비스	· 공익적 서비스, 신규 M2M서비스 등 · 가이드라인에서는 VoLTE, IPTV, 실시간 헬스서비스(예:원격수술)
허용조건	·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	· 이용자편익, 경쟁, 투자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	·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닐 것,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 제로레이팅

○ 현재 다양한 형태의 제로레이팅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 CP에게 불리하여 인터넷 개방성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특히, 통신사의 자사/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이 다수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됨

○ 해외 정책동향

- (미국) 구 망중립성 규칙 하에서 사전규제 기준을 위반하는 제로레이팅은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후규제*하던 것을 '17.2월 “이용자 특히 저소득층에게 인기가 많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완전 허용**

* 사후규제기준(일반행위규칙)은 이용자 통제, 경쟁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보호, 혁신/투자과 네트워크 구축에 미치는 효과, 표현의 자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무관한 처리, 업계 표준관행 등

※ '17.1월 통신사의 자사/100%자회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2월 이를 폐기하고 조사 종결

- 주된 논거는 비용 측면에서 통신사는 매우 적은 비용만이 소요되나, 경쟁 CP들은 유의적인 비용(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 발생한다는 것임

- (EU) BEREC 가이드라인은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상업적 행위 평가기준 적용하여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 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안별 판단하되**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부정적 입장*** 명시

*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정상처리되고 그 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

** 판단기준: ISP와 CP의 시장지위, 이용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 CP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규모와 대안의 존재 여부 등

*** 특정 애플리케이션에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범주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음

- '17.12월 BEREC이 발표한 각국 규제기관의 '망중립성 규제 시행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로레이팅 관행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 동 보고서에서는 규제 사례들을 먼저 트래픽 관리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이후 모든 CP들에게 비차별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사실상 사전적으로 트래픽 관리가 없고,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일조건 요구)

<트래픽 관리가 있는 경우>

- (독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제휴서비스 및 비제휴 서비스를 SD 화질로만 제공(전송지연)하였기 때문에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으로 판단
- (스웨덴/오스트리아/이탈리아/크로아티아/헝가리)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이용가능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한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으로 판단

<트래픽 관리가 없는 경우>

- (영국) 메시징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데이터 사용량이 소량에 불과하고 모든 CP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공식 조사 개시하지 않음
- (네덜란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모든 CP에게 개방되어 비차별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

○ 정책 방향 및 쟁점별 찬반 견해

- (기본방향) 제로레이팅의 가장 명백한 효과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감소
이므로, 경쟁·선택권·개방성 저해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원칙적 허용
- 다만, 예외적인 금지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효과를 평가하여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뉨
-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통신사는 그만큼의 데이터 이용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뉨

* 경쟁CP의 제로레이팅 요청에 대해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 큰 문제가 없음

-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우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뉨
- (배타적 제로레이팅) 특정 CP에 대하여만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더라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뉨
- (차별적 제로레이팅) CP 간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제로레이팅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서 규제**

□ 투명성 강화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투명성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준수 여부 확인 및 위반 시 제재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명시되지 않음
- 차단 금지 또는 차별 금지 위반 시 금지행위 규정 적용 가능하나, 투명성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 근거조항 미비

망중립성 규제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 법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2018. 4.

고려대 이성엽 교수(법학박사)

1

목차

- I. 서론
- II. 망중립성의 개념과 배경
-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대안 모색

2

I. 서론

-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
-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이 된 것이 인터넷 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반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면서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게 된 상황
-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적정수준의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
- 다만, 시장에서 통신사업자, CP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최종 이용자등의 3인의 경제주체간의 이해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
 - 결국 망중립성 이슈는 정부규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법정정책, 공법적 이슈로서 성격을 지님
 -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의 개방성의 조화를 위한 비용분담 질서의 정립의 성격

3

I. 서론

- 2003년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Tim Yu 교수에 의해 제기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여러 차례의 변화를 통해 미국 FCC 인터넷 정책의 핵심내용으로 자리잡아 왔음
- 미국 FCC는 연방통신위원회는 2017.12.14일 '인터넷 자유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선언을 통해 망중립성 규제 대부분을 폐기하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킴
- 망중립성 원칙의 수혜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망사용료를 추가부담하게 될 전망이고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은 인터넷 트래픽 등을 이유로 요금을 차등화 할 경우 사업에 애로가 예상
- 미국과 유사한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해온 한국의 경우에도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와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구체적 법제도적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

4

II. 망중립성의 개념과 배경

< 망중립성의 개념 >



- 망중립성이란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 유형, 제공자(또는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Tim Wu 교수 : "equal treatment of all data packet: no priority delivery")

5

II. 망중립성의 개념과 배경

- 망중립성이란 비차별 원칙하에서 끝단에 위치한 이용자 및 CP들에게 콘텐츠 활용에 대한 통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 이용자는 일정한 속도와 정해진 요금의 인터넷에 가입한 후 원하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음
- Tim Wu 교수는 네트워크는 패킷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처리하고 구현하는 것은 망의 단말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
- 데이터의 중요도, 송. 수신인이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동등하게 취급되는 비차별성(No discrimination)이 인터넷의 핵심

6

II. 망중립성의 개념과 배경

<망중립성 관련 주체별 개념>

○ ISP 관점

-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망을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

○ 이용자 관점

- 이용자가 인터넷 망을 이용해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에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 자신들의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전송·운용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내포

7

II. 망중립성의 개념과 배경

○ 망 중립성 개념은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의 '비차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1934년 통신법(1996년 개정) 제202조로부터 유래

- 망 중립성은 공익(public interest)에 기초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차별 의무를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음

- 망 중립성 규범은 경쟁제한성의 존재와 같은 별도의 정당화 사유를 입증하지 않고도 공익적 지위에 있는 망 사업자의 차별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개념으로 이해

* Common carrier: 19세기 미국은 교통과 통신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에 대해 공익상 의무를 부과 특히 물건의 원활한 배송, 요금의 합리적 설정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 기업을 Common carrier로 명명. 이들이 사기업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대중에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Verizon Communications In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4), pp. 47-48). 통신법상 Common carrier는 주간 또는 외국간 유무선통신을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47 U.S.C §153. Definitions).

8

II. 망중립성의 개념과 배경

○ 인터넷 시장구도의 변화와 인터넷 트래픽 급증

-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의 등장 등 서비스의 혁신과 인터넷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인한 네트워크 발전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성장
- 최근 시장포화 및 정액요금제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성장은 정체되는 반면 트래픽은 급증하는 등 기존 시장구도가 변화.
- 이에 유해트래픽의 차단을 포함한 트래픽 혼잡 관리 및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비 분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

○ 통신사업자들간 경쟁의 심화

- 통신사업자의 경쟁서비스 예컨대 모바일 인터넷전화 등의 출현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특정서비스 차단 등 트래픽 차별에 대한 우려가 발생.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 ISP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술의 발달로 트래픽 유형별 차별·차단 등 전략적 제어가 가능

9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망중립성 법제화 추진 배경>

○ 독과점적 초고속 시장의 존재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 초고속 지역시장 상당수가 독과점으로 트래픽 차단 우려 존재
 - ※ '09년도 미국 전체 가구 중 70% 가량이 1-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만이 존재하는 지역에 거주('10년, FCC)
- 망사업자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시장지배력에 근거하여 특정한 콘텐츠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수직적 봉쇄"하는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존재할 가능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초고속인터넷을 규제가 전혀 없는 정보서비스(국내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로 분류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자국 인터넷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 구글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자국의 OTT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가 관건

10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2005년 FCC 망중립성 4대 원칙>

- ①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 ②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 ③ 소비자는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 기기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권리가 있음
- ④ 소비자는 망 사업자, 어플리케이션/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간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2009년 FCC 망 중립성 규칙 제정 공고>

- FCC는 기존의 망 중립성 4원칙에 ISP가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원칙으로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추가하여 망 중립성 6대 원칙
- 비차별성의 원칙은 합리적인 망 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
- 투명성의 원칙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이용자,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행위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

11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2010 FCC Open Internet Order>

원칙	내용	비고
투명성 (Transparency)	○ ISP는 광대역인터넷 접속서비스의 망관리 관행, 서비스 제공조건을 공개하여야 함	유무선 적용
접속차단 금지 (No Blocking)	○ 유선ISP : 합법적 콘텐츠, 앱, 서비스, 단말기 차단 금지 ○ 무선ISP : 합법적 웹사이트, 자신들이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와 경쟁하는 앱(mVoIP) 차단 금지	유무선 차등 적용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 유선ISP : 합법적 트래픽 전송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특정이용자, 특정트래픽 차별 등) 금지	유선에만 적용
합리적인 망관리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 ISP의 망관리 관행이 합법적인 망관리 목적달성에 적합한 경우 이를 인정 * 네트워크 혼잡 완화, 네트워크 보안, 최종 사용자가 원치 않는 트래픽(음란 등) 해결 등을 위한 관리 인정	유무선 모두 적용

12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2014년 연방항소법원의 망중립성 원칙 무효화 판결.D.C. Circuit Court, Verizon. v. FCC>

o Verizon은 FCC의 인터넷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 ("14.1.14)하여 망중립성 원칙이 무효화

- 법원은 FCC가 ISP를 FCC의 규제 권한이 없는 정보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서도 차단·차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결

① 투명성(transparency) -> 유효

② 접속차단 금지(No Blocking) -> 무효

③ 불합리한 차별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 무효

④ 합리적인 망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13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o 법원은 FCC는 통신사업자(common carriers)로서 네트워크 제공자에 대해서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s)가 아닌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로 분류되기 때문에 Title II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따른 통신사업자로 규제할 수 없다고 봄

o 다만, 법원은 Section 706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FCC에게 광대역인터넷의 설치를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할 권한은 부여하고 있다고 봄.

o 법원은 동 조항에 대한 FCC의 해석을 대체로 지지하며 특히 2010년 규칙 같은 것이 없는 경우 인터넷의 개방성이나 인터넷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FCC의 해석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원은 FCC가 동 규칙을 법원의 의견에 따라 변경해 줄 것을 제안

o 동 판결은 그동안 FCC가 법령의 근거 없이 common carrier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오픈인터넷 규칙을 common carrier가 아닌 ISP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선언

14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2015년 FCC Open Internet Order>

o ISP를 Common Carrier로 재분류하여, 기존 규칙 내용 유지 및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정. 광대역인터넷을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기간통신서비스로 편입하여: 통신법 201조(서비스와 요금), 202조(차별금지), 208조(FCC 신고) 등 주요 조문을 적용

- ① 접속차단금지(No blocking)
- ② 기술적 필요 측면의 망관리(A network management practice)만 허용
- ③ 인터넷 접속의 방해 또는 품질저하 금지(No Impairment or Degradation of Internet Access : No Throttling)
- ④ 지불에 따른 우선처리 금지(No Paid Prioritization)
- ⑤ 부당한 간섭 또는 부당한 불이익제공 금지(No Unreasonable Interference or Unreasonable Disadvantage)
- ⑥ 투명성(Transparency Required)

15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2017.12 FCC 망중립성 원칙 폐기하는 인터넷자유회복 선언>

o 2017년 4월 FCC는 기존 망중립성 정책 실패 선언

- ① 광대역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투자 위축 ②신규 또는 고도화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축소, ③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고용 감소, ④ FTC의 광대역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권한 제한과 이에 따른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약화

o 2017년 12월 14일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고 2015년 조치를 무효화 (2015년 이전에는 ISP가 Title I으로 분류되었다가, 2015년 조치 이후 Title II로 분류, 금번 조치로 ISP는 다시 Title I으로 분류함)

- ISP에 적용되던 Common Carrier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①인터넷(망)에 대해 공공성보다는 산업, 사적 재산적 성격을 강화하고, ②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공정경쟁) 중심으로 접근

o 상위목표는 인터넷의 자유 회복이고 하위목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의 향상, 투자, 혁신 그리고 경쟁의 촉진. 다만, 이번 결정의 초점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

16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Declaratory Ruling

- Restores the classificat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as an "information service" under Title I of the Communications Act—the classification affirm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2005 Brand X case.
- Reinstates the classification of mobil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as a private mobile service.
- Finds that the regulatory uncertainty created by utility-style Title II regulation has reduced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investment in networks, as well as hampered innovation, particularly among small ISPs serving rural consumers.
- Finds that public policy, in addition to legal analysis, supports the information service classification, because it is more likely to encourage broadband investment and innovation, thereby furthering the goal of closing the digital divide and benefitting the entire Internet ecosystem.
- Restores broadband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t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enabling it to apply its extensive expertise to provide uniform online protections against unfair, deceptive, and anticompetitive practices.

18

III.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변화

	2015년 이전	2015년 개정안	2017년 개정안
ISP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서비스사업자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on Carrier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서비스사업자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금지, 요금규제상호접속 의무, 보편적 서비스 기금 등 (요금규제 등 일부규제 적용 유예) 	-
FCC 규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진흥을 위한 관할권 (규제권한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진흥을 위한 관할권 • 불공정 행위는 FTC (공정위)가 담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FCC는 차별 및 차단 금지 등의 망중립성 원칙은 Common Carrier에게 부과하는 의무에 해당되며, FCC가 정보서비스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결(FCC-Verizon 소송)로 규제근거 상실 • FCC는 이후 권한 확보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정보서비스사업자에서 Common Carrier로 재분류하여 규제근거 확보('15.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망중립성 원칙에서 투명성만 유지

19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1-ISP 역무 성격

<인터넷접속 서비스의 법적 성격, Telecommunication service VS Information service>

1. 통신은 내용 내지 형태의 변경 없는 정보의 전달("telecommunications" to mean "the transmission, between or among points specified by the user, of information of the user's choosing, without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of the information as sent or received)
2. 통신서비스는 유료로 통신을 제공하는 것("telecommunications service" to mean "the offering of telecommunications for a fee directly to the public, or to such classes of users as to be effectively available to the public, regardless of the facilities used).
3. 정보서비스는 통신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 획득, 저장, 변형, 처리, 회수, 이용(the offering of a capability for generating, acquiring, storing, transforming, processing, retrieving, utilizing, or making available information via telecommunications, and [such term] includes electronic publishing, but does not include any use of any such capability for the management, control or operation of a telecommunications system or the management of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20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1-ISP 역무성격

< Broadband Internet Service가 telecommunication service인지 information service인지 여부 >

- o 미국의 전기통신사업 분류체계는 설비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비차별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Common carrier와 non-common carriers로 구분
- o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Common Carrier는 허가, Non-Common Carrier는 신고가 필요하며, Common Carrier 및 Non-Common Carrier의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음
- o 1980년대 초 FCC는 전화망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서 기본 서비스(basic service)와 고도 서비스(enhanced service)라는 유형을 도입
- o 기본 서비스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변경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서(pure transmission capability over a communications path that is virtually transparent in terms of its interaction with customer supplied information) 컴퓨터 처리 과정이 들어있지 않는 서비스로서 Title II의 common carrier 규제를 받음

21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1-ISP역무 성격

- 고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처리 과정이 들어있는 서비스. 고도서비스는 컴퓨터 처리시스템의 사용하는 통신전달 서비스로 정의되며(services, offered over common carrier transmission facilities used in interstate communications, which employ computer processing applications that act on the format, content, code, protocol or similar aspects of the subscriber's transmitted information; provide the subscriber additional, different, or restructured information; or involve subscriber interaction with stored information) common carrier 규제를 면제
- 이러한 분류체계는 1996년 통신법에서도 수용되었는데 기본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 (telecommunication service)로, 고도 서비스는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분류.
- 1998년 FCC의 의회보고서에서는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해 동 서비스가 통신설비를 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도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
- 2002년 FCC는 Cable Modem Order of 2002를 통해 광대역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케이블망을 이용해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common carrie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

22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1-ISP 역무성격

<한국의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분류>

- 한국에서 인터넷 접속 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1999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도입
- 2004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가통신역무이던 인터넷접속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변경
 -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 제공,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이유로 함
 - 90일 이내 기간통신사업허가나 별정통신 등록을 의무화
- 부가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 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자체로서 완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간역무이고 그러한 네트워크의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부가역무

23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1-ISP 의무 성격

< 소결 >

- o 인터넷접속 의무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application, 부가서비스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o 다만, 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는 사업자가 직접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역무로서 분류하는 것도 가능
- o 특히, 음성 전화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음성, 데이터, 영상의 융복합 서비스 접근권으로서 인터넷접속의 위상을 고려할 수 있음
- o 미국의 경우 음성 전화 등의 기본통신서비스만을 Common carrier로 규제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체계상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접속을 정보서비스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
- 법원은 Section 706상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시기에 고도의 통신설비를 모든 미국인에 구축(the deployment on a reasonable and timely basis of advanc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y to all Americans)할 의무를 근거로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에 대한 FCC의 ISP에 대한 규제권한은 인정

24

IV.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변화의 시사점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외에 다른 사전규제는 폐지>

- 투명성 원칙의 내용: Requires that ISPs disclose information about their practices to consumers, entrepreneurs, and the Commission, including any blocking, throttling, paid prioritization, or affiliated prioritization.

1) Content of Required Disclosures : 2017년에 대폭 강화

-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 (추가) blocking, throttling, affiliated prioritization, paid prioritization, congestion management, application-specific behavior, device attachment rules, security
- Performance characteristics : service technology, access speed, latency
- Commercial terms : price, privacy policies, resolving complaints

25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2) Means and Format of Disclosure : 4,559 ISPs

- Include disclosures on publicly available, easily accessible website
- Transmit disclosures to the FCC so that the FCC make them available publicly

3) Authority for the Transparency Rule

- Section 257 (market entry barriers proceeding) of the Act as authority for this rule
- 위반 시 FCC의 Enforcement Bureau에서 조사 및 제재

26

IV.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변화의 시사점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FCC의 사전규제 권한의 FTC의 사후규제로 이전

- 내용: Restores broadband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t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enabling it to apply its extensive expertise to provide uniform online protections against unfair, deceptive, and anticompetitive practices.
- The FTC is prohibited under the FTC Act from regulating common carriers. As a result, the Commission's classificat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as a common carriage telecommunications service stripped the FTC of its authority over ISPs.
- We believe that case-by-case, ex post regulation better serves a dynamic industry like the Internet and reduces the risk of overregulation.

27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Among the benefits of the antitrust laws over public utility regulation are
 - (1) the rule of reason allows a balancing of pro-competitive benefits and anti-competitive harms;
 - (2) the case-by-case nature of antitrust allows for the regulatory humility needed when dealing with the dynamic Internet;
 - (3) the antitrust laws focus on protecting competition;
 - (4) the same long-practiced and well-understood laws apply to all Internet actors.
- The case-by-case analysis better fits the dynamic Internet economy than the top-down mandates imposed by Title II. We also find that the combination of the transparency rule, ISP commitments, and their enforcement by the FTC sufficiently address the argument that antitrust moves too slowly.

28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2-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소결 >

- o 투명성의 원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망중립성 규제권한을 FTC로 이전. Privacy와 Data security 권한도 FTC로 이전
- o 정책변화의 정확한 의미는 망중립성 규제의 폐기라기 보다는 망중립성 규제방식의 변화
 - 통신법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의 사전규제(ex ante regulation)위주의 방식이 아닌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연방거래위원회의 사후규제(ex post regulation)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의무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업자의 인터넷기업 등과의 거래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이거나 반경쟁적인 경우 연방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행사
- o light touch regulation, case by case approach로의 전환이 반드시 규제완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통신 권한 규제권한의 분산의 의미

29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3- 혁신, 투자와 망중립성

-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기존의 망중립성 정책을 '실수(mistake)'라고 규정
 - 15년 망중립성 도입 이후 2년 동안 초고속인터넷 투자가 5.6%(\$36억) 감소, 망 고도화 등 광대역 인프라 구축 계획이 중단, 인프라 투자가 감소하여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상실
 - 소비자의 서비스 무료 이용 확대,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강화 관점에서 규제완화 정책 추진
- 망중립성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투자 유인이 저하되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
 - 구글 등 OTT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여 네트워크 용량 증설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은 급증
 - 반면, OTT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독차지하면서도 투자비용은 부담하지 않아 통신사업자의 투자 유인 저하
 - 또한, 5G 시대를 앞두고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인식

30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3- 혁신, 투자와 망중립성

<아짓파이 2017 MWC 기조연설 >

- 혁신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네트워크 그 자체의 혁신이, 특히 모바일에서는 중요
 - 커넥티드카 등에 활용되는 5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Dumb-pipe 네트워크가 아니라 스마트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정책 Rule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 따라서, FCC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창출되도록 최소 규제(Light-Touch) 기조로 전환하고, 5G의 올바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틀 준비
 - 첫째,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인터넷 영역은 엄격한 규제(Heavy-Handed)보다는 시장자유를 보장: 정부는 통신사업자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운용할 지에 대해 지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결정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만을 제공
 - 둘째, 설비기반 경쟁 장려: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구축하도록 하여 투자를 촉진

31

IV.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변화의 시사점 3- 혁신, 투자와 망중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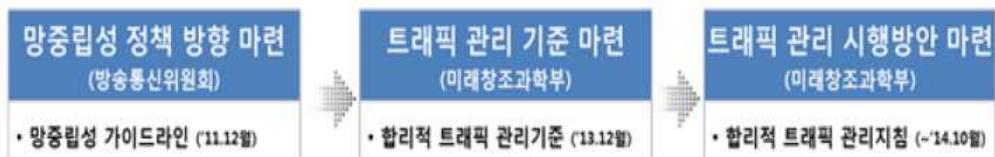
- 셋째, 유연성 있는 주파수 정책 실시: 정부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특정 형식의 주파수 기술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분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소비자의 요구에 더 부합
- 넷째,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위한 주파수 발굴: '08년 700MHz 방송용 주파수 재할당 등 주파수의 적시 공급으로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적절한 대응을 가능케 함
- o (통신산업은) 철도 및 수도사업 등 공공산업 규제와는 다르며, 따라서 차별된 정책(최소규제, 설비기반경쟁, 주파수의 유연한 이용 및 발굴)이 결과적으로 브로드밴드에서 혁신을 초래
- o 통신사업자의 소비자 혜택 강화는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니라 시장자율적인 결과라는 점이 중요
- o 브로드밴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접근방식은 이상(Ideological)이 아닌 실용(Practical)을 추구하는 것임
- 정책은 새로운 장벽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혁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포괄적이며 정부 주도적인 규제 대신에 시장의 실제 문제에만 대처하는 것이어야 함

32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망중립성 정책의 경과>

- o 국내에서는 '11년경 OTT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 서비스에 따른 통신품질 저하 문제가 Issue化
- '11년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사업자들의 Keep Alive 방식 서비스로 인해 망부하 발생에 따른 이동전화 품질 저하 문제 대두
- o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11년)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13년)을 제정



33

V.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과 대안의 모색

o '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는 ▲투명성 확보 ▲차단·차별금지 ▲트래픽 관리 허용의 원칙 정립

<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①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공개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
- ②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차단금지
- ③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 ④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허용
- ⑤ 관리형 서비스 허용

34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o '13년 12월 미래부는 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 및 대응 조치 등에 대해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확정

<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

- ①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망의 보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DDOs, 악성코드, 해킹 등 대응)
 -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 환경 보장
 -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경제적(요금제에 따른 데이터 용량 등을 차별) 트래픽 관리 허용
- ③ 트래픽 관리는 유무선 등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

35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 14년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완료

- 합리적 트래픽 관리 근거의 이용약관 반영,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책(KFI: Key Facts Indicator) 작성, 트래픽 관리에 대한 민원처리기구 설치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한 차별적인 제한·조건의 부당한 부과 행위에 대한 시행령 개정('16.12월) 및 고시 제정('17.8월)를 통해 망중립성 관련 사후 규제 체계를 완비

- 기반 또는 매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기반서비스: 이동통신, 인터넷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역무

** 매개서비스: 포털, 개방형 SNS, 앱장터 등 다른 서비스 제공을 매개하는 부가통신역무

36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 2016년 9월 유승희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망중립성 규제 입법) 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과부하 등에 따른 혼잡으로부터 다수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콘텐츠/단말기/제공자에 대해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등에 대하여 트래픽 차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

- 본 개정안은 망중립성 규제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해됨

37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한국과 미국(2017)의 망중립성 규제 비교>

구분	미국	한국	비고	
법적 구속력	규칙 (강제)	가이드 라인 (권고)	• 한국은 통신법상 초고속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제하고 있어 차단/차별 금지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음(통신법의 공경경쟁 및 이용자 이익저해 적용가능)	
내용	투명성 (Transparency)	○	○	(추가) blocking, throttling, affiliated prioritization, paid prioritization
	차단금지 (No Blocking)	-	○	-
	불합리한 차별 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	○	• 미국은 '15년 개정에서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없애고 '자연 금지' 및 '대가에 따른 우선처리 금지' 신설하여 세분화
	자연금지 규제 (No Throttling)	-	-	
	대가에 따른 우선처리 금지 (No Paid Prioritization)	-	-	

38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내용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	○	• 국내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미국에 비해 보다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Zero-rating 허용	○	△	•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상에 명확한 언급은 없음 • 다만, 이미 시장에 다수의 서비스 존재
	관리형 서비스 허용	○	○	• 미국 및 한국 모두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인터넷 서비스성격	정보서비스	기간통신역무	
	규제방식	사전/사후	사전/사후	• 미국은 사후규제 위주
	규제기관	FCC/FTC	과기정통부/방통위 /공정위	

39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혁신성장 관점에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

- o 혁신성장은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경제정책으로 이의 요체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의 활성화
- o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망중립성 원칙의 역할
 -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혁신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어 계속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 o 망중립성 규제의 강화는 인터넷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투자와 경쟁을 약화시켜 인터넷 생태계의 선순환을 막을 수도 있음
- o 망중립성 규제의 강도와 방향은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임

40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의 이슈>

- o Zero-rating은 특정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거나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완전히 무료는 아니지만 일반 데이터 요율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도 Zero-rating 범주에 포함
 - 데이터 비용을 플랫폼 및 콘텐츠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용자의 부담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Sponsored data'로 표현
- o Zero-rating은 소비자에게 망접속비용을 저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존재
 - ISP의 경우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촉진

41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 o 다만, Zero-Rating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zero-rated 앱/서비스에 대한 쓸림현상을 유발하여 신규진입 앱/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나아가 기존 경쟁 앱/서비스의 제공자의 소비자 접근을 막아서 콘텐츠 다양성을 훼손하여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하게 되는 효과 가능성
 - 또한 zero-rated 앱/서비스가 ISP의 자사 혹은 계열 서비스에게만 적용될 때는 자사/계열서비스에 대한 우선적 보조(subsidy)의 효과가 크므로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o 결국 zero-rating 유형들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는 case-by-case analysis가 필요함
- * 아짓파이: "These free-data plans(Zero-rating) have proven to be popular among consumers, particularly low-income Americans, and have enhanced competition in the wireless marketplace."(chairman Pai statement on free data programs, ('17.2.7)

42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5G 서비스와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 가능성>

- o 5G의 특성
 - Low Latency(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대용량 서비스 가능. 다양한 형태의 품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기술이 이를 뒷받침
 - Network Slicing 가능: 하나의 물리 네트워크 인프라 상에서, 다른 기능과 서비스 특성을 갖도록 구성된 논리망으로, 단일망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서비스(B2C/B2B)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비용효율적 기술
- o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경제적 트래픽 관리의 허용 검토
 - B2B에 대한 요금자율 설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통신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요금 전가를 방지할 필요성 검토

43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망중립성과 기본권 이슈>

o 평등의 원칙

- 불합리한 차별 금지. 즉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을 허용
- 망중립성의 차별금지 역시 동일한 의미.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차별 허용 가능

o 표현의 자유

- 통신사업자는 단순히 일대일 통신의 매개자(medium for person-to-person communications)에 불과 통신사업자가 아닌 이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이용자만이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됨.
-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는 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같이 인정
- ISP: 의사전달자와 트래픽 통제권 보유의 양측면

44

VI.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의 모색

<망중립성 규제의 법제화 방식의 유용성과 대안>

o 현행 망중립성 규제 방식

1) 법률상 규제(전기통신사업법)

- 사전규제: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사후규제: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 가이드라인 규제: 행정지도, 위법성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5

VI.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안

쟁점 1 < 규제방식의 변화 >

-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변화
 - 사후규제 근거는 통신법상 금지행위 or 경쟁법상 지배적 지위 행위 남용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합리적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폐지하고 금지행위 고시, 지침화 하는 방안 검토
- 근본적으로 사전규제로서 정당한 사유없는 역무제공 거부 금지, 공평한 업무처리 업무, 사후규제로서 부당한 차별 금지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
 - ISP에 대해서만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 공공성의 비중이 약한 별정, 부가사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비현실성.

46

VI.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안

쟁점 2 < 법제화 여부 >

-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 제정, 시행중임
- 사전규제의 일환으로서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중요 핵심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검토
- 유승희 의원안은 1) 기술적 트래픽 관리외에 차별 금지, 2) 경쟁관계에 있는 CP 차별금지 규정
- 예상 입법내용(기간통신사업자 대상)
 - ①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②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차단금지, ③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④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허용, ⑤ 관리형 서비스 허용

47

V.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안

쟁점 3 <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 구체적 범위 >

o 현재 2가지 가이드라인 내용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형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 ※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이 기준은 일반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적용되며 관리형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달리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8

VI.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안

쟁점 3 <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 구체적 범위 >

o 관리형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명시 여부

- Qos를 보장하는 트래픽의 원칙적 허용 여부
- 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의 적정 수준의 개념

49

VI.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안

쟁점 4 < 경제적 트래픽 관리 >

o 가이드라인(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 경우)의 내용

< 기술적 트래픽 관리 >

- 망의 보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DDOs, 악성코드, 해킹 등 대응)
-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 환경 보장

< 법령상 트래픽 관리 >

-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 위 3가지는 가이드라인상 합리적 트래픽 허용 범위로 예시되어 있음.

50

VI.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안

쟁점 4 < 경제적 트래픽 관리 >

< 경제적 트래픽 관리 >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도에 따른다.

*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을 예시한 것임

o 경제적 트래픽 관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어 있을 뿐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지 의견 차이

o 5G 에서 fast lane의 허용 여부에 명시적 규정 도입 여부 검토

51

VI.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안

쟁점 5 < 제로 레이팅 >

- 현재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음
-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슞림현상, 부당지원 등 공정저해 우려의 경우를 사안별로 제한하는 접근방법 도입 여부

52

참고문헌

FCC news, FCC ACTS TO RESTORE INTERNET FREEDOM. Reverses Title II Framework, Increases

Transparency to Protect Consumers, Spur Investment, Innovation, and Competition

FCC FACT SHEET, Restoring Internet Freedom Declaratory Ruling, Report and Order, and Order

- WC Docket No. 17-108, 2017.12.22

이성엽,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언론과 법 제11권 제2호 (언론법학회, 2012)

이성엽, 모바일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회의 자료집, 2014.4

53

1-3-6 유럽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로 레이팅의 현황 (발제자 건국대 황용석 교수)

유럽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로 레이팅의 현황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 발표는 dot.com, aetha, Owell & Vahida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의뢰를 받아 2017년 2월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한 보고서(Zero-rating practices in broadband markets - Final report)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 1장 : 조사의 배경

가. 연구의 목적

- 유럽의 zero-rating에 대한 특성과 본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 zero-rating의 경쟁효과와 잠재적 이점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법적 보고서들을 검토하기 위해
- 경쟁과 효율 관점에서 zero-rating을 평가하는 기초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나. zero-rating의 정의

- zero-rating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트래픽을 사용료에서 면제하는 행위를 말함
- zero-rating은 총 데이터 용량에서 특정 사용량을 제외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망중립성에도 위배됨 (Executive summary 정의 중)

다. 연구의 한계

- zero-rating의 전반적인 분석은 되었으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와 CAP(Content and application providers)사이에서 발생한 zero-rate 제공과 같은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제 2장. Research into zero-rating practices in Europe

가.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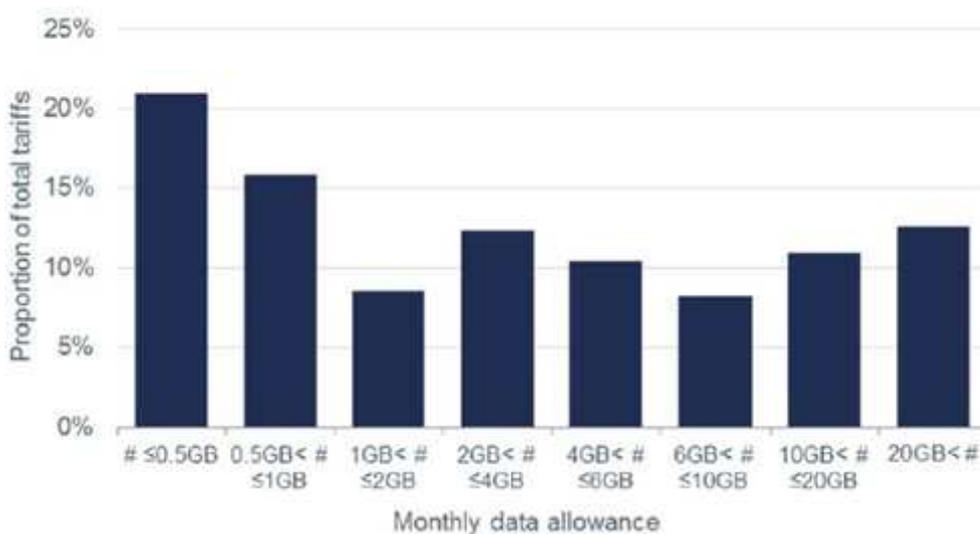
- Europe 37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됨
- 국가별로 다음의 사항이 조사됨
 - zero-rate로 제공된 콘텐츠의 유형
 - 제공된 콘텐츠의 소유자 (자체제작인지 제3자 제작물인지)
 - zero-rating이 제공된 상황의 데이터플랜과 데이터 초과시 조치사항(차단 또는 트래픽 조절)
 - CAP와 ISP사이의 협약관

나. zero-rate 할인의 유형

- Bundled Free - 특정 프로그램의 트래픽에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는 프로그램을 별도의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Bundled Subscription - 특정 프로그램의 구독하면 사용료가 모두 포함되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형태
- Add-on - 부가요금을 지불하고 zero-rating 서비스를 사용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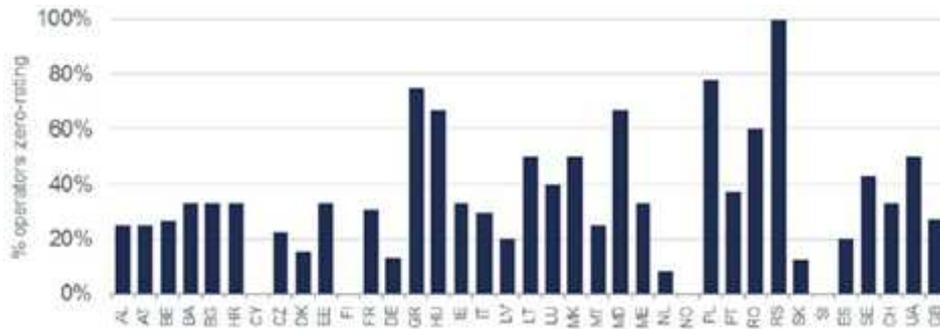
다. 모바일 시장의 zero-rating

- 유럽 대부분의 모바일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s: MNO)는 데이터 정액제를 실시함



[그림 1] 유럽 5개국의 월평균 데이터 허용량

- zero-rating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중임



[그림 2] 국가별 zero-rating 시행비율 (MNO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포함)

- zero-rated 콘텐츠의 유형은 다양함

Category	Description	Examples of zero-rated offers
Audio streaming	Music and other audio streaming services	Telefónica UK: Spotify, SoundCloud, Deezer, Apple Music, iTunes
Video streaming	Services which allow for streaming of live or on-demand video	Telenor Bulgaria: HBO Go; NOS Portugal: YouTube
Cloud storage	Services used for the transfer files in and out of the cloud	Vodafone Portugal: Vodafone Backup+
Communication (text)	Communications applications which are primarily used for text messaging	Telenor Serbia: WhatsApp; Virgin Mobile Poland: Facebook Messenger
Communication (VoIP)	Communications applications which are primarily used for voice/video-over-IP calling	MEO Portugal: Skype, FaceTime, Viber
Social media	Social media services	Orange Belgium: Facebook, Twitter
Navigation	Mapping and satellite navigation services	Deutsche Telekom Hungary: Waze, Apple Maps
Information	News or information services	Telia Moldova: Wikipedia
Banking	Service used for transferring money and checking bank account balances	Vodafone Portugal: MB Phone
Gaming	Gaming applications which require online connectivity	Eir Ireland: Pokémon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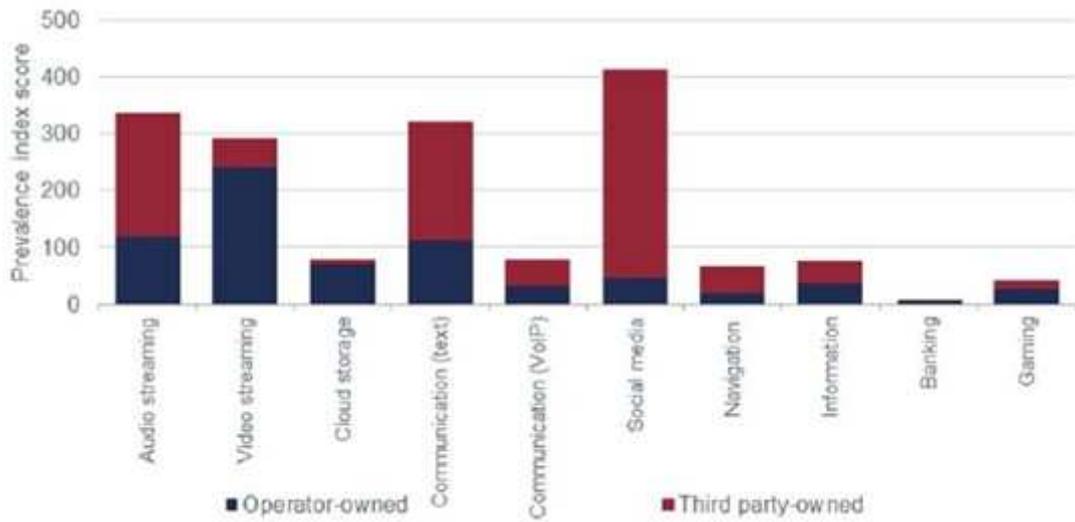
[표 1] zero-rated 콘텐츠의 다양한 유형들

- zero-rating이 적용된 콘텐츠는 다양하나 사용정도에 따라 다음의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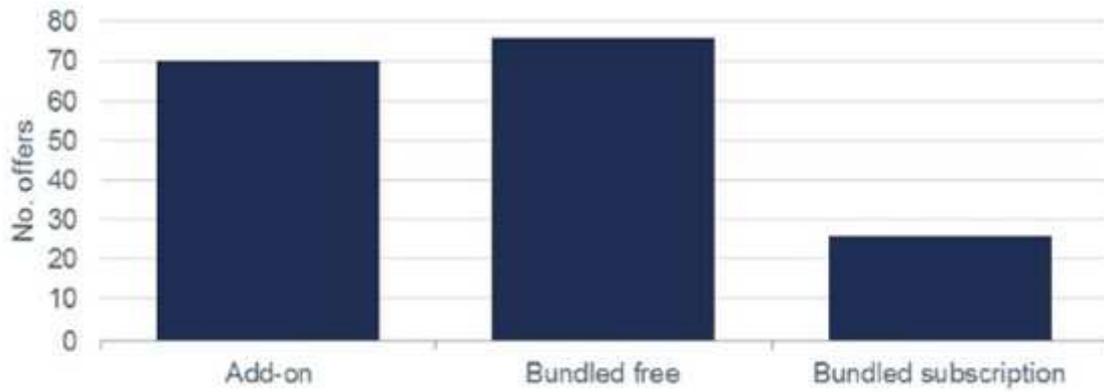
[그림 3] 가장 일반적으로 zero-rating이 적용되는 프로그램들

- 콘텐츠 소유자(자체제작 vs. 3자제작)별 비율은 콘텐츠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자체제작의 경우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장 높고 3자 제작물은 소셜미디어가 가장 높음



[그림 4] 콘텐츠 유형별 소유권 비율

- zero-rating 할인을 유형별로 보면 [그림 5]와 같음



[그림 5] 유형별 zero-rating 할인 수

- zero-rating을 CAP별로 살펴보면 페이스북이 소유한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Country	Facebook	WhatsApp	Facebook Messenger	Instagram	Facebook Zero
Albania	-	-	-	-	25%
Austria	-	-	-	-	-
Belgium	33%	-	-	-	-
Bosnia and Herzegovina	-	-	-	-	-
Bulgaria	40%	20%	-	-	-
Croatia	33%	-	-	-	-
Cyprus	-	-	-	-	-
Czech Republic	-	-	-	-	-
Denmark	20%	-	-	-	-
Estonia	-	-	-	-	-
Finland	-	-	-	-	-
France	-	-	-	-	25%
Germany	-	33%	-	-	33%
Greece	-	33%	-	-	100%
Hungary	67%	33%	33%	67%	-
Ireland	33%	33%	-	33%	-
Italy	25%	-	-	25%	-
Latvia	33%	33%	-	-	-
Lithuania	33%	33%	33%	-	-
Luxembourg	25%	25%	-	25%	-
Macedonia	-	-	-	-	-
Malta	-	-	-	-	-
Moldova	-	-	-	-	-
Montenegro	33%	33%	-	-	-
Netherlands	-	-	-	-	-
Norway	-	-	-	-	-
Poland	50%	25%	-	25%	25%
Portugal	100%	100%	100%	100%	-
Romania	-	25%	-	-	-
Serbia	100%	67%	-	33%	-
Slovakia	-	-	-	-	-
Slovenia	-	-	-	-	-
Spain	25%	-	-	-	-
Sweden	25%	25%	25%	25%	-
Switzerland	-	33%	-	-	-
Ukraine	60%	40%	20%	-	-
United Kingdom	-	-	-	-	25%

[표 2] 국가별 페이스북 소유 콘텐츠가 zero-rate로 제공되는 비율

제 3장. Case studies

- 불가리아,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에 대한 zero-rating시장 분석 결과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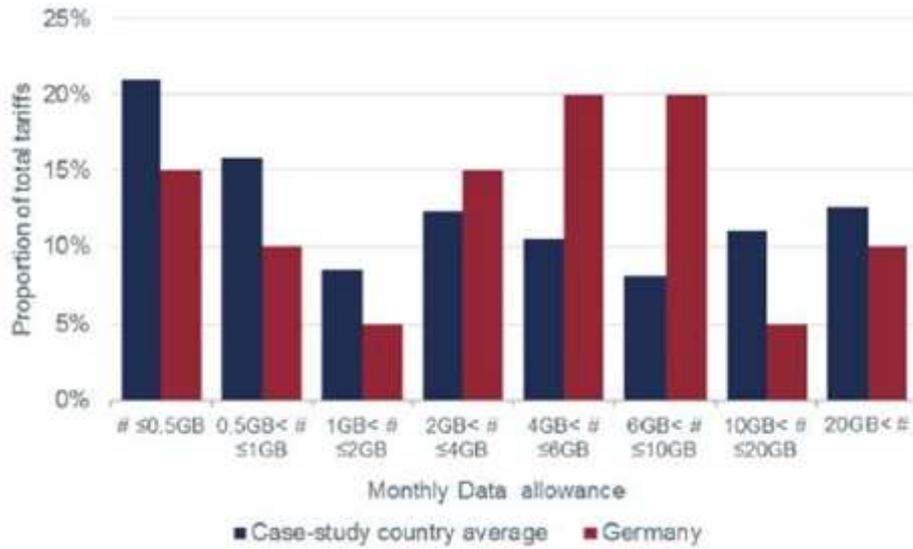
가. 불가리아(Bulgaria)



[그림 6] 불가리아의 월간 데이터 허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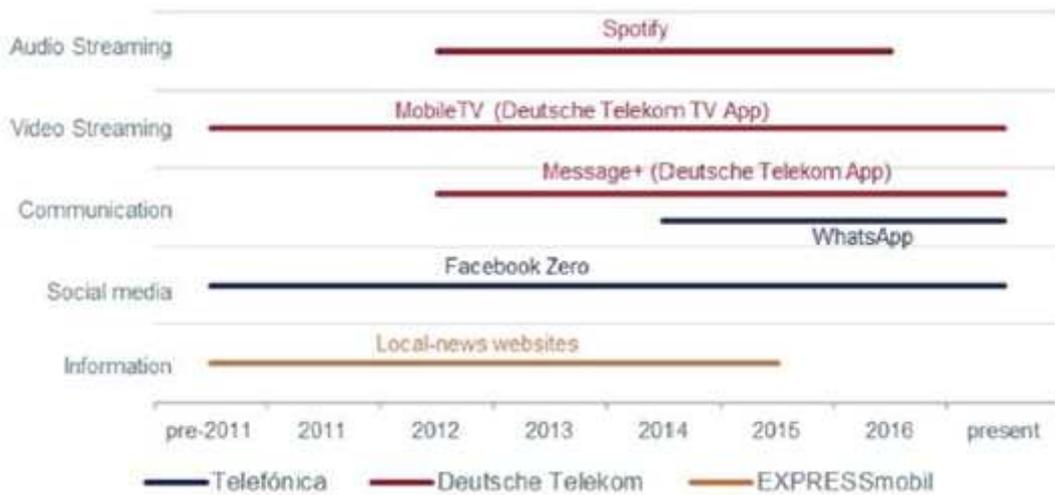
- 불가리아에서 zero-rating은 2014년까지 시행되지 않다가 최근 도입되었으며 현재 세 모바일 사업자 중 두 개 업체(Mtel과 Telenor)에서 적용중
- 번들(Bundle) 형식과 Add-on 방식이 모두 시행
 - 가장 큰 사업자인 Mtel은 add-on 방식만 적용
 - Telenor는 add-on과 번들 방식을 모두 사용하나 Facebook, Whatsapp과 같은 주요 패키지는 번들 방식만 적용함
- 유선시장(Fixed-market)의 zero-rating은 시행되지 않음
- 두 사업자 모두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zero-rating을 시행하며 Vivacom 또한 시행에 제약이 없으므로 경쟁과 차별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님

나. 독일



[그림 7] 독일의 월간 데이터 허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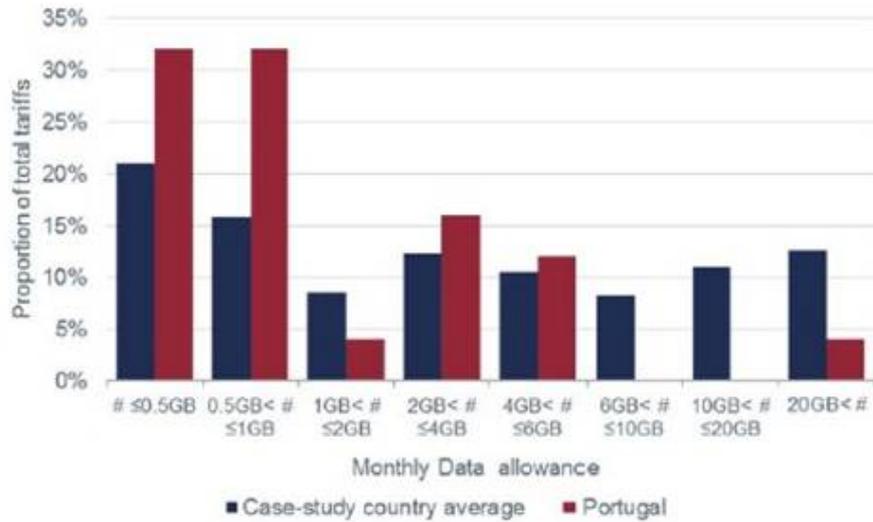
- 독일의 zero-rating은 EXPRESSmobile에 의해 2009년에 시작되었음



[그림 8] 독일의 채널별 X MNO별 zero-rating 시행기간

- 2011-2016년까지 zero-rating이 활발히 운용되었으나 현재는 감소하고 있음
- 3개의 MNO 사업자중 2개가 zero-rating을 시행하나 4개 서비스에만 해당하며 그 중 2개는 사용자가 적은 앱들(Facebook zero와 Message+)이며 세 번째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앱임 (WatsApp).
- Deutsche Telekom의 Spotify의 zero-rate서비스는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 서비스가 중단됨
- 유선시장을 대상으로한 zero-rating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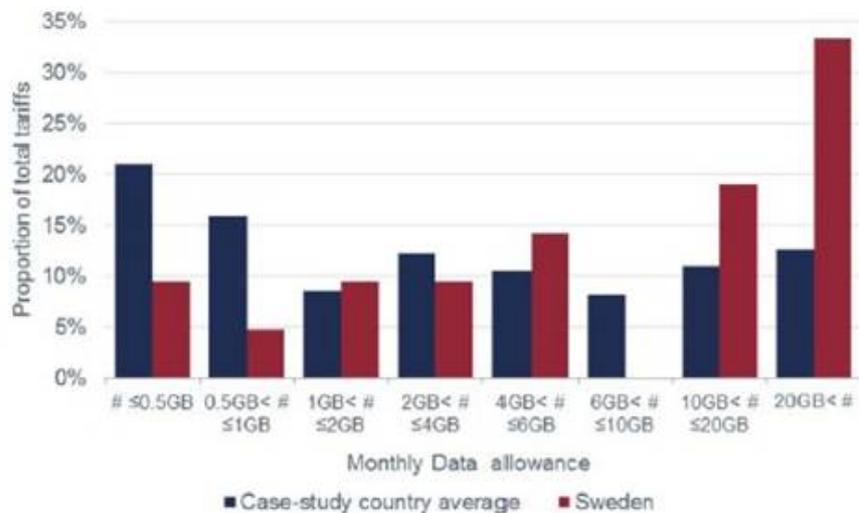
다. 포르투갈



[그림 9] 포르투갈의 월간 데이터 허용량

- 포르투갈의 zero-rating서비스는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중이며 더 많은 사업자가 더 많은 앱들을 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음
- MNO들은 그들의 메인 브랜드를 통해 자사의 TV스트리밍 서비스를 zero-rate로 운영함
 - 소비자들은 MNO가 운영하는 zero-rate TV패키지를 구매할 때 할인을 받음
 - 이에 MNO 사업자의 TV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하게 됨
- 또한 MNO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zero-rate서비스를 운영함
- 낮은 데이터 허용량과(그림 9에서 보듯) 다양한 zero-rate서비스는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CAP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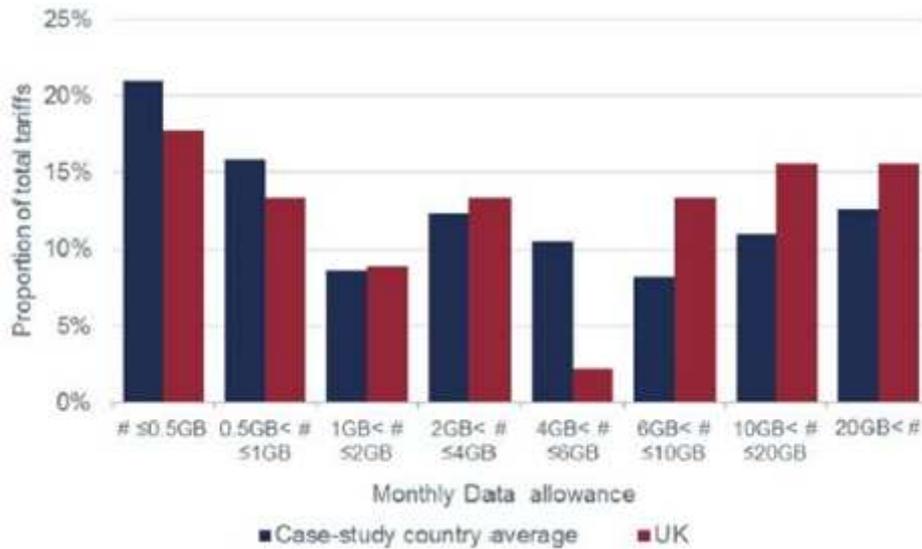
라. 스웨덴



[그림 10] 스웨덴의 월간 데이터 허용량

-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높은 데이터 사용량을 부과해 zero-rating의 효과가 크지 않은 편임

마. 영국



[그림 11] 영국의 데이터 허용량

- 영국의 zero-rating서비스는 활발히 시행되지 않음
- 따라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음
- 유선시장에서의 zero-rating도 시행되지 않아 유럽의 국가중에는 이례적으로 zero-rating이 적음

바. 미국

- 미국의 zero-rating서비스는 2014년 처음으로 시작됨
- 미국의 유선서비스는 거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이며 zero-rating은 상대적으로 적음
- 미국의 사업자는 zero-rate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자사의 콘텐츠 홍보를 위해 (Verizon이 Freebee program의 일부인 Go90을 zero-rate로 서비스 하는 것과 같이)
 - 인기있는 콘텐츠의 활용을 위해
 - 특정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Sprint가 Copa-America 게임을 서비스한 것과 같이)
 - 가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 zero-rate의 확산과 앱들의 데이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커짐
- 이에 FCC는 AT&T와 Verizon의 연계 정책에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DCC는 2017년 1월 11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AT&T와 Verizon이 자사의 zero-rate 프로그램이 비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설명함
- 이는 Open Internet Order의 General Conduct Rule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제 4장. Summary of key findings from our research

가. 모바일 시장에서의 zero-rating

- 모바일 시장에서의 zero-rating 할인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불가리아와 독일의 경우 한 두 개의 특정 서비스(Facebook과 같은)만 적용되는 반면 포르투갈과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서비스 유형 모두 (모든 오디오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함
 - 포르투갈에서 MNO는 자체제작 TV콘텐츠가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에 zero-rating을 적용하는 반면 스웨덴은 자체 프로그램에 zero-rating을 시행하지 않음
 - 다른 국가는 Bundle-subscription이 가장 많은 반면 불가리아의 zero-rating은 add-on 유형이 가장 많음
- CAP와 zero-rating의 관계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 CAP는 zero-rate 시행 정책에 큰 영향력이 없으며 결정은 주로 MNO에 의해 이루어짐
 - CAP는 zero-rate에 대해 다국가 전략을 시행하지 않음
- zero-rate 시행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 관계는 다른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음
 - 특이하게도 낮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data-light application)을 대상으로 한 zero-rating은 데이터 허용량이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MNO 나 CAP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예: 스웨덴의 경우), 그 효율은 데이터 허용량이 낮은 시장에 더 크다는 것임
 - zero-rate 제공에 따른 영향은 시장의 다른 zero-rate 서비스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독일에서 유일하게 비디오 스트리밍의 zero-rate를 실시하는 Deutsche Telekom의 모바일TV는 소비자가 모바일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제 5장.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from zero-rating

가. zero-rating의 잠재적 이익

- 접근 기회 확장 사용 촉진
 - zero-rating이 데이터 사용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을 촉진하고 접근기회를 넓힘
 - 이 이익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효과가 더욱 클 것이나 선진국에도 가격민감성이 높은 이용자의 사용을 촉진함
- 상품 차별
 - zero-rating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짐
 - 또한 사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망 중립성의 엄격한 적용은 사업자 간의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가격 차별
 - zero-rating은 가격 차별의 한 형태 혹은 SIP에 의한 가격 차별 정책이라 말할 수 있음
 - 가격의 차이는 또한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옴. 예를 들어, 낮은 가격은 소셜 미디어의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하며 이는 UGC의 증가, 이로 인한 사용자의 혜택으로 이어짐
- 다면시장의 효율적 가격정책
 - ISP와 CAP간의 비용조율로 인해 양면, 다면시장의 효율적 가격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촉진
 - AT&T와 Data Programme, Verizon과 FreeBee의 관계에서 보듯 zero-rating은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음
- 통신정책 조율
 - zero-rating은 다른 측면에서 데이터 요금제와 데이터 용량 제한을 의미하며 이는 트래픽양을 조절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음

나. zero-rating의 잠재적 폐해

- zero-rating의 단점은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망중립성을 위배한다는 점에 입각해 서술하려 함. 망중립성의 가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하려 함
 - 첫째, 망중립성은 디지털 세상의 표현의 자유의 원칙과 같음
 - 데이터의 차별적 처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
 - 둘째, 망중립성은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과 콘텐츠 이용의 선택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망중립성이 훼손된다면 사용자의 권익도 침해될 것임
- zero-rating은 잠재적으로 콘텐츠간의 경쟁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함
 - zero-rating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이터 비용을 상쇄하여 다른 콘텐츠보다 경쟁적 우위를 불러옴
 - 이는 콘텐츠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음
- zero-rating은 콘텐츠 시장을 붕괴할 수 있음
 - 최악의 경우, 서비스에 속해 있지 않은 콘텐츠 시장은 생존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기존의 콘텐츠 사업자(CAP)는 ISP와 타 콘텐츠 사업자와 zero-rate서비스를 하지 않는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신규 콘텐츠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
 - 또한 ISP 사업자는 자체 콘텐츠를 zero-rate으로 제공하여 타 콘텐츠와 불공정한 경쟁관계를 야기할 수 있음
- 혁신과 서비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 zero-rating은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선택과 혁신동기를 제약하여 창조적 변화를 저해할 수 있음
 - zero-rating 서비스를 위해 기술적 제약을 가하여 특정 사업자의 기술 혁신 시도를 방해할 수 있음
- ISP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제한
 - 특정 ISP사업자가 인기있는 콘텐츠를 zero-rate으로 제공함으로써 타 ISP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 이에 CRC(2016)은 마켓 파워가 있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번들 형태로 구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함
- ISP가 트래픽 제한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CAP로부터의 요금을 인상할 수 있음
 - 이는 콘텐츠 제공자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으로 작용함

다. Summary

- zero-rating에 대한 논의에서 경쟁법의 맥락보다 망중립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 망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규제와 제도의 중점 원칙임
- 그러나 zero-rating은 특정 ISP나 콘텐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침
- zero-rating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논의에서, zero-rating의 비용은 CAP가 부담하나 서비스 운용방식은 배타적임
- CAP와 ISP간의 zero-rating협력은 미국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 유럽에서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제 6장. Framework for competition assessment

- 이번 연구에서 zero-rating이 경쟁에 미치는 특정 영향에 대해 발견한 바는 없음
-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브로드밴드 사업자와 CAP간의 합의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 zero-rating 서비스의 성장은 TSM 규제에 기반하여 망중립성 규정을 정의한 BEREC 가이드라인이 zero-rating이 허용가능하다는 확신에 기반한 결과라고 보임
-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zero-rating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은;
 - 모든 zero-rating서비스는 데이터 제한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해당하는 트래픽을 다른 트래픽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며
 - 시장 지배력이 있는 ISP사업자는 zero-rating을 제공하기 전에 세심히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임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가. Competition assessment must reflect the internet ecosystem

- zero-rating의 경쟁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해야 함
- ISP는 사용자와 CAP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양면시장을 모두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임
 - zero-rate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결정할 때 사용자의 측면을 고려함
 - 인터넷 사용 요구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의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하며 선호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복수요금제(Multi-part tariff)는 네트워크의 효율적 유지와 복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ISP는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콘텐츠의 축소는 인터넷 접속의 축소와 이어질 수 있음
- 사용자와 CAP 간의 소통은 직접적일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교환과 결제를 포함함

- 사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용은 CAP가 지불하는 비용과 데이터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함
- zero-rating의 영향은 데이터페키지의 가입과 ISP의 선택, 그리고 콘텐츠 소비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평가됨
- 이 밖에 잠재적 경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ISP와 CAP들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함

나. Elements to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 on competition between ISPs

- zero-rating은 ISP 사업자들로 하여금 제한적 요금 인하와 번들요금제에 기반한 요금 차별을 가능하게 함
-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은 차별적으로 부여되며 예를 들어 비디오 스트리밍 사용이 많은 이용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임
- 일반적으로 이 같은 전략은 효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경쟁을 저하하기도 함
- 번들링/차별요금제가 마켓파워와 연동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MNO가 MVNO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를 통제하여 시장경쟁을 파괴할 수 있음
- zero-rating을 통해 ISP 사업자들은 이용자로부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특정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에게 높은 요금제로 유도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요금제에 낮은 데이터 사용량을 책정하여 이를 촉진할 우려가 있음
- zero-rate로 서비스되는 콘텐츠들이 사용자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 ISP는 CAP로부터 제공받는 콘텐츠를 zero-rate로 포함하는 결정을 CAP와 협의하지 않음
 - 이 경우 타 ISP사용자는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zero-rate 비이용자 또한 자유로운 이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음
 - 콘텐츠가 복수의 ISP사업자에게 제공되더라도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자는 콘텐츠에 더 많은 광고 수입을 거둘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반함
- 종합하자면 ISP 사업자가 불공정한 요금정책과 불평등한 경쟁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 ISP 사업자가 일정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
 - zero-rating서비스가 낮은 데이터 한도와 연관되어 있는가
 - zero-rate 콘텐츠가 ISP사업자를 바꿀만큼 매력적인가

다. Elements to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 on competition between CAPs

- 다른 상황이 동등하다면 zero-rate로 서비스되는 CAP사업자들은 타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음
- ISP 사업자가 zero-rate 콘텐츠를 선정할 때 CAP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선정되는 콘텐츠들은 ISP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선정될 수 있음
- 이는 새로운 CAP사업자가 시장에 동등한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됨
- 새로운 CAP사업자가 콘텐츠를 zero-rate에 포함하길 원할 때 소요되는 데이터비용은 CAP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음

- ISP와 CAP간의 협약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함
 - 협약에 타 CAP 사업자의 콘텐츠를 차별하는 조항이 첨부될 수 있음
 - 이는 CAP 사업자가 ISP사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발생하는 부담으로 돌아감
- 이번 연구를 통해 zero-rating 협약에 배타적인 부분이 발생하였다는 사례를 다수 수집하였으나 공통된 특성은 찾을 수 없었음
- zero-rating이 CAP간의 공정 경쟁을 왜곡한다는 우려는 ISP가 CAP를 교차소유했을 때 더욱 심화됨
- FCC가 AT&T와 Verizon을 규제하려는 시도에서 보듯이 ISP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CAP에 불공평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CAP단계에서 시장경쟁의 왜곡을 고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측정해야 함
 - zero-rate 콘텐츠가 ISP에 의해 운영되는가
 - ISP가 특정 콘텐츠 이외에 다른 콘텐츠에 동등한 zero-rate기회를 부여하는가
 - zero-rate콘텐츠가 다수 독자층에 접근 가능한가, 다시 말해, CAP가 복수의 ISP와 협약 하여 차별요소를 배제하였는가

라. Materiality of effects (효과의 구체성)

- zero-rating이 ISP의 선택, 콘텐츠의 선택 그리고 ISP와 CAP의 경쟁관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규명가능하나 그 영향이 구체적인가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문제임
- 그러나 zero-rating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zero-rating은 인기 있는 콘텐츠에 적용될 것임. 이는 ISP 사업자가 zero-rating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확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
- 둘째, zero-rating은 데이터 연관 비용의 일정부분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것이므로 콘텐츠에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셋째, zero-rate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타 콘텐츠 사이의 이용차가 크게 발생할 것임

마. 요약

- zero-rating과 연관된 경쟁에 대한 우려는 ISP 단계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제 3자 콘텐츠의 zero-rating의 경우 ISP와 CAP 간의 협약에 따른 불공정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콘텐츠에 대한 ISP의 독점적 권한은 경쟁자로 인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ISP는 공동마케팅 권한, 혹은 콘텐츠에 대한 차별적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 CAP에 의한 독점적 권한은 ISP가 경쟁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필요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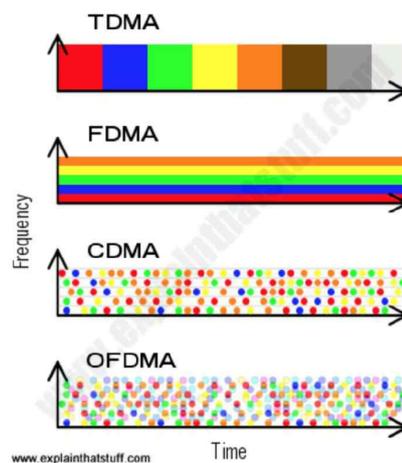
1-3-7. 인터넷의 구조와 망중립성 5G는 망중립성 완화근거인가? 근거인가?
[발제자: 고려대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

인터넷의 구조와 망중립성 5G는 망중립성 완화근거인가? 강화근거인가?

박경신
고려대학교
사단법인 오픈넷

What is 5G?

- 1G – FDMA (주파수)
- 2G – TDMA (시간)
- 3G – CDMA (코드)
- 4G – OFDMA(Orthogonal 주파수)
- 5G – 2GHz → 30-300GHz



How fast is 5G?



질문 1: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내는데 왜 원격수술, 자율주행자동차, 재난대를 위해서 별도의 고급서비스가 필요한가? 예)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 진압 중 업무용 4G망에 대한 버라이즌의 스로틀링 논란 → 재난대비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https://www.theverge.com/2018/8/21/17765682/verizon-california-throttled-wildfires>

질문 2: 5G는 기본적으로 더 촘촘한 새로운 안테나망이 필요하다. 정말로 긴절한 수요가 있다면 그것만 5G를 이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망 내부에서 다시 트래픽 차별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인터넷의 구조-1

- 모두가 광속전기신호의 송신자이며 발신자이자 중계자의 역할.
 - 모든 라우터(컴퓨터)가 라우팅표에 따라 다른 모든 라우터 사이를 연결해줌.
 - 누구든 TCP/IP라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라우터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전지구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
- 패킷의 전달에 모두가 1/n씩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패킷전달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을 중계자가 존재할 수 없음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수신과 발신을 하고 있음. 운송, 전기, 수도와의 결정적인 차이) → 원칙적으로는 배달료(termination fee)가 있을 수 없음 → 수신자 발신자에게 모두 무료가 원칙

인터넷의 구조 -2

- 단, 패킷의 전달은 물리적 접속이 된 기반에서 가능해짐. 라우터 사이의 물리적 연결에 필요한 동기부여 필요 → 상호접속료의 필요성 → '전용회선료', '이용자접속료', '유료피어링 (paid peering)', '트랜짓피', '망사용료' 등은 모두 상호접속료의 일종
- 이때 자신과 연결된 라우터/컴퓨터의 숫자(paid peering과 transit fee는 자기망 내외 여부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음)가 많은 라우터 소유자는 접속에 대한 대가로 상호접속료를 요구함으로써 많은 라우터들과의 연결을 개통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회수하게 됨.
- 상호접속료는 어차피 한 망사업자가 전달경로 전체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전달했는가는 무의미. 얼마나 많은 라우터들과 동시에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 → Volume-기반이 아니라 Capacity-기반이 원칙. 여유로운 시간에 주고받은 traffic은 아예 과금하지 않는 것이 상도의.

인터넷의 구조 -3

“우편, 기차, 놀이공원 등은 지불 비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속도에 차이”

-SKT 2018.3 상생협 2소위 회의 발표

- 인터넷과의 차이점: 모두 중앙집중적인 통제. 사업자가 책임지고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됨.
- 인터넷은 망사업자가 통제하는 라우터들이 커버하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음.
- 속도를 줄이는 것은 한 지점만 통제해도 가능하지만 속도를 높이는 것은 전구간 책임을 져야 함.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의 10-30여개 라우터 중에서 몇개나 해당 망사업자가 커버할 수 있는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책임지고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가.
- 속도를 높여주는 것을 빌미로 전체 망사용료만 높아질 가능성. 속도를 실제로 높여줄 수 있더라도 결국 이용자들 사이에 속도경매를 붙여 망사용료는 과도하게 높아질 것.

망중립성과 인터넷의 구조

- '배달료가 없다'는 의미 → 배달을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음 → 더 빠른 배달을 대가로 더 돈을 받을 수 없음 → NO
Prioritization
- 투자원칙으로서의 망중립성: 모든 중계기의 중계률이 같아야 (인터넷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해짐. 예) 미술에서도 종이의 질이 예측가능해야 이에 따른 다양한 화법이 발전함. → "중앙의 균질성이 주변부의 혁신을 보장한다" → 망중립성

망중립성과 독점규제법

- 라우터를 많이 소유한 업자 즉 "망사업자"의 등장 - 상호접속료를 더욱 많이 받고자 하는 욕망. 그러나 이미 OECD최고 수준의 상호접속료(전용회선료, 이용자접속료) → 인상불가
 - 차별중계(prioritization) - "긴급한 패킷은 속달하되 속달료를 받겠다" 예) 5G 슬라이싱
 - 스로틀링(throttling) - "영업에 방해가 되는 패킷은 지연시키겠다" 예) 카카오 보이스트록 차단
 - 발신자 부담(termination fee) - "망혼잡을 막기 위해 망에 더 많은 패킷을 보내는 자에게 과금을 해야 한다" 예)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논란
 - 자사제로레이팅 - "termination fee를 받을 수 없다면 스스로 콘텐츠사업을 해서 이익을 올리겠다" 예) SK-11번가
- => 망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즉 통제 및 과금권한)가 뒷받침된 주장 → 망중립성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망중립성의 역사

- AT&T : 시외전화분야 독점. 독립전화회사들과의 상호접속 거부. 지역벨사들과만 접속. (지역전화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 1934년 통신법: 시외전화분야 독점 인정하되 “커먼캐리어” 의무 부과 → 독립전화회사들 과도 상호접속 강제
- 시외전화분야 경쟁자의 등장 MCI와의 상호접속거부 → 1984년AT&T 분할명령 → 경쟁증대 및 가격인하 :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분할명령”
- 인터넷망에서 AT&T와의 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 → 단대단(end-to-end) 원칙의 법제화 필요 (Tim Wu, 2003)
- → 2004년 FCC의장의 4대원리 → Madison River VoIP 차단사건(음성통화매출 보호목적), Comcast BitTorrent차단사건(망사용료 보호목적) → 2011 Open Internet Order, 2015 Protecting and Promoting Internet → 2018년 폐지

현재 망중립성의 개요

- 인터넷서비스의 저렴한 제공 및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망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며 패킷차별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본다.
- 특수공정거래법으로서의 망중립성
 - 시장지배력
 - 경쟁제한효과
 - 진입장벽
 - 콘텐츠/디바이스 차별로 발생하는 효율성
- 여기서 “이용”이란 크고 작은 CP들의 이용을 포함하는 개념.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 1 – 배달료(발신자부담)

- 발신자 부담 배달료 (termination fee) – 인터넷의 자발적 참여적 구조에 역행 → CP혁신 불가
 - 망사업자는 패킷전달의 가장 마지막 단계만 제공하는데 패킷 전달의 시작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돈을 낼 것인가? 즉 termination fee를 받는다면 initiation fee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망혼잡을 막기 위해 망에 더 많은 패킷을 보내는 자의 책임”? → “망에서 더 많은 패킷을 요구하는 자들의 책임”은? → 망사업자는 이미 패킷요구하는 수신자들로부터 volume-기반 가격을 받고 있음. 또 전용회선료를 통해 망혼잡의 부담에 대한 대가도 이미 받고 있음.
 - 수신자와 발신자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가? (예: 유명유튜버는 발신자 or 수신자?)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 2 – 차별중계와 5G

- 차별중계 → 안정적인 혁신이 불가능해짐. 예) 카카오 보이스트록 차단 문제.
- 네트워크 슬라이싱: 5G를 자동차용 서비스, 의료용 서비스, 스마트폰용 서비스와 같이 대분류로 슬라이싱하여 서브네트워크 별로 속도를 달리 하겠다는 것
- 개별 정보의 내용과 긴급성의 관계 vs. 대분류 사업유형과 긴급성의 관계
- 4G 상에서 유튜브, 카카오톡, 이메일 등 시간민감성(time-sensitivity)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중립적인 망 하에서 온전히 작동하고 있음.
- 긴급성에 대한 해결책: 정보를 직접 다루는 CP의 기술혁신과 이용자의 선택(예를 들어 영상을 고화질로 보고 싶으면 SW를 추가로 다운로드)
- CP들이 다양한 혁신을 통해 긴급성의 요구에 대비하려면 망이 예측가능한 형태로 즉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슬라이싱 허용시 - 슬라이스별로 가격차별을 두면서 CP들로부터 더 많은 접속료를 징수할 것이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임.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 3 - 관리형서비스

- 관리형서비스 – 네트워크 슬라이싱 or private IP network?
- Private Network이라면 원래부터 net neutrality가 적용되지 않았음.
- 원래부터 common carrier규율도 private network에는 적용되지 않고 public switch telephone network(PSTN)에만 적용됨.
- 기본적으로 private network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ip별, contents별 차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음. 현재 IPTV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용선 내에서 속도조절은 문제가 되지 않음.
- 물론 IPTV라우터들이 다른 라우터들 사이의 매개자역할을 하는 한 네트워크 밖의 범용인터넷 접속서비스에 주게 됨. 특히 자사 콘텐츠를 prioritize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음.
- Public network 투자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private network에는 망중립성 적용할 필요 없음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 4- 자사제로레이팅

- SK-11번가, KT-지니 등등
- 제로레이팅은 소비자후생 증진효과 및 통신비인하 효과가 있음.
- 망시장이 과점인 상황(HHI =3,600)에서 자사제로레이팅을 허용하면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비계열사CP를 고사시킬 수 있음. "이윤압착"의 가능성 → 금지 필요.
- 공정위 수직결합심사기준 "안전지대" – 결합주체가 4위 밖이라야 안전함. 허용하더라도 안전지대 내에서만 허용할 필요. 현재 4위 밖의 망사업자 없음.
- 비계열사CP와의 차별금지의 의미: "원가이하"?
- 독립CP와의 배타적 제로레이팅 – 2017년 FCC 제로레이팅 보고서 "자사콘텐츠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 BingeOn(T Mobile의 넷플릭스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 아님" <https://www.theverge.com/2017/1/11/14243196/fcc-zero-rating-report-net-neutrality-att-verizon-t-mobile>

(과거) 인터넷의 기본 구조

- ◆ 인터넷 = 공통의 프로토콜 TCP/IP를 이용해 전세계의 단말기들을 상호 연결하여 콘텐츠를 교환, 공유하게 함
 - 콘텐츠/연산기능을 갖는 개별 단말기들은 server 또는 client로서 기능
 - 핵심은 연결 그 자체로서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
 - dumb pipe / end-to-end 원칙(망중립성), peering
 - 단순성, 분산성 → 범용적 확장성, 개방성, 효율성
- ◆ CP 역시 인터넷의 한 개별 사용자
 - CP가 접속된 ISP와 (일반)이용자가 접속된 ISP가 공중인터넷 상의 backbone 제공자들을 통해 연결

질문: 아래의 3가지 변화는 사실은 1가지 변화 즉 몇몇 이용자의 정보저장소 역할 대두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인터넷의 기본구조가 예측하거나 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망중립성 논쟁

- ◆ 인터넷 환경의 3가지 변화
 - ① 대규모 전문 인터넷 기업의 등장 (CP=이용자?)
 - ② 대용량 트래픽의 비대칭적 발생 (상호접속 체계에 부담, 무임승차?)
 - ③ OTT 서비스가 기존 통신망송과 경합 (이해관계 충돌)

망중립성 완화 근거 1. " 망사업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망사업자 특히 무선망을 포함하는 망사업자는 진입장벽으로 철저히 보호가 되어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엄격한 허가제에 따라 더 이상 이동통신사가 허용되지 않음 → 망투자를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임. 망투자를 안한다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4, 제5이동통신사를 허가하는 것이 옳음.

이윤을 낮추는 모든 규제는 투자동기를 낮출 것임. 그러나 사회발전을 지연시킬 정도로 낮출것인가가 문제임.

FCC파이위원장 2017년: "망투자가 2015년 망중립성 명령 이후 5.6% 감소" → 실제 감소된 이유는 AT&T가 2012년에 시작했던 3개년 망개발계획(Project Velocity IP)이 2015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임. <https://www.wired.com/story/the-fcc-says-net-neutrality-cripples-investment-thats-not-true/>

망중립성 완화 근거 2:

“플랫폼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규제 없이 제공하는 등 기존 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 문제를 야기”
-KT 2018.3 상생협 제2소위 발표

- 플랫폼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누구에게 어떤 규제가 적용되어야 옳다는 것인가?
- "규제형평성"론 : 빌딩임대업자와 그 빌딩의 공간을 이용해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서로 다른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악법인가? 예) 삼성전자와 이통사들 사이에도 규제형평성이 있어야 하는가?

망중립성 완화 근거 3:

“트래픽 폭증에 따른 인프라 투자요구를 통신사업자 홀로 감당하고 있는 현실”
- KT 2018.3 상생협 2소위 회의 발표

- 망사업자가 망 투자하는데 제3자가 도와줘야 할 타당성?
- "홀로 감당하고 있다"? - 제4, 제5이통사의 필요성?
- 이익보장? 이미 이통사들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남기고 있음.
- 2017년 이통3사 총 매출액은 53조 1,867억 원 (3.7% 증가) 총 순이익은 총 3조 7,673억 원(27.7% 증가) <http://www.d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
- 네이버 카카오 2017년 총 매출 6조6천억원 총 순이익은 총 6천억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80208173650
- “네이버 카카오 평균 연봉 6천4백만원”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43>
- “SK 텔레콤 평균연봉 1억 이상”
<https://news.joins.com/article/22500457>

망중립성 완화근거 4: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망이용대가를 부과”

- KT 2018.3 상생협 2소위 회의 발표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CP들은 이미 전용회선료를 내고 있음. 별도의 termination fee를 받겠다는 주장은 이미 위에서 처리
- “대용량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는 과연 망사업자인가 CP인가? 예) 학교진입로는 누가 지어야 하는가? - 신축아파트의 교육수요는 아파트시공사가 유발시킨 것인가? 학교가 유발한 것인가?
- France Telecom-Orange가 Google로부터 받는다고 주장하는 termination fee? 실제로 termination fee가 아니고 Orange France의 자회사 Equant에 접속하면서 지불하는 돈

망중립성 완화 근거 5:
“11년경 OTT 서비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에 따른 네트워크 품질 저하 관련 논란이 확산” -

SKT 2018.3 상생협 2소위 회의 발표

- “네트워크 품질”을 보증하고 판매하는 자는 OTT인가 망사업자인가? 왜 이용자로 부터 돈을 받지 않는 OTT가 과도한 트래픽 유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백화점 교통혼잡세?” -- OTT의 차이: 망사업자가 전용회선료를 통해 이미 혼잡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음.
- OTT들이 캐시서버, P2P, CDN을 통해 네트워크 품질을 제고할 수 있지만 망중립성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기술적 사업적 효용성이 보호되는 조치들임.

망중립성 완화 근거 6:

“요금을 이용자로부터만 회수할 경우, CP 서비스의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

-SKT 2018.3 상생협 2소위 회의 발표

- '요금을 이용자로부터만 회수'? - 이미 CP들로부터 전용회선료를 받고 있음.
- CP들은 이미 검색, 메일, 지도, 메일, 특히 채팅앱을 무료로 제공해왔고 이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3G망에 가입하였고 그 혜택은 망사업자들이 보았음.
- 5G시대 킬러서비스가 있어야 (이용자들이 더 비싼 5G폰과 망을 구매하고) 5G시대가 개막할 것

결론

- 망사업자들이 망사용료를 더 받고 싶다면 인터넷의 기본구조를 훼손하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한 협상을 통해 상호접속료 등등을 더 높여 받으면 될 일.
- 원가공개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노력 필요.
- 망중립성 폐지했다는 미국에서도 네트워크 슬라이싱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음. 도리어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이 빈자리를 대체할 것임. (자사제로레이팅의 명시적 금지)
- 우리나라: 망사용료도 매우 높은 상황. 우리나라 모바일인터넷 HHI 지수 3,600 (미국? T Mobile+Sprint합병 이후에도 2100)
<https://www.marketwatch.com/story/a-lower-hurdle-to-ma-in-us-mobile-telecom-2013-04-23-948561>
- → 망중립성으로 더이상 무엇을 지킬 것인가? 망이 사회를 더욱 평등, 개방, 효율적으로 만드는 혁신에 대한 또하나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될 것.

1-3-8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발제자: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망중립성 정책

-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5G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기술에 적용할 것인지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

	찬성	반대
5G 망중립성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의 기대수익 감소로 망 투자 저해 → 혁신 저해 → 생태계 선순환 저해 ·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개별서비스에 적합하게 지연시간, 전력량, 다운로드 속도 등을 차별화 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관리형서비스로 인정되지 않는 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기술이 인터넷 접속서비스 라는 속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망중립성 규제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유지해야 5G 개발에 기여 ·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한 망중립성 위반 가능성은 극소수 서비스(예: 자율주행차)에 한정 되므로 관리형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 가능하고, 설정 슬라이스 간 차별을 허용하더라도 슬라이스 내(경쟁서비스 간) 차별은 금지해야 함
전체적인 망중립성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대형CP의 과다 트래픽 유발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망 투자·유지·보수비용 발생하므로, 합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 · 신규서비스 출시와 산업 혁신을 위해 웹서핑 등 통상적 인터넷 서비스 품질요구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대가기반 우선처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사업자간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대가기반 우선처리를 허용하면 비용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대형 CP만 살아남게 되어 중소CP의 붕괴는 물론 생태계 혁신이 저해 될 수 있음

□ 제로레이팅

- 대부분의 위원 및 사업자가 제로레이팅 원칙적 허용에 공감하였으나, 허용조건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뉨

※ 인터넷기업협회만 모든 제로레이팅 금지 주장

- i) 일정 범주의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등조건 의무화 여부, ii) 자사·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뉨
- i)에서 동등조건 의무화되는 경우, ii)에서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여부(동등조건의 의미) 문제만 남음

	찬성	반대
일정 범주의 모든 CP에 대한 동등조건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CP에 대하여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범주 내 모든 CP에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CP에 대하여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거나 CP간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는 그만큼의 데이터 이용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쟁CP의 제로레이팅 요청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 문제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측면에서 통신사는 매우 적은 비용만이 소요되나, 경쟁 CP들은 유의적인 비용(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 발생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우대가 문제되므로, 경쟁 CP의 제로레이팅 요청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 문제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를 우대할 가능성이 높는데 사후 규제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적 금지 필요

1-4. 망 이용료 정책

1-4-1. 인터넷망 상호접속 개념과 제도 현황 (발제자 KISDI 이상우 통신정책그룹장)



www.kisdi.re.kr
m.kis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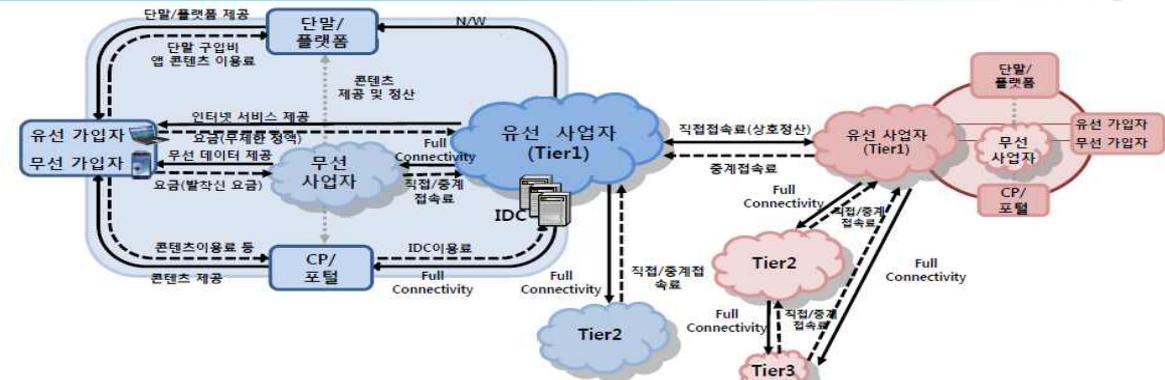
인터넷망 상호접속 개념과 제도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
(woody@kisdi.re.kr)

2018년 5월 28일(월)



1 인터넷시장 참여자 간 거래구조와 상호접속



구분		CP/포털 사업자	무선인터넷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유무선 인터넷가입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	-	가입자→초고속 (무제한 정책)
	무선인터넷 가입자	가입자→CP (콘텐츠이용료)	가입자→무선 (발·착신 요금, Block Pricing)	-
CP/포털 사업자		-	CP→무선 (인터넷전화회선)	CP→초고속 (IDC, 인터넷전화회선)
무선인터넷 사업자		-	-	무선→초고속 (직접/중계접속료)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	-	초고속→초고속 (직접/중계접속료)

상호접속제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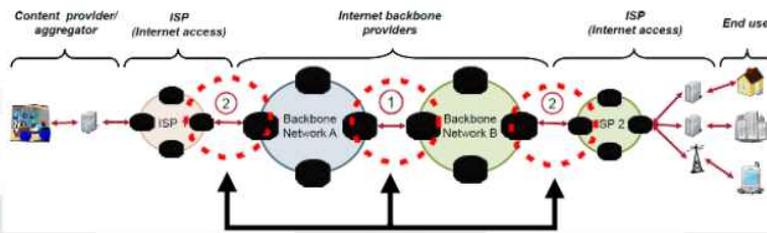
<2/14>

2 인터넷망 상호접속(IX : Internet Exchange) 개념 - ①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간 인터넷 트래픽 교환을 위해 상호간 인터넷망을 연동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한 ISP에만 가입하면 전세계에 산재한 콘텐츠 또는 다른 ISP 가입자와 접속 가능(보편적 연결성; any-to-any connectivity)
- 전통적으로 인터넷망을 보유하지 않은 End-User(CP 포함)와 ISP 간 트래픽 교환은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닌 최종이용자와 사업자간 소매거래(Internet Access)로 인식,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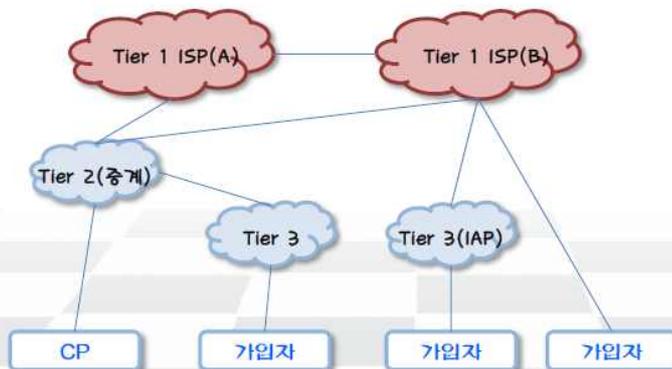


인터넷 상호접속 구간 : ① 인터넷 동등접속(Peering), ② 인터넷 중계접속(Transit)

<3/14>

3 인터넷망 상호접속(IX : Internet Exchange) 개념 - ②

- 사업자 간 직접접속이 일반적인 음성 상호접속과는 달리,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망 이용 효율 증대, 비용 절감 및 트래픽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업자간 계위 구분을 통한 계층적 접속구조를 취하고 있음
- 인터넷 구조의 중심인 ISP는 그 역할 및 규모에 따른 계위 등을 고려하여 IBP(Internet backbone Provider), ISP(Tier 1, Tier 2), IAP(Internet Access Provider) 등 다양한 용어로 구분/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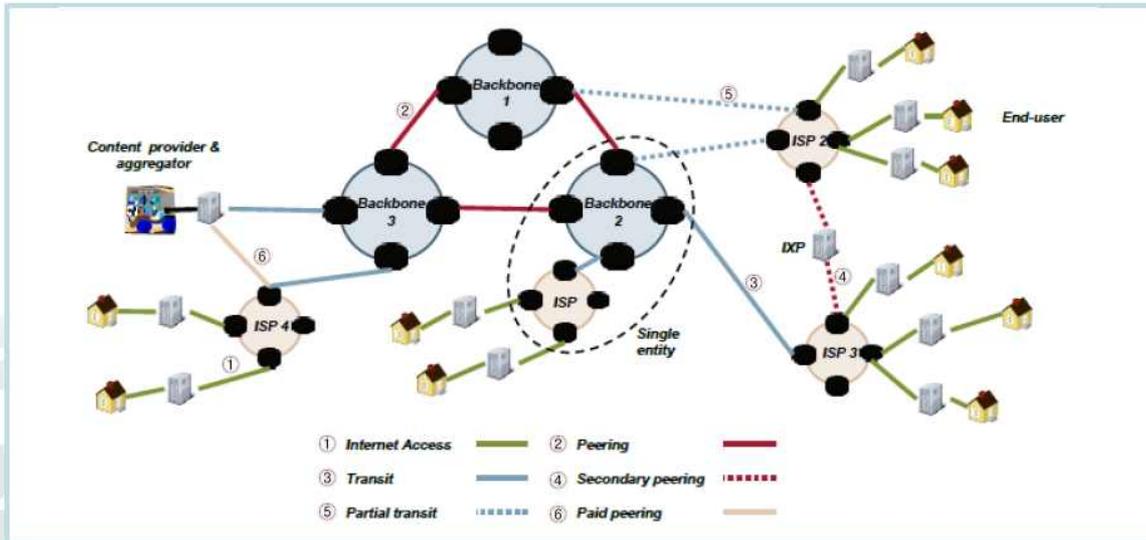


<4/14>

4

4 인터넷망 상호접속 계약 유형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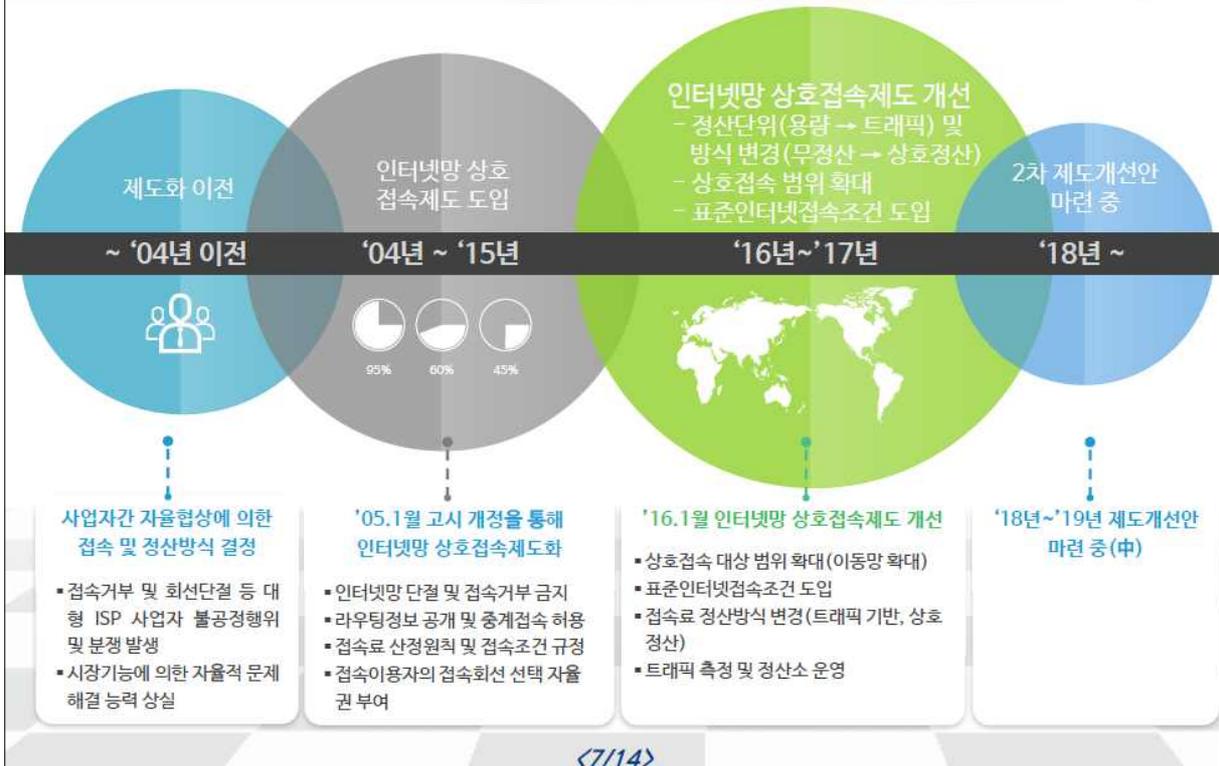
- 인터넷 상호접속 유형은 사업자간 계위 관계에 따라 크게 동등(peering)접속과 중계(transit)접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를 정산 유무, 접속트래픽 유형 등에 따라 Peering은 다시 settlement free peering, paid peering, secondary peering으로, Transit은 full transit, partial transit 등으로 세분화



4 인터넷망 상호접속 계약 유형 - ②

- **Peering 계약** : 계약당사자 간 교환되는 트래픽 중에서 타망(제3자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계약유형
 - 정산방식에 따라 다시 settlement free peering, settlement based peering(paid peering, 상호정산 peering)으로 구분
 - **paid peering 계약** : peering과 transit 계약방식을 혼용한 계약방식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송수신되는 호를 제3자의 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peering 계약과 동일하나, 정산방식이 일방향이라는 점에서는 transit과 동일
- **Transit 계약** : 상대방으로부터 송수신되는 호를 타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된 계약으로 전송 의무가 부여된 망의 범위에 따라 full transit, partial transit 계약으로 구분
 - full transit 계약 : 상대방으로부터 송수신되는 호를 전체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된 계약
 - partial transit 계약 : 상대방으로부터 송수신되는 호를 전체 인터넷망이 아닌 전송범위를 한정하여 의무가 부여된 계약

5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도입 및 개선 추진 경과



6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주요 내용 : '04년 ~ '15년

- 1 기간 ISP에게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의무 부여, 개별 ISP의 부당한 인터넷망 단절 및 접속 거부 금지(접속용량 증설 거부 및 지연 금지)
- 2 대형 ISP가 보유하고 있는 라우팅정보 공개 의무화 및 중계접속 허용
- 3 동등접속 및 중계접속의 접속료 산정원칙 및 접속조건 규정
- 4 접속이용자의 접속회선 선택 자율성 보장 → 백본망 접속서비스와 전용회선 끼워팔기 금지

구분	제도화 이전(~'04)	제도화 이후('04~'15)
접속 유형	• 접속유형 구분 없음	• 직접접속과 중계접속으로 구분
인터넷접속조건	• 없음	• Peering policy에 따른 사업자 계위 구분
접속료 산정원칙	• 접속회선 동시 구매	• 접속회선 비용과 접속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 산정하여 이용사업자 선택 가능
정산 방식	접속회선비	• 동일계위 : 접속사업자간 1/2씩 부담 • 다른 계위 : 하위 사업자 부담
	접속통화료	• 직접접속 - 동일계위간 : 무정산, - 다른 계위간 : 하위계위 사업자 부담 • 중계접속 : 접속이용사업자 부담
호소통범위	• 제한적	• 중형 ISP의 중계접속을 허용 • 중계접속 제공시 full Routing 제한/거부 금지

<8/14>

7 '16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배경



인터넷 트래픽 증대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생태계 내 시장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 및 시장참여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정
- ✓ 공평한 계위상승 기회를 부여하고, 상위계위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던 거래 조건을 제도로 편입시켜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을 조성
 - SKB, LGU+는 KT가 정한 접속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15년 SKB-LGU+는 KT에 450억원 지불)
- ✓ 무선 인터넷 트래픽량 급증 등 변화된 통신이용환경을 반영
 - 기존에 이동사는 전용회선료를 지불하고 유선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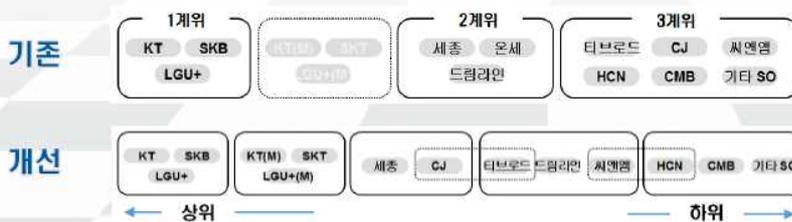
8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주요 내용 - ①

◆ 상호접속 범위 확대(ISP⇔ISP → ISP⇔ISP, ISP⇔Mobile Net)

- 현재 유선의 ISP ⇔ ISP 간 상호접속에 한정된 인터넷망 상호접속 적용대상 범위를 **유선 ISP ⇔ 무선 인터넷망** 간으로 확대·개편
- 이동사 인터넷망에도 접속 이중화, 부당한 차단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LTE 등 **무선 인터넷망 이용의 안정성을** 제고

◆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도입

- 현재 개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접속조건 및 세부기준을 표준화한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을 마련하여 운영
- 기존 3계위 기반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상·하위계위사업자)



<10/14>

9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주요 내용 - ②

◆ 접속료 정산방식 개선

- 사업자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용량기반(bps)에서 트래픽 사용량기반(byte)으로 변경하고 동일계위 간 무정산을 상호정산방식으로 변경

※ 용량기반(capacity-based): 상대방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수용량으로서, 실제 트래픽량이 없거나 수용량에 미달하다라도 해당되는 최대 수용량의 대가를 수수

-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 회수기반을 제공하고, 사용량 기반 정산으로 인터넷망 이용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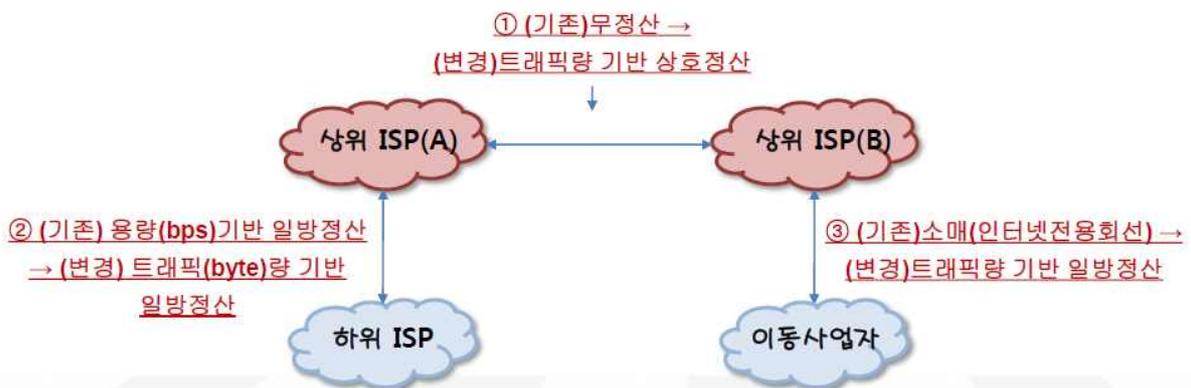
◆ 호 유형별 접속료 상한 설정

- 호 유형별 접속료는 사업자간 자율협약에 기반하되, 정부는 요율 인상에 따른 중소통신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위별, 호유형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속요율의 상한(Price ceiling)을 결정

구분		2016년	2017년
동일계위간	직접접속	31,910	29,587
	중계접속	45,438	42,130
차등계위간	직접접속	18,783	17,416
	중계접속	48,439	44,897

<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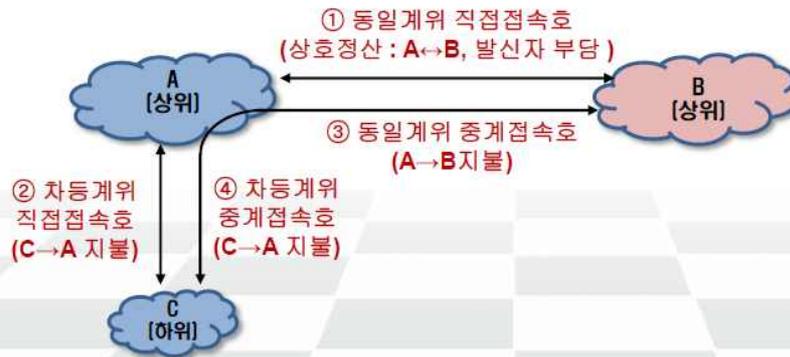
10 사업자 간 접속료 정산방식 주요 변경 사항



<12/14>

11 호 유형별 사업자 간 정산방식 - '16년 이후

- 동일계위사업자 간 정산은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직접접속호**는 상호정산, **중계접속호**는 하위계위사업자를 유지한 사업자가 미유치한 사업자에게 **일방정산**
- 차등계위사업자 간 정산은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되, **하위계위사업자가 상위계위사업자에게 일방정산**



<13/14>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방향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네트워크 정책

-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
-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
- DT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 정책 필요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
 -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생산력이 고도화되며 이전과 다른 산업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시기
 - 1차 인터넷벤처붐 시기부터 시작된 디지털경제가 산업 전체로 전면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음
 - 디지털경제로 전환을 주도하는 혁신기업들이 세계경제의 전체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

3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



4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

< 글로벌 Top10기업 순위 >

로고	기업	국가	시가총액 USD	시가총액 KRW
	애플		8070 억달러	914 조원
	구글 (=알파벳)		6905 억달러	782 조원
	마이크로소프트		6080 억달러	688 조원
	페이스북		5081 억달러	575 조원
	아마존		4721 억달러	534 조원
	버크셔 해서웨이		4661 억달러	528 조원
	알리바바		4541 억달러	514 조원
	텐센트		4254 억달러	482 조원
	존슨앤존슨		3822 억달러	432 조원
	엑슨모빌		3521 억달러	398 조원

(www.mrktcap.com 2017.11.6.)

5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

< 미국 경제 기업 시가총액 순위 >

1	Apple	870조원
2	Alphabet	720조원
3	Microsoft	640조원
4	Amazon.com	530조원
5	Facebook	520조원
6	Alibaba Group	470조원
-	-	-
-	-	-
24	AT&T	210조원
-	-	-
29	Verizon	200조원
30	Citigroup	190조원
31	Toyota	180조원
32	General Electric	170조원
33	Comcast	170조원
34	Cisco	160조원

(dogsofthedow.com 2017.11.7.)

6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

< 중국 시가총액 순위, (16) >

(단위 : 위안)

排名	证券名称	2016年	2015年	行业	上市地点
1	腾讯控股	16,081	12,015	信息技术	香港
2	工商银行	15,718	16,323	金融	上海、香港
3	阿里巴巴	15,200	13,075	非日常生活消费品	纽约
4	中国移动	15,055	15,010	电信业务	香港、纽约
5	中国石油	14,550	15,282	能源	上海、香港、纽约
6	建设银行	13,601	14,451	金融	上海、香港
7	中国银行	10,127	11,805	金融	上海、香港
8	农业银行	10,069	10,491	金融	上海、香港
9	中国人寿	6,809	8,002	金融	上海、香港、纽约
10	中国石化	6,550	6,005	能源	上海、香港、纽约、伦敦

(platum.kr, 2017.1.4)

7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

- 혁신 창업기업이 일자리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주도

- 미국: 기존기업 일자리 매년 100만개 감소, 창업기업 매년 300만개 창출
- 한국: 2007~2011, 기존기업 일자리 89만개 감소, 창업기업 125만개 창출

- 모바일 시대부터 등장한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전통산업과 신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음

8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



9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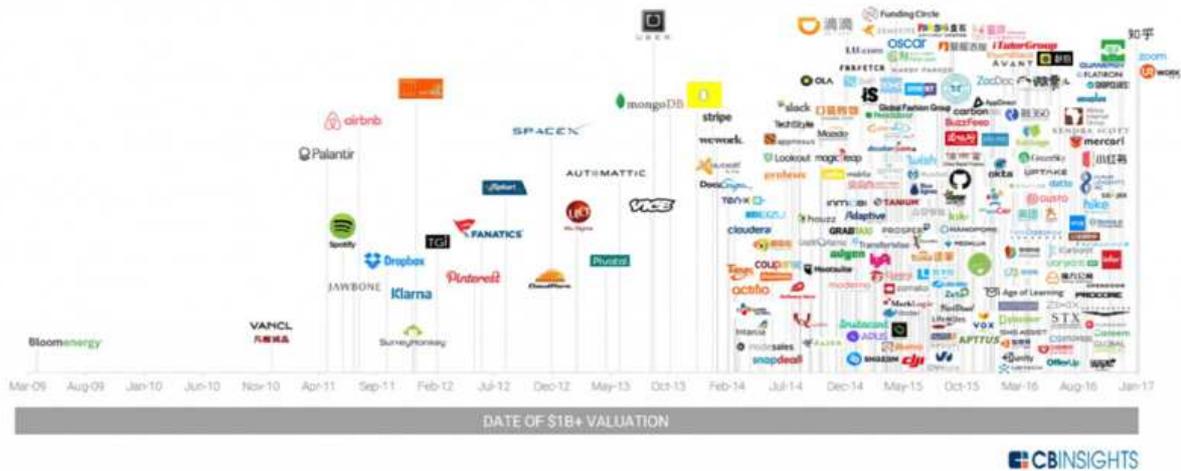


10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

**THE INCREASINGLY CROWDED UNICORN CLUB:
PRIVATE COMPANIES VALUED AT \$1B+**
as of 1/31/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네트워크 정책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빅데이터
 - IoT(Internet of Things)
- >DT시대에 맞는 네트워크 정책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네트워크 정책

- 스타트업을 하기 쉬워진 세상
 - 낮은 비용: 책상 하나와 컴퓨터 하나면 창업
 - 인프라 구축 불필요: 아마존 AWS 등 클라우드이용
 - 글로벌 플랫폼 활용: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 소셜미디어 시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의 등장: 킥스타터, 인디고고

1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네트워크 정책

-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 10분의 1 이하의 창업비용
 - 50배 이상 많은 인터넷 이용자
 - 100배 이상 빨라진 인터넷
 -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로 모두가 연결
- > 그러나, CP의 망 이용부담을 결코 줄지 않았음
- >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방향 정립 필요

14

네트워크 정책 이슈와 방향

- 망 이용요금: 과도한 부담 해소
- 제로레이팅: 불공정경쟁에 대한 엄격 감시
- 망중립성 원칙: 투명성, 차단금지, 차별금지 원칙 강화

15

망 이용요금 문제점

- 국내 통신사들의 망사용료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 미국의 CDN, DNS 서비스기업인 클라우드플래어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망비용이 해외와 비교하여 15배나 비싸고 망요금이 올라가는 유일한 나라라고 언급
 - 2016년 기준 국내 CP들이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는 글로벌 수준은 물론 아시아 평균 망 사용료 대비 약 2~2.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됨 (<https://blog.cloudflare.com/bandwidth-costs-around-the-world/>)
 - 2016년 기준, 네이버 734억, 카카오 2~300억, 아프리카TV 150억 추정
 -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통신사들의 상호정산 매출은 급증하는 반면 CP와 CDN 사업자에 대한 비용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16

망 이용요금 문제점

- 스타트업에 더 가혹한 조건
 - 이용요금과 달리 CP에 대한 통신사 요금정책은 시장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규모 및 트래픽 용량이 클수록 협상력이 있고 스타트업들의 경우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이용자와 서비스의 활성화가 선행된 후에 수익모델이 개발되는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특성상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AWS 등 외국계 클라우드서비스로 스타트업들이 옮겨가는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음

17

망 이용요금 정책방향

- 망공공성에 입각한 원칙 확립
 -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동등 접근 정책(망중립성) 뿐만 아니라 필요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망공공성에 의한 정책 수립 필요
 - 우리나라는 인터넷접속점(IX)을 통신3사가 가지고 있고, 기간통신역무에 대해 허가받은 통신3사가 과점하는 체제이므로 더욱 통신망의 공공인프라로서 중요성이 강함. 시장자율 중심의 원칙이 아닌 SOC 영역과 같은 적정이윤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스타트업과 같은 중소CP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기기업과 중소CP에 대해 망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하거나 우대하는 역진적인 가격정책 도입이 필요함

18

제로레이팅 문제점

- 제로레이팅은 통신비절감 수단이 아님
 - 제로레이팅은 이용자에게 면제한 통신요금을 계약한 CP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통신비 절감 수단이 될 수 없음
- 스타트업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진입장벽
 - 국내 제로레이팅은 모바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높은 데이터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들은 접근이 불가능하며, 통신사의 전략적 마케팅수단(포켓몬고 사례)이나 대형CP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음
-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우려
 - 통신사들은 통신사업 외 다양한 영역에 스타트업과 CP들과 경쟁하고 있음. 제로레이팅을 활용하여 자회사에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불공정경쟁을 벌일 경우, 특히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우려됨

19

제로레이팅 정책방향

- 엄격한 감시를 통해 불공정경쟁 차단
 - 제로레이팅은 정부가 장려해야할 수단이 아니라 엄격한 감시를 통해 불공정경쟁을 원천 차단해야할 영역임
 - 특히, 통신사 자체 또는 자회사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 전이 또는 불공정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제로레이팅을 지원해주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망 이용요금의 하락을 통한 보편적 정책으로 지원이 타당함

20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

- 통신사 영향력 편중으로 인한 생태계 왜곡
 - 현재도 과점체제인 통신3사의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특정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의 망에 대한 접근성이나 품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 형성
- 통신사 중심의 콘텐츠 서비스 집중화
 - 통신사 자체 또는 전략적 제휴를 맺은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강화되어 불공정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특정 서비스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강화되어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막아 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음
- 스타트업 성장 저해
 - FastTrack 등 차별적인 망 이용요금 체계가 확산될수록 부담능력이 작은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는 저품질의 망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음. 결국 통신사와 전략적 제휴 또는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제외하고는 성장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

21

망중립성 정책방향

-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고 네트워크기본권 확대
 - 네트워크기본권 확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임. 이는 투명성, 차단금지, 차별금지라는 망중립성 원칙의 강화로 실현될 수 있음. 개인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권리 역시 경제활동의 기본권으로 이해해야 함
 - 특히,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FastTrack과 같은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분명한 원칙확립과 시장감시가 필요함
 - 현재의 망중립성가이드라인 하에서 통신사들은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및 감시, 법제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감사합니다

jin@kstartupforum.org

1-4-3 망중립성/망이용료 관련 중소CP 간담회(6.15) 결과 (발처자 KSDI 김현수 연구위원)

□ 망 중립성

- (A사) 망 중립성 규제 완화로 국내외 CP 간 망 이용료 차별을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며, 규제 완화 시 통신사는 대형 CP가 아니라 중소 CP에게 협상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망 이용료 역차별은 통신사가 해외 CP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규제해야 함
- (B사) 투자 여력 확보는 통신사가 10년 전부터 해 온 이야기인데, 진입규제에 의해 보호받는 통신사의 수익성은 여전히 높음
 - 5G는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 (C사) fast lane은 통신사가 CP들에게서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용자 요금이 인하되지는 않을 것임
 - fast lane 허용하면 통신사의 서비스 선별이 가능해지므로 절대 반대함

□ 제로레이팅

- (A사) 중소 CP는 대형 CP에 비해 자본력 및 협상력이 부족하므로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음
 - 제로레이팅으로 가계통신비는 감소하더라도 기업통신비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통신비 절감 수단이 될 수 없음
 - 통신사는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돈을 벌 수 있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으로 지배력 전이시킬 수 있음
 - 제로레이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최소한 엄격한 시장 감시 필요

- (B사) 제로레이팅 협상력 측면에서 중소 CP는 대형 CP보다 열위에 있음
 - 우리는 제로레이팅 제휴 검토 후 비용이 너무 커서 포기하였음
 -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절감수단이 아니며, 통신사가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breakthrough로 들고 나온 이슈임
- (C사) 우리는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사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신사의 자사 동영상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반대함
 - 제로레이팅 비용이 너무 커서 대형 CP만 감당 가능
- (D사) 동영상서비스에 제로레이팅 적용하면 23,100원(데이터쿠폰 5G)에 1시간짜리 3개만 이용 가능하므로, 중소 CP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
 - 결국 프로모션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므로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요금제를 낮추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됨
 - 또한, 혁신서비스는 제로레이팅이 아니라 서비스 가치 때문에 선택 되므로 제로레이팅이 혁신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혁신 서비스가 제로레이팅을 통해 시장 장악하는 것도 문제임
- (E사) 통신사가 중소 CP의 지분 일부를 얻는 조건으로 제로레이팅 제휴를 하게 되면 통신사의 가두리 양식장이 될 것이고 혁신이 저해될 것임
 - 넷플릭스, 포켓몬고 등 인기서비스 제로레이팅은 CP가 아니라 통신사 경쟁력을 위한 것임

□ 망 이용료

- (C사) 망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부득이하게 아마존 AWS 사용하여 아마존 협상력에 의존하고 있음
 - 망 이용료가 CP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통신사의 경쟁 서비스에 대하여 과다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된 상호접속고시가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 필요
- (F사) 우리도 국내 CDN이 몰락하여 AWS로 이동하였음
- (A사) 네이버는 협상력이 커서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나, 중소 CP는 가격이 비싸고 비밀유지 계약으로 가격조건 공개가 안 되고 있음
 - 벤처 창업비용이 과거에 비해 10분의 1로 감소하였지만, 망이용료 총액은 비슷한 수준임
 -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AWS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CDN은 국내 통신망 이용비율이 높아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E사) 통신사가 해외 CP에 대한 손실을 국내 CP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1-4-4. Global CP의 망이용대가 관련 정책방안 (발제자: 세종 장준영 변호사)

I. Global CP 망이용대가 논의의 개요 및 현황

- (개요) 구글, 넷플릭스 등 Global CP(이하 “GCP”)는 국내 CP와 달리 국내 ISP와 직접적 망이용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GCP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CP 간의 차별이 문제되고 있음
 -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라 ISP는 Dumb-pipe화 되어 수익은 정체되는 반면, CP들의 트래픽은 증가하면서, ISP와 CP 사이에 합리적인 망비용 분담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현황) 트래픽 이용량은 GCP가 국내 CP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반면, GCP가 지급하는 망이용대가는 트래픽 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짐
 - 모바일 이용시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의 경우 구글의 유튜브가 다른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이용시간이 많으며, SNS의 경우에도 페이스북 이용시간이 국내 SNS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이용되고 있음



<출처: 디지털데일리 2018. 3. 27.자 관련 기사>

- 한편, 네이버는 2016년 한 해 동안 약 734억원의 망이용대가를 국내 ISP에게 지불하였다고 밝힘
 - ※ 이는 네이버의 연결 매출(4조226억원) 대비 1.82%를 차지하는 규모
 - ※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도 연간 100억원 내외의 망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매출 대비 각각 1%, 0.7% 수준), 동영상 서비스인 아프리카TV의 경우 연결 매출(798억원)의 20%에 해당하는 150억 원 가량을 망이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비해 구글 등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망이용대가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히려 ISP들이 캐쉬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짐

II. GCP 망이용대가 논의의 원인 및 경과

- (역차별의 발생 원인) 국내 서버와 망이용이 필수적인 국내 CP들에 비해, GCP는 개방된 인터넷망의 특성 및 국내 ISP에 대한 다소 우월적인 협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ISP가 GCP에게 망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 GCP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 서버만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 ISP의 국제망 비용이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
 - GCP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ISP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므로 (GCP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GCP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 ISP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GCP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수단 등을 취하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으나, **망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어려움
 - ※ 실제로 KT의 삼성 인터넷 TV 접속 차단 사례, 프랑스 Free사(佛 ISP)의 유튜브(美 CP) 접속제한 사례 등에서 망중립성 원칙 위반이 문제됨
- (견해의 대립) ISP와 국내 CP는 GCP도 국내 CP들과 동일하게 국내망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GCP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므로 국내 ISP에게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
 - GCP도 국내 ISP의 망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ISP와 차이가 없는바, 이 점에 주목한다면 GCP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 반면, 국내 CP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자사 서버와 국내망을 직접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GCP를 국내 CP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해외에 서버를 둔 GCP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견해도 가능
- (논의의 경과) GCP의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ISP, 국내 CP 등을 중심으로 GCP도 적절한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 사건’을 계기로 국내 ISP에게 적절한 망이용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 다만, 현재까지 유선통신3사와 페이스북의 망이용대가 협상은 견해 차이가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최근 LG U+가 넷플릭스와 IPTV 제휴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넷플릭스의 망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III. 관련 문제점(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 (국내 CP 경쟁력 저하)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GCP들의 망이용 혜택이 더 크에도 불구하고, 망이용대가는 국내 CP에 비해 훨씬 적게 지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
 - 국내 CP는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망이용대가 부담도 증가하므로, (GCP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UHD, VR 등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가 어려워 GCP와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망이용대가 부담의 차이, 서비스 고도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CP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 인터넷 콘텐츠 시장이 저열화되어 중장기적으로는 GCP에 의해 잠식될 우려
- (무임승차 논란) GCP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망 증설비용 또는 망 고도화 비용이 국내 CP 및 ISP에게 전가되고, GCP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기여 없이 무상으로 망을 이용한다는 주장

- 실제로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는 것은 GCP임에도, 트래픽 폭증에 따른 망 증설 및 고도화 비용은 국내 ISP와 CP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GCP가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는 주장임
 - 이에 따라 국내 CP 및 ISP가 국내 망의 증설 및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할 유인이 사라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산업의 위축이 우려
- (이용자 이익 저해) 국내 CP 및 ISP에게 전가된 망투자비용은 다시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내-외 서비스 간 요금이나 품질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발생

IV. 국내사례 -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사례

1. 사실관계

-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경까지 ①국내 KT, SKT, LGU+ 이용자는 주로 KT의 ‘목동 IDC’에 설치된 캐시서버를 통해서, ②SKB 이용자는 주로 홍콩 ‘Mega-I IDC’를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함
- 페이스북은 SKT, SKB 이용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에, LGU+ 이용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경에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한 접속경로를 KT ‘목동 IDC’를 통한 접속에서, 해외 망을 통한 접속으로 변경하고,
 -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고지를 하지 않음
- (SKT, SKB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T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한 결과 기존 홍콩 직접접속 용량이 부족해졌고, 초과된 SKB 트래픽 중 일부가 회선대역폭이 협소한 국제구간으로 이동하여 병목현상이 발생
- 접속경로 변경 후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응답속도는 최번시 29ms이던 것이, 평균 130ms로 4.5배 느려짐
 - 이에 따라 SKB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 접수건수는 일평균 0.8건에서 일평균 9.6건으로 증가(SKB 콜센터 접수기준)

- (LGU+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은 2017년 1월에는 유선트래픽에 대하여, 2월에는 무선트래픽에 대하여 각 접속경로를 변경
 - 접속경로 변경 후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응답속도는 최번시 43ms이던 것이, 평균 105ms로 2.4배 느려짐
 - 이에 따라 LGU+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 접수건수는 일평균 0.2건에서 일평균 34.4건으로 증가(LGU+ 콜센터 접수기준)

2. 방통위의 제재처분

-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 다만,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메시지 교환, 사진공유, 동영상 재생 등의 이용에 제한을 발생시킨 것인데, 이러한 서비스 제한이 경제적 이익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8. 3. 페이스북에 대하여 접속경로 변경의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음

3. 시사점

- 페이스북 등 GCP는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 **ISP의 관여 없이도** 접속경로를 스스로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
 - 나아가 GCP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라 서비스 품질수준도 저하될 수 있는바, GCP가 더 이상 콘텐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의 이용과 통신품질에 관해서도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
- 이 사건은 콘텐츠 자체가 아닌 인터넷 접속 품질 저하가 문제된 사건임에도, 방통위는 ISP가 아닌 GCP인 페이스북의 행위로 인하여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한 이용제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함
 - ※ 다만,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V. 해외사례

1. 프랑스

가. France Télécom(佛 ISP) vs. Cogent Communications(美 ISP) 분쟁 사례(2005)

○ (배경) 프랑스 ISP인 France Telecom*(현 Orange)과 미국 기반 글로벌 ISP인 Cogent Communications(이하 “Cogent”)는 2005년 상호접속으로 인한 트래픽에 대하여 무정산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

- ※ France Télécom은 2013년 회사명을 2006년부터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던 Orange로 변경
- ※ France Télécom와 Cogent의 상호접속협정상 트래픽 교환 비율을 1: 2.5로 규정

- 그 후 Cogent는 웹하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Megaupload와 중계접속 (transit) 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Megaupload는 Cogent의 망을 통하여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Cogent는 중계접속 계약에 따라 트래픽에 비례한 대가를 수취
- 그러자 France Telecom은, Megaupload가 발생시킨 트래픽 중 Cogent로부터 France Telecom의 망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Cogent에 대하여 추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



<그림 1> France Télécom와 Cogent, Megaupload 간 계약관계

- (Cogent의 제소) Cogent은 2011년 5월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France Télécom의 요구가 망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위를 제재하여 달라고 제소
- (ARCEP의 결정)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통신규제당국인 ARCEP은 2012년 9월, France Télécom과 Cogent의 트래픽 교환 비율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France Télécom의 대가지급 요구는 반경쟁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Cogent는 France Télécom에 협정 비율을 초과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비용(paid peering) 지불하도록 함

※ 인터넷 업계에서 트래픽 교환비율 격차가 통상 기준인 1:2.5를 초과할 경우, 과도한 트래픽 유발 사업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입장

- 또한, Cogent는 Megaupload와의 중계접속 계약을 통해 이미 Megaupload로부터 접속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France Télécom에 증가된 트래픽 전송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

Cogent 주장	France Télécom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gent는 초과용량에 대하여 기존의 상호 무정산 직접접속 계약대로 상호접속하길 원했으나, France Télécom은 Open Transit에 접속하도록 강요 · France Télécom이 교환 트래픽 비율을 2.5:1로 설정한 직접접속 계약을 맺은 것은 Cogent에 대한 차별임 · 파리에 위치한 양사 간의 접속점의 처리 용량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gent가 Megaupload의 트래픽을 중계 접속하면서 양사 간에 발생한 트래픽 전송 비율이 계약내용에 명시한 비율인 2.5:1을 초과 · Cogent가 기존 협정에서 정한 것을 초과한 트래픽 처리를 위한 망 투자비용을 보전해야 함

○ **(경쟁당국의 결정)** 프랑스 경쟁당국은 Cogent로 하여금 France Télécom에 해당 트래픽 처리를 위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결정하였으나,

- 트래픽 발생의 원인이었던 Megaupload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폐쇄(2012. 1. 19)되어 사업을 지속하지 않게 되면서 현재 양사는 상호 무정산 방식의 직접접속을 유지하고 있음

나. 프랑스 Free사(佛 ISP)의 유튜브(美 CP) 접속제한 사례(2012)

○ 프랑스 최대 소비자 단체인 l'UFC-Que Choisir는 2012년 9월 ARCEP에 Free사가 사용량이 많은 특정시간 동안 Google 및 Youtube 등에 대한 접속을 제한했고,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 된다고 조사를 요청함

- l'UFC-Que Choisir는 ‘인터넷 접속 속도의 비차별성’ 부분을 주장함

○ **(ARCEP의 결론)** ARCEP은 조사 결과,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Google 및 Youtube 접속에 약간의 혼잡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프랑스-미국 간 직접적인 데이터 접속을 고려한다면 망중립성 권고사항을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밝힘

- 다만, ARCEP은 향후 서비스 접속 품질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힘

다. France Télécom(Orange, 佛 ISP) vs. Google(美 CP) 망대가 지급 사례(2013)

- Orange CEO는 2013년 1월 BFM 비즈니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Google이 망 이용대가로 초과 트래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림
 - 같은 인터뷰에서 Orange CEO는 Google이 Youtube 등을 통해 Orange 트래픽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 다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공개되지 않음

2. 미국

가. Comcast(美 ISP) vs. Level-3(美 CDN사업자) 사례(2010)

- Comcast는 2010년 11월 Netflix와 콘텐츠 전송 계약을 맺은 CDN 사업자인 Level-3에 대하여 Comcast 망 내 트래픽 정체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회선 사용료를 요구
 - Comcast는 미국의 ISP이고, Level-3는 미국의 CDN 사업자임
 - 원래 Comcast와 Level-3은 동등접속(peering) 계약 관계를 유지했으나, Level-3가 Netflix와 콘텐츠 전송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균형한 트래픽 상호 교환이 발생하면서 중계접속 계약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임
 - Level-3는 Comcast의 제안을 받은지 3일만에 **별도협정을 체결함**
- 그러나 Level-3는 Comcast가 자사 망 가입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으면서 CP에게까지 차별적으로 회선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FCC에 조사를 요구
 - 이에 대해 Comcast는 Level-3와 네트워크 규모와 실제 트래픽 발생 수준에 따라 상호정산이 발생하는 중계접속 계약에 있고, 해당 계약은 상호간 이해관계에 따른 양자간 협상을 통해 체결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 본 사례의 경우 상당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나, Comcast가 별도 협정을 요구한 원인이었던 Netflix가 2014년 Comcast와 직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Level-3가 Comcast의 망용량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현상이 사라지면서 일단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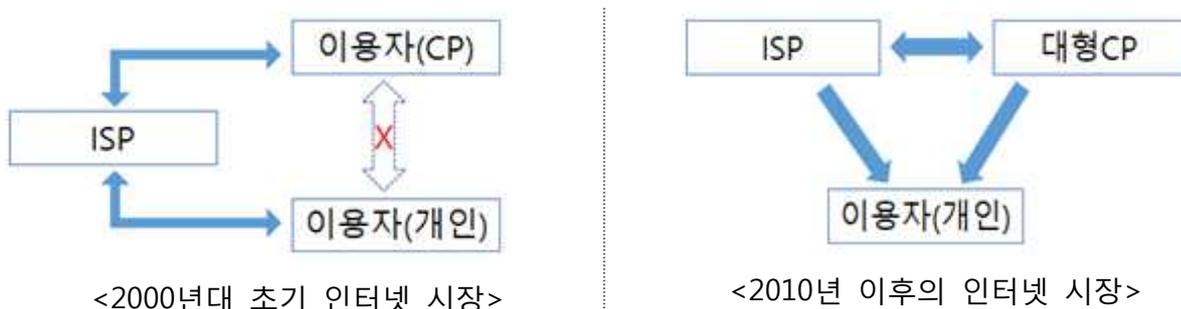
나. Comcast(美 ISP) vs. Netflix(美 CP) 사례(2014)

- Netflix는 2014년 2월 Comcast와 직접회선을 연결하는 상호접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Netflix의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해 양사가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Netflix가 상호접속에 대한 대가로 Comcast에 지불하는 금액은 Comcast의 가입자 확보 차원에서 지급하는 대가라는 의견도 있음
 - Netflix와 Comcast의 상호접속 계약 체결 사실이 공개된 이후 Netflix의 트래픽 처리 속도가 실제 빨라진 것이 확인됨(출처: Netflix 홈페이지)
- 양사간 상호접속 계약 체결 이후, 트래픽 처리의 비차별성 원칙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 Netflix는 해당 계약은 양사 유료로 구축한 전용망을 통해 Netflix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반 인터넷 망에서 Netflix의 트래픽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움
 -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은 Comcast 망을 통해 Netflix 콘텐츠를 더욱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Netflix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반 인터넷 서비스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 강조

VI. 시사점

- (망이용대가의 필요성) 킬러콘텐츠의 지배력 및 필수성*을 바탕으로 한 **CP 지위의 상승**, CP 콘텐츠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같은 인터넷 생태계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ISP와 CP 간의 관계가 기존의 ‘이용자 관계’에서 ‘**B2B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

※ 글로벌 인터넷 시장이 소수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과점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콘텐츠의 대체 불가능성 및 유일성으로 인해 하류시장인 ISP 시장에 대해 필수투입요소화 되고 있음



- 통신망의 품질을 중심으로 경쟁하던 시대에서 **콘텐츠 경쟁 시대**로 진입하면서 ISP에 대해 CP들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있음
- ‘접속경로 변경’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CP는 접속경로를 임의로 설정하여 국내 통신망의 이용경로나 서비스 품질 등을 일정부분 제어하는 등 기간통신역무와 이용자 후생에 부분적으로 관여
-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CP의 망이용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망투자비용이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익**은 CP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바, 수익자 지불원칙에 입각하여 CP들이 망투자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 ISP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정액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CP가 트래픽에 따른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ISP의 수익이 증가하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요금 규제가 존재하고 통신비인하 압력도 높아 ISP가 이용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점 고려할 필요

○ (망중립성 위반 여부) 초기의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의미였으나,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은 트래픽 폭증에 따른 ISP의 **합리적 망관리 권한**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일부 CP의 시장 과점, 트래픽의 대용량화가 문제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효율적 망관리를 통해 이용자 후생을 보호하고, 국내-외, 대형-중소 CP간의 형평성과 균형 발전,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대형 CP에게 과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중립성 원칙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 그러나 한편으로는 GCP의 트래픽 유발 및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역내 시장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예: 이용자 후생 감소 및 경쟁제한 등)을 미쳤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있음

○ (제도개선의 필요성) 이처럼 GCP를 포함하여 망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나,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ISP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 **ISP와 CP, CP와 이용자** 사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Tool**은 미흡한 상황

- 망이용대가를 사업자 사이의 계약문제로 남겨둔다면, 협상력이 강한 GCP에게 망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렵고,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요금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이용자들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
- 망이용대가를 제도화한다면, 적절한 망이용대가의 산정기준,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CP의 범위, 외국사업자에 대한 법적용 및 실효성 담보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VII. 정책방안 제언

- (정책방향) GCP의 망이용대가 문제는 ISP, 국내 CP, GCP, 이용자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여있고 국제적인 관행이나 규범,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까지 예측하여 감안하여야 하는 복잡한 이슈이므로,
 - 이를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문제로만 남겨두는 경우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조화로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법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의무와 기준을 규율함으로써 사업자간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상생을 도모하여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 특히 현재까지 주로 B2B 이슈로 접근되어 온 GCP의 망이용대가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 및 이용자 후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B2C의 이슈로도 동시에 접근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규제는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차별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
 - 아울러 적절한 망이용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고려사항) GCP 망이용대가 정책 수립 시에는 이용자 후생, 국내 CP의 경쟁력 확보, 중소 CP에 대한 배려, 망고도화·콘텐츠 다양성 등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전반적인 발전, 외국 사업자들의 반발과 그로 인한 외국 사업자들의 국내진출 기피 가능성, 국제적 관행 및 규제상황과의 균형 등을 고려
 - 그 중에서도 이용자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최소한의 규제의 경계선이 **‘이용자 이익 보호’**라고 할 수 있음

- 즉, GCP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정책은 특정 사업자의 보호 목적보다는, 이용자 이익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정책의 정당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고, 글로벌 규범과의 비정합성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자들 간의 효과적인 이해관계 조율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의 **통신요금이나 콘텐츠 이용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용자가 **GCP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 (구체적 방안) GCP와 국내 CP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실현가능성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되는 경우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궁극적 목적은 ‘이용자 이익 보호’에 있어야 할 것임

- CP(GCP 포함)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략적인 접속경로(예 : 국내 서버 유무 및 그 개수 등)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품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하는 방안
- ISP로 하여금 대용량 트래픽 폭증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국내 서버의 통제 내지 추가증설 등을 통해 트래픽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GCP의) 트래픽에 대해 일정한 관리를 허용하는 방안(망중립성 원칙의 예외 사유 추가)

1-4-5 망이용료 및 상호접속고시의 기형성에 관한 논의 (발제자 최민오 보안컨설턴트)

상호접속 제도 역사

- ❖ 2000년대 초반을 전후로 각국의 통신사들이 민영화되며, 이에 따른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인터넷의 역동성, 효율성,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자, 세계 곳곳에서 상호접속 관련 제도화 및 규제의 도입이 진행됨.
- ❖ 한국은 2002년 KT 민영화 이후 2004년 7월 20일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역무에 인터넷접속역무를 포함하고, 2005년 1월 인터넷 망간 상호접속 제도를 도입함
-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망 상호접속 제도를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수정 후, 다음 해인 2016년 시행.
 - 개선취지 : 인터넷 트래픽 증대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 인터넷 생태계 내 시장참여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상호접속 제도 주요내용

❖ 계위 생성 및 구분

➢ 기존

- 각각의 접속제공사업자는 스스로 정의한 인터넷 접속조건(통신망규모, 가입자 수 등)을 바탕으로 접속이용사업자를 3개 계위로 구분하여 평가

➢ 논의된 문제점

- 각 사업자가 자사에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인터넷 접속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중소기업자의 계위상승 기회가 차단

➢ 개정 후

- 정부가 직접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계위를 평가
 - 통신망 규모(60), 가입자 수(30), 트래픽 교환비율(10)

➢ 비판

- 다양성에 기반하여 성장해온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율적 네트워크들의 상호접속 관계를 소수의 제한적인 항목들(망 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비율)로 표준을 생성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에 의해 형성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며, 망사업의 다양한 방향을 획일화 시킬 우려가 있음.
- 한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수평적인 생태계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임. 이해관계자들이 계위평가의 공정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터넷 망사업자들이 제도에 강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방식으로만 협상 및 정산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평가된 계위가 다른 네트워크/사업자와의 정산방식 및 요금을 결정지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

❖ 정산방식 규정

사업자간의 정산방식(지불사업자, 정산기준) 또한 계위 및 접속유형에 따라 제도를 통해 규정되어있음. 개정 전후는 다음과 같이 비교가능.

구분		동등계위		차등계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직접접속호 (peering)	지불사업자	무정산	발신자	낮은 계위	낮은 계위
	정산기준	접속용량	발신트래픽	접속용량	발,착신트래픽
중계접속호 (transit)	지불사업자	접속요청사업자	중계사업자	낮은 계위	낮은 계위
	정산기준	접속용량	발,착신트래픽	접속용량	발,착신트래픽

※ 동일계위 정산, 특히 1계위 대형 통신사업자간의 직접접속에 대한 정산방식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됨.

※ 정산기준이 접속용량(capacity)에서 트래픽 양(usage)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종량제가 시행됨.

➢ 비판 1 - 정산방식의 강제성

- 상호접속 개정 후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하는 지점은 동등계위 간 직접접속 정산방식의 변경 부분임. 개정으로 인하여 최상위 계위에 동등하게 위치한 대형 망사업자(KT, SKT, LGU)간의 직접접속 관계가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 양을 기반으로 한 상호정산 관계로 변경됨. 이에 따라 이들의 상호접속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 가치사슬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정산금액이 생성됨.
- 그러나 사실상 개정에 대한 논거로 언급된 무정산 관계에서 트래픽 밀어주기 악용 사례는, 제도로 강제된 정산방식에서 벗어나 무정산(settlement free) 또는 Paid Peering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계약이 가능할 시 근본적으로 해결됨.

➢ 비판 2 - 정산기준

- 개정을 통해 변경된 트래픽 양(volume) 기준의 정산방식은, 기존 용량(capacity) 기준과 달리 시간개념이 제외됨으로써, 이로 인해 영향받는 생태계 전반의 망 사용료 지불주체들에게 네트워크 전반의 운영에서 중요한 혼잡(congestion) 문제를 줄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할 동기가 사라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에 근원한 네트워크 전반의 혼잡성 증가 예상 가능.

- 예: 10기가바이트의 트래픽을 긴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송할 시, 실제로는 한 번에 전송하는 것과 비교하여 네트워크의 혼잡상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방식이나,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한 정산방식에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

- 개정 후 상한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트래픽 양(volume)은 원가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용량(capacity) 기반의 설비 가격 등과 근본적으로 다름. 이에 따라 원가를 감안하여 측정되는 상한요율의 합당성 검증은 불가능에 가까워짐.

➤ 비판 3 - 세계 최초로 시행된 발신자 지불방식의 기형성 및 발신자 정의의 한계

-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메시지의 교환 및 통신을 시작시킨 주체가 발신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교적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전송한 주체가 발신자인지?
 - 후자를 발신자로 정의할 경우, 자료 그 자체보다 자료를 요청하는 트래픽이 현저히 작은 사실을 악용하여, 대량의 가짜 요청 트래픽을 통해 착신수입 증대 시도 가능.

■ IX 정산소 모델

- 발신자의 추적 및 트래픽 양 계산을 위해 망사업자간의 모든 트래픽을 IX정산소로 모으는 행위는 망 중앙집중화 및 트래픽 집중화, 추가적인 전송경로의 생성이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망 전반의 혼잡성 증가를 초래시킴.
- 발신자의 명확한 정의 또는 이에 대한 분석 모델의 합당성이 공개적으로 검증된 바 없음.

■ Localization 기피 현상 야기

- 일반적으로 착신 측 ISP(일반 사용자 전용)는 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캐시 서버 등을 통해 콘텐츠 및 자료들을 가입자망 인근에 보유하여 코어망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발신자 지불 방식 하에서는 콘텐츠를 가입자망 인근의 캐시서버에 스스로 보관하기보다 콘텐츠 사업자 또는 타 망사업자에 위치한 서버로부터 매번 다운로드 할 경우 착신 수입이 증가. 서비스 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로 발신자 지불방식이 야기하는 기형적인 추가 망사용료의 부담으로 인해 localization을 기피하게 됨.
- 분산화를 통한 전송방식 및 전송경로의 효율성 증대 노력에 관하여 존재했던 인센티브가 망사업자 및 서비스 사업자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사라짐. 따라서 장거리 경로의 반복적인 트래픽 증가, 국내 망 전반 및 해외망의 혼잡성 증가 예상 가능.

❖ 소결론

- 최근 상호접속 고시 개정의 주요변화를 차지하는 종량제 기반의 발신자지불정책은 그 취지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또는 '인터넷 트래픽 트래픽 증대에 대응한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근거 없음.

- 개정 부분은 오히려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인 혼잡성 증대, 기형적인 정산금액 생성, 각 관계사업자들의 망 효율성 증대 노력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야기하므로 트래픽 증대에 대응한다는 개정 취지에 모순됨.
-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망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의 필요조건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둘째치더라도, 회수된 금액이 주주배당 또는 영업지출이 아닌 망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명확한 근거 또는 인센티브 모델 없음. 망사업자간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투자유도가 보다 더 합리적.
- 이번 고시 개정의 악례를 통해 망사업자들은 망에 투자하기 보다 규제기관 및 정부 관계자를 통하여 생태계를 변경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될 것. 가시적으로 예견되는 생태계 전반의 혼잡성 및 기형성이 심화되기 전에 잘못된 개정 부분을 하루빨리 바로잡고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관련 논의 및 현상들

◆ 양면시장론

- 일부 망중립성 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양면시장적 정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 없음.
- 양면시장적 관점의 소개와 함께 주로 인용되는 논문 (Subsidizing Creativity through Network Design: Zero-Pricing and Net Neutrality by Robin S. Lee and Tim Wu, 2009)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콘텐츠 제공자들에 대한 과금 금지 실패는 양면시장이론을 통해 바라볼 시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구분되지 않는 인터넷 생태계 내의 창의성 증진 및 파편화 방지를 위한 보조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바로 인터넷이 전화, 케이블, 방송 등과 같은 네트워크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의미함과 동시에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듦.
 - 과금 용인 고려시, 이에 따라 생겨나는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생태계 전반의 창의성 및 혁신 동기 저하, 그리고 망 파편화와 같은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들, 또 동시에 이로인한 인터넷 접속 동기 저하 현상 등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생태계 전반의 악순환 현상을 고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콘텐츠 제공자들에 대한 과금은 네트워크 인프라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콘텐츠 제공자들에 과금이 가능해 진다는 것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개선하고 혁신하려는 동기가 향상된다는 것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함. 오히려 망의 혁신 및 투자에 관계없이 망사업자들의 수익만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망으로부터 기인한 기존의 수익 이외에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통한

수익추구에 동기부여를 하게 됨. 또한 이로 인한 수익은 망 설비 투자가 아니라 망에 관계없는 프로젝트, 주주 배당 등에 자유롭게 지출될 수 있음.

- ◆ (첨부) 한국의 통신 3사 배당금은 연간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3사가 지급한 배당금 총액은 1조 552억원에 달함. 이중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된 총 배당액은 약 4493억원.

◆ 망사용료 역차별

- 상호접속 개정으로 생겨난 발신자 지불 방식에 대하여 해외의 규제기관들이 예견한대로, 망사업자간의 정산금액은 요금인상 및 추가 접속료 요청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며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 및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전가됨. 페이스북 경로변경 사태 또한 이에 기인한 결과.
- 망사용료 국내외 역차별 또한 페이스북 사태와 유사한 시기에 이슈화 됨.
- 국내 망사용료는 한 CDN업체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타 국가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
- 이 상태에서 해외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압박함으로써 균형을 맞춘다는건 한쪽 대신 양쪽에 대한 폭력을 통해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음.
 - 해외 사업자들은 오히려 국내 캐시 서버의 폐기 또는 국내 서비스 중단 여지가 장기적으로 크며 이에 따라 오히려 해외망의 혼잡도 상승, 갈라파고스 현상, 파편화 현상의 심화, 이용자 선택권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 해외 사업자들이 기형적인 망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이는 망사업자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뿐 기존 국내 서비스사업자들의 망사용료 지출은 변화없음.
 - 오히려 글로벌 이용자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스타트업부터 대형 CP등 규모에 상관없이 타 국가로부터 자국내 서버 설치 강요 및 비합리적인 망사용료 지불 압박을 받을 가능성 농후
 - 국내 망사업자들의 협상력 부족 현상은 국내 생태계를 갈라파고스화하여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스스로 국경없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또는 규제가 필요.

1-4-6. 망이용대가 관련 해외 사례 (발제자: KT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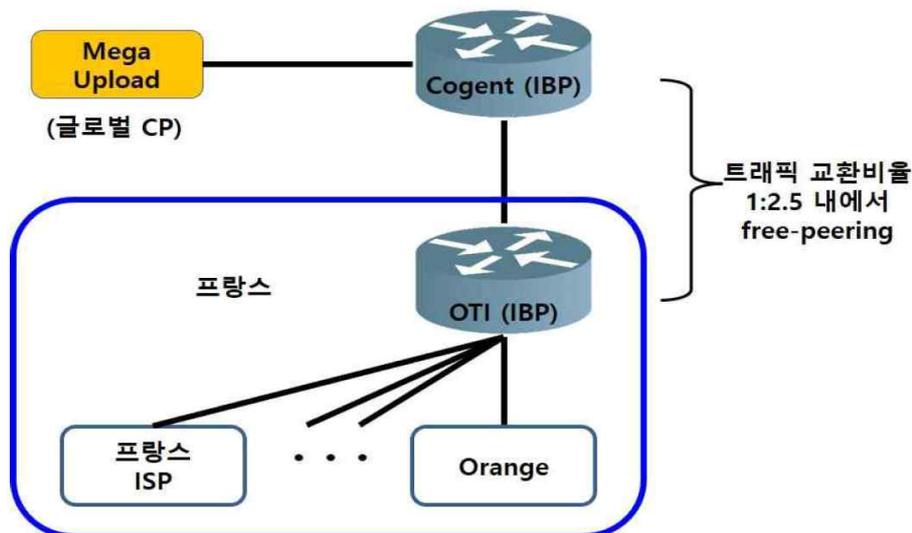
유럽 사례

1] Orange vs. Cogent 1)

가. 분쟁 이전 상호접속 상황

- (1) Cogent(글로벌 IBP) ↔ OTI(프랑스 국내 IBP) ↔ Orange(프랑스 ISP)
 - Cogent : 국제 인터넷백본망 사업자(IBP : Internet Backbone Provider)로 Mega Upload, Google 등 전세계 콘텐츠 사업자의 트래픽을 각국의 ISP로 중계
 - OTI : Orange의 자회사로 Cogent로부터 중계받은 해외 인터넷 트래픽을 Orange를 비롯한 프랑스 내 ISP들에게 중계
- (2) Cogent와 OTI는 트래픽 교환비율 1:2.5의 범위 안에서 무정산 (free-peering) 계약

<그림 1 : 분쟁 이전 상호접속 현황>



나. 분쟁의 발단

1) 출처 : <http://www.authoritedelaconurrence.fr/user/avisdec.php?numero=12D18>

- (1) Cogent의 CP(Content Provider) 고객 중 하나인 Mega Upload(파일공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Orange 가입자로 다운로드 트래픽이 급증
 - Cogent ↔ OTI 간 트래픽 불균형이 심화되어 free-peering 계약 조건인 1:2.5를 크게 초과
- (2) OTI의 트래픽 대가 요구 및 Cogent의 거부
 - OTI는 무정산 트래픽(1:2.5 비율)을 초과하는 트래픽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였고, Cogent가 이를 거부하자 상호접속 구간의 용량 증설을 거부
- (3) Cogent는 Orange(OTI는 Orange 자회사)를 프랑스 공정위에 지배력 남용행위로 제소('11. 5월)

다. 분쟁의 결과 (Cogent 패소)

- (1) 프랑스 공정위는 경쟁법과 ARCEP의 의견을 바탕으로 Orange의 행위 (상호접속 대가 요구 및 대가지급 거부에 대한 접속용량 증설 거부)를 합법으로 판결('12. 9월)
- (2) 이후 Cogent는 프랑스 행정법원과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15. 5월)
- (3) 판결의 의의 : 계약상의 트래픽 교환비율을 초과한 경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초과 트래픽의 용량 증설을 거부할 수 있다는 peering policy가 합법임을 판례를 통해 인정받음
 - 이후 Orange는 상기 판례를 근거로 글로벌 CP 들과의 협상시 망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음

2 Orange vs. Google

가. 주요 경과

- (1) Google의 free peering 요구

- Google은 Orange와 Cogent간 분쟁이 발생하자 글로벌 IBP를 통하지 않고 Orange와 직접 peering을 요구
- Google 요구사항 : Orange의 내부 네트워크에 Cache 서버를 설치하고 망이용대가는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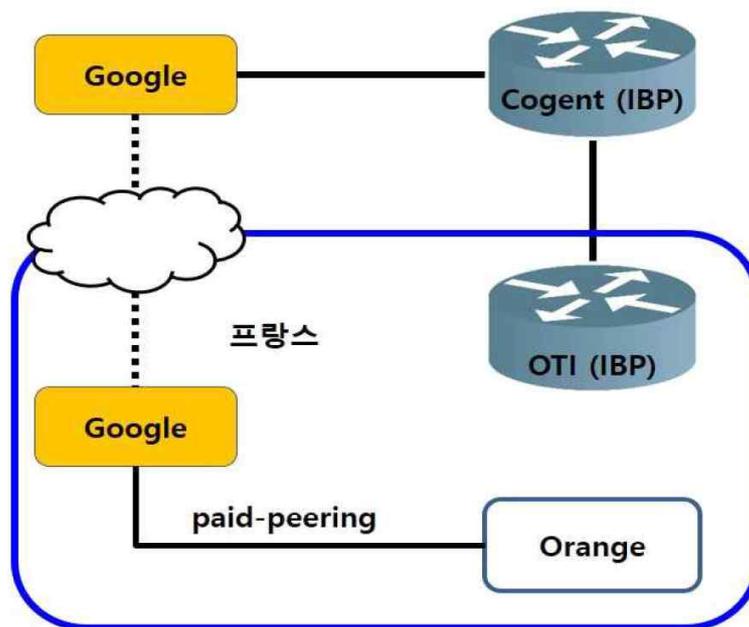
(2) Orange의 대응 : Cogent에 적용한 peering policy를 제시하며 망이용대가 지급 입장을 고수

나. 협상 결과

- (1) Orange의 입장이 관철되어 Google은 프랑스 파리, 마르세이유에 소재한 자사 서버에²⁾ Orange의 네트워크를 직접 연동하고
- 망 이용대가 지급하는데 합의(paid-peering)³⁾

※ 독일의 경우에도 DT(Deutsch Telecom)는 Google로부터 망이용대가를 받고 있음

<그림 2 : Orange-Google 상호접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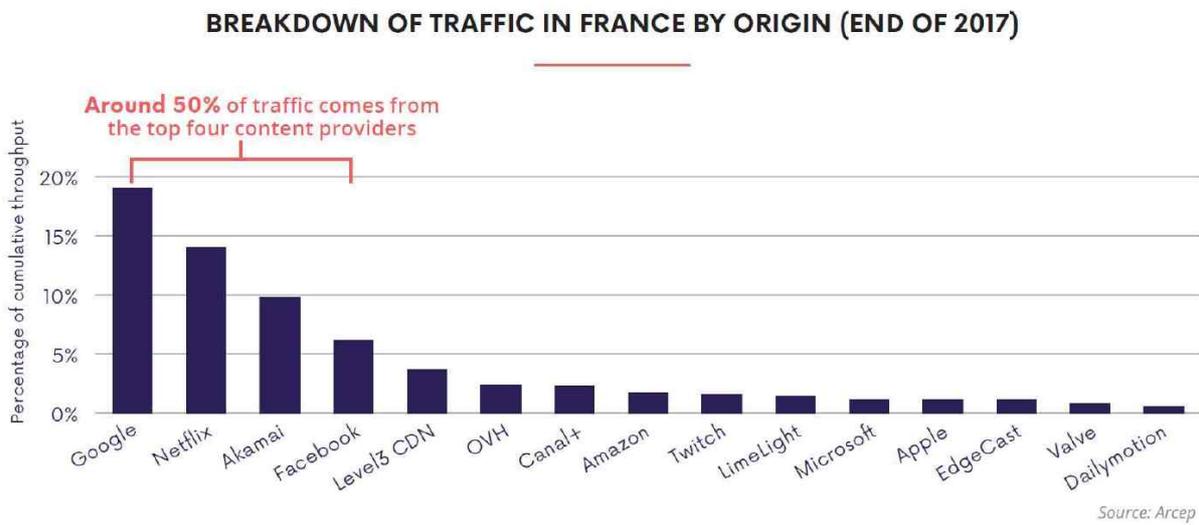
2) 구글은 프랑스 2개소에 서버를 두고 ISP와 연동함
<https://peering.google.com/#/infrastructure> 내용 중 Our Infrastructure

3) '13년 1월 16일, Orange의 CEO인 Stéphane Richard는 프랑스 방송 BFM Business TV에 출연하여 Google로부터 트래픽 처리 대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
http://www.youtube.com/watch?v=-_g2zB-TUtk

3 Orange vs. Netflix

- (1) Orange 네트워크에 Netflix의 Cache 서버는 설치되지 않음
- (2) Google의 망이용대가 부담 사례와 동일하게, Netflix는 프랑스 내에 위치한 자사 서버⁴⁾와 Orange의 네트워크를 연동하고,
 -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그림 3 : 프랑스 인터넷 트래픽 ⁵⁾>



* 프랑스 통신규제 기관인 ARCEP이 발표한 2017년 말 기준 프랑스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 4대 글로벌 기업(Google, Netflix, Akamai, Facebook)의 트래픽 점유율이 50%이상임을 명시

4) Netflix는 프랑스 파리에 서버를 두고 ISP와 연동함 : https://openconnect.netflix.com/ko_kr/peering-locations/

5) 출처 : ARCEP. (June, 2018). The state of the Internet in France 2018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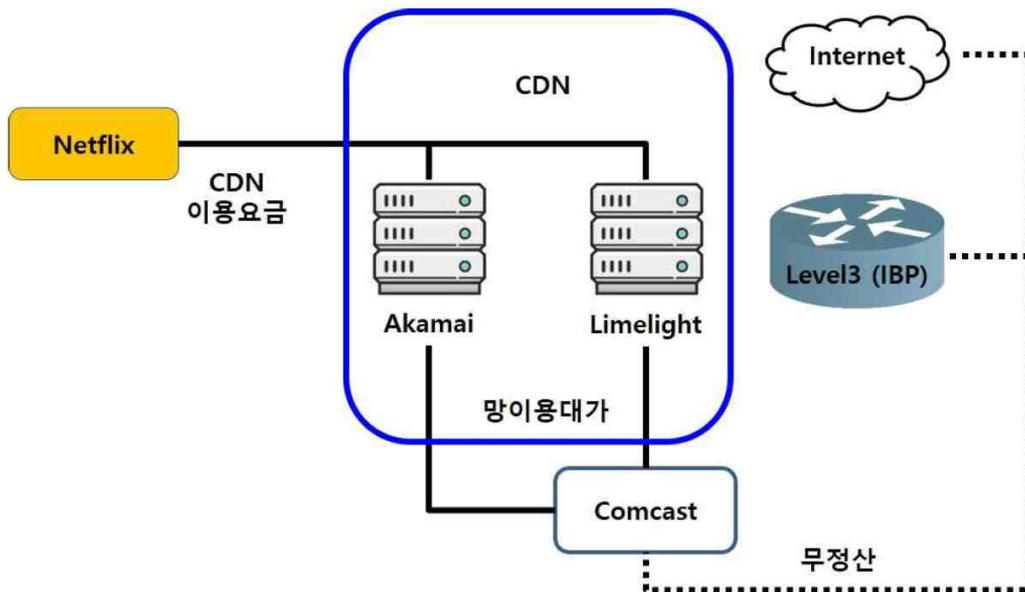
미국 사례

1 Comcast vs. Level3

가. 분쟁 이전 상호접속 상황('10년 이전)

- (1) Level3는 Comcast와 일정 비율 이내에서 무정산(free-peering)하는 방식의 상호접속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음
- (2) Comcast는 Akamai, Limelight 등 CDN사업자와 망이용계약을 체결
(CDN 업체 → Comcast : 망이용대가 지급)
 - Netflix는 CDN사업자를 통해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Comcast 등 ISP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Netflix → CDN업체 : CDN 이용요금 지급)

<그림 4 : 분쟁 이전 상호접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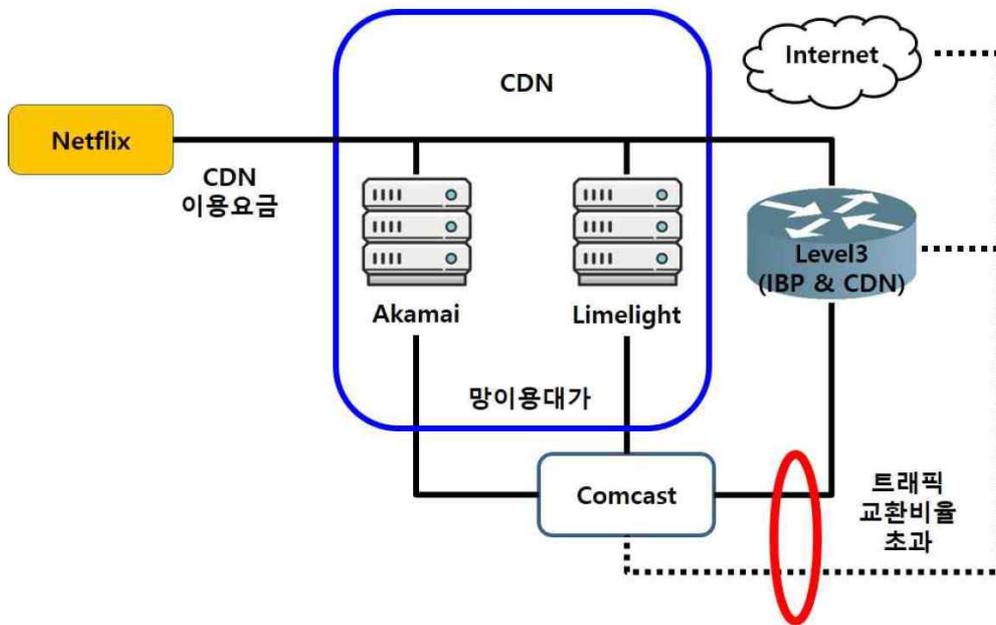


나. 분쟁의 발단

- (1) '10년 Netflix가 타 IBP인 Level3와 CDN 계약을 체결

- (2) 이후 Comcast와 Level3 사이에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자 Comcast는 Level3에 상호접속 망 이용 대가를 요구 6)
 - 또한 Comcast는 Level3가 Netflix의 CDN 서비스를 대체하면 Akamai 등 기존 CDN 업체로부터 받던 망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
- (3) Level3가 Comcast의 망이용대가 지급 요구를 거부하자
 - Comcast는 Level3와의 상호접속구간 용량 증설을 중단 7)

<그림 5 : Level3를 통한 Netflix 트래픽 전송>



다. 분쟁의 종료 8)

- (1) 양사는 상호접속 협정을 갱신(13년)하여 분쟁이 종료됨
 - 구체적인 협정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Level3가 일부 망 용량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 것으로 결론

6) Comcast 사의 Peering Policy (<https://www.xfinity.com/peering>) 내용에 Free Peering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Paid Peering을 신청해야 하며, Free Peering 조건 중 트래픽 균형(a general balance of inbound versus outbound traffic)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함

7) 출처 : <http://drpeering.net/core/ch10.2-The-21st-Century-Internet-Peering-Ecosystem.html>

8) 출처 : <https://www.wsj.com/articles/SB10001424127887323394504578609963298727892>

② Google의 망 이용대가 지급

가. 미국 주요 ISP와 망 이용대가 계약 9), 10)

(1) 미국 주요 ISP와 CP간 직접연동 현황(2014년)¹¹⁾

- CP들의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ISP들과 직접 연동이 증가 추세

	AT&T	Comcast	Verizon	CenturyLink	Sprint	Level 3
Google	○	○	○	○	○	○
Amazon	○	○		○		○
Facebook	○	○	○		○	○
Akamai	○	○	○	○	○	○
Microsoft	○	○	○	○		○
Netflix		○	○	○		○
Limelight	○	○	○	○	○	○
Pandora		○				○
Ebay	○		○	○	○	○
Apple	○		○			○

(2) Google, Facebook, Microsoft 등은 Comcast 등 대부분 ISP와 이미 직접 접속 (direct connection) 계약을 체결하고 망 대가를 지불

- 이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주요 CP는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 (paid peering 계약 형태)
- Google은 미국 내 대형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9) 출처 : <https://variety.com/2013/digital/news/report-google-facebook-microsoft-secretly-pay-millions-to-broadband-providers-1200498953/>

10) 출처 : <https://www.wsj.com/articles/for-web-firms-faster-access-comes-at-a-price-1391717444?tesla=y#print>

11) 출처 : <https://arstechnica.com/information-technology/2014/07/how-comcast-became-a-powerful-and-controversial-part-of-the-internet-backbone/>

※ 인용 : Wall Street Journal (2013. 6. 20. / 각주 10)

For Web Firms, Faster Access Comes at a Price

By *Shalini Ramachandran and Drew FitzGerald*

Updated June 20, 2013 12:06 a.m. ET

Hoping to speed traffic through an increasingly congested Internet, several big Web companies including Google Inc., Microsoft Corp. and Facebook Inc. are paying major broadband providers for connections to get faster and smoother access to their networks, say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3 Comcast vs. Netflix

가. 분쟁의 발단 (Netflix의 CDN 망 구축 12)

- (1) Netflix는 ISP와 무정산 관계(free peering)인 IBP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거나, 자체 CDN 네트워크(Open Connect라 호칭)를 구축하여 ISP 네트워크와 직접 연동하는 방안 등을 추진
 - CDN서버와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Netflix에서 부담하되, 망이용대가는 무정산하는 조건으로 ISP들과 직접 연동을 추진
 - '13년 초에는 일부 ISP들(Cablevision, Suddenlink 등)과 무정산계약을 체결 13)
- (2) Netflix는 타 ISP들(Comcast, Verizon, Time Warner Cable 등)에게 무정산 방식의 계약을 제안하였으나
 - 망이용대가 문제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 14)

나. 분쟁의 진행 (Netflix의 서비스 차별 및 트래픽 지연 발생)

- (1) Netflix는 무정산계약(Open Connect 계약)이 체결된 ISP 이용자들에게는 고품질 콘텐츠(Full HD 및 3D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 무정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ISP들에게도 무정산계약 체결을 압박

12) Netflix는 미국 전역 33개 POP에 접속점 구축 : https://openconnect.netflix.com/ko_kr/peering-locations/

13) 출처 : <https://www.fiercevideo.com/cable/netflix-adds-suddenlink-to-open-connect-cdn>

14) 출처 : <https://arstechnica.com/information-technology/2013/09/sorry-comcast-and-verizon-customers-rcn-delivers-faster-netflix/>

- (2) '13. 9월 Netflix는 Full HD 서비스를 전체 ISP로 확대 제공하며
- 대형 ISP를 중심으로 트래픽 지연 현상이 심화되며 약 4개월간 지속 15)

다. 분쟁의 종료 (망이용대가 지급 계약)

- (1) Netflix와 Comcast는 협상을 통해
- Netflix의 CDN 네트워크를 Comcast의 네트워크에 직접연동하고
- Netflix가 Comcast에게 망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 ('14. 2월) 16)
- (2) 넷플릭스 트래픽 증가로 인한 서비스 속도 저하 외에¹⁷⁾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FCC 패소('14.1월)¹⁸⁾ 등 외부 환경변화가 Netflix의 망이용대가 지급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음

라. 주요 ISP와 Netflix간 계약

- (1) Netflix는 Comcast와의 망이용대가 지급 계약 이후 미국내 주요 ISP들과 망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함
- Verizon : '14. 4월 19)
- AT&T : '14. 7월 20)
- Time Warner Cable : '14. 8월 21)

15) 출처 : <https://www.digitaltrends.com/home-theater/netflix-makes-1080p-super-hd-streams-available-to-all-users/>

16) 출처 : <https://arstechnica.com/information-technology/2014/02/netflix-is-paying-comcast-for-direct-connection-to-network-wsj-reports/>

17) 출처 : <https://www.wsj.com/articles/netflixtraffic-feud-leads-to-video-slowdown-1392772268>

18) 출처 : <http://files.shareholder.com/downloads/NFLX/2913488913x0x720306/119321bc-89c3-4306-93ac-93c02da2354f/Q4%2013%20Letter%20to%20shareholders.pdf>

19) 출처 : <http://time.com/80192/netflix-verizon-paid-peering-agreement/>

20) 출처 : <http://time.com/3059431/netflix-att-peering/>

21) 출처 : <https://arstechnica.com/information-technology/2014/08/netflix-ends-one-of-its-oldest-disputes-agrees-to-pay-time-warner-cable/>

1-5. 상생 협력

1-5-1. 중소 CP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발제자: SKT)

1. Bravo! Restart

- '13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년 창업 및 청년실업 해소 등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공헌사업

- 주요 지원 사항

구분	내용
Biz 모델 검증 지원	• 성공창업가의 BM 전문 멘토링 및 시장 분석 등
R&D 지원	• 수요처 관점의 검토 및 지원
자금 지원	• 기술개발 자금 및 SK-KNET 펀드(300억 규모) 등 지원
인프라 지원	•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험 환경 제공 및 무상 입주 공간 제공
마케팅 지원	• 언론 PR 및 MWC, CES 등 해외 전시 지원
기타	• 창업 포럼 정기 개최 • 성공 창업자 및 창업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지원 등

※ SK-KNET 펀드: SK 등의 출자자가 총 300억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고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펀드운용을 담당

- 주요 성과

- 에이티랩, 운동이 땀길 때 등 총 48개 팀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

※ 에이티랩: 시각장애인용 앱 및 디바이스, 운동이 땀길 때: 스포츠 O2O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

2. Dream Venture Star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14년부터 정부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

- 주요 지원 사항

구분	내용
자금 지원	• 창업지원금 및 기술개발자금 • SK 펀드 투자유치 지원
사업개발 지원	• Biz Model 구체화 및 검증 - 사내/외 창업 및 사업 전문가 멘토링 제공
기술 개발 지원	• 기술 개발 환경 제공 및 협업(공동개발 등)
Growth 지원	• SK 채널 활용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Global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

○ 주요 성과

- '18년까지 총 29개 팀을 육성하여 누적 매출 164억원, 투자 유치 406억, 신규 고용창출 151명의 성과를 창출

※ 드림벤처스타 3기에 소속되어 있는 룩시드랩스는 '18년 1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18에서 'Looxid VR'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

3. 101 스타트업 코리아

- YT 중심의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 노하우 제공 및 국내 전문가의 멘토링/세미나 등을 지원 ('13년~)

○ 주요 지원 사항

구분	내용
VIP 멘토링	• Venture Capital 대표/임원 등의 멘토링
스타트업향 세미나	• 투자법무/세무회계/지적재산권/홍보/마케팅 등
VC 등 투자지원	•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Needs를 중재하여 투자 유치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개발 환경 지원	• 사무공간 제공 • 스마트폰 및 테블릿을 통한 서비스 테스트 환경 지원
Community 운영	• 101 스타트업 코리아 졸업팀 및 참여팀간의 교류 장소 마련

○ 주요 성과

- '13년 1기 6개 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6개 팀을 육성하였으며, 이 중 40여개 팀에서 약 480억의 투자 유치에 성공

※ 참여 기업 중 호텔 예약 앱 개발사인 데일리 호텔은 구글에 투자한 미국 세쿼이아캐피털로부터 1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유치

4. True Innovation

- 스타트업 등 다양한 외부 Partner와의 혁신창출 및 Biz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 ('18년 2월 ~)

○ 주요 지원 사항

구분	내용
멘토링	• 전문 멘토단의 1:1 Hands-on 멘토링
네트워크	• 국내외 파트너와의 교류
글로벌 진출	• 글로벌 협업공간 및 공동 마케팅 지원
포럼	• 이슈 및 트렌드별 다양한 정기 토론 행사
브레인스토밍	• 실무 전문가의 서비스 제안 및 토론
세미나	• IR/법무/세무 등 다양한 교육과정
Tech Clinic	• 개발/디자인 등 Trouble Shooting 지원
CEO 모임	• 파트너 CEO간 협업/네트워킹 기회 제공
Demo day	• 주요 관계자 대상 IR 및 PR
네트워킹 Day	• 참여기업의 공유 기회 제공

○ 주요 성과

- 유라이크코리아 등 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진행 및 추진 중

※ 유라이크코리아는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IoT 가축관리 서비스(라이브케어)로 '18년 MWC에서 '기업용 모바일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

5. 기타 주요 동반성장 정책

구분	내용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 펀드 (규모 1,675억원)를 통한 대출 지원 • 지분 투자(펀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17년 누계 417억원) • 창업, 기술개발, 경영 지원 등을 위한 직접 자금 지원 • 100% 현금 대금지급 및 조기 지급(중소기업 Care Program)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 아카데미: CEO세미나 등 직급별 맞춤 교육 • 110여개 온라인 과정 운영, 신규 과정 지속 개발
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developers, Thingplug 등 기술개발 Infra 무상 지원 • 민관 공동 기술개발 •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한 파트너사 기술보호
인력 및 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고용디딤돌 운영을 통한 우수 인력 육성 및 채용 지원 • Biz 파트너 임직원 대상 복지 지원(복지포인트, 장학금 등)

※ T developers: 모바일 웹 및 앱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 도구 및 자원을 쓰기 쉽게 모아놓은 온라인 개발자 지원 센터

※ Thingplug: IoT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과 상용 서비스 환경을 지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

1-5-2. KT의 중소CP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발제자: KT)

□ KT Biz Collaboration 프로그램

- (사업목표) ICT기반 융복합 사업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 발굴하고, KT-창업기업간 사업화, 공동개발 등 협업을 통해 육성함으로써 KT 미래성장사업 동력원 확보 및 창업기업의 성장 견인
- (모집대상)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KT와의 사업화 연계를 희망하는 기업
- (모집분야) VR/AR, AI, 헬스케어, IoT, 핀테크, 빅데이터 등 KT 신규 사업 개발 및 협력 관련 분야
- (지원규모) 15개 내외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KT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특허 출원 및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등

□ K-Champ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① K-Champ 사업화 집중지원 프로그램

- (사업목적) K-Champ²⁷⁾ 육성기업 중 성과창출 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후속 지원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
- (지원대상) '16년도~'17년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여한 창업·벤처기업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3개월간)
- (지원내용) 시장전문가 1:1멘토링, 특허권(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비), 인건비(신규채용인력), 광고선전비(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비) 등

2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보육 Accelerating 프로그램

② Biz Challenge 프로그램

- (사업목적)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집중 육성
 - (지원대상) 창업 1년 이내 법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5개월 이내)
 - (지원내용)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글로벌 지원
 - ① 선별 아이디어 대상 BM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아이디어 구체화 멘토링 지원
 - ② 시장 검증 전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 보호를 위해 특허 전략 수립, 출원·등록 등 아이디어 권리화
 - ③ 아이디어 제품화를 위한 구현 가능성 점검 및 실증화 등 시제품 설계·개발·인증 지원
 - ④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시장 반응 테스트(시제품 반응 테스트에 한함)
 - 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및 현지 테스트

③ Biz Growth Marketing 프로그램

- (사업목적) 시장진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 발굴하여 원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판매 준비 활동을 지원
 -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5개월 이내)
 - (지원내용) 테스트마케팅, 시장조사 및 분석, 판촉활동

KT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

- KT가 보유하고 있는 미 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11년~‘17년까지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누적 293건의 특허를 무상양도한 바 있으며,
 - ‘18년에는 총 260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무상양도 프로그램 진행중

< KT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 실적 현황 >

연도	공고 건수	양도특허 건수	대상 기업
2011	600	26	(주) 유진텔레콤 등 7개사
2012	727	31	(주) 대한폴리머 등 24개사
2013	175	52	(주) 와이브로텍 등 17개사
2014	503	48	(주) 지미션 등 19개사
2015	676	88	(주) 솔루션 등 38개사
2016	116	4	(주) 아이컴즈 등 3개사
2017	235	44	(주) 애니랙티브 등 20개사
합계	3,032건	293건	128개사

1-5-3. LG 유플러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발제자: LGU+)

□ CEO 간담회

- (개요) 매월 테마별로 2~4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 사업부와의 협력 및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현황) '17.6월부터 매월 간담회 진행
 - 27개의 유망 스타트업 소개
 - 10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 협력 추진

□ LG유플러스 데모데이

- (개요) 해외통신사, 스타트업 육성기관, 정부기관과의 공동 데모데이를 주관하여 당사 관계자 대상 발표 및 언론 홍보의 기회 제공

√ 유플러스 - KDDI - KOTRA 데모데이

- '17.7.18일 3사 공동 데모데이 진행
- 70여개의 지원업체 중 최종 9개사를 선발하여 LG 유플러스 본사에서 발표를 진행
- 당사 임직원 및 VC 관계자 약 70여명 참석
- 성과 : 사업부 협력 논의 (6개 사), CEO 간담회 (3개 사)

√ 유플러스 - 본투글로벌 - 데모데이

- '17.10.26일 3사 공동 데모데이 진행
- 150여개 B2G 멤버사 중 최종 6개사를 선발하여 LG 유플러스 본사에
서 발표를 진행
- 당사 임직원 및 VC 관계자 약 100여명 참석
- 성과 : CEO 간담회 (3개 사), 사업부 협력 논의 진행

□ 투자

- (개요) 직간접 투자로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 마련
- (현황)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진행
 - 직접투자 : 사업적 필요시, 지분투자 / JV설립 / 인수추진
 - 간접투자 : 펀드출자 진행
- KIF('02년, 통신3사)
- 소프트뱅크벤처스펀드('17년)
- 심본파트너스펀드('17년)
- LG CVC('18년)

1-5-4. 2017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발제자: 네이버)

□ 2017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연혁

<p>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커넥트 재단, SW 개발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스트캠프' 제1기 종료(~2/28) 네이버 파파고, 미란다 원칙, 민원 안내 등을 담은 '경찰 회화' 메뉴 오픈 <p>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그라폴리오 스토리전 Vol.1 '4인의 작가 X 홍대 지역 4개 공간'(3/29-6/24) 전시 네이버,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2017' 컨퍼런스 후원 네이버 청소년 기업가정신 스쿨, 2017년 1학기 교육 정기(교동)/특별(교) 프로그램 설명회 <p>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열린 연단: 문화의 안과 밖, '패러다임의 지속과 갱신' 강좌 시작 네이버, 세계 최대 규모 '블로냐 아동 도서전'에서 그라폴리오 창작자를 위한 전시관 운영 <p>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해피빈, '더블(기부)' 프로젝트 시작 네이버, 오프라인 창업 성장 지원센터 '파트너스퀘어 부산' 오픈 네이버, 동네 밥집 지원을 위한 '백반워크 경기편' (경기도 부천, 광명, 수원 및 의정부 전통 시장) 시작 네이버, 참신한 콜라보레이션의 장 '크리에이터 데이' Vol.2 개최 (성수동 LAYER 57) <p>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제3회 앙트십 코리아 컨퍼런스 후원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서비스 확대 개편 네이버,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p>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해피빈 '공감가게' 프로젝트 시작 네이버, 그라폴리오 스토리전 Vol.2 '3인의 작가 X 성수동 공유 공간'(7/20-9/20) 전시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 '헬로! 아티스트 X 서울로7017' 프로젝트 전시회 개최(이우성 작가) 네이버 커넥트 재단,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SW 교육 프로그램 '커넥트스쿨' 시작 네이버 커넥트 재단, SW 개발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스트캠프' 제2기 진행(7/3-8/31) 네이버 청소년 기업가정신 스쿨, 2017년 1학기 네이버 기업 워크샵 개최 네이버, 2017년도 상반기 파트너스 데이 개최 네이버 D2 Startup Factory, 테크 스타트업 더웨이브특(헬스케어), 씨케이머티리얼즈랩(랩텍), 레티널(중강한심)에 신규 투자 	<p>8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참신한 콜라보레이션의 장 '크리에이터 데이' Vol.3 개최 (성수동 어반소스) 네이버 청소년 기업가정신 스쿨, 2017년 1학기 결과 발표회 개최 네이버 D2 Startup Factory, AI 분야 테크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딥픽셀, 클라우드웍스에 신규 투자 <p>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 '헬로! 아티스트 X 서울로7017' 프로젝트 전시회 개최(정혜연 작가) 네이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네이버 웹툰 작가들과 함께 하는 팬사인회 개최 네이버 청소년 기업가정신 스쿨, 2017년 2학기 교육 특별 프로그램(중학교) 설명회 네이버 D2 Startup Factory, 투자한 기술 스타트업들의 가치와 비전,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데모데이'개최 네이버,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재팬부트캠프 2017' 후원 <p>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DEVVIEW 2017' 개최 네이버, 참신한 콜라보레이션의 장 '크리에이터 데이' Vol.4 개최 (한강 노들섬) 네이버, '2018 S/S 헤라서울 패션위크'서울 컬렉션에서 신진 디자이너 런웨이 지원 네이버, 베트남 호치민에서 네이버 뷰스타와 함께 하는 'K뷰티 콘서트'개최 네이버,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중국의 한국인 2017' 컨퍼런스 후원 <p>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온스테이지, 온스테이지 7주년 라이브 공연 개최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 '헬로! 아티스트 X 서울로7017' 프로젝트 전시회 개최(김종범 작가) 네이버, 제4회 앙트십 코리아 컨퍼런스 후원 네이버 파파고,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회화' 메뉴 오픈 네이버 D2 Startup Factory, AI 분야 테크 스타트업 비닷두, 딥메디, 알레시오에 신규 투자 <p>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그라폴리오,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W'에서 그라폴리오 창작자를 위한 전시관 운영 네이버, 2017년도 하반기 파트너스 데이 개최
---	--

자료: 인터넷 상생백서(2017)

프로젝트 꽃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스몰 비즈니스(사업자)와 창작자가 연결된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2016년 초에 '프로젝트 꽃'을 시작했다. 프로젝트 꽃은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응원하는 네이버의 핵심 캠페인이다. 프로젝트 꽃은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원 사업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네이버의 서비스 및 사업의 바탕이 되는 기업 철학인 동시에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네이버가 보유한 기술과 플랫폼은 프로젝트 꽃을 실현하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는 첨단기술과 인터넷이 개인들이 각자의 한계를 넘어 쉽고 편리하게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

꽃 임팩트, 사내 분수펀드 조성

프로젝트 꽃을 실현하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사업 플랫폼에는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사장님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스토어(구 스토어팜)', 지방의 작은 옷가게라도 전국의 이용자들에게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스타일 윈도', 취향 저격 핸드메이드 상품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리빙 윈도', 신지의 건강한 식재료를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는 '푸드 윈도', 멀게만 느껴지던 패션디자이너들의 의상과 컬렉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디자이너 윈도', 우리 동네 가게들의 정보도 메인에 모아 보여주는 '우리동네 판(구 플레이스 판)', 소속사가 없어도 내가 만든 음악을 올려 팬들과 소통하고 음원 판매 수익은 물론 공연 기회도 얻을 수 있는 '뮤지션 리그', 일러스트나 회화 그림을 연재하는 방식을 통해 팬덤을 만들고 출판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그라폴리오', K-POP부터 뷰티, 패션, 회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들이 전 세계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V LIVE' 등이 있다.

'프로젝트 꽃'은 플랫폼의 주체인 개인의 수많은 작은 성공들이 우리 경제에 분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때까지 돕겠다는 네이버의 의지를 담은 장기 프로젝트다. 네이버는 2017년에 프로젝트 꽃을 위한 별도의 사내 예산인 총 600억 원 규모의 '분수펀드'를 조성하여 네이버 전 영역에서 프로젝트 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분수펀드는 소셜벤처 등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플랫폼 부문'과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의 창업과 창작을 돕기 위한 '사업 플랫폼 부문'으로 구성됐다. 네이버는 2017년 한해 동안 공익 플랫폼 부문에 392억 원, 사업 플랫폼 부문에 217억 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사업 플랫폼 부문 지원으로 스마트 스토어(구 스토어팜)에서 1만 5천 명의 신규 창업자를 배출했고, 연 매출 1억 원 이상의 판매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젝트 꽃_디자이너 윈도×2018 SS 헤라서울패션위크 서울 컬렉션 피날레

**오프라인 창업 성장 지원센터,
NAVER PARTNER SQUARE**

네이버는 2017년에 부산에 '파트너스퀘어 부산'을 오픈했다. '파트너스퀘어(partners.naver.com)'는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를 위해 네이버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창업 성장 지원센터다. 파트너스퀘어에서는 온라인 창업과 초기 운영을 위한 기초 정보에서부터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도구와 노하우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아울러 사진·동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공간과 관련 장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파트너스퀘어 부산'은 2013년 5월 오픈한 '파트너스퀘어 역삼' 이후 두 번째 파트너스퀘어이자, 지방에 문을 연 첫 파트너스퀘어였다. 네이버는 지방 주요 거점에 파트너스퀘어를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권의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이 디지털 성공 자본을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지방 소외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2018년에 광주와 대전에서 파트너스퀘어가 오픈하게 되면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연간 10만 명의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이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통해 창업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파트너스퀘어 부산은 오픈 6개월 만에 이용자 1만 명을 돌파하였는데, 이용자의 86% 이상이 경상권 거주자로 부산 외 인접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1. 파트너스퀘어 부산 오픈 스튜디오
2. 파트너스퀘어 부산 PC 강의장
3. 파트너스퀘어 부산 강의장
4. 파트너스퀘어 부산 VR 스튜디오

**동네 골목 작은 밥집을 응원하다,
백반(白飯) week**

네이버는 2016년 '백반위크 서울편'에 이어, 2017년엔 총 2주에 걸쳐, 경기도 부천·광명·수원·의정부 전통 시장의 40여 개 식당들과 함께 '백반위크 경기편'을 열었다. '백반위크'는 동네 곳곳의 밥집들을 찾아 소개하고 응원하는 프로젝트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모바일 검색을 통해 메뉴, 가격, 위치 등의 가게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DB 구축을 돕는 한편, 동네 소식을 한 데 모아 제공하는 네이버 모바일홈 '우리동네판'을 통해 각양각색의 가게 답사기를 소개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방문객들이 한 눈에 밥집들을 찾고 시장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 환경 조성

네이버는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D2SF(D2 Startup Factory)'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5년 5월 네이버가 시작한 기술 스타트업 투자 지원 프로젝트로, 2017년까지 AI, 하드웨어, AR/VR,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19곳의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한편 네이버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을 연결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망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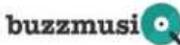


D2 Startup Factory 2017 데모데이 참석자들

**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D2 Startup Factory (D2SF)**

'D2 Startup Factory'는 네이버가 국내 테크 스타트업(Tech Startup: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만든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이다. 테크 스타트업이란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기술 자체가 핵심 경쟁력인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네이버는 D2 Startup Factory를 통해 초기 단계의 차별화된 테크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 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아울러 입주 공간, 인프라,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D2 Startup Factory는 2015년 5월 개소 이후 2017년까지 19개의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였고, 36개 테크 스타트업에 업무 공간을 제공했으며, 1,080 건의 스타트업과 개발자 간의 네트워킹 미팅을 지원했다. 투자를 받은 테크 스타트업 중 13개 업체는 네이버/라인(LINE)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검토 중에 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D2 Startup Factory를 기반으로 국내 인터넷 산업을 선도해 온 네이버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

D2 Startup Factory 투자 기업

 ALETHIO	 DEEP MEDI	 v.do	 FURIOSA
알레시오: AI 기반 이미지 분석 및 변환	딥메디: 협업 측정 알고리즘	비닷두: AI 비디오 인텔리전스	퓨리오사 AI: AI 하드웨어
 DEEPIXEL	 crowdworks	 LetinAR	 CK Materials Lab
딥픽셀: Shape Tracking	크라우드웍스: AI 학습용 데이터 생산	레티널: 스마트글래스 광학부	씨케이머티리얼즈랩 : 랩틱 액추에이터
 THE WAVE TALK	 Company.AI	 buzzmusi	 Nexpress
더웨이브톡: 박테리아 유무 탐지	컴퍼니 AI: AI 기반 대화 엔진	버즈뮤직: AI 기반 음악 추천	넥스프레스 : MEMS + Stretchable Electronics
 /* elice */	 widevantage	 nota	 TALabs The Alpha Labs
엘리스: 온라인 SW교육 솔루션	와이드벤처: 모바일 컨트롤러	노타: 머신러닝 키보드	더알파랩스: 스마트 글래스
 loplat	 idecca	 POLARIANT	
로플랫: 매장 단위 실내 위치 플랫폼	아이데카: 지자기 활용 실내 측위	폴라리언트 : 관광 현상 활용 3차원 정밀 측위	



D2 Startup Factory 공간



D2 Startup Factory 2017 데모데이 현장 스케치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크,
STARTUP ALLIANCE
by NAVER**

네이버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지난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선도기업,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민관협력 네트워크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2017년에도 네이버 그린팩토리 커넥트홀에서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2017(3/28)'과 '중국의 한국인 2017(10/31)'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실리콘밸리와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현지 시장 현황, 기업 문화, 창업 및 투자 환경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재팬부트캠프 2017(9/25~28)'을 열어,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10개의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과 현지 기업인, 투자자 등 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재팬부트캠프 2017

1-5-5. 2017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발제자: 카카오)

□ 2017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연혁

<p>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커스-상생서포터즈, 밀라노 소비재 박람회 출품 지원 세이브더칠드런 모자 뜨기 자원봉사 <p>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Kakao 트랙(제주 IT 인재 양성) 10주년 기념 장학증서 전달 카카오임직원 기부캠페인 '기부한데이' 진행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소셜이노베이션캠프36'(해커튼) <p>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파머, 전남지방우정청 업무협약 체결 유기견 보호소 자원봉사 속마음버스 서비스 3주년(누적 탑승인원 5,637명) 카카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1.1억 기부 <p>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 이모티콘 크리에이터스 데이 진행 같이가치 with Kakao, 기프트콘 캠페인 '수화를 사랑하는 수애' 진행 디지털 시민교육 컨퍼런스 'Born Digital 세대를 읽는 법' 진행 2017 학교 메이커교육 세미나 진행 카카오 임직원 장애아동 캠페인 '마라카스 만들기' Kakao 클래스 season2 in Jeju 진행 <p>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이가치 with Kakao,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더불어 삶' 캠페인 학교 메이커교육 3D모델링 워크숍 진행(5월 ~ 6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1학기 학교 교육 진행(5월 ~ 7월) 결연아동과 함께하는 '설레는 나들이' 자원봉사 Kakao 클래스 in DAEGU-스토리펀딩 워크숍 진행 Kakao 클래스 with partners 1차(인사/조직/변화관리) 진행 <p>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이가치 with Kakao, 제1회 대학생자원봉사 동아리 공모전 '봉사왕 나야 나' 카카오 임직원 환경캠페인 '참여하는 백두대간' Kakao 클래스 with partners 2차(IP 관련 특허/상표등록, 개인정보보호법) 진행 	<p>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메이커교육 3D 프린터 전달식 진행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1학기 교사연수 진행(카카오 판교오피스 / 광주) Kakao 진로체험 프로그램 'Show me the IT' in Jeju Kakao와 함께하는 생활코딩 캠프 in Jeju 머신러닝 캠프 JEJU 2017 진행 <p>8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이가치 with Kakao, 광복절 기념 '역사문화 지키기' 캠페인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2학기 학교 교육 진행(8월 ~ 12월) 해비타트 집짓기 자원봉사 Kakao 클래스 VR드론 캠프 진행 Kakao와 함께하는 창의컴퓨터교실 in Jeju <p>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이가치 with Kakao '마음날씨' 서비스 오픈 청소년 AI진로체험 프로그램 '꿈에 날개를 달다 with Kakao' 진행(9월 ~ 11월) 창의적 IT교육을 위한 2017 언플러그드 진행 결연청소년과 함께하는 '디지털노마드투어'진행 <p>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스 나디초등학교 자원봉사 Kakao 클래스 season2 in Busan 진행 Kakao 클래스 with partners 3차(카카오 구매정책) 진행 Kakao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코딩교육 in Jeju <p>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 최우수협력사 대상 MVP 트너스데이 진행 같이가치 with Kakao, 10주년 기념캠페인 2017 학교메이커교육 세미나: 우수활용 사례 공모 및 시상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x 도티TV: 흑화한 사이버 세상을 구하라!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제주 교사연수 진행 <p>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리펀딩, 카카오 크리에이터 댕큐 파티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2학기 교사연수 진행(카카오 판교오피스 / 부산) 제주 청소년 인공지능 캠프 'Future Camp@제주' 후원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젝트 '산타원정대' 임직원 나눔 플리마켓 '다가치마켓'
---	---

자료: 인터넷 상생백서(2017)

**낭비없는 생산과
가치있는 소비,
'메이커스 워드 카카오'**

공동 주문을 통해 낭비없는 생산과 가치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메이커스 워드 카카오'는 대량 생산과 그에 따른 재고 문제를 안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모바일 시대에 맞춰 수요를 즉시 확인하고 조직화하는 사전주문 후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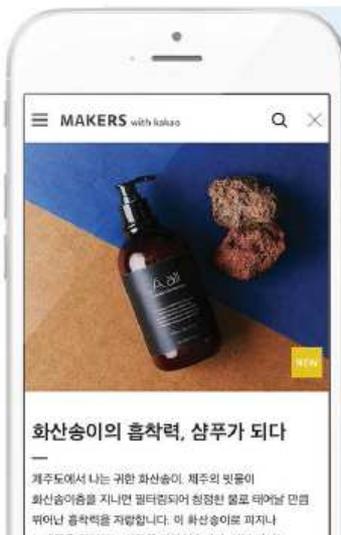
생산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는 가치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메이커스는, 주문을 받고 그 수량만큼 생산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의미를 담은 제품, 우수 소상공인 제품, 일반 제조업 등 다양한 업체들의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메이커스 판매를 통해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일본시장에 진출하게 된 코튼샤워의 '통째로 세탁하는 기능성 솜베개', 지속적인 매진과 고객반응을 바탕으로 현재 전세계 16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H201의 샤워필터 그리고 천연화장품이 메이커스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으며 안정적인 매출이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진 '뷰티클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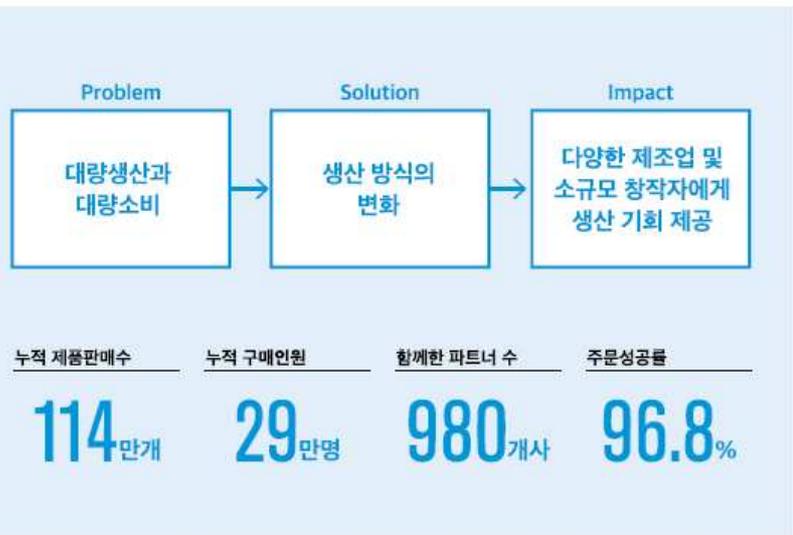
세탁가능한 베개 '코튼샤워'



뷰티클로 '알로에 스킨케어' 세트



메이커스 워드 카카오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카카오 상생협력

MVP 파트너스 데이

MVP 파트너스 데이(Kakao Most Valuable Partners Day)는 2009년부터 카카오가 최우수 협력사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파트너스 데이를 통해 카카오와 파트너들은 계약서상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 한 가족으로서 지난 일년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더불어 성장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

2017 MVP 파트너스데이에는 서버, IDC(Internet Data Center), 네트워크, 회선, CDN (Contents Delivery Network), DB(Data Base), 공사, 보안, 소프트웨어, 용역, 전산비품, 가구 등 12개 분야 총 36개 협력사의 임직원 8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주 본사 투어, 동반 성장 세미나, 감사패 증정, 기념 사진 촬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카카오 임직원들과 협력사 임직원들은 서로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며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 협력사 대표는 "행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행사를 통해 카카오와 협력사들이 단순한 비즈니스적 관계를 넘어 서로 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었다"며 "앞으로 상생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카카오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력사 대표는 "을의 입장에 있는 협력사들을 1박 2일 일정으로 초청해 흥겹고 의미 있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카카오 측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이 행사에 참가하고 싶다"고 전했다.



2017 MVP 파트너스 데이

디자인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지원 밀라노 소비재 박람회 지원

카카오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디자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자인 분야 우수 창업기업 10개사를 밀라노 소비재 박람회(HOM)에 파견했다. 카카오 상생서포터즈관을 마련하고 유럽 현지 시장에 패션, 리빙 분야 상품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가치 있는 소비를 표방하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었던 상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참여 업체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총 358회 바이어들과 미팅을 진행했고, 참가한 10개 업체의 예상 B2B 계약 금액이 312,950유로(약 4억 원)에 육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박람회를 위해 사전에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럽시장 무역 전문가를 초청해 세일즈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도 무역 전문가의 멘토링과 전문 통역 인원을 다수 배치하여 효과적인 수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카카오는 상품성과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의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밀라노 소비재 박람회

지역 콘텐츠 협력

카카오는 제주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개하고 있다. '제주 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 '하트펀딩', 서귀포의 숨은 보석같은 비경은 '1boon' 콘텐츠를 통해 소개되었고, 제주의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은 '스토리펀딩'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장르의 영상콘텐츠를 유통지원할 수 있도록 카카오TV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인프라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 및 강의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 4.3 스토리펀딩

지역 기업 협력

카카오는 2017년 제주도 내 VR 벤처기업과 테마파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역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플레이박스 VR'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는 플레이박스를 통해 제주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주지역 VR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제주 스타트업협회 특별회원으로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플레이박스 VR 체험 모습

1-5-6.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개발자를 위한 활동 (발제자: 구글)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활동

For Startups, Korea Go Global



'엄마를 위한 캠퍼스' 졸업식에 참석한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 구글 캠퍼스 서울 2015. 5.8. ~ 현재

- 구글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아시아에서 첫번째로 서울에 설립한 스타트업들을 위한 창업, 교류 및 교육공간으로 누구나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시설
- 참고 영상: [Introducing Campus Seoul: A Google Space](#)
- 홈페이지: <https://www.campus.co/seoul/ko>
- 이벤트 주최하기: <https://www.campus.co/seoul/ko/host-an-event>
- 캠퍼스 서울 주요 수치
 - 총 가입 회원수 : 30,000+
 - 커뮤니티 멤버수 : 30,000+
 - 캠퍼스 서울 멤버들의 국적 수 : 100+
 - 캠퍼스 서울의 여성 멤버 비율 : 32%
 - 캠퍼스 서울을 거쳐간 입주사 수 (과거+현재) : 28
 - 캠퍼스 서울 입주사들이 유치한 투자금액 : 약 390억
 - 캠퍼스 서울이 제공한 프로그램 수 : 330+
 - 캠퍼스 서울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가 수 : 15,000+
- 구글 캠퍼스 서울 주요 프로그램
 - 캠퍼스 입주 프로그램(Campus Residency)
 -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캠퍼스 서울에서 직접 선정한 캠퍼스 입주 스타트업은 입주사 전용 사무실은 물론, 구글 네트워크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음(구글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혜택은 스타트업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엄마를 위한 캠퍼스 (Campus for Moms)
 - 출산과 육아로 인해 육아로 창업의 꿈을 미루고 있었던 엄마, 아빠들의 창업을 돕는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한 회씩 개최하여 총 77명의 졸업생 배출.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란다', '모이', '그로잉맘', '베이비프렌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등이 창업함.
 - 캠퍼스 엑스퍼트 서밋(Campus Experts Summit)



- 2주 동안 전세계 구글러들이 캠퍼스 서울에 모여서 한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케팅, 파트너십, UX/UI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캠퍼스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성공적인 사례로, 글로벌 구글 캠퍼스에서 확대 시행.
- 2016년과 2017년 두 회 진행되었으며, 총 26개의 스타트업과 1100여 명이 참가하였음.
- 캠퍼스 스타트업 스쿨 (Campus Startup School)
 - 구글 전문가들이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플랫폼, 기술,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 2017년 9월까지 총 70회 이상의 세션에 26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수강하였음.
- 캠퍼스 리쿠르팅 데이(Campus Recruiting Day)
 - 캠퍼스 서울이 채용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원티드와 함께 진행해 온 캠퍼스 리쿠르팅 데이는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채용 행사
 - 캠퍼스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성공적인 사례로, 글로벌 구글 캠퍼스에서 확대 시행
 - 신입/인턴 채용, 경력 채용, 개발자 채용, 디자이너 채용 등 매년 다른 주제, 다른 테마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10개 내외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과 200여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참여함.
 - 2017년 12월까지 총 14회 개최하였으며, 110개의 스타트업과 32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가하였음. 참가한 스타트업 중 40% 이상이 실제 채용에 성공.
- **글로벌 K-스타트업 (방통위-구글) 2012.01.10. ~ 현재**
 - 선정된 6개 팀은 11월 5일부터 2주간 영국 런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벤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명을 하고 현지 경영·기술 전문가 등과도 만나서 해외 진출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음. 2012.11.05 ~ 2012.11.19
 - 30개 팀 중 최종 15개 팀을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금을 제공 2012.10.17
 - 서비스 개발비 지원 및 전문가멘토링, 창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경영 전문교육, 특허출원 등을 지원, 7월말 30개 과제팀 중 13개팀이 창업을 했으며 6개팀의 서비스가 출시 ([링크](#)) 2012.08.09
 -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거쳐 최종 3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링크](#)) 2012.04.09
 - 학생, 일반인,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온라인 및 우편으로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이 중 30개 과제팀을 선정하는 공모전 진행 ([링크](#)) 2012.02.15
 -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코리아는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신생벤처)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스타트업(신생벤처) 육성 및 개발자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링크](#)) 2012.01.10
 - 이후 2013-2014년까지 펀딩 파트너로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고, 2015년부터는 비 펀딩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음.
 - 2012- 246개팀 지원 30개 스타트업 선발
 - 2013 - 428개 팀 지원 30개팀 선발
 - 2014 - 568개팀 지원 35개팀 선발
 - 2015 - 878개팀 지원 최종 45개 스타트업을 선발

개발자를 위한 활동

For Developers, Korea Go Global



2011년

- **안드로이드 개발자 랩 (링크) 2011.09.22**
 - 구글이 주최하는 한국 개발자 컨퍼런스가 2010년 열렸고, 2011년에 두번째 행사가 개최되었다.
- **구글 개발자 해커톤 (링크) 2011.12.02~03**
 - 구글코리아에서 개발자들을 위해 Google Developers Hackathon Korea라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개발자들이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들을 안드로이드, 크롬, 클라우드 등 구글의 개발자 제품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행사였다.
- **포스트 안드로이드 개발자 랩 (링크) 2011.12.19**
 - 2011년 9월에 열린 안드로이드 개발자 랩의 후속행사이다.

2012년

- **구글 핵페어(Google HackFair)**
 - Google HackFair는 Android, Chrome, Go, Dart, HTML5, Google TV, NaCl 등 구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결과물들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행사
 - 프로젝트 모집 (링크)
 - 행사 주최 (링크)
- **Dart Happy Hour (링크) 2012.05.02**
 - 2012년 5월 2일에 있었던 Dartlang 커뮤니티 행사 (Dart에 관한 간략한 소개)
- **구글 TV 미니 컨퍼런스 (링크) 2012.05.14**
 - 구글 TV 개발팀이 주최한, 개발자를 위한 미니 컨퍼런스
- **Google Mobile Accessibility 간담회 (링크) 2012.05.23**
 - 시각장애인인 T.V. Raman 박사와 함께하는 접근성 관련 개발자 간담회
 - 설문조사 결과
- **GDG Suwon 안드로이드 해커톤 2012 (링크) 2012.04.27-28**
 - 이것은 GDG Suwon에서 진행한 것이며 구글 코리아는 이를 후원
- **DevFestX Korea 2012 (링크) 2012.05.12**
 - 국내 구글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함께 준비하고 구글 코리아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개발자 컨퍼런스
 - 행사 결과 간략 정리
- **구글 TV 개발자 미니 컨퍼런스 (링크) 2012.05.14**
- **Google Mobile Accessibility 간담회 (링크) 2012.05.23**
 - 구글에서접근성을 담당하고 있는 티비 라만 박사와 함께 "Mobile Accessibility status and the strategy of Google & Android"라는 제목으로 발표및 접근성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가진 시간
- **구글 테크토크: 스택오버플로우(Google TechTalk: StackOverflow) (링크) 2012.07.27**
 - 한국의 커뮤니티 운영자 분들을 위해 "StackOverflow.com의 커뮤니티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Google TechTalk 개최

- 구글 핵페어 (Google HackFair) ([링크](#)) 2012.08.09 ~ 2012.11.18
 - 개발자들이 제품을 만들어 직접 발표 및 시상하는 행사
-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간담회 ([링크](#)) 2012.09.17
 - 안드로이드에 관한 궁금증을 실제 담당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풀어보는 개발자 간담회
- 구글 대학생 해커톤 ([링크](#)) 2012.02.21, 02.25
- 구글 대학생 해커톤 후기 ([링크](#)) 2012.02.21, 02.25
 - 구글 개발자 해커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요즘 대학생들 중에서도 개발자로서 뭔가 열심히 만들어 내는데 더욱 커다란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보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이다.
- 구글 부산 개발자 해커톤 ([링크](#)) 2012.03.16~17
 - 많은 개발자 관련 행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학생들과 개발자에게도 좋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와 도움으로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였다.
- 기술 커뮤니티를 위한 미팅룸 무료 지원 ([링크](#)) 2012.02.01
 - 구글은 커뮤니티의 발전과 더불어 업계의 발전을 위해 기술 커뮤니티에게 무료로 세미나 모임 장소를 지원한다.
 - 2012년 상반기에 총 28개 기술 관련 커뮤니티들이 140회의 모임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졌으며 하반기에도 29개 커뮤니티가 선정되어 이를 이용중
 - 또한 국내 기술 커뮤니티 운영자들의 모임인 Community Summit을 2012년 6월 15일에 갖고 커뮤니티 운영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연관 커뮤니티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게 되었음
- 구글 오픈소스 라운드 테이블 ([링크](#)) 2012.02.28
 - 구글 오픈소스 라운드테이블(Google Open Source Roundtable)은 오픈소스에 관심있는 개발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오픈소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좋은 경험을 축적하여 더욱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는 자리이다.
- 한국 개발자들만을 위한 2012 구글 코드잼 ([링크](#)) 2012.02.25
 - 2003년부터 전세계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려온 구글 코드잼(Google Code Jam)이 한국 참가자들만을 위한 대회를 추가로 열게 되었다. 이 대회는 매년 글로벌 차원에서 열리는 구글 코드잼 2012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한국에서만 참가할 수 있다.
- 구글 글로벌 취업 프로그램 ([링크](#)) 2012.03.20
 - 한국에서 구글 본사로 직접 취업할 수 있는 특별 채용 프로그램이다.

2013 ~ 현재

- Chrome Developer Day & Barcamp
- [Google Mobile codelab](#)
- 다양한 GDG(Google Developers Group) 활동 후원
 - [Hello World 컨퍼런스](#)
 - [Women Techmakers 모임](#)
 - [DevFest 컨퍼런스](#)
 - [안드로이드 컨퍼런스](#)
 - 기타 다양한 codelab, meet-up
- 멋쟁이 사자처럼 2기 후원 <http://googledevkr.blogspot.kr/2014/06/likelion.html>
- I/O Extended 2014, 2015
- 멀티 스크린 개발자 해커톤 http://googledevkr.blogspot.kr/2014_07_01_archive.html
- Google Launchpad <http://googledevkr.blogspot.kr/2014/08/google-launchpad-2.html>
- Developing Android Apps 스터디 그룹 <http://googledevkr.blogspot.kr/2014/11/udacity.html>
- 안드로이드 TV 앱 개발 지원 http://googledevkr.blogspot.kr/2015_05_01_archive.html
- 구글-Udacity 스터디 그룹 http://googledevkr.blogspot.kr/2015_07_01_archive.html
- Google HackFair <http://googledevkr.blogspot.kr/2015/10/hack.html>

1-5-7. 페이스북의 한국 창업 벤처 생태계를 위한 사업 현황 (발제자: 페이스북)

1. 개발자/스타트업 지원 사업

1) Facebook Innovation Lab (페이스북 이노베이션 랩)

- 개요: 연간 최소 2000 명의 개발자에게 교육 및 3000 명에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국내 테크 산업에서의 성공적인 이직과 승진을 위한 테크 심화 교육 제공
 - 글로벌 테크 산업에서의 리더십을 위한 페이스북 엔지니어의 기술 교육
 - 커리어데이 등을 통한 취업 기회 마련
 - 개발자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자원 제공
- 대상: 국내 개발자 및 스타트업
- 현황: 판교 2 벨리 문화 ICT 융합센터내 150 평 규모 센터 오픈 (2018. 5)

2) Technology Revolution Together

- 개요: 한국 VR/AR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현지 육성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및 KIC 실리콘밸리 협업 프로그램)
- 대상: 국내 VR/AR 스타트업
- 현황: 2017 년도 6-8 주 실리콘밸리 현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VR/AR 스타트업에게 페이스북/오쿨러스는 기술개발 멘토링 지원 (2018 하반기 2 차 프로그램 예정)

3) Developer Circle

- 개요: 국내 개발자를 위한 네트워킹 커뮤니티
- 대상: 국내 온라인 개발자
- 현황: 개발자 온라인 네트워킹 커뮤니티 제공 및 매달 오프라인 모임 주최 및 지원. 매년 커뮤니티 리더의 페이스북 본사 방문 전액지원

4) FBStart

- 개요: 국내 앱개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대상: 온라인 스타트업
- 현황: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자동화를 위한 유료 프로그램 무상지원 및 페이스북 직원과의 멘토링 기회 제공

2.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능력 증진 교육

1) Made by Korea, Connected by Facebook

-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해 중소기업해외 진출 지원 교육
- 대상: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현황: 2017 년 7 월 런칭 후 약 2,000 개의 중소기업 무상 교육 완료 및 광고비 지원

2) Marketing Bootcamp

- 개요: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 대상: 국내 중소기업
- 현황: 1 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000 명의 중소/중견기업 인력에게 무상 교육 제공

3) Mobile Moves Business

- 개요: 지역별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 대상: 부산, 광주 & 대전 소재 중소기업
- 현황: 300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상대로 무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4) Made by You Fair

- 개요: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소양 증진 교육 및 오프라인 접점 제공 프로그램
- 대상: 국내 중소상공인
- 현황: 1000 명의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소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소비자 교류를 위한 오프라인 베흘시장 개최

5) Video to Go

- 개요: 모바일 비디오 템플릿 제작 해커톤
- 대상: 국내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 / 온라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
- 현황: 한국 내 프리랜스 디자이너 100 명에게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비디오 광고 템플릿 1,000 종 제작 지원 및 교육. 중소기업 및 대기업 중 온라인으로 제품/서비스 판매하는 업체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 제작 가이드 및 실습하는 워크샵 진행

1-5-8 스타트업 상생 방안 (제출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 통신3사와 스타트업간 상생

- 스타트업을 위한 통신망 요금제 신설 -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는 서비스가 활성화된 후 수익 모델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음.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전용선 등 망이용요금 부담은 큰 부담으로 작용함.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들과의 상생 차원의 망이용요금 제도가 필요. 또한, 급격한 트래픽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기간 트래픽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모바일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모바일 뿐만 아니라 기타 휴대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편. 따라서 이동사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또는 Android TV 등을 위한 저렴한 스타트업 요금제가 만들어진다면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 엣지 컴퓨팅 시장을 위한 지원 - 일레로 쉐콤은 지난 2월 IoT 기기 생태계 확장을 위해 ‘쉐콤 와이어리스 엣지 솔루션’을 소개했음²⁸⁾. 와이어리스 엣지 솔루션은 5G의 저지연 특성을 대비한 산업용 IoT 애플리케이션임. 쉐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다양한 에코시스템 등을 지원함. 따라서 국내 이동사에서도 api, sdk, library 가 공개 지원으로 스타트업이 플랫폼에 연결하는 형태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핀테크 연계 중금리 상품 개발 - 통신3사와 연계된 대리점 중 스마트폰 구매 자금조달 애로가 있는 경우 고금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이와 같이 통신3사와 상거래 관계가 존재하나 운전자금 조달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핀테크 연계 중금리 상품을 개발은 어떨지 제언.

(2)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형CP와 스타트업간 상생

- 다양한 서비스 API제공 - 예를 들면 네이버 예약 현황을 API로 제공하여 서드파티 서비스에서 해당 정보를 받아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것

28)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821>

- CPC 관련. 키워드 클릭당 광고가격의 최고가격 상한제를 실시 - 실제로는 키워드 슬롯의 한계로 인해, 노출이 한정되고. 실질적인 독과점과 불완전 경쟁시장에 처하게 되는 중소기업들의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클릭당 최고 상한제를 설정을 요청. 따라서 합리적인 CPC 상한선을 두고 동일한 금액일 경우 상품 경쟁은 품질지수로 순위가 매겨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면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봄.
- 스타트업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스타트업의 경우 대형CP를 통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는 자본이 넉넉지 않은 바, 일정조건(예.창업3년 이내 등)의 스타트업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기간의 정함을 두어 할인해주거나 바우처 형태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초기 스타트업 지원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봄.
- 스타트업 홍보 채널 신설 - 제품 광고의 맥락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보유중인 채널 중 선택적으로 스타트업 회사 및 제품을 정기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광고 효과를 가져감과 동시에 대형CP의 경우엔 스타트업 계에서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기타) 정보 수집이 아닌 폭넓은 협업 요청 - 기술기반 기업이 초기부터 레퍼런스가 있을 수 없는데 레퍼런스를 요구하거나 브랜드파워로 개발, 테스트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요구하는 경우나 과한 보증이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해외처럼 유료 POC Test 활성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구매, 기술 특허에 대한 인정 등의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 IT 기반 스타트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국내 IT산업 발전과 국내 IT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

2-1. 해외 망 중립성 정책 동향

가. 미국

□ 2005년 인터넷 망 공개 4원칙 제시

- 2004년 2월, 당시 FCC 의장 Michael Powell은 4개의 “인터넷 자유 (Internet Freedoms)” 원칙을 제안하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이 원칙들을 계속하여 준수할 것을 요청

- ① 콘텐츠 접근의 자유: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② 애플리케이션 이용의 자유: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③ 개인기기 부착의 자유: 소비자는 어떤 기기이든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가정의 인터넷 접속에 부착하도록 허용되어야 함
- ④ 서비스 상품 정보 획득의 자유: 소비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상품(service plan)에 대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그러나, 인터넷 자유 4원칙은 Powell의 개인 견해로서 FCC의 공식 입장은 아님

- 2005년 8월 FCC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기본입장을 4원칙으로 정리하여 채택하고 9월에 발표

- Madison River의 VoIP 트래픽 차단* 사건으로 망 중립성 문제가 이슈화되자 Internet Freedoms와 유사한 4원칙**을 정책선언 (Policy Statement)의 형태로 발표

* Madison의 VoIP 접속차단 분쟁

Madison River Comm.사가 Vonage사의 VoIP 서비스를 위한 Network port를 차단, Vonage의 제소에 따라 FCC의 조사 후 중재 명령에 따라 벌금(\$15,000)을 납부하고 더 이상 차단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

** 인터넷망 공개 4원칙

“광대역망의 발전 및 공공 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상호연결의 특징을 보전하고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보장받아야 함”

-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접속할 권리가 있다.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이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원칙들은 Powell의 Internet Freedoms 원칙과 유사하지만 사업자간 경쟁의 중요성을 4번째 원칙으로 추가
- o 한편, 2006년 AT&T는 BellSouth와의 합병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망 중립성 유지를 포함한 합병조건들(commitments)을 수용
 - 합병조건에서 AT&T/BellSouth는 망 중립성 4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망 중립성 유지 약정은 합병 이후 2년 경과 시 또는 관련법의 의회 통과 시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
 - 기존의 망 중립성 4원칙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중립적 망과 중립적 라우팅’의 유지를 추가적으로 약속
- ※ AT&T/BellSouth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 구간에서 전송되는 패킷에 대해 원천(source), 소유자(ownership), 목적지(destination)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
- 또한, 기업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IPTV 서비스 제공에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건이 포함
- o 2006년 초부터 미국 의회에서는 다양한 망 중립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됨

발의일	법안(법안번호)	발의자	망 중립성 관련 조항 및 내용
2006년 3월 2일	Internet Non-Discrimination Act of 2006 (S.2360)	Ron Wyden(D)	· 데이터의 전송 중 차단 및 수정 금지(스팸, 악성코드, 불법 콘텐츠 제외) · 인터넷 가입자망 운영자에 common carrier 의무 부과
2006년 3월 30일	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of 2006 (H.R.5252)	Joe Barton(R)	· FCC Policy Statement에서 정의된 망 중립성 원칙을 따름
2006년 4월 3일	Network Neutrality Act of 2006 (H.R.5273)	Ed Markey(D)	· CoPE Act(2006)의 중립성 조항을 더 엄격하게 수정
2006년 5월 1일	Communications, Consumer'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 of 2006(S.2686)	Ted Steven(R), Daniel Inouye(D)	· FCC가 망 중립성 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함
2006년 5월 18일	Internet Freedom and Non-discrimination Act of 2006 (H.R.5417)	Jim Sensenbrenner(R), John Conyers(D)	·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트래픽 차별, 타사업자 접속 거부, (합법적) 특정 콘텐츠의 차단 및 손상 등을 행하는 경우 Clayton 법 위반으로 규정 · 트래픽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승인통제 기술(admission control) 이용 금지
2007년 1월 9일	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 (S.215)	Olympia Snowe(R), Byron Dorgan(D)	· 합법적 콘텐츠의 차단/차별 금지, 인터넷 접속에 타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 특정 CP와의 QoS 거래 금지 등 도입 · 자사망 내에서의 콘텐츠 우선순위 부여는 허용 · FCC가 관련 제소에 대해 규제를 집행하고 인터넷 시장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2008년 2월 12일	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 of 2008 (H.R.5353)	Edward Markey(D), Charles Pickering(R)	· 광대역 정책 수립,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관련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 보호 및 경쟁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 광대역 broadband summit를 진행하도록 FCC에 지시 명령
2009년 6월 18일	Broadband Internet Fairness Act of 2009 (H.R.2902)	Eric Massa (New York)	·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사용량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격 플랜이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FTC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브로드밴드 사업자에게 서비스 플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2009년 7월 31일	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 of 2009 (H.R. 3458)	Edward Markey(D), Anna Eshoo(D)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특정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금지
2009년 10월 22일	Internet Freedom Act of 2009 (S.1836)	John McCain(R)	· 인터넷이나 IP-enabled 서비스와 관련된 FCC의 규제 수립 및 집행저지
2009년 10월 26일	Real Stimulus Act of 2009 (H.R. 3924)	Marsha, Blackburn(R)	· 인터넷이나 IP-enabled 서비스와 관련된 FCC의 규제 수립 및 집행 저지(s.1836법안과 동일한 내용)

□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

- 2007년 3월 FCC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사업자 행위, 보급 상황과 시장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질의서(NOI: Notice of Inquiry)를 채택하고, 미국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실제 현황 조사에 착수
 - ISP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 현황, 제공 속도와 용량에 따른 가격 현황, 콘텐츠 사업 유형별 차등 정책 여부, 인터넷 사업자의 정책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진행
- 2009년 10월 22일 FCC는 인터넷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논쟁의 결과를 반영한 망 중립성 규칙 제정 공고(NPRM)를 발표
 - 기존의 망 중립성 4원칙에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추가한 망 중립성 6대 원칙 제안
 - 또한,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경우는 망 중립성 원칙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는 한편, 무선 인터넷을 망 중립성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안 제시
 -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이 2010년 1월까지 진행되었고, 2010년 12월 21일에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을 발표하여 2011년 11월 20일부터 공식 발효

< FCC의 망 중립성 6원칙 >

원칙	내용
콘텐츠 접근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근	소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기기 부착 자유	소비자는 망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
경쟁의 혜택	소비자는 망 사업자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그리고 콘텐츠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비차별성	합리적인 망 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ust treat lawful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투명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이용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행위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ust disclose such information concerning network management and other practices as is reasonably required for users and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to enjoy the protections specified in this part).

- o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은 크게 투명성(Transparency), 차단 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의 3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
 - 투명성 원칙은 유무선 인터넷 모두에 적용이 되고, 차단 금지 원칙은 유무선 모두에 적용되나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은 유선에만 적용
 - 이외에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를 별도로 규정
- o 투명성 원칙은 “ISP가 네트워크 관리 관행, 망의 성능, 망 제공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최종이용자와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무선 인터넷 접속사업자 모두에게 적용
 - 투명한 정보 공개는 최종이용자의 선택권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기관이 인터넷 개방성과 관련된 기타 원칙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shall publicly disclose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performance, and commercial terms of its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s sufficient for consumers to make informed choices regarding use of such services and for content, application, service, and device providers to develop, market, and maintain Internet offerings. -FCC(2010a)-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의 네트워크 관리방식, 성능 및 상업적 거래조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사용에 관한 정보에 의한 선택을 하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디바이스 제공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상품화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투명성 원칙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에는 네트워크 관행(예: 혼잡 관리, 특정 애플리케이션 우대·제한 여부,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 제한·승인 규칙, 보안 등), 서비스의 성능(예: 예상 및 실제 접속속도 등 제공 서비스의 특성, 관리형(managed or specialized) 서비스가 최선형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 등), 상업적 거래조건(예: 가격, 개인정보 보호정책, 불만처리 절차 등) 등

- 정보 공개의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 등의 방법을 제시

- 그리고 FCC는 투명성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

- FCC는 투명성 원칙이 인터넷 개방성 유지에 필수적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투명성만으로는 인터넷 개방성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을 도입

o 차단 금지 원칙에 따르면 “유선 ISP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기기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fixed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lawfu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FCC(2010a)-

유선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자는 참여하고 있는 동안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안에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 차단 금지는 음성, 비디오 등 인터넷 관련 인접 시장의 사업자와 최종이용자에게 망 접근권을 보장
- 또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기기의 성능을 손상(impairing) 또는 강등시켜(degrading), 실질적으로는 차단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위도 금지
- ISP가 최종이용자에게 트래픽을 전송하는 대가를 CAP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차단 금지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현재 적용 중인 인터넷망 상호접속 지불 계약(paid peering arrangement)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이 명기

※ 원문에서는 CAP를 ‘edge provider’라 하였고, 여기에는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모두 포함

- 한편,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와 망 사업자(음성 및 영상통화)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선에 비해 느슨한 의무 부과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mobil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consumers from accessing lawful websit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nor shall such person block applications that compete with the provider’s voice or video telephony ser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FCC(2010a)-

모바일인터넷접속 접속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하고 있는 동안 소비자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음성 또는 영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 FCC는 네트워크 관리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도 주파수의 효율성을 포함하여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사이의 기술 및 운영상의 차이 고려
- o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에 따르면 망 사업자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비차별성 원칙은 ISP가 전송을 차별화할 유인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여 도입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fixed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unreasonably discriminate in transmitting lawful network traffic over a consumer's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shall not constitut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FCC(2010)-

유선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하는 동안 소비자의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 FCC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또한, 합리적인 차별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2009년 오픈 인터넷 NPRM의 비차별성 원칙을 구체화

- ① 투명성(Transparency)으로, 최종이용자에게 트래픽 차별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합리적일 가능성 높음
- ② 최종이용자의 통제력(End-User Control)으로, 데이터 속도, 신뢰성 그리고 품질 등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 이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최종이용자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합리적일 수 있음
- ③ 패킷 중립적인 차별(Use-Agnostic Discrimination)로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을 구분하여 차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차별일 수 있음(예를 들어, 혼잡 시 P2P 트래픽을 다른 트래픽에 비해 지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패킷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송속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등의 차별은 합리적)
- ④ 표준적인 관행(Standard Practices)으로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국제 표준기구, 정부 등이 채택하고 있는 관행 및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합리성이 높음

- 한편, FCC는 ISP가 경쟁(또는 잠재적 경쟁) 기업 및 최종이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 유료 전송 우선권 (pay for priority) 등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

※ FCC는 'pay for priority'가 인터넷 산업의 오랜 관행과 배치되며, CP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다수의 ISP와 계약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모두 증가하여 인터넷 서비스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혁신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으며, 도서관, 학교, 개인 블로그 등 비상업적인(non-commercial) 최종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ISP가 우선 전송 대상이 아닌 트래픽의 전송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 FCC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조와 기술을 고려하여 그 관리방식을 적절하게 조절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이라고 규정

A network management practice is reasonable if it is appropriate and tailored to achieving a legitimate network management purpose,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network architecture and technology of th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FCC(2010a)-

네트워크 관리 방식은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의 특정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기술을 고려하여, 합법적 네트워크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히 설계되었다면 합리적이다.

- 2009년 오픈 인터넷 NPRM과 달리, 여러 네트워크 사이의 기술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과는 무관한 불법 콘텐츠 전송을 대상에서 제외
- 한편, 인터넷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여 합리성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매우 어려우므로 개별 사건별(case-by-case)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다만, 사건 별 접근법이라 하여도 규제 유연성(flexibility)과 명확성(clarity)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 합리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FCC는 합리적인 차별 행위 평가기준(투명성, 최종이용자의 통제력, 패킷 중립적인 차별, 표준적인 관행)과 더불어 네트워크 보안 또는 신뢰성(Network Security or Integrity),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트래픽(Traffic Unwanted by End Users), 그리고 네트워크 혼잡(Network Congestion)을 바탕으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을 평가할 계획
- 한편, 네트워크 관리 실행 방식이 사전적 인가사항은 아니나, 모호한 경우 해석 요청을 하면 FCC가 이에 응할 수 있음을 밝힘
- FCC는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는 투명성 원칙은 유선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차단 금지 규칙은 유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규제를 적용하며, 비차별성 원칙은 일단 적용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

- 무선 인터넷에 모든 오픈 인터넷 규칙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기술중립성 원칙과 무선 인터넷이 인터넷 접속 플랫폼으로 급격히 부상함에 따른 경쟁 서비스 차단 및 네트워크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이외에 VoIP, IPTV 등 관리형 서비스(specialized services)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관리형 서비스의 확대가 최선형 인터넷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 FCC는 관리형 서비스가 인터넷의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라 보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만, 관리형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최선형 인터넷망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오픈 인터넷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

□ 오픈 인터넷 규칙에 대한 소송

- 통신법은 ISP에 대한 규제 권한과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만들 규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이루어짐
- FCC는 ISP를 정보제공사업자로 분류하고 통신법 Sec.4(i)의 부수적 권한에 근거하여 규제 권한을 행사
- ※ Telecommunication Act Sec 4(i): The Commission may perform any and all acts, make such rules and regulations, and issue such order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ct, as may be necessary in the execution of its functions.
- 그러나 Sec.4(i)의 권한은 American Library Ass'n v. FCC 판례를 통해 규제 대상이 FCC의 관할권역 내에 있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을 실행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규제여야만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됨

2008년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ISP인 Comcast사가 BitTorrent 방식의 P2P 트래픽 업로드를 방해·지연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해 Free Press와 Public Knowledge가 FCC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 이에 FCC는 2008년 8월 Comcast의 P2P 트래픽 접속 차단·지연 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Order를 채택하고, Comcast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불합리한 네트워크 관리행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고, 2008년 말까지 불합리한 망 관리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그러나 Comcast는 FCC의 조치가 American Library Ass'n v. FCC에서 대법원이 규정한 권한 밖의 규제라며, D.C.항소법원에 제소.

Comcast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바로 FCC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 ISP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라는 점. FCC는 통신법의 여러 조항들과 Comcast에 대한 규제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였으나, 2010년 4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Comcast의 손을 들어줌.

특히, 법원은 ISP에 대한 규제가 통신법 제706조가 FCC에게 부여한 권한의 파생된 권한이라는 주장을 사실상 부정. 통신법 제706조에 따르면, FCC는 광대역 통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은 제706조는 FCC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 FCC가 법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여타 권한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이라 해석.

- 2010년 4월 Comcast v. FCC 판결에도 불구하고 FCC는 여전히 ISP를 정보제공사업자로 분류하고, 통신법 제706조에 근거하여 ISP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2010년 9월 제정
 - 이에 따라 Verizon과 Metro PCS는 2011년 9월 제706조에 대한 FCC의 해석이 Comcast 판결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DC 항소법원에 오픈인터넷 규칙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
- 2014년 1월 14일, DC 항소법원은 FCC가 ISP에 대한 규제 권한을 지니지만, 오픈 인터넷 규칙의 의무조항은 common carrier 규제라 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
 - 통신법 제706조에 따라 FCC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규제권한 보유하고 있으나, 통신법의 실체규정에 반하는 방식의 권한 사용은 불가하다고 판단
 - 통신법상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되는데, 오픈 인터넷 규칙은 common carrier에게 부과하는 규제를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
- ※ Comcast 판결은 FCC가 인터넷 망에 대해 규제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Verizon 판결은 규제권한을 보유하지만 common carrier에 대한 규제 수준으로 발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 지님

- 다만, 투명성 의무는 유효하며, FCC가 통신법에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망의 개방성과 자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 법원은 오픈 인터넷 규칙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조항이 ISP에게 적용될 경우 ISP를 common carrier와 같은 지위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결정
 - 오픈 인터넷 규칙의 비차별 의무를 준수하게 되면 광대역 인터넷 접속 사업자는 모든 CP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원하지 않거나, 보안 등의 제한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차별 행위가 가능
 -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서비스이거나 용량에 한계가 있다면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는 common carrier의 권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
 - 이에 따라 통신법상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정보서비스이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common carrier로 분류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차별금지 의무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권한을 벗어나 무효라고 결론
- 법원은 ISP의 트래픽 차단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
 - 오픈 인터넷 규칙의 차단 금지 조항은 ISP가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트래픽을 차단 또는 지연할 수 없으며, ISP는 모든 CP의 트래픽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ISP의 네트워크 개입 여지를 없앴
 - 오픈 인터넷 규칙의 차단 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광대역 인터넷 접속 사업자가 모든 CP에 대해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의무 부과는 common carrier에게 부과하는 최소 수준 서비스 제공 의무와 동일하다고 결론지음

- 결국 법원은 FCC가 ISP에게 부과한 트래픽 차단 금지 의무가 common carrier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판시
- o 법원은 FCC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만들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
 - 통신법 제706조의 Advanc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y에 “브로드밴드 telecommunication capability”가 포함되며, FCC가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수단(regulating methods)”을 이용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판단
 - 다만, FCC에게 “Internet Openness”를 구현하는 원칙들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FCC가 ISP에게 common carrier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
- o 법원은 ISP에 대한 투명성 의무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
 - Verizon은 FCC의 투명성 의무 부과에 대해 다른 주요 의무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의무 부과 규정이 무효라면 이 역시 함께 무효이어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은 어떤 규제 위반의 일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제 기관의 의지와 문제가 된 조항 이외의 규제조항이 무효화된 조항 없이도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 별개로 인정

□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

- o 2014년 2월 FCC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오픈 인터넷 규칙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5월 15일 새로운 오픈 인터넷 규칙 입법예고안을 채택

- 완전히 새로운 원칙 제정 및 적용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망중립성 적용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오픈 인터넷 규칙을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선택
- 투명성 원칙은 보다 강화하고, 차단금지를 다시 제도화하며,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행위(commercially unreasonable action)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규제공백을 최소화
- o 입법예고안은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하에 ISP가 개별적 협상에 따라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우선전송을 허용
 -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에서 사용한 개념정의와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
 - ※ 개념과 범위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특히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의 개념과 범위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 제시 요청
 - 입법예고안은 항소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투명성 원칙을 강화
 - ※ 정보공개 요건 및 절차 강화
 - 차단금지 원칙의 경우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의 문구는 유지하되 최소품질기준(minimum level of access, MLA)을 정의하여 ISP의 상업적 유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도록 수정
 - 차별금지 원칙을 대신하여 인터넷 망사업자들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행위(commercially reasonable practice)' 허용
 - ※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경우 ISP는 거래 상대방과 자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며, 상업적 불합리성은 인터넷 개방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판단은 사안별(case by case)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
 - 입법예고안은 통신법 제706조에 근거함을 명확히 함
 - 입법예고안은 이용자(end users), 인터넷 사업자(edge providers), 인터넷 망 사업자 간 다차원적 분쟁해결절차 제시

<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과 2014년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비교 >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	2014년 망중립성 고시(안)
§8.1 목적	이 부분(고시)의 목적은 인터넷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 표현의 자유, 최종 이용자 제어, 경쟁과 혁신할 자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고시)의 목적은 인터넷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u>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u> 소비자 선택, 표현의 자유, 최종 이용자 제어, 경쟁과 혁신할 자유가 가능하도록 하며, <u>고도화된 통신 능력 배양을 유인하고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u> 것이다.
§8.3 투명성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네트워크관리행위, 성능과 해당 광대역인터넷 서비스의 상업적 조건에 관하여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사용에 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장치 공급자가 인터넷 상품을 개발, 영업, 유지하기에 <u>충분할 만큼</u>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네트워크관리행위, 성능과 해당 광대역인터넷 서비스의 상업적 조건에 관하여 (i)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사용에 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ii) <u>에지공급자^{주1)}가 인터넷 상품을 개발, 영업, 유지하고 (iii) 위원회와 공공단체가 §8.5와 §8.7에 규정된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u>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u>(신설)</u> 이 조항에 의한 정보공개에 있어,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원천, 시기, 속도, 패킷손실과 혼잡기간에 관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u>(신설)</u> 이 조항에 의한 정보공개에 있어,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차단, 제한, 유료우선순위화 합의 또는 우선순위화된 서비스와 다른 기본적인거나 최선형인 서비스의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해당 네트워크 실행방식을 변경할 때 시의적절하게 최종 이용자, 에지공급자와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8.5 차단 금지	유선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하고 있는 동안 합리적인 네트워크관리가 적용되는 합법적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모바일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하고 있는 동안 소비자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적용되고 있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적용되고 있는 공급자의 음성 또는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좌동) (좌동)
§8.7	(불합리한 차별 금지) 유선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행위 금지) 유선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

<p>하고 있는 자는 참여하는 동안 <u>소비자의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불합리한 차별의 성립요건이 되어서는 안된다.</u></p>	<p>하고 있는 자는 참여하는 동안 <u>상업적으로 불합리한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네트워크관리가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행위의 성립요건이 되어서는 안된다.</u></p>
---	--

○ 2015년 2월 FCC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신법 Title II의 통신서비스로 편입하고, ISP 사업자를 common carrier로 취급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 최종 개정안을 채택

- FCC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ISP의 부가서비스 제공보다는 단순 전송기능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역무재분류의 사유로 제시

※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ISP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하면서 입법예고안이 수정됨

- 망 중립성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은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망중립성의 일반적인 개념을 수용하여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차단 및 지연금지, 트래픽 우선처리 금지 등 규정

- 차단금지 :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 등의 차단 금지

※ no blocking의 정의 :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lawfu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 지연금지 :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 의 전송속도를 저하하는 행위 금지

※ no throttling의 정의 :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impair or degrade lawful Internet traffic on the basis of Internet content, application, or service, or use of a non-harmful device,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 우선처리금지 : 대가를 매개로 특정 트래픽을 우호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금지
- ※ no paid prioritization의 정의 :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engage in paid prioritization
- ※ prioritization의 정의 : ... refers to the management of a broadband provider's network to directly or indirectly favor some traffic over other traffic, including through use of techniques such as traffic shaping, prioritization, resource reservation, or other forms of preferential traffic management, either (a) in exchange for consideration (monetary or otherwise) from a third party, or (b) to benefit an affiliated entity
- o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으로 기술적 트래픽관리는 필요하며 그 합리성 여부는 case-by-case로 판단하겠다는 입장
 - 합리적인 트래픽관리는 기술적인 트래픽관리로 한정하여 경제적인 유인에 의한 트래픽관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 ※ 합리적 트래픽관리의 정의 : a network management practice is a practice that has a primary technical network management justification, but does not include other business practices. A network management practice is reasonable if it is primarily used for and tailored to achieve a legitimate network management purpose,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network architecture and technology of th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 ※ 상업적 목적에 의한 트래픽 우선전송은 합리적 트래픽관리 수단이 될 수 없음
 - 트래픽관리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망 보안 위협 등 일반적으로 망 중립성 논의에서 제시되는 사항들을 포함
- o ISP는 common carrier 규제대상이 되었으나, 규제 중 일부분만을 적용하는 가벼운 규제 체제(light-touch regulatory frame)를 제안
 - ISP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이용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 금지, 이용자와 분쟁 발생시 FCC의 조사권, 이용자 정보보호, 통신설비 제공 의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무 등
 - ISP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제는 요금규제, 보편적서비스 기금납부, 로컬 및 주(state)차원의 세금 면제 등

- 2015년 3월 23일 USTelecom이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DC 항소법원에 제소하였고, 이와 별개로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안은 2015년 7월 발효
 - 2016년 6월 14일, 항소법원은 FCC 오픈 인터넷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
- ※ 이용자들이 더 이상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를 자신들이 찾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보지 않고 common carrier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common carrier로 볼 충분한 근거 마련
- 2017년 9월 29일 AT&T, CenturyLink, NCTA 등이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항소법원 결정에 반발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

□ 망 중립성 규제 폐지

- 2017년 1월 취임한 FCC 의장 Ajit Pai는 망 중립성 규제 반대론자로 망 중립성 규제 폐지 추진
 - 2017년 4월 27일 Ajit Pai는 “인터넷의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을 천명하며 망 중립성 규제 완화 선언 및 오픈 인터넷 규칙 재개정(안)을 발표
 - 광대역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투자 위축, 신규 또는 고도화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축소,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망 중립성 정책 실패 선언
 - ISP를 common carrier에서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원복하고, 차단금지, 지연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금지 및 투명성 규제의 유지,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재검토 및 의견수렴 시행
- 2015년 규칙에 의해 통신서비스로 분류되었던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재분류
 - 통신법의 규정/구조와 입법역사, 인터넷이 작동하는 기술적 속성, FCC의 이전 결정과 조치들, 혁신, 투자 그리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공공정책과 FCC 목표 등을 근거로 제시

- 2015년 규칙이 ISP에 부과하였던 7대 행위기준(conduct rules) 폐지
 - ※ 2015년 오픈 인터넷 규칙이 제시한 ISP의 행위기준은 최종이용자 선택, 경쟁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 보호, 혁신/투자/브로드밴드 구축에 미치는 효과, 표현의 자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의 관련성, 업계표준 관행 등 7개 기준
 - 인터넷 행위기준과 당해 규칙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시된 포괄적이지 않은 요소목록의 폐지(eliminating)를 제안
 -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가벼운 규제를 지향함으로써 폐지를 제안한 인터넷 행위규칙에 대한 대안을 채택하지 않을 것을 제안
- 2015년 규칙이 ISP에 부과하였던 트래픽 차단금지, 전송지연금지, 대가를 전제로 한 트래픽 우선처리금지 등 3대 사전규제 재검토
 - 성문화된 차단금지(no blocking) 규칙이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의견 요청
 - 트래픽 지연금지(no-throttling) 규칙이 차단금지 규칙(no-blocking rule)과 흡사(mirrors) 한 것으로 인식하여 의견 요청
 - 대가를 전제로 하는 트래픽 우선처리를 금지하는 방안과 규제기관이나 업계에 의한 감독(overseen)하에 트래픽 우선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의 장단점(trade-offs)에 대한 의견 요청
- 2017년 12월 인터넷 자유 복원(Restoring Internet Freedom) 규칙을 채택하고 2018년 6월 발효됨
 - 인터넷 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재분류, 투명성을 전제로 ISP에 대한 영역별 규제를 시장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
 - ‘2015년 규칙’이 정한 투명성 규정과 ISP에 대한 사전/사후 행위규칙 모두 폐기, ‘2010년 규칙’이 정한 투명성 요건만 유지하고 FTC의 경쟁법/소비자 보호법 집행을 통해 ISP 행위 규율

-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통신법 Title II의 통신서비스 편입 및 ISP의 common carrier 취급 무효화
 - (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통신서비스에서 정보 서비스로 재분류, 미국 통신법상 규정측면에서는 Title II 규정대신 Title I의 가벼운 규제를 적용
 - (무선)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도 유선에 준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규제를 받는 상업적 모바일 서비스(commercial mobile service)에서 Title I의 정보서비스 규제를 적용받는 사적 모바일 서비스(private mobile service)로 재분류
- 투명성 요건을 처음으로 규정한 2010년 망 중립성 규칙으로 회귀하되 ISP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개선
 - 2015년 규칙이 투명성 요건에서 규정한 ISP의 추가적인 정보공개 의무 폐기
 - ※ 해당 추가보고의무는 소비자에 대해 추가적인 편익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ISP의 부담만 가중
 - 2010년 규칙이 규정한 투명성 요건의 범주 내에서 인터넷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 ※ 2010년 규칙이 규정한 ISP의 네트워크 관리관행, 성과, 상업적 조건을 공개 하되, 금번 규칙에서 폐기하는 행위규칙의 대상인 트래픽 차단, 전송 지연 또는 대가를 전제로 하는 트래픽 우선처리 관습에 대해서도 공개
 - 소비자가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에 있어 정보에 기반한 선택 (informed choice)을 하도록 지원
 - 정보공개 수단으로 ISP의 직접 공개방식과 FCC에 대한 해당정보 제출 및 이후 FCC 공개방식을 규정하고 ISP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탄력성 부여

- 트래픽 차단/전송지연금지, 트래픽 우선처리금지 등 사전 규제 폐기
 - 투명성 규칙과 경쟁법/소비자보호법령이 더 낮은 비용으로 목적 실현하고, '2015년 규칙'의 사전 규제들은 편익보다 비용이 큼
 - ※ 특히, 트래픽 우선처리금지는 편익은 작은 반면 ISP 혁신과 실험 및 네트워크 투자를 억제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유의적
 - 일관되지 않은 목적을 갖는 짜집기 규칙(patchwork rules)으로 인한 시장왜곡 방지

- 망 중립성 사안과 관련된 ISP의 특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규칙 폐기
 - 적용이 모호하고, 이에 따른 규제불확실성(regulatory uncertainty)으로 인해 ISP의 투자와 혁신이 저해되었다는 것이 주요 근거
 - ※ 2017년 1월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FCC 평가가 대표적 사례
 - 사후적 일반 행위규칙을 폐기하더라도, 경쟁당국인 FTC가 ISP의 불공정 행위와 기만적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근거
 - ※ ISP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는데 있어 “경쟁법은 경제학에서 정립한 소비자 후생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2015년 규칙이 규정한 사후적 인터넷 행위기준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흐릿한 요소들을 섞은 규제”라는 것

-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정보서비스'로 분류함에 따라, 경쟁당국인 FTC가 ISP의 불공정행위와 소비자보호,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할권 회복
 - ISP에 대한 FTC 관할권 회복은 ISP의 잠재적 불공정행위와 기만행위,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국의 제1의 기관으로 전문성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

- 이후 망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나 소송 등이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5월 16일, 상원은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의거하여 인터넷 자유 복원(Restoring Internet Freedom) 규칙의 효력 발생을 중지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 표결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발효되지 않음
 - 망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법/집행명령을 제정하거나 논의 중
 - ※ 2018년 3월 15일 워싱턴주에서 처음으로 망 중립성 주법을 제정한데 이어 오레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에서 법률화되었으며, 6개 주에서 집행명령 제정
 - 美 법무부는 “정보서비스인 인터넷액세스서비스는 주간(interstate) 서비스이므로 연방법 적용을 받는다”며 2018년 10월 1일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 소송 제기
 - Mozilla, Vimeo, Etsy 등 인터넷기업들은 FCC 결정을 뒤집기 위해 2018년 2월 22일 항소법원에 소송 제기, 22개 주 정부 및 콜럼비아 특별행정구도 소송에 합류
 -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미국케이블TV협회(NCTA), 미국이동통신협회(US텔레콤), 미국케이블사업자협회(ACA) 등은 2018년 10월 18일 버몬트주의 망 중립성 법안 무효소송 제기

나. EU

- 망 중립성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EU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규제 수단을 마련해놓아 망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투명성, 비차별성, 회계분리, 접근 제공, 가격 규제 등의 의무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도 최종 소비자 계약관련 정보 투명성이나 단대단 접속 보장 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적용의 복잡성, 접근 및 상호접속 의무 부과 한계, 보편서비스의 제한적 범위 등과 같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
- o 2009년 11월 24일 EU 의회는 시장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망 중립성 관련 규정을 보완한 통신규제 개혁안(Telecoms Reform Package)을 통과시킴
 - ※ 통신규제 개혁안은 통신 약자에 대한 보호 등 망 중립성 이외에도 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개혁안 포함
 -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의 제20조, 계약 : 기존 필수 공개 정보와 더불어 트래픽 관리 방식,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및 QoS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포함시킴
 -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의 제21조, 투명성과 정보의 공표 : 제1항은 회원국 규제기관들이 ISP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고, 제2항과 제3항은 기타 정보의 공표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의 제22조, 서비스의 품질(Quality of Service)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의 공표에 대해 다루며, 제3항에서 회원국의 규제기관이 최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장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o 2011년 12월 BEREC, '망 중립성에 있어서의 투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ransparency in the scope of Net Neutrality)' 발표

<BEREC의 망 중립성에 있어서의 투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투명성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

o 투명성 충족을 위한 조건

- ① 접근성(Accessibility) ②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ility), ③의미성(Meaningfulness)*, ④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⑤ 정확성(Accuracy)

*의미성 : 이용자가 실질적인 활용 측면에서 정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 단계(판매계약 전, 계약 시점, 계약 후)에서의 계약 조건들이 제공되어야 함
 - 인터넷 서비스 판매 계약 전 : 특정 앱에 대한 차단 여부, 결합서비스 강제 여부 등
 - 계약 시점 : 지리적 특성, 회선 상황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약 여부 등
 - 계약 이후 : 트래픽관리 정책 또는 Data Cap 적용 등 변경 사항, 서비스 정책변경에 따른 실시간 정보제공 여부 등

- 제공정보의 범위 : 일반 정보에서 개별(특정)상황 관련 정보까지
 - 일반정보 : 평균속도 등
 - 개별(특정)상황 관련 정보 : 데이터 사용량, 특정 지역에서의 최대 속도 등 구체적인 상황 등

□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두 가지 접근**

- 직접 접근 : 규제기관이 ISP들에 대해 제공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에 대해 결정
- 간접 접근 : 인터넷 커뮤니티의 기술전문가, 가격비교사이트, CP, 소비자 단체, 학계 및 표준 관련 전문가 등 써드파티에 의한 정보 제공
(간접 접근 방법은 직접 접근 방법을 보완)

□ **투명성 정책의 적용 시 고려사항**

- 트래픽 관리 방법들의 효과상의 차이, 제공상품 형태별 차이(단일상품, 관리형 서비스, 번들 등), 네트워크 타입과 기술상의 차이*, 이용자 및 사용 타입의 차이 등
 - *네트워크 타입과 기술상의 차이 : 유무선 인터넷망의 운영 원칙이 같고, 동일한 기술적 문제에 봉착해 있으므로 투명성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기술 특성상의 차이는 고려 가능
예) 무선의 경우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의 사용가능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움

□ **투명성 정책의 내용**

- 제공가능한 서비스, 용어의 개념, 광고 속도, 실제 속도, 최소한의 QoS(속도, 패킷 지연, 손실 등), 가격 정보, fair use policy에 관한 사항, 데이터 상한제/다운로드 제한(초과 시 조치)
- 트래픽 관리(혼잡 관리, 주파수 대역 제한, 우선 처리, 차단)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영향 등

- 2012년 11월 BEREC, '망 중립성에 있어서의 QoS에 대한 가이드라인 (BEREC Guidelines for Quality of Service in the scope of Net Neutrality)' 발표

< BEREC의 망 중립성에 있어서의 QoS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서비스 질 저하(degradation)의 2가지 분류**

- 전체적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 질의 저하
-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질의 저하

□ 규제 개입의 결정 기준

- 인터넷 접속 사업자(IAS)의 서비스 질 저하로 규제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 기관은 가능한 방식들을 선택
 - 시장 메커니즘이 적절한 방식으로의 변환을 어렵게 한다면, 경쟁촉진과 사업자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대안
 - 만약 적절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소 QoS 충족 요건 부여가 적절
- 최소 QoS 충족 정책 사용 시 주요 원칙은 유효성, 필요성, 비례성
 - 유효성: 최소 QoS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의 질 저하의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야 함
 - 필요성: 다른 규제 수단이 고려되었으나 불충분하여야 함
 - 비례성: 적절한 범위를 한정하고 충족을 위해 부과된 의무는 목적 사항에 비례해야 함

- 2013년 9월 EC는 EU의 통신시장 단일화를 위하여 망 중립성을 포함한 EU 통신 개혁 법안 마련
 - 기존 규제프레임워크 하에서 트래픽 차단에 대한 회원국 규제기관의 규제 개입 권한이 없으므로 망 중립성을 입법화하여 규제관할권 확보
 - 망중립성, 인터넷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 등 정의
 - 망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발신자, 수신자, 유형, 콘텐츠, 기기,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관계없이, 차별, 제한 또는 방해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정의(제2조 12a)
 - 인터넷 서비스는 망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의 연결을 제공하는 공중 전기통신서비스(제2조 14)로 정의
 - 관리형 서비스(제2조 15)는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위해 최적화된—즉, 논리적으로 분리된 설비를 통한 제공, 엄격한 수용제어, 단대단(end-to-end)상의 향상된 품질을 요구하는 기능성 제공,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대체서비스로서 상용화되거나 가용되지 않는 등의 특성들로 조합된—전기통신서비스로 정의
 - 이용자의 권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의무 등 규정
 - 최종이용자의 권리(제23조 1)는 최종이용자가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의 위치, 서비스, 정보 또는 콘텐츠의 장소, 원천, 목적지와 관계없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해 정보와 콘텐츠의 접속과 유통,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운영과 제공, 그들이 선택한 단말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 투명성(제23조 4)측면에서, 최종이용자는 관련법에서 규정된 정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통과 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트래픽 관리 조치에 대한 정보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을 규정
- 인터넷 제공사업자의 의무측면에서 관리형 서비스 제공, 트래픽 비차별, 트래픽 관리, 민원절차 등을 명시
- 관리형서비스 제공은 네트워크 용량이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더불어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과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일반적인 품질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제23조 2)
- 트래픽 비차별에서는 인터넷 접속 제공업자들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트래픽 관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차단, 속도저하, 변경, 품질 저하, 차별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제23조 2)
- 트래픽 관리측면에서는 트래픽 관리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비례적이고 필요한 경우에((a) 법원명령의 이행 (b)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의 통합성과 안정성 유지 (c) 최종 이용자가 원치 않는 통신 방지 (d)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네트워크 혼잡 방지 및 완화 시) 가능하지만,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가 적절하고 명확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불만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제23조 5)
- 각국 규제기관은 품질(QoS)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한을 지니며, 관련 목적에 부합하는 최저품질보장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규제당국은 이용자의 QoS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위원회와 BERE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제24조 1)

< EC의 망중립성 관련 법안내용 >

제 2 조 - 제 2 - 12조항(신규)

(12a) “망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발신자, 수신자, 유형, 콘텐츠, 기기,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관계없이, 차별, 제한 또는 방해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조 - 제 2 - 14조항, 15조항

(14)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망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의 연결을 제공하는-네트워크 기술이나 사용된 단말장치와 관계없이, 사실성 인터넷의 모든 종말점을 연결-공중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15) “관리형 서비스”는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위해 최적화된-즉, 논리적으로 분리된 설비를 통한 제공, 엄격한 수용제어, 단대단(end-to-end)상의 향상된 품질을 요구하는 기능성 제공,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대체서비스로서 상용화되거나 가용되지 않는 등의 특성들로 조합된-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 23 조 오픈 인터넷 접속 제공 및 이용의 자유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1. 최종 이용자는 최종 이용자 또는 공급자의 위치, 서비스, 정보 또는 콘텐츠의 장소, 원천, 목적지와 관계없이 그들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해 정보와 콘텐츠의 접속과 유통,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운영과 제공, 그들이 선택한 단말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최종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와 데이터양과 속도에 관한 계약과 데이터양에 관한 계약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제공자의 모든 오픈의 이용에 관한 자유를 가진다.

2. 인터넷 접속 사업자, 공중 전자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들은 최종 이용자에게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들은 네트워크 용량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더불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과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최종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능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최종 이용자에게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와 공중 전기 통신 사업자는 서비스의 정해진 품질과 할당된 용량으로 관리형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양이나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하여 상호 협정을 맺을 수 있다.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일반적인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아야한다.

3. 이 조항은 Union 또는 국가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전송되는 정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한한다.

4. 최종 이용자는 조항의 1,2 단락에서 규정된 정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통과 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트래픽 관리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20(2)조, 제21(3)조, 제21a조와 2002/22/EC Directive에 따라 규정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5.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는 데이터양이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속도에 대한 제한을 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차단, 속도저하, 변경, 품질 저하, 차별함으로써 단락1에서 규정된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트래픽 관리 조치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비례적이고 다음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 a) 법원 명령의 이행을 위해
- b)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최종 이용자의 단말기의 통합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 c) 그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최종 이용자에게 원치않는 통신의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 d)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경우,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트래픽 관리 조치는 필요한 시간이상으로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트래픽 관리 조치는 95/46/EC Directive를 위반하지 않고 오직 이 단락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수반해야 하며, 통신의 비밀에 대해 2002/58/EC Directive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는 이 조항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명확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두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는 관련 사항을 각국 규제기관에 제기하는 최종 이용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안전 조치

1. 제 23조에 관하여 30a조 하의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국 규제기관은 제23(5)조의 준수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는 품질 수준에서 비차별적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들은 관련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혁신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각국 규제기관은 이들의 모니터링과 조사 결과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원회와 BEREC에 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2.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 저해를 방지하고 콘텐츠나 정보에 접속하고 유통하는 최종 이용자의 콘텐츠, 또는 정보의 접근과 유통, 그들의 선택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 규제기관은 최저품질보장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각국 규제기관이 정의한 다른 품질 평가기준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각국 규제기관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기 전에 그러한 조치의 이유, 예상되는 요구사항, 조치의 경과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BEREC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예상된 요구조건이 시장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문이나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예상된 요구 사항은 위원회가 위원회와 각국 규제 기관이 동의하지 않거나, 단축된 검토기간을 각국 규제 기관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위원회가 코멘트나 권고사항을 만들지 않았다면 위원회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의 기간 동안 채택되지 말아야 한다.

각국 규제 기관은 위원회의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최대한 고려하고, 위원회와 BEREC에 채택된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3. 이 규제의 채택 6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면밀한 협력과 이해관계자들의 자문 후에, BEREC은 트래픽 관리 조치의 적용과 규정 준수의 감시를 포함하여 이 조

항 하의 각국 기관의 의무 이행을 위한 동등한 조건을 정의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2015년 6월 30일 유럽각료이사회-유럽의회-EC간 3자 망중립성 법안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2015년 10월 27일 유럽의회 최종 표결로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
 - ISP가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든 트래픽에 대해 차별, 제한 또는 간섭없이, 그리고 송수신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또는 이용하는 단말장비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다루어야 함
 -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상황이 다르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역으로 상이한 상황이 동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됨
 - 트래픽 관리의 대원칙인 비차별적 트래픽 관리는 ISP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조치 실행을 금지하지 않음
 - ISP의 트래픽 관리조치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충족이 필요함
 - 트래픽 관리조치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비차별적, 비례적이어야 함
 - ※ 트래픽 관리조치의 요건이 비차별적이어야 함은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반적인 전송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상이한 범주의 트래픽을 차등적으로 다루는(differentiate) 트래픽 관리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음을 의미
 - 상업적 고려가 아닌 특정 범주의 트래픽이 갖는 객관적으로 상이한 기술적 품질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
 - 특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유지되어서도 안 됨
 - ISP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조치를 벗어나는 트래픽 관리를 하여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트래픽 관리 허용

- 유럽연합 입법조치나 회원국 법령을 실행하는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네트워크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이용자 단말 장비의 통합성(integrity)과 보안성(security)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이 동등하게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네트워크 혼잡을 방지하고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네트워크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 ISP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해 특정 수준의 품질 요건이 필요한 경우 최선형 인터넷 외에 이를 자유롭게 제공할 권리를 가짐
- 다만, 동 서비스는 최선형 인터넷 이외 이를 위한 네트워크 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제공 가능하며, 최선형 인터넷의 이용 가능성과 전반적인 품질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최선형 인터넷의 대체상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 회원국 규제기관은 당해 최적화가 최선형 인터넷 관련 ISP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규명하여야 함
- ISP가 이용자와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함
- 트래픽 관리조치가 최선형 인터넷 품질, 이용자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 데이터 이용량 상한, 속도 등의 품질지표가 최선형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
 - 관리형 서비스가 최선형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
 - 최선형 인터넷의 다양한 속도기준, 광고상 제시된 속도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 권리행사에 미치는 영향
 - 최선형 인터넷의 속도 또는 다른 품질지표에 있어 실제성과 ISP가 제시한 성과 간 지속적 또는 규칙적인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이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조치

- ISP는 최선형 인터넷 관련 일반이용자 민원을 조치하기 위해 투명하고 간단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실행하여야 함
 - 회원국 규제기관은 ISP의 오픈인터넷 보장과 투명성 요건의 준수를 위해 ISP에게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의 최소품질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최소품질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회원국 규제기관은 BEREC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함
 - BEREC은 규제 발효 9개월 이내에 회원국 규제기관이 참고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도록 함
 - 각 회원국 규제기관은 망 중립성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법령 수립 및 필요한 조치 채택하고 그 결과를 2016년 4월 30일까지 EC에 통보하도록 함
- 2016년 8월 30일 BEREC, 오픈 인터넷 가이드라인 발표
- 가이드라인은 오픈인터넷규칙을 집행함에 있어 회원국 규제기관들로 하여금 통일된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2. 해외 제로레이팅 정책 동향

가. 미국

- 구 망중립성 규칙 하에서 사전규제 기준을 위반하는 제로레이팅은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후규제*하던 것을 '17.2월 “이용자, 특히 저소득층에게 인기가 많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완전 허용

* 사후규제기준(일반행위규칙)은 최종이용자 선택, 경쟁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 보호, 혁신/투자/브로드밴드 구축에 미치는 효과, 표현의 자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의 관련성, 업계표준 관행 등 7개 기준

- '17.1월 통신사의 자사/100%자회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2월 별도 조치 없이 관련 조사 종결
- 위 보고서의 주된 논거는 비용 측면에서 통신사는 매우 적은 비용만이 소요되나, 경쟁 CP들은 유의적인 비용(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 발생한다는 것임
 - (AT&T “Sponsored Data”) FCC는 AT&T가 독립계 CP에게 제시한 Sponsored Data 참여조건이 자회사인 DirecTV에 제시한 조건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함을 보여주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일반행위규칙을 위반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AT&T 자회사인 DirecTV가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AT&T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독립계 CP와 동등한 수준일 필요가 없고, 그나마 내부이전가격(internal transfer payment)이어서 그룹 전체로서는 현금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독립계 CP들은 AT&T에게 상당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독립계 CP들이 DirecTV Now와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독립계 CP들이 AT&T에게 지불하는 GB당 대가가 DirecTV가 지불하는 대가와 일관된 경제적 원가(economic costs)인 경우에는 독립계 CP들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음
- (Verizon의 FreeBee Data 360) Verizon이 자사 관계서비스에 특혜를 주는 차별적 행위의 잠재성과 시장에서의 경쟁효과가 AT&T의 Sponsored Data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판단
- 동 서비스는 Verizon으로 하여금 자사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참여하는 독립계 CP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나. EU

- EC의 망 중립성 규정과 BEREC의 가이드라인은 제로레이팅에 대해 사후규제 접근법 채택
 - 망 중립성 규정에서는 제로레이팅 허용 또는 불허를 명시하지 않지만,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되 해당 거래가 “규칙 제3(1)조”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여 사안별로 평가하는 사후규제 채택
- BEREC 가이드라인은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상업적 행위 평가기준 적용하여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 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안별 판단 하되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부정적 입장 명시
 -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정상처리되고 그 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으로 금지됨
 - 특정 애플리케이션에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범주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ISP의 상업적 행위를 평가를 할 때 오픈인터넷규제 목적, 관련 ISP & CP의 시장 내 지위, 이용자권리 제한, 행위 규모 및 대안 존재 등을 고려하도록 권고
 - (망 중립성 규제 목적) 제로레이팅을 포함하여 ISP의 상업적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각국 규제기관은 서문(7)과 함께 규칙 제1조 및 서문(1)에 명시된 동 규칙의 목적을 고려해야 함
 - (관련 ISP & CP의 시장 내 지위) 상업적 행위에 참여한 ISP와 CP가 시장 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용자의 권한 행사에 더 큰 제약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이용자 권리 제한) 사업자 보호가 아닌 ISP-CP의 상업적 행위가 이용자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는지 여부에 집중
 - (행위 규모 및 대안 존재) 다수의 최종이용자가 관심을 보이고, 최종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상품 및 경쟁 ISP가 적은 상황에서는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을 받을 것임
- '17.12월 BEREC이 발표한 각국 규제기관의 '망중립성 규제 시행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로레이팅 관행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 동 보고서에서는 규제 사례들을 먼저 트래픽 관리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이후 모든 CP들에게 비차별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 사실상 사전적으로 트래픽 관리가 없고,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일조건 요구)

<트래픽 관리가 있는 경우>

- (독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제휴서비스 및 비제휴 서비스를 SD 화질로만 제공(전송지연)하였기 때문에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으로 판단

- (스웨덴/오스트리아/이탈리아/크로아티아/헝가리)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이용가능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한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으로 판단

<트래픽 관리가 없는 경우>

- (영국) 메시징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데이터 사용량이 소량에 불과하고 모든 CP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공식 조사 개시하지 않음
- (네덜란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모든 CP에게 개방되어 비차별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

다. 기타

□ 인도

- 통신규제기관 TRAI는 '15년부터 제로레이팅을 포함한 OTT 성장에 따른 규제프레임워크 변화에 관한 자문을 시행하여 1백만 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6년 법령으로 제로레이팅을 금지하기로 결정
- ISP는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플랫폼 별로 차별화된 요금 부과를 할 수 없어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불허하고 있음
- 인터넷의 단대단 원칙, 보편적 네트워크 프로토콜 채택, 상호접속협정에 의한 네트워크 연동, 글로벌 차원의 연동 망, 이용자가 곧 콘텐츠 생산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콘텐츠에 기반한 요금 차별화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로 발전해온 점에 반한다고 판단
- 사전규제 이유는 사후규제가 합리적이지만, 사후규제는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여 네트워크 투자를 꺼려할 수 있다는 점, 문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규제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자금이 많은 사업자에 유리한 점 등 제시

- TRAI는 약 3개월이 지난 '16.5월 제로레이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자문서 발표
 - TRAI는 “(문제가 되는) 차별적인 요금제라는 특징을 벗어나면서도 무료데이터 제공이 주는 편익을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
 - TRAI가 제로레이팅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은 인터넷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거나 과소하게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주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임
 - 다만, TRAI는 대형 ISP나 CP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들 스스로가 Gatekeeper가 되는 요금제가 아니면서 이용자들이 보다 많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임
- TRAI는 자문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6.12월 기존 법령 준수 하에 무료데이터 제공을 통해 교외지역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을 장려하는 권고안 발표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기기 사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교외 지역 가입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데이터 제공량(월 100MB)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음
 - 정부 주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편적서비스기금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통신사로부터 독립적이고 비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agggregator) 참여 필요성 제기
 - 무료데이터 제공 시 통신사 주도 또는 통신사와 제3자/콘텐츠 사업자 간 요금을 차별화하는 계약 및 '16년에 제정된 데이터 요금 차별 금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식은 허용하지 않아 기존 방침 유지

□ 네덜란드

- 과거 국내 통신법에 의거하여 금지 입장을 결정하였지만, 유럽연합의 망 중립성 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사전 금지 규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16.12.23일 규제기관 ACM(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은 T-Mobile의 음악스트리밍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차감을 하지 않는 'Data-free Music' service에 대해 네덜란드 망 중립성 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지할 것을 명령
- 하지만 '17.4.20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Rotterdam District Court)은 EU의 망 중립성 규정이 국내 통신법에 우선하는데 EU의 망 중립성 규정은 명백히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T-Mobile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결
- 이에 ACM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해당 서비스가 EU의 망 중립성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한 시민 단체의 요청에 대하여 문제없다고 결론내림

□ 벨기에

- 통신규제기관인 BIPT(The Belgian Institute for Postal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s)은 벨기에 최대 MNO인 Proximus의 제로레이팅을 조사한 결과 EU 망 중립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림
- Proximus는 자사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앱(예: Facebook, WhatsApp, Snapchat, Instagram, Twitter, Pokemon Go)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가입 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다가 모든 데이터를 소진하면 선택한 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표준요금(the standard rate)을 적용하여 과금하였음

- BIPT는 심결서에서 “현재로서는 Proximus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적용 앱이 정보 및 콘텐츠를 자유롭게 찾고 공유하려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하려는 인터넷이용자의 권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요소가 없다”고 언급

2-3. 해외 망 이용료 관련 사례

가. Cogent Communications-France Te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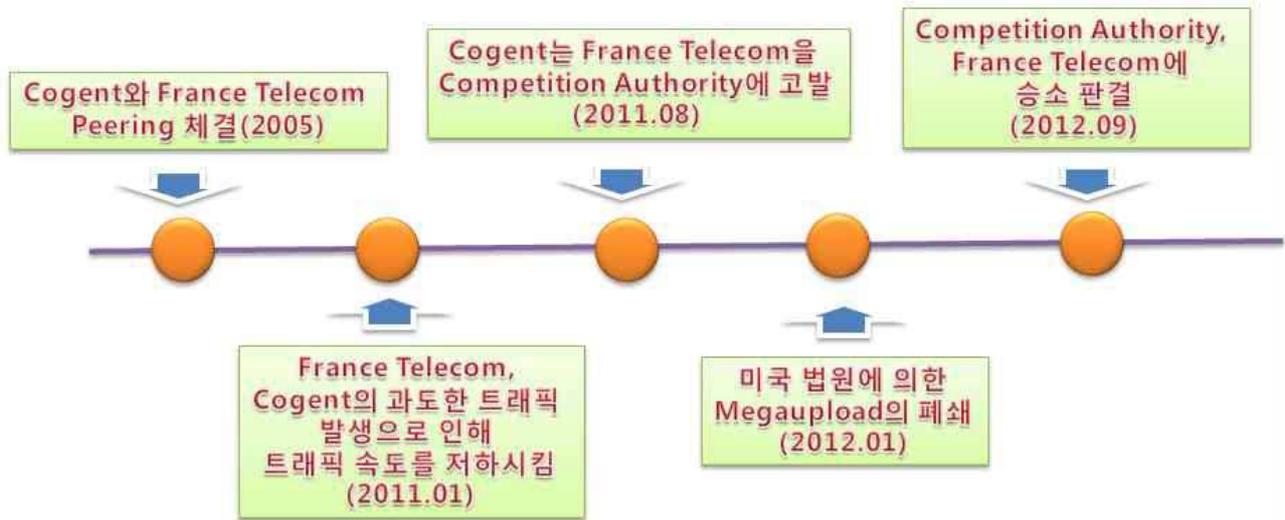
□ 개 요

- 글로벌 ISP인 미국의 Cogent Communications(이하 “Cogent”)와 France Telecom(이하 “FT”)는 2005년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접속을 유지
 - Cogent가 웹하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CP인 Megaupload와의 트래픽 전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FT의 네트워크로 과도한 트래픽이 전송
 - 이로 인해 양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상에 균형이 깨졌고 접속용량의 한계로 인해 용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봉착
 - 이에 Cogent는 양사간 체결된 Peering 협정에 따라 FT에 대한 Peering 접속회선의 용량 확대를 요청
 - 이에 대하여 FT는 Cogent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Cogent 측에서 전송되어 오는 트래픽의 처리속도를 저하 시키는 한편, Cogent에게 증가한 트래픽을 수용·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투자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
 - 이러한 요구에 Cogent는 FT가 가입자를 가진 ISP로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Cogent에게 부당한 대가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에 FT를 제소
- 프랑스 공정위 조사결과 Cogent-FT간의 Peering 협정에 따라 대가를 요구한 FT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없다고 보고 Cogent의 제재요구를 기각
 - 그리고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한 Cogent는 FT에게 해당 트래픽 처리 대가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결정

※ 실제 시장에서는 Cogent가 추가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트래픽 발생의 원인이었던 Megaupload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폐쇄되어 트래픽 유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Cogent-FT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다시 정상화되었기 때문

- 현재 양사는 상호무정산 방식의 Peering 접속을 유지

< Cogent와 France Telecom간 DePeering 경과 >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2012.9.12.)

□ 접속사업자

① Cogent Communications

- o Cogent는 1999년에 설립된 미국의 글로벌 ISP이며 현재 180개가 넘는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4,000여개가 넘는 타 ISP의 네트워크와 접속
- 2010년 기준으로 매출이 USD 2.63억(한화 약 2,860억 원)인 소위 Tier-1 사업자이며 전체 매출 중 유럽에서의 매출이 약 22% 정도
- 자체 보유하고 있는 IDC와 광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걸쳐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
- 주요 고객은 중소 ISP 또는 CP이며 도매거래를 주로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예를 들어 중소규모 회사나 NetCentric(통신사업자, SP, 애플리케이션/콘텐츠 제공사업자, 인터넷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등이 있음

o Cogent는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장거리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가 광케이블 기준으로 약 82,000km에 이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수도 30여개에 달함

- 또한, Cogent의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다른 ISP 사업자들과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AOL, FT, Level3, TeliaSonera, Orange, Sprint Nextel이 대표적

< Cogent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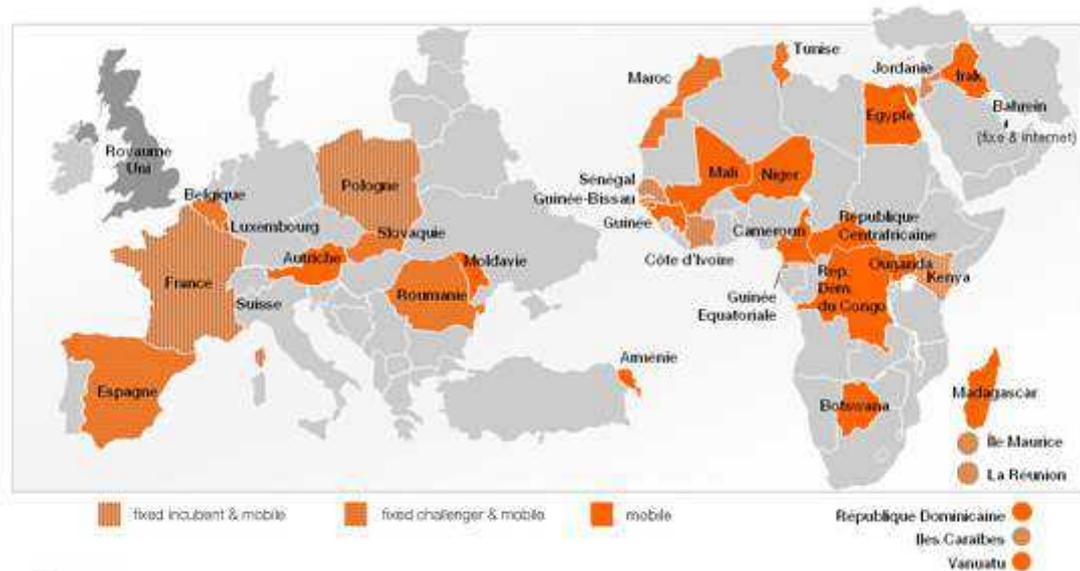
자료: Cogent 홈페이지

② France Telecom

o FT는 프랑스의 최대 통신사업자이자 대형 ISP로 전 세계적으로 2011년 기준 총 가입자 수는 총 2억 21백만 명에 이르고 매출은 €453억(한화 62.95조원)

- FT는 유무선 전화 서비스,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의 공식적인 브랜드로 Orange를 사용

< France Telecom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



자료: France Telecom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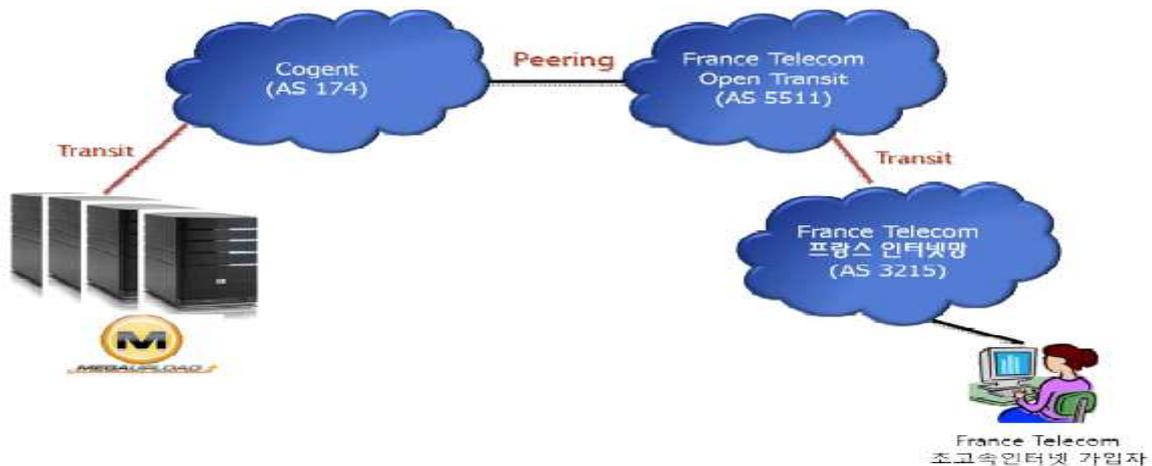
- 특징적인 것은 FT가 유럽의 대형 ISP로서 자국 내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Transit 사업자로서 여타 ISP에게 Trans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는 점
 - 분리 운용의 의미는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위한 인터넷망과 Transit 서비스 제공용 인터넷 망의 AS 번호(Autonomous System Number)가 다르고 접속정책 및 브랜드도 각각 별도로 있다는 것
 - ※ Orange 인터넷망(ASN 3215): 이용자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망으로 프랑스 내 여타 ISP와는 Peering 접속을 하고 있음
 - ※ Open Transit(ASN 5511): 프랑스 내 Orange 인터넷망과 접속되어 있으며 해외의 대형 ISP(즉 Tier 1)와도 Peering 접속을 하고 있는 인터넷망

□ Cogent-France Telecom의 접속 현황

- 미국의 ISP인 Cogent와 프랑스의 ISP인 FT는 2005년 양 ISP간의 네트워크에 트래픽 교환을 위해 Peering 협정을 체결
 - '11년 4월 기준 양사간의 Peering 접속 용량은 66.5Gbps였고, 접속점은 총 7개 PoP(Point of Presence)으로 유럽에 4개, 미국에 3개를 둠

- 양사간의 접속총량은 66.5Gbps이었지만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접속점에서의 접속용량은 2Gbps에 불과
- o 양사의 Peering 접속은 Cogent의 글로벌 Transit망(AS 174)과 FT의 Open Transit망(AS 5511)간의 접속
- FT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용도의 프랑스 내의 인터넷망은 FT의 Open Transit망과 접속
- Cogent는 웹하드업체인 Megaupload(영화, 음악 등 각종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와 Megavideo(Video Streaming 서비스 제공)를 고객으로 확보

< Cogent와 France Telecom간의 Peering 개념도 >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

- o 정산관계를 보면 Cogent(AS 174)와 FT의 Open Transit(AS 5511) 간에는 상호 무정산
- FT의 Open Transit과 프랑스 내 인터넷망간에는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Open Transit(AS 5511)이 Orange 인터넷망(AS 3215)에 Trans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서 Orange 인터넷망(AS 3215)이 Open Transit(AS 5511)에게 Transit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

- 또한, CP인 Megaupload는 Cogent의 Transit client로 Cogent에게 Transit 비용을 지불
- o 한편, Cogent-FT(Open Transit)간 체결한 Peering 협정은 양 ISP가 Peering을 통해 교환하는 트래픽 비율에 관하여 Inbound 트래픽량이 Outbound 트래픽량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과금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Cogent-France Telecom Peering Policy 중 트래픽 교환 비율 규정 >

France Télécom states in its Peering policy that it would charge for opening additional capacity if the incoming traffic entering its network exceeded the outgoing traffic by a factor of more than 2.5. This ratio was specified in the agreement between Cogent and France Télécom concluded in 2005.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

□ DePeering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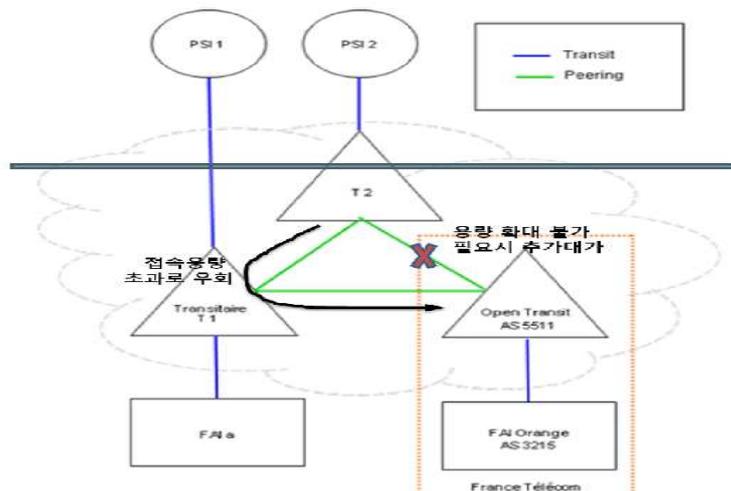
- o Cogent-FT간 Peering 관계가 파기된 직접적인 원인은 Cogent가 Megaupload라는 CP와 Transit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
- 즉, Cogent는 FT와의 Peering을 하는 중에 홍콩의 콘텐츠 사업자인 Megaupload와 Transit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Cogent의 망을 통해 FT의 이용자들에게 Megaupload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양사간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기울기 시작
- Cogent의 제소에 따라 양사 분쟁 조사에 임한 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따르면 Megaupload의 콘텐츠 전송으로 인해 Cogent가 전송하는 트래픽(Cogent→FT)이 그 반대 방향 트래픽의 평균 4배 이상, 최대 13배 이상까지 증가하면서 교환 트래픽 비율이 Peering 조건에 비해 상당히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접속 ISP 주장 및 논리

① Cogent의 주장

- FT는 2010년에 Cogent와 Peering 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ogent의 AS번호가 포함된 트래픽에 대해 전송을 거부한 것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ogent의 Transit망과 FT의 Open Transit망간의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것인데 FT가 양사간의 접속용량 확대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Peering 협정상 문제가 존재
 - 특히, FT의 Open Transit망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회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송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Cogent로서는 CP의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FT가 접속용량 확대를 이유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

< Cogent와 FT의 DePeering 개념도 >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

- 또한, Cogent는 현재 프랑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속도가 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사 간 접속용량이 작은 것도 문제이지만 FT가 자사 가입자에게 Megaupload와 관련된 트래픽의 속도를 저하시켰기 때문 이라고 주장

-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사의 접속용량을 확대하고 FT가 트래픽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 o Cogent는 양사가 Peering 관계에 있으므로 자사 Transit망과 FT의 Open Transit망간 프랑스 내 접속점을 확대하여 접속용량 확대와 함께 프랑스 초고속 가입자로 착신하는 트래픽을 분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FT가 거절하였다는 것
- 또한, Cogent 입장에서는 FT가 Cogent에게 추가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소위 Peering 접속에 있어 정상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
- o 결론적으로 Cogent는 FT가 접속점 확대를 거부하고 접속용량 확대에 따른 추가 투자비용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

② France Telecom의 주장

- o FT는 Cogent와 Peering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양사의 접속용량 중 프랑스 내에서 이용되는 것은 5% 미만으로 FT 입장에서는 Peering 용량을 늘릴 경제적 유인이 없어 확대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o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Cogent가 Megaupload라는 CP의 데이터를 Transit하면서 양사 간 교환트래픽 비율에 심한 불균형이 생긴 것
 - 특히 2009년 12월 양 ISP간의 트래픽 전송 비율이 13:1까지 차이가 발생
 - 이는 양ISP간 체결한 Peering 협정의 내용 중 양 ISP의 트래픽 전송 비율이 2.5:1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ISP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에 해당
 - 따라서 Cogent에게 증가된 트래픽 처리를 위한 망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③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 결론

- 양사의 입장을 조사한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FT가 Cogent에게 추가 대가를 요구한 것은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 Cogent가 CP인 Megaupload를 위해 Transi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양사간의 교환트래픽 비율의 비대칭 현상, 트래픽 양 급증에 따른 FT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속도가 저하된 것과 더불어 FT가 자사의 가입자에 대하여 Cogent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 또한, FT가 Cogent와 체결한 Peering Policy에 따라 기존에 Peering 차원에서 교환하고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가 아니라 향후 증가되는 트래픽에 대하여 추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Cogent의 제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

□ 결과: Megaupload 폐쇄에 따라 Peering 접속 재개

-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Cogent가 제소한 FT의 Peering 접속 거부 등을 통한 지배력 남용 행위 관련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지음
- 즉, 프랑스 공정위는 Cogent에 대한 France Telecom의 행위는 정당할 뿐 아니라, Cogent의 고발 사항에 관련에 양 ISP간 체결한 Peering 협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밝힘
- 한편, Cogent의 Transit 서비스를 이용하던 Megaupload는 2012년 1월 미국 정부와 지적 재산권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irate Laws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폐쇄됨
- Megaupload의 폐쇄는 FBI의 조사와 미국 법원 결정에 따른 것
- Megaupload의 폐쇄로 인해 Cogent는 더 이상 Megaupload 콘텐츠를 Transit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FT의 Open Transit과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대칭에 유사해져 결국 FT와의 Peering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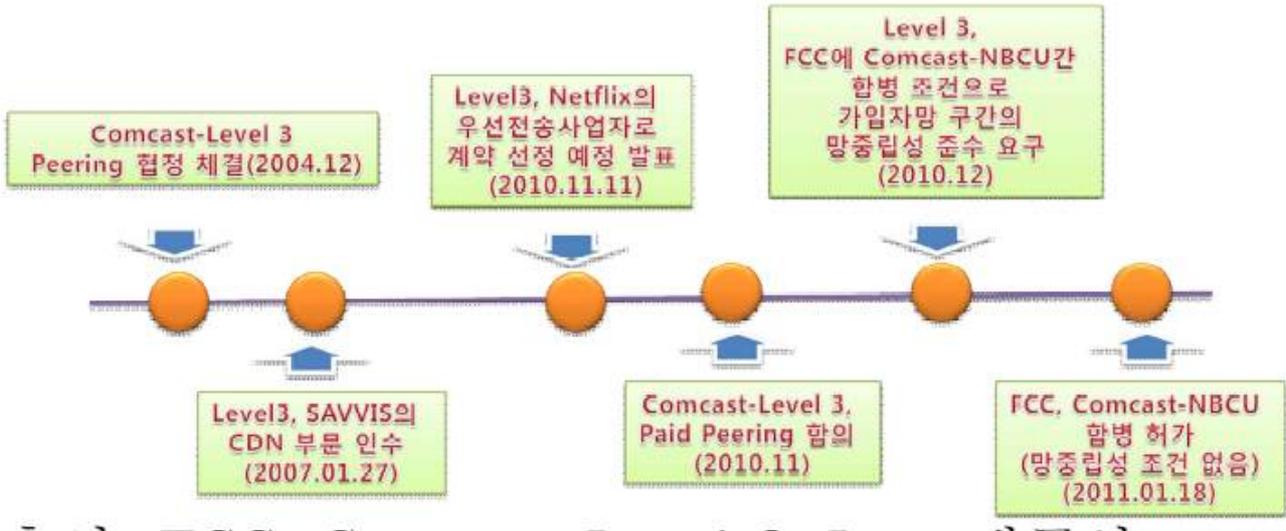
- 현재 Cogent와 FT간 접속용량이 66.5Gbps인데 이 중 약 40%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나. Comcast-Level3

□ 개 요

- 2004년부터 Comcast와 Peering 협정을 체결·유지하고 있던 Level3은 2010년 11월 대형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인 Netflix의 우선전송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정
 - 이로 인해 Comcast에 대해 접속용량 확대가 필요했고, Netflix의 트래픽을 처리하면서 실제 대량의 트래픽을 Comcast 측으로 전송하면서 양사간 교환트래픽 비율의 균형이 무너짐
 - 이에 Comcast는 Level3에게 더 이상 Peering 협정이 유효하지 않으며 CDN을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 소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을 요청하였고 Level3이 이를 거부하자 협상이 결렬되어 었고 DePeering이 불가피해짐
- 그러나 양사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2010.11.29일 Comcast가 제안한 Paid Peering에 합의
 - 당시 Comcast는 NBC Universal(이하 "NBCU"라 한다.)과의 합병 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양사간의 Paid Peering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Level3은 FCC에 Comcast-NBCU간 합병인가조건에 Comcast의 가입자망에 대한 망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여해줄 것을 청원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오랫동안의 갈등 과정을 거쳐 결국 Level3은 Comcast에게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양사는 DePeering 관계를 정리하고 Paid-Peering 관계로 전환

< Comcast-Level3간 DePeering 분쟁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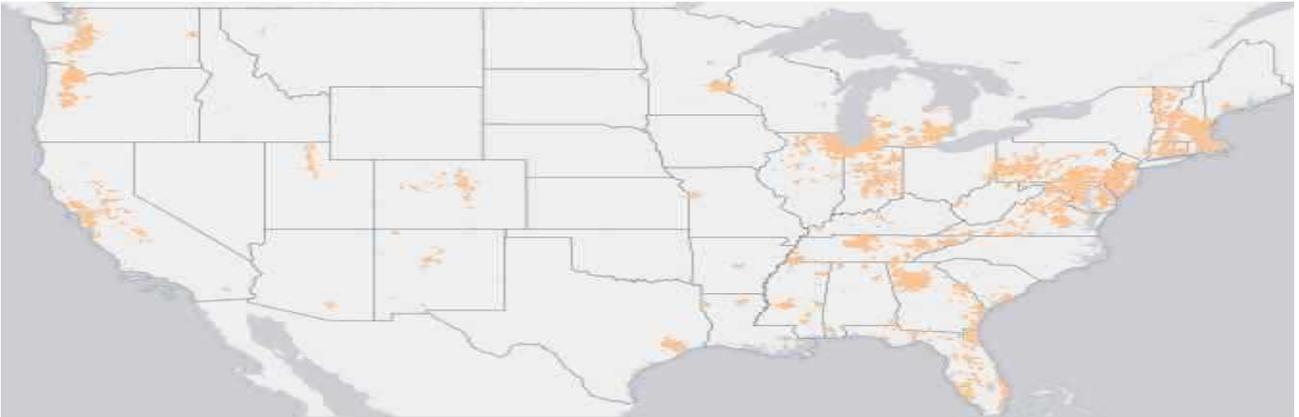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

□ 접속사업자

① Comcast

- o Comcast는 1963년에 설립된 미국의 통신&미디어 회사로서 미국 최대 CATV 사업자이자, ISP로 CATV, 브로드밴드, 전화서비스, 주택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또한, E! Entertainment Television, Style Network, G4, The Golf Channel, NBC Sport Network 등 다양한 케이블 네트워크를 보유
 - 2012년 2사분기 기준으로 브로드밴드서비스 가입자는 1,874만 명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미국 40개 주에 이르며 미국 전체 인구의 1/3이 이용 가능한 수준

< Comcast의 브로드밴드서비스 커버리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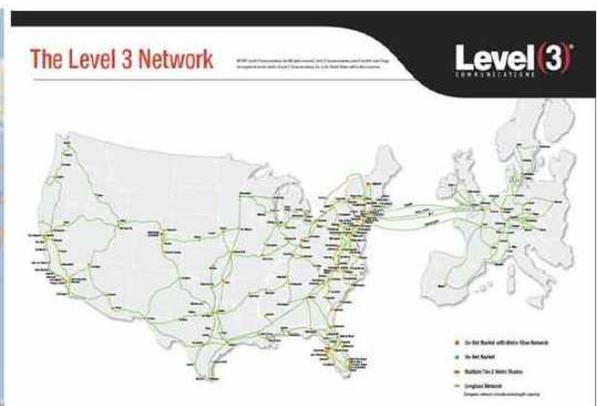


자료: Broadband.gov(2012)

② Level3

- o Level3은 1985년 KDG(Kiewit diversified Group Inc)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되었으나, 1998년 회사명을 Level3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름
 - Level3은 미국의 다국적 통신회사이자 글로벌 ISP
- o Level3은 대표적인 Tier 1 사업자로 분류되며, 북미,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제공
 - Level3은 SAVVIS로부터 CDN 부분을 인수한 후 Netflix와 Apple의 음악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CDN 업계에서도 급부상
 - 현재 Level3은 45개국의 450여 개가 넘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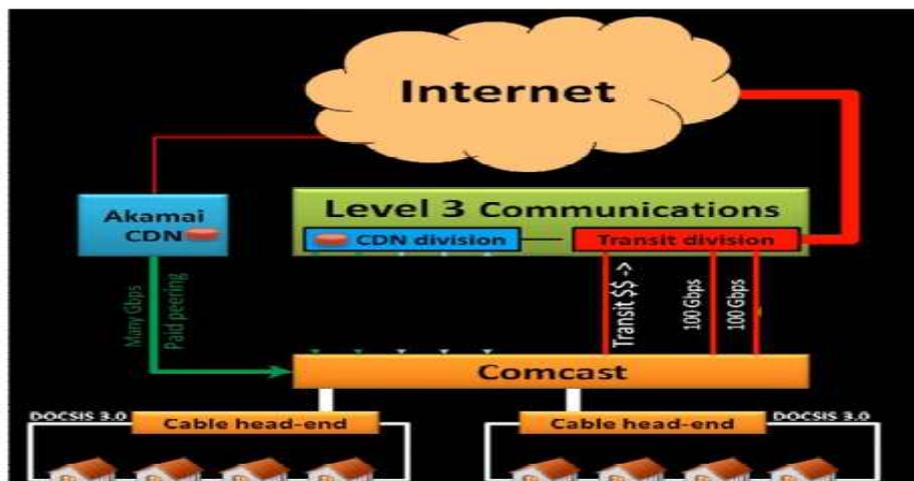
< Level3 네트워크 커버리지 >



□ 접속 현황

- Comcast-Level3의 DePeering 분쟁이 발생한 2010년 당시의 접속현황은 크게 Level3이 Netflix의 트래픽 처리를 위한 협정체결 이전 현황을 말함
 - 양사는 Transit 서비스를 위한 접속과 Peering 접속 모두 존재
- 먼저 Transit 서비스 제공 및 이용관계를 보면, Comcast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한 ISP이고 Level3은 글로벌 Connectivity를 제공하는 Transit 사업자
 - 일반적으로 ISP는 Transit 사업자와 접속을 하게 되면 Full Connectivity를 제공받는 대신 일정한 비용을 지불
 - 분쟁이 발생할 당시 Comcast 역시 Level3에게서 Transit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었는데 그 용량은 200Gbps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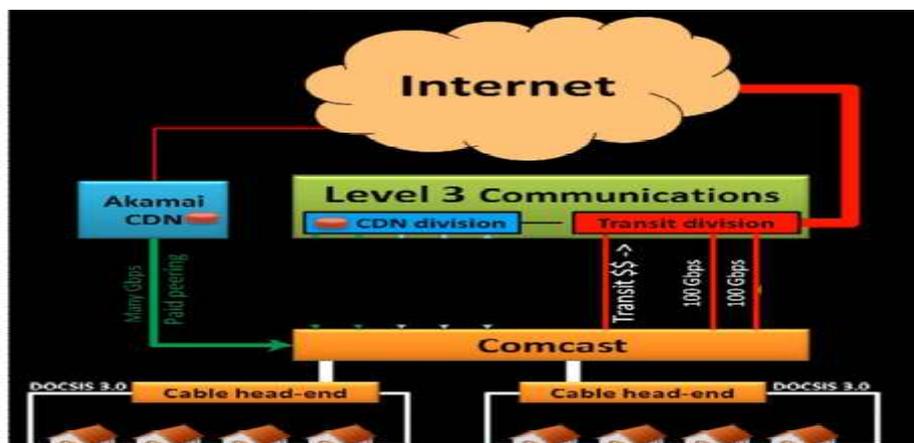
< Comcast-Level3 Transit 서비스 제공 현황 >



- 한편, 2004년 12월, Comcast와 Level3은 양사간 Peering 협정체결을 통해 트래픽 교환에 대한 협약을 맺고 네트워크 교환 서비스를 제공
 - 이 Peering 협정을 근거로 양사는 상호 무정산하는 트래픽으로 200Gbps의 회선을 접속

- 이 협정은 Level3이 Netflix의 콘텐츠를 전송하기로 하기 이전으로 교환 트래픽 비율이 양사의 Peering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음
- o 특징적인 것은 Transit 사업자인 Level3은 2007년 1월 SAVVIS로부터 인수한 CDN 부문이 있었기 때문에 Transit 서비스뿐만 아니라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 함께 있었다는 점
- 이는 Level3 내에서도 타사업자와의 정산관계가 다른 사업 부문이 존재한다는 의미
- o Transit 서비스 부분은 ISP와 접속을 통해 대가를 받지만 CDN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트래픽 교환비율의 차이가 커서 해당 트래픽이 착신되는 ISP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
- 따라서 Level3이 Comcast와 접속하는데 있어 CDN 사업자로서 접속을 요청한다면 Transit과는 반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 o Comcast가 Level3에 대해서 CDN 트래픽량을 이유로 대가지불을 요구하게 된 것은 Level3이 Netflix의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는 사업자로 선정되면서부터임
- 2010년 11월 Level3은 당시 Akamai가 수행하던 Netflix의 트래픽 전송 사업 입찰에서 이기면서 Comcast에게 기존 Peering 접속망 확대를 요구하게 됨

< Comcast-Level3 Transit 서비스 및 Peering 접속 현황 >



□ DePeering 원인

- Comcast와 Level3이 Peering 접속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CDN사업자로서 Netflix를 유치한 Level3이 타 CDN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트래픽 교환비율이 비대칭적인 CDN 트래픽에 대해서도 기존 Peering 협정을 근거로 Comcast에게 Peering 접속용량 확대를 요구하였기 때문

① Netflix 접속으로 인한 트래픽 교환비율 비대칭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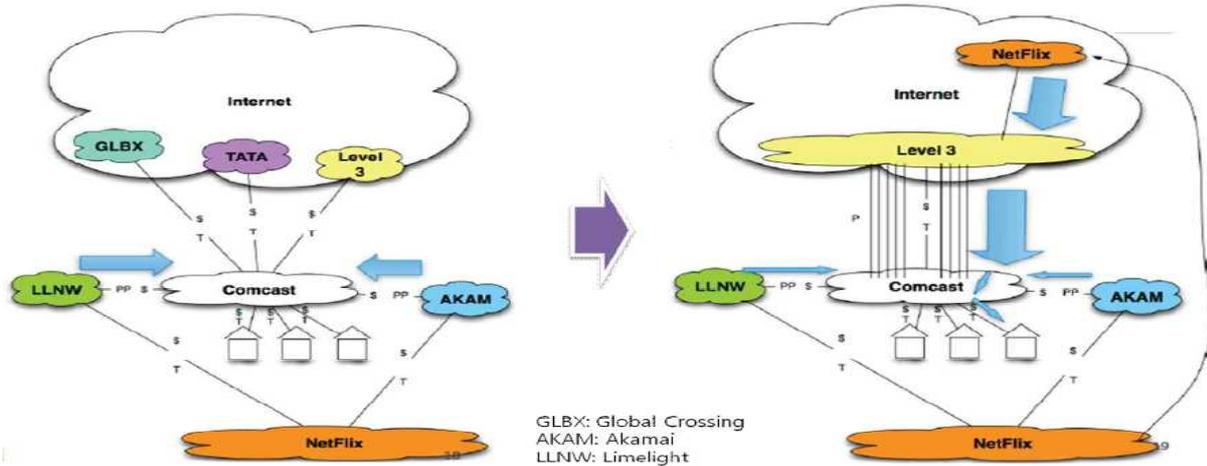
- Comcast가 Level3의 CDN 트래픽에 대한 Peering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Level3이 CDN 서비스를 통해 Comcast에 착신시키는 트래픽이 지나치게 비대칭적이었기 때문
 - Comcast는 Peering 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며 다른 CDN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Paid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요구
 - 이는 Comcast가 가지고 있던 Peering Policy에 배치되며, 또한 Netflix와 같은 Video 콘텐츠를 ISP에게로 착신시킬 경우에는 교환비율이 30:1 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② Level3, Paid Peering 접속을 해온 CDN 트래픽에 대한 Peering 요구

- Level3은 Transit 서비스 외에도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Level3이 기존 Akamai가 제공해오던 Netflix 트래픽 전송 계약 관련하여 Netflix의 우선사업자로 선정됨
 - 그런데 다른 경쟁 CDN 사업자보다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Comcast와 Peering 협정을 활용하려 하면서 Comcast와 분쟁이 발생
 - 즉, Akamai를 포함한 다른 CDN 사업자들은 Comcast와 같은 ISP에게 Paid Peering 접속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오고 있는데,

- Level3는 Comcast와 체결한 Peering 협정을 통해 Peering 접속 용량 확대를 추진하여 ISP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가를 회피하여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던 것

< Level3의 Netflix관련 CDN 참여에 따른 변화 >



자료: Digital Society

□ 접속 ISP 주장 및 논리

① Level3의 주장

- o Level3은 CDN 트래픽에 대한 Peering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Comcast가 Open Internet 규칙(소위 망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 즉, Netflix가 제공하는 Video 콘텐츠에 대해 Paid Peering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 콘텐츠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Open Internet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
- o 또한, 당시 Comcast가 인수를 하려던 NBC Universal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낮게 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Comcast의 Peering 협정 체결 거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
 - 망중립성에 근거한 논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체결한 양사의 Peering 협정에 따라 무료로 추가적인 접속용량 확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

- 결론적으로 Level3이 CDN 트래픽에 대해서 Comcast와 Peering 협정을 체결하려는 목적은 가격경쟁력 확보라고 설명하였지만 Comcast의 협정 거부에 대한 해결방안은 망중립성 차원의 접근과 기존 Peering 협정에 근거한 접근 모두를 활용
- o Level3은 당시 Comcast가 미국 대형 방송사인 NBCU을 인수하기 위해 FCC에 인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FCC에 인수 조건으로 Comcast의 가입자망 구간에 대하여 망중립성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

② Comcast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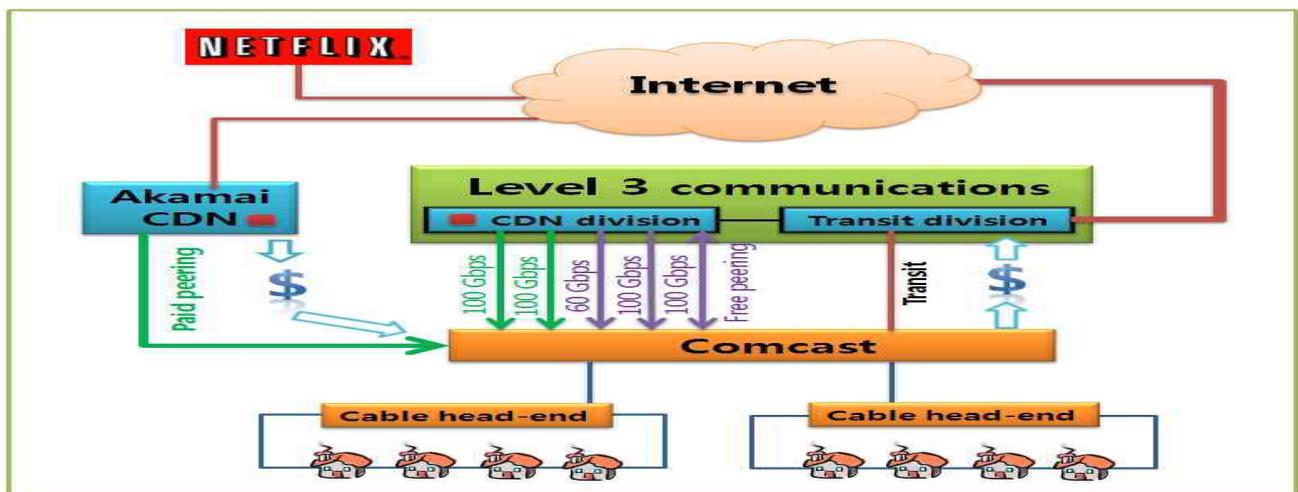
- o Comcast는 Level3과의 Peering 분쟁은 망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며 이전 부터 인터넷 접속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협상 문제라는 입장
 - 즉, 온라인 Video 콘텐츠에 대해서만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적용하며, 대가를 지불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소위 paid prioritization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Open Internet 규칙 위반 논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o Comcast는 Internet Video traffic 전송을 거부하거나 추가 대가 부여를 위한 별도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관문(toll)을 설치한 바도 없다고 주장
 -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막대한 트래픽을 착신시키는 CDN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업적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아 왔음
 - Level3만이 동일한 CDN 트래픽에 대해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도출을 하고 있지 못하고 결국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주장
- o Comcast는 당초 Level3이 300Gbps의 Peering 용량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 급한대로 최초 60Gbps(한 포트당 10Gbps)를 무정산 차원에서 제공했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

- 추가되는 200Gbps에 대해서는 Peering을 거부하고 대가를 요구
- 결론적으로 Comcast는 Level3의 CDN 트래픽에 대해서는 Paid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 결론: Paid Peering으로 접속용량 확대

- o Comcast와 Level3의 Peering 갈등은 Level3이 Paid Peering 방식으로 기존의 CDN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
- Comcast는 트래픽 교환비용이 전반적으로 지켜졌던 기존의 Peering 접속회선과 Netflix 호소통을 위해 증속하였던 60Gbps에 대해서는 추가 대가를 부과하지 않음
- 이후 Level3이 요청하여 확대하는 접속회선에 대해서는 Paid Peering 협정 조건에 따라 대가를 부과하기로 함

< Comcast-Level3 Peering/Paid Peering/Transit 접속 >



자료: Digital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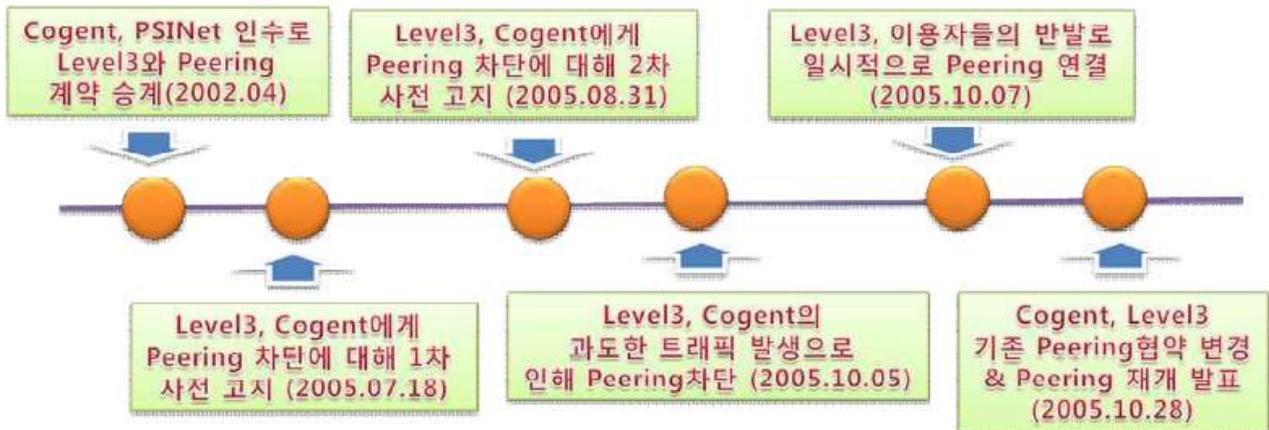
- o 더불어 Level3이 제기한 Comcast의 NBCU 인수 조건으로 망중립성 준수 의무 부여는 이루어지지 않음
- FCC가 Comcast의 NBCU 인수 인가 요청을 승인하면서 붙인 조건에는 Comcast의 가입자망에 대한 망중립성 준수 의무가 포함되지 않음

다. Level3-Cogent Communications

□ 개 요

- Level3과 Cogent Communications는 미국을 대표하는 Tier 1사업자인데 Level3과 Cogent가 인수한 PSINet간의 Peering 협정을 Cogent가 승계함에 따라 양사는 Peering 협정을 유지
 -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양사의 Peering 조건에도 불구하고 Cogent가 과도한 트래픽을 전송하여 양사간의 트래픽 교환비율에 비대칭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Level3은 Peering 중단 가능성을 Cogent에 전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2005년 10월 5일, Level3은 Cogent에 과도한 트래픽 발생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동시에 두 ISP간의 Peering 접속을 중단
 - 즉, Level3은 Cogent에게 Peering 협정을 Transit 서비스 제공관계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Cogent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Level3은 두 차례에 걸친 Peering 차단에 대한 고지, 여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Cogent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005년 10월 7일 Peering 회선을 물리적으로 차단
- 이 때문에 양사에 접속되어 있는 이용자들이 상대 사업자와 접속되어 있는 가입자와 트래픽 소통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음
 - Level3은 DePeering에 따른 이용자의 강한 반발에 봉착하자 기존 Peering 협정을 개정한다는 조건하에서 2005년 10년 28일 Cogent와 Peering 접속재개

< Cogent-Level3간 Peering 현황 >



자료: Cogent

□ Cogent-Level3의 Peering 접속 현황

- o Cogent-Level3간의 Peering 접속은 Cogent가 2002년 4월에 인수한 PSINet이 Level3과 체결한 Peering 협정을 Cogent가 PSINet을 인수 하면서 자연스럽게 승계
- 당시 Cogent가 승계한 Level3과의 Peering 협정 조건의 특징은 다른 일반적인 Peering 협정과 달리 만일 일방이 Peering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without notice) 양사의 Peering 접속을 아예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임
- 한편, 2005년 10월 양사가 DePeering을 결정할 당시 양사가 Peering을 통해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었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Cogent-Level3 Peering 접속 규모(DePeering 직전) >

구분	Cogent	Level3
접속 Prefix 개수	11,000-14,500	~49,000
Cogent 또는 Level3에만 접속되어있는 Prefix 개수(Single-homed Prefix)	~2,300	~5,100
Cogent 또는 Level3에만 접속되어있는 AS 번호 개수	11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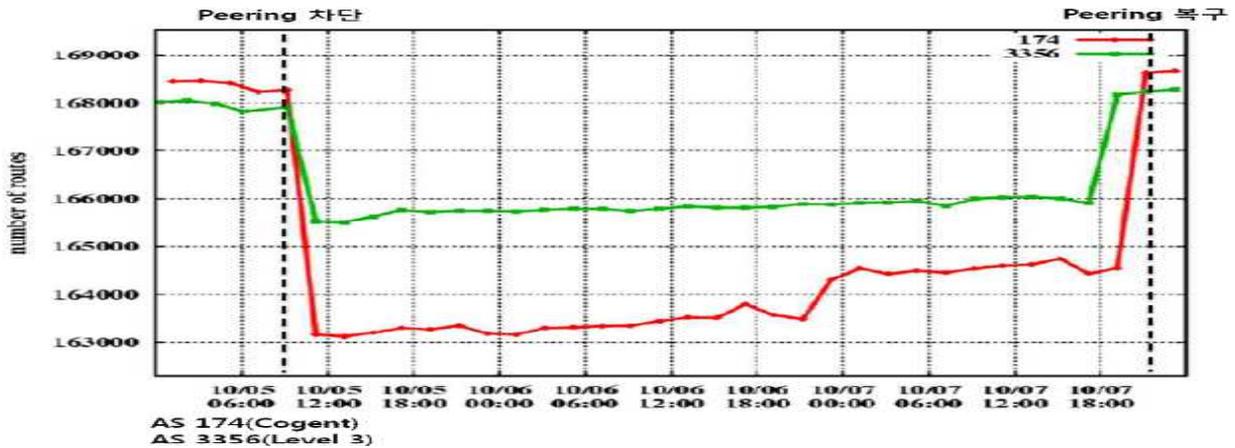
자료: Renesys(2005)

□ Level3의 DePeering 실행

① 경 과

- Level3이 PSINet을 인수한 Cogent와 Peering 접속을 유지한 것은 Peering 접속이 양사에 상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 상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양사의 트래픽 교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예를 들면, Backbone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 그런데 Level3은 Cogent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식하고 2005년 7월부터 Peering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감
 - 2005.7.18.: Level3은 Cogent에게 양사간 체결한 Peering 협정을 종료할 것이며 상호무정산 방식의 Peering 접속은 중단할 것이라는 서한 발송
 - 2005.8.31.: Level3은 Cogent 경영진에게 Level3의 계획과 양사의 Peering 협정 종료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2차 서한 발송
 - ~2005.10.5.: Level3은 Cogent의 경영진과 접촉하여 기존의 상호 무정산 방식이 아닌 유료 정산의 조건을 담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나 Cogent는 거절
 - ~2005.10.5.: 동시에 Level3은 Cogent의 CEO인 David Schaeffer에게 망차단이 임박하였음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무의로 종결
 - 2005.10.5.: Level3, 망차단을 알리는 최초의 통지문을 발송한 79일이 지난 2005.10.5.에 Cogent와의 Peering 회선 차단

< Level3의 Peering 회선 망차단 기간 중 양사 루트수 감소 추이 >



자료: Renesys(2005)

② 영 향

- o 양사의 DePeering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Level3나 Cogent에만 접속하고 있어 DePeering에 따른 우회루트가 없는 이용자 (주로 중소기업고객, Single-homed)였음
- 대기업들은 Cogent나 Level3 외에도 다른 대형 ISP를 통해 인터넷접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있었어도 인터넷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
- 그러나 Level3나 Cogent에만 접속되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양사의 Peering 차단으로 양사 가입자 간에는 인터넷 호소통이 불가능해짐

< Cogent-Level3 DePeering시 Single-Homed 이용자의 예 >

Cogent		Level3	
AS 번호	기업고객명	AS 번호	기업고객명
15299	Columbia Management(금융)	11207	The Boston Globe(미디어)
18714	Perry Capital(금융)	13553	CNET Networks Inc.(미디어)
19040	FirstMerit N.A.(금융)	2714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공공부문)
20330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공공부문)	26810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공공부문)

자료: Renesys(2005)

- o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인터넷 프리픽스의 4.3%가 양사간 교환되지 못했고, AS번호의 1%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DePeering 원인

① Level3로 착신하는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o Level3이 DePeering을 결정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Cogent 측에서 발신하여 자사로 착신하는 트래픽(Cogent → Level3)이 그 반대인 경우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
- 당시 Level3의 대변인이었던 Jennifer Daumler의 발언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 Level3 대변인이 밝힌 Cogent와의 DePeering 원인 >

"Level3 spokeswoman Jennifer Daumler said that after analysis of the Peering agreement, the company decided it wasn't commercially viable for us. "Peering relationships makes sense when two companies are relative equals," she said. "In Cogent's case, we saw an imbalance had developed where they were pushing a lot more traffic our way than we were their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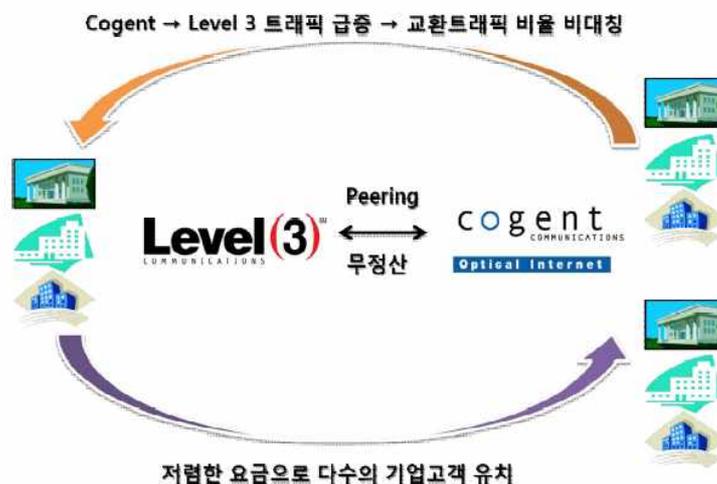
자료: Internetnews(2005)

② 기업고객을 둘러싼 소매시장에서의 요금경쟁

- o Cogent에 대해 DePeering을 선언하고 그 대안으로 Transit 서비스 협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기업고객에 대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즉, 양사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고객들에게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소매시장에서는 양사가 경쟁사업자라 할 수 있음
- 당시 Cogent는 Level3과의 경쟁과정에서 기업고객 유치에 위해 높은 요금할인을 제공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Level3과의 상호 무정산 방식의 Peering 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

- 즉, 상대사업자에 대한 접속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에 기업소매시장에서 가격할인 여력을 확보
- 이 때문에 기업고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온 Level3은 소매시장에서 Cogent에게 기업고객을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하자 Peering 협정을 파기하고 접속대가 회수를 통해 Cogent의 원가를 올리는 효과를 기대
- o Cogent가 낮은 요금으로 기업가입자를 유치할수록 양사 간의 접속트래픽 (특히 Cogent → Level3)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존의 비교적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환트래픽 비율을 초과하게 됨
- 결국 양사 Peering에 따른 상호무정산 관계를 이용하여 Cogent는 기업 가입자를 늘렸고 이는 Level3로 착신하는 트래픽이 증가하게 된 것
- o 이 때 기업가입자는 최종이용자로서의 기업가입자라기 보다는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가입자였을 가능성이 높음
- 이는 Level3측으로 흘러가는 트래픽이 많아졌다는 것은 Cogent가 유치한 기업가입자가 제공하는 트래픽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

< Cogent-Level3의 소매요금경쟁과 상호무정산 관계 >



□ 접속 ISP 주장 및 논리

① Level3의 주장

o Level3이 DePeering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

- 첫째, Cogent는 Peering 협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막대한 트래픽을 Level3측 네트워크로 전송하였기 때문에 양사의 Peering 협정 위반에 해당하여 DePeering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
- ※ 즉, Peering은 양사가 동등한 편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Cogent의 일방적인 트래픽 과다 전송은 Level3에게 불필요한 네트워크 투자를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Peering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대칭적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Cogent가 Peering을 통한 상호 무정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 둘째, Level3은 DePeering을 하기 전 Cogent에 대하여 양사의 Peering 협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DePeering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
- 셋째, Level3은 Cogent와의 DePeering 이전에 Peering 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Transit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지만 Cogent의 거절로 인해 DePeering이 불가피했다는 것

② Cogent의 주장

o Cogent는 Level3의 DePeering 실행이 부당하다는 입장

- 첫째, 양사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Level3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대칭적이지 않음
- ※ 당시 Cogent의 CEO였던 Dave Schaeffer는 양사간의 주고받는 트래픽의 양이 상당히 비슷했다(fairly equal)고 주장
- 둘째, Level3의 DePeering 결정과 그전의 Transit 서비스 협정 체결 요구는 Cogent에게 추가 비용을 유발시킴으로써 기업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

- ※ 이는 양사의 비즈니스 전략의 차이에서 유래하는데 Cogent는 저렴한 요금을 강조하면서 고객을 유치해 온 반면, Level3은 상대적으로 High-End 시장에 집중을 하는 사업자
 - 문제는 Cogent가 저렴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Level3과의 Peering 접속 때문이라고 판단한 Level3은 Peering 협정을 정산이 가능한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했고 만일 변경이 되면 원가가 높아져 Cogent가 요금을 올릴 것이라고 본 것. 그러나 Level3의 제안에 대해 Cogent가 이를 거절하자 DePeering을 실행

□ 결론: 기존 Peering 협정 개정 후 Peering 유지

- o Level3가 Cogent와의 접속망을 차단한 지 이틀만인 2005년 10월 7일 오후 7:00에 양사는 접속을 재개
 - Level3가 접속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고, Cogent와 기존의 Peering 협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종결짓기로 했기 때문
 - 양사가 Peering 접속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
 - 하나는, 기존의 Peering 접속을 유지하지만, Peering 접속을 유지하는 중에 한 ISP가 Peering 조건 내지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Specific Payment)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함
 - 다른 하나는, 접속사업자가 갑작스럽게 Peering을 종료하거나 Peering 협약 사항을 위반 했을 시에 양 ISP들은 Peering 기간 동안에는 트래픽 교환을 보장해야 하고, ISP들의 Peering 협약이 종료될 시에는 이용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양사가 합의에 이룸에 따라 당초 2005년 11월 9일,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 차단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접속망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라. Comcast-Akamai

□ 개 요

- Paid Peering의 사례로 미국의 CATV사업자이자 브로드밴드 사업자인 Comcast에게 대표적인 CDN 사업자인 Akamai가 Peering 접속을 하되 일정한 대가를 지불
 - 전 세계 콘텐츠 이용자의 20~30%가 Akamai의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Akamai는 전 세계 1,900여개의 네트워크에 95,000개의 서버를 두고 있음
 - 2011년 말 기준으로 매출이 USD 11.7억이었으며, CDN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63.2%이었음
 - Akamai는 Netflix 트래픽을 Comcast 최종 이용자들에게 착신시키기 위해 Comcast와 Paid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 상호
 - 무정산 구간에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한 Level3이 Comcast와 갈등을 일으킨 것과는 달리 Akamai가 Comcast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Comcast로부터 받는 트래픽양보다 Comcast에게 보내는 트래픽량이 많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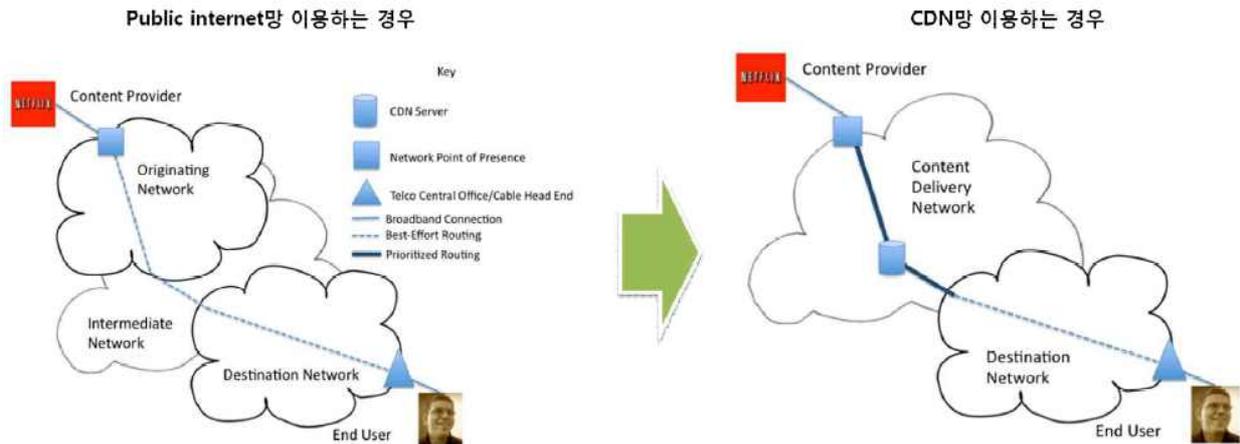
□ Comcast-Akamai간의 정산

① Comcast-Akamai간의 접속 주요 내용

- 2012년 9월 기준 Streaming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25.1백만이고, 미국 내 인터넷 트래픽의 33.0%를 차지하는 Netflix는 막대한 동영상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패 요소
 - 따라서 기존의 ISP(정확히는 IBP)에게 Transit 서비스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음
 - 첫째, Transit 서비스는 공중 인터넷망을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을 지님

※ HD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Netflix 서버에서 가입자 측까지의 전송 구간을 최단으로 줄이고 양측을 직접 접속하는 것이 품질향상에는 바람직한데 대형 IBP를 통한 Transit 서비스는 이에 적절한 방법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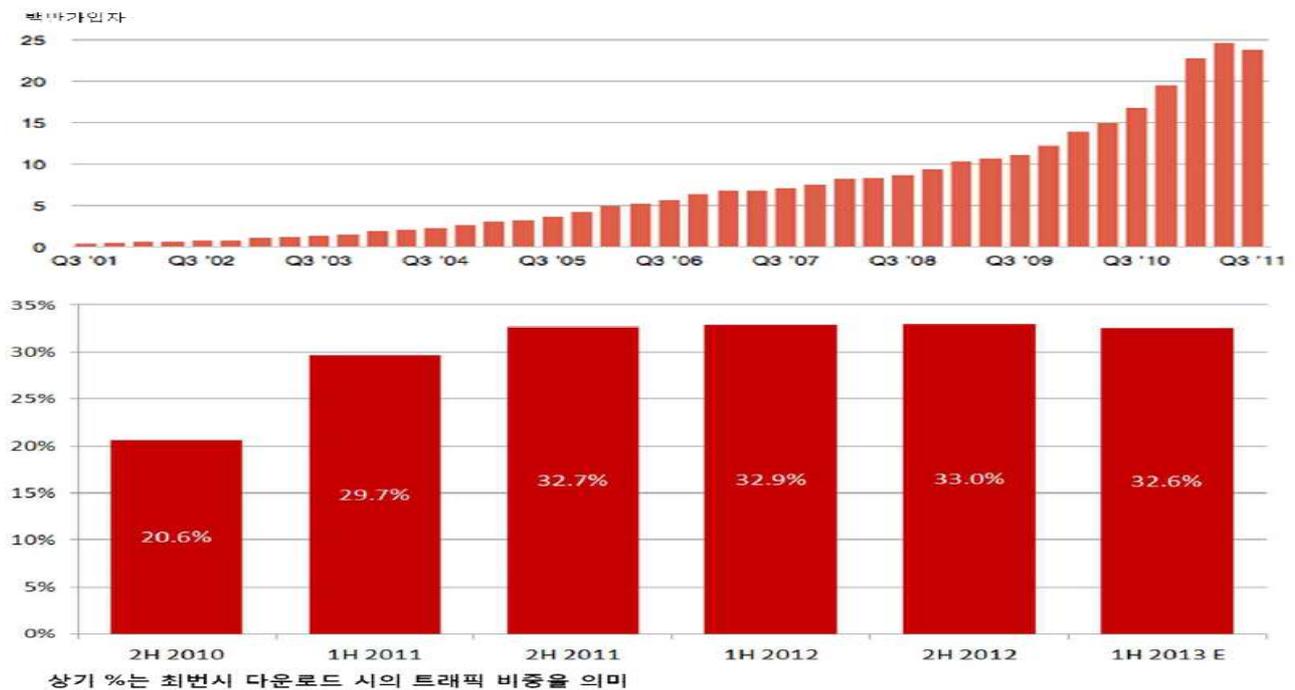
< Public 인터넷망과 CDN을 이용하는 트래픽 전송 비교 >



자료: augustjackson dot net(2010)

- 둘째, 막대한 동영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Netflix로서는 Transit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클 뿐 아니라 착신하는 ISP로서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Transit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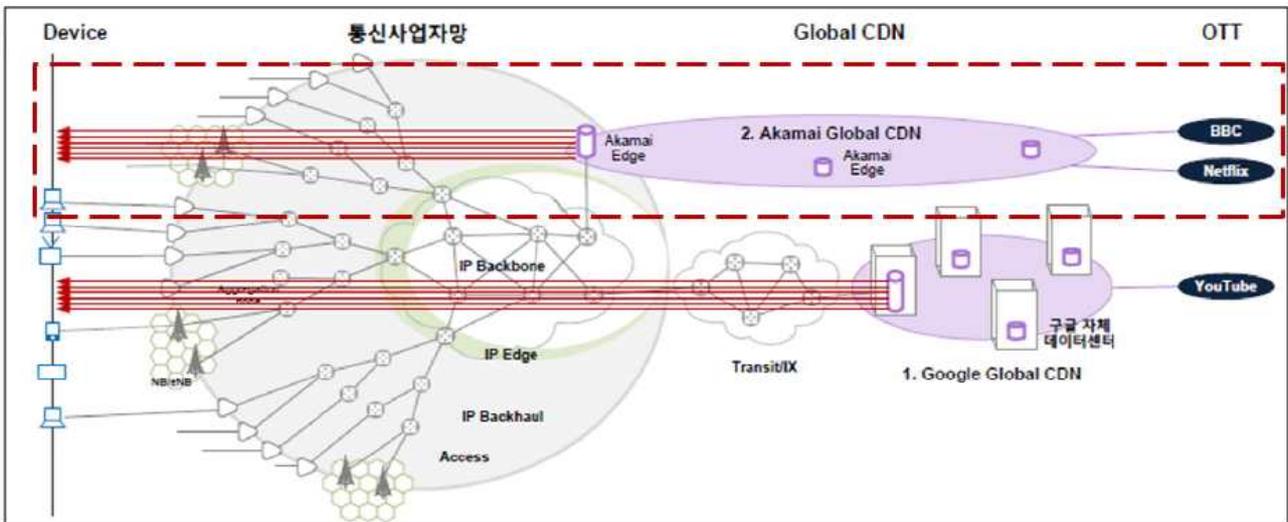
< Netflix의 가입자 및 트래픽 증가추이 >



자료: Splatf, Sandvine

- o 이러한 Netflix의 수요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CDN이었고 세계 최대 CDN 사업자인 Akamai는 2010년 Netflix의 트래픽을 처리할 우선사업자로 선정됨
-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12.3백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던 Netflix는 미국 내 트래픽의 25%를 차지할 만큼 대형 Traffic을 양산하는 사업자이었기 때문에 Akamai는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ISP들과 가장 인근에서 접속(가입자측에서 100mile 이내에 Akamai의 서버 설치)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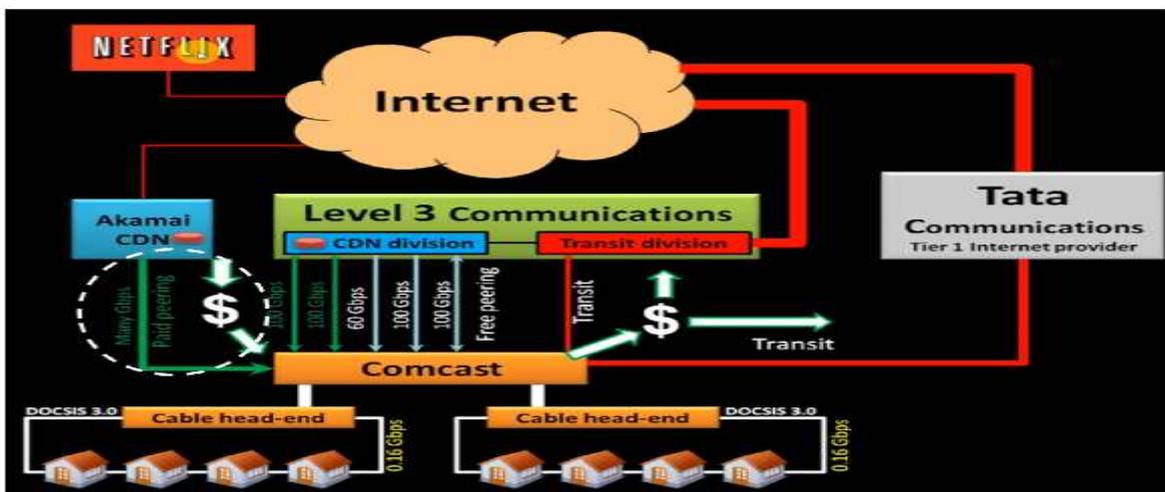
< Netflix-Akamai간 트래픽 처리 개념도 >



자료: Netmania(2012)

- o Comcast와 Level3간의 DePeering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확인된 Netflix와 Akamai간의 접속용량은 수십 Gbps인 것으로만 알려짐

< Netflix-Akamai간 CDN 접속용량 >



자료: Digital Society

- o 한편, Level3가 CDN 부문을 인수하고 Netflix와 우선전송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Netflix는 Akamai와의 접속량을 축소하게 되고 트래픽의 상당량을 Level3를 통해 처리하게 됨

< Netflix-Level3 간 CDN 계약에 따른 트래픽 처리량의 변화 >



자료: KT

② Comcast-Akamai간의 정산 방식

- o Comcast-Akamai간 접속에 따른 정산방식은 Akamai가 ISP인 Comcast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되 접속은 Peering 방식을 채택한 Paid Peering임
- 정산 규모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Comcast가 paid Peering시 과금 하는 수준은 \$1~\$3/Mbps(2009년 기준)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 Comcast의 Paid Peering 과금 수준(2009년 기준) >



자료: DrPeering(2009)

- o 한편, Level3가 CDN 부문을 인수하고 Netflix와 우선전송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Netflix는 Akamai와의 접속량을 축소하게 되고 트래픽의 상당량을 Level3를 통해 처리하게 됨

< Netflix-Level3 간 CDN 계약에 따른 트래픽 처리량의 변화 >



자료: KT

3-1. 전체회의

3-1-1. 제1차 회의

① 회의 개요

- 일시 : '18. 2. 23.(금) 14:30~17:30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 단국대 김동민 외래교수, 한신대 문철수 교수, 미디어디렉션 연구소 엄호동 소장, 건국대 황용석 교수, 숭실대 최정일 교수, 호서대곽정호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제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성균관대 송명빈 교수, 서울대 이원우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한중 정경오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KISDI, KISA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아한형제들,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CJ ENM(티빙), 시지온
 -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② 인사말씀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전문가분들을 가급적 모두 참여하도록 하다보니 48명으로 많아졌으나,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 것임
- 기간통신에서 부가통신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넷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필요함
- 이해관계 충돌과 해결노력 부족으로 산적한 문제를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인터넷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해외의 경우 FCC는 망중립성 변화, EU는 조세회피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도 상생 협의체를 통해 합의 도출하고 새로운 시대 대비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부가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뉴노멀법 입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통신법제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방통위는 지능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위해 이번 협의회를 결성함
 - 국내외, 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인터넷 상생 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지혜를 모으고, 발전 모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람
 - 논의된 주제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임
 -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조율을 통해 갈등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합의된 사항에 수긍할 수 있을 것임
 - DJ 정부시절(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한 적이 있음. 그 로드맵에 의해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함
 - 이번 협의회도 방송개혁위원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운영하려고 함
- **(김상훈 협의회위원장)**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가 매우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일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내에 여러 이해관계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어 의견수렴이 쉽지 않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위원회 업무에 임하고자 함
 -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은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전반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중임
 -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내기 위해서도 인터넷이 중심축이 되어야 함
 - 앞으로 인터넷의 과급력을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함
 -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우려가 업계, 국회,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안 몇 가지를 말씀 드리자면,
 -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국내·외 기업 간의 납세 형평성 저해, 불법·음란 정보유통이나 제반 금지행위에 등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한계, 망이용료 및 과금산정에서 국내·외 기업 역차별, 대기업과 소기업간 불공정 문제, 빈번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 미흡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나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보다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것임
 - 협의회는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공정 경쟁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외 관련기업과 시민·소비자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임
 - 이번 협의회를 통해 팩트(facts)에 입각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공정경쟁 정착, 이용자권리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기 바람

3 안건 보고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추진 계획(안)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4 주제 발표

-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 ※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발제
- 인터넷, 통신사 분야별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터넷),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통신사) 발제

수 토론 내용

- (○○○) 오늘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앞으로 협의회가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함
 - 우선 방금 있었던 세분의 주제발표 모두 협의회가 논의해 나가야 할 이슈들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발표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기 바람
 - 그리고 앞서 발표된 협의회 추진계획안에서 제시된 의제들 외에도 앞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상생발전을 위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제들이나 제시된 의제들 중 금번 협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의제에 대한 의견도 주기 바람
 - 아울러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안의 내용과 다른 의견 있으면 개진 해주기 바람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분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주시는데 학계, 소비자 시민단체, 협회, 사업자, 정부의 순서로 진행하겠음
- (△△△)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논란이 있는 쟁점이라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임
 -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원칙이 있고,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있음
 - 서로 다른 입장에 양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칙이 있다면 이러한 원칙은 서로 존중하되,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상당부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발표와 관련하여 장준영 변호사 내용에 동의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제도 자체가 흠결되어 있는 문제와 역외 적용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임
 - 그러나 집행력 문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함
 - 전체적인 방향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 예컨대 발표에서 제시한 집행력 강화 방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며, 사실 상생발전이라는 단어는 말하기 쉽지만 의미는 어려움
 - 결국 공정경쟁 하에서 상생발전을 이루어야 하나,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
 - 1소위와 2소위를 나누는데, 앞으로 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언론계에 주로 종사하면서 불평등/역차별을 실제 체험하고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었음
 - 그러한 부분을 가감 없이 도려내고 이용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상생이 되도록 역할을 수행하겠음
- (△△△) 48명의 위원이 과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협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선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 안되겠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생각을 안해주셨으면 함
 - 이전에 케이블 SO, PP, 홈쇼핑간 상생발전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진행을 해보았는데 각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상당한 격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의미 있는 협의안을 도출함
 - 그래도 같이 만나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오래 걸리더라도 서로의 인식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
 - 2개의 소위로 분리하여 운영된다고 하니 각각의 위원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히 기업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해관계에 몰입되지 말고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함
- (□□□) 인터넷 상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제기된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분야별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공감되는 부분들은 기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인터넷이 4차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임
 - 그러한 측면에서 인프라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해야할 자산인데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
 - 동시에 혁신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해야 함
 -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컬링에서의 영미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며, 관련 해외 사례 이슈를 공유하면서 참여하겠음
- (○○○)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체 등과 함께 망중립성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경험들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에 맡길 수 없으면 규제로 갈 수 밖에 없음
 - 그전에는 무조건 규제로 달려간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이 지키겠다는 자율적인 룰(연성법)이 있다면 강한 규제는 필요치 않다고 봄

- (△△△) 개인적으로 미디어를 관찰하고 답을 찾아가는 미디어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론측면에서 연구하였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단계였는데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보임
 -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 변화를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생태학의 기본은 상호작용으로 미디어간 상호작용은 사람의 일, 사회, 자연의 일이므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 생태학은 진화론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버티는 기업들이 이길텐데, 그 부분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아 개입은 최소화, 지원은 최대화해야 함
- (□□□) 분과 구성이나 논의할 주제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짐
 - 2분과 소속인데 망중립성, 기타 생태계 이슈 등 학제적 주제들이 존재해서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구성한 듯 보이며, 인터넷 사업자의 가치사슬 안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제를 뽑아낸 듯함
 - 이 과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은 논의할 때 지나치게 현상주의적인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지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있어서 격차가 존재하므로 지금 현재보다는 기술이나 산업의 로드맵을 파악해서 논의를 해야 함
 - 경쟁, 이용자 보호 등이 대립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상생안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누군가 손해 보는 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자료나 증거들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주시기 바람
- (○○○) 규제 역차별, 망중립성 등 발제내용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면이 있음
 - 더군다나 공정성, 법제도 완전성, 성장성 등 상충하는 가치를 다루어서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보이며, 48인이 내놓는 최선의 답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임
 - 하나의 답을 찾기보다는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적 소신을 지키겠음
- (△△△) 직장을 다니다 교직에 선 학자로서 아쉬운 점이 있음
 - 첫 번째는 사업자, 소비자, 법제적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아 협의회에 기술전문가가 없어서 보완 필요
 - 두 번째는 작년에 공표가 되어서 올해 유럽은 GDPR이 발효가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6년 전부터 주장함
 - 사업자가 유럽에서 벌금을 당장 내야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임
- (□□□) ♣♣♣은 설립한지 5년 정도 되는 신생 시민단체로서 인터넷을 자유와 개방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설립됨
 -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대부분 공감은 하지만, 상충하는 가치의 타협점 찾기보다는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함
 - 인터넷 사업자, 통신사업자간의 중재보다는 인터넷 이용자에 더 초점을 두고, 역차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함

-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인터넷 실명제, 섯다운제, 이용자 인권 침해 규제, 예를 들어 임시 조치도 이용자 권리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규제 해소 논의가 필요함
- 스타트업을 저해하는 규제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여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해소 필요
- o (○○○) 현 정부에서 심도 깊은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흐름에 대해서 환영하며, 다만 몇 가지 운영과 의제에 대해서 제안드림
 - 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가 결국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인데, 정부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필요함
 -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향식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회 논의 의제가 이러한 원칙 하에서 결정된 것인지 검토 필요
 - 협의회 기간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임시적인 모임보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안정적인 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한 취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가 있으며, 각 부처가 다르게 추진 중인데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임시적이 아니라 항시적인 틀로 발전되었으면 함
 - 변경이 가능하다면 1기까지는 정책제안을 하더라도 그 이후 끝나지 않고 항구화시킬 것인지 논의 필요
 -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 협의회는 폐쇄적인데, 기본이 공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이 부분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듯한데 원칙을 공개,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함
 - 2개의 소위가 아닌 3, 4개도 가능하며, 단체들도 관심 있는 이슈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위를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하고, 1, 2소위 논의가 칸막이가 아니라 논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함
 -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함
 - 의제와 관련하여 빠진 의제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망사용에서의 역차별, 본인인증 확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사전에 정의되지 않고 유연하게 제시될 수 있는지 궁금함
- o (△△△) 특정 소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이용자와 시민의 권리는 48인중 5인밖에 되지 않아 과소 대표로 보임
 - 가능하다면 둘 다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열어두셨으면 하고, 의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빅데이터 활용도 중요하지만 정보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함
- o (□□□) 인터넷이야말로 거버넌스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 문제를 협의회에서 해결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이것을 시작점으로 다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함
 -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며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함
 -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도록 하겠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o (○○○) ♡♡♡는 2009년에 공공규제(게시물, 댓글)를 민간에서 자율규제하기 위해 설립됨
 -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피해자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국정과제 4번째로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상생, 진흥, 발전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 소비자의 참여가 없다면 대부분 규제로 갈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함
-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 이용자 보호, 이용자 자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누락되어 아쉬우며,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규제(역기능 순화)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 보여 이용자 관점에서 문제제기 할 계획임
- o **(한국방송협회)** 미디어 환경이 날로 변하고 있는데, 매체간 장벽은 없어지고 있다고 봄
 - 소위원회가 학계와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 사업자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효과적인지 검토 필요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을 규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달라는 것임
 - 이용자보호, 공정경쟁은 국내의 사업자 모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 상생발전을 위해 모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인 이용자 후생 증대를 잊지 말아야 하며, 공정경쟁도 사업자 이해관계 타협을 위한 것이 아닌 이용자를 위한 것
 - 시장경쟁에 있어서 사업자간 타협만 바라보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 자리는 혁신과 경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함
- o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서면 의견) 인터넷 생태계는 인터넷 이용자, 콘텐츠 제공자,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구성되며, 모든 구성원간 상생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에 공감함
 -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에 대해서도 국내 환경에 맞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중소통신사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현안 유형별 소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필요
- o **(SK텔레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함
 - 이전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솔루션을 찾기도 함
 - 이번에는 소비자 단체들도 많이 있어서 그러한 해를 찾는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도 보완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기업들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글로벌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서로 도우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함
- o **(KT)** 인터넷 상생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ICT 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함께 할텐데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함
 - 통신업계 종사자로서 협의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음
- o **(LGU+)** 무엇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인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분과는 현황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인터넷 생태계의 물리적 계층을 담당하는 통신사에 대한 인식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
 - 통신사는 물리적으로 망을 제공하며, 부가사업자들의 혁신서비스 제공을 적극 권장하는데 이는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

- 그러나 기간사업자와 똑같이 알리톡, VoIP 등을 제공하면 중첩되는 수익이 사라져서 통신사가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음
- 통신사는 보통 5-6조 투자하고 EBITDA는 계속 감소하는데,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담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협의회가 같은 인식을 해야 협의회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음
- 인터넷 규제와 관련 이슈들이 나오는데, 통신사업자들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요청드리며, 규제비용이 더 많은지 이용자 후생이 더 큰지 분석을 해서 추진해야 함
- 5G에서는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트래픽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기술적 논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소위에서 받아서 필요하다면 소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o **(네이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안에서 이용자가 중요하니 그 답을 찾았으면 함
- o **(카카오)** 이 논의가 어떻게 수렴이 될까 걱정이 존재하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여 방법을 찾았으면 함
 - 이해관계 상충은 분명하고, 회사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겠지만 이용자 후생, 사회의 혁신, 경제 발전 도모라는 큰 관점을 가지고 하나씩 이해관계를 따져간다면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함
 - 기왕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이용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음
 - 역차별 문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동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함
- o **(아프리카TV)** 사업자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공정성, 형평성, 역차별은 2011년부터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대부분 규제로부터 야기된다고 생각함
 - 방향성을 생각해본다면 복잡한 산업 생태계에서 규제문화는 점점 더 진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음
 - 진흥책이 오히려 해외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둘 수도 있기 때문으로 예를 들면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B2B가 아닌 B2C 비즈니스에서 이용자는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된서리를 맞는 형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함
 - 반면에 개인이 해외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대해 거부감은 없으며, 자사가 유튜브와 같이 저장할 수 없는 이유는 스토리지 비용때문임
 - 대한민국의 광고 산업의 80퍼센트가 해외사업자 매출인데, 이러한 부분이 B2B에서 B2C로 넘어와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o **(구글코리아)** 이용자들이 외면하는 순간 회사는 끝난다는 생각에서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하려고 함
 -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며, 위원회 논제가 이미 정해져 있으나 더 다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

- 국내 대리인 제도는 불과 며칠 전에 제안되었는데, 충분한 설명 없이 의제에 올라와서 의제 선정 근거 설명이 필요함
- o **(페이스북코리아)** 이용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규제를 충분히 따르고 있음
 - 결국에 협의회 논의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후생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더 바라면 우리나라 ICT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사업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고민 필요
- o **(우아한형제들)** 자사는 스타트업인데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터넷 매체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매체로서 표현의 자유를 줄 수 있는데 규제로 인해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할 수도 있음
 - 새로운 인터넷 기업들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규제 개선이 필요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은 좀 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으며, 이용자와는 소통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고민 필요함
- o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국내 스마트폰 산업 육성 토론회 3년 동안 다수 참여했지만 결과 도출 어렵고, 전쟁은 이미 끝나가는데 작전회의만 하는 있는 느낌
 - 유럽은 자국민 보호 위해 글로벌사업자에 대해 규제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기업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유튜브가 전체 OTT 사용 시간 70%를 차지하는 상태인데, 이는 통신사들이 유저들에게 해외 서비스를 빨리 보여주기 위한 욕심에서 망 비용을 견디 않고 서버를 열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 불공정의 참상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회의보다는 보급품을 주는 것이 필요함
 - 운동장 기울어진 것은 모두가 다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빨리 결정하고 액션을 취해야 함
- o **(CJ ENM(티빙))** 콘텐츠 회사라서 콘텐츠 생태계가 진흥될 수 있기를 기대
 - 역차별은 방통위와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보고 저희의 책무는 대형 대 소형 /플랫폼 대 CP 간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자가 과실을 가져가고 예비 제작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함
- o **(시지은)** 자사는 악성댓글을 해결하기 위해 댓글 플랫폼을 운영하여 악성 댓글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우회하여 기존의 SNS로 로그인하게 함
 - 소셜 댓글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악성댓글 감소로 400여개 언론사가 이용 중이며, 전 세계 5위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30,000여개 사이트가 우리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 2011년도에 방통위 제재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인원 5명인 회사로 어려움 겪었으며, 그 규제 상황에서 저희를 활용했던 언론사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유보받아 사업 유지 중

-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데 선거법으로 인해 실명제가 생기면서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착오가 생겼었음
- 네티즌들이 계속 도전을 주고 있고, 포털에는 많은 댓글이 형성되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같이 공유할 기회가 적었는데 협의회가 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함
- 합의와 설득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임
- o (△△△) 역차별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함
 - 하나는 글로벌 규제와 로컬 규제수준 정도의 차이이며, 그 다음은 실무쪽에서 집행력 확보의 차이임
 - 처음에 위반이 있으면 송장을 보내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해외 사업자는 그게 쉽지 않음
 - 다만 실무적인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규제수준을 글로벌하게 맞추면서 규제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사업 전반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o (□□□) 우리 기관은 보호와 진흥을 같이하고 있음
 -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IT 강국이었으나, 글로벌 20대 기업 중 우리나라가 없고, 스타트업도 규제를 받고 있음
 -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나, 그동안 개인정보유출, 피해구제 등에서 정부와 사업자들이 신뢰를 잃은 부분도 있음
 -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해커톤이라든지 협의나 공론화 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함
- o (○○○) 우리기관은 규제와 진흥 양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인식함
 - 공론화 기구를 통해 솔직하게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문서화된 형태로 제출하고 같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고 생각함
 - 여기서 논의되는 주제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고민스러우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o (△△△) 역지사지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 정부의 입장을 같이 이해해주셨으면 하며,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듣는 사람이 경계로 삼으면 될 뿐이다라는 “언자무죄, 문자즉계”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 o (□□□) 향후 운영방안과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 임시조치 등은 별도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와 활용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협의회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국내사업자 관련 역차별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1, 2소위 문제에 대해서는 3~4월에 각 소위를 운영하므로 이슈를 다시 논의해서 우선순위, 일정, 참여위원 변경, 사업자 의견 서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으면 함

- 공개여부는 쟁점별로 이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면 그 이후에 공개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편하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위에서 논의하고 합의점 및 비합의점 정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위에서 논의된 것을 소위에서 지정한 사람이 외부 기자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가 3,4번 논의되고 나면 정리되는 것이 있을 듯함
 - 큰 틀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사업자는 규제완화 하자는 것 같고, 사업자 규제로 이어지기 보다는 이용자 보호, 이용자 권익 증대로 가자는 말씀이 있었음
 - 기술발전 추세에 대해 사전적으로 공감할 형성하자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위별로 각 위원들이 맡아서 발제하거나, 사업자들이 연구소 등을 통해 발제하여 소위 위원간에 공유하면 될 듯
 - 운영방침은 공개하는 것을 찬성하나, 논의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양해바람
 - 공론을 모아가는 측면에서 자기 사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임
 -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담당 사무관, 소위, KISDI에 얘기해주셨으면 함
 - 위원들이 단순히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에서 최소한 논문 형태로 발제하기를 원함
 - 문제제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여측면에서 충분한 의견 개선 바람
- (○○○) 다양한 의견을 주시어 향후 협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특히, 규제보다는 진흥에 비중을 두어 정책 대안을 추진하며, 이용자 후생을 최우선하자는 것, 현상대처 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며 실행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대안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많은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생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포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협의회가 바람직한 인터넷 상생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참여집단들 모두 양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양보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회의에 임함으로써 컨센서스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3-1-2. 제2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12. 13.(목) 10:30~12:30
- 장소 : 더케이호텔 한강홀
-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 서울대 이원우 교수, 호서대곽정호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숭실대 최정일 교수, 고려대 이성엽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KISDI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인사말씀

- (방통위 **곽진희** 과장)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지난 2월 구성된 이후 전체회의 2회, 1·2 소위원회별로 7회 등 10여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중에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김상훈 위원장님과 이원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 올해 통신·인터넷 분야에서는 많은 이슈가 있었으며, 특히 국회, 언론 등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조세, 망 이용료 등을 둘러싼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집중 지적됨
 - 이에, 정부에서도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 국내 대리인 제도, 역외적용 규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함
 - 또한, 조세와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
 -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협의회와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과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전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 물론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감한 이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합의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주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주제들도 향후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국회,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5G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망이용료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19년 3월까지 함께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훈 협의회위원장)** 최근 인터넷 시장은 질적·양적 변화가 큰 시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즉 인터넷에 대한 민감도가 큰 나라에 있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발전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함
- 이러한 취지에서 올해 초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발족되고, 협의회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들이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당면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를 두고 숙의과정을 거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봄
 - 1소위에서는 “역외적용 명문화” 등 7개 의제를 논의했는데, 이들 의제 중 “역외적용 명문화”,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실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 협의회가 상당수준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모든 의제들이 합의(Consensus)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들이 각자의 주장을 기탄없이 발표함으로써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음
 - 오늘 회의는 그동안 협의회 논의결과와 발제자료, 협의회 회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정책당국인 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리임
 - 약 10개월에 걸쳐 협의회 위원님들이 고생한 결과물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원우 2소위원장)** 2소위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상생협력을 다루었음
- 망 중립성은 이 분야에서 근본적인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규제체계의 상당한 근간을 이루고 있어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달랐음
 - 제로레이팅이나 망 이용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사업자간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었음
 -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양보하기 어려운 출발점에 있었으나, 위원들은 단순 다수결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지양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 이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자리였음
 - 합의보다는 오해를 해소, 시정하여 축적하는 과정이었으며, 숙의를 거치는 중대한 자리였음

- 이러한 논의결과가 축적되어 사회가 좋은 방향을 발전하기를 기대함
- 입장에 따라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 노력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것은 큰 성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달랐기 때문임
- 협의회 논의결과가 좋은 정책 수립 자료가 되기를 바람

3 결과보고서(안) 발표 및 토의

- o (○○○) 지금부터는 협의회 전체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음
- o (△△△) 오늘 회의는 지난 약 10개월에 걸쳐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 정리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리임. 먼저 협의회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KISDI 김현수 박사님이 요약하여 발표해 주시겠음
- o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1소위 및 2소위 각 주제에 대한 논의 배경, 이해관계자별 입장, 소위원회 논의결과 발표)
- o (□□□) 방금 발표한 결과보고서는 각 소위원회별 워크숍을 거치고, 수 주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최종결과물임
 - 이 보고서에 대해 첨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는 오늘 회의가 협의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을 정책당국이 추진할 때 감안해야 할 사항 등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람
 - 소속 기관에 따라 의견의 중점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 단체, 이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오랜 시간동안 많은 논의 끝에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함, 다만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상당한 우려점도 존재함
 - 우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아쉬움
 - 최근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망법이 개정되고, 올해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관련 계류된 법안이 200건이 넘는 등, 장래 한국경제 주역으로 기대 받는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전공공하고 있음
 -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공감하고 그 기반 하에 산업이 발전하였으므로,
 - 완화에 따른 우려를 계속 주의 깊게 살피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함
 -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망 중립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민이 체감하는 부가통신시장의 영향력은 크지만, 실제 산업 규모 수치는 미약함
 - 부가통신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귀납적 접근이 되어야 하며, 부가통신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그에 맞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연역적 접근은 지양해야 함, 규제 적용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함

- 하나의 규제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음
- 예를 들면, 게임산업에서 섯다운제로 인해 곤욕을 치렀고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떤 규제이든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 도입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함
- o (SK텔레콤) 협의회를 처음 접했을 때 마무리가 어떻게 될 지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논의를 해서 생각했던 것 이상의 컨센서스와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됨
- 유/불리를 떠나 우리 주변에 어떠한 플레이어가 있고, 각 입장이 어떠한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해외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가간 이해관계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음
- 그 과정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상호 이해도 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주제를 크게 보면 역차별 해소,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상생협력 세 가지가 있었음
- 어느 하나 쉬운 이슈는 없었지만 컨센서스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 생각함
- 논의를 하면서 사업자간 갈등보다는 제휴의 가능성을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여기서 논의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국익을 산업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발전했으면 함
- o (OOO) 대체로 사업자분들을 대표로 하여 말씀하신 듯함. 추가로 사업자분들의 말씀이 더 이상 없으시면 시민단체와 기관으로 발언권을 넘기겠음
- o (네이버) 이 보고서를 만드신 노고를 치하하며,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함
 - 39쪽 논의결과에서 대부분 공감이라는 표현은 CP는 공감하지 않았는데 마치 찬성한 것처럼 보여 불편함
 - 추후 보고서를 완결할 때 시정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전체적인 글 흐름이 규제 합리화, 규제 개편, 규제 보완 등 완화와는 거리가 있음
 - 인터넷 산업 자체가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하자는 흐름인데, 여기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는 것으로 읽혀 유감을 표명함
- o (△△△)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대해 사업자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소위원회 논의결과는 소위원회 위원들간에 나눈 의견을 모은 결과임
 - 즉,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사업자들의 주장 및 입장은 결과보고서 내에 별도로 충분히 정리하여 제시되었다고 생각함
 - 논의결과 기술과정에서 “대부분 공감”이라는 표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전문가들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해외동향이나 자신들의 연구 분야 지식에 입각하여 논의한 결과, 다수의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현임
 - 물론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 “대부분 공감” 하였다고 해서 사업자들도 함께 공감하셨다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정책당국이 활용하실 때 양쪽 의견을 균형적으로 검토하시리라 생각함

- 글의 흐름이 왜 '규제 합리화, 개선' 이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규제 개편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었음
- '개편'이나 '개선'이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개편'이 좀 더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고 판단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위원회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건의사항 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함
 -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사업자 의견수렴을 했는데, 나중에 소위원들간 별도로 논의하면서 공감했다는 부분이 있음
 - 회의 운영 방식이 정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도 한 분정도씩 위원으로 참여하여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함
- o (□□□) 향후에 본 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언급하신대로 소위원회에 사업자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협의회는 자문기구로서 발족하여 자문 내용을 제시한 것 일뿐, 여기서 어떤 내용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판단이 남아 있음
 - 사실상 논의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여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사업자의 주장이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되, 소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가능한 한 중립적인 위치에 계신 전문가 위원들 위주로 구성한 것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유사한 협의회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건의해 보겠음
- o (○○○) 많은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17쪽 임시중지제도에 대한 ♣♣♣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 중앙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불법정보에 대해 직접 임시중지명령을 발하게 될 경우, 내용규제 영역에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하게 된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우려가 있음
 - 방통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발한 불법정보를 심의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하여 접속차단하면 동일 정보에 대한 내용 심의 권한 중복으로 사업자에게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불법 정보 유형을 명백하게 한정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모든 불법정보를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단하게 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 우려가 있고,
 - 특정 사이트가 여러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불법정보와 관계없는 정보가 차단되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임시중지기간, 관련 이의절차, 판단주체,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림
- o (△△△)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셨음. 다음으로 시민단체, 기관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o (□□□) 협의회가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있었는데, 훌륭한 보고서를 보면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함

- 협의회는 거버넌스 모델인데, 이 모델을 잘 발전시켰으면 함
-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할 경우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각계 의견 수렴이나 조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이 모델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함
- o (○○○)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함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해 소통을 하려는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 모든 참여자는 엄밀히 말하면 중립적일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자와 중립적인 전문가라는 구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함
 -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애초에 우려했었던, 과거에 했던 논의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음
 -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끝장 토론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간 소통 방식,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식(연구/협약)에 대해 섬세하게 고려 해주셨으면 함
 - 주제 선정에 대해서 협의회 발족 당시 말씀드렸는데,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 의제를 반영해주셨으면 함
- o (△△△) 의미 있는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었음
 - ♣♣♣은 1소위라서 역차별 관련 주제로 논의에 참여했는데, 소비자나 이용자를 대표하여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많지 않았음
 - CP와 통신사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아쉬웠으며,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더 필요함
 - 2소위에도 참석하였는데, 결론에 통신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68쪽에서 'CP의 불공정행위 금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통신시장 자체가 3사에 의해 과점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CP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음
 - CP의 대다수는 1인 스타트업이나 크리에이터이며, 동시에 이용자이기도 함
 - 이들의 입장인 아닌 극소수 대형/글로벌 CP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대표 행위로 확대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망 중립성 완화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오히려 망 중립성을 강화함
 -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다면 망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웠음
- o (□□□) 혹시 한국신문협회에서 주실 의견이 있는지?
- o (한국신문협회) 특별히 드릴 말씀 없음
- o (○○○) 결론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임. 제일 중요한 것은 IT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1년 여간 모인 적이 없었다는 점임

- 첫발을 내딛는 것은 잘한 듯하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가 과제임
- 협의회 결과물은 이제 시작일 뿐임
-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이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램
- 논의 부분 중 일부는 법안으로 통과되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음
- o (△△△) 1년 여간 진행된 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하자면, 현재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 각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서 내용 및 입장을 공유한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음
 - 국회에 많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의 이슈 셋팅임
 - 우리가 논의한 것은 큰 규제들이었으며, 앞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음
 - 그 과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개선, 산업적 측면을 반영하여 마무리했으면 함
- o (□□□) 협의회로 운영되고 인터넷 사업이 인터넷 사업자만이 아닌 망 사업자와 관련이 있어서 어젠다 선정은 고민이 되는 문제였음
 - 인터넷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관련 이슈가 많음
 - 범 정부기구였으면 더 많은 어젠다를 다룰 수 있겠으나, 방통위에서 주관하므로 한계가 있었다고 봄
 - 국회는 파편화된 법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논의 방향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었으면 함
 - 유럽에서도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이라는 큰 전략을 수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관해 최근 EU에서는 집행위원회 부의장이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함
 - TF에서는 기존 제도로 해결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CP와 중소CP간 관계는 개선하기 어려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함
 -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다른 영역 규제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리되면 이를 다른 규제에 확대하여 사업자들의 우려를 덜어야 한다고 생각함
- o (○○○) 3월에 48인이 모여서 합의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
 - 합의체가 아닌 협의체이므로 때로는 격론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규제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함
 - 각각의 이해관계자 입장에 따라 부당하고 불편한 결과일 수 있으나, 앞으로도 수렴 과정이 있을테니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함
 - 아쉬운 점은 대규모 협의를 구성하다보니 규제체계 개편이라는 구조에만 매몰된 듯함

- 추후 협의회가 발전될 수 있다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사업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함
- o (△△△) 미국이 망 중립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EU에서 정책보고서를 내는 것이 부러웠는데, 방통위가 인터넷 관련 논의가 집적된 깊이 있는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개인적으로 만족함
 - 특히 KISDI가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논의를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음
 - 첫 번째는 팩트 파인딩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투명하게 논의가 이루어짐
 - 망 중립성 규제 완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동기였는데, 얼마나 환경이 변화했는지 사실 확인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하게 진행된 아쉬움이 있음
 - 영업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렵겠지만, 데이터가 없어서 서로가 진영입장에서 이야기하느라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웠음
 - 둘째, 2소위에서도 합의점을 보이지 못해 아쉬운데, 각자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에서 무엇이 좋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함
 - 향후에는 주제를 한정하고 깊이 있게 진행하기를 제안함. 팩트 위주, 입장을 떠나 이야기했으면 함
 - 여러 진영이 같이 모인 것은 의미 있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부분은 아쉬움
- o (□□□)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많은 의견들을 교류했다는 점에서 규제 정립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면이 있음
 - 여러 쟁점 중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나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시점에 환경이 맞는다면 이 논의를 토대로 좋은 방향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o (○○○) 2소위에서는 네트워크와 CP측 이해관계가 참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논의자체가 이용자 편익을 어떻게 하면 더 제고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생산적인 논의였다고 생각함
 - 이용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사업자와 CP 모두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 제공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바, 양측 모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함
- o (△△△)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정리하자면,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협의회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의견이었음
 - 협의회의 운영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나,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님은 협의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 보다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했었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심
 - 향후 유사한 협의회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면 어젠다 셋팅(의제 선정)을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 우리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하며 정책 입안 역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임
- 지금 제시된 정책제안들은 깊이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정책당국에서 정책 입안시에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 및 검토과정이 요망된다는 제안이 있었음
- 전체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협의회 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심도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신 의견들은 향후 방통위가 고려하실 것이라 생각함. 특별히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는지?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저희 이해와 위원장님 이해가 다른 듯함. 전문가라 하더라도 완전히 중립적인 분은 찾기 어려움
 - 이해관계를 적절히 표방하는 사람들을 적절히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 여러 관점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음
 -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 정확하게 기술해야 과학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공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주셨으면 함
 - 흐름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표현은 지양했으면 함
- o (□□□)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된 회의록 발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크며, 사실상 회의과정상에서의 명시적인 발언 외에 비언어적인 의사표현도 반영되어야 함. 아울러 논의결과 내용을 확정할 때 항상 소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함
 - 물론 시간적인 제약과 협의회 기구의 한계로 인해 위원들 및 기관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음
 - 현재 과기정통부도 협의회 논의 주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로 제도 개편에 관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과기정통부에서 참석해 주신 김정원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o (○○○)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고생하셨음.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회의체가 가동 중이며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논의가 더 필요함
 -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통신정책국에서 구체적으로 작업 중인데, 머지않아 정부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오늘 주신 의견들은 과기정통부에서 참고하겠음
- o (△△△) 감사기관으로서 고생하신 ♡♡♡님께서도 말씀 주시기 바람
- o (□□□)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어서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드립니다
 - 저희 연구진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앞으로도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 회의체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것으로 이해함
 - 오늘 회의에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앞으로 정책 추진시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한 제언이라고 받아들일것음
 - 오늘 회의를 마치고 방통위에 공식적으로 보고 드릴 예정이며, 오늘 주신 고견들도 위원들 확인을 거쳐서 방통위에 함께 제출하겠음
 - 지난 10개월 동안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님들의 노고의 결과물이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음
 - 마지막으로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음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잘 들었음
 - 방통위 탄생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이루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만족함
 - 협의회 평가에 기초하여 좋은 정책 자문기구로서 논의와 의견을 듣는 기구를 한 번 더 발족시키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님이 말씀해주신 어떠한 사람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엄격히 얘기하면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함
 - 중립적인 인사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중립적인 의견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인기협 의 지적사항도 참고하겠음
 - 교수조차도 특정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받으므로 엄격하게 중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시민단체 역시 이해관계자라는 ◇◇◇님의 솔직한 말씀을 고려하겠음
 - ◎◎◎님이 당장 해결되었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 지금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 분들 및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당장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음
 - 특히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참여한 경우 한 발 물러서서 참여해주시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그 이외에도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음. 더욱더 좋은 논의를 이끌어내겠음
 -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었는데, 협의회 논의와 참여가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 여러분들의 참여에 대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 다사다난 2018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더 큰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기 바람

- (△△△) 위원장님께서 오늘 제출하는 협의회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협의회 전체위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음
- 약 10개월간 협의회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협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이것으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마치겠음

3-2. 제1소위원회 회의

3-2-1. 제1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3. 16.(금) 14:00~17:30
- 장소 : 국토교통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한신대 문철수 교수, 미디어디렉션연구소 엄호동 소장, 숭실대 최정일 교수, 호서대 곽정호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팀장,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천지현 과장

2. 회의록

□ 기술동향 발표

- ◇ 5G Characteristics and Usages (발표: 경희대 홍인기 교수, 5G포럼 주파수위원장)
 -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발전해온 경과를 설명할 수 있으나, 5세대는 속도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접근해야 함
 - 4세대까지는 유선의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속도로 경쟁하며 유선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이동통신서비스에서 가능하게 함
 - 그러나 5G부터는 속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로 차별화하려함
 - 중국의 주장에 의해 5G표준으로 Connection Density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5G를 통해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eMBB(Enhanced Mobile Broadband)에 중점을 두고 속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AR, VR을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중국은 이와는 다르게 낮은 주파수 대역쪽을 중점을 두고 있음
 - 5G는 low latency가 보다 중요

- 중국은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서비스는 동시에 많은 자동차를 연결하여 서포트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LTE 기술로는 비효율적이므로 5G부터 가능함
- 5G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B2C보다는 B2B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함

□ 소위 운영방안 논의

- (○○○) 위원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관심있는 의제가 다양할텐데, 회의 운영에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영향력 크고 집중적으로 다룰만한 의제를 선정하여 논의대상 의제들 간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함
 - 소위원회 개최 시에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가 원하면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소위에 제출된 사업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살펴보면, 역차별 현황 및 해소방안/기간통신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1소위에서 당초 다루고자 계획한 의제와 오픈넷 및 진보네트워크에서 제출한 의제를 모두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우선순위가 높고 영향력이 큰 의제들을 정하였으면 함
- (△△△) 방통위가 주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므로 어떠한 의도로 운영하는지에 관해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의제 설정이 가능할 거라 생각됨
 - 방통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에 전문가 및 단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함
- (□□□) 탑다운 방식의 의제 설정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제 설정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며,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는 의제보다는 독자적인 의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
 - 현재 제시된 의제들 중에서는 4차산업혁명특위나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등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타 회의체의 회의결과를 검토하여 우리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듯함
 - 우리 협의회에서는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큰 의제를 다루었으면 함
- (○○○)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슈들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의제로 선정하였고, 1, 2소위에서 나누어서 다루고자 의도함
 - 오픈넷 및 진보네트워크가 제안한 의제 중 상당수는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는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표현의 자유, 불법 유통정보 유통금지 및 개인방송에서의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은 클린인터넷협의회(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별도로 논의 중
 - 정부와 시민단체의 시각이 대립되는 이슈인 본인확인, 실명제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의제로 삼을지에 관해 논의가 필요
 - 협의회에서 3소위를 구성해서 다루는 방안과 다른 회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으면 함

- (△△△) 클린인터넷협의회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공간에서 논의할 수도 있음
 -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는 1, 2소위 구분을 하지 않고 제안한 것이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의 내용이나 참석 가능여부를 알고 싶음
- (□□□) 다른 회의체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민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시한 의제 중에서는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별도 논의 후 의제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듯함
 - 시민단체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 참여 중이며, 클린인터넷협의회로 변경하면서 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반을 운영하여 방안이 이미 도출된 상황
 - 아직 다루지 않은 청소년 감시법은 정부와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본인확인서비스는 방통위 소관이 아닌 부분들도 존재함
 -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슈로 삼고 있지 않아, 다른 회의체에서 논의하거나 별도 논의 후 의제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듯함
- (○○○)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폐지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여 보완이 필요함
 - (△△△) 애플리케이션 보안 강화의 필요성 공감하고 공론화가 아닌 기술전문가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나 본인확인서비스 폐지는 논의가 더 필요함
- (□□□) 의제가 방통위 소관의 이슈로 제한되는지 궁금하며, 향후 1소위 의제 중에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음
 - (○○○) 방통위 소관의 이슈를 주로 다루려고 하였으나, 과기정통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
 -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하여 방통위와 법무부의 의견은 일치하며, 법무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제를 1, 2소위원회에서 나누어서 할 것인지, 클린인터넷협의회에서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함
- (□□□) 협의회가 왜 발족되었는지에 관해 visioning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국내대리인제도, 집단소송제, 국내와 해외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 등을 다루었으면 함
 - 다른 회의체에서 할 수 있다면 협의회에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회의체에서 논의한다면 협의회 의견을 더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함
 - 협회의가 왜 발족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역차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소위에서 진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토론이 필요함

- 역차별 방안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대리인제도이며,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함
- 해외사업자에 대해 우리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해외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성해야 하는데,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리고 이용자보호 및 후생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제, 임시중지제도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이슈이며, 이와 아울러 사업자들간의 불공정행위, 이용자편익에 대한 저해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방안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봄
- 마지막으로 제시되었던 허가주체와 사업주체 불일치 해소 문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제로 다룰만한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실행의지에 관한 문제인 듯함
- 1소위에서는 국내대리인제도, 집단소송제, 국내와 해외 기관간 공동대응체계에 관한 토론을 통해 정책의 초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결론을 내었으면 함
- o (○○○) 본인확인 및 실명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역차별과 관련되어 1소위 주제와 맞는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의제로 삼을만한지 다른 위원분께서 의사를 표시해주셨으면 함
 - 법리나 기술적 측면이 아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소위에서 답을 찾기 어려움
- o (△△△) 공정한 경쟁여건이 주어져야 하는데, 제도가 가로막거나 해주지 못하는 것을 찾고 논의하는 것이 협의회 목적이라고 알고 있음
 - 현재 제기된 의제를 전부 다루려면 더 큰 협의회를 만들어야 함
- o (□□□) 본인확인서비스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천이어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함
 -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역차별 사안이라 생각됨
- o (네이버) 협의회 본래 취지나 집중력을 생각한다면, 역차별에 집중한 채 분산되지 않고 진행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지만,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함
 - 진보넷 등에서 제기하신 내용들이 다루어진다면 내용 상 여기 1소위가 맞고, 다른 소위를 만들어서 다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 o (SK텔레콤) 본인확인서비스는 협의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전담반에서 다루는 방안도 존재함
 -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외에 편의성도 고려되어야 함
 - 본인확인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취지, 특히 본인확인 수단 개선을 위한 전담반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o (□□□) 협의회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실명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공론을 모으기 어려움
 - 다른 회의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나올 듯함
 - 본인확인을 해서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성년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역차별 해소와는 관심사가 다름

- (○○○) 논의순서는 역차별 현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먼저 규명하고, 그에 따라 개별적인 역차별 해소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한 맥락에서 제안한 의제들이 역차별의 원인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였음
 - (△△△) 의견을 받아들인 후 나중에 연구반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듯함
- (□□□) 의제가 많아질 경우 결론짓지 못하고 논의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 현재의 의제도 충분히 많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 본인확인서비스는 2소위의 이용자 보호방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구글코리아) 세부의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업자들 의견이 너무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음 회의부터는 세부의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 그래서 앞으로 1소위에서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대상 의제를 우선 확정했으면 함
- (□□□) 국내대리인제도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인데, 현상에 따른 해결방안도 다를테니 역차별 현상부터 진단이 필요함
- (○○○) 사업자별로 느끼는 역차별이 다를 텐데, 역차별 현상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규정하고 1소위 위원들간에 공감할 수 있는 역차별 현상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 (△△△) 역차별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과 집행의 차이를 논의하고, 그 이후에 역차별이 무엇인지 도출하면 된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와 해외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역차별로 규정할 수는 없음
 -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제도의 도입을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접근법에서 의제로 선정된 것이라고 봄
- (□□□) 다음 회의에 역차별에 대해 사업자들이 5분 발제하고 토의 및 논의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자 함
 - 방통위에서는 작년 국감당시 제기된 역차별 이슈를 1, 2소위 의제로 제안한 것이며, 이들 의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함
- (구글코리아) 사업자가 느끼는 역차별을 정리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동의함
- (△△△) 통상 역차별은 국내 시장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정책이나 규제가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해 보자는 것임
 - 개별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수요가 달라 독특한 규제가 생겨난 것이며, 단지 우리나라가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역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사실 역차별보다는 불공정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함
 - 여러 가지 시대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와 국내 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 공정하게 대우되고 있는지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 reverse discrimination보다는 level playing field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 공정한 경쟁 여건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될 듯함
- (□□□) 불공정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5가지 정해서 각 사업자별, 시민단체별 리스트를 취합하고, 이를 제도와의 연결성을 찾아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함
- (○○○) level playing field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며 공론이 되어야 하므로 웹하드에 제시했으면 함
- (△△△) 웹하드에 주요 사업자별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사례를 정리해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조치에 관한 의견도 주셨으면 함
- 여러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면 불공정한 행위와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맵핑시켜 볼 수 있을 것이며, 가장 많이 맵핑되는 것을 의제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주제 발표

◇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집행력 확보 (발표: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역외적용은 외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국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지, 관할권과 밀접히 연관됨
 - 관할권에 있어 지향권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할권에 대한 해석의 차원이라 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상 역외규정 조항 두고 있으며, 판례에 요건이 정해져 있어 역외적용과 관할권은 법원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주체와 서비스주체가 다를 때 관할권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나 너무 실무적인 문제라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의사표시자와 법률책임자가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과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며, 본질적인 대리인과 구별하여 개정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구글은 FTA 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EU GDPR 역시 FTA 이슈 존재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과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리인은 절차상 업무에서 대리하도록 하는 반면, contact 위해 제도가 수립됨
-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제기됨
 - 한정된 수단으로 제한되어야 하지만 유사 입법례에서도 요건을 강화함
 - 다만 표시광고법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요건이 완화, 실제로 발동된 사례도 있음
- 집단 소송제는 공정위 집단 소송제와 거의 유사하여 참고할만함
 - 법사위, 정무위에서 집단 소송제 도입안이 계류 중

□ 논의주제 토론

- (□□□) 불공정한 여건 개선을 위해 검토해볼만한 4가지 제도를 소개하고, 찬반 양론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요약하여 발표해 주심
 - 발표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주시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좋고, 박민철 변호사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견 제시도 좋음
 - 불공정에 대해서 가장 의견이 많으실 사업자들께서 먼저 의견을 주시고, 이어서 단체, 전문가, 변호사님들 순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 바람
- (카카오) 역차별이라는 용어가 세련되지 않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불공정 여건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음
 - 역차별과 관련하여 내용규제, 조세, 망비용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규제 역차별 차원에서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인터넷 산업은 원클릭 어웨어라고 불리는데, 불편하면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국경없이 펼쳐지는 무한경쟁 서비스로 볼 수 있음
 -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국내의 독특한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 가지 가입절차나 서비스 프로세스를 바꿔야 해서 서비스 시행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음
 - 입법분야나 재판관할권보다는 집행분야에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고 싶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역차별 해소를 위해 허들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해외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하면 국내 사업자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향이 바람직함
 - 역외적용을 고려했을 때 규제가 불가능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며 이용자에게도 불편하다면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 저희도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미 해외에서 매출이 4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해외진출시 당할 수도 있음
 - 디지털 주권을 좀 더 존중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시키는 과거의 규제를 혁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함
- (SK텔레콤) 역외적용 및 국내관할권 적용 문제를 해석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함
 - 사업이나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책임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legal entity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보완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함
 - 집단소송제에서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여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기존의 소비자 소송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 (페이스북코리아)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해외 관련단체와 공조하여 감시, 견제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주체는 아니지만 절차상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음
 - 페이스북은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제도를 따르려 최대한 노력 중임
- (네이버) 방통위 소관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함
-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드물다면, 굳이 해외와 비교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역차별'이라는 용어, 번역 문제에 관심 기울이지 않았으면 함
 - 규제관할권 문제는 수년간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 규제 문제를 호소할 때마다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대리인, 임시중지명령 등 지엽적인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오히려 이번 기회에는, 국내 사업자들이 제시한 주요 역차별 규제 사례들에 대해서 학계, 시민사회 등 제3자 관점에서 역차별 규제로 볼 수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대책까지 제대로 논의되기를 희망함
- (구글코리아) 외국기업이 위법, 탈법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도 상장회사이고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함
- 정부부처의 연구반 운영이나 의견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느냐의 의지 문제이지, 제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함
 - 방통위원장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해외기업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제는 국내기업에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
- (□□□) 한국 사회에 적용되는 규제가 정당성을 지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국제 집행력을 따져봐야 할 것임
- 해외기업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고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됨
 -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
 - 앞으로 더 많은 해외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므로 특정 업체에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적 방안이라 생각됨
 - 또한 개별 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구분해야 하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구글에 대해 전기통신망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음
- (○○○) 법적의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인데, 어떠한 방식이 실효성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로서 고정사업장이든 대리인이든 어떠한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국제 공조체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야 하며, 역외적용이 공정위쪽에서도 가능한데 굳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함
 - 시민단체의 경우 집단소송제는 일반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므로,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법률쟁점에서 어떠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전문가들이 쟁점을 짚어주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듯함
- o (△△△)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는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함
 - (□□□)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는 절차적 이슈로서 효용가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규제 집행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함
- o (○○○) 국내 관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며 여기서 논의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
 - (△△△)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관할권을 확장시켜서 규제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컨택포인트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임
 -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큰 사업자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다면, 규제를 집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불가능하여 집행력의 확보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이론적으로 관할권을 확장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과징금 부과시 집행이 가능한지는 것은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여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음
 - (구글코리아) 방통위가 구글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가 있고 구글의 미국 본사를 찾아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선례도 있음
 - 구글 본사는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과징금을 낸 사례가 있음. 따라서 집행력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임
 - (○○○) 국내대리인지정 제도에서 대리인은 수범주체로서의 의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 o (△△△) 이미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있는데, 작은 기업의 경우 대리인지정 제도를 지키지 않고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역차별 해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SK텔레콤) 모든 해외 기업들에게 대리인지정 제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것 같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o (○○○)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2016년부터 해외 본사가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함
 - 구글코리아는 실제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데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개정하였으나 실제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상황
 -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를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규모가 큰 사업자는 신고를 하게 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을 잘 활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을 신고하도록 한다면, 관할권 및 집행력 부분은 어느 정도 담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함
 - (구글코리아) 본사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으나, 실제로 그렇게 한 기업이 없음
 - (□□□) 허가 주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 불일치 문제 때문에 외국계 사업자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FTA 협정을 통해서 신고를 안해도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그러한 문제가 생긴듯함

- (○○○) FTA나 WTO 협정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관할권이 미치지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면 됨
 - 구글과 같이 다투지 않고 과징금을 낸 사례도 존재함
 - 역외적용을 할 수는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음
 - (△△△) WTO에서 양허를 해서 해외에서 presence없이 신고만하여 서비스를 직접하도록 함 (즉 국경간 공급 요건이 필요 없음)
- (□□□) 문제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통신판매업은 국내사업자만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 풀기가 어려움
 - 사실상 서비스를 하는 주체를 찾아서 그 주체에 법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음
- (○○○) 국내 사업장이나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 실무차원의 어려움이 있을 뿐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
 - (△△△) 이스라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업자의 이메일 주소만 존재하여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자료조사를 한 적이 있음
 - 국내에 법인이거나 사무소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민원 처리 절차의 신속성이나 조사의 효율성이 낮은데,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보다 나아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실무 차원에서 국내대리인지정은 연락책으로서 한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
 - 일정규모 이상의 일 이용자/다운로드 수 등 요건을 만족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여러 단체를 지정하거나 자연인을 지정해도 됨
 - 중간 연락책을 지정하면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전기통신사업법상 발의된 법안은 엄격해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시 절차나 의무/책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SK텔레콤) presence 걱정을 하는데, 법무법인과 같이 법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지 않나?
 - (△△△) 그에 대해 local presence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한국어 민원처리 서비스 콜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하면 연락처 등 정보가 등록되므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고, 적어도 우리나라 관할로 들어오게 됨
 - 물론 역외에 있으면 여전히 집행력의 문제는 존재함
- (△△△)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 보호이며, 현재로서는 한계가 존재함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국경간 공급에서 안해도 되는 상황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고, 서비스 제공하는 자체로 법 적용이 됨

- 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리자로 적용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절차적 측면에서 연락책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 한국어로 서비스할 경우 홈페이지에 최소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임
- o (SK텔레콤) 단순히 신고의무 부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o (○○○)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신고한 사업자/신고 안한 사업자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유튜브의 경우 2009년 본인확인 때문에 kr에서 .com의 한국서비스로 바꾼 사례가 있어서 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회의적임
 - 텀블러는 유해콘텐츠를 제공하는데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음
 -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해외 역차별도 있겠지만 신고를 안하는 사업자가 존재하면 또 다른 역차별이 생길 것임
 - 우리가 접속차단을 하지 않는 한 이용자는 어디든 갈 수 있음
 - 플랫폼만 제공하고 한국어 콘텐츠를 이용자가 생성하는 경우 한국어 서비스 여부 판단도 모호함
 - 어떠한 규제모델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대상 확대문제이지, 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임
 - 이용자가 신고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서비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에 한해 임시중지 명령을 통해 제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o (□□□)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신고요건을 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부과하여 집행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o (○○○) 국경간 공급이 자유로워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는 의미가 없고, 대신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해주어야 함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대를 어떻게 집행력 지니게 할 것인지, 피해를 어떻게 간편하게 구제할 것인지, 이용자 관점에서 한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o (△△△) 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역외규정, 관할권만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상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 지위가 있어야 규제가 가능한데, 부가통신사업자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음
 - 텀블러와 같은 내용규제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임시중지제도와 대리인제도는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제도라도 봄

- 공정경쟁 관점에서 동일시장에서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면 동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로컬 시장에서 규제나 법적 흠결로 인해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핵심은 대리인제도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수범주체가 일치하는 문제가 연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봄
-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 하면 좋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지정 제도가 첫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안별로 역차별 원인이 다르므로,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만으로 개별 사례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함
- o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규제를 완화/강화한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규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측면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o (△△△) 규제에 관해서는 역차별이라는 용어 사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용어문제는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나을 듯함
 - 한쪽에 제공되는 것이 다른 쪽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라는 의미가 맞다고 보지만, 사실 역차별과 불공정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함
 -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사업자의 규제 역차별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이용자의 편익저해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할 것 같음
 -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국내 및 해외 사업자간 규제의 역차별이 거론되고, 그와 관련하여 역외적용, 국내대리인제도 등이 언급됨
 - 다음 논의에서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규제의 역차별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보고 평평한 그라운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규제의 공정성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 어떨까함
- o (□□□)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들을 정리하여 팔로업할 수 있어야 함
 - 각자가 느끼는 차별의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신고문제, 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 중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정리했으면 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1소위원회 2차 회의 두 번째 금요일(4월 13일) 2시 개최 예정
- o 차기 회의에서는 사업자별 규제 역차별 및 불공정 현황에 관한 의견 발표와 이의 개선/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방안들 중 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예정

3-2-2. 제2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4. 13.(금) 14:00~17: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한신대 문철수 교수, 미디어디렉션연구소 엄호동 소장, 숭실대 최정일 교수, 호서대곽정호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광장권순엽 변호사, 한중 정경오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최윤정 과장, 양기철 과장, 천지현 과장

2. 회의록

□ 인사말씀

- (□□□) 지난 1차 회의에서 규제 역차별 및 불공정경쟁에 관해 위원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위원들 및 사업자들 간에 규제 역차별 및 불공정 경쟁 현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함
- 금일 회의 1부(14:00 ~ 15:00)에서는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한 가지인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며, 2부(15:10 ~ 17:00)에서는 사업자들로부터 규제 역차별 및 불공정경쟁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음

□ 발표 및 토의(소위원회 위원 참고 토의)

◇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법안 현황 (발표: KISDI 여재현 실장)

- 현재 3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외의 유사 입법례로는 EU의 GDPR이 존재함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안은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등을 부과하여 타 법안에 비해 엄격한 처벌 규정이 존재함
-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며, 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 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함

- 해외 유사 입법례로는 GDPR이 있으며, 의무 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지정함
- 대리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대리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통상법의 위반가능성이 낮다는 해석
- 국내대리인제도 찬성 견해 중에서도 법 위반 행위의 책임을 국내 대리인에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뉨
- 반대 견해는 자기 책임원칙 및 한미 FTA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임
- 입법 발의된 세 법안들간 차이의 특징은 대리인에게 법적 책임 부과 여부이며, 어떠한 방향을 택하더라도 기본 법원칙과 통상법을 고려하여 의무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o (○○○) 발의된 법안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반대의견에 의하면 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함
- o (△△△)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local presence 없이 직접 서비스가 가능한 국경 간 공급에 의한 징수 한계 이슈와 신고의무 이슈가 존재함
 - 기간통신역무에 대해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제휴를 하도록 하였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local presence를 포함하면 징세권 대상이 되므로 해외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
 - 두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고 또는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냐는 것인데,
 - 일반적으로 local presence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한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자회사(광고를 위한)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규제의 어려움이 있음
- o (□□□) 국내 대리인제도의 목적은 시장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를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임
 - GDPR의 경우에도 agency를 두도록 하여 본사와 똑같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통상 이슈에 저촉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회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o (○○○) 3시10분부터의 회의(2부회의)에서는 사업자들과 규제 역차별 현황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 국내대리인지정 제도 입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토론은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역차별 현황진단을 위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음

□ 역차별 논의 및 개선방안 토의

- o (△△△) 회의를 효과적으로(위원들 및 사업자들 모두의 의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렴)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님을 1소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함
- o (□□□) 위원님들과 사업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사업자들이 느끼는 역차별 현황을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추가 의견 또는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함

- 역차별은 비교대상에 따라 해외/국내사업자 간, 기간/부가통신사업자 간, 대형CP/중소형 CP 간,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사업자/이용자 간 역차별로 유형화가 가능함
-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우선 해외/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에 집중하여 토론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음
- 사업자들께서는 이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역차별 현황 의견을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함

o (네이버) 기존의 내용 중 생각해볼 사례로 몇 가지를 정리함

- 2017년 국감에서 지적된 N 페이가 우선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 사례를 네이버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2017년 정해진 고시는 OS 제공 사업자나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차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행위주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로 한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함
-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사전규제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네이버는 이용약관 개정 시 중요사항은 한 달 전에 공지하도록 적용받고 있음
- 검색서비스 권고안에 따라 검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법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 종류의 규제들은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례가 있음
- 오래된 사례이지만 정보법에 따른 청유물 접근시 나이 및 본인확인 등 국내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해외사업자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함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쟁상황평가를 적용하자고 하는데,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의문이 존재함
- 자율규제라는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국내 사업자들에게 적용이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o (카카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졌으므로 최근의 극명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음

- 페이스북 사태로 접근권한 등의 제도 문제가 국내 사업자에게 제기가 되었으나, 국내 사업자들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받고 있음
- 그러나 해외 모바일 OS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함
- 해외 사업자는 빅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 광범위한 수집을 통해 타겟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국의 포털 업체가 함께 경쟁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수많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좋은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임
-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모바일 광고 등 해외 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이며, 결국에는 국부유출이라고 생각함

- 가이드라인이 법규는 아니지만 또 다른 규제로서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리고 기간/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은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인지, 이슈로서 합의가 된 사안인지 의문이 있음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각론을 얘기했으므로, 큰 틀에서 얘기하겠음
 - 부가통신시장은 국내외 사업자가 같이 경쟁하므로 국내의 법들이 해외 사업자들에게 동등하게 미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임
 - 지금 규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당화로 해외 사업자를 같이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임
- o **(OOO)**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이 정해진다면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었음
- o **(페이스북코리아)** 플랫폼사업은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200여 개국에 이르며, 페이스북은 플랫폼 상 안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함
- o **(구글코리아)** 역차별의 사전적 의미가 어느 한쪽에 사회적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해외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실제로 우대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함
 -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실태 조사 등에서 구글은 국내사업자와 다르지 않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규칙이 정해지면 따를 예정이며, 현재도 한국법을 따르지 않아 위법 조치가 벌어지는 것은 아님
 - 만약 해외사업자들이 적극적 우대 조치나 규제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면 무엇이 이슈인지 따져 주셨으면 함
 -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규제 완화로 해결하면 되는데, 역차별을 주장하는 기업들이 왜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는지 궁금함
 -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해 구글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여 오히려 경쟁결여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각종 가이드라인 신설로 인해 해외사업자들이 공공영역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로 인해 우회적으로 사업에 진출한 기존의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 해외 기업들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힘든데 신생 기업들이 과연 따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존재하며, 국내외 기업이 동일한 운동장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함
 - 사실 수많은 스타트업이 구글이나 아마존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의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구글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다면 혁신 창출, 국부 창출이라고 봄. 혁신 촉진 환경을 희망함

- (SK텔레콤) 기존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보호와 같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규제를 재편했으면 함
 - 무엇보다도 수익이 있는 곳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주어야 함
 -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 품질 유지를 위해서 같이 기여해주셨으면 함
 - 현상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법적 수용 여부와 공정성 이슈가 존재함
 - 기간통신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해석하고, 부가통신사업자를 해외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며, 시장진입이나 M&A 겸업 등에서 차별이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는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는데,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했으면 함
 - 망 중립성에 비해 플랫폼 중립성의 이슈는 그동안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음. 해외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 이동성이 논쟁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우리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함
 - 사회적 책임 면에서도 통신사들은 보편적 의무 등을 통해 타 사업자보다 더 부담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통신사의 이슈는 아니지만 동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통신기금 대상 사업자가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 국내/해외 사업자에 관련한 역차별과 부가/기간 통신사업자 간 역차별을 모두 말씀해주신 것으로 판단됨
- (KT) SKT에서 기간/해외 CP간 역차별을 말씀해주셔서, 국내외 CP간 역차별을 말씀드리겠음
 - 동일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CP간 역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음. 운동장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 CP들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듯함
 - 동일한 운동장을 주장하려면 국내 CP들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망 이용대가 문제가 가장 큼
 - 역차별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 (○○○) 지금까지 사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음
 - 사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이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역차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함
- (△△△) 사례는 많이 들었으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음
 - 혼란스러운 점은 국내사업자만 규제해서 문제인지, 역차별이 제도적 제약 때문인지, 국내외 사업자 모두 규제할 수 있는데 국내만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 의견을 듣기로는 네이버에서 발표하신 것은 국내 사업자 위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집행이 기울어졌다는 의견인 것으로 여겨짐

-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규제 법 적용 집행 관점에서 말씀드릴
 - 필요한 좋은 규제는 따라야 한다고 보나, 인터넷 시장이 국경도 없고 빨리 변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기술발전에 비해 규제가 뒤처지는 측면이 있어서 규제 혁신의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함
- (△△△) 규제 수준 자체를 어떻게 완화/강화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듯함. 우선은 역차별이 존재하느냐를 다루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함
- (네이버) 규제 수준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생각함
 - 규제의 관할권 문제에 앞서서 규제 집행을 하는 규제기관의 인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 집행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는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듯함
 - 페이스북 문제 당시 방통위 보도자료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두 기업은 그동안 방통위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일 것임
 - 나머지 국내 사업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대표사업자만 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 역차별 발생의 원인이 관련 법/제도 미비에 관련된 부분과 법 집행력(집행 의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음
 -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맞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보완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제안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력 및 집행 의지는 규제 당국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는 집행을 하고자 해도 실효성 있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하여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적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 본인확인제도가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본인확인제도가 실시된 후 얼마 뒤에 동영상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해외 사업자에게 역전됨. 물론 콘텐츠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함
 -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공정거래법은 국외 적용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역차별 방지가 가능하다고 봄
 - 반대로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사업자가 우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음
- (□□□) GATS나 FTA에서 local presence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등록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함
 -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함

- 부가통신사업자 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할 때만 하더라도, 부가통신사업자가 성장하여 이러한 시장 지위를 얻으리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함
- 오히려 망사업자의 시장 지위로 인한 행태를 우려하여 초고속 사업의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100여 개가 넘는 사업자가 설비 기반 경쟁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페이스북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초고속인터넷은 대체가 가능한 상황으로 시장 역학구도가 변화함
- 망사업자를 수범주체로 하는 전반적 규제제도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규제 부분의 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초고속을 기간통신역무로 정하면서 유효 경쟁을 이끌어낸 것은 규제를 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처럼 규제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체제, 우월한 지위로 인해 시장을 흔드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함
- o (○○○) 국내외 사업자별 역차별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제시가 된 듯함. 국내 사업자가 느끼는 규제 역차별 현황과 역차별 주장에 대한 해외 사업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모두 들어 보았음
- o (△△△) 공정위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운영 사항이 있는지 궁금함
- o (□□□) 카르텔 케이스가 공정위 규정이 없었을 때 적용한 사례임
 - 당시에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시 송달을 하였으며, 공문을 받은 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에게 송달하면 유효하도록 함
 - 공정거래법 전에 민사소송법에서도 1차적으로 송달이 된 후 국내 대리인에게 송달하면 유효하도록 함
 - 이 사례들은 여기서 제기된 것보다는 대리인의 적용 범위 적은 것으로 봄
 -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보다 앞서나간 경우도 있으므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은 규제기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함
- o (○○○) 역차별 현황진단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으며, 이제부터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완화 및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 국내 대리인제도는 GATS 양허에 반하는 부분도 있고 무리가 있어 보임
 - ☹☹☹님 말씀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고를 하게끔 GATS 양허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미신고로 인해 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집행에서의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임
 - 역차별 해소 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함. 국내 대리인제도를 손질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함
- o (△△△)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봄

-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지 행위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신고를 안 하면 된다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남
- 비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금지 행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o (□□□) 신고를 안했을 때 과징금이 있는지?
- o (○○○) 문헌적 해석에 따르면 금지행위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부가/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 집행 적용대상이 신고한 사업자(신고 면제한 경우 포함)임
 - 정경오 변호사님처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할 것이냐를 지적할 수도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 미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임
 - 해외사업자도 신고대상이 되느냐는 과기정통부에서 WTO나 FTA에 의해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하였고, WTO에서 양허로 신고를 규정하였다고 하였으므로, WTO와 FTA 체결국을 구분해야 함
 - 첫째는 신고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이며, 둘째는 신고를 안 한 사업자에게 금지행위 여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이처럼 신고 의무는 논의를 해서 풀어가면 될 듯함
 - 법 집행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하느냐는 해외와 국내 사업자간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살펴봐야 하며, 이 부분에서는 규제 기관의 입장도 있을 듯함
 - 국내/해외/규제 기관 간 대립이 있다면 규제를 평등하게 풀어가면 되는데, 이 경우 제도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음
 - 제도적으로는 tax, 망이용료, 외감법이 있으며, tax와 외감법은 법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며, 망 이용료는 따로 접근해야 함
 - 결론적으로 문제를 다음과 같이 1.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대립 지점을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쟁점으로 살펴보는 것, 2. 규제기관이 공평하게 집행을 하려는데 제도가 미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 3. 법이나 큰 틀(tax)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제안함
- o (△△△) 정부에서 법집행이 평등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함
- o (□□□) 신고 면제가 되더라도 금지행위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신고의무 기재가 없더라도 집행에서는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함
 -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임
 - ♣♣♣님은 국내 대리인보다 해외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신고의무를 말씀하신 듯함
 - 김성태 의원법안은 강력하여 추진이 어려우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EU의 GDPR을 도입 하는 것은 제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봄
 -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행했다는 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님이 법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므로, 소위에서 개선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함

- (○○○) 법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정부입장에서 확인하기로 하며, 법/제도의 개선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정교화하는 작업은 위원회에서 했으면 함. 오늘 역차별 관련 추가적인 발언을 하실 분이 있으신지?
- (SK텔레콤) 미국이 ISP 규제를 부가통신에서 기간통신으로 다시 부가통신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규제 가능여부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작은 부분에 치우치기 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 (□□□) 신고제도는 양허내용을 보시면 될 듯함
 - 해외 사업자가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면 그 자체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임
 - 그러한 경우 법을 개정해서 국내 사업자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신고까지 안 받고 규제 연결 고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규제 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옵션인지 의문이며, 시장역학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기본적인 전제는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보호, 특히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임
 - 대리인지정제도에 대해서 법안이 세 개가 있는데, 서비스제공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리인에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김성태 의원 법안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봄
 - 구글코리아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로 신고 및 등록을 하였음에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국내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판결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를 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음
 - 신고는 본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았으면 함
 - 정보통신망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비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효과적인 집행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국내에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 GDPR과 같은 방식은 의무 위반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대리인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개인정보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므로 관계부처에서 법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관할권 문제는 법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함
- (△△△) 역차별은 개인이용자 보호관점, 사업자 공정경쟁 관점 두 가지에서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국내/해외 사업자에 따라 나누어 볼 수도 있음
 -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공정경쟁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봄
 - 개선 이슈에 대해서 하나로 모아보면 공정 경쟁 담보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라고 봄
 - 공정경쟁을 위한 내용들이 통상마찰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 시장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과세,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 이슈를 나누어서 점검을 하는 것을 제안함
- o (□□□) 집행력 사안은 규제기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문제로, 강력하게 추진하면 해소될 수 있음
 - 이용자 보호 이슈를 위해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반논란이 있는데,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님이 제안하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국내에 두는 방안은 local presence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GDPR은 본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임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그러한 agency가 필요함
 - 역외 적용과 대리인지정제도는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o (○○○) 미디어 전공자 관점에서, 논의가 발생된 배경에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됨
 -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가 이용자 파워를 등에 업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며, 이용자가 계속 진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해외사업자가 따르지 않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음
 - 과징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외사업자들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함
 - 예를 들어, '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생겼을 때 한국 서비스가 사라졌음에도 이용자는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음
 - 이로 인해 해외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나, 국내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게 되어 차별이 발생하게 됨
 - 텀블러와 같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규제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하며, 이 경우 이제 해외 규제기관(미국)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음
 -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 규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o (△△△)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앞선 규제에 대해서 선택적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함
 - 첫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WTO 양허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대상이라면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받으면 됨
 - 실효적 규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대리인지정제도 형태의 찬반을 정리하고,
 - 이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진입 규제와 관련된 부가/별정사업자 관련 부분에서 개선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내 집행 근거를 마련하면 됨

- 두 번째는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사후 규제 부과 여부를 위해 해외 사업자를 부가통신 사업자로 포함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지를 논의해야 함
- 세 번째는 망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depeering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o (□□□) 규제 역차별에 대한 현실적 진단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 및 사업자들간에 상당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1소위원회 3차 회의는 5월 11일(금) 14:00시 개최 예정
- o 차기 회의에서는 역차별을 해소하면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며, 관련한 전문가 발제는 방통위에서 준비하기로 함

3-2-3. 제3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5. 11.(금) 14:00~17: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한신대 문철수 교수, 미디어디렉션연구소 엄호동 소장, 호서대 곽정호 교수, 광장 변동훈 변호사, 한중 정경오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최윤정 과장, 양기철 과장, 이남표 전문위원

2. 회의록

□ 주제 발표 및 소위원회 위원간 토론

- (□□□) 1,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김현수 박사님이 발표한 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겠음

◇ 역차별 현황 및 주요 쟁점 정리 (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역차별 현황) 사업자들의 역차별 현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결과,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역차별 이슈,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이슈로 분류됨
 -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재정리하면 국내사업자와 달리 해외사업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견해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에 비해 부가통신사업은 규제가 거의 없다는 의견
 -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트래픽 분담은 2소위에서 망중립성 및 망이용대가와 관련하여 논의 중이므로, 이번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 (해소방안1) 법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법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역외적용 규정 신설, 국내대리인제도 및 임시중지제도 도입 등이 제시됨
 - 역외적용은 찬성/불필요 의견으로 나뉘며, 찬성은 관할권을 명확히하고 역외적용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 제시

- 임시중지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부분만 분리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견해와 과잉 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반대 견해 제시
- 해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 임시중지제도에 대한 의견이 불균형하게 형성되어 논의가 더 필요함
- o (해소방안2) 규제 집행에서의 역차별 논란 차단,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집행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상황 자료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방법은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의무 부과가 존재함
 - 경쟁상황평가 도입 찬성 측은 부가통신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입이 필요하나 사전규제와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
 - 반대 측은 사전규제와 연계되므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특히 부가통신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이고, 부가통신 시장이 양면시장이라 시장확정이 쉽지 않다는 점 제시
 - 이러한 사전규제와의 연계성과 시장확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실태조사이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제일 약한 규제 수단이 통계보고 의무이며, 이미 사업법에 존재하여 방통위와 과기부에 보고 하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서비스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아 방통위에 대한 통계보고의무 부과 규정 신설 검토가 필요함
- o (○○○)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방안에 초점을 두고 토의하고자 함
 - 1, 2차 회의를 통해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공감대는 이루어졌으므로, 역차별 현황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앞서의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역차별 사안이 있다면 협의회 최종보고서에 추가 하여 담을 예정임
 - 김현수 박사님의 발표에서 제시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들에 대한 기존의 찬반 견해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o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99조)은 형법상의 역외조항 적용대상이므로 규제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역외 조항 도입이 필요함
 - 역외조항 관련 규정은 헌법, 공정거래법, 형법에 명시되어 있음
 - 형법은 행정법보다 강한 규제이므로 행정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역외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함이 존재함
 - 공정거래법상 역외조항은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진입규제가 있어서 신고, 인허가 받은 사업자로 적용이 한정됨
 - 역외적용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사업자도 규제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대상자를 개정해야 함
 - 해외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이 필요

- (□□□) 현장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의 확보방안은?
- (○○○) 우리나라 경찰관이 해외에서 행정조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해외사업자의 호의에 의한 협조를 바랄 수밖에 없음
- (△△△) 금지행위 대상을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역외조항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인가?
- (□□□) 전기통신사업자를 허가나 신고를 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 그러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느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자'라고 제안함
 - 그러나 범위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역외규정의 본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 해외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영역 외에서 우리나라 시장 및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력 확보가 없는 이상 명문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 법원의 행정처분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며, 오히려 역외 적용 도입시 원래 목적보다는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국내대리인 제도는 컨택포인트로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임
 - 임시중지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큰 해외사업자보다는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함
 - 즉, 적용 요건에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국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임시중지제도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과도한 위헌적인 제도는 아니라도 생각함
- (△△△) 과기정통부에 사전적인 규제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 (□□□) 과기정통부 역시 통계보고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음
 - 과기정통부는 경쟁상황평가, 보편적 의무 등과 관련된 사전규제정책이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반면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 권한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경쟁상황평가에 부가사업자를 포함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부가사업자에게 부과하면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여 자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행규정으로는 어려우므로 개정이 필요함
- (○○○) 국내대리인 제도는 조세징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개별 행정법상의 처분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임시중지제도는 유사 제도인 접속차단이 존재하므로 도입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미 도입된 임시조치 제도가 참고할 만함
 - 다만 불법정보를 영구적으로 차단해야지 일시 중지한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음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임시중지명령 조항을 전기통신망법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o (△△△) 임시중지제도 도입 시 과도한 사익 침해가 우려되므로 도입은 하되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o (□□□) 법 규정보다는 법집행력 의지의 문제로 보임
 - 텀블러의 경우 접속차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체를 차단해야 하므로 특정 URL 차단으로는 불가능하여 임시중지제도 자체도 한계가 존재함
 - (○○○) 불법사이트는 차단시 우회 경로로 접속 가능한 사례도 존재하여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규제기관입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할 수밖에 없음
- o (△△△) 임시중지제도 도입으로 실효적인 법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 역외적용 명문화 효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역시 실제적인 의무보다는 절차적 의무 수행을 하여 행정업무의 편의성 제공 역할 밖에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으로 예상됨
- o (□□□) 임시중지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존재
 - 발제문의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찬성 견해를 보면 해외사업자들이 대부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음
 - 임시중지제도가 강력한 수단이라고는 하나, 국내이용자가 자발적으로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한 경우에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라고 볼 수 없음
- o (○○○) 전기통신망법상 임시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기존의 접속차단과 다름
 - 기존의 접속차단은 콘텐츠상 불법정보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시중지제도는 해외 사업자의 위법행위 사실조사 진행 중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려는 것임
 - (△△△) 요건상 시정조치 3회 이상이므로 사실조사 이전의 피해확산 방지보다는 이미 사실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한 조치로 생각됨
 - (□□□) 현재는 전기통신망법상 정보 내용에 대한 차단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제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하다는 것임. 시정조치 3회는 요건의 강화 측면에서 규정된 듯하며, 법위반 가능성이 명백하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임시중지명령을 하여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필요성 측면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임
 - (○○○) 조사 불응은 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확인해서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봄
 - (△△△) 기존의 접속차단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임시중지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안조치 의무가 필요한데 방지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망법상 3회 이상은 맥락상 적절하지 않아 보임

◇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검토(안) (발표: 호서대곽정호 교수)

- (문제정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후 규제 규정인 금지행위의 합리적 유형이 역차별 해소에 적절한지와 현행 규제체계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가에 관한 논의이며,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규제프레임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 단계적 접근법의 1단계는 실제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자 지위 문제 해결 논의
 - 2단계는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으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상황평가를 확대할 것인가와 적절한 시장조사가 경쟁상황평가의 형식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
 - 3단계는 국내외 동일한 규제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현재 규제제도 적절한가와 관련된 것으로 망이용대가와 망중립성 주제가 이에 해당함
 - 본 회의에서는 2단계에 중점을 두기로 함
- 발의된 뉴노멀법은 이미 1단계 해외사업자 지위 및 2단계의 경쟁상황평가를 포함하고 있음
- (개념 및 현황) 전기통신사업법 상 경쟁상황평가는 정부개입이 필요한 시장 및 규제 대상 사업자를 식별하고 규제의 종류 및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존재함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평가 대상은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6개 시장이며, 부가통신시장은 이슈분석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음
 - 평가 절차는 단위 시장 확정 후 자료수집,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의견수렴 및 공표로 구성됨
- (찬반논리) 주로 통신사가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을 찬성하며, 포털 및 인터넷 기업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임
 - 찬성 논리는 부가통신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시장지배력 사업자들이 존재하는데, 지배력 남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 반대 논리는 인터넷 시장은 파괴적 혁신이 가능하여 이용자에 의해 지배적 사업자가 쉽게 교체될 수 있어서 시장자체가 기간통신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임
- (검토의견(안)) 현 시점에서는 당장 경쟁상황평가 도입이 어려우며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1차적으로 자료조사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규제집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2차적으로 특정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 경쟁상황평가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
 -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해당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
 - 3단계 사후 규제관점에서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부가·별정·기간통신사업자를 모두 포섭하므로 현행규제체계에서 규제가 가능함
 - 판단 근거는 시장확정의 어려움, 충분하지 않은 해외사례, 인터넷산업 혁신성 저하 우려, 정량적 자료의 신뢰성 확보 어려움임

- 부가통신시장의 확정에 대해서는 법적 판례 및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으로 규제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해외에서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를 적용하려는 추세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근거 마련이 우선임
-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 정책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논의주제 토론(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 사업자간 토론)

- (□□□) KISDI 김현수박사님이 지난 1, 2차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주신 역차별 현황 및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함
 - 현재까지 정리된 역차별 사례 외에 다른 사례들은 본 회의에서 다루기보다는 추후 추가로 최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그간의 회의를 통해 역차별 인식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 회의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완화 내지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중점을 두어 토의하고자 하며, 기존에 정리된 찬반 견해들 외의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
- (SK텔레콤) 규제형평성 관점에서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함
 - 경쟁상황평가가 사전규제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
 -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시장확정방법론이 합의로 이루어진 것처럼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시장확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실태조사나 경쟁상황평가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상황평가의 사전단계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보다는 기간/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에서 제시된 경쟁정책 및 트래픽 유발 책임에 대한 반박 견해를 말씀드리려 함
 - 기간통신시장은 경쟁 활성화가 힘든 구조이나, 부가통신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므로 경쟁정책 시행이 필요 없음
 - 트래픽 유발 책임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서비스 제공 수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망비용 부담을 납부하고 있음
- (구글코리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관련하여 구글은 현재도 규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법령상 준수 의무가 없는 가이드라인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구글코리아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궁극함
 - 가이드라인은 본질적으로 법이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며, 이것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고민해야 함
 - 조세납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세제도가 디지털 환경 발전에 따라 발전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제도가 개편된다면 새로운 제도를 따를 예정

- 트래픽 부담은 망중립성 문제이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 망사용료인지 상호접속에 의해 기초한 비용인 것인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역외적용 명문화와 관련하여 이미 해외사업자도 규제 및 관할을 받고 있으며,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권에 대해 무리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국내대리인제도는 헌법상 책임주의, 한미 FTA 현지 주재 등 위반 소지가 존재하고 형법상 규제체계가 존재하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무엇이며 오히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o (○○○) 구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국내대리인 지정 방법에 있어서는 EU 수준의 컨택포인트 정도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 위헌 소지는 국내 발의된 법안에 해당하는 것이며, EU 수준의 컨택포인트 정도는 어떠한지 의견이 궁금함
 - 이조차도 FTA 위반 쟁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EU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문제가 없어서 GDPR 제도에 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됨
 - **(페이스북코리아)** 그러한 경우 국내에 지사 형태의 사무실이 있고 정책 협력 업무도 진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함
 - (□□□)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됨. 지사를 대리인으로 할 것인지 제3자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됨
 - **(페이스북코리아)** 국내대리인지정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은?
 - (△△△)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과태료 3천만원 수준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님
 - (○○○) 제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음
- o (△△△) 임시중지명령은 해외사업자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고 국내사업자도 포함됨
- o **(네이버)** 제안된 역차별 해소방안도 집행력이 부족해보이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법이 없어서 집행이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o (○○○) 역외적용조항이 없더라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며, 조항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GDPR에서는 기존의 역외조항과 차별화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조항이 없어도 집행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명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연락책으로서의 국내대리인은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임시중지제도의 목적이 시정명령 이행강제,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차단 중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임시중지명령도 망사업자를 통해 차단할 것일텐데, 국내 망을 차단하여도 우회접속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음
- 임시중지제도가 이용자 피해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오히려 차단된 플랫폼에서 불법정보가 아닌 것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o (△△△) 임시중지제도와 임시조치가 혼란이 있어 보여 설명해주셨으면 함
- o (□□□) 현재 발의된 임시중지제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나, 각각의 필요성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임시중지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인터넷 사업자이며, 임시조치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관련이 있음
 - 이외에 방심위는 불법정보유통 및 접속을 차단함
 - 본 회의에서 논의 중인 것은 임시조치 제도가 아닌 개인정보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o (○○○)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목적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강화를 위한 것이기도 함
- o (페이스북코리아) 페이스북의 위치정보 사례 제시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위치정보는 약관에 포함되어 있어서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용할 때는 위치정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음
 - 또한 페이스북이 200여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수집이 불가피함
 - 예를 들어, 이용자의 국가 규정 상 특정 콘텐츠가 보이지 않게 하려면 위치정보를 통한 국가별 구분이 필요함
- o (KT) 칸막이 식 규제체계가 시장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용자보호를 위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제 필요
 - ISP, 국내외 CP가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서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한계 존재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반면,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금지행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국내 사업자에 비해 협조가 어렵고 신고주체와 서비스주체가 상이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어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KISDI 경쟁상황평가의 이슈분석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부가통신시장의 매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전에는 규모가 미미하여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생태계 전반으로 규제 확대 필요
- o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에 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에 첨언 드리겠음
 - 기간통신사업은 인허가 사업인데, 부가통신사업은 무한경쟁시장으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경쟁 상황평가 도입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함
 - 트래픽 유발에 대해서도 첨언을 드리자면, 트래픽을 유발하는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 생각해봐야 할 것임
 - 임시중지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며, 인터넷 서비스를 분리하여 차단이 가능한지도 의문임
- o (△△△) 오늘 회의는 주로 역차별 해소 및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제도 입안 시 본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역외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으나, 역외적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심
 -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는 통상법 저촉이나 기본적인 법적용 원칙으로서의 자기책임원칙의 위배 가능성 때문에 절차적 규제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 임시중지제도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의 임시조치제도와 보다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규제 내용의 투명성 확보방안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며, 경쟁상황평가 실시는 부가통신시장 확정을 위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적절한 방법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실시에 앞서 평가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1소위원회 4차 회의 개최일은 6월 8일(금) (오후 2:00시) 예정
- o 차기 회의에서는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곽정호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함과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 또는 합리화 방안(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포함)에 관해 논의할 예정

3-2-4. 제4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6. 8.(금) 14:00~17:00
- 장소 : 더케이호텔 한강홀
-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서강대 홍대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김동민 단국대 교수
 - (소비자)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발표: KISDI 염수현 연구위원)
 - (현황 파악 필요성)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집행력 강화 전제조건인 시장상황 분석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 자료 분석 범위 및 심도에 따라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 세 가지 안 제시
 - (실태분석 방안-경쟁상황평가 확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통하여 시장상황 파악 및 그에 맞는 합리적 규제권한 행사 필요
 - 도입한다면 즉각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감독 및 합리적인 사후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존재
 - (실태분석 방안-실태조사 방안) 매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
 -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통계를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국내외 통신규제기관은 사전규제보다는 현황 파악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음
 - (실태분석 방안-통계보고의무 부과 방안)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통계보고를 방통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 현재 국내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만 적용되고 서비스 분류체계도 인터넷 시장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 필요

- 과기정통부와 통계이용목적이 달라 통일된 보고양식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방통위에 대한 통계의무부과 규정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 o 인터넷 생태계 균형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발표: 광장 권순엽 변호사)
- o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 법규 현황 및 개정 방향을 정리함
- o (이용환경 변화 및 시장 현황)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 정체된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시장, CP 영향력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체계 현실화 필요
 - (이용환경 변화) LTE 도입으로 인터넷 사용이 모바일로 전이되면서 인터넷 소비가 폭증하고 있음. 5G가 상용화되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망고도화 투자 필요
 -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 가입자 포화상태로 ARPU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망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쟁심화로 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약화·상실
 - (CP 영향력) 대형 CP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가총액 등에서 이미 통신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망사업자가 우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었으므로,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체계 현실화가 필요함
- o (인터넷망 이용 관련 법규 현황)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국내 통신시장에 경쟁이 전면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망사업자를 수범 주체로 하는 규제체계 유지 중
 - 초고속인터넷이 부가통신역무였으나, 2004년 전세계 최초로 기간통신역무로 재분류하면서 규제가 가능하게 됨
 -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었는데 규제는 변화 없음
 - 1991년 법 제정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CP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해 사실상 부가통신역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음, 최근 플랫폼 중립성을 위한 규정 추가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 수범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금지행위 규정은 일부에 불과함
- o (금지행위 규정 개정방향)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이 우선이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접근해야 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제한 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규정 보완 필요
 - 시장 장악력이 높은 CP에게 이용자 이익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함
- o 인터넷 기반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현황 (발표: 서강대 홍대식 교수)
- o 대표적으로 미국과 EU의 제도 현황을 살펴봄
- o (미국) 최근에 미국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에서 부가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함
 - 당초 ISP가 정보서비스라는 전제하에 망중립성 규정을 적용하려다보니 정보서비스 규제가 약하여 '15년 Open Internet Order 개정시 통신서비스로 분류했었음

- '17년 Internet Freedom Order에서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하였으며, 기존에 부과하던 차별금지 의무 등을 없애고 투명성 규제는 강화함
- 규제를 없앴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투명성을 강화하여 규제 형태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o (EU) EU는 인터넷 기반서비스(정보사회서비스)를 EU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구글 등 플랫폼의 영향력을 우려하여 규제를 연구하고 있음
- '16년 대대적인 consultation 진행 후 분석하여 '17년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플랫폼과 사업자간 관계에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플랫폼과 사업자간 공정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개입 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함
- '18년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임
- 1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중립성, 내부적인 불만처리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사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 당장 제제는 수반하지 않으나, 의무 부과 후 위원회가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 o (○○○) 앞서의 발표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 시장현황과악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 현재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현황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이므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 해외 사례도 최근에 거의 없는 편이며, 법제화를 목적으로 한 시장조사가 필요한지 의문임
 - 권순엽 변호사님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위상 약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시장 환경에 통신사들이 적응해야 함
 - 부가통신시장이 커지는 시장 변화로 통신사의 노력에 따른 보상이 적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음
 -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성, 진입장벽 등을 통해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함
 - 이처럼 시장의 특성이 다른데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자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부가통신사업자는 현재 무수한 법령으로 인해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규제강화 보다는 규제 완화를 고려해주시기 바람

- 홍대식 교수님 발표자료 중 클린턴 집권 시기에 인터넷사업을 규제하지 않아 세계 굴지의 기업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o (□□□) 사업자들께서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하여 분명히 하자면, 기간통신사업자와 비교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환경이나 성과 등이 좋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서 발표에서 제시된 시장현황 파악 방안은 부가통신사업 내에서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바로잡기 위한 것임
- 무엇보다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부가통신사업의 규제 수준이 기간통신사업의 규제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한 듯함
- o (네이버) 앞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님 의견에 동의하며, 상생협업체 본래 취지에 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함
- 1소위원회에서 당초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대책이 아닌 방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음
- 경쟁상황평가는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임
- 권변호사님의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드러나 있음
-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규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트래픽 급증 및 CP 영향력 확대와 규제 필요성과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간통신사업자 규제가 당시 망사업자 우위로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망 보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이 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나, 부가통신사업자 또한 망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기준으로 규제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실태 조사 방안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였는데, 매출로 인한 영향력으로 일부 사업자만 보고 규제를 설계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소방안을 통신업에서 찾으려는 것은 편협한 시각임
- 예를 들어, 야놀자라는 업체의 경우 숙박업 적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사업분야에 따라 해외 경쟁상대와 따르는 법이 다르므로 부처별 고민이 필요함
- o (△△△)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에 관해 지난 회의까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간 쟁점들을 논의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됨
- o (네이버) 부가통신사업자가 많은데, 그 중 소수 사업자만 보고 규제를 강화한다면 형평성 있게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o (구글코리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CP업계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셨음

- 인터넷 상생위원회가 출범 당시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계속 같은 논의가 반복되면서 콘텐츠 업계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음
- 기간 통신사업자 위기를 말하면서 콘텐츠 업계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간 역학 관계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통신사의 5G 망투자비용이 LTE보다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는 외부 예측도 있으므로 통신사의 망투자 비용 증가로 인한 규제 완화 필요 등 주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 부탁드림
- 통신에서의 ARPU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나,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IPTV는 급속히 성장 중으로 ISP의 수익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간 대 부가로 가르기보다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함
-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부침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통신사업자는 현재 규모와 상관없이 서비스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움
- 상당히 극소수만 성공을 거두는 인터넷 사업 특성을 고려해주셨으면 함
- o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가 있음
 - 이번 회의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나 공정경쟁 제한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사실 오늘은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이고,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므로 미리 특정 정책방향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음
- o (페이스북코리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용자 보호 중심, 공정 경쟁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발언이 강한 이유는 기간 대 부가 간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임
 - 특정 부가통신사업영역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면 같이 노력하겠으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관계를 불공정 행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 기간과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각자 우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사기업간 거래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홍대식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미국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아서 인터넷 사업자가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음
 - 유럽은 문화적 특성으로 이용자 보호나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하여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거의 없음
 - 이처럼 규제방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며, 이 자리에서 옳다 아니다라는 가치판단을 내리기보다 같이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o (○○○)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의견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 o (KT) 기간통신사업은 규제가 강한편이라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때도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사후적인 규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함

- 규제는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이치임
- 교통규제에 비유하자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망이라는 도로를 만든 초기에는 차가 거의 없으므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만들 일이 없음. 그러나 차가 늘어나고 사람, 자전거 등이 붐비면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됨
- 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사후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됨
- o **(SK텔레콤)** 세상이 변화하면 규제도 변화해야 함
 - 부가통신사업에서도 기간통신사업과 같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서 규제가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규제 필요성 검토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2010년 전후로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변화하였고, 특히 부가통신시장이 큰 변화를 겪게 됨
 -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 SMS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 간 상관관계, 시장 영향력 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함
 - EU도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 OTT 서비스 등 다른 인터넷 서비스 방식이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함
 - 경쟁상황평가의 부담은 이해하나, 오히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우선 현황을 파악해야 함
 - 부가통신시장이 기간통신시장과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함, 그럼에도 주요 사업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지 않는다면 소수 사업자에 의해 독점화될 가능성이 큼
 - 정리를 하자면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형 분류, 규제 강화나 완화가 필요한 영역, 역외 적용 문제 등이 고민이며,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규제를 안하면 됨
- o **(OOO)**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반대하신다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이 있었는데 1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KISDI 발제에서 제시된 시장현황 파악을 위한 3가지 방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모두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사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즉,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현황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명분상 전체적 시장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포털 영향력 확대에 의한 공정 경쟁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임
 - (□□□) 실태 조사 결과 실제로는 포털의 영향력이 심각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굉장한 과급력을 미치는 결론이 성급하게 도출될까봐 우려됨
 - (△△△) KISDI 경쟁상황평가에서 부가통신시장을 조사할 당시의 이용자 설문과 공개된 IR자료를 토대로 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 입장에서는 KISDI 측에서 발표한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아직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는 못함
- o (○○○) 권순엽 변호사님이 부가통신역무 규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규제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함
 - 진입 조건이 신고로 완화되었다고 하나, 미 신고시 과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이나 철거 명령도 내릴 수 있어서 강한 사전규제를 하고 있음
 -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가 2만 건이 넘으며, 앱 하나만 팔아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법규를 다 확인할 수 없음
 - 인터넷은 혁신이 필요한 곳이므로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함
 - 시장 평가 시 몇 만개나 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서 자료를 모두 받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사업자의 자료만 받을 수밖에 없음
 - 권순엽 변호사님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필요성 근거를 더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며, 수많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법은 염수현 박사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람
- o (△△△)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 및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음
- o (네이버) 조사 대상을 소수의 회사만 대상으로 한다면 규제시 표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
 - KISDI 경쟁상황평가에서 부가통신시장에 대해서는 검색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
 - 몇 개 회사로 시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에 반영해야 함
- o (○○○) 오늘 회의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추후 논의 예정임
- o (△△△)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신고제가 사실상 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지 말라는 주장은 초법적인 발상임
 - 영세한 사업자는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행위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규제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신고제는 일정한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에 한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사업자를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위를 어느 정도 획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가져야 하며, 다만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관점에서도 규제 수준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없다. 전체적인 규제 관점에서도 보면 공정거래법상 등 이미 무수한 타 법령들의 규제적용을 받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규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부담이 크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됨

- (○○○) 공정거래법은 국내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고, 사업법은 통신이라는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므로 방통위나 미래부에서 하는 규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 방통위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임
 - 시장이 변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살펴보자는 것이며, 이번 논의를 기간 대 부가 측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EU에서 만드는 법안이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임
 - EU나 한국의 공정위, 사법부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이러한 침해 유형만이라도 규제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에 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알기 위해 검색, O2O, 포털 등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옴
 - 시장현황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사례가 발견된다면 다른 사업자들에게 알려 위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점은 기간통신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임
- (□□□) 1부 회의 후에 사업자분들은 이석하실 예정이어서 5차 회의 일정 및 발제 내용에 대해 미리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음
 - 5차 회의는 7월 13일(금) 개최될 예정
 -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들께서도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 방안(내용, 절차 등)과 부가통신 규제 합리화 방안(규제 수준 및 내용)에 대해 사업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제해 주셨으면 함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토의)

- (○○○) 논의가 지나치게 기간 대 부가로 흘러가는 것은 발전적이지 않음
 -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 논의를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진행 방식 변화가 필요함
 -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통신사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존재함
 - 부가통신시장에서 소비자 문제와 해외 해업자들의 시장 독점화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미국이 규제가 없어서 사업자들이 성장했다고 하나 사후규제가 강한 나라이며,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다름
 - 소비자 문제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가 필요함
- (△△△) 시장현황 파악시에 부가통신역무 유형을 보다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 대 기간 경쟁 가능성도 포착할 수 있어야 함

- (□□□) 주제 발제 내용이 사업자들을 자극시키는 것으로 보여서, 좀 더 발전적인 토론을 위해 케이스 스터디를 제안함
- (○○○)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부족하므로 제안하신 의견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방통위 차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시장 실태 조사 공정경쟁 여부를 설문조사 했는데, 케이스 스터디를 할 만큼 연구자료가 축적되지 않음
 - 시민단체에 인터넷 불공정 관련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유형화해주셨으면 함
 - 케이스 스터디를 유형별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임의변경, 무단변경과 같은 이용자 침해 행위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법적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음
- (△△△) 규정상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면제 대상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 귀결되어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반발은 불가피함
 - ☹☹☹님 의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관련 문제가 발견된다면 바로 잡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공정위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 시장현황 파악하기 위한 자료 요구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
 - 통계보고 의무 규정이 존재하나 제출대상이나 통계표에 관해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실태조사 등 필요에 의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됨
 - 금지행위 사전단계 측면에서 제출을 요구하기보다 사실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시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함
- (□□□) 현재 EU가 만든 법률 조항에 이용자 보호 등 대부분의 유형이 포함됨
 -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이나 행동강령으로 사업자들이 준수하는 형태로 시행할 수도 있음
 - 유형화를 좀 더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며, 소비자 시민단체에 제기된 민원을 찾아보고 말씀 해주시기 바람
 -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통계보고 받을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함
 - 현행 통계 보고양식은 시대에 뒤쳐져서 검색, O2O 등 기능별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통계 보고 양식을 변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태계 현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 KISDI에서 검색시장만 살펴봤다는 비판이 있으나, 부가통신시장에서는 검색시장 외 관련 시장 확정이 어려움
 - (△△△)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며, 통계청과 같이 일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 시장 확정이 어려우므로 경쟁상황평가에 앞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함
 - (○○○) 실태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그동안 관심 밖이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KISDI 경쟁상황평가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음
 - (△△△) 국내 사업자는 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해외사업자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며, 설문을 통해 보정하고 IR, 글로벌 리서치 자료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반드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일부 의원들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발의한 법안이 있기는 함
 - KISDI에서 통계보고 법령 및 통계보고양식 개선 방안, 현실을 반영한 부가통신역무 재분류 등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임
- (○○○) 다음 회의에서 전문가 위원 분들 중 두 분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셨으면 함
 - 한 분은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 보고 법제화 및 통계보고양식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해 주시기 바람
-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사업자간 불공정경쟁 방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함
 - 특히 이용자 관점의 규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부가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에 관해서는 부족한 감이 있음
- (□□□)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유형을 부가-기간, 부가-부가, 부가-비통신으로 분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부가-비통신(O2O) 예는 배달의 민족으로 상대방이 일반 업체이며, 특정 업체만 앱에 실어주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가 대 기간은 LGU+·넷플릭스로 볼 수 있으며, 거래상 지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해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함
 - 부가 대 부가는 앱스토어나 검색엔진에서 CP에 대해 검색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중 부가-비통신 유형 규제방식이 문제임
-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 해당 여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개념이 달라져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제조업체에 대한 개념이 없고, OS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가 애매하여 규제 영역에서 제외되기도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법적용이 필요한데,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제를 없애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업자 지위에 의한 금지행위 유형을 공정거래법처럼 행위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부가 사업자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사업법 내 일부 조항은 행위 중심임

- (△△△) 사전규제는 없애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사후 규제시 부처 간 조율을 고민해봐야 함
 - (□□□) 이 자리에서는 합의점 및 방향성이 우선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함
 - (○○○) 사전 규제를 제거할 경우 전문규제기관과 경쟁규제기관과의 차별성을 근거를 찾기 어려움
- (△△△) 부가통신사업자도 세금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고는 하고 있음
- (□□□) 최소한 형사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함
- (○○○) 방송법 금지행위 쪽을 보면 공정위에서 규제하려고 노력 중임
 - (△△△)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전산화해서 모두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사실 전기통신은 기술규제와 연결되어 다루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 규제를 완화할 경우 유형별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하며, 신고조차 안하면 사업자 지위 재정립이 어려움
- (○○○)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고면제는 어렵다고 생각함
 - 통신판매업처럼 규모가 작아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 (△△△)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문제임. 규제에 막혀서 해외로 나가는 사업자도 있음
- (□□□) 신고 의무는 최소화하고, 대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법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 개별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 positive 방식으로 규제할 경우 예측가능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
- (□□□) 기간통신역무 범위가 넓어지고 부가통신역무도 다양화되어 역무 분류체계도 개정이 필요함
- (○○○) 이번 회의에서 기간 대 부가 측면에서 논의가 되면서 쟁점이 국내 간 대립으로 이어짐
 - 기간 대 부가 문제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이슈와 다시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내부적으로 논의 해보겠음
- (□□□) 다음 회의에서는 부가통신시장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제로 논의하겠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1소위원회 5차 회의는 7월 13일(금) 2시부터 개최될 예정
- 차기 회의에서는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를 위한 방안, 부가통신사업자 규제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발제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 방안 및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합리화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3-2-5. 제5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7. 13.(금) 14:00~17: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한신대 문철수 교수, 호서대곽정호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한중 정경오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한양대 이호영 교수
 - (소비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최윤정 과장, 양기철 과장, 천지현 과장

2. 회의록

□ 발표 및 토의(1소위원회 전체 토의)

- (○○○) 오늘 5차 회의는 4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지난 회의 내용을 잠시 언급하겠음
 - 변화된 인터넷 시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규제 합리화 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부가통신서비스 사업부문의 영향력 확대로 부가통신서비스 유형별 시장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 이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시장에 대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는 경쟁 상황평가제도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합리적 시장확정 방법론 부재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현시점에서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함
 - 그러나 실태조사는 시도해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수립되어 실태조사의 수용 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기로 함
 - 이러한 4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금일 5차 회의에서는 인터넷 시장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고려사항과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실태조사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 네 분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네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발제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겠음

Ⅰ 인터넷 시장 규제 합리화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적용사례 및 시사점 (발표: 한양대 이호영 교수)

- 발표자료는 최근 작성한 논문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며, 사례 중심으로 살펴봄
 - 사례는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근거에 중점을 둠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1) 2000년대 중반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서 결론적으로 공정위가 관련 시장획정이 적절하지 않아 그에 따른 판단 오류가 발생함
 - 시장점유율이 포털의 광고 매출과 관련 없는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 최근 매출액 기준만으로는 과점시장 고착화 인정 어려움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2) 공정위는 인터파크-지마켓 사건에서 오픈마켓 시장과 광고 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나, 오픈마켓시장과 광고시장(가격비교사이트)은 구분하기 어려워 동일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3) 이베이-지마켓의 결합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지만, 인터넷 시장의 동태적 성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약화될 것으로 평가함
- (해외 사례1) 구글의 검색편향(자사 콘텐츠 우대, 경쟁콘텐츠 선택적 강등 혐의)사건에서 미국과 유럽은 상반된 결론을 냄
 - 미국은 특정범주의 검색에 대해서 구글이 대체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디자인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무혐의로 결정함
 - 유럽은 구글이 높은 시장점유율 유지, 네트워크 효과가 커서 진입장벽 높다는 점,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 지배력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으로 전이한다고 판단하여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인정함
- (해외 사례2) 시장 점유율 이외에 동태적 경쟁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텐센트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 관련 시장 획정은 독점점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평가 도구에 불과하므로, 모든 시지 남용사건에서 반드시 관련시장 획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함
- (해외 사례3)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사건에서 FTC는 제3자 광고 관련 서비스 시장의 경쟁 증가 예상, 고도로 차별화된 경쟁상품으로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사례4) MS-YAHOO의 검색 제휴에 대해 미국 연방법무부와 유럽집행위는 검색시장에서 지위가 미약한 사업자가 구글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함
- (해외 사례5)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시 FTC와 유럽집행위는 인터넷 시장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련시장 획정을 유보하였으며, SNS와 메신저 서비스는 차별성, 대체성, 보완성이 존재하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 (시사점) 인터넷시장 동태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시장 획정시 유연한 접근이 필요

- 시장력 및 경쟁효과 평가시 다면적인 시장 성격 이외에 인터넷 검색서비스 및 관련 시장의 혁신성 및 동태적 성격을 고려해야 함
- 진입장벽 존재 및 정도에 초점을 두고, 경쟁촉진 및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를 고려해야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개선 방향 (발표: 한중 정경오 변호사)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관련,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개선방향 제시함
- (개념) 사업법상 금지행위는 규범을 의미하며, 명령적 행정행위 일종
- (위법성 판단기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저해우려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관련시장 확정 없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판단기준 입증책임) '정당한 사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입증해야 함
- (금지행위 분석) 5호 및 5호2를 제외하면 모두 B2B 영역과 관련 있음
 - 1호는 사전규제가 적용되어 사후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2호는 수범자가 기간통신사업자
 - 3호는 이용자 관련이며, 4호는 사전규제에 가까우므로 사후규제화로 바뀌어야 함
 - 5호 및 5호의2는 확대해석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도 해당하게 된 것
 - 6호 및 7호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 어려움
- (개선 필요성 및 방향) 주된 규제가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이나, 통신시장 변화로 개선이 필요함
 - 콘텐츠 위주 경쟁, 기간통신사업자 우월적 지위 상실, 부가통신사업자의 혁신 주도,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 이용자보호 관점을 반영하고, 공정경쟁저해성에서 유형 신설 및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어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사업자, 선택재 앱을 제공하는 제조사도 금지행위 대상에 포함해야 함
 - 신유형 서비스로 인한 공정경쟁저해성 또는 이용자이익저해성 대비, 기간통신사업자 우월적 지위 상실에 따른 균형적 시각 반영, 비대칭적 금지행위 개선, 사실조사 실효성 확보 필요

②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의 쟁점과 주요 고려 사항 (발표: KISDI 염수현 연구위원)

- (논의배경) 새로운 경쟁 이슈 및 이용자 보호 이슈 등장으로 시장 현황파악 요구 증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음
 - 지난시간에 시장획정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실태조사나 통계조사 보고 강화가 현실적인 안이라는 의견 존재
- (실태조사 고려사항) 전반적인 시장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 조사 및 분석 실시
 - 해외사업자 자료 확보 및 제출 신뢰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시장규모, 서비스 중요도 등 모니터링 필요성 있는 주요 서비스 선정이 필요하며, 내용은 전반적 시장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구조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통계보고 고려사항) 전기통신사업법상 과기부에 통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방통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서비스 분류 체계가 인터넷시장 경쟁 정책 및 사후 규제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 필요
 - 매출액을 광고매출액 등으로 세분화하고, 무료제공 서비스에서는 유료가입자보다 실사용자 등이 더욱 중요한 지표임

◇ 인터넷 기업이 생각하는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발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

- 경쟁상황평가나 통계보고 방안에 대한 입장 중심으로 정리함
- 경쟁상황평가 지표를 부가통신시장에 적용시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부가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 도입 필요성에 의문이 존재함
 - 시장집중은 시장획정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만 가능하고, 진입장벽은 대규모 장치 등 산업에 해당함
 - 이용자 행위 지표에 의하면 부가통신시장에서는 사업자 전환 및 정보 획득이 용이하며, 사업자 행위 지표는 극소수 서비스에만 해당함
 - 시장성과 지표는 요금이 없거나 서비스별로 상이하여 이용자 만족도 측정이 어려움
 - 이에 반해 기간통신시장은 경쟁이 제한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정책 기초자료로 실태조사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경쟁제한 해소 및 이용자 이익저해 규제가 목적이라면, 조사에 앞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실시중인 경쟁상황평가는 지난 회의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논의됨
 - 앞서 네 분의 발제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 ☞☞☞님께 질문 드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점유율을 40%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 기준이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번복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함
- (○○○) 그러한 접근방식을 온라인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 없이 사업자 점유율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함
 - 경쟁제한 요건을 보이는 특정 사업자의 행위와 관련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시장점유율 지표를 이용하고 있음
 -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 것을 번복한 결정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음
 - 질문의 취지가 추정 기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궁금함

- (△△△) 발표자료 24페이지에서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동태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 개선을 고려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어봄
- o (□□□) 이전 회의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가 논의되었음
 - 그러나 앞서 KISDI 발표는 경쟁상황평가 도입보다 시장실태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님도 인터넷시장의 동태적 요인으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1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련시장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심
 - 그렇다면 경쟁상황평가 도입보다는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정리에 국한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함
- o (○○○) 지난번 논의까지 인터넷시장에 경쟁상황평가 적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목적이나 방법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음
 - 그 대안으로 실태조사나 통계보고 제안되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정리함
- o (한국신문협회) 포털시장의 독과점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편향성이 의심됨
 -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가 진행 중인지 의문임
 - 발제 핵심이 시장획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 독과점에 대한 균형성 필요
 - 국내 인터넷 포털 시장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포털의 뉴스시장 독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
 - 여론 집중 조사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한 기사 이용률이 80%이상,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도 양 포털 검색점유율이 80%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됨
 - 인터넷시장 독과점으로 부동산, 쇼핑 등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뉴스 미디어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저장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포털에 대한 종속이 우려되고 있음
 - 결국 이용자 편익을 이야기하는데, 획일성 및 집중으로 저널리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우려됨
 - 한국신문협회는 차후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별도로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람
- o (□□□)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장 파악보다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정보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를 전제로 공정거래제한, 이용자보호 두 가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함
 - 부가통신사업자도 망을 설치하는 상황인데, 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한 관련 사업자간 역학 관계, 이용자에 대한 장악력 등 조사 범위를 고민해야 함
 - 기존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금지행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 현재 50조 금지행위는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는데,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위주 유형이라 조항이 제한적이며 인터넷 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포섭하기 어려움
- 또한 시장이 변화하더라도 포섭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유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음
- o (○○○) 법리적 측면에서 금지행위 적용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포괄적인 규정이 어려움
 - 금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접근한다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일반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나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이 걸림돌로 작용함
- o (△△△)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형사처벌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함
 - 형사처벌로 할 것인가, 효과적인 행정제재로 접근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 (한국신문협회) 4차 회의까지의 논의 내용이 역동성과 변화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지속되는 결론인 것인가?
 - (○○○) 현재까지는 그러한 결론이 유지됨
 - (한국신문협회) 여론시장 단면시장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차기에 다루어주셨으면 함
- o (카카오) 역차별 해소가 큰 테마였는데, 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확대로 논의가 진행 되는지 의구심이 존재함
 - 상생협의회 주제가 균형 있게 발제되고, 논거가 충분히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나,
 - 앞으로는 역차별, 망중립성 등 국제적인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실효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람
- o (SK텔레콤) 기간통신사업자 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분법적인 논의는 사라질 필요가 있음
 - 기간통신사업이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고 전환비용이 높다고 하시는데, MVNO를 포함해 46개 사업자가 경쟁 중이며 번호이동성으로 인해 경쟁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한국신문협회에서 말씀하시듯이 언론 및 기사, 검색, 광고 서비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음
 - 전환비용이 없고, 진입장벽이 없는데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사업자와의 합의로 적용된 것처럼 충분히 논의 하다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통계수집 및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Ofcom의 strategic review 등 문헌을 참고하여 다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o (KT) 2017년 경쟁상황평가를 보면 부가통신시장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기간통신사업만 규제를 하여 형평성 논란이 존재함
 - 경쟁상황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확정의 어려움에는 동의하나, 기간통신사업부문을 시내, 시외, 국제, 초고속, 이동 통신 분야로 나누듯이, 인터넷서비스시장도 도 쇼핑, 검색, 광고, 게임 분야 등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함

- 통신시장에서도 결합시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시장획정방법인 SSNIP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결합시장에 대해 시장 획정 대신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처럼 인터넷 검색시장이 쇼핑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시장획정 방법론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우선 인터넷 검색시장의 영향력을 살펴본 이후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갈 수도 있을 것임
- o (□□□)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경쟁제한, 이용자이익 보호 침해 상황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 드리겠음
- 여기서 1부 회의를 마치며, 2부에서는 위원님들간 토의가 이어지겠음

□ 역차별 논의 및 개선방안 토의

- o (○○○) 오늘 회의의 두 주제 중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합리화에 대해 먼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o (△△△) 경쟁이라는 틀에서 평가를 하여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에서는 경쟁보다는 사업자관계(B2B)에서의 공정성, 협상력, B2C 이슈를 살펴보고 있음
 - 이러한 주제는 실태조사 파악과 연관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영역 차별화도 가능함
- o (□□□) 앞서 1부 회의시에 발표된 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사례를 보면 일부 경쟁제한의 요소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거나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부가통신서비스의 혁신성 및 동태성 등 업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규제수준 비교 관점에서 부가통신사업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지양해 주셨으면 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경쟁제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포털의 언론에 대한 경쟁 제한 행위도 실태조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함
 - 염수현 박사님이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수용범위, 실시방향에 대해 당위론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방법 및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 o (○○○)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적용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금지행위 50조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다 포섭할 수 있으므로, 방통위의 의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내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50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언급하고 있으며, 시장 실태 파악은 이를 위한 선결적인 절차에 해당함

- (△△△)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선후 명확성이 필요함
 - 범위만 행위로 인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미리 부당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사후 규제로 보기 어려움
 - 사후규제로서 혐의가 발생할 때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규제기관이 자연스럽게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누적된 자료를 통해 혐의 여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사후규제 측면에서 자료제출 의무는 현행법에도 존재하므로 그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으나, 현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임
 - 해외 사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정책수립이 불가능함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무리인지 궁금함
- (○○○) 금지행위 적용 대상은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것이므로 신고제에서 일정한 시장지위를 가진 부가통신사업자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장조사는 불가피하므로, 방통위에 이를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함
- (△△△) 사업자 매출 등 파악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자본금 1억원 미만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등의 개정이 필요함
 - 신고 기준을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정상적인 신고를 통한 사업자 파악이 가능하여 실태조사 기반이 될 수 있음
- (□□□) 신고기준 자체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사후 규제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면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일반적인 현황조사는 ♡♡♡님 말씀처럼 신고시 추진토록 하는 방법도 있음
 - 실태조사 항목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협조의무를 법률로 정하거나 불이행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계현황보고 조항이 있음
 - 개별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만을 위한 조항은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서식 등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임
 - (△△△) 과기부 고시로 되어 있는지?
 - (□□□) 그러함, 시행령이 있고, 다시 고시로 되어 있음
-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통해 실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앱을 만드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으며 오히려 신고제도로 역차별이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경쟁행위 등 위반 시에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음

- (△△△) 신고가 없으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담보가 어려움
 - 국내 대리인 지정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집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우려됨
- (□□□)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이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신고유무와 사후규제는 별개라고 생각함
 - 앱 사업자가 너무 많아서 신고 여부 자체도 어려우므로 진입규제 완화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신고 없이 규제 가능한 것이 법 집행력이나 관할권 확보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시장상황 파악을 해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는 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
 - 다만 실태조사 항목 및 결과 보고시기 등을 법적 의무로 정한다면 예산확보가 용이함
 -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상황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검색, 쇼핑물, 소셜미디어, O2O, 앱마켓 시장에서 사업자에게 어떠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태조사로 침해 행위가 유형화된다면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때 지금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봄
- (△△△) 실태조사는 통계를 모으기 위한 정량적인 실태조사와 서면으로 불공정한 행위, 하도급 관계 등을 파악하는 정성적인 실태조사가 있음
 - 실태파악의 한계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의미가 크지 않은 자료일 수 있음
 - 따라서 자료제출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통계보고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듯함
 - 공정거래법 3조를 보면 독과점 규제의 경우 시장 조사가 가능하며, 입법을 위해서도 시장 조사가 가능함
 - ♣♣♣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이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기를 바랍
- (○○○) 기간통신사업이나 방송사업에 적용되는 실태조사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 부가통신사업의 실태조사는 정보통신산업통계 수준으로 하면서, 정성적으로 이슈별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봄
 - 계량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이용자 이익 침해 측면을 서비스 시장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 공정위는 독과점이 유지되는 시장에 대해 행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 조사 요구가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선정 기준이 중요함
 - 공정위가 법 개정 추진으로 시장상황 및 정부규제로 인해 경쟁이 부족한 분야를 보려고 함
 - 시장 조사 요구시 공정위가 규제 영역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 전반보다는 사업자간 관계에서의 문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
 - EU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외의 다른 법령들에서 포함하고 있는 규제 관련 조항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
 - 즉, 다른 법령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제외하고, 관련 법령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규제방안 수립이 필요함
 - 부가통신서비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조사양식이나 서비스유형 분류는 향후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1소위원회 6차 회의: 8월 10일(금) 오후 2시 개최 예정
- 6차 회의에서는 해외사업자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해외 관련기관과의 국제 공조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며, 최경진 교수님이 발제하실 예정임

3-2-6. 제6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9. 7.(금) 14:00~17: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숭실대 최정일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인허가 등 정의와 서비스 제공 주체 불일치 문제
(발표: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본 협의체의 취지인 상생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 되기를 바람
 - (부가통신사업 신고명의 문제) 해외기업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법률·실무상 신고제도의 통일성이 미비하여 직접 신고 어려움 존재
 - 부가통신사업 미신고 상태로 경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과거에는 규제기관이 행정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해외법인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함
 - 2016.9.1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시에 필요한 증명서 확인을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증명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법인이 해외 본사에서 직접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등록세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실무상 한국법인 설립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거나, 이미 설립된 한국법인을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존재
 - FTA 및 WTO 등 국제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면제되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면제된 자도 포함

- 해외사업자의 경우 면제되었다는 해석 하에 금지행위 적용이 가능하며, 원칙은 서비스 제공자와 명의주체가 일치해야 함
- o (기타 법령상 유사 사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 이외에 다른 법령상에서도 인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 명의로 서비스 제공주체 불일치 문제가 나타남
 - 통신판매업 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이 대표적인 사례임
 -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버가 본사 명의로 신고한 바 있으나,
 - 최근 방통위가 상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고시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 영업소 또는 대표자 주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외국법인의 직접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 o (개선 방향)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행위 주체와 신고 명의 주체를 일치시켜 법 집행력을 확보해야 함
 -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분야에서 신고라는 규제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위 주체와 신고 명의 주체 일치를 위해 1)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국내 자회사가 아닌 해외 본사 명의로 직접 신고하도록 행정해석 및 관행을 명확히 해야 함
 - 2) 위치정보법 허가신청 및 신고서 서식 개정 근거인 외국회사 관련 상법 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3) 신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은 과도하므로, 원칙적으로 시정을 명하고 불행시에 일정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국제 공조체계 강화 방안 (발제: 가천대 최경진 교수, 발표: KISDI 염수현 연구위원)**

- o (역차별 해소 방안) 역외적용,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절차적 개선, 자율규제 촉진
 - 국외 행위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법 적용 근거 신설
 - 국내대리인지정제도를 통해 이용자 보호 규제 적용 대상에 해외사업자 포함
 -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이용자 피해발생시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창구 명확화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해외 사업자의 자발적인 국내 법규범 준수 참여 촉진
- o (국제공조체계 강화) 국제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GDPR이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관계에서 집행력이 부재하여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개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의 2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 명시
 - 보다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63조의 2 상호주의 규정을 확대 가능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 (○○○) 해외사업자의 경우 신고주체와 사업주체(본사) 불일치로 법적 책임 공방이 존재하며 민원처리에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 및 사업 주체 명의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박변호사님은 인터넷 사업 특성 고려 및 글로벌 스탠다드 부응차원에서 규제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해외본사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제시
 - 과거에도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증명서 확인으로 해외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었으며, 우버와 같이 본사 명의로 위치기반서비스업을 직접 신고한 전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님이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박변호사님 발제 내용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길 바람
- (△△△) 서비스 제공 주체와 신고주체 불일치 문제와 사실상 글로벌 CP의 신고가 무력화된 점을 고려할 때 신고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필요
 - WTO 양허 부분이 법제에 수용됨에 따라 해외 기업은 방통위 고시의 상법 근거와 관련 없이 국내 영업소가 없더라도 사업이 가능함
 - WTO에서 진입규제가 등록으로 되어있음에도 법은 글로벌 CP가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고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를 진입규제의 적용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함
 - 신고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금지행위를 통해 제재할 수 있으며, 이용자 이익이 대형 CP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사업 규모 도달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러한 경우에도 해외사업자가 국내 영업소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신고절차를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 신고제는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소비자 문제 발생시 연락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공정위도 전자상거래법에서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추세이며, 다만 비대면 사업 특징상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 신고 의무는 주되, 사업자 확인은 가능한 수준에서 간소화해야 함
- (○○○) 지난 8월3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개인정보대리인 지정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타 법에서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국내대리인의 신고를 사업주체가 신고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면 신고명의 불일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개인정보 관점이 아닌 진입시점 규제로서의 국내대리인지정제도는 통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WTO에서 양허한 부분을 규제하면 문제가 발생함

-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의 보호는 진입규제가 아닌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며 국제협정은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용을 둘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요구는 FTA 또는 WTO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FTA에서 부가통신서비스는 해외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는데, 국내 대리인 지정은 국내에 실체를 두어야 하는 형태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o (□□□) 규제수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자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
- local presence에 대한 요구로 해석될 경우 FTA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내국인과 다르게 규제한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대리인 지정제도의 FTA 위반 여부는 불명확하여 위험이 존재함
- 규모가 큰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 연락망을 두고 있으므로 사실상 규모가 작은 해외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이며, 규제집행력은 대리인지정제도로 해결될 수 없음
-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o (구글코리아) ♀♀♀님이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안하셨는데, 규모보다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함
- 법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제도망을 피해가는 기업들을 규제 대상으로 해야 함
- 역차별 문제는 규제 당국의 실행력에서 야기됨
- 대리인제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은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o (페이스북코리아) 현재 해외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조사를 받고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음
- 오히려 신고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o (□□□) 두 번째 주제인 규제집행력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서 최경진 교수님이 제시한 방안 이외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국제공조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1차적이나,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등 행정적 업무 수행 시에 문제가 되는 기업이 속한 나라와의 행정업무 공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국가 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이나 조약 체결의 필요성도 크다고 봄
- o (○○○) 발제문에서 해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기관이나 분쟁해결기관 등과의 실무적 공조체계 예시로 언급된 CERT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은 컴퓨터통신망을 해커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를 중심으로 결성된 컴퓨터 침해 대응팀으로 여러 나라의 통신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o (□□□)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부가통신사업은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 존재

- 콘텐츠 사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아시아 콘텐츠 시장은 사실상 미국 기업들에 의해 잠식됨
- 우리나라가 선언적으로 공정거래법처럼 국외 사업자 적용을 명시하는 입법이 가능하나, 국제 공조는 어려움
- o (○○○) 국제공조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제지형도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의 수준을 살펴봐야 함
 - 국제공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거래 분야이며, 일련의 사건들 이후 미국에서는 국제 카르텔, 유럽에서는 기업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유럽이 미국 기업 간 결합이 글로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하면서, 미국은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럽에 국제공조를 먼저 제안함
 - 각국 공정거래 규제기관들은 ICN이라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그 해 각 국가의 현안 검토 및 조사업무·테크닉 개발·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카르텔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나, 통신의 경우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법제 차이도 존재함
 - 따라서 상대국의 어떠한 규제기관과 공조할 것인지도 고려해보아야 함
 - 미국보다는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유럽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의 정보사회국에서는 경쟁법 이외에 다른 규제를 수립하려고 하므로 이와 같은 규제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함
- o (△△△) 국제공조는 동일한 행위가 다수의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할 경우 가능함
 - 카르텔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위법화에 대한 개념이 유사하나, 개인정보 법제는 국가별로 다르고 위치정보는 우리나라 독자적 규제라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시 다른 나라의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각 나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관할권과 공유할 수 있는지 의문임
 - 공정위는 카르텔과 관련하여 자료공유를 하는지?
 - (□□□) 협약에 따라 공유가 가능함
 - (○○○) 그렇다면 실무적 접근법과 협약이나 조약에 근거를 두는 법적 접근법이 모두 필요함. 카르텔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듯하나, 각국의 범위반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함
- o (△△△) 통신 분야에서의 국제공조 노력이 있었으나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해 무산됨
 - 유럽과 트래픽 유발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에서 ITU 어젠다로 상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여 실패함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규제가 강한 편임에도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미국에서는 그러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마다 상황이 다름

- (□□□) 한국신문협회에서 포털의 경쟁상황평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지난 회의에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어렵다는 소위 위원들 간 의견 일치가 있었는데,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이견을 가지고 계신 듯함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토의하고자 함.
- (한국신문협회) 국내 3대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인터넷 뉴스시장 및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므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국내 3대 포털의 인터넷 기사 이용 점유율은 85.2%, 검색시장 점유율은 87.2%에 이르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쟁상황평가 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됨
 - 검색시장은 자생적이지만, 포털이 인터넷뉴스시장에서 기사를 선별, 편집하면서 의제 자체를 설정하므로 문제임
 - 이러한 구조에서 언론의 포털 종속, 뉴스콘텐츠 투자 감소, 뉴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함
 - 국회에서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인터넷 기반 통신사업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됨
 - 경쟁상황평가는 규제가 아닌 현황파악을 위한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필요함
- (△△△) 한국신문협회가 주장하는 경쟁상황평가는 이용자 후생 침해나 경쟁 제한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미하고 계신지?
 - (한국신문협회) 여론집중도 조사 위원회가 있는데, 포털에 대한 자료 자체가 불확실하여 전제적으로 조사가 필요함. 네이버와 카카오는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되나, 이 부분에 대한 규제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이들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살펴봐야 함
- (○○○) 사업자들 및 위원들께서는 한국신문협회에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 5차 회의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이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 또한 현실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부재한 것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어려운 이유로 제기됨
 - 경쟁상황평가 대신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포털의 불공정 행위 또는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추적해보자고 결론을 내림
- (한국신문협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나 강행 규정이 없다면 자료제출이 보장될 수 없을 것임
 -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방통위 고시나 지침 규정이 있어야 행정기관의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음
 - 방법론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뉴스 검색,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전자상거래 등으로 시장 획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간접 조사에 의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지난 회의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반영키로 하고, 부가통신시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강구하기로 결론을 맺음
 -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기사와 관련하여 아웃링크제를 도입하고 뉴스 편집권을 포기할 의지가 있음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네이버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네이버) 뉴스 편집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아웃링크는 미디어 쪽에 의견을 묻고 있음
 - 초기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이후에 AI를 이용하여 뉴스를 배치하려고 함
 - 아웃링크는 매체들이 각 사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
- (한국신문협회) 천 여 개의 뉴스제공자가 있는데, 이 중 일부라도 아웃링크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아웃링크를 도입한 매체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기존 뉴스시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음
 - 네이버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뉴스 편집을 하겠다면, 편집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함
 - 알고리즘 역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기계적인 편집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뉴스 매개 사업자가 실제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아닌 사업자가 언론행위를 한다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최초 기사가 아닌 이를 조금 각색한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기사의 길이, 취재원수, 실제 취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함
- (□□□) 포털의 의존도가 강할수록 미디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뉴스 수요자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데, 그 이유는 신뢰성보다 편의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포털과 신문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용자 편익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 포털에서 뉴스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 개선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
 -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서 알고리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고,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개선해야 함
 - 그러나 네이버 모바일에서 상위 10개 신문사의 기사에 집중되어 편집 이외에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도 있음
 - 뉴스는 다양성 구현을 위해 포털에 집중되지 않고 언론사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네이버가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책을 모색해보셨으면 함
- (한국신문협회) 실제로 온라인 뉴스에서 독과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독자나 이용자임
 - 뉴스 콘텐츠 자체가 저널리즘에 충실한 기사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현재구조에서는 포털에 수익이 집중되어 양질의 기사 작성에 투자할 수 없음

- (□□□) 현재 포털과 신문사 간 거래 조건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 (한국신문협회) 포털은 각 매체들과 기사 계약, 콘텐츠 계약, 검색제휴에 대해 일대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상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거래 조건을 공개할 수 없음
 - 다만 매체가 많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을 양분하여, 영향력 있는 신문사도 포털의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들었음
- (△△△) 시간 관계상 오늘 발제문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 청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참고 토의)

- (□□□) 신고주체 및 사업주체간 불일치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들께서 추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 신고제도로 인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수가 많아서 신고제 운영이 어렵다면 일정 규모만 대상으로 할 수 도 있음
- (△△△) 사회적인 조류가 규제완화이므로 진입규제로서의 신고제는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함
 -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시장의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음
 - 금지행위 운영을 위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 (□□□) 신고가 면제된 사업자들이 있을 뿐아니라 신고여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존재함
 - 한편 신고주체와 사업주체가 상이하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음
 - 결국 신고제도의 존속 필요성, 국내 대리인과 국내 자회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는 통상마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법령상 포함하지 못한다면, 현재처럼 국내 자회사 체제로 가야하는가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범법행위 발생시 본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자회사로부터 행정상 모든 협조를 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사 책임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지난 3차 회의에서 실제적 책임은 제외하고 연락 및 자료 제출 등의 접촉창구로서의 절차적 책임을 지는 국내대리인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음
- (○○○) 검토 결과, 해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순전히 연락 목적의 대리인이더라도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WTO의 local presence 위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제도가 통과되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는가?

- (□□□) 진입규제로서의 신고제도에 대리인제도를 추가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FTA나 WTO 규정의 예외적용이 가능하므로, 금지행위 적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신고를 받는 것은 WTO의 진입규제와는 별도로 주장할 수 있음
 - 지금 신고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리인지정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부담이 큼
- (○○○)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국내대리인제도가 진입규제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통상법상의 마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신고제도를 유지한다면 해외에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 진입규제로서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도를 포기하고, 단순히 금지행위 집행을 위한 신고제를 다시 설정한다면
 - 해외 사업자의 직접 신고를 보장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과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음
 - 사후적으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한 것으로 WTO와의 충돌은 없을 것임
- (□□□) 방통위는 금지행위 집행을 위한 조사 및 자료 제출 의무에 한하여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음
- (○○○) 금지행위 적용은 규모와는 상관없이 없을 것으로 보임
 - (△△△)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자는 공정경쟁 제한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집행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신고를 받자는 것임
- (□□□) 사업자 중 일부만 금지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국내 대리인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 market access에 한정하여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 과기정통부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고를 받는 것은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기존의 WTO 양허 내용과 배치됨. 진입규제로서의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제도를 폐지해야 함. 애플코리아가 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사를 대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에선 적절하지 않음.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신고, 면제 상태임
- (○○○) 신고한 주체가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이라도 약관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지정 제도의 도입이 가능했던 배경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고, GDPR에 동일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임
 - EU에서는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논의한 적이 없는가?
 - (□□□) 원칙은 WTO에서 양허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정책이든 추진할 수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진입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

- (○○○) 글로벌 기업의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하는 국내 지사의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대리인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를 따라 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함
 -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고제를 폐지한다면 문제 발생시 해외사업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음
 -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료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내대리인지정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현재보다 진일보한 방법을 찾고자 함
 -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하에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신고제를 유지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듯함
 -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고민해보겠음
 - (□□□) 사업자들에게 CCO(Chief Compliance Officer) 등록과 대리인 지정 중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음
- (○○○)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며 국제공조의 어려움이 예상됨
- (△△△) 유럽 국가에서도 이용자보호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소비자 보호는 공정위가 담당 하여 해외규제기관간 미스매치가 존재함
- (□□□) 특수한 통신영역에서는 각 국에서 동일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규제기관에서도 공조 노력이 필요함
- (○○○) 유럽은 사업자 연합회에서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
- (△△△) 차기 회의에 앞서 6차례의 회의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말씀드리려 함
 - 소위원회의 미션 및 안건 선정에 대한 배경 설명,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그대로 요약 전달하고,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소결을 맺고자 함
 - 소수의견도 중요하므로 명기해야 함
 - 논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발제문, 회의록을 첨부할 예정이며, 회의록의 실명공개 여부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7차 회의에서는 정리된 내용을 위원들이 검토할 예정임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1소위원회 차기회의(7차 회의) 개최 일시는 미정
- 차기 회의에서는 6차 회의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

3-2-7. 제7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11. 22.(목) 15:00~18:00
- 장소 : 더케이호텔 크리스탈볼룸
-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숭실대 최정일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박진희 과장

2. 회의록

□ 인사말씀

- (□□□) 그동안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주신 사업자 및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부 회의에서는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KISDI 김현수 박사님 발표 후 사업자 분들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음
 - 결과보고서 내용 중 “소위원회 논의결과 및 향후 과제”를 제외하면 이미 피드백을 해주신 내용이 대부분 반영됨
 - 2부에서는 1부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겠음
 - 내용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문구 수정, 편집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람
 - 12월 13일 협의회 전체회의 시에 정책제안서 형태로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임

□ 주제 발표

◇ 1소위 결과보고서안 (발표: KISDI 김현수 박사)

- (추진배경)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 위원분이 ‘방송통신 시장에서 부가통신의 비중이 커지는 등 중추적인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인터넷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로 제안해주심
 - 여기에도 이의가 있으시면 수정할 문구 내용을 제안해주시기 바람

- (국민의견수렴) 방통위 홈페이지 배너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건의 내용이 별도자료로 정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구성) 크게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와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으로 구분함
 - 역차별 이슈 중 망 이용료는 기존 규제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2소위에서 논의함
- (역외적용 명문화)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
 - 다만 역외 적용할 조항에 대한 검토, 해외 사업자 협조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대부분 공감이라는 표현은 1명 정도 이견이 있다는 의미이며, 1명의 이견도 대부분 명시하였음. 공감이라는 표현은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임. 다수와 소수 견해가 나뉘는 경우 다수/소수를 표시하지 않음
-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자기책임원칙 및 통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에게 절차적 의무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함
 - 전기통신사업법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통상법 위반 여부의 문제는 중요하므로 다수 견해를 표시함
- (임시중지 제도 도입)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도입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통상법상 해외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본사가 직접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
 - 다만 명의 일치 문제에 앞서 다수 진입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면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과기정통부에서 검토 중임
- (국제 공조체계 구축) 국제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무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시장현황 파악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경쟁상황평가에 앞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
- (인터넷 시장 규제 합리화)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규제 공백이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
 - 공정경쟁보호는 부가-기간, 부가-부가, 부가-비통신 간 불공정행위 규제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용자 이익 보호는 새로운 유형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 및 필요시 적절한 규정 도입 필요
 - 금지행위 대상사업자에 신고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제공자, OS, 제조사 등도 포함
 - 다만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제별로 논의했으면 함. 첫 번째 의제가 역외적용 규정 명문화인데, 소위원회 논의 및 주요 의견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첨언해주시기 바람
 - 사업자분들부터 의견을 들겠음. 해당 내용에 이견이 없으면 다음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음
 - (SKT, LGU+, 네이버, 한국신문협회) 이견 또는 의견 없음
- (카카오) 김현수 박사님이 추진배경에서 문구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kick off 회의 당시 원안에는 현재 dash(-)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만 있었음
 - 이번 추진배경에 인터넷 기업 영향력 강화를 의미하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협의회 혹은 소위원회 단에서 논의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는 삭제하고 kick-off 원안 반영을 제안함
- (페이스북코리아) 역외 적용에 대해 다른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역외 적용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들은 규정 준수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이외에는 규정된 바가 없는데, 오히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통상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법 전문가 위원 의견을 듣고자 함
- (△△△) 소위원회 논의결과가 대부분 공감인데, 이에 대해 구체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적용 명문화하더라도 사업법상 수범자는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 해외 사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제 범위 내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역외 적용 명문화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도입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와 다른 체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 (□□□) 역외적용 규정 명문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음
- (○○○) 역외적용 명문화는 하나의 제안이며,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해외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함
 - 명문화가 된다는 가정 하에 실제 역외 적용 범위는 제한적일 것임
 - 공정거래법 조문에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해석상 영향의 상당함, 적용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모든 조항이 역외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을 것이며, 허들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임
- (△△△)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면 규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 정의 규정이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통신사업자는 FTA에 의해 국경 간 공급이 가능하므로, 역외적용 명문화는 규제 명확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그동안 역외적용 규정 없이도 과기정통부가 실무, 판례 등을 조합하여 판단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o (□□□) 전기통신사업자 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역외적용 쟁점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두 번째 의제인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의견없음)
- o (○○○) 세 번째 의제인 임시중지제도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의견없음)
- o (△△△) 앞서 두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므로 대체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음
 - 네 번째 의제는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주체 불일치 해소인데, 소위원회 논의결과 및 이와 관련하여 제안된 향후 과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o (□□□)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명목상 실질 사업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 외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와 관련된 다른 신고를 해야 함
 - 이러한 신고는 부가통신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행정적 절차를 요구하므로, 다른 신고 관련 제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라이선스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고서의 향후과제에서 다른 부처 소관 제도상의 불일치 문제 개선을 언급했으면 함
- o (○○○) 전기통신사업법만 다루어서 내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추가로 논의하면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는가?
 - (△△△)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할 것임
- o (□□□)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 협의회가 인터넷 상생을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제안이나 내용을 포함했으면 함
 - 방통위나 과기부는 앞서가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논의되지 않아 선도적인 제안이 필요함
- o (○○○) 사실 라이선스 중 통신판매와 관련된 신고는 신고한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과 조금 다름
 - (△△△) 그 경우에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해외 본사가 신고 의무 주체이나, 국내 자회사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음
 - (□□□) 신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때 전기통신사업자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법에서는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님

- (SK텔레콤) 추진 배경에서 인터넷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진입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신고제가 폐지되면 규제 집행력 확보될 수 있는지 우려가 있는데,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나 강제 집행이 확보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
- (○○○) 인터넷 생태계 특성상 신규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진입규제로 인해 생태계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 확장 및 장악력도 인정해야 함
 - 신고제를 진입규제, 사전규제제도로서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 일정규모 이상이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의해 공정경쟁을 해할 수 있는 위치, 이용자 장악력이 상당한 경우 등 적절한 기준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신고의무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 다음으로 국제공조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겠음
- (□□□) 유럽은 구글세를 건졌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국제 공조대상은 유럽이 적합함
 - 다만 이전에 비슷한 시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여 무산되었음
 -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나라에서 동조를 얻으려면 어려움
- (○○○) 각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국제 규범화가 되기는 어려움
 - 국제공조 체계 구축 제안은 선언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협의회에서는 상징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 함
- (네이버)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하는데, 현재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여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음
 - (△△△) 논의한 결과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 논의한 의제들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 (□□□) 이미 선언적으로 실무진과 협력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우선적인 협력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봄
 - 개인적으로는 대시(-) 내용 및 구체적인 권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 (○○○) 국가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신 의견을 염두에 두겠음
 - 6번째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한국신문협회에서 발언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보고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해외 규제기관들의 실태조사 사례가 제시되었는데,
 - 해외 규제기관 사례는 법률로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 자료 수집,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사례로 제시한 후 갑자기 법으로 자료제출을 규정하여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되어, 결론이 도출된 과정이 궁금함
- o (△△△) 실태조사를 했을 때 조사 대상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데,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가지고 응해달라는 취지로 법제화 필요성이 언급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것이 근거라면 논의 프로세스나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생략된 듯함
 - 그러한 염려가 있다면 보고서에 언급되어야 하며, 해외에서는 왜 자료제출에 대해 법제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o (□□□) 실태조사 출발점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일부 대형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규제 유형에 포함될 수 있고 신고의무도 사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의 동의하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시장 지위를 획득한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대상이 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함
- o (○○○) 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는 것인가에 대해 의견도 주셨음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제적인 룰이라면 동의할 것이나, 해외에서 법제화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o (△△△) 다른 나라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규제를 선도하는 측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함
 - 규제 필요성에 따른 선도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제적으로 EU의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음
 - 해외 사례는 우리와 같은 규제나 고민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의 실태조사일 가능성이 있고 내용면에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o (네이버) 시장 지위를 획득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전제하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
- o (□□□) 금지행위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이라면, 시장의 공정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악력을 지닌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지위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실무적으로 심결 등을 살펴본다면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봄
- o (네이버) 지난 회의에서 ♡♡♡님과 ♣♣♣님은 이와 다른 의견을 주셨음
 - 한쪽에 편향된 것으로 보이는 우려가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논리가 적절하지 않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영역이 다양함에도 검색시장에 대해서만 타법(방발법 제11조) 근거로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해온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답변이 정치권 요구라는 것이었음
- 이처럼 행정편의, 표적 조사로 흘러가거나, 서비스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
- 이 보고서에서는 쟁점에서 논의과정 없이 바로 결론으로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론이 최종안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첨언을 드리자면 이용자 이익 저해, 시장 장악력을 전제하셨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
- o **(OOO)**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사전규제를 축소하려면 내용 규제를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할 때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서 포함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
- o **(△△△)** 문구 내용이 실태조사 이후에 경쟁상황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 개인적으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적용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EU에서도 시장을 획정하여 특정사업자 지배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함
 - 국회 법안은 경쟁상황평가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경쟁상황평가 대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임
- o **(카카오)**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살펴보아야 함
 - 32 페이지의 표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 외부자료나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부가통신시장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있음. 부가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실태조사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외부 환경 이외에 국내 사업자도 통신사와 CP간 의견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 불합리함
 - 향후과제에서도 경쟁상황평가에 대해 참여한 사업자들의 입장과 근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시장의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만 채택하여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o **(SK텔레콤)** 국내 규제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해외와 다른 규제 시스템이 존재하고 규제 강도가 높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방식, 시장구조, 규제기관의 철학이나 방식 등이 달라서라고 생각함
 -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외와 다른 규제를 시행하는 이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의 규제가 국민권익에 미치는 영향, 필요성, 방식에 대한 관점을 이해해야 함
 - 실태조사에서 아쉬운 점은 시장 획정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아 경쟁상황평가 도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음

- 필요 없다면 안하는 것이 맞지만 방법론이 없다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 규제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때 그에 대해 다룰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거부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없음
- (페이스북코리아) 실태조사의 방식 및 목적이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아 혼란과 우려가 더 크게 다가옴
 - 이용자 이익 저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편의를 위해 실태조사를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함
- (□□□) 실태조사 내용이나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필요함
 - 기업에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조사 항목 선별 작업은 필요할 것이나,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시장현황 파악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함
 - ♡♡♡님이 조사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규모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합리적인 기준은 여기에서 결론 맺기보다는 정책 당국이 결정할 문제임
- (○○○) EU도 시장 변화에 따라 프레임워크 개정 작업을 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경쟁상황평가를 지속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음
 - 특정 사업자보다는 시장 전체를 관찰하면서 독과점이 심하다면 규제 타겟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
 - EU가 온라인 시장을 구분하여 4개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근거는 EU 조약임
 - 공정거래법에도 경쟁촉진을 체크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할 수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를 조사하는 근거와 다름
 - 사실 방통위보다 공정위 권한에 해당되어, 공정위가 할 것인가, 전문성 있는 방통위가 할 것인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이동, 유선으로 나누어서 특정사업자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특정시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생각하여, 이 부분에서는 의견 조정이 필요함
- (△△△) 논의결과의 도출 근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 의견도 감안하여 의견을 수정하겠음
- (□□□) 지금 정리된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을 드리면, 통계보고는 시행령에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라서 부가통신사업자에 활용하기 어려움
 - 사후규제를 위해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려면 조사가 필요한데 경쟁상황평가가 어려워니 단계적인 접근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시장현황을 살펴보자는 것이었음
 -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특정사업자한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면 권리 제한이 발생하므로 의무 부과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함

- 기본적으로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자료제출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면 당연한 것이나, 혐의가 없는데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 공정거래법 제3조에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재 조항은 없음
 - 일반 시장의 독점 규제는 제재가 없는데, 이처럼 특정 시장에서 제재조항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사업자들의 우려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 그 부분은 실제 법제화를 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통계보고는 조사대상항목이 일정기간 자주 변하지 않으며 주로 정량적 항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는 반면, 실태조사는 정량적 조사 뿐만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성적 조사,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슈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두 조사의 시행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함
 - 실태조사를 할 때 기업이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우려하시는 표적 조사 또는 사후규제 차원에서의 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상황 파악에 목표를 둬
 - 실태조사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며 기업우려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가 과제임
 - 실태조사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자료제출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 인터넷 시장 규제 합리화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37쪽에 관련 쟁점이 정리되어 있는데, 대립되는 것으로 묘사하다가 결론에서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 결론은 금지행위를 개편해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수범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도 기간통신사업자 대상 금지행위가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되어 사업자들은 당황스러웠음
- (□□□) 논의결과는 인터넷 규제에 관한 쟁점정리 및 사업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제시한 것임
- 방통위 배너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에서도 알 수 있지만 부가통신시장에서 이용자 이익 저해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안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에 수렴된 시민의견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음
- 포털 광고는 문화부에 제기해야 하며, 뉴스 아웃링크에서 제기된 문제임
- (○○○) 그 사례만으로 논의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며, 회의결과를 통해 부가 대 기간 등의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우려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며, 선제적인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존재함
- (△△△)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금지행위 규정의 수범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맞음

- 현행법에서도 규정 해석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나,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므로 체계적으로 갖추자는 것임
- 부가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가 앱마켓에서 앱 디벨로퍼에 대한 행위, O2O 업체들에 대한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무리하게 해석을 확대하기보다 체계적으로 하자하는 것이며 규제 총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음
- 다만 대상을 제조사나 OS로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등이 필요하여 별도로 논의가 필요함
-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만을 규제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님
- o (페이스북코리아) 보고서에서 영향력 증대 앞에 '글로벌 CP 등'이라는 표현은 마치 글로벌 CP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서 수정해주시기 바람
- o (□□□) 보고서 분량 등의 한계로 불공정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상적인 것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한 것임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규제체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님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지만, 추진 배경에서 부가 쪽으로 축이 이동한다는 내용의 문장은 보고서의 편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됨
- o (○○○) 가치판단이 있는 표현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o (△△△) 협의회 출범 전체회의 시 방통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표현을 보다 중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표현의 문제보다는 보고서의 취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 수범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라면 전체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스타트업 포럼 등 일부의 발언이 파편적으로 포함됨
 -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o (네이버) 이전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가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확장에 따라 규제하고 금지행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립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논의됨
 - 이러한 의미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1쪽의 추진 배경 문장은 삭제되는 것이 맞음
 - 방통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아닌 이상, 상생협의체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발언한 사업자들이 대변할 수 없는 입장을 포함하면 안 될 것임
 - 지난번에 참여연대가 2소위 회의에서 정당성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여시킨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의견에 공감함
 -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공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대형 CP에 대해서도 일부 견해에 해당된다면 소위원회 결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며, 충분한 근거나 논의 없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 (□□□) 사전 규제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부과한 것이지만, 금지행위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사전 규제 수준과 비교하여 그에 부합하게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은 아닌 듯함
 - 사후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방통위가 부가통신시장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규제 공백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영향력 증대를 반영해서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함
 - 기간통신사업자 대비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나 규모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책임이 커지는 것은 분명함
 - 앞으로 규제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 (△△△) 위원장님과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배경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문장은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음
 - 생태계의 바람직한 공정경쟁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기를 제안함
- (구글코리아) 전반적으로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과 달리 소위원회 논의 결과만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통신사의 입장에서 언급한 부분이 대부분임
 - 예를 들어 7페이지 '통신 관련 국내법 적용 사례'에서 해외사업자에게 관할권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10페이지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는 "역외적용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이라고 하여 모순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또한, 26페이지에 "우선적 협력 대상으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유럽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과 우리나라의 환경의 차이를 간과한 내용으로 보임
 -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으며, 네이버 및 카카오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수많은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 역시 K-pop, K-드라마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물론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앱을 제작하여 특별히 글로벌 유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음
 -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콘텐츠 및 앱을 수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반대로 유럽은 우리와 달리 수출 주도형 국가가 아니라 전통적인 소비 국가이며 특히 콘텐츠나 앱 분야는 더더욱 우리와 환경이 다름
 - 더 나아가 유럽과 미국은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미관계와는 다름

- 이러한 산업적, 외교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과 우리나라가 이해관계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도 보고서 첫 페이지의 '추진 배경'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 정책방안을 수립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이러한 규제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 o (□□□) 1쪽 표현 수정에 대해 다들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임
 - 부가통신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나 사후규제에서는 동일하게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규제는 제50조 하나이며, 사후적 규제임
 -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로 규제받는 것에 대해 흐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마저 반대한다면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님께서 공정위를 낮게 평가하시는 듯함
- o (○○○) 미국이나 EU에서도 공정위와 전문규제기관이 존재하며 중복으로 규제하므로 그러한 표현은 글로벌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 o (네이버) 방법, 각종 내용 규제, 청소년 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가 있으며, 규제 역차별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님
 - 선제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와 다른 특성을 지닌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필요한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함
- o (SK텔레콤) 사업자로서 규제의 필요성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제휴하면서 모델을 만들어가는 복잡한 관계임
 - 어려운 부분이라 고민스럽지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주시기 바람
- o (△△△) 문제제기를 많이 하신 부가통신사업자분들께 협의회 성격과 결과보고서 취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논의된 결과가 업계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왜곡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자문 기구로 출범함
 - 이 보고서의 논의결과가 정책당국의 정책 수립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방통위가 평가하여 결정할 것임
 - 사업자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보고서 구조가 사업자 의견별로 쟁점, 입법례, 해외 현황을 정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일부가 소위원회 논의결과임
 - 향후 정책당국은 소위원회 논의결과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 수립을 할 것으로 봄. 물론 소위원회에서는 의제들과 관련되어 제시된 근거자료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논의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시간적 제약 등 여건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오늘 여러 위원님들 및 사업자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의 수정 및 보완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는 12월 13일에 정책제안서 형태로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임
- 대외 공개는 방통위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 o (□□□)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시기는 미정임
- o (○○○) 협의회 위원 48인에게 그동안 발제한 자료, 회의록 등 모든 의견서를 공유해왔으며, 대부분 공개된 상태에서 협의회가 진행됨
- o (구글코리아) 최종본은 발표 전에 공유가 되는가?
- o (△△△) 공개 전에 피드백은 받도록 하겠음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용역 보고서도 정책 수립시 충분한 근거로 사용되며, 상생협업체 이름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으므로 신뢰성과 중립성이 필요함
- 위원님들 대부분이 각계 전문가, 교수님들이신데,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하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o (□□□) 사업자가 협의회 멤버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전문가로서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o (○○○) ♣♣♣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2소위 의견을 듣고 같이 교정하도록 하겠음
- 이해관계자 상대방 입장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음
-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말씀해주신 부분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참고 토의)

- o (△△△) 역외적용, 국내대리인제도, 허가·신고주체와 사업주체 불일치 해소, 임시중지제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추진배경은 수정 필요. 우선 인터넷시장 현황 파악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람
- o (□□□)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는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가? 경쟁상황평가에 앞서라는 표현은 실태조사 이후 경쟁상황평가 시행이 예정된 표현으로 보여서 수정했으면 함
- o (○○○) 실태조사를 하고 상황을 본 후 경쟁상황평가를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o (△△△) 기간통신시장과는 다른 부가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방법론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임
- o (□□□) 첫 시작에서 설명이 불충분하여 '시장 현황 파악에 공감하였으며'를 언급하기 전에 전제가 필요하며, 첫 문장부터 표현이 강하다고 생각됨
- o (○○○) 상대적으로 기간통신시장에 비해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그러한 면에서 제도나 정책을 위해 정책기관이 데이터를 얻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문장을 시작했으면 함

- (△△△) 경쟁상황평가를 하면 지배적 사업자가 인가제로 들어오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논의의 큰 흐름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기존 규제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보완하자는 것임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규제는 신고 의무와 행태 규제인 제50조만 있음
 - 차라리 경쟁상황평가를 언급하지 않고 추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태조사만을 언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됨
 - 새로 부과되는 규제는 없으며 기존의 제50조 규제와 연관시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태과악이 필요하다는 것임
- (□□□) 사업자들이 자료제출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표현은 삭제했으면 함
 - 실태조사가 저해가능성을 판단하기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석이 가능함
 -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근거와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확보가 중요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좋을 듯함
- (△△△) 경쟁상황평가 논의에 앞서 현재 부가통신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방통위가 실제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경쟁상황평가를 논의결과에 포함해야 한다면 나중에 언급했으면 함
- (□□□) 실태조사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사후에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함
- (○○○)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존재하고 법안에서 관련 내용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보고서에 포함할 수밖에 없음
 -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와 관련하여 경쟁상황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 중 가장 강한 것이며, 실태조사와 통계보고를 하자는 것으로 결론 냄
 - 실태조사에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반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공고히 하여 대안이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 기간통신사업자나 한국신문협회에서는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였으며, 시장확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음
- (□□□)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경쟁상황평가를 거론할 수 있으나, 모든 논의가 제50조의 공정경쟁 및 투명성을 위한 규제를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임
 - 경쟁상황평가는 나중에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할 수도 있겠으나, 제50조를 위해 경쟁상황평가라는 엄청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
- (○○○) 경쟁상황평가가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순서로 진행된 것임
 - 처음 문구에서 '경쟁상황평가에 앞서'라는 표현은 경쟁상황평가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경쟁상황평가를 언급한다면 우리가 의미하는 경쟁상황평가 대상은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과 시행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 (□□□) 대시(-)에서 제시된 전제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제외하고, 실태조사 관련 내용과 궁극적으로 경쟁상황평가로 가는 것을 부드럽게 연관시켜 작성하는 편이 좋을 듯함
- (○○○) 경쟁상황평가를 앞에 배치하면 일반적으로 중요 논의가 앞에 언급되므로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 인터넷 시장 규제합리화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 '글로벌 CP 등'이라는 표현에서 '글로벌'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 국내 사업자만이 타겟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표현을 넣은 것임
- (○○○) 기간통신시장과 부가통신시장이 다르므로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간 불공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간 접점이 망 구축임
 -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실제 해외에서는 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통신사와 CP가 망 대 망으로 붙어서 CP가 망 흐름을 셋팅할 수 있음
- (□□□) 그러한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인 것이며, CP들 간 경쟁이 추가될 것임
- (○○○) 구글 등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라면 기간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로 봐야할 것이나,
 - CP가 망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였음
 - 경쟁상황평가의 도입 어려움에 이미 대부분 공감하였으므로 관련 내용 포함여부 및 순서상 위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보다 실태조사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함
 - 첫째, 제50조가 존재하는데 실태조사를 시행하면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규제를 추가하는 것에 해당되어 논리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공정거래법의 조사 근거는 공정거래 시책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은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시장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가 필요함
 - 둘째, 사후적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는 불법 행위 발생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 신설 반대는 설득력이 낮음

- 물론 이에 대해 공정위가 이미 규제하고 있다는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반박하기 위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제50조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인가, 규제 근거를 확대할 것인가라는 판단이 중요한데 부가통신사업자 대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대 비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유형은 현행 규정이 있다고 봄
- 금지행위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유형은 없으므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나, 부가통신사업자 대 비통신사업자간 유형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금지행위 대상자 확대에서 OS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데, 제조사는 새로 포함해야 함
- 현재 소위원회 논의결과 문구만 보면 규제를 모두 신설하고 OS 및 부가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는 규제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금지행위 유형의 구체화’를 같이 포함하여 규제신설이 아닌 현행 규제를 명확히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 o (△△△) 제50조에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대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형을 구체화하여 다 포섭되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자 대 비통신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o (□□□)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는 없음
- o (○○○) 제50조 1항의 1호와 2호는 주어가 전기통신사업자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설명하는 부분이 기간통신사업자간 협정 예시가 나와서 기간통신사업자간에만 해당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시행령 규정을 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은 1호에 명시적으로 사례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1호 규정이 기간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에만 한정한다는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행적으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는 있음
- o (△△△) 각 호를 보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에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음
- 오히려 부가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간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차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때 당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여야 하는 것이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봄
- 그 부분은 고시의 문제인데, 법률에 의하면 O2O가 입점된 비통신사업자를 차단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막았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익을 저해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o (□□□) 금지행위가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하는 행위인데 현재 공정경쟁저해를 이유로 규제에 포섭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함
- 그렇다면 공정경쟁 저해 행위가 본문에 있으나 각 호의 구성으로 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므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굳이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 간 행위 유형은 법적으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가?
 - (△△△)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유형에 해당되는 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호를 신설할 필요는 없어 보임.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체계가 전기통신사업법 각 호에 금지행위 유형이 있고 시행령 별표4에 각 유형별 세부적인 행위가 나열되어 있음
 - 만약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면 시행령에서 새로운 유형을 정리해주어야 함
 - 현재 체계에 걸맞는 구분이 쉽지 않아 보여서 일단 1호나 2호, 필요하다면 3호나 4호에도 추가하여 법에서 규정한 유형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시행령 세부 유형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봄
- (○○○) 우려되는 점은 공정경쟁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해 공정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사실 각 호에서 열거하다보니 본문과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의미로 접근해야 함
- (△△△) 현재 규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하겠음. 조항 신설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기존 제50조를 시장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임
 - (○○○) 규제공백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위한 것이며, 시장상황에 따른 규제 현행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사실 공정위에서도 규제 현행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 제조사도 포함해야 하는가?
- (□□□) 최근 애플이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전시폰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기사가 보도됨
 - 단말기가 스마트해지면서 제조와 통신서비스 구분이 어려움
 - 이용자 보호관점에서 제조와 통신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사업자를 장기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앱을 선택재했기 때문임
- (△△△) 금지행위 대상사업자 확대에서 '신고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제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 이에 대해 '신고한 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명시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자 함
- (□□□)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유사 전기통신사업자'로 명명하는 것을 제안함

- 사실상 신고 여부가 다를 뿐 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모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유사'라는 단어로 구분하려 함
- o (○○○) OS는 포함될 여지가 있더라도 제조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하기 쉽지 않음
- 제조사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들을 다 포함하려면 전기통신사업자 외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로 확대해야 함
- o (△△△) 이 문구만 본다면 제50조의 수범 주체에만 전기통신사업자/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OS로 나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 o (□□□) 제50조에만 한정하여 규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 o (○○○) 우리는 전문가 협의체이므로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향후 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임
- o (△△△) 금지행위 대상사업자 확대는 사실 제50조뿐만 아니라 신고주체와 사업주체 일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봄
- o (□□□)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50조에 한정함
- o (○○○) 전기통신사업법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골격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o (△△△) 당장 전체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할 수 없더라도 향후 과제로서 언급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신고여부 관계없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이 옳음
- o (□□□) 규제 적용 취지는 실질기준인데, 확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o (○○○) 확대는 OS와 제조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함
- 방송법에서 OTT 서비스를 포함한 것과 같이 통신서비스와 인접한 분야를 유사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함
- o (△△△) 규제 대상사업자 확대를 특정 조항에 한정할 것인지, 전체 법에 적용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o (□□□) OS는 현행에서도 규제가 가능한데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OS는 사업자 서버와 연동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o (○○○) OS 규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하자는 취지임
- o (△△△) OS가 워낙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단 언급을 하는 편이 좋을 듯함
- 이 보고서의 제안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중요성 차원에서 언급할 수 있음
- o (□□□) 통신서비스와 연계된 사업자만 염두에 두는 것일 텐데, OS라는 용어자체가 윈도우 등 PC 소프트웨어 판매자도 포괄함
- o (○○○)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겠음

- (△△△) OS를 부가통신사업자로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음
 - 통신사업자인가에 대해 판단 받은 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여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 OS가 부가사업자가 아니라면 선택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음
- (○○○) 협의체이므로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앱 선택제로 해외 CP의 국내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상사업자에 포함해도 된다고 생각함
- (△△△) 해당 문장을 보완해주시기 바람
- (□□□) OS에 대해서는 명확화로, 제조사는 새로이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음
- (○○○) 지금까지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KISDI에서 결과보고서안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겠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최종(전체) 회의는 12월 13일(목)에 개최될 예정
- 사업자 의견수렴 및 위원들 간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후 1소위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겠음

3-3. 제2소위원회 회의

3-3-1. 제1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3. 26.(금) 14:00~17:3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한양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성균관대 송명빈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팀장,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개인정보보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LGU+,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코리아,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CJ ENM(티빙)
 - (방통위) 김재영 국장, 박진희 과장, 고낙준 과장, 김용일 조사담당관

2. 회의록

인사말씀

- (서울대 이원우 교수) 전문가들이 미래를 위해서 모인 자리로, 오늘 논의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함
 - 소위 운영에 최대한 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오셨으나, 시간관계상 2소위 위원 분들 위주로 발언권을 드리겠음

기술동향 발표

- ◇ 5G Characteristics and Usages (발표: 경희대 홍인기 교수, 5G포럼 주파수위원장)
 -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발전해온 경과를 설명할 수 있으나, 5세대는 속도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접근해야 함
 - 4세대까지는 유선의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속도로 경쟁하며 유선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이동통신서비스에서 가능하게 함
 - 그러나 5G부터는 속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로 차별화하려함

- 중국의 주장에 의해 5G표준으로 Connection Density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5G를 통해 사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eMBB(Enhanced Mobile Broadband)에 중점을 두고 속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AR, VR을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중국은 이와는 다르게 낮은 주파수 대역쪽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 5G는 low latency가 중요하며, B2B 중심의 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
 - 원격의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latency가 중요함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보다는 사물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요금 설정이 중요함
 - 5G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B2C보다는 B2B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함
- 망중립성 관련 이슈는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기존과 다르게 망의 우선순위(priority)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QoS/QoE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미
 - 망중립성을 유지하면 요금 차별에 따른 QoS 보장이 어려우므로, 지금 서비스와 다를 바 없어서 5G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QoS 통제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것과 비용 효율적인 것 중 무엇이 5G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함

□ 주제 발표

◇ 망중립성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발표: 한양대 신민수 교수)

- 망중립성 개념이 실질적으로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함
 - 미국이 망중립성을 지지하던 이유는 설비부족과 ISP 경쟁의 결여였는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달라 똑같이 인식하기 어려움
- 망중립성의 단대단(end-to-end) 원칙은 네트워크에 인텔리전스가 없다는 전제로 시작
 -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네트워크에 인텔리전스가 가능해짐
-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접근 방향은 해당 국가의 인터넷 시장환경과 무관하지 않음
 - 미국은 망중립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고, 네트워크의 확장에 따른 이용자 후생 증대, 인터넷 사업자 성장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 변화
 - 유럽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하여 망중립성에 변화가 필요한지에 관해 의견수렴 중
-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쟁법에 의해 망중립성 규율이 가능
 - 금지행위에 대해 가인드라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포괄적인 사전 규제 중
 - 망중립성 논의는 투자 유인을 유지하면서 콘텐츠 사업자의 편승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확보가 필요함
 - 혁신의 가능성이 기존에는 단말과 콘텐츠에 국한된다고 보았으나 5G에서는 네트워크에도 인텔리전스 기능이 부여가능하여 혁신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

- 5G는 네트워크 양면시장에서 요금 측정을 통해 플랫폼으로서의 통신네트워크 강화 방안
에 대한 고민 필요
- 수직통합 유인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은 급속하게 감소하여 지배력을 남용하는
어려움
- 망중립성은 ISP와 CP 간 표현의 자유 충돌 문제라고 보이며,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함
- o 산업발전 촉매로서 5G의 수익창출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망
중립성 정책보다는 망공정성 원칙으로 변화되어야 함
- o 망중립성 정책 개선 방향으로 '망공정성' 정책으로의 변화를 제안함
 - 망공정성의 원칙으로 공정상생의 원칙, 중소 CP 보호 및 육성 원칙, 이용자 편익 기준 원칙,
이용자 경험 최대화 원칙, 공익성 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o (△△△) 기존 망중립성의 기초 변화에 따라 공정성의 원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
- o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 (발표: 아주대 김성환 교수)
- o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위반인가
 - 트래픽을 기술적으로 통신사들이 차단/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제로레이팅은 요금
부담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봄
 - 그러나 결과적으로 CP 차별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위반 주장도 존재함
- o 망이용대가 부담 주체의 문제
 - 종량제가 아닌 유선인터넷에서 망중립성 원칙은 CP에게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부과
할 수 없도록 함
 - 그러나 종량제 성격이 강화된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유인이 발생
- o 제로레이팅의 차별성 문제
 - CP가 망이용대가를 부담하는 경우 차별소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통신사가 특정 CP에 대해서만 선택해 제로레이팅 제공하는 경우(배타적 거래) 금지
행위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형태이며, 효율성 측면에서 사전에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규제가 필요함
- o 이용자 선택권 및 인터넷 개방성 저해
 - 정액제 성격이 강한 종량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용자도 트래픽이 많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 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이동통신 이전에도 수취인 부담과 같은 제로레이팅 형태가 존재하였으므로, 갑자기 규제
대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o 동영상 스트리밍의 경우
 - 트래픽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로레이팅이 이슈될 수 있으나,
 -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국한된 이슈로 인터넷 개방성 저해하는 수준은 아님
 - 구글 유튜브가 지배력을 지닌 상황에서 통신사의 제로레이팅이 오히려 경쟁활성화 가능

○ 제로레이팅의 경제적 효과

- 사업화된지 얼마되지 않아 우선 허용한 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함
- 양면시장 관점에서 망중립성은 CP를 도와줘 생태계를 확장해왔음
- 제로레이팅은 통신비에 있어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 수행할 수 있음

○ (□□□) 제로레이팅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함

- 망중립성 자체는 관련이 있으나 그 자체는 망중립성 위배는 아니라는 입장
-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며,
- 제로레이팅의 경제적 효과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므로, 일단 허용하면서 긍정적인 취지를 기대해보자는 것

◇ 망중립성 주요 이슈와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CP의 투자 부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통신사가 하는 것이 당연함

- 이용자와 CP는 이미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가격은 통신사가 정한 것이므로 과금 차등은 망중립성 이슈와 무관함
- 통신사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용자와 CP에게 망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없음

○ CP와 통신사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

- 통신망의 혁신을 위해서는 망중립성 완화보다는 경쟁활성화 필요

○ 망중립성과 별개의 이슈라 할 수 있는 플랫폼 중립성,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와 섞어 논의 하지 않았으면 함

- CP들이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망이용대가를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망중립성이 아닌 역차별 이슈에 해당하여 별개의 사안

○ 미국의 망중립성 완화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이슈라 생각되며,

- 여전히 경쟁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망중립성 정책이 원인이 아니라 경쟁이 미흡해서 망중립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 5G에 있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특성이 동종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제로레이팅의 기술적 트래픽 차별이 경제적인 차별로 확장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제로레이팅 다양한 형태가 있어 일률적인 사전규제 부과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로레이팅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평가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임
- 외부적으로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제로레이팅의 부정적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배타적 의미의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
- 오히려 제로레이팅 보편화될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에 대해서는 우려

○ (○○○)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와 혼동하여 생각하지 말자는 것

- 제로레이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파단을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함

□ 논의주제 토론

○ (△△△) 제로레이팅에 대해 새로운 규제로 접근하자는 것인지, 사업자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인지 논의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제로레이팅 관련 문헌을 검토해보았으나 ISP/CP 경쟁 저해 및 이용자 편익과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바 없음
- 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시장에 단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인 TSM(telecom single market regulation)에 제로레이팅을 망중립성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영역/개별 규제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영역/허용되는 영역 중 어디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존재
- 제로레이팅은 유보적인 영역으로 포함이 되었으며, BEREC은 망중립성(제로레이팅 포함)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개별 규제기관이 규제를 판단하도록 함
-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EU 국가별로 규제 적용 차이가 존재함
- 제로레이팅을 유보적인 영역으로 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정책적 진전을 위해서 논의되는 단계라면 외국의 규범적 적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임
- 한국시장에서 작동하는 시장영역을 살펴보고, 제로레이팅 관련 시장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 분쟁조정 관점인지, 방통위가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책 목적에 대한 규정 필요

○ (□□□) BEREC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 말씀을 함

- 우리의 문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체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

○ (○○○) ♡♡♡은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의 발제문에 전적으로 동의함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님이 망중립성이 ISP와 CP간 표현의 자유측면에서의 충돌이라고 하셨는데, ISP가 트래픽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리고 인터넷상 모든 이용자들이 CP이며 모든 CP들은 인터넷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제로레이팅에서의 수직적 경쟁 행위에 관해 계열사에 대해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경쟁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며, 자사 계열사가 아닌 다른 CP와의 제로레이팅은 사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님이 CP에게 망이용대가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CP를 포함 이용자들은 이미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어떤 요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 필요

- 제로레이팅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감. 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보편적 네트워크 접근권 확대 측면에서 봐야 하므로 제로레이팅과는 별개의 논의라는 점을 말씀드릴
- o (△△△) 망중립성이 목적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님 의견에 동의함
 - 5G시대 이후에 현재의 망중립성 개념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망중립성이 우리의 규제 목표인지 규제 도구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분위기라고 생각함
 - 기본적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공정경쟁 조성이 최종 목표라고 봄
 - 통신사 부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토대로 망중립성의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미국이 망중립성 정책폐기 전 규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실증적인 검토 후,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주목해야 함
 - 우리는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망중립성 완화 논의 자체가 정책 도구로서의 논의라기보다는 당위개념으로 하는 것에 가까움
 - 국내에서는 투명성 원칙이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망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조사가 가능해야 함
 - 망이용대가와 망중립성 문제가 헛갈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아 지불한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어렵기 때문
 - 국내에서 망중립성원칙이 강화된다면 투명성 원칙의 실효성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CP의 트래픽을 차단하지 않는 한 망중립성 위배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 통제 범위에 대해서 한계가 존재함
 - 수직적 결합, 시장지배력 전이, 불공정 경쟁행위가 일어난다면 반경쟁위행위로 보아야 하며, 사후 규제 영역으로 봐야 함
 -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일반 경쟁법에서는 CP 시장 확정이 어려워 실증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o (□□□) 투명성 확보 강조,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위배는 아니나 경쟁제한 적일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규제를 해야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
- o (○○○) 현재까지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의문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 네트워크는 1명이 사용하든 1,000만명이 사용하든 동일한 인프라 투자비용이 투입됨. 즉, 통신비의 문제가 본 건의 주요 화두가 되어서는 아니됨
 - 소비자는 돈을 좇을 수 밖에 없는 생리를 부정하기보다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본 건의 유관 사업자들에게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 특히, 국내 사업자가 해외 대형 사업자(혹은, 대형 자본)에게 '경쟁하위'에 내 몰릴 수 있는 구조를 방통위가 대비해 주어야 함

- (△△△) 자본의 논리를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심
- (□□□) 두 분 교수님의 발표는 팩트 위주라서 이견이 없으나,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같이 동조하고 싶지만 이견이 존재함
 - ♣♣♣는 통신사 투자에 대한 CP의 분담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CP를 이용자로 간주하고, 경쟁이 혁신을 촉진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 통신사업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틀에서 민영화되었음에도 역사성 및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적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통신사뿐만 아니라 CP 역시 공적인 차원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경쟁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은 일면은 맞으나, 오히려 경쟁 심화가 독점과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규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음
 - 이용자 복지 차원에서 망중립성 규제가 부과되어야 하며, 다만 경쟁과 상생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가 설정되어야 함
 - 통신사업자와 CP간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CP 시장에서의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함
- (○○○) 통신사가 가진 공공성을 강조, 망 투자가 공적인 특성이 강하고, CP도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는 의견
- (△△△) ♣♣♣님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나라에서 왜 망중립성 완화와 제로레이팅 허용이 필요한지 대한 의문이 존재함
 - 현재 5G 시대에서 차별화된 망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로 예시되는 자율주행자동차나 원격 의료 등이 기존의 통신사 제공 망을 활용할 것인지,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망을 누가 구축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음. 아직 해당 서비스의 가능성과 방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해 망중립성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바람직한지, 논의 시점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 제로레이팅이 일부 제한적 콘텐츠에 한해 제공되고 있으나, 보편화될 경우 자금력이 있는 사업자들만 제공이 가능할 것이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됨
 - 제로레이팅 유형이 다양하고 거래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워 사후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으며, 망을 가진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 5G를 위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한 것이냐, 근본적인 질문을 함
 - 제로레이팅의 위험성에 대해서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사후규제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라는 의견
 - 망중립성에 대한 제도가 가이드라인, 금지행위에 스며들어 있고, 현재 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규제가 변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대책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틀을 만드려면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번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함
- (○○○) 통신비 인하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검증 제안을 해주시면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 내부 거래 여부, 불공정 소지 등을 살펴봐야 하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제로레이팅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음
 -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신민수 교수님 발제문에서 망중립성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망중립성이 논란이 된다면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네트워크 중립성과의 연결 연구 결과가 있다면 연구 결과 공개가 필요하며, 연구가 없다면 왜 안하는지 궁금함
 - CP는 확장성이 매우 많은 영역인데, 어느 영역을 더 성장시켜야 하는지를 알면 망중립성 논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 플랫폼 중립성은 망중립성과는 다른 논의가 필요함
 - 현재까지 5G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 o (△△△) 망중립성 이슈의 핵심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주체들간의 역할 분담이라 생각하며, ISP의 계약을 제한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봄
- 미국이 망중립성 폐기의 목표가 망중립성 도입시 본래 목표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목표의 달성 방법이 변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각 지역에서 ISP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사후 규제가 모두 부과되고 있어 망중립성에 대해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음
 - 망중립성 도입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어느 한 쪽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익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존재함
 - 망중립성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ISP, CP, 이용자간 역할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의 강도 조절이 필요함
 - 표현의 자유를 통신사와 방송사가 가지냐는 이슈가 있었는데, 통신사는 표현의 자유 매개자, 방송사는 표현의 자유로 보며, 네이버가 기사 선별 배치로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ISP도 트래픽을 통과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계는 규제를 해야 한다면 경쟁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계는 제로레이팅의 비용 전가 부분에 대한 설명 필요
- o (□□□) 망중립성이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내 규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망중립성을 완화/강화하느냐는 사전 규제 부서가 금지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강화라고 보고, 별도의 사전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 규제 부서가 케이스별 판단하는 것이 완화라고 봄
 - 제로레이팅의 개념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서비스로 정의하며, 그렇다면 통신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제로레이팅은 트래픽 대가를 CP나 이용자 중 누가 분담하는지에 관한 사안으로 이를 ISP와 CP 간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용자의 콘텐츠 트래픽 유발 사이트를 ISP가 CP와의 계약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망중립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봄

- 5G 서비스가 일반 소비자,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사전에 5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로레이팅 관련 규제를 리스트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봄
-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제로레이팅 규제시 B2B와 B2C 관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함
- B2C 측면에서 이용자 후생 증가만 존재하나, B2B 차원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존재할 수 있어 규제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 관련 근거가 존재하는 상황임
- o (○○○) B2C에서는 이용자 차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B2B에서는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발제자 분들이 답할 시간을 드리겠음
- o (△△△) ♣♣♣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ISP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맞다고 보며, CP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은 시장이 성숙해서 나온 개념이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텐데 정책적 연계성이 필요함
 -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제로프라이싱(과금하면 안된다),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으며, 반드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 수직통합이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방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접근 필요
 - 경쟁활성화법이 존재하므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정책이 의미가 있음
 - 망중립성을 산업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 필요
 - 시장획정이 필요한 공정거래법보다는 방통위에서 사후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봐야 함
- o (□□□) CP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로레이팅의 비용전가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제로레이팅이 제공되므로 결국 소비자에 이익이 될 것임
 - 만약 제로레이팅이 광고 기반이라면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의 특성이 강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CP도 일반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망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데, 트래픽에 비례하지 않는 회선요금 형태로 내고 있으므로 충분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객관적으로 수치를 비교해보면 일반 이용자들이 훨씬 많은 요금을 내고 있으므로, 요금 부담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이 통신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인터넷 개방성을 보장하면서 망중립성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o (○○○) 통신서비스에 공적 성격이 존재하며, CP도 사회 기여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님의 접근법이 시민단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함

- 포털과 통신사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합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며, 어느 한쪽의 규제 강도가 약하므로 다른 한쪽도 규제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음
-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함

□ 소위 운영방안 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 쟁점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자리였음
 - 오늘 회의의 진행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제 및 토론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자 분들이 명확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시간상 서면으로만 의견을 받고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함
 - 우리는 자문위원회이므로, 방통위에서 요청한 의제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
 - 망중립성과 공정경쟁이 2소위에서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함
 - 9월에 1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10월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제안을 위해서 망중립성에 대해 다음시간까지 더 자세하게 논의했으면 함
 - 인터넷상생발전과 관련하여 의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람
- (□□□) 1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에서 생각하는 그림을 브리핑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 시민단체에서는 본인확인기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루었으면 함
- (○○○)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제안을 위해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중립성에 대해 더 논의했으면 함
 - 사업자간 부당한 과금차별부분까지 포함하여 망중립성은 3번에 걸쳐 논의하고,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은 7월에 논의했으면 함
 - 방통위에서 정책제안을 받고 싶은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함
- (△△△) 망중립성과 관련 공정정책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큰 틀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합의가 되면 방통위, 과기부,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듯
 - 방통위는 제로레이팅 관련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중 15-16개 서비스가 진행 중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형태로라도 제시하는 것이 불명확성을 없애준다고 생각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CP, 통신사, 전문가 의견이 필요함
 - 망중립성이슈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업자는 망이용 대가 부담이 없고, 5G시대에서는 망중립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슈가 아니었음
 - 5G에서 특화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규제를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정하려고 함
 -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다루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계속 다루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클린인터넷협약체를 3월말까지 구성하여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의 임시조치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관련 이슈,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 본인확인기관지정폐지, 휴대폰번호 본인 서비스 확인제도 폐지 이슈를 다루려고 함
- 이 주제에 대해 별도의 소위를 마련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함
- o (□□□) 방통위에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주제를 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곳에서 논의한다고 하면 그곳에 불러주셔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 o (○○○) 다음시간에는 망중립성 의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에게 5G 혁신을 위해 걸림돌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자 함
- 자유로운 의견을 위해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반대로 규제 완화시 문제점 리스트도 작성해주시기를 바람
- 다음번에는 걸림돌과 규제완화 문제점 리스트를 보고, 주제별로 모아서 쟁점별로 토론했으면 함
- o (△△△)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는 발제가 너무 많으며, 자유로운 토론기회가 조금 더 제공 되면 좋겠음
- o (□□□) 망중립성 규제를 현행처럼 유지 또는 완화할 것인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함
- 완화는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것인가 금지행위를 완화할 것인가라는 쟁점으로 논의를 했으면 함
- 참석인원이 많아서 소위 위원들간 논의를 먼저 이루었으면 함
- o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오늘 발제문에서는 CP의 입장이 대변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함
- o (△△△) 오늘은 시간상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는 오히려 사업자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사업자의 의견은 서면 제출을 기본으로 하였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앞으로 의견 제출의 방향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 위원회의 임무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
- o (□□□) 논의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의제 범위를 좁혀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o (네이버) 우려되는 것은 정책 제안이 단순히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했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 o (△△△) 합의된 내용을 위주로 정책제안을 만들고, 사업자들간 충돌하는 내용은 세부 내용으로 제시할 예정
- o (□□□) 합의할 수 있는 것, 실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결론을 정리하여 드리려 함
- o (○○○) 망중립성이 통신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통신사는 변화가 필요한 정책 부분 및 입장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 및 전문가들께 (다음 주까지) 게시해주셨으면 함
-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도 듣고자 하며, 논점이 빨리 정리되면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사 협회간 입장의 간극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님은 위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BEREK 보고서를 발제해주시거나,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주셨으면 함
- o (CJ ENM(티빙)) 앞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자의 의견들도 회의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라며, 발제문이나 토론문에서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주셨으면 함
- o (□□□) 사업자들의 의견이 발제문이나 토론문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통신사 측 의견은 빨리 제출된 편이나, 다른 사업자 분들의 의견은 토론문 마감 시기에 제출되어 위원분들이 의견을 참고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다음 회의에서는 2주전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위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2소위원회 2차 회의 4월 25일 2시 개최 예정
- o 차기 회의에서는 망중립성관련 규제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 및 규제 완화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며, 전문가 발제는 빠른 시일 내에 방통위에서 결정할 예정

3-3-2. 제2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4. 25.(수) 14:00~17: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한양대 김동민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팀장,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 (방통위) 박진희 과장, 고낙준 과장, 김용일 조사담당관

2. 회의록

주제 발표

◇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하여 지난 회의에서 제출된 찬반 입장을 정리함
 -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관리형 서비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가기반 우선처리의 경우 통상적 인터넷 서비스 품질요구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허용해야한다는 의견
 -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은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5G 개발 기여,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는 극소수 서비스에 한정될 것이므로 추후에 관리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 가능, 최소한 각 슬라이스 내에서의 트래픽 차별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 국내에서는 통신사의 자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됨
 - 미국은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보고서를 '17년 1월 발표하였으나, 2월 이를 폐기하고 제로레이팅을 완전 허용
- EU는 가이드라인에서 제로레이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배타적인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

- '17년 12월 BERE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로레이팅 관행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하였으며,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 중이었으므로 문제가 될 만한 서비스는 없었다는 점에 유의
- 사실상 트래픽 관리가 없고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일조건을 요구하는 것처럼 운영
- o 지난 2소위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제로레이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함
 - 그러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안별 평가와 일률적 금지 두 가지 견해로 나뉘며, 차별적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안별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됨
- o 투명성 원칙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으나 준수 여부 확인 및 위반시 제재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망중립성 규제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발표: 고려대 이성엽 교수)

- o (서론)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대안을 모색해봄
- o (개념 및 배경)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의 개방성의 조화를 위한 비용분담 질서의 정립의 성격
 - 망중립성 개념은 common carrier의 비차별 의무 규정에서 유래하였으며, 등장 배경은 트래픽 급증, 경쟁심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
- o (미국의 규제 변화) 법제화 추진 배경은 경쟁제한 우려이며,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FCC는 '05년 망중립성 4대원칙을 발표하였고, '09년 6대원칙으로 확장함
 - '10년 법제화를 한 후 '14년 망중립성의 규제가 변화하였는데, 법원의 입장은 ISP가 정보서비스이므로 비차별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 오바마 정부때 ISP를 common carrier로 분류하여 망중립성 규제를 강화함
 - '17년 트럼프 정부에서 망중립성 정책 실패를 선언하면서 '인터넷자유회복'을 선언함
 - ISP를 정보서비스로 다시 분류함(정보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정보서비스로 분류 변화)
 - '인터넷자유회복'의 목표는 망중립성 이념과 같으며, 단지 달성하는 수단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번 결정의 초점은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 o (규제 변화 시사점-역무 성격) 미국은 ISP의 부가서비스 성격 측면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였으나, 한국은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04년 ISP를 부가통신서비스에서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함
- o (규제 변화 시사점-사전·사후 규제) 미국은 투명성 원칙 외에는 폐지하였으며, 투명성 원칙은 그대로 FCC가 관할하고 나머지 소비자 기만적 행위 등은 FTC로 이전함
 - 정보서비스이므로 FTC에서 관할하는 것이 가능하며, 케이스별 사후규제 하겠다고 함
 - 정책변화의 정확한 의미는 망중립성 규제 폐기라기보다는 규제 방식의 변화

- (규제 변화 시사점-혁신, 투자와 망중립성) 정책은 새로운 장벽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혁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포괄적이며 정부 주도적인 규제 대신에 시장의 실제 문제에만 대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함
-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 모색) 한국은 '10년 미국에 대응하여 '11년 제정.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대강의 원칙을 규정하고, 두 번째 원칙은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함
 - 방통위가 플랫폼 중립성을 내포하는 규제 도입
 - '16.9월 망중립성 규제 입법 발의
 -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투명성을 제외한 사전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변화함
 - 망 중립성 규제와 강도의 방향은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제로레이팅은 장단점 존재하며, case-by-case 판단이 필요
 -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 트래픽 관리 허용 검토 필요
- (한국의 망 중립성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안) 법률상 규제 및 가이드라인 규제가 가능하며, 사전 사후 규제 모두 존재함
 - (쟁점1 규제방식의 변화)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변화하는 방안이 존재하며, 기존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폐지, 금지행위는 고시 지침화 하는 방안 검토 제안
 - (쟁점2 법제화 여부) 미국 2010년처럼 법제화한다면 가이드라인 중 중요한 부분 상향 입법 검토 제안
 - (쟁점3 관리형 서비스 구체적 범위) QoS를 보장하는 트래픽의 원칙적 허용 여부 및 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 적정수준의 개념에 대한 관리형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명시 필요
 - (쟁점4 경제적 트래픽 관리) 5G에서 fast lane 허용 여부에 명시적 규정 도입 여부 검토 제안
 - (쟁점5 제로레이팅)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사안별 접근방법 도입 검토 제안

□ 논의주제 토론(1부: 소위원회 위원간 토론)

- (○○○) 이성엽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쟁점을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음. 발제문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위원분들은 바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 (△△△)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망 중립성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망 중립성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전제는 트래픽 급증과 획일적인 망 중립성 정책 하에 수익 저하로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현재의 망 중립성 원칙이 5G 시대의 망 슬라이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전제가 검증가능하고 타당한지 의문 존재
 - 첫 번째 전제에 대하여 반박하자면, 통신 3사는 진입규제에 의해 안정적으로 요금 수익을 창출해왔음

- 요금적정성 논란이 항상 존재하는데, 수익저하로 인해 투자여력이 감소되었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투자여력 감소의 원인이 망 중립성이라는 전제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망 중립성 완화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고 생각함
- 또한 과기부와 통신사가 망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축에 합의하였다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처럼 망 구축시 효율적인 방안이 여러 가지 존재함에도 다양한 방안 논의대신 망 중립성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이 의문임
- 통신사의 망 관리 권한 및 수익모델 다양화와 같은 사유재산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망고도화의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여 망 구축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음
- 두 번째 전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5G 슬라이싱 기술만으로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트래픽 차별과 망 중립성 완화는 별개의 문제
- 망사업자와 CP간 경제적 논리로 논의가 진행되기보다는 통신서비스의 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 망에서 속도,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익성을 약한 모델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트래픽 관리 측면에서 패킷에 대한 분석은 이용자에 대한 통제 강화를 의미하며, 통신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증대 및 통신의 자유 제한 우려가 존재함
- o (□□□) ♣♣♣님은 원론적인 문제 측면에서 통신사의 주장이 검증 가능하지 않다,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 o (○○○) 찬반을 떠나서 개념을 확실히 하자면, 망 공동구축은 새로운 택지 지역에 국한됨
 -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적 재화라고 볼 수 있음
 - 트래픽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그동안 관리를 못했던 것이고, 망 중립성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투명성과 관련된 규제 수단이 존재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낮음
- o (△△△) ♣♣♣님이 원론적인 문제를 제시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면서 기본적인 논의를 하려고 함
 - 망 중립성 사전 규제는 방통위 관할권이 아니나 사후적인 규제를 고려하면 전제로 언급될 수 있음
- o (○○○) 망 중립성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현실화가 적절하다고 봄
 - 망 중립성 개념이 만들어진 시기에 비해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크게 달라졌으므로, 현실에 맞추어 정책이 변화되어야 함
 - 예전에는 CP와 개인 모두 이용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대기업화된 CP들이 존재하고 상당한 트래픽을 일방향으로 유발하여 이전처럼 일반적인 이용자로 간주하는데 무리가 있음
 - 현재 최종 이용자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체계를 상당수 수익을 벌여가는 CP가 일정 정도 부담하도록 변경하는 논의 필요

- 제로레이팅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와이파이나 정액형 요금제가 많이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 불균형적으로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 대해 망 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 o (△△△)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 o (□□□) ♣♣♣님의 발언은 망중립성 이슈를 넘어 인터넷의 기본적인 정산구조와 관련된 것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림
 - 망에서 트래픽을 많이 점유한다는 이유로 CP가 통신사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자신이 직접 접속하는 통신사 뿐만 아니라 최종 이용자까지 도달하는 동안 경유하는 모든 통신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 o (○○○)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용자는 발신 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access 요금만 지불하며, 그 외에는 ISP 간 상호접속으로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비대칭적 트래픽 발생으로 상호접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어 문제가 발생
- o (△△△) 요금을 내는 체계 자체를 변경하자는 것인데, 상호접속의 문제라고 한다면 상호 접속제도를 개선하여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함
- o (□□□) 상호접속 시장의 경우, 망중립성 원칙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생각됨
 - last mile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함
 - 기존의 망 중립성 개념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현실화를 말씀드림
- o (○○○) 트래픽에 흐르는 콘텐츠의 변화가 제도 변화 필요성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옛날에도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는 한정되어 있었으며, 단지 last mile에 흐르는 콘텐츠가 변화하였다고 하여 요금체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o (△△△) 어떤 측면에서 모든 문제가 존재하니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림
- o (□□□) 논의하는 문제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 o (○○○) 공익성을 지닌 서비스 관점에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CP에게도 공익성 의무가 요구됨
 - 예를 들면 콘텐츠에 지나친 광고를 붙여 트래픽 유발할 경우 통신사는 서비스 측면에서 별도의 요금 부과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망 중립성 측면에서 통신사의 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은 적정대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의할 수 없음
 - 합리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방통위에서 원가기준을 만들고 사후적인 규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함
 - 인터넷 접근에 대한 개인의 자유 원칙은 보장되어야 하며, 망 중립성 이념 자체를 검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 통신사의 망투자비용 부담 주장은 호소하기 위한 레토릭이라 생각되며, 일반이용자에 대해 요금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CP에 대한 적절한 망 이용대가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
- (□□□) 망 이용대가 관련하여 ISP가 협상력 향상을 위해 트래픽을 경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으로 생각하면 됨
 - 통신사는 CP와 자유로운 서비스 협상을 원하나, 가이드라인 상 금지행위 규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규제 완화를 주장함
 - 현재 적용 중인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것인지, 사후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망 중립성을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
 -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협상권 범위를 어느 정도 선까지 고려할 것인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규정을 자유롭게 하고 사안별 규제를 할 것인가 고민 필요
- (○○○) 통신사들의 CP에 대한 과금은 망 중립성과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림
 - 자율적인 협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래픽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CP보다 통신사가 우위에 존재하므로 시민단체 입장에서 찬성하기 어려움
 - 해외 사업자가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과 구분하여 어떠한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
- (△△△)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트래픽 차별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고 있음
 - 관리형 서비스의 합리적인 범위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며, 속도에 따른 차별이 비합리적이라고 전제하면 논의 진행이 어려움
- (□□□) 교통유발 부담금과 같이 부담이 되는 경우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함
 - 합리적 차별을 주장할 때 모든 일상적 서비스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CP 등을 상대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함
- (○○○) 교통유발 부담금과 다른 것은 특정 CP에게 대가를 받고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제공하는 것임
- (△△△) 해외사업자에 대한 과금 문제는 역차별에서 논의하면 될 듯하고, best effort의 수준을 논의해야 함
- (□□□) 기본적인 망 중립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99%의 CP는 영향을 받지 않되 다만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수의 CP들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 지금은 협상력이 불균형하므로 현실에 맞게 하려면 대가를 지불하여 증속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특정 사업자들의 경우는 망중립성 적용 대상의 예외로 보는 방안이 필요함
- (○○○) 전제의 사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후의 공과를 살펴봐야 함

-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으로 CP가 ISP에 대한 관계에서 이용자가 아니게 됨에 따라 ISP와 CP와의 관계는 B2C가 B2B의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해야 함
- 망중립성 정책 수립 후의 망중립성 생태계 player인 ISP - CP - 이용자 간 각 관계별 이슈를 검토해야 할 것인바, ISP vs. 이용자의 경우 그 관계는 ISP의 이용약관에 따라 정해 지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인가 내지 신고로 인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이용약관 위반의 경우 행정제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관계는 매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음
- 한편, CP vs. 이용자의 경우 CP 역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에 대한 의무제공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ISP vs. 이용자에 비해 사실상 규율이 없는 상태로서 본격적인 규율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향 논의가 필요함
- ISP vs. CP의 경우 B2B 관계임에도 여지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전제가 ISP vs. ISP 위주로 전개됨에 따라, 작년 신설된 전기통신사업자간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금지 기준의 세부 적용방향과 맞물려 양자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o (△△△) 망 투자에 대해서는 SOC 영역에 준한다고 간주하며, 투자부담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일정 정도 역할을 맡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사회적 문제를 여기에서 공론화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며, 사회물리학이나 산업수학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보는 것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o (□□□) 현행 망 중립성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를 구분해 논의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망 중립성이 어떠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향후 문제를 풀어내기가 좋을 듯
- o (○○○) 기본적인 오해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는 언어를 통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사업자들의 논의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견해를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 논의주제 토론(2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 사업자간 토론)

- o (△△△) 통신 3사가 하나의 의견을 주셨는데, SKT가 통신사의 입장에 대해 발언해주시기 바람
- o (SK텔레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경우 불명확한 점이 많아 사업자간 제휴 등을 추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규제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함
- 공적인 부분인 철도, 우편의 경우 fsat lane(예, KTX)을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통신서비스 에서도 차등화를 통한 다양성 보장이 필요함
- 개선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CP나 OTT가 전적으로 망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 FCC의 표현을 인용하면 네트워크가 플랫폼화 됨에 따라 CP와 이용자를 매개하게 됨. 그러나 현재 통신사의 수익구조는 매출의 대부분을 이용자에게 회수하고 있음

- 5G에서는 투자비용은 늘어나는데 이용자에게 요금을 더 받기는 어려우므로, 수익을 창출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 CP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fast lane이 허용되어야 함
-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과 관련된 이슈라기보다 사업자간 제휴로 이해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로레이팅을 허용 중이며 국내에서도 통신 3사가 자회사 서비스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인데, 다른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자사의 제로레이팅 서비스와 유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봄
- 비유를 하자면, 건물주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대신 자신의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음. 임대료 대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 o (OOO) 이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자 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P는 현재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망 이용대가는 증가하는 추세임
 - 네이버는 730억 이상, 아프리카 TV등은 자기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을 망 이용대가로 지불 중
 -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의 많은 예외 적용으로 인해 통신사들이 자유로운 대응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망 중립성 완화보다는 망 중립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통신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궁금한 점은 5G 시장의 양면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요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형 플랫폼/CP로부터도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정책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원함
- o **(카카오)** 통신사는 best effort 망에서 기술적으로는 속도차별이 가능함.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기술적으로 속도차별이 가능한 것일뿐 반드시 속도를 차별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해 망 중립성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NFV(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면 망운용비용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데, 통신사측에서는 망 투자 비용 증가요소만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임
 - 제로레이팅에 대한 CP의 입장은 사업자간 자율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며, 정책적인 강제는 어려움
 - 다만 '17년 1월에 있었던 FCC의 제로레이팅 조사결과를 보면 계열사 자사 서비스 제공할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신사의 자사 서비스 제로레이팅 적용에 대해 유심히 봐주셨으면 함
- o **(네이버)** 망 중립성으로 인해 정책적 방향에 변화가 생긴다면 상당수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의견이 제외되어 있음
 - 방통위에서 공론화의 취지에서 이 자리에 모인 사업자 측을 의견을 구하는 것 같으나, 이 사안의 중요성에 관하여 대형 CP와 소형 CP 간 입장차이가 존재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소외되어 있으므로, 논의가 더 진행되기 전에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방통위에 제안함

- o (△△△) 중소 CP, 스타트업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 o (□□□) 다음 회의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음
- o (구글코리아) OSP 및 CP도 관련 네트워크, 설비 및 시설 등의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용자들에게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비용은 절감되고 있음
 - 망 사용료 문제는 망 중립성 이슈와 다른 문제이므로 필요하시다면 분리해서 논의를 해주실 것을 희망함
 - 상호접속고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존재함
 - 지난 회의시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캐시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일방적인 갑질로 매도하는 통신사측의 발언이 있었는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희망함
- o (△△△) 논의과정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필수요소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도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합리적 차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투자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전에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에서는 제로레이팅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카카오는 사업자간 자율이라고 말씀함
 - 우선 통신사업자에게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음
- o (SK텔레콤) 인기협에서 질문하신 5G의 양면시장을 활용한 정책적 접근 및 기타 질문에 대해 설명하겠음
 - 지금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규제로 인해 CP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획일화되었는데, 서비스 차별화가 허용된다면 수익의 다변화가 가능함
 - 따라서 best effort 외 나머지 망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주셨으면 함
 - 망 중립성에 관해 물리적 차단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망을 활용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음으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필수요소인 것인가라는 지적에 대해 통신사에서도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있음
 - 다만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차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상당한 QoS 보장이 필요하며, 이것을 기계적인 트래픽으로 처리하면 신사업이 창출되기 어려워 고객들도 서비스 이용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
 - 투자비 감소기술을 언급하셨는데, 폭증하는 트래픽 대비 통신사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투자가 필요하여 상황이 다름
 - 제로레이팅으로 인해 스타트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차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스타트업이 제로레이팅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중소 CP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레이팅 서비스 요금을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제로레이팅 서비스 중 옥수수가 선전하고 있으나, 점유율이 유튜브의 37분의 1수준으로 지배력 전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제한성을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o (○○○) 투자 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 o (SK텔레콤) 28GHz 손실율이 커서 더 촘촘하게 망을 설치해야하므로 투자비용이 증대될 수밖에 없음
 -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LTE보다는 투자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 o (□□□) 통신사측은 한국의 기계적인 망 중립성으로 인해 유연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fast lane 도입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 fast lane 허용과 망 중립성 정책이 공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best effort 망이 원활히 제공된다면 fast lane을 사용할 유인이 없으므로, fast lane 도입시 best effort 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됨
 - 통신사의 서면의견에서 글로벌 CP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CP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인지, 국내 서버가 없더라도 요금을 받겠다는 것인지 궁금함
- o (SK텔레콤) 이용자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best effort는 정의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임
 -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0.01%의 작은 차이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그러므로 작은 차이가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fast lane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장 사업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를 하는데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유화를 보장해달라는 것을 의미함
 - 힘의 균형이 글로벌 CP에게 기울어져 있는데, 망 중립성 규제로 인한 협상력 저하가 증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로 글로벌 CP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언급함
- o (△△△)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가 정상화된다면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 적정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어야 함
- o (□□□)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의 의견을 KT에서 말씀해주셨으면 함
- o (KT) 망 중립성 정책 수립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름
 - 정책 수립 당시 목적은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나 인터넷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통신사와 대형 CP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규제기관이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
 - 원가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포털의 경쟁상황,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매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어서 형평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SK텔레콤) ♀♀♀ 측에서 원가 공개를 말씀하셨으나,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회계 자료 만으로는 원가를 알기 어려움
 - 영업보고서 상의 투자비용과 재무제표 상의 capex는 사실상 차이가 크지 않음
 - 양면시장인데 CP에게 충분한 대가를 받으면 이용자의 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B2B에서 받는 요금으로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좋다고 생각함
 - 현재 구조로는 AR, VR로 광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글로벌 CP들이 이용자 맞춤형 광고로 가져감
- (□□□) 통신사 입장은 수익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 같은데,
 - 건물주가 임대료 외에 가게 주인에게 수익의 일부를 더 내라는 식이 타당한 주장인가 의문
 - 결국 CP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도 콘텐츠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해서 더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 (SK텔레콤) 예시로 든 건물은 양면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가 부적절함
 - 데이터 중심에서는 end user와 CP를 통신사가 매개하고 있으며, 힘의 균형이 거대 CP기업으로 기울어져 이용자 부담완화 측면에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 통신사 측의 주장은 CP의 창의적인 활동에 의한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활동이 망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CP는 이미 망 사용료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에서는 종량제로 지불하고 있는데 통신사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SK텔레콤) 수익의 상당수를 CP가 가져가지만 비용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음
 - 통신4사(SKB 포함)가 이용자에게 받는 소매 매출이 30조인 반면 실제 네이버에게 직접 받는 금액이 200억 수준이고, 전체 CP가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고려해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99%이상, CP가 부담하는 비율은 1% 이하임
 - 이처럼 망 비용의 대부분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어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며, 정당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함
 - 규제를 통해서 CP에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요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허용해달라는 것임
- (○○○) CP 측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이미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함
- (네이버)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보다 CP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망 이용대가 금액을 공개한 것임
 - 망 이용대가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면 본래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신사측에서는 자료 공개를 해주셨으면 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15배 이상 비싸게 망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며, 무임승차는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임

- (○○○) 지난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오해가 있는 듯한데, 비용을 거의 안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발하는 트래픽에 비해 접속이라는 정액 성격으로 낮게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 얼마를 내는 것이 적정한가는 알기 어려우며 시장에서 결정될 사안임
 - 참고할만한 예로 양면시장인 유료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데, 이용자에 대한 요금 수익 외에 홈쇼핑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임. 요금수익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이 6:4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또 다른 예로 신용카드 시장인데, 가맹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회비를 내더라도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고려하면 일반 가입회원들의 이용료 부담은 거의 없는 편임
 - 그러나 통신시장에서는 망 중립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구조가 불가능하여 부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은 아님
 - 어떠한 구조가 효율적이고 공정하나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무엇이 득이 될 지에서 생각해보아야 함
- (△△△) CP쪽에 질문을 드리자면, 통신사들은 차별적 이용을 허용해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차별을 허용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함
 - 가이드라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므로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닌 허용 범위를 말씀해주셨으면 함
- (카카오)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별 허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의 망 중립성 기조 하에서는 차별이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함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도 반드시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통신사 측은 best effort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SLA(service level agreement)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SLA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차별이나 차단, 투명성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
- (○○○) 그렇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최저 속도가 보장이 된다면 원격 의료와 같은 고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별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카카오) 그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망 중립성 정책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대의 이유는 망 중립성 전체의 SLA는 정해져 있고, 의료와 같은 고도의 서비스는 가상화된 망 중 하나를 할당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필요에 의해 망을 구분하여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망의 운용적인 면이므로 통신사의 권한을 인정함
- (네이버) 목적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
- (○○○) 구간 안에서 차별이 없다면 구분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 (네이버) 통신사가 모바일 동영상 전용망을 서비스하면서 CP에게 요금을 더 받는 상황이 가능하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망 중립성 원칙이 무력화되어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불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움
 - 원칙을 말씀드리면 반대한다는 입장임
- (□□□) 슬라이싱 자체는 인정하는데 원격의료, 동영상 등 슬라이싱 대상 구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함
- (○○○)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림이 다르신 듯하며, 비유를 하자면 네트워크는 백화점과 같다고 볼 수 있음
 - 총마다 다른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서비스별 제품별 슬라이싱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협상할 것인가가 이슈임
 - 그리고 통신사측에서 직접 콘텐츠 사업을 키우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 통신사측에서는 CP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중소 사업자들의 광고력과 콘텐츠 증가로 이득이 전이되는 것이 수직통합보다 유리함
 - 계속 가정을 전제로 하는 논의보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이해해주셨으면 함
- (△△△) 네트워크를 백화점에 비유하시면서 차별성을 강조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 기본적으로 best effort 망에서 패킷은 동일한데 패킷 인식 기술 발전과 통신사의 수익추구로 인해 망 중립성이 훼손되려는 것임
- (□□□) 네이버나 카카오는 망 이용대가 측면에서 글로벌사업자에 대해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 (네이버) 국내에 서버가 없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망 이용대가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원가를 알아야 논의 가능
- (구글코리아)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망 사용료라는 것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시 한번 상호접속고시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 네이버가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가 상호 접속고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지 아니면 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비용인지, 네이버는 왜 캐시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함
- (SK텔레콤) 캐시서버가 사업자간 계약이 맞기는 하나, 망 이용대가에서 통신사는 협상력 열위에 있음
 - 비교를 하자면 MVNO의 경우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나, CP는 동일한 망을 활용함에도 지불하는 비용이 적어서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임
 - 망 중립성 원칙 완화는 이러한 기울어진 협상력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릴
- (구글코리아) 구글이 협상을 할 때 갑질을 했다는 무책임한 가정을 하지 않으면 좋겠음
 - 구글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갑질을 하여 불공정계약을 했다면 이미 규제 기관의 제재를 받았을 것임. 일방적인 계약은 규제기관의 제재 대상임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카카오의 제로레이팅에 대한 입장은 들었는데, 네이버의 제로레이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
- (네이버) 과거에 미래부가 정리했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 불공정 거래 수준은 아니라고 봄
- (○○○) 다만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우려가 있으니 사후규제를 원한다는 입장으로 알겠음
- (△△△) 추가로 의견을 말하자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관리형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슬라이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네이버) 5G 네트워크 기술을 말씀하시면서 예로 자율주행차 등을 언급하시는데, 오히려 네트워크 불안정성으로 인해 의존도를 낮추려는 상황임
 - 만약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서비스라면 통신사의 특정 슬라이스보다는 정부에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함
- (○○○) CP사업자나 시민단체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듯한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손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 (SK텔레콤)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통신사의 입장임
 - 자율주행차의 경우 오히려 5G 네트워크와 실시간 연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Needs도 있음
- (□□□)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즉 차별받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의 여파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
- (SK텔레콤) 현재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 외 나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 다음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에서 제외할 부분을 조정하고 네이버에서 제안한 것처럼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기를 원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5월에 예정된 전체회의는 개최를 미루며, 2소위원회 3차 회의 개최일은 소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을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
- 차기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망 중립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며, 가능하다면 중소 CP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볼 예정

3-3-3. 제3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5. 28.(월) 14:00~17: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한양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성균관대 송명빈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팀장,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박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 유럽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로 레이팅의 현황: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 건국대 황용석 교수)
 - (제1장 조사의 배경) 이 보고서는 제로레이팅의 특성과 본질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쟁제한성을 함께 검토
 - 정성적 분석에 그친 한계가 있지만, 국가별로 다양하게 서비스 제공되는 사항에 대해 파악 가능
 - EC의 의견이 아닌 컨설팅기관의 의견에 가까움
 - (제2장 제로레이팅 현황 조사) 유럽 국가 및 미국을 대상으로 제로레이팅 할인유형, 콘텐츠 유형 등을 조사한 결과 제시
 - 제로레이팅 할인 유형은 Bundled free, bundled subscription, add-on 등으로 구분하며, Bundled free가 가장 많음
 -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비디오 스트리밍에서는 이통사 소유 동영상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음
 - 소셜미디어에서는 페이스북이 소유한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국가별로 페이스북 소유 콘텐츠가 zero-rate로 제공되는 비율은 다르게 나타남

- o (제3장 Case studies) 불가리아,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에 대한 제로레이팅 시장 분석 결과 제시
 - 불가리아: '14년까지 시행되지 않다가 최근 도입
 - 독일: '09년 시작된 이후 '11-'16년까지 활발히 운용되었으나 현재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포르투갈: '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MNO가 자사 메인 브랜드를 통해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큰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zero-rate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유럽에서 제로레이팅은 성장하고 있으며, 요금제도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스웨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높은 데이터 사용량을 부과해 제로레이팅 효과가 크지 않음. 요금제가 제로레이팅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영국: 제로레이팅이 활발히 시행되지 않음
 - 미국: 많이 언급되었으므로 내용 설명을 생략함
- o (제4장 결과 요약) 모바일시장에서의 제로레이팅 할인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 CAP(Content and application providers)와 제로레이팅 관계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CAP는 제로레이팅 시행에 큰 영향력이 없으며, 다국가 전략을 시행하지 않음
 - 제로레이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데이터 허용량, 제로레이팅 서비스의 특성과 정도 등 여러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
 - 특이하게 데이터 허용량이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를 적게 소모하는 앱의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MNO 또는 CAP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예: 스웨덴), 그 효율은 데이터 허용량이 낮은 시장에 더 클 것임
- o (제5장 제로레이팅의 잠재적 이익과 폐해) 제로레이팅이 시장 및 이용자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 보고서는 잠재적 이익과 폐해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음
 - 제로레이팅의 잠재적 이익은 접근 기회 확장, 상품 차별, 가격 차별, 다면시장의 효율적 가격 정책,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촉진, 통신정책 조율이며,
 - 잠재적 폐해는 망중립성 위배, 콘텐츠 간 경쟁 방해 및 이용자의 선택권 저해, 콘텐츠 시장을 붕괴시킬 가능성, 혁신과 서비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ISP 간 공정 경쟁 제한, ISP의 트래픽 제한 강화 및 CAP로부터의 요금 인상 가능성임
 - 유럽에서 제로레이팅 논의는 경쟁법의 맥락보다 망중립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o (제6장 경쟁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로레이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언급하며 경쟁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
 - 제로레이팅 경쟁효과를 측정시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양면시장을 모두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임

- ISP가 불공정한 요금정책과 불평등한 경쟁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 측정시 ISP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제로레이팅 서비스와 데이터 제공량 한도와와의 연관성, 제로레이팅 콘텐츠가 ISP 사업자를 전환시킬 여력을 고려해야 함
 - CAP 단계에서 제로레이팅 콘텐츠가 ISP에 의해 운영되는지 여부, ISP가 다른 콘텐츠에 동등한 제로레이팅 기회를 부여하는지, 제로레이팅 콘텐츠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접근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함
 - 제로레이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콘텐츠의 인기,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의 콘텐츠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로레이팅 콘텐츠와 비제로레이팅 콘텐츠 간 이용량 차이임
- 이 보고서는 제로레이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을 양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규제의 수단이자 출발점으로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시장 현황 조사 및 측정이 더 필요하며,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자는 것이 결론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시장을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현재까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관련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 분들이 주신 의견을 정리함
- (망중립성 정책) 망중립성 규제 완화는 5G에 한하여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기술에 적용할 것인지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5G 한하여 규제 완화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금지될 가능성 있으므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기존의 관리형 서비스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 존재
 - 전체적인 망중립성 규제 완화는 소수 대형 CP에 합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고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대가기반 우선처리 허용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비용 부담 여력이 충분한 대형 CP만 살아남게 된다는 반대 의견 존재
 - 정책방안 수립시 규제 수준이 낮은 것부터 1) 현행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하되 5G 기술로 인해 필요한 부분은 관리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대응 2) 대가 기반 우선처리를 허용하되 경쟁 CP 간의 차별은 금지 3) 투명성 이외에는 대가기반 우선처리, 차단 금지, 지연 금지까지 포함하여 규제 완화하는 방안 존재
- (제로레이팅 정책) 대부분의 위원 및 사업자가 제로레이팅 원칙적 허용에 동의함
 -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1) 일정 범주의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등조건 의무화 여부 2) 자사 및 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따라서 크게 4가지 정책방안이 가능함
 - 일정 범주의 모든 CP에 대한 동등조건 의무화 찬성 의견은 특정 CP에 대해서만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것은 이용자 선택권을 현저히 제한한다는 것이며, 반대 의견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

-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허용에 대해 통신사측은 경쟁 CP에게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며, 이 경우 통신사측이 주장하는 동등 조건은 경쟁 CP의 제로레이팅 요청시 통신사의 데이터 이용료 수준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임
- 반면 통신사들이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제공시 원가 수준의 부담만 포기하는 것과 달리 경쟁 CP는 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견해 존재
-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은 경쟁 CP에게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며, 반대하는 측은 계열사 우대 가능성이 높는데 사후 규제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 금지가 필요함을 주장함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 o (○○○) 앞서 두 발표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o (△△△) 우선 황용석 교수님 발표에 대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 제로레이팅과 관련하여 사례별 판단 지침을 제공하는 BEREC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BEREC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한도가 초과된 이후에 제로레이팅 콘텐츠를 사용가능한지에 따라 망중립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제로레이팅 대상 앱과 비대상 앱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망중립성 위반으로 보며, 동등하게 차단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가이드라인은 규제기관이 사례별로 규제 여부를 판단하되 경쟁 CP에 대한 배타성, 사업자의 지배력 보유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해외에서 제로레이팅을 규제한 사례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망 중립성 규정을 빨리 도입하였고 제로레이팅을 금지하고 있음
 - 그리고 김현수 연구위원님 발표 중 '대부분 제로레이팅 원칙적 허용 동의'라는 표현에는 이견이 있음
 - 제로레이팅을 사전/사후 규제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이미 다양한 보고서 등에서 제로레이팅 규제 시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o (□□□) 유럽보고서에 대해서 보충하는 의견과 김현수 박사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심
- o (SK텔레콤) 제로레이팅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망중립성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로레이팅 규제를 반대하는 비율이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서 ICT가 화제임
 - ICT가 융합되면서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비용을 통합하여 지불함
 - 이 통합된 비용에서 벅스 등 콘텐츠사가 프로모션을 통해 3개월 할인해주는 것은 용인하면서, 소비자가 원하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네트워크 비용 할인은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음. 제로레이팅도 프로모션의 한 형태임

- 해외 사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자면,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었고, 미국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도 허용하고 있음. 유럽도 27개 국 중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장에서 이용자 친화적으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 망 중립성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데, 타 CP에 대해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유사한 조건으로 대우한다면 제로레이팅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함
- o (△△△) 지난 회의에서 망중립성의 대 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망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면서 신규서비스나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로 논의가 좁혀졌다고 생각함
- 유럽의 사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규제 허용/금지보다도 개별적으로 금지/허용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 기준 마련을 논의했으면 함
- o (□□□) 제로레이팅 문제는 망중립성으로 접근하느냐 경쟁정책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로 판단됨
- ♣♣♣는 망중립성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고, 유럽 사례처럼 데이터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제로레이팅이 작동하는 방식은 망중립성의 관점에서 볼 여지도 있음
- 그러나, 그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ISP가 제로레이팅을 통해 (데이터 한도 초과 이후) CP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인데, 만약 윤상무님 말씀처럼 CP에게 제로레이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있다면 ISP가 CP를 선별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망중립성 문제로 접근할 필요는 사라지게 됨
- 개인적으로는 망중립성보다 경쟁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논리는 경쟁 제한성 여부임
- 우리나라는 현재 동영상 스트리밍 부분에서 유튜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유튜브가 제로레이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로레이팅 시행으로 인해 당장 경쟁이 제한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물론 경쟁 정책적으로 향후 발생할 상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나 시급성은 떨어져 보임
- 오히려 좋은 콘텐츠를 가진 후발 CP가 제로레이팅을 차별화 및 초기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o (KT) 제로레이팅을 보는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망중립성에서의 관점은 네트워크 측면, 경쟁 정책에서의 관점은 서비스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네트워크 단계에서 CP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는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후 규제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함
- 제로레이팅은 서비스 측면에서, 즉 경쟁 촉진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o (△△△) CP쪽 의견을 듣고자 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로레이팅을 반대하는 이유는 스타트업이나 소형 CP들이 시장에 진출할 때 제로레이팅이 경쟁 제한적 요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때문임
- 통신사가 주장하는 동등 조건이 ISP와 CP간에는 평등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형 CP와 소형 CP간에는 오히려 경쟁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음

- 제로레이팅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이 80%라는 김경진 의원실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하셨는데, 전체가 국민 대신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찬성 응답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사업자 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대형 CP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나, 소형CP는 비용 감당이 어려움
- o (○○○) 소형 CP나 스타트업은 비용 지불 능력이 없으니 경쟁이 취약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 o (SK텔레콤) 망중립성 관련하여 중소 CP를 언급하시는데,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대형 CP가 제로레이팅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열위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함
 - 오히려 트래픽량이 적은 중소 CP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택할 유인이 존재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서 설명된 유럽보고서에 의하면 페이스북도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 (SK텔레콤) 그 경우 페이스북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을 겨냥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것임
- o (△△△) 중소 CP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함
 - (□□□) 콘텐츠 관련 협회나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음
 - (○○○) 이 자리에 없는 중소 CP 의사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정책 방향이 새로운 신사업 창출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자는 측면도 있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o (△△△) 지난 회의에서 ♣♣♣님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CP쪽 의견을 듣고자 함
 - 자율주행자동차라든지 가상으로 망을 운용하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자 고유 권한이나, 동일 슬라이스 내에서 차별하는 것은 문제라는 사업자 의견이 있었음
 - 슬라이싱을 통해 관리형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전에 설정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CP쪽 의견 바람
- o (네이버) 사례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언급되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도가 된다면 소관부처가 나서서 그에 맞는 제도, 규제, 관리를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 o (○○○) 통신사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서비스를 위해서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는데,
 - 망중립성 규제 전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서비스를 위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한지 대상이 한정된 상태에서 논의가 필요함
- o (△△△)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인터넷 QoS 보장은 한계가 있음
 - 관리형 서비스의 범주가 폐쇄적인 망에서 특정 이용자를 위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 (□□□) 지난 회의록을 보면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하여 카카오에서 의료와 같은 고도의 서비스에 대해서 가상화된 망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 망을 구분하여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망의 운용적인 면이므로 통신사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통신사 권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네이버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하여 목적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함
- (카카오) 지난 회의에서 언급한 사업자가 망의 고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설비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의미임
 - ♣♣♣ 의견처럼 관리형 서비스는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와 협의를 하면 됨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동일 네트워크 망을 가상적으로 나누고 속도를 차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음
 - 따라서 통신사측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해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과대 해석된 경향이 있음
- (SK텔레콤)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리형 서비스는 관점이 다른 얘기임
 -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기술적인 용어로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통신사뿐만 아니라 장비 업체 등에도 적용이 가능함
 - LTE에서의 슬라이싱은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5G에서는 유연하게 네트워크 할당이 가능함
 - 관리형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구현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음
 - 기술발전 진화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별, 산업별, 기업별로 나누어서 각각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가 이러한 방식을 요구하게 될 것임
- (□□□) 기술발전 측면을 고려해 정책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현 기술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임
- (네이버) 지난 회의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하여 서비스 목적별 구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며, 기업별 슬라이싱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 (△△△)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허용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 (네이버) 관리형 서비스도 사업자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경쟁 사업자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 (○○○) 기업별로 차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속도 차등과 같은 요구사항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 (SK텔레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기업별로 서비스하는 경우 이통사의 단독서비스보다는 타 산업과 통신이 융합된 상태로 제공될 것임
 -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자동차에 통신사의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음

- 이렇게 개별 기업별로 슬라이싱이 된다면, 해당 기업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best-effort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음
- o (□□□) 관리형 서비스와 best-effort 망간에 혼동되는 측면이 존재함
 - 관리형 서비스는 특정 망(폐쇄망)에서 특정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망중립성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그러나 퍼블릭 인터넷 망을 통해 차별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함
 - 즉 관리형 서비스는 망중립성 논의와는 별개이므로, 관리형 서비스를 근거로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 o (○○○) ♣♣♣ 의견에 대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한지 궁금함
- o (KT) 현재 상태에서 5G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서비스가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함
 - 5G의 여러 특성이 존재하며, 고사양, 고품질, 고속도의 특성이 서비스의 주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함
 - 기술적으로는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든 원하면 그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관리형 서비스와 망중립성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5G 서비스 중 대부분이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가 될 것임
 - 결론적으로 5G 환경에 기존 망 중립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o (□□□) 5G 서비스를 모두 관리형서비스라고 하면 망중립성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움
 - 현재의 best effort 공중인터넷을 지키겠다는 것이 망중립성의 취지이므로, 5G에서도 일단은 개방된 공중인터넷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할 필요
 - 유럽에서도 관리형 서비스가 망중립성과는 별개라고 얘기하면서도 관리형 서비스로 인해 best-effort 망 품질이 하락하면 망중립성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단순하지 않은 문제임
 - 5G로의 변화가 망중립성 논의의 새로운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현재의 best-effort 망에서 대용량의 비대칭적 트래픽이 발생하는 문제도 망중립성 현실화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
 - 5G에서도 만약 대용량의 동영상 스트리밍이 best-effort 망 부분에 흘러 다닌다면 망중립성 개념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o (KT)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5G가 주요 이슈이므로 망중립성을 논할 때 좀 더 크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림
- o (△△△) 5G 망에서 우리가 보장받는 SLA를 저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는지?
 - (SK텔레콤) best-effort SLA는 후퇴할 수 없고 더 나아질 것임
 - 결국 5G에서 B2C의 동영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 사업자간 경쟁도 존재하므로 품질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며, 만약 최소 서비스 품질 수준이 정해진다면 준수할 것임
- (구글코리아) 자율주행자동차가 계속 언급되는데, 전적으로 인터넷 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 망도 이용함
 - 미국의 망 시설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음에도 자율주행차 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망중립성 완화 없이도 가능하고, 사용할 분야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임
- (네이버) 이전에 말씀드렸드시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소 CP 의견이 공론화에 포함 되어야 함
 - KISDI 요약문이 회의 발언 취지와 다르게 요약되어 말씀드리자면, 5G에 한하여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제로레이팅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음
- (□□□) KISDI의 요약문은 망중립성 규제 대부분을 완화하는 방안부터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방안까지 정책방향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취지에서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제로레이팅도 원칙적 금지와 허용 양극단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임
- (○○○) 관리형 서비스와 트래픽 관리 간 혼동이 있는 듯하여 말씀드리겠음
 - 관리형 서비스는 가이드라인에서 best-effort 망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선에서 제공하도록 하며, 망중립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망중립성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음
 - 슬라이스 내 차별은 경쟁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 5G 서비스는 별도의 전송폭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관리형 서비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트래픽 관리를 기술적인 것에 국한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것까지 확장할 것이냐에 관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참고 토의)

- (△△△)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를 이상우 박사님이 발표하겠음

◇ 인터넷망 상호접속 개념과 제도 현황 (발표: KISDI 이상우 통신정책그룹장)

- (거래구조와 상호접속) 인터넷생태계는 크게 CP, 무선인터넷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양단의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접속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간 거래관계를 포괄함
- (개념) 인터넷 상호접속이 없었을 경우 자체망 트래픽만 처리하지만, 상호접속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트래픽을 전세계로 전달 가능함

- 앤드유저와 ISP간 트래픽 교환은 소매거래로 인식하여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에서 제외
- 사업자간 연동 구조에서 계위 구분이 기본적이며, 상위 사업자 밑에 중계 사업자, 하위 사업자 형태로 이루어짐
- o (계약 유형) 사업자간 계위 관계에 따라 크게 동등접속과 중계접속으로 구분하며, 정산 유무, 접속트래픽 유형에 따라 세분화됨
- o (제도 도입 및 개선추진 경과) '05년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며, '16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ISP가 부가통신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사업자간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여 인터넷망 상호접속을 제도화함
 - 당시에는 정부가 접속요율이나 거래방식에 대한 자세한 방식은 규율하지 않음.
 - '16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자간 거래 관계, 대가 수준도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상호접속 대상 범위를 이동망으로 확대함
- o (개선 배경) 인터넷 생태계 확대로 ISP-CP간 공정경쟁문제 발생
 - 도매시장과 소매시장과의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망중립성 이슈 발생
- o (개선 주요 내용) 정부가 상하위 계위 사업자를 지정하고 정산방식을 용량기반에서 트래픽 기반으로 변경
 - 무선인터넷을 ISP사업의 하나로 보고 상호접속 범위를 확대
 - 모든 트래픽 유형을 4개 호로 분류함
 -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CP를 유치할수록 한계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화
- o (□□□) 하위 사업자(C)가 중계사업자(A)를 거쳐서 다른 상위 사업자(B)에게 접속하는 경우, C사업자는 B사업자에게 직접접속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더 유리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 (○○○) 트래픽이 많지 않으면 직접접속보다 중계접속이 더 저렴할 수 있음.
 - 지역연동사업자들은 접속회선료라는 명목의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데, 접속회선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면 직접 연동함
- o (△△△) 상호접속제도가 기간통신사업자간 유지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0년 이용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외되었음에도 여전히 상호접속제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CP가 이 범위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결정이 어려운 것인지 궁금함
 - (□□□) 도매요금 적용받기 위해서는 접속사업자로서의 접속이중화 같은 의무가 일정부분 부여되며, 이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접속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음
 - 이러한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제도화 당시 기간통신사업자 간에만 적용하기로 함
- o (○○○) CP입장에서는 ISP 3사에 모두 연동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가?

- (△△△) 대형 CP는 3사 모두에게 연동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중소 CP는 보통 한 개 사업자에 연동하기도 하는데, ISP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3사 연동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
- ISP 입장에서는 CP 유치에 대해 직접접속과 중계접속시 트래픽량에 따른 접속료 수익을 비교하게 됨
- o (□□□) 지금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가?
 - (○○○) 트래픽량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면서 중소-대형 CP간 요금 격차가 존재함
 - 또 다른 문제는 하위 사업자가 상위 계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시장 경쟁화에 대한 고민 존재
- o (△△△) 국내 사업자도 해외로 서버를 이전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가?
 - (□□□) 비용측면에서는 유인이 있을 수 있으나, 속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하고,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선택이 어려움
- o (○○○) 상호접속제도는 국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러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지?
 - (△△△)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경우가 없음
 - (□□□) 다른 나라에서는 상호접속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해외 대형 CP와 국내 CP간 이용대가 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국제적으로 상호접속제도가 도입된다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을 듯함
- o (○○○) 현재의 정산방식이 A에서 B로 데이터를 주면서 요금도 같이 지불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은?
 - (△△△) 인터넷은 양면시장이라 발신자와 착신자 구분이 불분명한데, 이 제도의 특징은 트래픽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CP도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 것임
- o (□□□) '16년도 개선이후 상호접속제도는 결과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기존 ISP들의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하위 ISP는 일방적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정 경쟁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ISP간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함
 -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독특한 정산방식으로 인해 해외 IX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서 해외 사업자는 캐시서버를 두게 됨
 - 이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가 정산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을 통신사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 o (○○○) '16년 제도 개선으로 인해 오히려 CP 유치 시 ISP간 경쟁이 개선된 점도 있음
 - 과거 상위와 상위간 무정산, 상위와 하위간에도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구조에서 상위 사업자인 A는 하위 사업자인 C와 달리 한계비용 없이 CP 유치가 가능하였음
 -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 상위 사업자인 A 사업자 역시 CP 유치 시 한계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ISP간 CP 유치 비용 격차가 감소함
 - 다만 제도 개선 이후 하위 사업자인 C가 A사업자에게 주는 비용이 커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 두 번째 문제인 캐시서버에 관련하여 해외 CP뿐만 아니라 통신사 입장에서 국제로 나가는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캐시서버 설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o (△△△) 해외에서의 상위와 하위 계위간 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 자율적인 거래 관계이지만 정산 방식은 국내와 비슷하며, 정산료는 공개되지 않아 비교가 어려움
- o (○○○) 국내에서는 구글을 CP로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 구글은 자기망으로 통신사와 피어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ISP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그래서 구글 측에서는 망 투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함
 - (□□□) 미국은 땅이 넓고 여건이 다르므로 우리나라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 o (○○○) 트래픽 정산방식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접속정산방식 개선 시 용량에서 트래픽 기준으로 변경한 이유가 궁금함
 - (△△△)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임
 -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면 투자비용이 늘어나는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정체되고 CP이용대가는 낮아지는 상황에서 비용 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해소하려고 함
- o (□□□) 트래픽량이 많은 대형 CP를 유치하는 것이 아닌 한 ISP 한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CP에게 이용대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중소 CP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됨
 - (○○○) 트래픽량이 많지 않은 중소 CP들을 위해 일정부분 무정산 구간과 같은 안전기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중소 CP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호접속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 중
- o (△△△) 이상우 박사님이 오늘 설명해주신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는 우리 협의회에서 다룰 안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망이용대가 등 관련 논의를 위한 참고적인 정보제공으로 이해하고 있음
- o (□□□) 망중립성에 대해서 위원들간 의견을 정리해주셨으면 함
 - 발표 내용 중 다양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안이 좋은지 의견을 정리해서 KISDI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람
- o (○○○)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규제 수준 등에 따라 3~4 단계의 정책방향(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KISDI에 제출했으면 함
 - KISDI에서 제출된 위원들 의견을 정리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을 제안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2소위원회 4차 회의는 6월 26일(화) 2시부터 개최될 예정
- o 차기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의견 정리를 위해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망 이용료와 관련된 발제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o 망 중립성 관련 정책방향(안)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

3-3-4. 제4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6. 26.(화) 14:00~17: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단국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국장,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박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방향 (발표: 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 스타트업 포럼은 400여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망 이용요금) 망 공공성에 의한 정책을 수립하여 요금 부담을 해소할 필요 존재
 - 망 이용요금은 협상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적정성 평가가 어려움
 - 해외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망사용료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통신사 상호매출이 급증하는 반면 CP와 CDN에 대한 비용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게는 불리한 환경으로 상당수 스타트업이 AWS를 옮겨가고 있음
 - 초고속 인터넷이 기간통신역무이고, 통신 3사의 과점체제라 시장자율보다는 적정이윤 보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중소 CP를 우대하는 역진적인 가격정책 도입 검토 필요
- (제로레이팅) CP의 접근 제한성,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활성화보다 감시 필요
 - 데이터 비용이 높아서 CP의 접근이 제한되며, 주로 통신사 또는 대형 CP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CP가 부담하는 비용이 원가를 상승시키므로 통신비가 절감될 수 없음

- 동등조건을 가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스타트업은 활용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의 지배력 전이가 우려됨
- 해외에서도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금지보다는 엄격한 감시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차단해야 함
- 또한 스타트업에 대해 통신사가 제로레이팅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망 이용요금 하락을 통한 보편적 정책 지원이 타당함
- o (망중립성) 망중립성 완화시 생태계 왜곡 등이 우려되므로 망중립성 강화 및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필요
 - 통신사는 CP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망중립성 완화로 FastTrack이 허용되면 통신사 영향력 편중으로 인한 생태계 왜곡, 통신사 중심의 콘텐츠 서비스 집중화, 스타트업 성장 저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네트워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FastTrack과 같은 차별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가 필요함
 - 현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하에서도 통신사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
- o 통신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이익을 모두 공유할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 활성화에 모두 힘써주시기를 바랍

◇ 망중립성/제로레이팅/망이용료 관련 중소CP 입장 (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o 망중립성 규제 완화가 망이용료 차별 해결책이 아니며, Fast lane을 허용하면 통신사가 CP에게서 돈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o 통신사 자사 제로레이팅은 경쟁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며,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비용이 커서 중소CP가 선택하기가 어려움
 - 제로레이팅은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혁신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문제임
- o 공통적으로 망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며, 망이용료는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신사가 비용을 과다하게 측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Global CP의 망이용대가 관련 정책방안 (발표: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 o (개요 및 현황) 글로벌 CP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CP간 차별이 문제되고 있음
 - 국내 CP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를 구축하여 상당한 금액을 ISP에 지불하는 중
 - 반면에 글로벌 CP는 국내 ISP와 직접적인 망이용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며, 지급하는 망대가가 트래픽 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짐
- o (역차별 원인) 글로벌 CP의 우월적인 협상 지위로 인해 국내 ISP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움
 - 국제 망이 열악하여 속도가 제한되면 이용자들의 불만이 ISP에 제기되므로 결국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이 국내 ISP에게 전가되고 있음
 - ISP가 트래픽을 제한하면 망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지므로 대응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 (견해대립) 글로벌 CP도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므로 국내 CP와 동등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외 CP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므로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 대립
- (관련 문제점) 국내외 CP간 역차별로 국내 CP 경쟁력 저하, 글로벌 CP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비용이 국내 CP나 ISP에 전가되므로 무임승차 논란,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야기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 문제 발생
- (국내 사례) 페이스북이 KT가 아닌 해외에서 접속하도록 경로를 변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번 방통위 처분으로 CP에게도 서비스 제공(품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해외 사례) 프랑스 및 미국 사례를 소개함
 - (프랑스) 프랑스 ISP France Telecom(현 Orange)과 미국 ISP Cogent 사는 무정산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Cogent 사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France Telecom이 추가 망 이용대가 지급 요구
 - 규제기관은 France Telecom의 추가 망 이용대가 지급 요구는 반경쟁적 행위가 아니며, Cogent 사가 협정 비율을 초과하는 트래픽 비용을 내도록 함
 - 이외에도 2013년 Orange가 구글이 망 이용대가로 초과 트래픽 비율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린 사례도 있음
 - (미국) Netflix와 콘텐츠 전송계약을 맺은 CDN 사업자인 Level-3가 Comcast 망내 트래픽 정체 유발하여 회선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Netflix와 Comcast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됨
- (시사점) 킬러 콘텐츠 지배력 및 필수성으로 CP 지위가 상승하여 ISP와 CP간 관계가 이용자 관계에서 B2B관계로 전환되고 있음
 -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CP가 망 이용대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망 투자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존재하므로, 최대 수익자인 CP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합리적 망 관리를 허용하므로 대형 CP에 대한 과금이 망중립성 원칙을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ISP와 CP, CP와 이용자 간 적절한 규제 Tool이 미흡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정책방안 제언) ISP, 국내 CP, 글로벌 CP,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여있는 등 복잡한 이슈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의무와 기준을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CP 망 이용대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B2C관계에서도 접근해야 함
 - 인터넷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차별이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규제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 이익 보호를 최종 목표로 해야 함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 (○○○) 가능하면 사업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자 함
 - 최성진 대표 발표에 대해 ISP 사업자 쪽에서 답변 주시고, 장준영 변호사님 발표는 구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최성진 대표님 발표자료 16쪽 슬라이드를 보면 망 이용료가 비싸다는 통계가 있는데, 대형 CP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으나 중소CP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들었음
- (SK텔레콤) 성공적인 4차 혁명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CP 우대 정책이나 낮은 망대가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님
 -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일률적이지 않아 비교가 어려움, 따라서 발표 자료에 있는 통계는 공신력 있는 정보가 아님
 - 망대가 부담으로 인해 AWS로 이동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망대가의 상당부분은 통신사 수익이 아니라 통신사 서버와 CP서버를 이어주는 전용 회선 비용에 해당함
 - 개별 CP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대형 기업에 입점하는 비용이 저렴하므로 시장원리에 의해 AWS 이용을 선택하는 것임
 - 망 이용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식 P 곱하기 Q에서 통신사가 받는 이용대가(P)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트래픽(Q)이 증가하여 비용이 상승함
 - CP는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망 비용 부담이 1.5%라면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CP가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이번 5G 주파수 경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사는 조 단위의 막대한 금액을 네트워크에 투자함
 - 중소 CP는 best-effort 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제로레이팅이나 fast lane은 사업자의 선택 문제에 해당함
 - 동영상 트래픽 중 (SKT 계열사 서비스)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계열사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기 어려움
 - 최성진대표 발표 중 망공공성 정책 발언은 시장자율 경쟁으로 인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통신 시장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임
 - 망을 임의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망 활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보장해달라는 것임
- (□□□) 망 이용대가가 비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 (SK텔레콤)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비교가 어렵고, 다른 사업자가 지불한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공신력 있는 통계가 아님
- (△△△) 중소 CP가 AWS로 옮겨가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 (SK텔레콤) 서버 대가를 낼 필요가 없음, 네트워크 연동을 아웃 소싱하는 것임
 - (○○○) 아마존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가?
 - (SK텔레콤) 그러함

- (네이버) 망 이용대가 지불금액 공개는 망 이용대가 수준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함
 - 지불하는 비용 700억 대에 전기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임
 - 통신사 측에서 설비 투자 분담을 요구하는데, 사업자 영역별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다름, 네이버는 AI나 콘텐츠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최성진 대표님 말씀처럼 망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관련 정책은 중소 CP의 입장이 더 중요함
- (○○○) 이전 회의에서 망 사용료가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 비싼 편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네이버) 망 이용대가가 적정한지 알기 위해서는 원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림
- (□□□)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슈가 섞일 위험이 있음
 - 네이버는 통신사에 직접 접속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함
 - 차별적 서비스, 즉 fast-lane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이 있음
 - 해외 사업자가 한국 망에서 발생한 트래픽에 대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별개의 이슈이며, 이는 네트워크의 정산구조를 부정하는 의미임
 - 국내 사업자에게는 상호접속 대가를 망 이용대가라 칭할 수 있음
 - 이처럼 망 이용료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어서 개념 정리 및 쟁점 분리가 필요함
 - 글로벌 CP의 트래픽 대부분은 캐시서버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private 망에 대한 망중립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
 - 공공정책 차원에서 캐시서버에 대한 비용 분담 방식 등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함
 - 현재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을 CP나 통신사가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를 바라며, 공공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규제해야 함
- (○○○)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의의 문맥에 의해 이해해주시기 바람
- (구글코리아) 장준영 변호사님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CP도 설비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신사도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존재함
 - 캐시 서버는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글로벌 CP의 갑질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바 있음
 - 상호접속고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데 규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CP가 협상력을 무기삼아 계약했다면 이미 방통위의 제재 대상임
 - 통신사 측은 5G가 4차산업혁명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네트워크가 열악한 나라에서 더 발전하고 있음
 - 조 단위 투자비용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구축기간 조절, 기술력 등으로 전국망 설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하므로 세부적인 비용 공개가 우선되어야 함

- 또한 과기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미디어 등에서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신사가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통신사는 CP에게 망고도화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데, 망 부담은 사용자가 유발하는 것이므로 통신사는 이에 대한 통신비를 받고 있음
 - 통신사가 CP의 콘텐츠 개발비를 분담하지 않으면서 역으로 CP에게 망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구글도 통신망 이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음
 - 통신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관리형 서비스로 간주하여 현행 체계에서도 제공이 가능함
 - 미국 망중립성 완화 사례는 인터넷 평균속도가 낮고 지역이 광활하여 통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와 상황이 다르며, 최근에는 주별로 망중립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많은 콘텐츠 개발사들이 구글이나 애플의 앱 마켓으로 이동한 것은 이전에 통신사가 과도한 데이터 요금 및 콘텐츠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임
 - 통신사들의 5G를 위한 망중립성 완화는 CP에게서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망중립성 완화 이전에 망중립성 훼손 및 상호접속제도 공정성을 먼저 논의해야 함
 - 통신사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나 투자비를 먼저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 현황도 과도한 것이 아닌지 실태 조사 필요
- (□□□) 망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도 말씀하셨는데, 투자비 분담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음
- 통신사와 CP가 투자해야 할 영역은 다름
 - 해외에서 들어오는 망의 경우 국내 캐시서버를 통해 들어오는 비용이 국내 사업자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함
 - ♣♣♣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관련 논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해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 통신사는 CP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함
- (SK텔레콤) ♣♣♣님 말씀을 정정하자면 네이버가 ISP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외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정산 비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음
- ♣♣♣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을 전제로 규제하고 있는데, 인터넷 생태계가 고착화되면서 CP의 지배력이 상승하여 협상력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캐시서버로 비용 절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것은 맞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함
 - 그러나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글로벌 CP가 ISP의 경쟁 구조를 이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구글 측에서 통신사의 비용 공개 등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 이용자로서 보호 대상이었던 CP가 거대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CP에게 투자비를 분담하라고 한 적 없으며, 대신 CP는 이용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전가하고 일부분만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드림
 - 트래픽은 늘어났지만 통신사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수익은 CP가 얻고 있음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CP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것임
 -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국내 통신사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이 성립된 배경은 ISP가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ISP가 많으므로 미국과 상황이 다름
- **(카카오)** 최성진 대표님 발제에서의 자료 신빙성을 지적하시는데, 글로벌 CDN은 국가별로 사업하므로 비교한 결과가 유의미함
- 장준영 변호사님의 발표 자료 10페이지에서 합리적 망 관리는 트래픽 폭증과 관련 있으며 대형 CP에 대한 과금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
 - SK텔레콤이 망을 활용해서 적정한 대가를 받기 원한다고 하시는데, 통신사가 어떤 부분에서 망을 활용하고자 하는지 답변 원함
 - 마지막으로 5G 설비의 효용은 CP가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5G 네트워크가 설비된다면 이용자는 CP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통신사에 통신비를 지불하고, CP는 이용자에게 앱을 제공하고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생태계가 꾸러질 것임
 - 즉 생태계 구성원간 상호 공생하며 운영되는 것이지, CP가 일방적으로 효용을 가져가며 기생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음
 - (△△△) 10페이지 하단 내용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ISP-CP간 협력 모델 관점에서 고민한 방안 중 하나이며, 망 이용대가는 서로 간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과금을 강제할 수는 없음
 - **(SK텔레콤)** 획일적인 망중립성으로 인해 상품 기획단계에서 제약이 발생함
 - 관리형 서비스에서 전용 회선과 유사한 B2B 모델을 고민 중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델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함
 - 트래픽 유발이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통신사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망을 조금 차등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 바람
- **(KT)** 일반적으로 법이나 제도는 약자나 공정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망중립성 제정 초기 네트워크 사업자의 개방성 침해 방지가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CP지위가 상승하여 예전과 다르게 봐야 함
 - 망 이용요금에 대한 분담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CP에게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CP에게 부과하자는 것임

- 제로레이팅의 경우 불공정 경쟁 감시를 말씀하셨는데, 100기가나 무제한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출시되어 제로레이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적음, 제로레이팅에 대한 사후 규제는 동의함
-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망 차단이나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한데, 현행 망중립성 제도 하에서는 획일적인 원칙을 강요하여 이에 대응하기 어려움
- o (LGU+) 네트워크는 공공자본이 투입된 SOC와 다르다고 생각함
 - 지지난주에 주파수 경매가 끝났는데, 기존 LTE보다 투자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감안 필요
 - 사업자들이 해외 CP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글로벌 CP가 주도권을 지님
 -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전제해야 함
- o (네이버) CP의 영향력 상승으로 규제 여부를 논하는데, 기간통신사업자는 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약이 따르는 것임
 - 부가통신사업자는 망이 없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수가 많으며, 사업 영역도 유동적 이므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함
- o (OOO) 통신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규제 접근법이며, 다만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음
 - 오늘 중소 CP입장, 통신사 반론, 글로벌 CP 반론을 충분히 들었음. 시간 제약 상 여기서 사업자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겠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토의)

- o (△△△) 망중립성 정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특정 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려고 함
- o (□□□) 망중립성 정책 4안에서 fast lane이 관리형 서비스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best-effort 망에서의 fast lane을 의미하는지 궁금함
 -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면 3안 및 4안은 2안에 포함될 수 있음
- o (OOO) 2안은 현재 가이드라인 해석상 관리형 서비스가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3안은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방안임
- o (△△△) 결국 3안은 2안과 비슷하지만, 관리형 서비스 개념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임
 - 그러나 명확성이 관리형 서비스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도 있음
- o (□□□) 현행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관리형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관리형 서비스 개념이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지?
 - (OOO) 통신사측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서비스가 관리형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명확하게 해달라는 의미임

- 현재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QoS를 보장해주는 일반적인 개념만 존재하는데, 3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면 관리형 서비스가 지금보다 협소하게 될 우려가 있음
- o (△△△) 4안의 경우 통신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차별금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 IPTV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다른 서비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 o (□□□) 4안에서 통신사가 5G도입을 전제로 fast lane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CP는 best effort 망에서 fast lane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 ISP가 굳이 5G에서 fast lane을 언급한 이유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기존 망에서 인정되는 best effort 망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함
 -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충분히 제공가능한데 fast lane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o (○○○) 5G에서의 fast lane이 가능하다는 것은 (관리형 서비스들과는 별도로) best effort 망의 프리미엄 슬라이스와 보통 슬라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임
 - (△△△) 그렇다면 4안은 2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o (□□□) 통신사는 처음부터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였는데 관리형 서비스에만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4안은 관리형 서비스라기보다 단지 공중망에서 더 빠른 전송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므로 현행 망중립성에 위배됨
 - 논의가 더 진행되기에 앞서 이러한 의견 수렴 취지를 알고자 함
- o (○○○) 개별 위원의 의견 분포 확인 및 대안별 장단점에 대한 코멘트를 얻기 위한 것임
 - 정책 대안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며 이 자리에서 각 안에 표결하자는 것은 아님
- o (△△△) 3안에서 의료 등 분야에서의 기술적 차별 대우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함
 - 차별적 망이 아님에도 일부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o (□□□) 모든 소위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 의제가 통신사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듭
 - 모두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망중립성 규제 완화 여부 등은 통신사 수익 모델 다각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 득이 되는 이슈는 많지 않다고 느낌
 - 지금 정립된 정책 방안에서 망중립성도 규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통신사업장에서는 규제일 수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본 원칙이나 권리가 될 수 있음
 - 이용자는 보다 투명한 이용환경을 바라며, 정책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함, 투명하게 어떤 근거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주장하는지 얘기해주셨으면 함

- (○○○) 어떤 경우이든지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는 측이 있고, 새로운 정책으로 유리해지는 측이 존재함
 - 구조적으로 CP에게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의도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전체 통신생태계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임
 - 상대방의 주장에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기보다 전문가 그룹은 서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정책 자체에 집중하여 판단해주셨으면 함
- (△△△)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함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술적인 측면 이외에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망 이용대가 적정성은 요금의 부당성, ISP 경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며, 정부의 요금 정책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함
 - 이 부분을 망중립성과 결부시키면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음
 - 투명성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ISP나 CP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지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 (□□□) 개념이 불안정하고 이 논의가 무엇을 도출하고자 하는지 모호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음
 - 지금과 같이 다자간 이해관계에서는 규제보다 정책(policy)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이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 변화와 함께 망중립성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3안과 4안은 현행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하되 관리형 서비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임
 - 2안의 경우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예측하지 못하므로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는 원칙을 제언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경쟁구조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 4안은 지금 망중립성 정책과 위배됨
 - 제로레이팅은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재편, 공공와이파이 확장으로 효용이 줄어들어 과급력이 미미할 것이며,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음
 -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로레이팅은 다양한 서비스 진화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허용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야 함
 - 제로레이팅 허용시 배타적이면 안되고 동종 업계 기업에 대해 동등 조건 부여, 통신사가 수직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배타적 제로레이팅 허용 여부도 동영상 서비스와 같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허용 우선 순위를 예측할 수 있음
- (○○○)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배타적이지 않고 조건을 동등하게 적용하며,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 등 CP들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 규제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규제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여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책이 규제를 통해 실현되므로 용어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o (△△△) 망 이용대가에 대해 CP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지난번에 접속료 발표할 때 자세하게 들었는데, 역차별이 상호접속고시제도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함
 - 해외 사례를 보면 무정산관계에서 트래픽 불균형 발생시 비용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캐시서버도 트래픽 균형이 무너지면 재협상 논의가 필요함
 - 우리는 고시정책을 배제하면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시 제도를 해외사업자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 o (□□□) 중소 CP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 o (○○○) ♡♡♡ 입장은 망중립성 정책에 관해 1안과 2안으로,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5G 도입 여부가 망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큰 변화를 야기하는지 의문이며, 현 상황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5G를 위한 근본적인 요건이 될 수 없어서 통신사의 망중립성 완화 주장은 부적절함
 - 해외 사례로 미국의 망중립성 완화를 언급하는데, 미국은 주별로 망중립성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망사업자가 그 위 층(layer)에 있는 CP와 이용자에게 영향력을 전이하고 CP가 망에서 얻는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망중립성 완화 논의와는 차원이 다름
 - 모든 제로레이팅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만약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을 허용해야 한다면 경쟁CP에게 원가 이하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우리나라 통신사는 시장지배적이라 사후적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야 하며, 배타적 제로레이팅도 사안별 사후규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 o (△△△) 5G가 아직 어떻게 실제 구현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5G 도입에 맞추어 망중립성 개념을 수정한다기보다는, 5G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상황이 인터넷 환경과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관리형 서비스가 IPTV와 VoLTE만 존재하고 5G 사업에 대한 구상이 막연한 상황에서 통신사들은 망중립성이 사업 추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으려 함
 - 관리형 서비스 출시할 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선언적인 조치가 필요함
 - 망중립성 규제하에서는 이용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로 나타나 있음

-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양면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유료방송, 신용카드 시장 등에서는 네트워크 이용 사업자들이 돈을 지불하여 이용자들이 훨씬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오늘 회의에서 망이용대가로 언급된 전용회선/IDC 비용, 상호접속료 등은 개별협상의 영역으로 엄밀히는 망중립성 논의에서 의미하는 망이용대가는 아니며, 망중립성과 관련된 망 이용대가 이슈는 last mile에서 CP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사실임
- 협상력 차이로 인해 글로벌 CP가 지불하지 않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넓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IS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봄
- o (□□□) 글로벌 CP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받을 수 없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으로 인해 ISP의 협상력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함
- o (○○○) ♡♡♡님이 last mile에서는 CP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SKT에 의하면 상호접속 비용에는 몇 단계를 거쳐 해외에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함
 - 상호접속 계약 방식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미 인터넷의 요금체계가 상호접속에 의해 상위 네트워크와 연결된 하위 네트워크의 비용이 전가되는 방식임
 - 그러므로 CP가 last mile 비용에 대해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은 부적절함
- o (△△△) 상호접속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힘을 가진 사업자들 간) 협상의 영역이므로 모든 비용이 적절히 정산,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망중립성이 협상력의 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음
 - (□□□) 극단적으로 망중립성이 없다면 통신사가 망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여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듯함
- o (○○○) ♡♡♡님 말씀은 망중립성으로 인해 통신사의 협상력이 낮아져서 해외 사업자에게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협상력의 문제라기 보다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많이 몰려서 페이스북의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임
 - (△△△) 페이스북 사건은 협상력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방통위가 제재하여 ISP의 협상력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협상에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므로 망중립성만으로 협상력이 달라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 발신자 비용부담으로 정산체계가 명확한 통신상호접속과 달리 인터넷 상호접속은 협상력 차이에 의해 비용 부담이 결정됨. 망중립성은 ISP의 last mile 망에 대한 제어권한을 빼어서 망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상호접속에서도 협상력 차이를 발생시켜 접속료의 형태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움
- o (○○○) 오늘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오히려 협상력이 전혀 없어서 착취를 당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3안은 정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므로 망중립성에 위배됨
 - 당장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와 같이 트래픽 성질에 따라 차별하는 것도 망중립성 차별에 해당함
- o (△△△) 작년 7월 불합리한 차별 고시를 마련한 이상 정부의 정책방향은 5안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함

- 5G는 last mile에 광대역 통합 망이 생겼다는 것인데 기존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o (□□□) 현재 상황에서 단일 안을 선택하는 것은 무리이며, 다양한 안의 논리가 타당한지 정리할 계획임
- 5G 도입으로 인해 망중립성 정책 변경 여부가 쟁점이며, 각각의 찬반 내용이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망 이용대가는 내부적으로 과기부의 상호접속을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
- o (○○○) 이 시기는 성장기라 볼 수 있으므로 규제보다는 장려책을 적용하고, 좀 더 살펴본 후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o (△△△) 층위별로 규제 강도가 다양한 복잡한 사안이므로 적절한 조화 필요
- 대원칙은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동의함
- 5G 도입에 따라 네트워크 활용 범위가 커지는데, 망 속도나 품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방지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오늘 구두 의견을 키워드 중심 개조식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람
- 상호접속료 및 망 이용료는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며, 상생발전도 함께 다룰 예정임
- 다음 회의는 7월 23일(월)에 개최될 예정
- o (□□□) 다음 주제가 중소 CP 지원 상생발전인데, 위원분들 중 한 분이 발제를 해주시기 바람
- (○○○) 위원보다는 실제 당사자인 중소 CP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함
- (△△△)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께 중소 CP 지원 방안을 받는 방안도 있음
- (□□□) 대기업에서 상생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므로, 그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2소위원회 5차 회의는 7월 23일(월) 2시에 개최될 예정
- o 차기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상호접속료 및 망 이용료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들과 사업자간 중소 CP지원 및 상생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중소 CP측에서 바라는 지원 방안 및 대기업(통신사, 대형CP 등)의 상생협력 사업과 관련된 발제 및 논의

3-3-5. 제5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7. 23.(월) 14:00~17: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단국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성균관대 송명빈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국장,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진보네트워킹 오병일 활동가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박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 중소 CP,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발표: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 (SKT) 중년 및 청년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Barvo Restart'는 '13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Biz 모델 검증, R&D, 자금, 인프라, 마케팅 등 지원
 - 'Dream Venture Star'는 '14년부터 정부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여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
 - '101 스타트업 코리아'는 YT 중심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 노하우 제공 및 국내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True Innovation'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혁신 창출 및 Biz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
 - 이외에도 동반성장 펀드, T developers 등을 통해 금융, 교육, 기술, 인력 등에 대한 동반성장 정책 시행 중
 - (KT) KT와의 사업화 연계 지원,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KT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 운영
 - KT의 'Biz Collaboration'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R/VR, AI, IoT 등 4차산업 관련 KT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함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인 K-Champ 육성 기업 중 우수 기업을 후속 지원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도모
- 창업 1년 이내 초기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집중 육성 프로그램인 'Biz Challenge'와 시장 진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보유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판매 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Biz Growth Marketing' 프로그램 운영
- KT의 미 활용 특허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무상 양도하여 기술경쟁력 강화('11년~'17년까지 누적 293건)
- **(LGU+)** 스타트업 CEO 간담회 주최, 언론 홍보 기회 제공, 스타트업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직간접 투자 진행
 - 매월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당사 사업부와의 협력 및 투자기회 제공
 - 해외통신사, 스타트업 육성기관, 정부기관과의 공동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관계자들 대상 발표 및 언론 홍보 기회 제공
 - 사업에 필요시 스타트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진행하며, 간접투자는 펀드 출자로 진행함
- **(네이버)** 크게 R&D 투자로 산업의 전반적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술스타트업, 창작자 지원, 중소상공인 성장기반 마련,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 매출액 비중의 약 4%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D2 Startup Factory를 통해 AR, VR 등 네이버와 접점이 있는 20여개 스타트업 지원 중
 - 직접 지분 투자, 인프라 제공, 네이버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스타트업 인수 성공사례도 있음
 - 그 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지원 프로그램, 스포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로젝트 '꽃' 등 운영 중
- **(카카오)**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전문 벤처 캐피탈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생 협력 지원
 -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유망한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카카오의 서비스에 연동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내 벤처를 장려하고 분사를 지원함
 - 큰 기업이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 혁신에 도전하는 것을 촉진하여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울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 M&A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플랫폼 특성을 활용하여 스토리 펀딩, 가내수공업 등을 비롯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메이커스 워드 카카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수많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파트너스 워드 카카오 잡지 발간
- **(페이스북)** 선도 기술과 관련하여 플랫폼 특성을 살려서 중소상공인 지원
 - 올해 판교 벤처 밸리에 연간 최소 2천여 명의 개발자에게 교육 및 3천여 명에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이노베이션 랩을 오픈함
 - 과기정통부와 함께 AR/VR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실리콘밸리에 6주간 머무르며 기술 지원 등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국내 개발자를 위한 네트워킹 커뮤니티인 Developer Circle, 국내 앱개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FBStart 운영
- 국내 중소기업,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능력 증진 교육 지원
- o (구글) 개발자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게임산업 발전 지원 등
 - 삼성역 600평 공간에 입주사를 선정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점은 구글 Play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인디 개발자들이 별도 비용 없이 해외진출 가능함
 -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의 고용을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
 - 30개 입주사가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참여한 창업자 수가 만 오천 명, 전체 멤버가 3만 명이 넘음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영세한 게임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스타트업 상생 방안(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o 스타트업 포럼 측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신사 및 대형CP에게 원하는 상생방안을 제출함
 - 통신 3사에게 망이용대가 및 소매요금과 관련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저렴한 전용 요금제 신설, 엡지 컴퓨팅 시장을 위한 API 등 공개, 스마트폰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한 핀테크 연계 중금리 상품 개발 제언
 - 대형 CP에게는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다양한 API 제공, 광고 요금 경감을 위한 키워드 광고 가격 상한제 실시, 마케팅 비용 지원, 홍보 채널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 o (○○○)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스타트업 포럼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요금제 신설을 요구했는데, 통신사 측은 이러한 제안을 알고 있었는지?
 - (KT)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적은 처음이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사내 공론화가 필요함. KT도 통신사 인프라를 통한 상생에 공감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해 API 개방에 동참하고 있음. 엡지 컴퓨터 관련 API는 '14년부터 도이치 텔레콤 모델을 반영하여 개방함
 - (□□□) 이미 API를 개방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구는 홍보 부족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API 개방 확대를 원하는 것인가?
 - (KT) 홍보 부족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음
 - (SK텔레콤) SKT는 T developer라는 홈페이지에서 API 공개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LGU+) LGU+ 역시 대전 연구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중에 있음.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 o (○○○) 사업자들의 발표 내용은 사회공헌과 관련이 있으며, 의제인 상생협력 방안과는 논점이 다름

- 상생협력 지원 현황 소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의제가 필요함
- 망중립성도 정책적으로 본다면 상생협력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함
- o (△△△) API 공개는 상생협력을 위한 최우선 방법이 아닐 수 있음
 - 기술규격을 공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발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창업자의 기술규격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기술 규격 변경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API 오픈 확대보다는 제품을 구매해주는 것이 좀 더 상생협력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 o (□□□) 중소 CP가 대형 CP에 바라는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형 CP 측 의견을 듣고자 함
- o (카카오)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과 소통하며 요구사항을 듣고 있음
 - 제품을 구매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스타트업 M&A를 포함
- o (네이버) ♡♡♡님 말씀처럼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에 의문이 듦
 -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수탈한다는 구조, 지금은 시혜를 베푸는 쪽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스타트업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물론 귀담아 들을 내용이지만, 새로운 의견이 아니며 이전부터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과제임
 -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각 사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임
- o (□□□) 카카오 측에서 M&A를 말씀하셨는데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 CP가 인수하는 방안보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대형CP의 선택을 받은 앱은 성장하겠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앱은 경쟁이 불리할 것임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것처럼 대형 CP가 어느 분야까지 인수하고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부는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o (카카오)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M&A 활성화는 실제 스타트업 측에서도 원하는 바 중 하나임
 - 혁신 및 창업을 이루는 중요한 동기가 바로 대기업에 의한 M&A임
 -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이외에 M&A 활성화 역시 시장성 및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 o (△△△)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상생협력이라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중소기업 측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진입 후에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함
 - 경쟁을 활성화하는 제도 및 구조, 공정한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야 함
- o (□□□) ♡♡♡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 상생을 위해서는 창업자가 키운 회사를 큰 회사에 매각하는 것보다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 상생협력을 위한 M&A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할 것이며, 긍정적인 역할이 일부 잘못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 상생협력은 상당부분 법제화되어 이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부분임
 - 오늘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에서 제출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기 바람
- (□□□)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 ☹☹☹, ◇◇◇은 협의회 운영에 관해, 그리고 협의회 관련 기사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다음을 제안드립니다
 - 상생협의회가 진행 중인데,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사가 보도됨
 - 전자신문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하였으나, 회의록을 읽어보면 정책방향에 대해 위원 간 의견차이가 존재함
 - 5G로 인해 망중립성 정책이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분명히 반대하였으며, 망중립성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 간 이견 존재
 - 관리형 서비스 허용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망사업자 및 일부 위원에 대한 의견이 주요 의견으로 보도됨
 - 아직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면 방통위가 정정했어야 함
 - 시민단체는 협의회 논의 주제가 망사업자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 방향이 미리 정해진 것인지 의심스러움
 - 모두 합의한 사항만이 협의회 의견으로 보도되어야 하며,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도출되는 것은 부적절함
 - 앞으로는 논의 중인 사항은 상생협의회 의견으로 보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된다면 방통위가 정정해야 함
- (○○○) 방통위는 시민단체의 공문을 받으셨는지?
 - (△△△) 유선 상으로 방통위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 기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들었음
- (□□□) 전자신문 기사가 회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면서 협의가 아닌 공감대 형성으로 표현하여 정정 요청이 어려움
 -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기사가 어떠한 취지로 이 기사를 작성했는지 알 수 없음
 - 많은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다보니 회의 내용이 유출되었을 수 있음
 -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사항은 방통위 권한이 아니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기자들에게 내용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사를 차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것은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함
 -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납득하고 있으나, 협의회 방향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님

- 위원님들이 모두 합의하는 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논의한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 (○○○) 상생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투명한 운영을 말씀드립니다
 - 논의 내용이 기사화될 수는 있으나, 내용이 왜곡되었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기사가 확정적으로 정해졌다고 보도한 것은 아니나, 5G에서는 관리형 서비스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식으로 작성되어 문제제기를 함
 - 방통위가 정정보도를 낼 수 없다면 어디서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함
- (△△△) 관리형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의한 적이 없음
 -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관리형서비스에 대해서 필요성과 제공방식을 공감했다는 기사 내용은 잘못됨
- (□□□) 시민단체의 우려 사항은 잘 알고 있으니 검토해보겠음
 - 많은 기사들에 대해 매번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
 - 협의회 최종 의견을 제시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
 - 협의회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속기록을 공개하거나 또는 회의 내용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함
- (○○○) 앞으로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만이 협의회 공식적인 의견이 되어야 함
 - 기사가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정정을 요구하기 어려움
 -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 의견을 전달하는 곳이므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절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님들이 부담스럽다면 회의록의 성명을 가린 채로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함
- (△△△)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국회 제출 시에는 논의내용만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안도 있음
 -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견을 나열하자는 취지인 것인가?
- (□□□)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협의회 결론으로 제시하면 안 됨
 - 정책 결정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방어하기 쉽고, 어떤 의견이 다수였는지 밝혀진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음
 - 결론 도출이 이상적이지만, 관련된 입장이 참여한 상황에서 일부러 합의를 위해 다수 의견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음
- (○○○)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사항이 있다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합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서술하면 됨

- 회의록 공개원칙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도 가능함
- o (□□□) 상생협의체의 역할과 위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문에 가까움
 -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정책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는 곳임
 - 모든 위원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의 분포를 살펴보자는 것
 - 이 과정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의견의 다수 여부를 없애는 것은 부적절함
 -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이를 통해 다수의 제3자들이 각자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신문 기사는 취재원이 언급되지 않아 잘못된 보도이므로 방통위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보도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행위주체가 분명해야 하는데, 협의체는 국가기관이라 언론중재법으로는 실익이 없을 듯함
 - 오히려 후속보도를 요구하거나 기사 자체를 수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신문사 측과 소통해보시기 바람
- o (네이버) 기사 내용에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 의견에 동의함
 -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관리형 서비스와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 내부에서 반론이 있었음에도 다수 의견인 것처럼 작성된 내용이 협의회 이름으로 보도되어서는 안 됨
- o (△△△) 기자가 '알려졌다'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한 방식임
- o (□□□) 방통위보다는 시민 단체가 공문 내용을 전자신문에 보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음
- o (○○○) 방통위는 공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주시기 바람
- o (△△△) 우리 소위원회의 최종 결과물과 관련해서는, 만약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면, 그동안의 회의 내용 자체를 요약하여 위원들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방법을 제안함
- o (□□□) 견해 1과 견해2, 그 외 기타 의견들로 요약하면 될 듯하며, 시간 제약상 망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을 듣고자 함
- o (KT) 망 이용대가는 상호접속과 같은 규제가 연관되어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
 - 사업자는 CP와 요금을 협상할 수 있으나, ISP와 ISP간은 망 상호접속과 관련이 있어 사업자가 관여하기 어려움
 - ISP는 이용자 품질을 담보로 하는 글로벌 CP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글로벌 CP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시도했으나, 글로벌 정책이므로 한국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러한 선례가 있으므로 넷플릭스 역시 유사한 조건을 통신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통신사 속도를 공개하여 CP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려움

- 사업자간 협상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상호접속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o (△△△) 통신사 측의 주장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듣고자 함
- o (구글코리아) 이용자 관점에서 얘기하시는데, CP도 이용자 필요에 의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상호접속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며, 망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 같은 환경이 공정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통신사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 및 5G 투자 비용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과도하게 사용하는지 실태파악 후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음
- o (카카오) 망이용대가와 글로벌 CP와의 역차별이 중요한 이슈임
 - 10년 전에는 국내 동영상 서비스인 판도라, 다음 TV 팟 등 여러 플레이어들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국내 사업자들의 피해가 방치되면서 유튜브가 시장을 장악함
 - 서버의 동시접속자 수에 따라 망이용代가는 수십억에 이르는 투자 결정이 필요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이러한 고민과 투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망 이용代가 문제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상호접속고시로 인한 것이라면 제도를 없애야 하고, 법적 제도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함
 - 정부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토의)

- o (△△△) 망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사업자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임
 - 사업자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려고 함
 -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장 정리가 필요함
 -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은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성명은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과 익명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요약본만 공개하자는 의견 존재함.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o (□□□) 시민단체들은 회의록 공개는 찬성하지만, 앞서 언급한 기사처럼 특정 의견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o (○○○) 회의록 공개의 목적이 국정감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시보고를 위한 것인가?
 - (△△△) 기자들에게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주기 위한 것임
 - (□□□)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
 - (○○○) 회의록 공개에 동의함
- o (△△△) 의견서가 아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는 동의하며, 현재 비공개로 정하더라도 나중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

- (□□□) 국회에서 요청시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면 성명 공개에도 동의할 수 있음
- (○○○)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으나 오히려 전문공개는 해석에 따라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약이 필요함
- (△△△) 방통위가 요약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오히려 이로 인해 방통위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
 - 발언 순서로 인해 방향이나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발언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하고 의견을 그룹핑 해서 보여주는 것을 제안함
- (□□□) ♣♣♣님 제안도 좋은 방법이며, 다만 우려는 방통위가 편집을 하면 방통위가 편집한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이의제기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록 전체 공개는 동의하지만, 다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반대함
 - 위원들의 각 관심분야나 전문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위원들의 각 의견을 요약하여 공개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회의 내용을 바로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 보는 사람 편의를 위해 요약본이 있으면 좋고, 올리기 전에는 위원들이 발언 내용 검토를 위해 전체 회람을 해야 함
 -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의견을 막을 수는 없음
- (□□□) 요약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회의록의 비공개를 주장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음
 - 발언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하되, 전체 회의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위원들이 발언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듯함
 - 관련 주제에 대해 다수 의견이나, 소수의견이나는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음
 - 단순히 몇 사람이 지지했다는 사실보다 논리의 정당성을 토대로 의견에 대한 지적 및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 대부분의 견해에 따라 회의록 내용 전체를 공개하되 성명은 비공개로 하며, 익명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성명에 고유번호는 주지 않아야 함
- (○○○) 망이용대가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람
 - 다음 회의에서 CP와 ISP 양측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출하신 의견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 각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은 700억대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일부 글로벌 CP는 캐시서버를 설치하여 망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함
 - 정보 접근권 한계로 인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방통위에서 가능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위원들에게 제공해주시기 바람
- (□□□)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입장 표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음

- (○○○) 글로벌 CP에 대해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망중립성을 적용할 때 글로벌 CP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이용자 중심을 강조하는데, 이용자라 하여 완벽하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함
 - 인터넷 생태계에는 이용자 외 여러 개체군들이 존재하므로, 무조건적인 이용자 중심주의는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망이용대가에 대해서는 각 사의 입장이 다르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움
 - 망이용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의 영역이고, 글로벌 CP가 상호접속 주체로서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인정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 다만 통신사업자 협상력이 밀리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가능한 부분을 찾고, 협상과정을 투명화하는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음,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 망중립성과 (상호접속에 따른) 망이용대가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망중립성이 통신사의 협상력이 낮은 원인들 중의 한 요소가 되므로, 망중립성 정책 변화로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미국 인터넷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 상호접속 체계에서 이미 우월적 지위에 있는) 미국이 자국 CP가 전 세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을 주도했기 때문임
- (□□□) 선례가 없으므로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방통위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국민에는 CP도 포함
 - 정책은 안정성을 위해 기본적인 원칙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만 방통위는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야 함
 - 글로벌 CP는 망을 사용한 대가로서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고객 편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 (○○○) 망이용대가 관련하여 사업자들 의견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들었으면 함
 - ISP는 정부에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요구사항을 알 필요가 있음
 - ISP는 정부가 규제하기 원한다면 검증을 위해 실제 비용이나 수익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망이용대가는 국내 인터넷망 상호접속 정책과 연관이 있음
 - CP는 콘텐츠 파워 증가에 따라 광고 수익 등이 증가하였으나, 통신사는 트래픽이 증가함에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
 - 이처럼 글로벌 규범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기존 금지행위를 보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글로벌 CP의 국내 ISP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규제가 필요함

- (△△△) ♡♡♡님은 망이용과 관련하여 금지행위 중 불합리한 차별 행위에 추가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함
- (□□□) 망이용대가와 망중립성을 연관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협상력 차이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임
 - CP를 이용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CP를 B2B 영역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정책 논의가 가능함
 - 특정 글로벌 CP에 대해서 망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망이용대가 논쟁은 망간 상호접속에서 출발함
 - 망간 상호접속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paid peering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paid peering은 품질과 대가를 교환하는 협상의 산물임
 - 국내 상호접속제도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문건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음
 - 근본적으로 글로벌 CP의 망이용대와 관련하여 경쟁 훼손 여부 판단이 필요함
 -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가 캐시서버를 사용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OTT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우위를 획득하여 결합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쟁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를 위해서는 글로벌 CP와 ISP 간 계약 유형이나 수준과 같은 기초적 자료 조사가 필요함
- (△△△) 망이용료는 사업자간 협정이 원칙이나 우리나라 상호접속제도로 인해 간접적으로 해외 사업자는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만 부담하게 되어 경쟁조건 차이가 발생함
 - 국내외 사업자간 망이용대가의 균등화 방안 및 균등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함
- (□□□) 망이용대가에 대해 기술적 방법, 시장구조 변화, 정책 또는 규제 변화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봄
 - 망이용대가는 협상력과 비용의 문제임
 - 협상력이 없어서 사업자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정부가 해저케이블을 확충하거나 라우팅을 중재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전용망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CP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함
 - IX에 대해서는 전화망계의 체계를 인터넷에 적용하면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됨
 - CP는 사물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효과 이용에 대한 대가로 ISP와 수익을 배분할 수도 있을 것임
 - 사업자의 역할을 트래픽 속성으로 구분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음
 - 국제소비자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협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봄

- (○○○)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 살고 있으므로 특정 글로벌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제소될 위험이 있음
 - 그러므로 큰 틀에서 일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방통위는 현저히 시장구조가 왜곡되는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글로벌 CP로부터 망이용대가를 충분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님이 망이용대가를 경쟁제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궁금한 점은 국내외 CP에 대한 망이용대가 역차별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한다면 해외 CP가 아닌 통신사를 규제한다는 것인가?
 - (□□□) 글로벌 CP가 ISP에 대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CP를 규제하자는 의미이며, 다만 그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 위원님들은 망이용대가에 대해 생각을 다시 정리해주시기 바람
 - 방통위는 사업자들에게 전문가 추천을 요구하고, 전자신문 기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주시기 바람
- (△△△) 이 협의회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궁금함
- (□□□) 협의회는 자문기구이므로 하나의 안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 입장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 것임
- (○○○) 결과 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 (△△△)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참고 자료로 이용할 예정
- (□□□)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심의한 후 방통위에 제출함
- (○○○) 소위원회의 결과가 특정 정책에 합리화되는 것이 우려됨
 - 정책보고서 제출시에는 위원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제출하기를 바람
 - 사업자 측에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요청하는 것인가?
 - (△△△) 글로벌 CP에 대해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CP 및 통신사 양측의 전문가로부터 듣기를 원함
- (□□□) 국감에서 네이버가 ISP에게 700억대를 지불하는데 구글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가 해결책을 모색 중임
 - 유튜브는 망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반면 국내 CP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것임
 - 최근 넷플릭스와 LGU+의 제휴가 가시화되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정부에서도 정책 자료가 거의 없어서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제도 시행 이후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할 예정임
 - 방통위에서는 망이용대가라고 표현하지만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각사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정의를 고민해보려고 함

- 사업자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고, 관련 자료가 2~3달 후에 나올 것인데,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기 바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2소위원회 6차 회의는 8월 23일(목) 2시에 개최될 예정(※ 9월 13일(목), 1시로 변경됨)
- 차기 회의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망 이용료에 대해 발표하고, 위원들과 사업자 간 망 이용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3-3-6. 제6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9. 13.(목) 13:00~16:00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단국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국장, 참여연대 김선희 변호사,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SK브로드밴드
 - (방통위) 김재영 국장, 박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 인터넷의 구조와 망중립성: 5G는 망중립성 완화근거인가 강화근거인가?
(발표: 고려대 박경신 교수)
 - (5G에 대한 질문) 재난대비 등을 위한 별도의 고급서비스와 망 내에서의 트래픽 차별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고민해보아야 함
 - 캘리포니아 산불 진압 중 버라이즌이 데이터 상한 도달을 이유로 업무용 4G 망을 스로틀링(throttling)하여 논란 존재
 - (인터넷의 구조) 인터넷 생태계에 연결된 모두가 패킷 전달에 균등하게 참여하므로 원칙적으로 termination fee가 존재할 수 없음
 - 단 라우터 간 패킷 전달을 위한 물리적 연결에 대해서는 상호접속료를 받을 수 있음
 - 망 사업자가 전달 경로 전체를 책임질 수 없으므로, 상호접속료는 얼마나 많이 전달했는가는 무의미하며 얼마나 많이 라우터들과 동시에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함
 - 망사업자가 통제하는 라우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속도 상승을 대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없음
 - (망중립성 역사 및 개요) 미국에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개념으로 망중립성이 등장하였으며, 망중립성은 특수공정거래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1) 발신자 부담의 배달료는 인터넷의 자발적 참여구조에 역행함

- 플랫폼 사업자들의 트래픽은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수/발신자의 트래픽 구분이 불명확하여 망이용료 부담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2) 사업의 민감성을 대분류 유형으로 판단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비효율적이며, 슬라이싱을 적용하지 않아도 긴급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 시간 민감성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같은 망에서도 온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긴급성은 CP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임
 - CP들이 다양한 혁신을 통해 긴급성에 대비하려면 망이 예측 가능한 상태, 즉 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3) 우리나라는 망 시장이 과점이므로 자사 제로레이팅은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음
 - 통신사는 제로레이팅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없으며, 이윤 압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망 이용료 및 상호접속고시의 기형성에 관한 논의 (발표: 최민오 컨설턴트)

- (상호접속 제도 역사) 2000년 초반 전후 각국 통신사들이 민영화되어 독점 폐해 방지 및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상호접속 관련 제도화 및 도입이 진행됨
 - 한국은 2005년 인터넷 망간 상호접속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를 수정 후 2016년부터 시행 중
- (상호접속 제도 주요내용-계위 생성 및 구분) 정부가 표준 인터넷 접속 조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 계위를 평가
 - 평가된 계위는 망사업자의 협상 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계위 기준이 강제적으로 명시되어 기준에 대한 다양성이 저하됨
- (상호접속 제도 주요내용-정산방식) 동일계위 간 직접적속에 대한 정산 방식을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하고 정산기준을 접속용량에서 트래픽 양으로 변경함
 - 개정 논거가 된 무정산 관계 악용 사례는 오히려 상호접속제도의 강제성에서 비롯된 문제였으며, 개정 후 상한요율 합당성 검증 불가능, 발신자 정의 한계 존재 등 문제점이 발생함
- (소결론) 종량제 기반의 발신지지불정책은 공정경쟁 환경 및 인터넷 트래픽 증대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없음
 - 오히려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혼잡성이 증대되는 등 개정 취지에 모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잘못된 개정 부분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투자비 회수 기반을 마련하여 망사업자들이 망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망사업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투자 유도가 합리적임
- (관련 논의 및 현상들) 일부 망중립성 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양면 시장적 정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 없으며, 망사용료 역차별은 상호접속 개정을 근거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하여 발생한 결과임

◇ 망 이용대가 관련 해외사례 (발표: KTOA 나호성 차장)

- o (Orange vs Cogent) Cogent와 OTI는 일정한 트래픽 교환 비율 안에서 무정산을 계약하였으나, Cogent의 CP 고객 중 하나인 Mega Upload로 인해 트래픽 불균형 발생
 - OTI는 Cogent에 트래픽 대가 요구를 거절당한 후 상호접속 구간 용량 증설을 거부함
 - Cogent사는 OTI의 모기업인 Orange를 프랑스 공정위에 지배력 남용행위로 제소하였으나 패소함
- o (Orange vs Google, Netflix) Orange가 망 이용대가 지급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Google 및 Netflix는 자사 서버를 Orange 네트워크와 연동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o (Comcast vs Level3) Level3는 Comcast와 일정 비율 내에서 무정산하는 방식으로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함
 - Netflix는 CDN 사업자를 통해 자사 동영상 서비스를 Comcast 등 ISP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다가 타 국제인터넷백본망 사업자인 Level3와 CDN 계약을 체결하면서 트래픽 불균형 발생
 - Comcast는 Level3에 상호접속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였으나, Level3가 이를 거부하여 상호접속구간 용량 증설을 중단함
 - 양사는 상호접속 협정을 갱신하여 분쟁이 종료되었으며, 협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Level3가 일부 망 용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짐
- o (Google의 망 이용대가 지급) Google 등 미국 주요 CP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ISP와 직접 접속 계약을 체결하고 망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 o (Comcast vs. Netflix) Netflix는 ISP와 무정산 관계인 국제인터넷백본망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거나 자체 CDN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ISP 네트워크와 직접 연동하는 방안 추진
 - 무정산 계약을 맺지 않은 ISP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차별하며 무정산 계약 체결을 압박하였으나, 트래픽 지연 현상이 심화되면서 Comcast를 시작으로 주요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 o (○○○) 망 이용료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우선 의견서를 제출한 SK브로드밴드가 설명해주시기 바람
- o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인데, 인터넷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는 개념이 다를 수 있음
 - 앞서 박 교수님께서서는 전체적으로 광의의 접속료를 말씀하심
 - 망대 망간 연결이 상호접속이며, 망과 가입자, 즉 망 안의 CP들이 해당 ISP의 망을 이용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망 이용료임
 - 2010년 이전에는 트래픽양이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계위가 낮아서 해외 통신사에 접속료를 주면서 해외 CP의 콘텐츠를 받았음
 -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트래픽이 폭증하고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CP가 증가하여 안정적인 트래픽 확보를 위해 국내 또는 아시아 권역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국내 통신사와 연동함

- 국내에 연동하는 방식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함
 - 해외에서 연동하는 방식은 국내 통신사가 해외 케이블을 통해 글로벌 CP의 해외 캐시서버로부터 트래픽을 받아오고 있는데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 국내 CP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반면, 해외 CP는 자사 콘텐츠 경쟁력 및 국내 로컬 사업자 간 경쟁을 이용하여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아 역차별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 초기에 비해 글로벌 CP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용자가 대부분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
 - 유·무선트래픽의 압도적 증가에 비해 유선 트래픽 매출은 하락, 무선트래픽의 매출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CP의 매출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통신시장 전체에서 CP가 지불하는 비용은 2-3천억, 이용자 요금은 30조원 수준으로 CP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의 1% 이내이며, SK브로드밴드는 최근에서야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망 이용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므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CP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글로벌 CP와의 협상 결렬시 해결방안이 없으며 협상이 지연될수록 이용자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여, 국내 통신사는 국제구간 회선 증설 또는 캐시서버 무료 설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음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규정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자간 분쟁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방지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앞서 세 분 발표 및 SK브로드밴드의 서면 의견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SK텔레콤) 박경신 교수님 발표는 금일 논의주제와 무관한 몇 달 전 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함
- 첫째,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의 사건은 FCC가 망중립성과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 데이터 상한 제한은 버라이즌이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가 가입한 요금제의 특성에 따른 것임
 -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네트워크에 기계적인 확실성을 적용하는 대신 재난과 같은 중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QoS를 보장하는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교수님께서 망사업자는 전달경로 전 구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하여 관리형 서비스 제공시 망 내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 셋째, 제로레이팅과 관련하여 HHI를 언급하셨는데, KISDI 자료에 의하면 알뜰폰 제외 시 3,000미만이고 SKT 점유율도 자사 알뜰폰 제외 시 40% 대 수준임
 - KISDI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HHI 수준은 중간이며 지속적으로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FCC는 제로레이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미국 통신사도 자사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이며, 유럽에서도 실제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규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타사서비스와 자사서비스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되어 제로레이팅의 경쟁 제한성 의미가 없다고 보여짐
 -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망 이용대와 관련하여, 글로벌 CP가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힘의 균형 논리가 있으므로 시급한 것은 차별적인 요소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망 이용대가 전체 수준 상승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FCC가 네트워크 시장을 플랫폼 시장으로 언급하였는데 투자비용의 대부분을 이용자에게서만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사업자 간 계약 내용은 비공개이므로 망 이용대가의 근거로 내세우는 한 CDN업체의 블로그 글은 공신력이 없어 보임
- o (△△△) 패킷 전송을 위한 연결(connection)에 대한 이용료는 문제가 아니며, 패킷의 전송 속도에 따라 배달료(termination fee)를 받는 것이 문제임
- 캘리포니아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신사가 소방당국의 망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4G 망에서도 재난 대비가 충분함
 - 버라이즌은 계약서상 공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것임
 - 망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을 때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별도의 fast lane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를 보여주는 사례임
 - 알뜰폰 사업자의 망 이용료는 결국 통신 3사의 수익으로 유입되므로, HHI 계산시 통신 3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함
 - 유사한 사례로 영화시장에서의 HHI 계산시 CGV가 위탁경영하고 있는 스크린도 포함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 어려워 통신 3사의 시장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수직계열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제로레이팅은 망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적용될 수 있음
 - 한 회사의 이익이 동일 그룹 내 다른 회사로 이동하므로 자사 콘텐츠만 살아남는 이윤압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용자가 통신 요금의 99%를 부담하는 반면 CP는 1%만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서는 지금까지 이용자와 CP는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 정산구조를 유지해옴
 - 콘텐츠 업체들에게 해당 망에 접속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용자에게 배달되는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구조에 어긋남
- o (□□□) FCC는 망중립성 폐지를 찬성했으므로 양면시장으로 정의했다는 사실을 망중립성 완화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음

- 클라우드 플레어 업체의 블로그 글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추후에 방통위에서 자료를 받으면 신빙성 여부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 SK브로드밴드가 상호접속과 망 이용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호접속고시가 망 사용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발신자 지불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통신사가 각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인상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함
- o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망 이용대가를 받는 방식에서 사용량 기반과 용량 기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님
 - CP에게 망을 사용량(바이트) 단위로 제공할 경우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고, 유선통신사 입장에서도 사용량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용량(capacity) 기반으로 망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개념이라면 망 사업자가 정당하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함
 - 상호접속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두 통신사간 동등 피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발신 트래픽이 많은 사업자에 과금하며, 우리나라의 상호접속제도 역시 발신 측이 대가를 지불함
 - 통상 망 사용료는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SK브로드밴드에서는 상호접속제도를 이용하여 CP에게 망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o (△△△) 이용자 대 CP가 99대 1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무엇인가?
 - (SK텔레콤) 초고속 및 이동통신에서 이용자로부터의 매출이 30조이며,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대가가 2-3천억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수치를 토대로 비율을 계산함
- o (SK텔레콤) CP 진영에 가까운 두 분이 발제하시고 KTOA 및 SKB에서 객관적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다소 통신사에 불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 듯한데, 망중립성에 대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음
 -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의 사건과 관련하여 버라이즌은 계약 위반이 아니고, 서장이 메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요금제에 대해 지적한 것임
 - 교수님이 스로틀링(throttl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QoS 적용하는 것과 망을 열화시키는 throttling은 차이가 있으며 버라이즌은 throttling을 적용한 적이 없으므로 용어선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HHI 계산 시 알뜰폰 포함 여부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디멘전의 차이임
 - KISDI의 보고서를 보면 국가에 따라 알뜰폰 포함 여부가 다르며, 두 개의 비교표를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이상한 구조가 아님
 - 해외에서도 대부분 3사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 제4이통이 출현한지 오래되지 않았음
 - 우리나라에서 통신사의 지배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구글, 네이버와 같은 CP의 지배력도 논의되고 있음
 - 초기에 CP도 이용자였으나, 이제는 막강한 대형 CP가 나타나 다 같이 보호하기는 어려움
 - end user와 글로벌 CP, 대형 CP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 (△△△) 통신사가 대형 CP에게 용량이 더 큰 회선을 제공하면서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패킷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배달료를 받겠다는 것은 문제임
 - 캘리포니아 화제에서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FCC가 버라이즌에게 허가를 내줄 때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상한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버라이즌이 이를 위반함
- (□□□) 망중립성이 다시 언급되면서 망 이용대가 논의와 혼재되고 있음
- (○○○) 최민오 컨설턴트 및 박경신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 최민오 컨설턴트는 발제문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양면시장적 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하셨는데, 양면시장은 경제학 이론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며 망중립성 문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를 양면시장 모형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Tim Wu의 논문은 (그 제목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CP가 인터넷 시장 초기에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주장함
 -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시장의 혁신성을 위해서 기존과 동일한 망중립성이 필요한가, 이미 크게 성장한 대형 CP들에게도 과연 계속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상호접속제도의 문제가 계속 본 협의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일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상호접속 고시 개정의 배경에는 인터넷 트래픽 흐름의 특징이 크게 변화한 점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
 - 만약 5G에서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을 분리하여 별도의 접속체계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호접속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구조는 10~20년 전에 해당하며,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일방향적 성격은 (박교수님이 인터넷과 다른 것으로 예시를 든) 전기나 수도와 비슷해진 측면이 있음
 - 망중립성을 특수공정거래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 등에서는 담합 이외에는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므로 망중립성을 공정거래법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미국의 제도상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인터넷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망중립성이 만들어졌으므로 법적 성격은 특수한 미국통신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우리나라는 현재 법제도로 제어가 가능하므로 망중립성을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함
 - 자사 제로레이팅의 지배력 전이와 관련하여 언급하신 HHI는 통신사가 타 기업 인수·합병 시 심사기준으로는 적합하나, 인수합병이 아닌 자체적인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함
 -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해당 통신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방통위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음
 - 5G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한 망의 차별, 우선순위 지정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5G에서도 기존의 공중인터넷 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것이고 그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위에 새로운 종류의 관리형 서비스들이 얹혀지는 형태가 된다면 망중립성의 문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됨
- (△△△) 현재 논의된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CP에게 과금하는 것이 효율성이 증대되는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를 증명하는 논문이 나온 바 있음
- 망 이용대가는 망중립성 이슈가 아닌데, 망 중립성 이슈로 언급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망의 효율성 수준이 변하므로 패킷 구분이 불가능하고 발신을 알 수 없다는 특성이 항상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는 기본 개념이 될 수 없음
- 캘리포니아 소방서장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버라이즌과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로 이동하겠다고 하여 버라이즌의 지배력이 독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
- 이 사건은 발생하기 이전부터 소방당국이 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서 망중립성 보다는 서비스의 문제임
- 앞서 두 발제자께서 인터넷을 바라보시는 관점에는 단대단 원칙이 있음
- 인터넷 초창기에는 군사 목적 등을 위해서 이용하여 이러한 원칙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현재 인터넷은 상업적 망으로 이용되어 단대단 원칙이 유지되기 어려움
- 인터넷을 통한 수익성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함께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함
- o (□□□) ♣♣♣님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의견을 듣고자 함
 - 발제문에서 private 네트워크에서는 망중립성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되어 있음
 - 그렇다면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 o (○○○) 우선 Tim Wu 논문에서 언급되는 보조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비유적인 표현에 해당함
 -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전화사업자와 같이 양쪽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반면 인터넷의 구조는 전화사업과 달리 배달료를 받지 않는 구조라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과금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조금에 비유한 것임
 - 실제로 망중립성이 CP의 성장을 지원하는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며, 인터넷 구조상 이러한 보조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임
 - 몇몇 이용자가 더 많은 트래픽을 발신하는 형태로 인터넷 환경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카카오톡,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 서버의 트래픽은 원래 유저 간 소통 및 콘텐츠를 중계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함
 -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망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해외에서 자사 제로레이팅을 대부분 금지하지 않는다고 통신사측에서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사후규제, 경쟁법상 금기시되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FCC의 위원장이 교체되기 직전 보고서에서 AT&T와 Verizon의 자사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함
 - 경쟁법상 평가하는 자사 제로레이팅은 다르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사 변호사 출신을 FCC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특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는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가 서명만 앞두고 있는데, 인터넷 백본이 시작되고 수많은 CP들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망중립성이 입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단대단 원칙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5G 설비 재원 조달을 망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하지 못해 타 사업자들에게 회수하려는 것에서 비롯됨
- o (△△△) 소위원 간 토의도 필요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발언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함
- o (□□□) 마지막으로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다양한 혁신을 통해 긴급성에 대응하려면 망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망 슬라이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임
- 망의 차별화로 인해 다양한 스타트업이 받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통신사가 망을 조정하는 대신 CP들이 시간 민감성이 다른 서비스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선택하여 긴급성에 대응할 수 있음
- 또한 통신사가 슬라이싱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시 가격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음
- 공중망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private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님
- o (○○○) 5G에서도 일반 공중망의 속도, 품질 등을 하향시키는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음
- 다만 현재 망중립성 하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등 중요한 영역에 한하여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관리형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것임
- (△△△) 이전 회의에서 위원들도 5G 하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되더라도 공중망을 훼손하는 서비스는 허용 불가능하다고 동의하였음
- o (구글코리아) 통신사가 불만을 제기해서 본 회의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사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망 사용료를 공개해주시면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음
- 데이터가 비공개인 상태에서는 업계에서 들리는 내용에 의존하여 사용료를 비교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수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망 사용료 분담을 요구한다면 통신사 역시 콘텐츠 플랫폼의 운영비에 대해서도 같이 분담해주시기 바람
- o (○○○) 오늘 발제 및 논의에서 사업자들 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신 듯함. 여기서 1부를 마치겠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토의)

- o (△△△) 지금부터는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함
- 김동민 교수님과 장준영 변호사님은 지난 회의에서 사업자가 발표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셨음
- 이외에 시지온 김미균 대표님이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불참하셔서 ◇◇◇이 대신 설명해 주시겠음

- (□□□)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국내 서버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여 사업자분들께 의견서를 요청 드렸음
 - 시지온에서만 간략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기 바람
 - (○○○) 법안 내용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국내 서버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지난 회의에서 사업자들의 상생협력 현황 발표 및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는데,
 - 협력방안들은 호부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본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대신에 KISDI에서 그동안 제기된 내용을 정리해주시기 바람
 - 남은 시간에는 망 이용료 정책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음
- (□□□)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인 이용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아 아쉬움이 존재함
 - 망 중립성 및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조율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함
 - 과거 지상파/케이블 방송이 시청자에게 지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여 공익성을 통해 이용자의 가치를 엄격하게 보호한 바 있음
 - 이처럼 망중립성 및 망 이용대가에서 이용자 측면에서의 인터넷 가치를 망중립성 초창기와 동일하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페이스북의 사례와 같이 망 이용료 협상과정에서도 이용자 품질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협의체는 방통위가 사후규제기관으로서 금지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사업자간 협정 절차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재작년에 지상파 방송사업자-플랫폼 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후에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로 이용 가능함
 - 망 이용대가, 망중립성 관련 CP-ISP 간 협상문제에서 자율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방통위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CP, 국내 중소 CP, 대형 CP의 망 접속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람
 - 만약 국내 중소 CP에 비해 해외 CP가 망 이용대가를 적게 지불한다면 공정거래 측면에서 불공정함
 - 지난 회의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망 이용료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함

- (△△△) 사업자 간 협의가 비공개이고 개별사안에 따라 사업자 간 입장이 달라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망 이용대와 망중립성 이슈라는 두 주제가 혼재되어 토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망 사용대가 산정의 합리성, 접속 계위에 따른 차별은 이용자의 요금 및 사업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 대가 산정 합리성은 자료근거가 없고, 비차별성의 경우 정부가 주요 통신 사업자를 규율하는 상호접속제도의 범위를 넘어 CP까지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 망 사용대와 관련하여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분쟁조정 플랫폼과 같은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망중립성 논쟁의 시초를 보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서 시작되었는데, 망 이용자인 CP, 라우터와 분쟁이 발생하다보니 최종 이용자가 배제된 측면이 있음
 - 망 이용에서 망중립성의 보편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로 QoS가 있음
 - 방송에서도 보편적 서비스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상파 방송사 주파수는 필수재로 보는 반면 UHD 채널 허가는 부가재로 판단함
 - 5G 환경에서 4G보다 CP나 이용자의 이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차별하지 않는다면 망 이용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QoS 보장 범위와 망 활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하게 규제해달라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함
 - ♡♡♡님 말씀처럼 합리적 해결을 위해 시장에 맡기는 영역과 규제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5G로 넘어가는 전환기이므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존재함
 - 방통위는 산업 및 정책적 입장,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여 정리해주셔야 할 것임
 - 위원들 간 회의록은 공개하고 최종 논의한 것을 보고서 형태로 여러 견해를 정리하되, 전체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기로 동의했음
 - KISDI와 방통위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리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 연말까지 본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겠음
- (□□□) 방통위는 사후규제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형태 등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주시기 바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2소위원회 7차 회의 개최 일시는 미정
- 차기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

3-3-7. 제7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8. 11. 28.(수) 15:00~18:00
- 장소 : 더케이호텔 거문고 A홀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단국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미디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 (소비자)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경실련 권오인 국장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아한형제들, CJ ENM(티빙)
 - (방통위) 박진희 과장

2. 회의록

□ 인사말씀

- (□□□)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3차례 피드백을 받으면서 완성도가 높아졌음
 -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겠음

□ 주제 발표

◇ 2소위 결과보고서안 (발표: KISDI 김현수 박사)

- (추진배경) 첫 번째 동그라미 문구의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 위원분이 제안해주신 대로 수정하였는데, 여전히 해당 문구 삭제 요청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함
- (국민의견수렴) 방통위 홈페이지 배너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건의 내용이 붙임2 및 별도자료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망 중립성 정책)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1) 현행 유지, 2) 규제 강화 3) 규제 완화로 견해가 나뉘며, 다만 초저지연이 필수적인 서비스 등에 관리형 서비스 적용 및 투명성 강화 검토 필요성에 다수 공감
 - 다수 표현은 여기에서만 언급되었으며, 그 외 다수/소수 표현은 없음
- (제로레이팅 정책) 1) 현행과 같이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2)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으로 견해가 나뉨

- (망 이용료 정책)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안) 중에서 자료제출은 통신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의 대조가 필요할 경우 CP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상생 협력) 위원들의 제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자율적 상생, 이익 공유 및 비용 분담 등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나열하기로 위원들이 결정함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 (○○○) 네이버에서 먼저 의견을 주시기 바람
- (네이버) 앞서 이메일로 의견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1년간 드린 의견이 있는데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음
 - 보고서를 정리하시는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망중립성 원칙에서 유지/강화/완화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원칙 유지'에서 일부 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상 망 중립성 완화에 해당됨
 - 규제 완화에서 대형 CP에 한해 통신사 전송 지연을 허용한다는 의견 역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
 - CP를 제외하고 논의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논의를 하셨는지 의문임
 - 제로레이팅에 대한 의견도 현행과 같이 허용 또는 일정 조건 하에 허용으로만 분류하였는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제로레이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음
- (△△△) 그 내용은 중소 CP 의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 (네이버)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 제외된 것은 불균형적이며, 소위원회에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없다는 것은 중소 CP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했다는 것을 의미함
- (□□□) 혹시 누락된 의견이 있는지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보겠음
- (네이버) 여러 차례 중소 CP 의견 개진 및 현황과 관련하여 KISDI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중소 CP 망 이용료 의견 개진 내용이 보고서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기억함
 - 당시 방통위에서 요구하여 네이버 주최 하에 중소 CP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중소 CP 간담회와 참석자 구성이 비슷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상호접속 정산 고시 이후 가중되는 통신비 부담이 있고 이를 해소해달라는 내용이 주였으며, 중소 CP와 대형 CP간 가격차별 내용이 주가 아니었음
- (○○○) 상호접속 관련 내용은 동의하나, 동그라미 해당 문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네이버) 중소 CP와 대형 CP간 차별이라고 정리한 것은 KISDI의 입장이 반영된 듯하며, 이후에라도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논의결과에서 CP의 불공정 행위 금지가 있는데, 정작 CP 입장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어떤 상황을 우려하여 향후 과제를 정리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나열한 것은 이해하나, 민간 자율적인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동시에 이익 공유제 등을 제시하는 것은 모순됨
- (△△△)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소위원회 의견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나열된 듯한데, 말씀의 취지는 알겠음
 - 위원들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방안 추진에 공감했는데, 그 외 개별적인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칫하면 강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해보겠음
 - 망 중립성 견해 분류에 대해서는 본인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위원들이 의견서 제출 시 유지안이라고 명시하면서 특정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하여 그대로 분류된 것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겠음
- (□□□) 결과보고서안의 모든 문구는 위원들의 회의발언과 따로 제출받은 의견서의 문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새로이 내용을 창작한 것이 아님
 - 망 중립성 현행 유지 의견은 위원들이 명시하여 제출한 의견을 제가 임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그대로 적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는데, 필요하다면 위원 토의 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제로레이팅 역시 위원들 중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없었음
 - 중소 CP 간담회는 네이버 측에서 요청하셨으며, 방통위나 KISDI가 조직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 위원인 중소 CP들과 스타트업포럼에서 추천한 CP들이 오심
 - 소위 회의에서 발표한 간담회 결과와 수정 전 보고서 문구가 큰 차이가 없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간담회 결과의 원문 그대로 '국내외 대형 CP'를 '대형 CP'로, '가격조건조차 알 수 없음'을 '가격조건 공개가 안 되고 있음'으로 수정함
 - 처음에 원문 그대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소위 회의에서 발표한 간담회 결과 이외에 망 이용료 관련하여 방문한 개별 중소 CP 사업장들에서 청취한 의견이 혼재되었기 때문임
 - 이의를 제기하셔서 간담회 결과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나올 것 같아 수정하였음
- (네이버) 이 결과를 가지고 해당 CP들로부터 확인을 받으셨어야 함
- (○○○) 네이버에서 열린 간담회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 모르겠으며,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간담회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함

- 당시 방통위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참석하셨고, 그 자리에 오신 협의회 중소 CP 위원 두 분께 발제를 부탁드렸는데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하시거나 회의 전날 일정상 못 오신다고 알려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발표를 한 것임
- 마치 간담회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의는 부당함
- 또한, 발언한 중소 CP의 실명 공개와 근거를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요구는 정보력이 훨씬 부족한 중소 CP에게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음
- o (네이버) 최소한 발언자에게 이 내용이 핵심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받으셨어야 함
- o (△△△) 간담회 결과는 참석자 중 발제하시려던 협의회 중소 CP 위원께 보내드렸으며, 동그라미 문장은 발언자에게 확인을 받음
- o (네이버) 망 이용료에서 메인 이슈는 대형CP와의 협상력 차이에 의한 가격차별이 아닌 상호 접속과 관련된 것임
- o (□□□) 중소 CP 중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실명 공개나 발표도 어려웠다는 의견이었음
 - 네이버에서 지적한 바는 나중에 논의해보겠음
 - 발언권 신청이 없으면 카카오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 o (카카오) 각론부터 말씀드리면, 1쪽의 추진 배경에서 동그라미 계위는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대시(-) 문장은 협의회 kick-off 회의에서 공개된 것인데 반해, 동그라미 문장은 소위원회에서 논의 및 합의된 적이 없으므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 16쪽(망 중립성 정책) 다이아몬드 계위의 문장은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 현행 유지, 규제 강화, 규제 완화로 견해가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 완화 입장인 초저지연이 필수적인 서비스는 관리형 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에 다수 공감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문장구조임
 - 구조상 규제 완화에 들어가야 하는 의견이므로 해당 문장을 규제 완화로 이동시켜 재분류해야 함
 - (망 중립성 원칙 유지)에서 초저지연 서비스 등은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음. 소위원회 의견이라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면 삭제해야 함
 - 25쪽(망 이용료 정책)의 논의배경에서 동그라미 계위에서 차별적 가격책정 문제가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해서만 나타나고, 주요 쟁점에서도 국내 망 이용료를 국내·외/대형·중소 CP간 차이만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통신사측 주장만 담고 있는 것임
 - 논의 배경이나 주요 쟁점 부분에 CP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하여 담아주시기 바람
 - 32쪽(망 이용료 정책)의 'CP의 불공정행위 금지'는 통신사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소위원회 논의결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불공정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규제 대상인데, 마치 그간 CP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CP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은 수정해주시기 바람

- 33쪽 향후 과제에서 ‘CP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굳이 CP가 통신사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삭제해주시길 요청 드림
- 또한 사업자에 망 이용료 계약 및 트래픽량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망 이용료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된 이후 망 이용료 인상 등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음
-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쟁점이 있는 사안들도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편향적으로 반영됨
- 소위원회 논의결과 제목을 소위원회의 논의결과로 바꾸고 노란색으로 강조된 음영처리를 빼주셨으면 함
- 사업자들이 정식 위원은 아니지만, 함께 회의를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있음. 소위원회 논의결과라는 제목은 마치 사업자가 해당 의견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o (페이스북코리아)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CP를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셔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음
 - 망 이용료 정책에서 소위원회가 논의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CP가 통신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CP가 어떻게 망을 가지고 있는 기간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논의 내용 중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사간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데, 시장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임
 - 결정권은 시장 참여자에게 맡겨야 함
 - 망 이용료 수준 결정권자는 사실상 통신사인데 그 과정에서 CP가 불공정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표현해주셨으면 함
 - 전반적인 불공정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해결 가능함
 -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을 언급하셨는데, 원가공개 소송에서 법원은 통신사에게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단서로 콘텐츠, 광고 사업자와 맺은 계약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함
 - 이와 같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표현을 정제해주셨으면 함
- o (OOO)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을 주시는 듯함
- o (구글코리아) 망중립성 소위원회 논의결과 (p. 16)에서 “다만, 초저지연이 필수적인 생명·안전 관련 서비스 등에 관리형서비스 적용 및 투명성 강화 검토 필요성에 다수 공감”이라는 부분은 회의록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며,
 -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회의록에 관리형 서비스 허용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망사업자 및 일부 위원에 대한 의견이 주요 의견으로 보도되었다는 내용(p. 332),

- 5G에서는 관리형 서비스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식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내용(p. 333),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관리형서비스에 대해서 필요성과 제공방식을 공감했다는 기사는 잘못되었다는 내용(p. 333) 등이 있음
- 국내 상황과 글로벌 상황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망 이용료'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망 이용료'라는 모호한 개념을 이용하면서, 그것이 인터넷 전용 회선료에 대한 것인지, peering에 대한 것인지, 캐시서버에 대한 것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이용방식에 대한 차이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었음
- 따라서 작은 글씨가 아니라 서두에 “‘망 이용료’라는 개념 자체는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인터넷 전용 회선료에 대한 것인지, peering에 대한 것인지, 캐시서버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아서 각각의 이용방식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하 논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망 이용료라는 개념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하 논의를 정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망 이용료 정책 소위원회 논의결과 (p. 33)에서“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부분은 회의록의 기록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망 이용료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됨”으로 수정하고,
- “한편, 상호접속 개정을 근거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회의록 말미에서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하게 규제해달라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고 정리하고 있는 견해가 있음 (p. 351)
- 또한, 망 이용료 차별은 상호접속 개정을 근거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하여 발생한 결과라는 견해도 있는데(p. 342),
- 이에 따르면 현행 망 이용료 문제는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일이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결될 일이라고 보기 어려움
- o (우아한형제들)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제로레이팅, 망중립성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림
-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고, 비딩 테이블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음

-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만드는 주체가 되고, 사업에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영되기 바람
- o (△△△) 모든 사업자분들이 발언하신 후 시간이 남으면 한 차례 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o (CJ ENM(티빙)) 제로레이팅 관련 소위원회 결과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CP 의견이 소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궁금함
 - 방통위에서 모여 제로레이팅을 반대하였는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소위원회 위원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위원들이 중소 CP 의견을 고려하지 않으신 듯함
 - 5G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구현되는지, 망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재검토 또는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은 모순됨
 - 일단 원칙을 유지하되, 구체화된 이후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쪽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보면 '망 중립성 원칙 유지' 카테고리에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 모 통신사 건물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중앙일보에서 5G 통신마비가 있을 경우 자율주행차 등 서비스가 중지되는지 팩트체크함
 - 결론은 5G는 보조적인 서비스 또는 수단과 결합되어, 5G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적다는 것이었음
 -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원격수술에서는 대량사진 전송 등 보조적인 역할을 지원함
 - 그러므로 자율주행차, 원격의료에 대해 관리형서비스 적용이 적절한지 위원들이 다시 고려해주셨으면 함
 - 두 번째는 25쪽 망 이용료 정책의 논의 배경에서 통신사-CP간 망 이용료 계약에 있어 차별적 가격책정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다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의문임
 - 이 부분이 서두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름
 - 박경신 교수님이 다른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현황이나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에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 33쪽 향후 과제에서 법령 개정이 도출되었다고 하는데, 금지 행위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수범자로 들어가 있고 이미 행정 소송도 발생함
 - 추가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견을 듣고자 함
 - 중소 CP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음
- o (□□□) CP 측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통신사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o (SKT)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의견차이가 있을 듯하여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CP 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음

- 망 대가 협상에 대한 법제화를 원하나 보고서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마무리됨
- 패스트트레인 등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님이 이전 회의에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공유되지 않음
- 마치 통신사에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여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관리형 서비스와 제로레이팅은 현재 법적으로 문제없이 제공 가능함
-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왜곡하여 말씀하셨는데, 공포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
- 자율주행차에서 5G의 초저지연 특성은 사고를 줄여주는 부분이 있으며, 원격 의료에서도 통신 두절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함
- 제로레이팅 반대 의견에서 코리아스타트포럼의 중소 CP 대표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제로레이팅에 참여하는 중소 CP가 존재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제로레이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동등조건을 말씀하심
- 현재 중소 CP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로레이팅 가격 역진성도 검토하고 있음
-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우려가 있으며,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실제 존재함
- 망 이용료 논의배경에서 사례를 인용하여 작성되었을 뿐 특정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음
- 이용자 피해를 담보로 협상력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된 바 있음
- o (KT)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셨는데, 원격의료는 망이 원활하지 않으면 원격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통신이 부수적이라는 언급은 정정이 필요함
-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이용자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편의 증진,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력 남용, 과도한 지배력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 지배력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생태계 내 지배력이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 환경변화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람
- o (LGU+)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음. 24쪽에서 제로레이팅 관련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고 하면서 향후 과제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한다는데,
 -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조건을 부과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 33쪽의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중 자료제출의무는 통신사에게만 부과되는 것인가?
 - 가이드라인이 망 이용료 협상을 공정하게 하려는 것인데, 통신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계약은 양사 간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계약 내용에 대해 한 쪽만 제출 가능한지 의문임
 -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해주시기 바람

- (○○○) 참고로 프랑스는 통신사와 CP 모두에게 상호접속 개념의 망 이용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음
 - (LGU+) 계약내용이 아니라 시장 통계상황이라고 알고 있음. 가격 공개 시 시장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됨
- (△△△)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원가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외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라서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듯함
 - 위원님들 중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람. 질문이 없으시면 추가적으로 사업자 발언을 듣겠음
- (페이스북코리아) 소위원장님께서도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제하시겠지만, 지난 1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 중 논란이 있어서 의견을 주고받음
 - 보고서상 중립적인 내용들이 언론기사에서 확정적으로 내용으로 보도된 사례로 미루어볼 때 가이드라인과 같은 참고사항이 사실상 정부 추진 정책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높음
 - 가이드라인이 자율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표현을 완화 또는 삭제해주시기 바람
 - 또한, 저희 사건과 망 이용료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데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함
- (□□□) 질문은 아니고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두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 향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 제기된 내용들을 사업자와 같이 합의하기를 제안드림
- (○○○) 소위원회 구조는 당초 위원들만의 모임이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자 및 타 소위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함
 - 소위원회 의견은 소위원회가 만드는 것이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위원이 되어야 함
 - 정책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이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소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운영방식을 바꾸기 어려움
- (△△△) 망 중립성의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되는 특수 서비스,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절차가 있을 것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7쪽 망 이용료 해외 현황에서 첫 동그라미 밑에 대시(-) 문장을 보면 마치 무정산 계약이 특별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 무정산 계약이 원칙이나 예외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었음.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이므로 세세한 점이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음
- (△△△) 사업자들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주장 안에 합리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그 과정들이 누적되어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반대되는 주장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위원들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마무리하겠음
- 제한된 시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참고 토의)

- (□□□) 쟁점별로 논의하겠음. 1쪽 추진배경의 동그라미 문장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 1소위 워크숍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서 1소위원장님께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음
 - kick-off 회의에서 대시(-) 부분만 있었는데 동그라미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 검토가 필요함
- (△△△) 1소위에서 요청하여 수정하였으나,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함
- (□□□) 수정한 문구는 1소위 위원이 제안하신 것임
- (○○○) 시장에서 부가통신 비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임
 - 이 위원회를 만든 이슈 중 하나가 대형 포털과 글로벌 사업자가 상당한 지위를 획득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현재 우리나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준은 글로벌에 비해 높은 편인데, 만약 부가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개위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읽히게 되면 해당 표현은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통신시장 내에서도 각각의 계층에 따라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앞부분에서는 통신시장 환경 변화 및 기술 진전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통신관련 규제프레임워크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을 제안드림
- (□□□) 말씀하신 것처럼 첫 회의에서 기술 환경 변화를 논의했으므로 부가통신 언급 없이도 과학기술 발전, 정보통신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대시(-) 부분은 논란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되 동그라미 부분은 방통위에서 정리해주시기 바람
- (○○○) 16쪽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하는 안이 있는데, 사실 네이버가 주장하는 대로 분류하면 우리 위원회 유지 안이 없어지고 완화/강화만 남겨질 가능성이 있음
 - 일부분 완화는 하되 지금 틀 안에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 유지를 지지한 의견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완화로 분류해야 한다고 네이버가 이의를 제기함

- (△△△) 위원님들 간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원칙 유지에 대해 동의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의 관리형서비스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음
 - 강화의 경우 다른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 망 중립성 강화/완화 이슈는 과기정토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 범위를 구체화하여 통신사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제로레이팅 금지 규제를 추구할 것이냐 등과 관련이 있음
 - 첫 번째 원칙 유지 견해는 망 중립성 원칙을 그대로 두되, 요건 등을 명시하여 관리형 서비스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임
 - 견해를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안/완화하자는 안/강화하자는 안이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화/완화할 것인지 알 수 없어 설명이 필요함
 - 통신사업자들은 지금도 관리형서비스나 제로레이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다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가이드라인에 없어서 나중에 위법행위로 판명될 경우를 우려함
- (○○○) 초저지연 특성을 지닌 서비스가 품질보장이 필요한 중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 향후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될 때 요구가 있다면 관리형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현행법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유지라고 함
 - 지금 '유지'에서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는 개별 서비스를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당장 해당 서비스에 대해 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관리형 서비스 해당여부는 향후과제에서 주파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듯함
- (△△△) 초저지연 서비스에 관리형 서비스 적용한다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논의의 쟁점이라고 생각함
 - 통신사업자들은 처음부터 5G에서 망 중립성 정책 변화를 주장했었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 공중망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특정 서비스는 관리형 서비스에서 망 중립성 적용 없이 제공할 수 있겠다는 맥락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해달라고 주장한 것임
 - 위원들의 의견서 요청시 초저지연 서비스가 새롭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합의 사항처럼 서술되어 문제제기를 함
 - 제안을 드리자면, 다이아몬드 개위에서 세 가지 견해로 나뉜다는 내용만 서술하고, 이후 초저지연 서비스에 관리형서비스 적용 검토 필요 문장은 망 중립성 원칙 유지 부분에 포함시켰으면 함
- (□□□) ♡♡♡님 안은 마름모의 '다만~' 단서를 빼서 망 중립성 원칙 유지의 첫 번째 대시(-) 문장을 대신하고, 그 뒷부분은 검토 필요성까지만 쓰자는 것이었음

- (○○○)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서비스만 강조하여 서술됨
- (△△△) 이 이슈는 원칙의 강화/완화 여부와 상관없이 앞부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초저지연 서비스는 세 가지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면 망 중립성 예외 대상임
 - 문제는 최선형 망에 영향을 주는가인데, 초저지연 서비스의 관리형서비스 적용이 원칙 유지에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지 의문임
- (□□□) 망 중립성 이슈는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하는 것이 망 중립성 이슈와 관련이 있는가에서 시작됨
 - 광대역 망에서는 IPTV, 전용망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아니지만,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하면 망 중립성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따라서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 중립성 이슈인가를 결정한 후 망 중립성을 강화/완화할 것인가라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 (○○○) 초저지연이라고 명시하여 이 부분에 다른 서비스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 듯한데,
 - 현재 IPTV도 관리형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고, 앞부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시점에서 반드시 관리형서비스 범주로서 초저지연 서비스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음
 - 초저지연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초저지연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 ‘초저지연 등’ 표현도 괜찮다고 봄
- (□□□) 기본적으로 5G의 네트워크슬라이싱과 관리형서비스 관계는 특정 수준이상으로 계약된 서비스는 모두 슬라이싱에 포함되므로, 초저지연이라고만 규정할 필요는 없음
 - 마름모 개위 문장에서 ‘다만’ 이후 ‘초저지연이 필수적인 생명·안전 관련서비스 등’은 삭제하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초저지연 서비스가 관리형서비스라는 것이 아니라 QoS 보장 등 특별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 관리형서비스에 포함됨
- (○○○) 관리형서비스를 가급적 제한하고 싶은 CP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특성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 이 내용 자체가 관리형서비스를 단정하고 있음. CP가 망 중립성 완화에 반대하는 근거로 관리형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관리형서비스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함

- 다만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류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현행체계유지 또는 5G 환경에 맞추어 재해석/현행체계보다 강화/현행체계보다 완화라고 수정하기를 제안드립니다
- 그리고 해석할 때 논쟁이 발생하므로 정리를 하실 때 회의록 등 해석의 근거를 알려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으로 보임
- o (□□□) 회의록 외에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근거한 내용이 많은데, 의견서 공개는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o (○○○) 초저지연 서비스가 쟁점이 아니고, 통신사에서 이 부분을 주장한 바 없음
 - 관리형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함
 - 다시 제안 드리자면, 견해가 나뉜다는 문장 다음에 관리형서비스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필요로 적고 초저지연 부분 및 다수 공감 표현은 삭제했으면 함
- o (△△△) 망 중립성 원칙 단서 부분에 초저지연을 삭제하여 '관리형서비스 적용 및 투명성 강화 검토 필요' 정도로 하고,
 - 견해를 분류할 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현행체계 유지/강화/완화로 했으면 함
 - 현행체계를 유지하자는 안에서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요건을 정하는 방안은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내용임
 - 이 문장에 앞서 현재 망 중립성 원칙이 5G 체계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o (□□□)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망 중립성 원칙에서 5G 관리형서비스를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망 중립성 원칙을 범제화하자, 세 번째는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임
- o (○○○) 세 번째 규제 완화의 경우 뒤에서 망 이용대가 및 제로레이팅 가이드라인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님
- o (△△△)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현행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행 유지/규제강화/규제완화로 견해가 나뉘고, 5G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리형서비스의 적용 범위 투명성 강화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이 궁금함
- o (□□□) 망 중립성 원칙 유지 부분에서 초저지연이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부분과 다음 문장이 연결되어 있음
 - ♡♡♡님 말씀처럼 초저지연이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되는지는 새로운 이슈이므로,
 - 별도 동그라미 개위에 이러한 서비스가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 개별 서비스 명기나 요건을 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로 했으면 함
- o (○○○) 마름모 개위에 새로운 5G 하에서 망 중립성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5G 하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는 현재 망 중립성에 대한 규율은 현행체계에서 해결하자, 명확하게 규정을 하되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임
- 기존의 대시(-)내용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시(-)개위는 없음
- 두 번째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 세 번째는 망 중립성의 투명성과 사후규제로 하자는 것임
- o (△△△) 세 번째는 투명성 원칙이 망 중립성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지만, 망 중립성 중 투명성은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음
- o (□□□)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와 관련이 있는데, 세 번째 안은 투명성 외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고 사후규제로 하자는 것이었음
- o (○○○) 세 번째 안은 투명성 외 폐지하겠다는 것이 맞으나,
 - 한편으로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유형 중 패스트레인, 경제적 트래픽관리, 관리형 서비스 중 5G 관련 서비스 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미리 적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함
- o (△△△) 구체적으로 요건을 명시하는 것은 첫 번째 안에 해당함
- o (□□□) 첫 번째 안은 기존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두되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임
 - 범위 및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첫 번째보다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규제 완화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o (○○○) 1안이 탄력적 운용도 있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니 보완하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이해함
- o (△△△) 1안은 사실 경제적 관리까지 관리형 서비스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음
- o (□□□) 그렇다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것이므로 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 o (○○○) 지금의 가이드라인 하에서도 충분히 서비스는 제공가능하나, 통신사들은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 여부 불확실성으로 서비스를 못 한다는 것임
 - 그러므로 관리형서비스 범주를 명시해달라는 것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불안감을 해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현행보다 결과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원래 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함
- o (△△△) 원래 할 수 있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함
- o (□□□) 해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도 규제완화에 포함된다고 생각함
- o (○○○) 완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안이 존재하는 것임
 - 현행 유지로 입장을 표명하신 분들이 개별서비스 또는 요건 명기하는 방안도 포함하였음

- 완화로 보일 수 있지만 해석의 차이이며, 분류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 부분을 모두 완화로 분류하면 현행유지가 없음
- o (△△△) 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최선형 망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형서비스는 인정하고 있음
 - 그러한 맥락에서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되면 관리형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함
 -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서비스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관리형서비스에 해당된다면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동일함
- o (□□□)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서비스로서 가능한가 자체가 논란이 됨, 해석에 이 부분을 완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음
- o (○○○) CP측의 입장이 그러한데,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 해준다면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o (△△△) 관리형서비스 자체는 현행 규정에서 할 수는 있으나,
 - 관리형서비스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관리형서비스라고 주장 하여도 해당이 안 된다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
- o (□□□) 현재 IPTV나 VoIP 외에는 관리형서비스가 없는데, 관리형서비스에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서비스를 포함하면 망 중립성 예외가 되므로 상당한 완화가 될 수 있음
- o (○○○)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현행에서도 IPTV, VoIP가 관리형서비스가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은가?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
- o (△△△) VoIP에 대해서는 관리형서비스 해당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o (□□□) 정의를 하여 서비스를 당장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열거식으로 정의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음
 - 추상적인 요건을 정하지 않으면 매년 새로운 서비스는 허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 오히려 지금 관리형서비스에 해당되는 IPTV, VoIP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함
- o (○○○) IPTV는 법에 품질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
- o (△△△) 개별서비스를 명기하는 방안은 지금 논의 중에 이를 주장하신 분이 철회하셔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o (□□□) 제목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음. 규제 강화 및 완화는 5G 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나 현행유지는 모호함

- 현행유지가 관리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이후 향후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유지가능하다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o (○○○) 소위원회 안은 지금 안을 계속 그대로 두자는 의견은 없는 듯함
 - 탄력적 적용을 확장하면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는데, 현행 유지 의미 안에 5G 기술 환경에 부응하여 유연한 적용, 탄력적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두고 관리형서비스를 재검토하자는 가능성을 남겨 두자는 것인데 이에 동의하는 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함
- o (△△△) 모호한 면이 있는데, 망 중립성 관련하여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함
 - 법제화가 5G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o (□□□)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자는 안과 법제화하자는 안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형식과 별개로 완화/강화여부가 나뉘어질 수 있음
 - 법제화하면서도 완화/강화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제화 자체는 형식의 문제라고 봄
- o (○○○) 번거롭더라도 이 부분은 메일로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으셨으면 함
- o (△△△) 메일로 할 경우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려움
- o (□□□) 현행 문구를 기준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함
- o (○○○) 일단 논의를 해야 하므로, 정리하셔서 선호하는 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 o (△△△) 메일로는 조율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함. 망 중립성 이슈가 부각된 것이 미국의 정책 변화와 5G인데, 미국과 같이 망 중립성을 폐기할 것인지,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음
 - 대부분 위원들이 4개의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5G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 즉 가이드라인을 급격하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데 동의함
 - 그 다음에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 사업자별로 해석이 다르고 지금 단계에서 관리형 서비스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이 외 의견으로 규제 완화는 투명성 외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견해를 두 가지로 정리했으면 함
 - 미국의 가이드라인 정책 변화에 대해 현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정책적 수단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별도로 기술했으면 함
- o (□□□) CP와 통신사는 강화 또는 완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음
 - CP는 제로레이팅 자체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나,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것보다 애매모호한 현행 유지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음

- 통신사도 법제화 방식으로 강화하기보다는 현행유지가 나올 수 있음
- 주장을 들어보면 사업자는 강화나 완화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행 유지는 검토할 부분이 많으므로 당분간은 유지하고 추후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 o (○○○) 5G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 1)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관리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2) 5G 하에서 법제화 필요 3) 5G 하에서 가이드라인 중 투명성을 제외하고 폐기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계속 기존 환경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 논의로 쟁점이 넘어가는 듯하여 5G의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현행 준용/법제화/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정도로 나누면 될 듯함
- o (△△△) 통신사가 해외 사업자와 협상력을 언급하면서 망 중립성 완화를 주장하는 계기 중 5G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망 중립성 정책을 이야기한 것임
- o (□□□) 큰 틀은 그대로 두되, 첫 번째만 원칙유지 및 탄력적 적용으로 보완했으면 함
- o (○○○) 우리 소위에서는 5G에서만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적용 범위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명하는 문구가 필요함
- o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름모와 추진배경에서 언급하고 관리형서비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기로 함. 지금 현행 입장에 대해 지적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함
- o (□□□) 이 부분은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개별 위원들의 의견서를 받아 카테고리로 나눈 것인데, 지금 원칙 유지에 탄력적 적용이라고 하면 균형이 달라질 수 있음
 - 다른 위원들 의견보다 각자 위원들이 주장한 바를 담아내면 될 듯함
- o (○○○) 대시(-)를 보면 요건을 정하는 방안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자는 것임
- o (△△△) 단일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원들의 안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첫 번째 안을 주장하신 위원들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될 듯함
 -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음
 - 다만 위에 단을 달아서 오해를 없애도록 서술하고 그 외 문장들은 각자 주장하신 위원들이 재검토해주시기 바람
- o (□□□) 가이드라인 해석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완화에 포함되어 완화 입장이 두 개인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o (○○○) ‘유연’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완화라고 생각하시는 듯하나, 의견은 현행 가이드라인 준용에 가까움
- o (△△△) 현행 유지 안에 1) 해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 2) 규율을 잘 하자는 측면이 담김
- o (□□□) 유지는 관리형서비스 해석에 초점, 완화는 경제적, 기술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유지에서는 슬라이싱을 어디까지 관리형서비스로 볼 것인가이므로 관점이 다름
- 현행 유지 의견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5G에 맞게 해석하겠다는 것이므로 완전 준용은 아님
- o (○○○) 유지를 주장하신 분들이 표현을 수정해주시기 바람
- o (△△△) 현행 유지는 망 중립성 4가지 원칙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형서비스는 기술적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사후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었음
 - 요건을 정하는 방식은 법제화 여부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음
 -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의 틀을 유지하고 5G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관리형서비스 해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기술 상용화 시점에서 관리형서비스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림
- o (□□□)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5G 특성에 따라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 필요'라고 의견을 드리겠음
- o (○○○) 현행 유지 안에 앞단은 공통으로 하고, 두 분 의견을 뒷단에 합쳐주셨으면 함. 그 외에는 문제제기가 없었음
- o (△△△) 원안 유지 안에 관리형서비스 재검토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름모 개위에서 또 언급해야 하는 것인가? 표현이 중복됨
- o (□□□) 마름모 개위에서는 5G 환경 변화만 언급하고 단서는 유지안에 포함하겠음. 위원님들 의견은 망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5G 대응 방안에 대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임
- o (○○○) 법제화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음
 - 완화 중 투명성 외에 망 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표현 대신 '망 중립성 중 투명성을 유지하되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사후 규제'로 수정했으면 함
- o (△△△) 24쪽에서 제로레이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고 CP측에서 이의를 제기함
- o (□□□) 제로레이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음
- o (○○○) 허용조건 부과라는 것이 제한이라고 보는데, '허용' 표현에만 중점을 두고 받아들인 듯함
- o (△△△) 허용조건 부과는 사실상 제한 사유임
- o (□□□) 향후 과제에서 제로레이팅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마치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것은 아님
- o (○○○) 회의 내용 및 위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제로레이팅 가이드라인은 삭제하겠음
- o (△△△) 25쪽 논의배경에서 지나치게 통신사 주장만 강조했다라는 의견과 페이스북 사건이 망 이용료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연결시켰다는 의견이 있었음

- (□□□) 망 이용료에 대한 개념이 필요함. 적어도 여기서 의미하는 망 이용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 복합적인 개념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함
- (△△△) 가입자 선로, 상호접속인지 섞여 있어서 정의하기 어려우며, 정의가 혼재되면 결론 면에서 이어가기 어려움
- (□□□) 개념정의를 불분명하다는 비판은 있으나, 개념을 잘못 정의하면 논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
- (○○○) 원칙적으로 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는 함
- (△△△) 통신사가 생각하는 개념과 CP가 생각하는 개념을 구분하여 명시하면 될 듯함
- (□□□) 논의 배경에서 통신사의 관점 및 CP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입장에서 망 이용료 정책을 이해하고 논의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하겠음
 - ♣♣♣님이 정의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 26쪽의 국내 현황에서 상호접속 사례를 언급하다가 다른 사례에서는 접속이용료를 언급하여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음
 - 관계없는 것은 제외하든지 전반적으로 재정리가 필요함
- (△△△) 우리나라는 CP와 통신사 간 접속계약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접속계약이 가능하고 실제 존재하므로 접속개념도 포함해야 함
- (□□□) 26쪽에서 망 이용료 논란이 있다는 별표가 있는데, ♣♣♣님이 별표 밑에 통신사와 CP 측이 주장하는 바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람
- (○○○) 해외에 있는 서버 간에는 상호접속이 있어서 이를 다 포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음
- (△△△) 32쪽에서 CP의 불공정 행위 금지라는 표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마치 CP가 문제가 있다는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음
- (□□□) 페이스북 사건은 금지행위 중 이용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고, 금지행위에서 사업자간 관계에서는 기간통신사자간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부가-기간 간 규제 행위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임
- (○○○) CP라는 표현에서 국내 CP가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 억울해할 수 있음
- (△△△) 입법 과정에서 대상자를 모두로 규정하고 위반 시에 적용하는 것임
- (□□□) 망 이용 행위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로 구체화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통신사 간이 아닌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임

- (△△△)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CP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 오해가 없도록 제목에서 'CP'를 삭제한 '불공정행위 금지'로 하고, 규제 대상을 'ISP 외'로 정의할 수 있음
- (○○○) 특정 CP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제목을 길게 작성할 수 있다면 '망 이용 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규제의 공백 해소'가 어떠한가?
- (△△△) 제목 'CP의 불공정행위'에서 CP를 삭제하고, 문장에서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 행위'라고 수정할 수 있음
- (□□□) ♡♡♡님의 의견을 따르겠음. 자료제출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나?
- (○○○) 여러 위원분들이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참고모델로 언급하셔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당연히 위원들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음
- (△△△) '주요 내용(안)'보다는 '예시' 표현이 적절함
- (□□□) 우리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다면 내용을 포함해야하는가 의문이 있음
- (○○○)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협상 절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면서 사업자간 자유로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전체 흐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가이드라인은 강제적 의무라기보다 노력의 의무임
-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예시'로 하고, 자료제출의무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함
- (□□□) 32쪽 상단에 상호접속이 더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대형·중소 CP간 협상력 차이에 따른 가격차별이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CP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음
 - (△△△) 고시 개정 전에도 차별은 존재했었음
- (□□□) 중소CP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수정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함
- (○○○) 망 이용료 차별이 있다는 문장을 제시한 후 모든 문장을 하위 대시(-)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드림
- (△△△) 문제의 요지는 망 접속료가 높아서 해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위 내용에 대형/중소 CP간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음
 - 대시(-)에 해당하는 두 문장 개위를 올려 모두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 (□□□) 43쪽에서 자율적 상생에 대한 지적은 이익 공유 및 비용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필요'가 아닌 '제시'로 수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강화'는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또는 '강화 방안 검토'로 수정하면 될 듯함

- 오늘 1부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을 논의함
- 방통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o (○○○)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공유함
 - 그 중 부가통신사업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1소위에, 그 외 나머지는 2소위에 해당함
 - 최종결과보고서는 KISDI에서 오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후 확정되면 13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려고 함
- o (△△△) 망 중립성 원칙 문제에서 원칙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탄력적보다는 유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함
- o (□□□) 그동안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최종(전체) 회의는 12월 13일(목)에 개최될 예정
- o 사업자 의견수렴 및 위원들 간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후 2소위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겠음